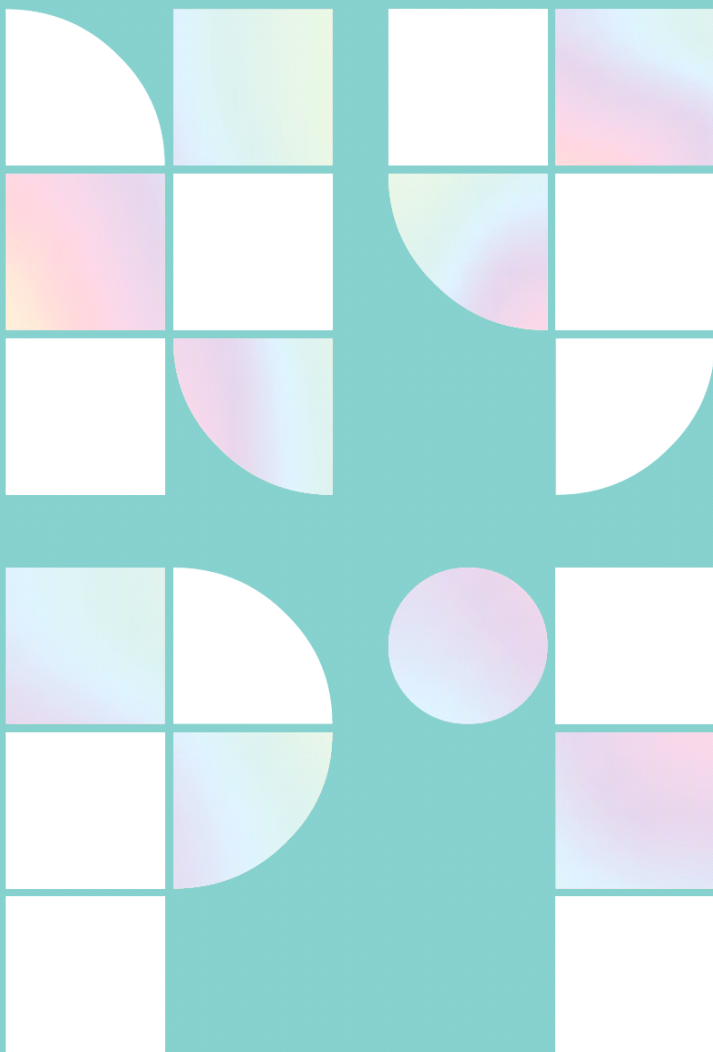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김영지 · 유설희 · 최홍일 · 이민희 · 김진호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김영지, 유설희, 최홍일, 이민희, 김진호

연구보고 21-R10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저 자 김영지, 유설희, 최홍일, 이민희, 김진호

연구진 연구책임자_김영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유설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최홍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이민희(평택대학교 교수)
김진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_김다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보고서를 펴내며

대한민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2019년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 시 그 어느 때보다도 아동권리협약이행에 대한 큰 관심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10여 건의 대안보고서가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유엔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제7차 협약이행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협약이행 노력과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아동·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 개선과 진전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아동·청소년은 학업스트레스와 여가·문화 부족, 시민이자 참여의 주체로 존중받지 못하는 문제,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체계와 지원 강화 필요 등 전 부처를 망라하는 인권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삶 전반에 걸쳐있는 130여 개의 방대한 협약이행 과제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법·제도와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이를 실천하기까지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연구는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체계를 마련하여 아동·청소년 인권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작되어 아동·청소년인권지표체계에 기반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과정에 이 연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수준에 대한 모니터링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 현황과 진전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내용

-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과 SDGs 지표 분석
- 2021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및 자료원 개선
 -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국가보고서 작성 지침(CRC/C/58/Rev.3)에 기반한 7개 대분류 영역 총 115개 지표 항목
 - : 73개는 행정통계 및 타 조사결과 활용, 42개는 인권실태조사 결과 활용
 - 영역별 지표 개수 :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11개 지표 항목, ‘시민적 권리와 자유’ 16개, ‘폭력 및 학대’ 11개,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1개,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28개,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13개, ‘특별보호조치’ 25개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 설문조사 결과 및 행정통계와 타분야 통계자료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생산
- 제5·6차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 : 클러스터별 정책 모니터링
- 아동·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 총 17개 과제
- 심화분석보고서 : 인권실태 심층 분석(주제 : 인권의식과 학교문화)
- 기초분석보고서 : 국가승인통계 이용자를 위한 KOSIS 탑재 통계표 수록

3. 연구방법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전국의 초4~고3 학생 총 8,623명 대상
- 전문가 자문, 전문가 의견조사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개선 (17명), 제5·6차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 성과 의견조사(27명)
- 전문가협의회, 청소년 및 전문가 워크숍 : 제5·6차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 및 이행 과제 도출
- 정부부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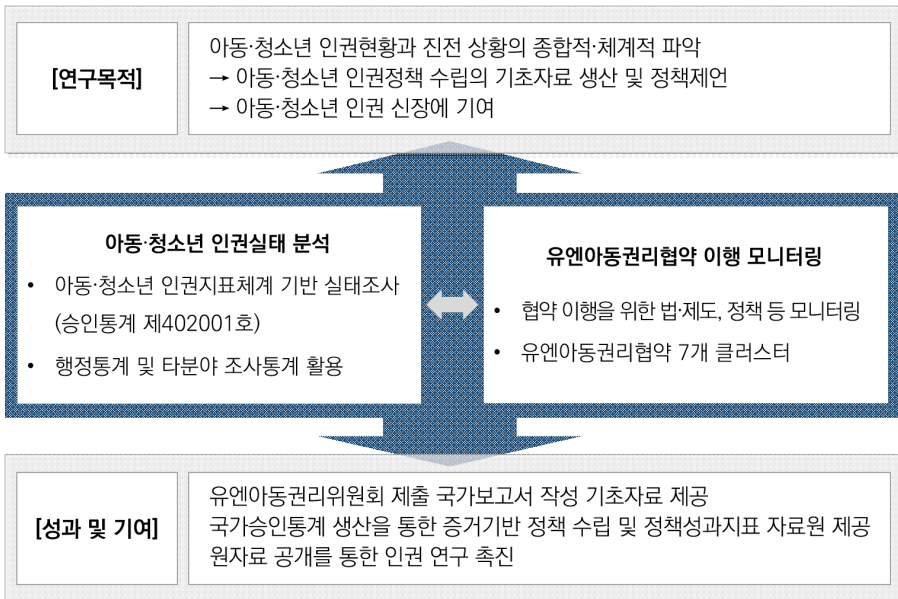


그림 3-1. 연구의 체계도

4. 연구결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분석 : 20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은 인권일반과 일반원칙 등 2개의 중분류에 인권 인프라, 인권인식, 인권교육, 차별 경험,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등에 대한 11개 지표 항목으로 구성됨.
- 아동·청소년 인권 기구·조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 심의·조정기구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 분야 소위원회인 아동권리위원회 등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2020년도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 비율은 3.6%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하였음.
- 유엔아동권리협약(20.1%), 학생인권조례(7.5%), 국가인권위원회(23.7%) 등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으로 모두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함. 생활영역별 인권존중도는 가정(96.6%), 학교(95.2%), 우리나라(82.4%), 사이버 공간(81.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임.
- 인권의식과 태도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주체적 결정 능력(69.7%), 아동·청소년 사회참여 필요성(87.7%), 자치조직의 의의(87.7%), 아동·청소년의 의견 표명권(96.2%), 경제적 이유의 차별금지(97.6%), 양성평등(96.8%),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94.3%) 보장 등 전반적으로 높은 인식을 보여줌.
- 인권교육을 받았다는 응답률은 48.0%로, 전년도 46.5%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고 인권교육을 받은 곳은 학교 교과수업시간이 76.1%,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33.2%로 나타남(복수응답). 인권교육의 목표별 도움 정도는 ‘태도(92.4%) > 지식(92.2%) > 실천(87.2%)’ 순으로 효과가 있었음.
- 1년에 한 번이라도 ‘차별받은’ 경험은 나이(23.0%), 학업성적(21.7%), 성별(21.6%), 외모·신체조건(21.0%) 등에 의한 차별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은 외모·신체조건(9.1%), 나이(8.1%), 학업성적(7.4%), 성별(7.1%)에 따른 차별 경험이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구에 대한 인지도는 낮고 아동·청소년이 인식하는 인권교육 경험율도 48.0%로 낮은 편이었지만 인권인식 및 태도와 주관적인 인권존중도는 높은 것으로 보고됨. 지난 1년간 10명 중 2명 정도가 나이, 학업성적, 성별, 외모·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인권교육과 차별 예방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은 의견표명권과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등 5개 중분류, 10개 지표(소분류), 16개 지표 항목으로 구성됨.
- 아동·청소년은 가정 내에서 가사 및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집안 내 중대사는 90.9%, 상급학교는 94.0%, 진로(직업) 94.6%, 공부시간·방법은 91.1%가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대해 보호자(부모)로부터 존중받고 있었음.
-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도는 26.8%로, 2017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학교 규칙이나 규정을 제·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정도는 82.2%로 높은 수준이었음.
- 참여기구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실제 인지도 및 활동 경험은 11%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우리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에 72.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참여권이 보장될 수 없는 방해요인으로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30.7%), 시간의 부족(29.2%),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24.2%), 참여할 기회 부족(12.7%)을 꼽았음.
- 사상의 자유는 92.1%가 보장받고 있으며, 가정 내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는 82.1%, 학교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은 49%로 나타남. 사회문

- 제 관련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경험은 11.2%,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 참여 경험은 5.7%로, 2017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사생활 보호에 대해 용모(21.3%), 복장(28.9%), 소지품(6.2%) 검사 경험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개인의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비 미납자(5.4%), 징계 사항(12.4%), 시험 성적(10.4%) 공개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임.
- 정보접근권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대부분은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였고, 주로 '여가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89.3%로 가장 높았음. 주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3~9세가 7.1시간, 10대는 13.6시간, 20대는 16.2시간이었는데, 이에 따라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은 35.8%이었음. 초·중·고등학생 중 37.4%는 성인용 영상물을 접한 경험이 있었고, 미디어 리터러시의 경우, 아동·청소년은 이용자로서 역량은 충분하였으나 미디어 생산 및 제공자의 측면에서의 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지각하였음.

● 폭력 및 학대

- 「폭력 및 학대」 영역에서 폭력과 관련된 세부지표들은 총 6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4개 지표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들이 가정, 교사,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받은 폭력 경험의 실태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경험 실태에 해당됨. 나머지 2개의 세부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과 관련된 지표들임.
- 가정과 학교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과 선후배나 친구들과로부터의 언어 폭력, 신체적 폭력, 갈취, 따돌림, 강제적 심부름, 사이버 공간에서의 욕설, 협박, 따돌림, 원하지 않는 사생활 유포 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들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그러나 차별이 법·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실태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3.1%가 아직도 피해를 겪고 있어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

- 성폭력 범죄사건 피해 대상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2019년 조사결과 13세 미만 연령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4.5%였고, 2021년 조사결과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은 초등학생이 6.7%로 가장 높았음. 성적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의 경우, 과거에는 피해 경험 후 혼자 걱정을 많이 하거나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경향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도움을 받은 경향이 높아지고 있었음.
- 2019년 총 38,380건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사례판단 결과, 30,045건(2018년 대비 22.0%p 상승)이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되었으며, 피해아동의 수는 22,649명이었음. 피해아동은 남자 아동이, 13세~15세 연령인 아동이 가장 많았음.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75.6%였으며 72.3%는 친부모임. 학대유형의 경우 중복학대가 48.2%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학대 25.4%, 신체학대 13.9%, 방임 9.6%, 성학대 2.9%로 나타남.
- 가정 내 방임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의 49.7%가 야간시간 방임을 경험하였고 6.2%는 비위생적 의복 또는 침구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음. 또한 3.4%는 아파도 부모가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4.6%는 결식에 대한 방임을, 1.2%는 결식에 대한 방임을 경험함.
- 학대 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9년 5개소 증가한 67개소로 조사되었으며 기관 평균 담당 학대 사례 수는 448.4건임. 학대 행위자 및 피해아동과 가족 및 부모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총 956,913건으로 상담 서비스가 가장 많았음. 피해아동 보호 현황의 경우 원가정 보호가 83.9%로 가장 많았으며 분리보호 12.2%, 가정복귀 3.3%, 기타 0.4%, 사망 0.2% 순으로 조사됨.

●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영역은 부모의 지도와 책임,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등 3개 중분류와 6개 지표(소분류), 11개의 지표 항목으로 구성됨.

- 부모의 지도와 책임과 관련하여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는 2012년부터 2020년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은 아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전체 어린이집 수가 2015년 42,517개소에서 2020년 35,352개소로 약 7천여 개소가,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도 2015년 1,452,813명에서 2020년 1,244,396명으로 약 20만여 명이 감소하였음.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코로나19로 인해 초등학생은 10.9%, 중학생이 4.2%, 고등학생이 12.0%로 전년 대비 5분의 1 수준 이하로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지역아동센터는 최근 10여 년 간 이용 아동 수가 10만 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는 2020년 6월말 기준 총 246개소로, 실제 4,858명의 아동(이용 아동 정원은 6,176명)이 이용하고 있음.
-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국내·외 입양 현황은 전체 입양아 492명 중 국내 260명(52.8%), 국외 232명(47.2%)으로 확인되었으며, 보호대상아동 수는 2018년 이후 2019년에 4,047명, 2020년 4,120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음. 2020년 현재 보호대상아동은 시설보호 66.5%(2,739명), 가정위탁 29.1%(1,199명), 입양 2.5%(104명) 순으로 보호되고 있었음. 또한, 초, 중, 고등학생 전체 응답자 중 3.2%가 가출 경험이 있었고, 주된 가출 사유는 부모님과의 문제(62.4%)와 학업문제(18.5%)로 밝혀짐. 가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6.1%가 가출 후 관련 기관을 이용하였고, 이용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77.1%가 만족했다고 보고함.
-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평가지표는 3년 주기로 진행되며, 현재 2022년 평가지표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또한, 아동보호체계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보호서비스 전달체계가 개편되었음.

●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 「장애, 기초 보건과 복지」 영역은 장애, 생존 및 발달, 보건서비스,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다섯 가지 중분류와 28가지 지표로 구성됨.
-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2020년 특수학교는 5개교 증가한 182개교이며, 특수학급은 11,661학급, 교원 수는 22,145명이었으며 학생 수는 2,462명 증가한 95,420명이었음. 대상학생 중 27.9%는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되었고, 52,744명은 특수학급에, 16,061명은 일반학급에 배치됨. 특수학교 졸업자 중 63.3%, 특수학급 졸업자 중 79.1%, 일반학급 졸업자 중 70.6%가 진학 또는 취업하였음.
- 2020년 신생아 사망률은 10만 명당 1.3명, 신생아 후기 사망률은 1.2명, 영아 사망률은 2.5명이었고, 연령별로 0세~24세 가운데 0세 사망률이 가장 높았음. 사고 사망률은 20~24세가 24.8%로 가장 높았고, 자살(19.6명/10만명)이 가장 많았음. 범죄피해의 경우 지능범죄의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폭력범죄, 교통범죄, 기타범죄 피해 순으로 높게 나타남. 지역사회 안전수준에 있어서 13.2%는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21.3%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고됨.
- 보건서비스의 인프라 구축현황을 보면, 보건교사 배치율은 70.5%였으며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은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 10개소, ‘소아전문응급센터’ 8개소, ‘달빛 어린이병원’ 27개소로 구축되어 있음. 정신보건 및 심리상담기관 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36개소(설치율 93.5%), Wee프로젝트 6,614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259개소, 자살예방센터 7곳,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49개소로 확인됨.
-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이용률의 경우 의료급여 대상 아동·청소년은 1종 95,653명, 2종 112,663명으로 총 208,316명이었음. 연간 병원 미치료율은 15~18세가 4.6%, 연간 치과 미치료율도 15~18세가 13.7%로 가장 많았

- 음. 흡연율은 전체 4.4%로 전년 대비 2.3%p 감소하였고, 음주율은 10.7%로 전년 대비 4.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평생약물경험은 0.8%였고,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률은 흡연예방교육이 72.5%, 음주예방교육이 42.0%였음.
- 신체적 건강과 관련하여 본인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86.5%였음. 주 1회 이상 운동하는 응답자는 55.6%였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73.8%로 나타남. 초, 중, 고등학생 응답자의 평균 수면시간은 7.2시간이었으며 52.4%가 수면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수면부족의 이유는 가정학습 25.7%, 학원 및 과외 16.9%로 보고됨. 2019년 비만율은 25.8%였고, 그 외에 질환별 유병률 중 알레르기 비염이 24.2%(1~11세)와 28.7%(12세~18세)로 가장 높았음.
 - 정신적 건강과 관련하여 2020년 10세~19세 자살률은 6.5%로 2019년 대비 0.6%p 높아졌음. 자살 생각에 대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29.9%가 1회 이상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었고, 그 이유는 학업문제 45.8%,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20.3%, 가족 간의 갈등 15.9% 순으로 나타남. 우울감의 경우 전체 대상자의 평균은 1.89점, 행복한 정도는 평균 3.11점이었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학업문제 때문인 경우가 40.6%로 가장 높았음. 삶의 만족도는 1~10점 가운데 평균 6.94점, 자아존중감은 평균 2.98점이었음. 고민거리가 있을 때 어머니(37.9%), 친구(34.8%)와 주로 나누었고, 마땅한 대화상대가 없는 경우도 12.0%이었음.
 -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과 관련하여 2021년 한국의 아동빈곤율은 12.3%로 나타났고, GDP 대비 공적 가족지출은 한국의 경우 1.3%로 보고되어 OECD국가들 중에서 멕시코(0.9%)와 미국(1.1%)보다는 높지만 나머지 국가들보다는 낮았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에 따른 아동빈곤율은 2016년 17.9%에서 2019년 17.0%로 소폭 감소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은 전체 2,046,213명 중 11.0%를 차지하였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예산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5,300백만원, 그룹홈 운영지원 26,746백만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3,164백만원, 가정위탁지원 940백만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148,600백만원이었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3,690개교 1,377억원, 드림스타트 사업은 2019년 기준 229개 지역에서 551억원의 예산을 통해 156,439명의 아동이 지원받고 있음. 디딤씨앗통장은 2019년 80,770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적립금은 4,570억원임.

●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에서 전반적인 교육적 환경과 여건은 많이 개선되어 교육의 기회가 과거보다 더 잘 보장되고 있음. 그러나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고학년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실례로 고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60만원에 달함. 또한,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5.3%가 학업 중단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었음. 그 이유로는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3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부하기 싫어서’가 27.6%,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16.1%,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가 10.3% 순이었음. 동일한 조사에서 교사가 학생을 존중하고 있다는 긍정적 응답이 96.3%로 나타났으나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가 없다고 느끼고 있거나,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4명 중 1명 정도로 높게 보고됨.
- 청소년들의 진로활동 참여에 대해 중학생의 경우 진로체험이나 창업체험과 같은 현장 체험의 실제적 진로활동의 비율이 높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학교 교육 밖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위하여 청년들이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진학으로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었음. 청소년들의 수련시설 이용 경험이 5명 중 1명 정도만 하고 있어 청소년활동이 부족하였고, 청소년의 여가활동 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하지만 여가활동 시간 중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일 84.8%, 휴일 62.1%로 높게 나타남. 코로나19로 인해 하루 평일 학습 시간이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되었는데, 이는 학교 수업이 비대면 블렌디

드 수업이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학원 등 사교육이 위축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 할 수 있음.

● 특별보호조치

- 「특별보호조치」 영역은 중분류 수준에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소년 사범, 경제적 착취, 성적 착취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2020년 현재 전체 난민신청자 중에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4.2%이며, 난민인정자 중에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52.2%로 나타남. 2021년 6월 말 기준 탈북 아동·청소년은 총 4,800명임. 다문화가족 자녀는 222,455명이며, 이중 국내 출생 자녀는 95.4%,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는 4.6%로 나타남.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 수의 비율은 2.75%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탈북학생의 재학 현황도 2020년의 경우 2,437명이었으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은 0.95%로 전체 학생의 평균과 유사하며, 탈북학생의 중도탈락률은 2.9%로 다문화학생의 중도탈락률보다 높게 나타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차별 경험은 증가되고 있으며, 친구로부터의 차별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구금현황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보호소년의 경우 신수용인원은 1,637명, 위탁소년의 경우에는 신수용인원이 4,297명이었음. 소년원 수용기간별로는 1개월 미만 수용자가 가장 많았음. 소년범죄자의 연령은 18세가 26.5%로 가장 많았고, 소년수형자의 죄명은 강간과 절도가 18.3%로 가장 많았음. 절도와 폭력·상해는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사기·횡령, 강간, 강도, 살인, 과실범 등은 전년 대비 감소함. 인권친화적인 환경 조성 비율과 관련하여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조력 횟수는 3,174회였으나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률을 살펴보면 소년분류심사원은 7개소 중 2개(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부산소년원)

가, 소년원은 10개소 중 5개소가 수용정원 대비 실제 수용인원이 과밀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음.

- 청소년들의 실업률은 2019년에 10.5%이었음. 임금수준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경우, 시간당 임금 총액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청소년의 파트타임 고용 비율은 33.7%로 OECD 평균보다 높았음. 아르바이트 과정에서의 부당처우 경험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59.5%)이 가장 높았고,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기/계약과 다른 일하기(10.8%), 임금 미지급/약속보다 낮은 임금 지급(9.7%),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8.7%), 폭언 등 인격모독(6.2%), 이유 없이 부당해고(5.2%), 작업환경의 불결과 위험(5.1%), 성적피해(1.6%), 구타나 폭행(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 접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처분도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주요형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23일에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하는 경우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됨. 성폭력피해상담소는 2020년 기준 전국에 16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다양화되고, 지원 건수도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음.

[아동권리협약이행 모니터링 : 제5·6차 유엔권고사항 이행 현황]

●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속적으로 국회에 발의되는 등 추진되어 왔으나 제정에 이르지 못하였음. 2021년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다시 발의되었고,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국가인권정책추진체계

등을 담은 「인권정책기본법」을 입법추진하기로 하였음. 이 두 법률은 우리 사회의 차별을 금지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의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해 제정될 필요가 있음.

- 2016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고, 2019년 3월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도운영의 절차 등이 정비되었음. 이러한 제도는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영향평가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2021년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57개 지역이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되었음.
- 정부는 가슴기살균제 피해아동에 대한 구제를 위해 ‘가슴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및 ‘가슴기살균제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해 공기정화장치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함.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된다’라고 포괄적·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요구됨. 또한 「아동복지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등 아동 관련 법률의 아동의 의견 존중, 참여와 관련한 조항에 대해 검토하여 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시민적 권리와 자유

- 국적이나 신분 등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출생을 확인할 수 있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은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0),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법무부는 2021년 2월에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을 발표하였고, 동년 3월에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미혼부의 자녀 등록 절차가 개선되었음. 동년 6월에 동법 개정이 입법예고 되어 의료기관에서 아동출생 및 모에 관한 정보가 관리되는 등의 출생통보와 관련한 일부 제도 변화가 기대되나, 모든 아동이 국적과 무관하게 출생등록 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금지조치를 마련해야 함.
- 학교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학생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당하고 있고,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가칭)학생인권기본법, 아동청소년인권기본법과 같은 포괄적인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21년 10월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7개 지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함. 정부는 2020년 2월 25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학교규칙에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담도록 했던 것을 학생의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으로 개정하였음.

● 폭력 및 학대

- 정부는 체벌 등 아동폭력, 성착취를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양한 아동학대 방지정책 마련,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가정 내 체벌 금지를 위한 민법의 징계권 규정 삭제 등을 하였고, 아동학대 조사시스템의 공공화, 아동학대 예산의 일반 회계화,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확대, 온라인 그루밍 처

별 근거 마련,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성매매아동을 ‘대상아동·청소년’에서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전환하였음.

-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노력과 성착취 대응 강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아동학대 국가데이터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되지 못하였고, 성착취 아동에 대한 실질적 보호 및 지원시스템이 구동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화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균형적인 아동학대 인적·물적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고, 국가아동학대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및 정보연계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또한,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아동이나 이주아동에 대한 보호체계의 구체화, 성착취 아동의 보호를 위해 부처 간 성착취 개념의 공유와 대책 마련, 성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구체적 보호장치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함.

●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 정부는 전문위탁제도 확대,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입양절차 공공화 및 체계화, 입양아동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 등을 하였고, 수용자 자녀보호 3법 개정, 아동친화적 접견실 확대 설치, 수용자 자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실시,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 구성 등의 성과를 이룸.
- 그러나 미신고시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아동복지생활시설의 대체인력 확보 및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또한, 전문위탁가정 발굴을 위해 일반가정위탁의 발굴의 선행 및 입양 후 사후관리 강화와 더불어, 수용자 자녀를 위해 아동친화적 가족 접견실 확대 및 수용자 자녀를 위한 복지안전망 접근성 및 복지도 강화되어야 함.

● 장애, 기초 보건과 복지

- 정부는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통합교육을 강화하였고, 취약계층 및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 미등록 이주아동도 무료접종을 받게 되었고, 당뇨, 비만 등 건강 취약 아동을

위한 제도가 강화되고 있음. 정신건강에서는 계획의 수립과 법제도의 전면 개정 등의 성과를 이루었고, 생활 수준에서는 아동수당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 뿐 아니라 난민인정아동 및 국내 거주 재외국민 등까지로 확대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입소도 가능하도록 함.

- 장애아동 통합교육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하고 재구조화하는 것, 희귀질환 또는 산정특례 지정, 보건소의 아동 예방접종 업무 재개와 미등록 이주아동의 혜택에 대한 홍보 및 부모 대상 정보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함.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을 감소시키고 아동의 도박성 게임 이용률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에 아동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등도 확대해야 함. 학교 주변에서는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온라인 심리정서 서비스 제공, 실내 동적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재가아동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함. 빈곤아동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와 민간기관 등과의 종합적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을 지원해야 할 것임.

●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우리 사회의 경쟁적 교육체제, 사교육의 심화로 인해 아동은 휴식, 여가 및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음. 정부는 2017년 9월에 과도한 입시경쟁 지양,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완화 및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혁신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실천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국가교육회의 설치하였음. 2021년 7월 1일에는 교육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대학입학정책 등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 모든 아동이 국적이거나 신분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 상의 ‘국민’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으로 개

정해야 함. 법무부는 2021년 4월 19일에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 방안’을 발표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법 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한시적으로 부여하였음.

- 2021년 1월 12일에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대안교육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놀 권리보장을 위해 2019년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놀이혁신위원회’를 구성하였음. 2020년에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선정하였고, 2020년 6월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놀이혁신 선도지역’ 10곳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교육부는 2021년 2월에 학교가 학습과 쉼, 놀이가 공존하는 창의적 학교가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함. 정부는 아동의 놀 권리보장을 위해 대학입시, 사교육 문제 등 경쟁중심 교육체제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함.

● 특별보호조치

- 특별보호조치 영역에서의 성과로 국내에서 출생하고 15년 이상 거주한 미등록이주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한 것, 그리고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응급의료비를 지원한 것, 민간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병원비를 최대 200만원 지급한 것, 영유아에게 무료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제공한 것, 중도입국학생들을 위해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 대안학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레인보우스쿨 운영 등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미등록 이주아동 영유아의 보육권 보장, 다양한 교육서비스에서의 접근성 제고, 코로나19 시대 한국어 능력 향상, 심리적 적응을 위해 온라인 프로그램 강화, 부족한 예비학교 수 확충,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진로 및 자립지원을 확대, 미등록 이주아동이 시설보호나 대안양육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조건 완화 등이 요구됨.
-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청소년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권의 보호를 위한 상담과 교육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고자 청소년근로권익센터(고용노동부)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여성가족부)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아동·청소년 연예인 및 방송출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및 제도들이 실제 아동·청소년의 노동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됨. 이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근로환경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적·정기적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주 계도 및 처벌, 근로권익 침해 구제제도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또한, 아동·청소년 연예인 및 방송출연자 등에 대해 표준계약서 이행을 주기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악성 루머의 확산이나 비방 표현 등의 악플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함.
-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아동의 보호와 국제법적 기준에 맞는 법적 기준 정비를 위해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인신매매 등 다양한 유형에 대한 개입을 하고 있음. 소년사법에 있어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개선사항이 없는 상태이고, 우범소년 규정 존치나 형사처벌 연령 인하 등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반하는 입법과 정책 방안이 모색되고 있어 우려됨. 인신매매 피해아동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방지정책 추진체계의 확립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소년사법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아동에 대한 법적 정비, 우범

소년 규정 폐지, 소년범죄 관련 언론 보도지침 강화,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아
 동을 위한 국선보조인제도 활성화, 코로나 상황에서의 소년사법기관의 적극
 적 대응조치 등이 마련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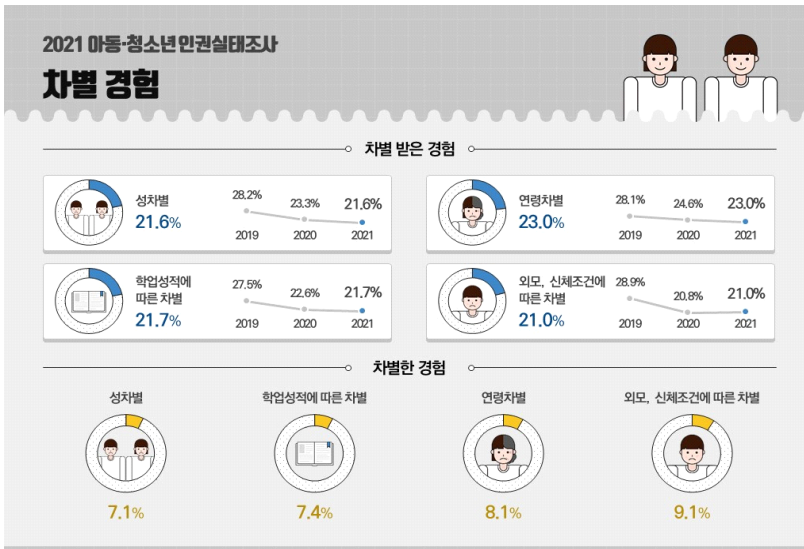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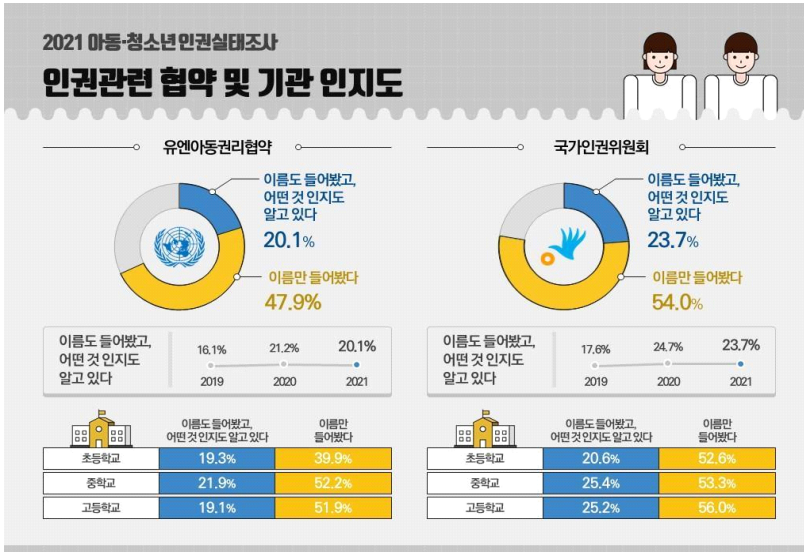
5. 정책제언

-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분석과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현황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통해 총 17개 정책과제를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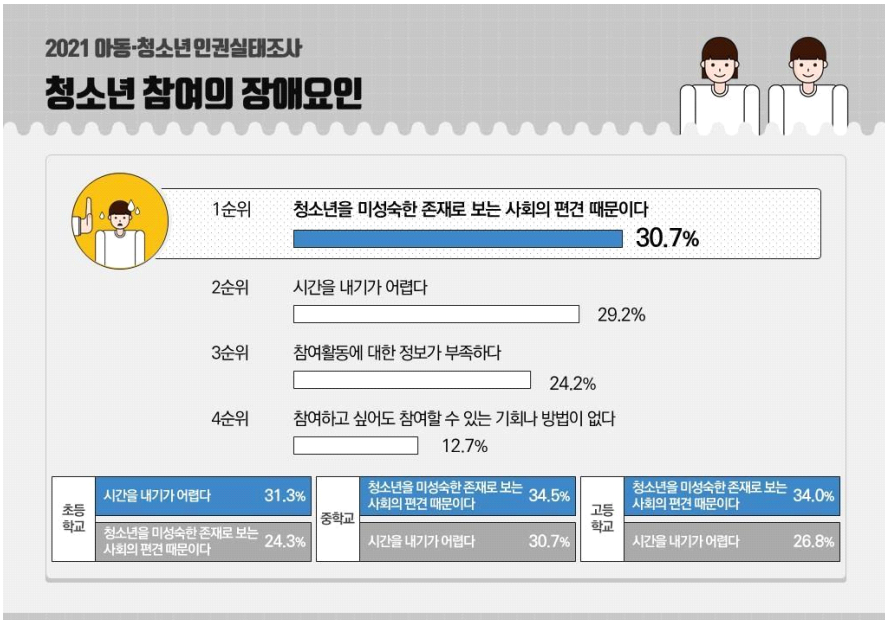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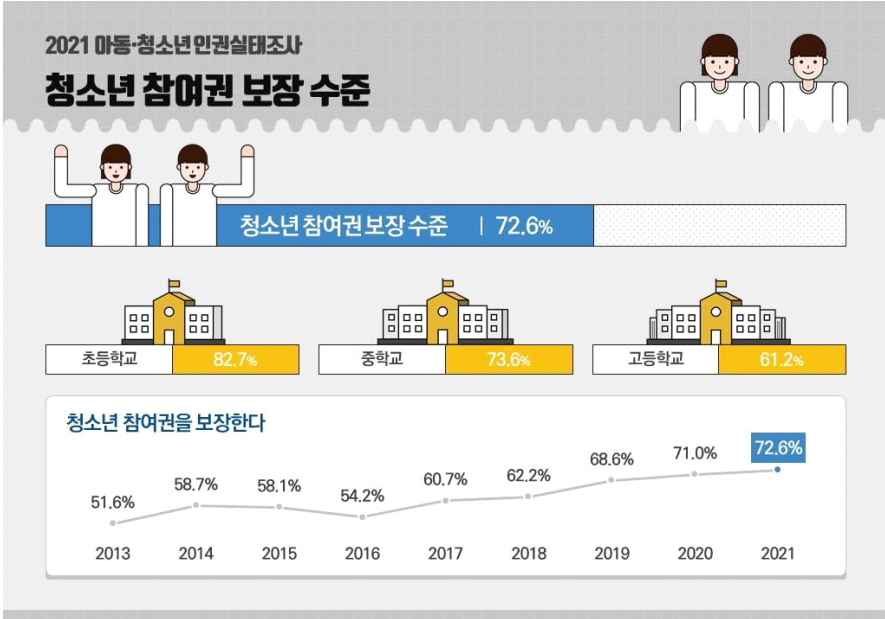
아동·청소년인권 정책과제명	
I.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과제1.	협약 제40조제2항(b)(v) 상소권 관련 유보조항 철회
과제2.	아동예산 산출기준 마련 및 아동친화예산 확대
II. 시민적 권리와 자유	
과제1.	아동·청소년 사회참여의 권리에 대한 인식 확산
과제2.	아동·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
III. 폭력 및 학대	
과제1.	교사의 체벌 근절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과제2.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화 및 지자체 간 격차 해소
과제3.	양육상담 시스템 마련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과제4.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확대 및 대상자 유형별 대응
IV.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과제1.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강화
과제2.	아동보호체계 사각지대 아동 발굴 및 지원 확대
V.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과제1.	정신질환 아동 조기발견 및 치료
과제2.	COVID-19로 인한 자살위험 감소
과제3.	COVID-19로 인한 비만을 및 시력 저하 등 신체적 건강 대응체계 마련
VI.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과제1.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한 '학부모협의회(가칭)' 운영
과제2.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후 교육과정 확대 차원의 '종일학교제'(가칭) 운영
VII. 특별보호조치	
과제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차별 예방 대책 마련
과제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탈북학생)의 학업중단을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20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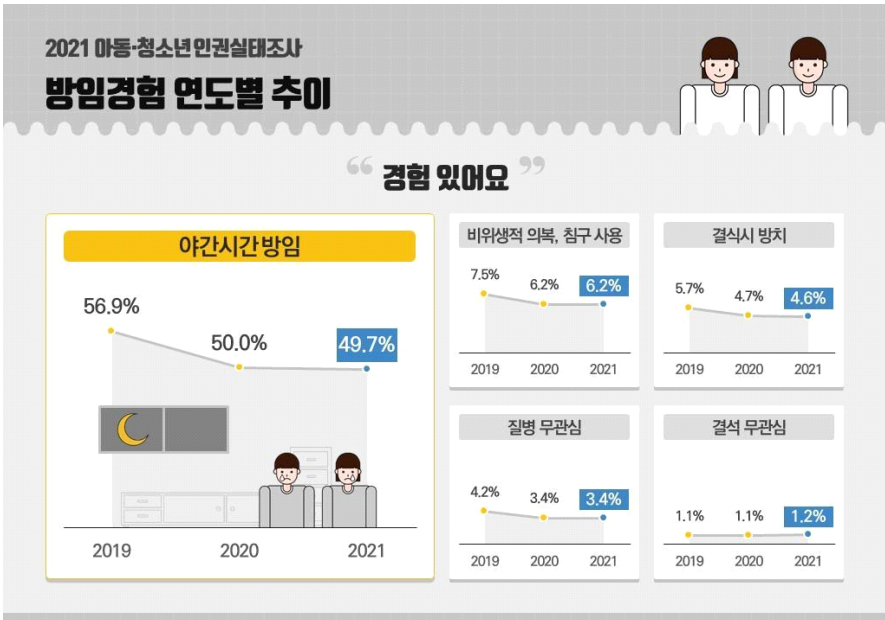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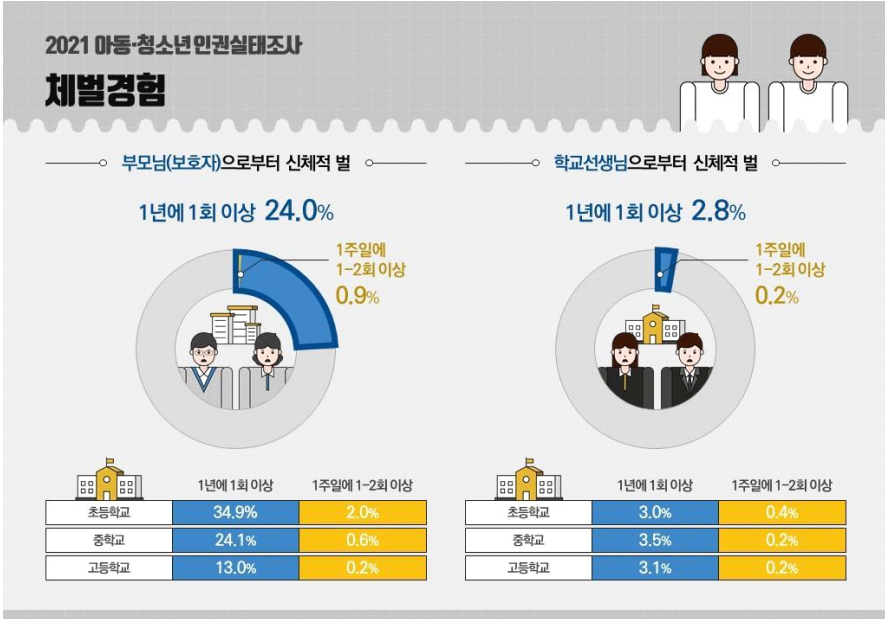
○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 시민적 권리와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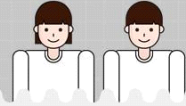


○ 폭력 및 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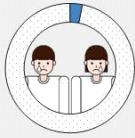
202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성적인 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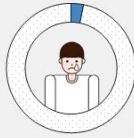


“성적인 피해 경험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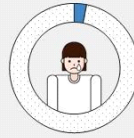
전체 3.1%



남자 3.1%



여자 3.1%



○ 학교급별 ○

6.7%



초등학교

1.5%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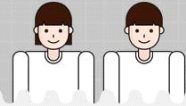
1.1%



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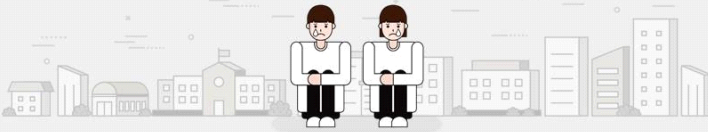
202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성적인 피해 시 도움을 받은 사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전체 30.0%



○ 학교급별 ○

24.2%



초등학교

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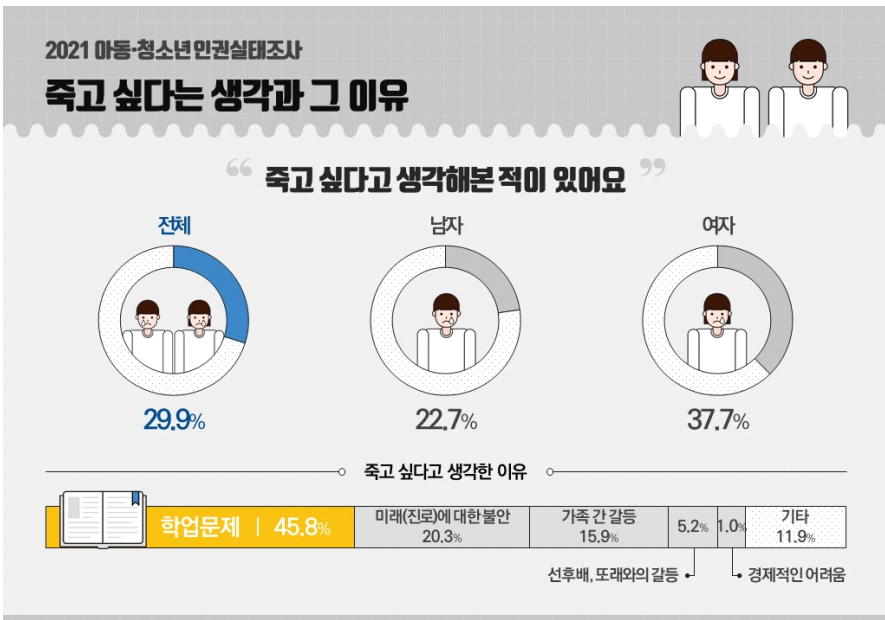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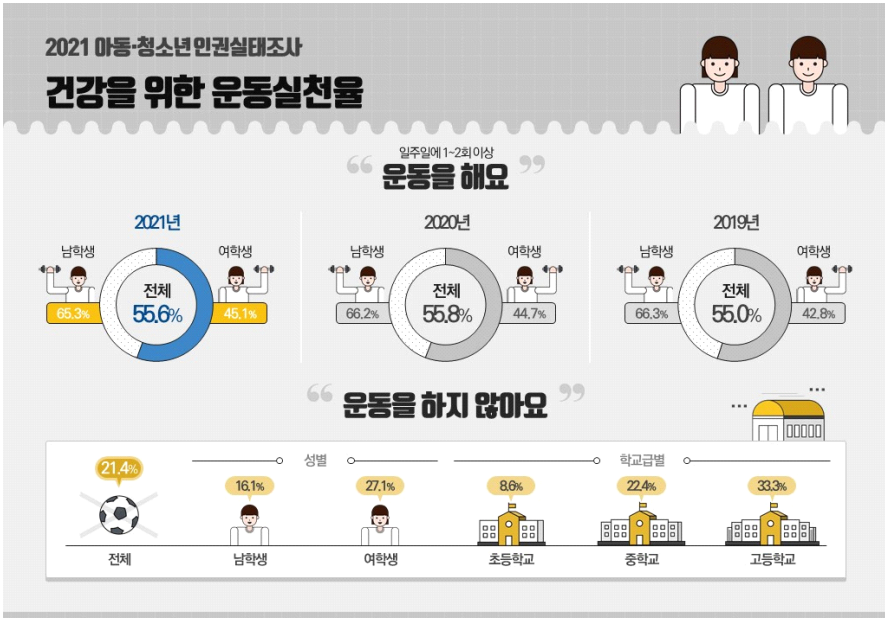
중학교

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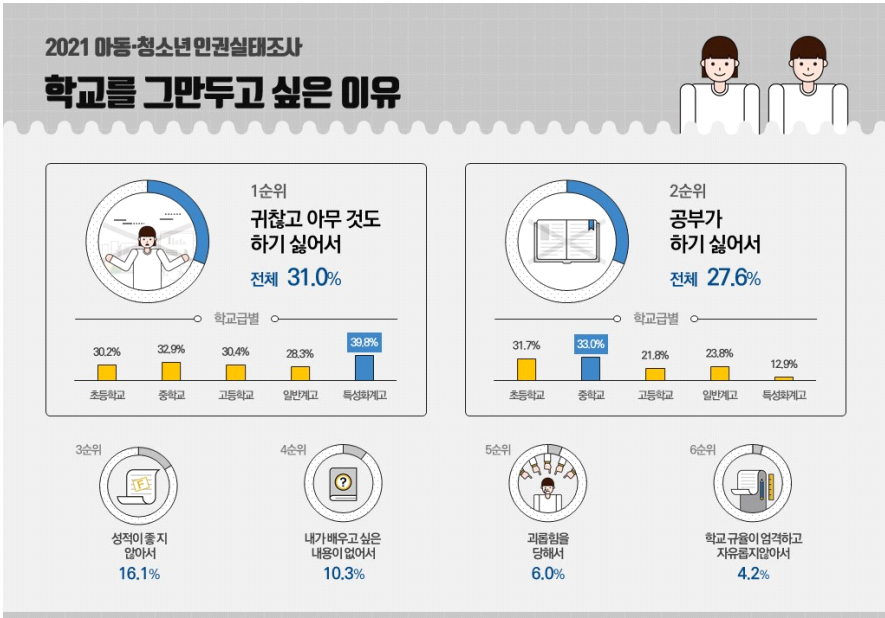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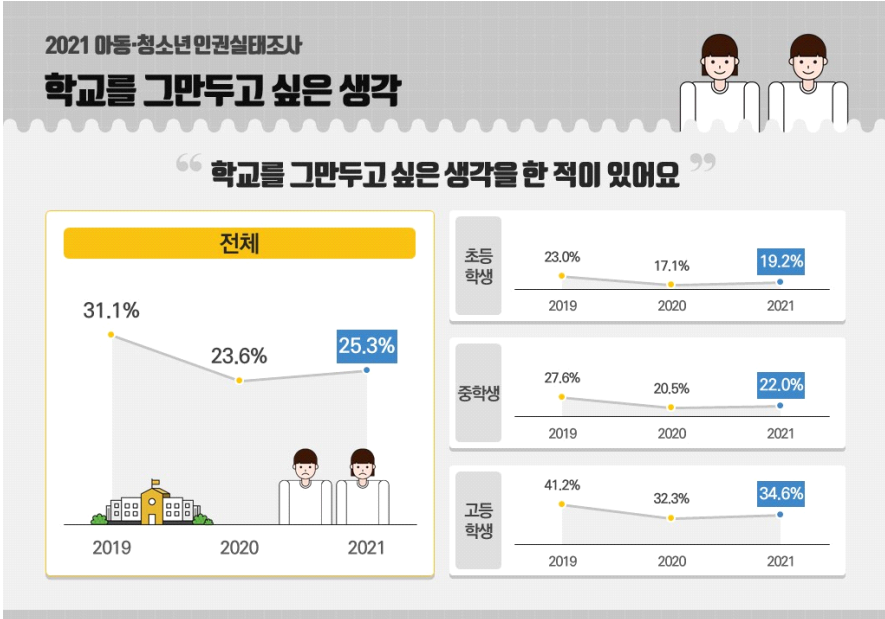


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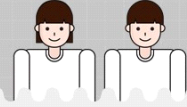
○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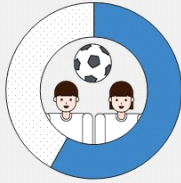



하루 평균 여가시간 및 공부시간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3시간 미만 58.2%




 초등학교	48.9%
중학교	57.1%
고등학교	68.5%
일반계고	74.3%
특성화계고	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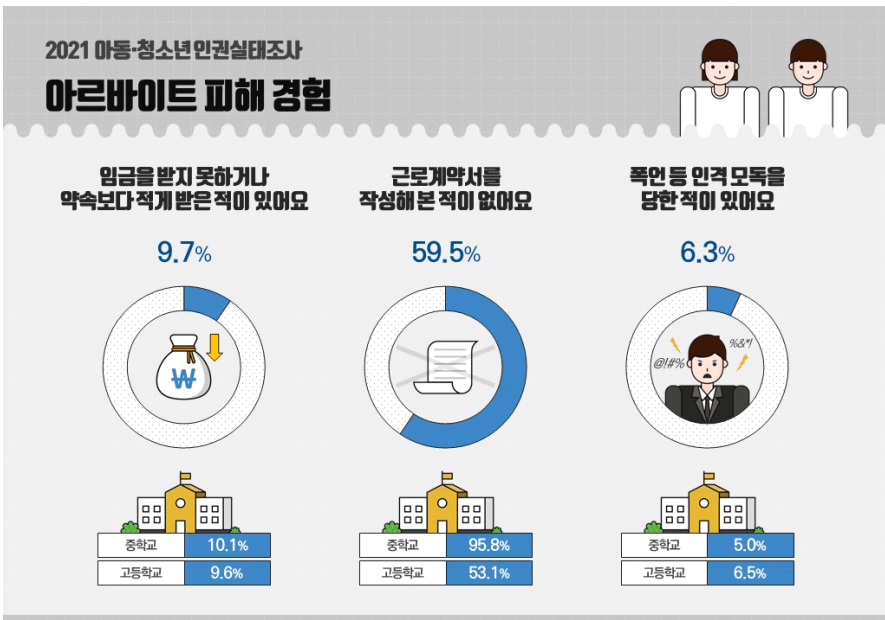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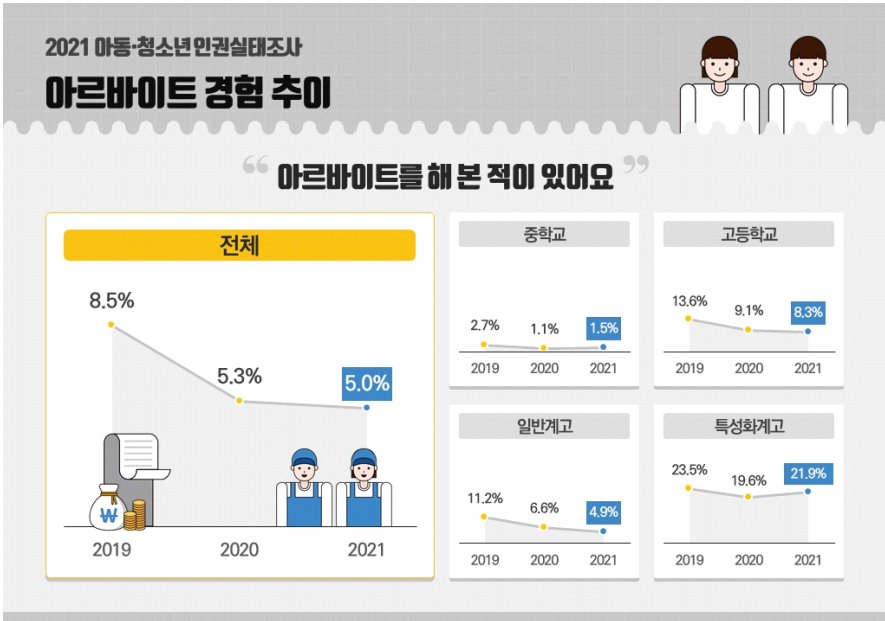
평일 하루 평균 공부시간

3시간 이상 40.4%



 초등학교	34.1%
중학교	44.0%
고등학교	43.3%
일반계고	50.4%
특성화계고	15.7%

○ 특별보호조치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21-R1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5
1) 연구내용	7
2) 연구방법	10
3. 연구의 체계도	12

II.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협약이행 동향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	17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및 국제 NGO 주요 동향	17
2) 시민단체의 아동권리협약이행 활동 동향	24
3) 아동권리보장원(아동권리 전담기구)의 아동인권사업 현황	34
4) 코로나19와 국내외 아동·청소년의 인권	42

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46
1) 유엔(UN) SDGs 및 K-SDGs 지표 개편 현황	47
2) SDGs 지표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연계 분석	51
3) 시사점	67
3. 2021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개선	70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구성	70
2) 2021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보완	75
3) 2021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76

Ⅲ.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분석 :

20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1. 조사개요 및 방법	85
2.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93
1) 인권일반	93
2) 일반원칙	134
3) 소결	141
3. 시민적 권리와 자유	144
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144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58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161
4) 사생활의 보호	163
5) 정보접근권	168
6) 소결	179
4. 폭력 및 학대	183
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183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200
3) 소결	217
5.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221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221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231

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247
4) 소결	254
6. 장애, 기초 보건과 복지	257
1) 장애	257
2) 생존 및 발달	260
3) 보건서비스	269
4) 신체적, 정서적 건강 증진	281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321
6) 소결	332
7.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340
1) 교육에의 권리	340
2) 교육의 목표	350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360
4) 소결	376
8. 특별보호조치	379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379
2) 소년 사법	394
3) 경제적 착취	407
4) 성적 착취	417
5) 소결	430

IV.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분석 :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성과와 과제

1. 협약 모니터링 개요	439
2.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451
3. 시민적 권리와 자유	457
4. 폭력 및 학대	462
5.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469
6.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474
7. 교육·여가 및 문화 활동	481
8. 특별보호조치	488

V. 정책 제언

1. 정책제언을 위한 논의 501
 - 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결과 시사점 502
 - 2) 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시사점 516
2.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523
 - 1)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총괄표 523
 - 2)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주요내용 526

참고문헌 545

부 록

1. 2021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
(초등용·중등용) 589
2.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별 소관 부처
(요약) 620
3.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별 소관 부처
(전체) 628

국문초록 665

Abstract 667

표 목차

표 I-2-1. 인권데이터 활용 심화분석보고서 발간 현황	9
표 I-2-2. 보고서 구성 개요	13
표 II-1-1. 2021년 일반 토론의 날의 구체적인 목표	20
표 II-1-2. 연도별 일반 토론의 날의 주제 목록	21
표 II-2-1. UN SDGs 및 K-SDGs 지표 개발 및 개편 현황	50
표 II-2-2. UNICEF 5대 아동권리영역에 포함되는 SDGs 지표 리스트	52
표 II-2-3. K-SDGs 지표 내 아동·청소년 지표 현황	54
표 II-2-4. K-SDGs 지표 체계 내 아동·청소년 지표 현황	56
표 II-2-5. UN SDGs 및 K-SDGs 지표 개발 및 개편 현황	58
표 II-2-6. UN SDGs와 K-SDGs 지표 연계 결과 1	60
표 II-2-7. UN SDGs와 K-SDGs 지표 연계 결과 2	62
표 II-2-8.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와 SDGs 아동·청소년 지표 연계 결과	65
표 II-2-9.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와 SDGs 아동·청소년 이외 지표 연계 결과	66
표 II-3-1.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체계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체계	71
표 II-3-2. 2021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수정내역	75
표 II-3-3. 정부부처 생산 지표 자료원 협력 현황(2021)	76
표 II-3-4. 2021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77
표 III-1-1. 조사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	87
표 III-1-2. 2021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조사항목	89
표 III-1-3. 2021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조사개요	92
표 III-2-1.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변화 추이 (2017~2021년)	100

표 Ⅲ-2-2.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1) 유엔(UN) 아동권리협약	101
표 Ⅲ-2-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2) 학생인권조례	102
표 Ⅲ-2-4.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3) 국가인권위원회	104
표 Ⅲ-2-5.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	106
표 Ⅲ-2-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	108
표 Ⅲ-2-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	110
표 Ⅲ-2-8.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112
표 Ⅲ-2-9. 인권의식 및 태도_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114
표 Ⅲ-2-10. 인권의식 및 태도_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116
표 Ⅲ-2-11. 인권의식 및 태도_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18
표 Ⅲ-2-12. 인권의식 및 태도_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119
표 Ⅲ-2-13. 인권의식 및 태도_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121
표 Ⅲ-2-14. 인권의식 및 태도_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122
표 Ⅲ-2-15. 인권의식 및 태도_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125
표 Ⅲ-2-1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실시 현황	127
표 Ⅲ-2-17. 인권교육 경험 여부	128
표 Ⅲ-2-18.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복수응답)	129
표 Ⅲ-2-19. 인권교육 목표별 도움 정도(교급별)	132
표 Ⅲ-2-20.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종합)	134
표 Ⅲ-2-21.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시범운영 현황(2019~2020년)	140
표 Ⅲ-3-1. 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의견 존중 정도)	144
표 Ⅲ-3-2.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	146
표 Ⅲ-3-3.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148
표 Ⅲ-3-4.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150

표 III-3-5. 제17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151
표 III-3-6.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2014~2020년)	153
표 III-3-7.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2011~2020년)	154
표 III-3-8.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여부	155
표 III-3-9.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	156
표 III-3-10. 아동·청소년 참여의 장애요인	158
표 III-3-11.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	159
표 III-3-12.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	160
표 III-3-13.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	162
표 III-3-14.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	164
표 III-3-15.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정도	166
표 III-3-16. 최근 1년간 매체별 이용률	168
표 III-3-17.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시간(2016~2020년)	169
표 III-3-18. 인터넷 이용 목적(2016~2020년)	170
표 III-3-19. 주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2016~2020년)	171
표 III-3-20. 스마트폰 과의존실태 및 주이용 콘텐츠	173
표 III-3-21. 일반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수(2012~2020년)	173
표 III-3-22. 학생 독서량(2011~2019년)	174
표 III-3-23.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2016~2020년)	175
표 III-3-24. 최근 1년간 이용 경로별 성인용 영상물 시청 경험	176
표 III-3-25. 매체이용 교육 경험(복수응답)	177
표 III-3-26. 매체이용 교육의 도움 정도	178
표 III-3-27. 디지털 사용 역량	179
표 III-4-1.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183
표 III-4-2. 체벌 경험여부_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	185
표 III-4-3.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186
표 III-4-4. 체벌 경험여부_교사로부터 신체적 벌(체벌)	187
표 III-4-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	189
표 III-4-6.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	193
표 III-4-7.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현황(2014~2019년)	195
표 III-4-8.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	196
표 III-4-9.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	197
표 III-4-10.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2019년)	200

표 III-4-11. 아동학대 신고접수 사례판단 결과(2019년)	201
표 III-4-12. 아동학대 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2019년)	202
표 III-4-13.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증가율	202
표 III-4-14.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03
표 III-4-15.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203
표 III-4-16.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204
표 III-4-17. 방임_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205
표 III-4-18. 방임_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 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207
표 III-4-19. 방임_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208
표 III-4-20. 방임_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210
표 III-4-21. 방임_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212
표 III-4-2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006~2019년)	213
표 III-4-23.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2015~2019년)	214
표 III-4-24.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2013~2019년)	214
표 III-4-25. 대상별 서비스 제공 실적	215
표 III-4-26. 학대 피해아동 보호 현황: 피해아동 상황(2015~2019년)	216
표 III-5-1. 연도별 및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2015~2020년)	222
표 III-5-2.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 현황(2015~2020년)	223
표 III-5-3. 방과후학교 참여 실태1)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2014~2019년)	225
표 III-5-4.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증가 및 이용 아동 현황·추이 (2008~2019년)	227
표 III-5-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 추이(2009~2020년)	229
표 III-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 만족도(2011~2020년)	229
표 III-5-7.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현황(2020년 6월 기준)	230
표 III-5-8. 국내·외 입양 현황 및 추이	232

표 III-5-9. 국내·외 입양인 지원사업 대상	234
표 III-5-10. 발생유형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2014~2020년)	236
표 III-5-11. 보호유형별 보호대상아동 현황(2014~2020년)	237
표 III-5-12.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아동현황(2013~2019년)	238
표 III-5-13.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1) 현황(2014~2019년)	238
표 III-5-14. 공동생활가정 시설 및 보호아동 수(2014~2019년)	239
표 III-5-15. 가출 여부	240
표 III-5-16. 가출한 주된 이유	241
표 III-5-17. 청소년쉼터의 종류 및 기능	242
표 III-5-18.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및 이용 현황(2010~2020년)	243
표 III-5-19. 가출 후 이용한 기관	244
표 III-5-20. 가출 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246
표 III-5-21. 2019년 평가지표 대비 2022년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비교	247
표 III-5-22.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배점	250
표 III-5-23. 아동생활시설 영역별 평가점수	251
표 III-6-1.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2015~2020년)	257
표 III-6-2.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2015~2020년)	258
표 III-6-3. 장애 청소년 졸업 후 상황(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259
표 III-6-4. 연도별 영아사망률(2015~2020년)	260
표 III-6-5.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2015~2020년)	261
표 III-6-6. 사고 사망률(2013~2020년)	262
표 III-6-7. 연도별 사고 사망의 외인(2013~2020년)	262
표 III-6-8.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1)(2017~2020년)	264
표 III-6-9.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266
표 III-6-10.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267
표 III-6-11. 보건교사 배치현황(2018~2020년)	269
표 III-6-12.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율(2013~2020년)	269
표 III-6-13.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 운영 현황	270
표 III-6-14.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	272
표 III-6-15. (연도별) Wee센터 및 Wee클래스, Wee스쿨 설치 현황	272

표 III-6-16.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273
표 III-6-17. 의료급여 대상 아동·청소년 현황(2018~2019년)	274
표 III-6-18. 아동·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2014~2019년)	275
표 III-6-19.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2014~2019년)	276
표 III-6-20. 흡연율 추이(2009~2020년)	278
표 III-6-21. 음주율 추이(2009~2020년)	279
표 III-6-22. 평생 약물 경험률(2016~2020년)	279
표 III-6-23.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2010~2018년)	280
표 III-6-24.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2010~2018년)	281
표 III-6-25.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282
표 III-6-26.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284
표 III-6-27. 수면 시간	286
표 III-6-28. 수면 부족 여부	287
표 III-6-29. 수면이 부족한 이유(1순위)	290
표 III-6-30. 수면이 부족한 이유(복수응답: 1+2순위)	292
표 III-6-31. 체질량지수 기준 비만율(2016~2020년)	295
표 III-6-32. 소아청소년 질환별 유병률	296
표 III-6-33. 자살 생각 여부	298
표 III-6-34. 자살 생각 이유	300
표 III-6-35. 우울_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302
표 III-6-36. 우울_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303
표 III-6-37. 우울_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305
표 III-6-38. 우울감의 배경변인별 차이	307
표 III-6-39. 행복한 정도	308
표 III-6-40. 행복하지 않은 이유	310
표 III-6-41. 삶의 만족도	312
표 III-6-42. 자아존중감_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15
표 III-6-43. 자아존중감_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316
표 III-6-44. 자아존중감_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318
표 III-6-45. 자아존중감의 배경변인별 차이	319
표 III-6-46. 고민거리 대화상대	321
표 III-6-47. 국가별 아동빈곤율	322
표 III-6-48. 아동빈곤율(2016~2019년)	325

표 III-6-4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2013~2020년)	325
표 III-6-50. 한부모가구 비율(2015~2019년)	327
표 III-6-51. 가구형태별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현황 (2016~2019년)	327
표 III-6-52. 취약계층 보호·양육시설 예산(2012~2021년)	328
표 III-6-5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2006~2020년)	329
표 III-6-54.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현황 및 이용 아동 수 (2007~2019년)	331
표 III-6-55. 디딤씨앗통장 저축 현황(2009~2019년)	332
표 III-7-1. OECD와 한국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교	341
표 III-7-2. 교원 1인당 학생 수(2011~2020년)	342
표 III-7-3. 학급당 학생 수(2011~2020년)	343
표 III-7-4.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국제비교	344
표 III-7-5.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45
표 III-7-6. 가구 소득수준별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345
표 III-7-7. 연도별 학업중단을 추이(2012~2020년)	346
표 III-7-8. 학업중단 생각 경험	347
표 III-7-9. 학업중단 생각 이유	349
표 III-7-10.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351
표 III-7-11.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352
표 III-7-12. 나는 수업 시간이 재밌다	353
표 III-7-13.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355
표 III-7-14. 학교 진로활동 참여 현황 및 만족도	357
표 III-7-15. 15~29세 청년 직업교육(훈련) 경험(2018~2021년)	358
표 III-7-16.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2017~2019년)	359
표 III-7-17. 직업계고 졸업자 졸업 후 상황(2020년)	359
표 III-7-18.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360
표 III-7-19. 전국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361
표 III-7-20.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2013~2020년)	362
표 III-7-21. 전국 공공체육시설 연도별 현황(2010~2019년)	363
표 III-7-22.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1) 공공도서관	364
표 III-7-23.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365

표 III-7-24.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366
표 III-7-25.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368
표 III-7-26. 이용해 본 시설에 대한 만족도	370
표 III-7-27. 지속적으로 하는 여가활동의 유형(복수응답)	371
표 III-7-28. 일일 여가활동 시간과 여가활동 시간 중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	372
표 III-7-29. 평일 여가시간	374
표 III-7-30. 평일 학습 시간	376
표 III-8-1. 아동·청소년 난민 현황	381
표 III-8-2.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	382
표 III-8-3.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2017~2019년)	383
표 III-8-4.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383
표 III-8-5.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2018~2020년)	384
표 III-8-6.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2011~2020년)	385
표 III-8-7.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2010~2020년)	386
표 III-8-8.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2013~2019년)	386
표 III-8-9.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2008~2020년)	387
표 III-8-10.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난 1년간 사회적 차별 경험	388
표 III-8-11. 지난 1년간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한 사람	389
표 III-8-12.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차별 경험(2017~2020년)	390
표 III-8-13. 이주아동 구금 현황(2015~2020년)	391
표 III-8-14.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시설 인지율(복수응답)	392
표 III-8-15. 다문화가족 자녀의 시설 이용률(복수응답)	393
표 III-8-16.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2011~2020년)	395
표 III-8-17. 연도별 소년원 수용기간별 인원(2009~2019년)	396
표 III-8-18. 청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2015~2019년)	397
표 III-8-19.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2016~2020년)	398
표 III-8-20. 소년수형자 징역형 형기별 인원 현황(2015~2019년)	399
표 III-8-21.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조력 횟수(2011~2020년)	400
표 III-8-22. 전국 소년분류심사원 연도별 수용 현황(2015~2019년)	401
표 III-8-23. 전국 소년원 연도별 수용 현황(2015~2019년)	402
표 III-8-24. 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현황(2014~2020년)	403

표 III-8-25. 소년보호 항고·재항고 사건 수	404
표 III-8-26.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비율(2015~2019년)	404
표 III-8-27. 청소년 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 인원 (2015~2019년)	405
표 III-8-28. 청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 인원(2015~2019년)	405
표 III-8-29.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현황(2015~2019년)	406
표 III-8-30.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2015~2019년)	407
표 III-8-31. 월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2010~2019년)	408
표 III-8-32.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2017~2020년)	410
표 III-8-33. 청소년 실업률 추이(2000~2021년)	411
표 III-8-34.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413
표 III-8-35.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	415
표 III-8-36.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과 도움정도	417
표 III-8-37.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2012~2019년)	418
표 III-8-38.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주요 유형	419
표 III-8-39.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2015~2020년)	422
표 III-8-40. 성폭력·성착취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423
표 III-8-41.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실적(2013~2020년)	425
표 III-8-42. 성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426
표 III-8-43.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 현황(2015~2020년)	427
표 III-8-44.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내용(2015~2020년)	428
표 III-8-45. 성매매 피해자 지원 현황(2015~2020년)	429
표 III-8-46.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 (2014~2019년)	430
표 IV-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 과정	441
표 IV-1-2.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443
표 V-2-1. 아동·청소년인권 정책과제 총괄표	523

그림 목차

그림 Ⅰ-2-1. 연도별 추진계획	6
그림 Ⅰ-3-1. 연구의 체계도	12
그림 Ⅱ-2-1. SDGs 아동청소년 지표와 UNICEF 5대 아동권리영역 간 연계도	55
그림 Ⅱ-2-2. UN SDGs 와 K-SDGs 지표 연계 모형	59
그림 Ⅲ-1-1. 표본추출 방법	92
그림 Ⅲ-2-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1) 유엔(UN) 아동권리협약 (연도별 추이)	101
그림 Ⅲ-2-2.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2) 학생인권조례 (연도별 추이)	103
그림 Ⅲ-2-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3) 국가인권위원회 (연도별 추이)	104
그림 Ⅲ-2-4.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전체 영역)	105
그림 Ⅲ-2-5.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_전체 영역(연도별 추이)	105
그림 Ⅲ-2-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연도별 추이)	107
그림 Ⅲ-2-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연도별 추이)	109
그림 Ⅲ-2-8.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연도별 추이)	110
그림 Ⅲ-2-9.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 아동·청소년과 성인 비교	111
그림 Ⅲ-2-10.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연도별 추이)	113
그림 Ⅲ-2-11. 인권의식 및 태도_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비동의(연도별 추이)	114

그림 Ⅲ-2-12.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아동·청소년과 성인 비교	115
그림 Ⅲ-2-13. 인권의식 및 태도_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연도별 추이)	116
그림 Ⅲ-2-14.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과 성인 비교	117
그림 Ⅲ-2-15. 인권의식 및 태도_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연도별 추이)	118
그림 Ⅲ-2-16. 인권의식 및 태도_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연도별 추이)	120
그림 Ⅲ-2-17. 인권의식 및 태도_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연도별 추이)	121
그림 Ⅲ-2-18. 인권의식 및 태도_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학교급별)(연도별 추이)	123
그림 Ⅲ-2-19. 인권의식 및 태도_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성별)(연도별 추이)	123
그림 Ⅲ-2-20. 인권의식 및 태도_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연도별 추이)	125
그림 Ⅲ-2-21. 인권의식 및 태도_전체	126
그림 Ⅲ-2-22. 인권교육 경험(연도별 추이)	128
그림 Ⅲ-2-23.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복수응답)(연도별 추이)	130
그림 Ⅲ-2-24. 인권교육 경험 및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 아동·청소년과 성인 비교	131
그림 Ⅲ-2-25. 인권교육 목표별 도움 정도(연도별 추이)	133
그림 Ⅲ-2-26.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1년에 1회 이상)	135
그림 Ⅲ-2-27. 차별 경험(연도별 추이)	137
그림 Ⅲ-2-28. 차별받은 경험: 아동·청소년과 성인 비교	138
그림 Ⅲ-3-1. 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의견 존중 정도)(연도별 추이)	145

그림 Ⅲ-3-2.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연도별 추이) …	147
그림 Ⅲ-3-3.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연도별 추이) ……	149
그림 Ⅲ-3-4.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연도별 추이) ……	150
그림 Ⅲ-3-5.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연도별 추이) ……	155
그림 Ⅲ-3-6.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연도별 추이) ……	157
그림 Ⅲ-3-7. 아동·청소년 참여의 장애요인(연도별 추이) ……	158
그림 Ⅲ-3-8.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연도별 추이) ……	159
그림 Ⅲ-3-9.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연도별 추이) ……	161
그림 Ⅲ-3-10.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연도별 추이) ……	162
그림 Ⅲ-3-11.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 (연도별 추이) ……	163
그림 Ⅲ-3-12.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연도별 추이) ……	165
그림 Ⅲ-3-13.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정도(연도별 추이) ……	167
그림 Ⅲ-4-1.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연도별 추이) ……	184
그림 Ⅲ-4-2. 체벌 경험여부_부모님(보호자)로부터 신체적 벌 (연도별 추이) ……	185
그림 Ⅲ-4-3.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연도별 추이) ……	186
그림 Ⅲ-4-4. 체벌 경험여부_교사로부터 신체적 벌(연도별 추이) ……	188
그림 Ⅲ-4-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	191
그림 Ⅲ-4-6.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	194
그림 Ⅲ-4-7.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	197
그림 Ⅲ-4-8.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연도별 추이) ……	199
그림 Ⅲ-4-9. 최근 1년간 1회 이상 경험한 방임유형별 비율 ……	205
그림 Ⅲ-4-10. 방임_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 없는 집에 있었던 경험(연도별 추이) ……	206
그림 Ⅲ-4-11. 방임_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 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	208
그림 Ⅲ-4-12. 방임_3)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다(연도별 추이) ……	209
그림 Ⅲ-4-13. 방임_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연도별 추이) ……	211

그림 III-4-14. 방임_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연도별 추이)	212
그림 III-4-15. 학대 피해아동 보호 현황: 피해아동 최종 조치 결과 (연도별 추이)	216
그림 III-5-1. 부모와의 관계만족도(13~19세) 연도별 추이	221
그림 III-5-2. 방과후학교 교급별 만족도(2014~2019년)	226
그림 III-5-3.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연도별 추이)	228
그림 III-5-4. 다함께돌봄 이용자 만족도	231
그림 III-5-5. 연도별 국내·외 입양 아동 수	232
그림 III-5-6. 발생유형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 추이(2011~2020년)	235
그림 III-5-7. 가출 여부: 학교급별(연도별 추이)	240
그림 III-5-8. 가출한 주된 이유(연도별 추이)	241
그림 III-5-9. 가출 후 청소년관련 기관 이용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245
그림 III-5-10. 가출 후 이용한 기관: 전체(연도별 추이)	245
그림 III-5-11. 가출 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연도별 추이)	246
그림 III-5-12. 아동보호서비스의 절차	252
그림 III-5-13. 아동보호 전담인력별 주요역할	253
그림 III-6-1.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연도별 추이)	267
그림 III-6-2.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연도별 추이)	268
그림 III-6-3.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연도별 추이)	283
그림 III-6-4.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학교급별)	283
그림 III-6-5.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연도별 추이)	285
그림 III-6-6. 수면 시간(연도별 추이)	287
그림 III-6-7. 수면 부족 여부(연도별 추이)	288
그림 III-6-8. 수면이 부족한 이유(전체, 성별)	289
그림 III-6-9. 수면이 부족한 이유(1순위): 연도별 추이(기타 값 제외)	291
그림 III-6-10. 비만도 현황(연도별 추이)	294
그림 III-6-11. 인구 십만명 당 10~19세 자살률	297
그림 III-6-12. 자살 생각 여부	297
그림 III-6-13. 자살 생각 여부(연도별 추이)	299

그림 Ⅲ-6-14. 우울정도 항목별 조사결과	301
그림 Ⅲ-6-15. 우울_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303
그림 Ⅲ-6-16. 우울_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304
그림 Ⅲ-6-17. 우울_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연도별 추이)	306
그림 Ⅲ-6-18. 행복한 정도(연도별 추이)	309
그림 Ⅲ-6-19. 행복하지 않은 이유(연도별 추이: 전체, 학교급)	311
그림 Ⅲ-6-20. 삶의 만족도(연도별 추이: 성별)	312
그림 Ⅲ-6-21. 삶의 만족도(연도별 추이)	313
그림 Ⅲ-6-22. 자아존중감 항목별 조사결과	314
그림 Ⅲ-6-23. 자아존중감_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연도별 추이)	315
그림 Ⅲ-6-24. 자아존중감_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연도별 추이)	317
그림 Ⅲ-6-25. 자아존중감_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연도별 추이)	319
그림 Ⅲ-6-26. 아동빈곤율 국가 간 비교(2018년 기준)	322
그림 Ⅲ-6-27. GDP 대비 공적 가족지출 비중 국가 간 비교 (2018년 기준)	323
그림 Ⅲ-6-28. 국가별 아동빈곤율과 가족지출 간의 관계	324
그림 Ⅲ-6-29. 디딤씨앗통장 가입자 및 월평균 적립액 추이	331
그림 Ⅲ-7-1. 학업중단 생각 경험(연도별 추이)	348
그림 Ⅲ-7-2. 학업중단 생각 이유(1순위) : 연도별 추이(%)	350
그림 Ⅲ-7-3.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351
그림 Ⅲ-7-4.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연도별 추이)	352
그림 Ⅲ-7-5. 나는 수업 시간이 재밌다(연도별 추이)	354
그림 Ⅲ-7-6.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연도별 추이)	356
그림 Ⅲ-7-7.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1) 공공도서관 (연도별 추이)	364
그림 Ⅲ-7-8.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2) 청소년수련시설 (연도별 추이)	366
그림 Ⅲ-7-9.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3) 체육시설(연도별 추이)	367
그림 Ⅲ-7-10.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4) 문화 예술 공간 (연도별 추이)	369

그림 Ⅲ-7-11. 이용해 본 시설에 대한 만족도(연도별 추이)	370
그림 Ⅲ-7-12. 평일 여가시간(연도별 추이)	374
그림 Ⅲ-7-13. 평일 학습 시간(연도별 추이)	376
그림 Ⅲ-8-1.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381
그림 Ⅲ-8-2.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시설 인지율과 이용률의 비교 (복수응답)	394
그림 Ⅲ-8-3.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2011~2020년)	395
그림 Ⅲ-8-4.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409
그림 Ⅲ-8-5. 고용된 청소년(15~24세) 중 파트타임 비율: 국제비교 (2014/2019)	412
그림 Ⅲ-8-6.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413
그림 Ⅲ-8-7. 아르바이트시 청소년의 주요 부당처우 경험률	414
그림 Ⅲ-8-8.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연도별 추이)	416
그림 Ⅳ-1-1. 협약이행 분석 전문가협의회 구성·운영	440

○ — 제 I 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3. 연구의 체계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만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 한국정부는 1991년 11월 20일에 이를 비준하여 올해로 협약 비준 30주년을 맞았다. 정부는 협약 당사국으로서 아동권리협약 제4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권리 실현을 위해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협약 제44조에 따라 5년마다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조치와 진전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UN, 1989). 대한민국은 협약 비준 이후 네 차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엔 심의를 받았으며(1차 1996년, 2차 2003년, 3·4차 2011년, 5·6차 2019년), 2024년 12월 19일까지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제도와 정책 개선을 촉진시킴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 신장에 기여해왔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아동수당 및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도입,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입양허가제 도입, 아동학대 범죄 관련 법률 제정과 공적 대응체계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권리위원회와 전담부서 마련 등부터 제5·6차 심의 이후에는 성매수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개념 도입,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 기준 상향, 아동 놀 권리 정책 강화, 민법 제915조 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 출생통보제도

1) 이 장은 김영지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도입 논의,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논의 시작 등 여러 부문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돌봄공백과 위기가동·청소년 문제, 계속되는 아동학대사건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와 입양제도 개선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이 민간부문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도구이자 추동력으로, 그리고 정부의 정책개발 가이드라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사회 전반에 아동·청소년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정책·제도적 개선을 활성화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²⁾,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협약이행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되어 이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차, 2차, 3·4차 심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파악과 인권 진전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본 연구원에서는 2006년부터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개발을 통해 인권실태 파악과 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부터는 협약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법, 제도, 정책의 개선 노력 점검 등 아동권리협약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에도 기여하고 있다.³⁾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권리협약이행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수준과 진전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인권 신장

2) 2020년도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노력정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2.4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협약이행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김영지, 황세영, 최홍일, 이민희, 김진호, 2020: 61).

3) 2003년 제2차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권리협약이행점검을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정부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민간위탁형태로 아동권리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독립적 조사권한을 가진 모니터링 기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아동권리모니터링사업은 2015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었고 정부 내 상시 협약모니터링 사업은 중단되었다. 아동권리 관련 사안은 여러 부처 정책과 관련되므로(예를 들어 제5·6차 권고사항 소관 부처는 25개) 정부 내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상시적인 협약이행 조정 및 점검을 해나가는 것도 동시에 필요함에도 그 역할이 부재한 상황이다. 다행히 2019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아동권리 전담기구 기능을 갖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으로 행정부 내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반복 횡단조사를 통해 인권실태 변화추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⁴⁾ 이를 공개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연구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협약이행 성과 점검을 통해 정부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 대응과 정책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의 연도별 추진과정은 아래와 같으며 올해는 5차년도에 해당하는 연구 내용을 수행한다.

연도	주요 내용
1차년도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리협약이행 연구를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연구 추진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주무부처와의 협업 시스템 구축 ○ 아동권리협약이행 상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인권실태결과 생산 - ② 협약이행 관련 법, 제도, 정책 개선 현황 모니터링 ○ 협약부처와의 협업사항(안) : 제5·6차 협약 국가보고서 작업 연계·지원(협약 작업집단 협업) <hr style="border-top: 1px dotte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사회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유엔 제출 (제출기한 2017.6.19. 제출 2017.12.27) - 제4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국제규약 심의(9월) - 제3기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보고서 제출(8월), 심의(11월) : 아동 - 제3차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실시(여성가족부, 3년 주기)
2차년도 (2018년)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5px;">↓</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리협약이행 상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인권실태결과 생산 - ② 협약이행 관련 법, 제도, 정책 개선 현황 모니터링 ※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사회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6차 CRC 민간단체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2009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공표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 탑재된다(승인통계 제402001호).

	<p>아동보고서 등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차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 심의(2018.2) : 여성아동 이슈 -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추진 : 아동·청소년분야 - 제3차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보건복지부, 5년 주기) - 제17·18차 인종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 심의(2018.12) : 이주아동, 출생등록 이슈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수립·시행
3차년도 (2019년)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리협약이행 상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인권실태결과 생산 - ② 협약이행 관련 법, 제도, 정책 개선 현황 모니터링 ○ 협약부처와의 협업사항 : 제5·6차 국가보고서 쟁점목록(List of issues)에 대한 추가보고서 작업 (협약 국가보고서 작업집단 및 주무부처 협업) ※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사회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추가 국가보고서(유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제출, 유엔 본심의(9월) 및 권고사항 공표(10월) - 제2·3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병합 국가보고서 제출 : 장애아동 이슈 -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 종료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 - 포용적 아동정책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아동정책영향평가(아동복지법 11조의2) 시행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 생산 시작(통계청 승인통계)
4차년도 (2020년)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리협약이행 상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인권실태결과 생산 - ② 협약이행 관련 법, 제도, 정책 개선 현황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클러스터별 이행 상황 모니터링(상시) · 2020 심층 모니터링 : 학생인권상담·구제기구 현황 ※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사회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 시행 - 제4차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실시(여성가족부, 3년 주기) -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보고 전 질의목록' 유엔 채택 (2019. 7), 국가보고서 제출(2020. 5) - 제6차 고문방지협약 사전 쟁점목록 유엔 채택(2020. 7)
5차년도 (2021년)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리협약이행 상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인권실태결과 생산 - ② 협약이행 관련 법, 제도, 정책 개선 현황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클러스터별 이행 상황 모니터링(상시) ※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사회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 (대한민국 비준일 : 1991.11.20.)

그림 1-2-1. 연도별 추진계획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아동권리협약이행 모니터링은 크게 설문조사와 행정통계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현황 모니터링과 유엔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의 법·제도·정책 등의 이행상황 모니터링으로 구성된다. 협약이행 모니터링의 두 영역은 법·제도, 정책 등의 분야에서 정부의 개선 노력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도 하면서 인권 진전상황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시사 하면서 동시에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로 작동하고 있다(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김진호, 2019: 16).

1) 연구내용

(1) 아동권리협약이행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아동권리협약이행 모니터링 방향 설정,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개선,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개발 시사점을 얻기 위해 관련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았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협약 심의 동향, 일반논평과 일반토론의 날 자료와 국제연구 주제 및 아동분야 국제 NGO 동향, SDGs 지표와 K-SDGs 지표 개편 동향, 시민사회의 아동권리협약이행 관련 이슈와 현황, 아동권리 전담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인권사업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최근 인권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 이슈와 관련하여 국내외 아동·청소년 인권과 코로나19 동향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별 심의일정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개선

아동·청소년 인권 환경 변화 및 국제적 인권동향 파악에 따라 매년 지표체계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2020년에 인권 이슈 논의가 많았던 특별보호조치

영역을 대폭 개편하였고 2021년에는 개편 이후 지표 항목 결과 생산에 필요한 가용 자료원 발굴 및 관련 부처 행정통계 협조체제를 통해 자료를 구성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기본틀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 국가 보고서 작성기준(Treaty-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CRC/C/58/Rev.3)의 인권영역 구분에 기반하고 있으며, 유엔최고대표사무소의 일반논평 등 아동인권 이행사항과 인권지표(Human Rights Indicators, SPO(구조, 과정, 성과)지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지표(SDGs) 등을 고려하고 가용 자료원의 발굴 상황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타당도가 높은 지표자료원을 발굴하고 각 지표영역별로 ‘대분류-중분류-지표(소분류)-지표 항목’ 체계화, 지표명칭의 명료화, KOSIS 통계표명 정비 작업도 진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생산 : 인권실태조사 및 행정통계 활용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115개 지표 항목 중 42개 지표결과에 활용되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9,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상황 변화를 파악하고 시계열 데이터를 축적한다(통계청 승인통계 제402001호). 행정통계 및 타 통계자료원을 통해 생산하는 73개 지표 또한 가용 승인통계와 정부부처 생산자료를 중심으로 활용한다. 더불어 인권연구의 사회적 확산과 데이터의 이론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인권 관련 영향요인과 인과관계 등을 탐색하는 심화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학생의 인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문화 및 환경요인 탐색’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였다.⁵⁾

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데이터 활용 논문 현황은 기초분석보고서(연구보고 21-R10-2) 부록 6. 참고

표 | -2-1. 인권데이터 활용 심화분석보고서 발간 현황

번호	논문제목	발간년도
1	청소년의 참여권 인식수준 결정요인	2013
2	고등학생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13
3	청소년 인권 의식에 관한 구조 분석	2014
4	청소년 인권의식과 시민적 권리의 경험에 대한 관련 요인 분석	2015
5	학교 인권 관련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6
6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관련 정보접근성과 인권의식	2017
7	청소년의 폭력피해 및 인권존중 경험 유형 및 특성 연구	2019
8	학생인권조례 시행이 학교의 인권환경 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0
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데이터 활용 연구동향 분석	2020

(4) 제5·6차 아동권리협약이행 모니터링 수행

2019년 10월 공표된 제5·6차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현황과 성과 모니터링을 위해 협약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독립 모니터링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정보 공유와 논의를 통해 효과적인 협약 모니터링 방향과 범위를 검토하였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제5·6차 국가보고서 작성과 심의 지원 작업과 병행하여 협약 전체 클러스터에 대해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으며, 2020년에는 권고사항 발표 직후로 정책 추진 기간이 길지 않았으므로 전체 협약영역 이행상황을 개괄하고 학생인권조례 10년을 맞은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인권상담·구제시스템’ 주제의 심화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2021년에는 정책추진 성과가 축적될 수 있는 제5·6차 유엔권고 2년째 해이므로 광범위한 전문가 의견조사와 국가보고서 작업집단 참여 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약점검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권고사항의 주요 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협약영역별 포괄적 정책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5)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제안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인권 실태 현황과 변화추이 파악 및 제5·6차 아동권리협약이행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전문가협의회,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워크숍 및 청소년 워크숍, 협약이행 성과 점검 전문가 의견조사, 관련부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2021년도 협약이행 제안과제를 도출하였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아동권리협약이행 모니터링 관련 국내·외 동향,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지표 현황, 아동·청소년 인권 동향과 이슈, 인권 관련 법·제도 및 정책현황 자료, 부처별 업무계획과 보도자료, 각종 행정통계 및 타 분야 통계자료원 등을 수집·분석하고 연구에 활용하였다.

(2)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의견조사

인권지표체계 검토 및 조사도구 보완 관련 자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만족도 조사(승인통계 자체평가) 및 발전방안 모색, 아동권리협약이행 모니터링 관련 소관 부처별 이행 성과 분석,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과제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진전노력 정도 모니터링을 위해 27명의 현장 및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권고사항별로 협약이행노력 정도를 5점 척도로 점수를 기재하도록 하고 그 근거를 물어봄으로써 정부의 협약이행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설문조사⁶⁾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115개 지표 항목 중에 42개는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설문조사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고등학교 1~3학년 등 총 9,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설문지는 초등용, 중등용 등 총 2종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존에는 조사원 학교 방문조사로 실시되었던 것에서 2020년부터는 우편조사가 병행되고 있다. 2021년도 총 표본사례 수는 8,718명이었으며 조사실시 기간은 6~8월이다. 설문지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기반하여 인권 영역별로 인권실태와 의식 등을 물어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전문가협의회, 전문가 워크숍,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아동권리협약 영역별로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 제5·6차 국가보고서 작업집단 활동을 한 전문가로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4차에 걸쳐 협의회를 진행하여 권고사항별로 이행 성과를 점검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와 학계 및 현장 워크숍, 청소년워크숍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 이슈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청취하여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하였다.

정부부처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아동권리협약이행상황 점검 및 협약 이행 과제 설정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인권실태 통계자료원으로 활용 가능한 부처 행정자료를 발굴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다. 상반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9월 말)에는 코로나19로 온라인 회의로 개최되었으며 교육부, 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여 협약이행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6) 실태조사 관련 세부내용은 Ⅲ장 1절 참조

3. 연구의 체계도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모니터링’이라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연구내용인 ‘인권지표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모니터링’ 및 ‘협약이행을 위한 법·제도·정책 모니터링’ 과정과 주요 성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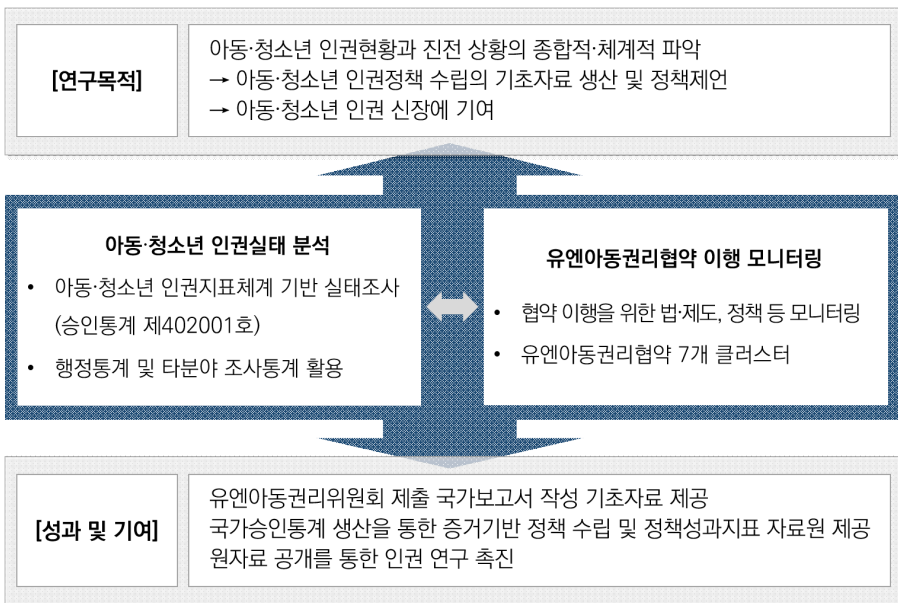


그림 1-3-1. 연구의 체계도

본 연구의 결과물은 총괄보고서, 심화분석보고서, 기초분석보고서 등 총 3종으로 발간되는데 각 보고서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2-2. 보고서 구성 개요

구분	개요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21-R10)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 결과를 담은 기본보고서
심화분석보고서 (연구보고 21-R10-1)	인권 관련 영향요인이나 인과관계 등을 심화분석하여 인권연구의 사회적 확산과 데이터의 이론적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발간하는 소논문 ※ 인권데이터는 본원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 통계청 MDIS,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등에서 제공
기초분석보고서 (연구보고 21-R10-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승인통계 402001호) 기초통계자료와 인권지표체계 관련 기본 관리자료 모음집(통계청 KOSIS 탑재 기초통계표, 문항별 시계열 추이그래프, 인권지표 및 설문문항 변경 이력 등)

○ ————— 제2장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협약이행 동향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
- 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 3. 2021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개선

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및 국제 NGO 주요 동향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 위원회의 이전 권고사항 이행 정도가 담겨있는 국가별 보고서(정부 및 민간 보고서) 심의를 통해 해당 국가의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함께 모색한 후, 권고사항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아동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아동 권리 보호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당사국 및 국제사회 단위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2020년 3월, 사모아에서 진행된 84회차 특별회기를 마지막으로, 그동안 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회는 제한된 구성원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심의회로 변경되었다. 또한, 제한된 온라인 심의회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국가별 보고서 심의가 85회기부터 2~3회기 정도 지연되기도 하였다. 코로나19가 점차 심화되면서 아동 인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을 해결하고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

7) 2장의 1절 1)과 4)는 유설희 전문연구원이, 2)는 국제아동인권센터 김희진 전 사무국장이, 3)은 아동권리보장원 노하나 부장이 집필하였고, 2절은 통계개발원 박영실 사무관이, 3절은 김영지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1년 새롭게 시작한 제86차 온라인 제한 세션은 1월 18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되었는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키프로스, 에스와티니, 체코, 튀니지 등 당사국의 보고서 검토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국가별 보고서 검토는 연기되었지만 위원회는 보고 이전에 문제 목록에 대한 작업을 계속 진행하였다고 보고하였고, 회기 동안에 24회의 모임을 개최하면서 주로 개인 청원절차에 대한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on individual communications)에 대해 핀란드, 덴마크, 스페인에 대한 4가지 결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는 등 13가지의 결정을 받아들였으며, 일반 논평 25호(the rights of children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를 채택하였다고 밝혔다(OHCHR, 2020.2.4.).

87회차 온라인 심의에서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룩셈부르크(5월 19~21일)와 튀니지(5월 26~28일)의 국가 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새로운 위원장(Mikiko Otani(일본 출신))과 사무국도 선출하였다. 새롭게 구성된 아동권리위원회 구성원들은 코로나19가 건강과 사회 보호,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지속적으로 제한하여 더 많은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 문제를 야기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에게 더욱 불균형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또한, 대면 회의가 중단됨으로 인해 회의 일정이 손실되었고, 제한된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는 2개 이상의 당사국 보고서를 검토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위원회에서는 아동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아동 결혼, 소년병, 아동과 기후변화를 위주로 하여 아동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것임을 보고하였다(OHCHR, 2021.5.17.). 87회차 온라인 심의 말미에 위원회는 당사국과 외부 전문가, 이해 당사자, 특히 수백 명의 아동과 협의를 통해 ‘기후 변화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환경과 아동권리’를 주제로 26호 일반 논평을 작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위원회의 노력은 환경 문제와 지구 기후 위기에 대해 전세계적 차원의 변화를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며, 아동과 청소년

년과 옹호자들이 정부 및 기타 관련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9월 6일부터 24일까지 88회차 온라인 심의가 진행되어 위원회는 체코와 에스와티니, 폴란드, 스위스의 국가보고서를 검토하였다. 각국의 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 이행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먼저, 체코는 성매매와 음란물에 착취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으며, 특히, 온라인과 관광 부문에서 아동의 성착취와 학대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장애가 있는 아동이 시설에서 수용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설화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지역사회 및 가족을 기반으로 돌봄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국가 정책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음으로, 에스와티니의 조혼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관련 법 개정 및 조혼을 근절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고, 높은 조기 임신 비율을 해결하기 위해 여자 아동에게 가족 계획 교육, 피임약 및 안전한 낙태에 접근하도록 제공하고, 학교에서 포괄적인 성과 출산, 건강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촉구하였다. 폴란드의 경우, 아동에 대한 체벌과 가정 폭력이 지속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여, 아동이 당국에 폭력과 학대를 신고하기 위한 비밀이 보장되는 아동 친화적인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스위스에 대해서는 교육 및 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불리한 상황에 있는 아동이 사실상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난민 및 망명 신청과 이주 아동, 장애 아동, LGBTI(성소수자) 아동 및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등의 차별을 철폐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스위스의 망명 절차가 아동의 권리를 준수함으로써 이송과 구금 또는 추방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권고하였다(OHCHR, 2021.9.30.).

89회차 심의회는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크로아티아와 쿠바, 키프로스, 지부티, 그리스, 키리바시, 마다가스카르, 네덜란드 및 소말리아의 국가보고서를 검토할 예정임을 보고하였다.

한편, 2020년 9월 18일에 계획되었던 ‘아동 권리 및 대안 돌봄’을 주제로 한 일반 토론의 날(General Discussion Days)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이동의 제한과 건강 보호,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2021년 9월 16~17일로 연기되었다(〈표 II-1-1〉). 1992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진행되었던 일반 토론의 날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61차 회의에서 격년으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일반 토론의 날의 목적은 특정 조항 또는 주제와 관련하여 협약의 내용과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에 있다(〈표 II-1-2〉). 이러한 토론에는 정부 대표, 비정부기구, 유엔 인권 기구, 유엔 기구 및 전문 기관, 국가 인권 기관, 비즈니스 부문, 개별 전문가 및 아동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표 II-1-1. 2021년 일반 토론의 날의 구체적인 목표

2021년 일반 토론의 날의 구체적인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모든 유형의 대안양육 체계에서 생활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의미있는 참여를 만들어 양질의 보호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입법 및 체계적 변화를 옹호할 수 있음. 2. 돌봄의 피해와 돌봄 중인 아동의 학대를 인정하고 예방, 개입 및 정리에 대한 접근, 책임 및 적절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탐색함. 3. 코로나19 대유행이 아동 돌봄 및 대안양육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훈을 얻고자 함. 여기에는 대안양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개혁하려는 노력이 포함되며, 미래의 공공 보건과 사회 및 환경적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준비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시함. 4. 가족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향상된 예방 및 게이트키퍼 정책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안양육 환경에 있는 아동 수를 줄이는 것과 관련된 우수사례를 통해 배우고자 함. 5. 이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의미있는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관점에서 대안양육 선택에 대한 증거와 양질의 대안양육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부터 배우고자 함. 6. 완전히 통합된 아동 보호 체계의 개발 또는 강화를 위한 노력을 탐구함. 7. 인도주의적 맥락 및 이주와 같이 특히 취약한 상황에서 아동을 위한 대안양육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탐색하고, 기존의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 학습함.

* 출처: OHCHR(2021b). Day of General Discussion: "Children's Rights and Alternative Care" 16-17 September 2021. Retrieved June 1, 2021, from [https://www.ohchr.org/EN/HRBodies/CRC/Pages/Discussion 2020.aspx](https://www.ohchr.org/EN/HRBodies/CRC/Pages/Discussion%2020.aspx).

24번째로 개최되는 일반 토론의 날에 참여를 원하는 성인이나 아동 등 모든 이해 관계자는 아동권리위원회에 2021년 6월 14일까지 2,500단어 내외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위원회에서는 토론회에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인 가이드라인 자료도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의 경우 서면 제출 이외에도 비디오나 오디오 녹음, 사진이나 그림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제출물도 허용하고 있다.

2021년에 9월 16~17일 동안 진행된 일반 토론의 날은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열리는 제88차 위원회 회의에서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주로 대안양육 체계에서 아동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평등한 돌봄은 왜 중요한지, 가족으로부터 아동이 분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동의 권리가 왜 중요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진행되었던 토론회 영상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홈페이지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II-1-2. 연도별 일반 토론의 날의 주제 목록

연도	일반 토론의 날 주제	연도	일반 토론의 날 주제
1992	Children in armed conflict	2003	The rights of indigenous children
1993	Economic exploitation	2004	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
1994	Role of the family	2005	Children without parental care
1995	Juvenile justice	2006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
1995	The girl child	2007	Resources for the Rights of the Child - Responsibility of States
1996	The child and the media	2008	The right of the child to education in emergency situations
1997	Children with disabilities	2011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1998	HIV/AIDS	2012	The rights of all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1999	10th Anniversary: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2014	Digital media and children's rights
2000	State violence against children	2016	Children's Rights and the Environment
2001	Violence against children within the family and in school	2018	Protecting and Empowering Children as Human Rights Defenders
2002	The private sector as a service provider	2021	Children's rights and alternative care

* 출처: OHCHR(2021a). Day of General Discussion. Retrieved June 3, 2021, from <https://www.ohchr.org/EN/HRBodies/CRC/Pages/DiscussionDays.aspx>

8) <https://www.ohchr.org/EN/HRBodies/CRC/Pages/Discussion2020.aspx>에서 2021년 6월 1일 인출.

한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며 아동권리협약이행 촉진을 통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단체인 Child Rights Connect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아동권리 관련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Child Rights Connect는 스위스 제네바에 기반을 둔 NGO로, 1983년에 유엔 아동권리협약 초안 작성을 위해 설립된 이후로 UN의 인권 시스템이 아동의 권리가 일상에서 실현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특별한 협력 관계를 맺음으로써 유엔에서 ECOSOC 자문 지위를 가지고 있어 유엔 심의에 참여하여 국제적인 수준에서 아동 권리 개발을 위한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Child Rights Connect에서는 전세계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국내외 NGO, UN 기관 및 전문가, 정부와 아동 등이 포함된 국가 및 지역, 아동 주도 단체, 국제 수준의 90개 이상의 회원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Child Rights Connect 홈페이지, 2021.6.3. 인출).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협약이행 보고서의 심의가 연기되는 동안 Child Rights Connect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사회 단체의 보고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아동 권리 옹호자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도 수행하였다. 또한, 아동 14명(남아 3명, 여아 11명)을 포함한 국가와 지역, 국제기구 및 연합으로 이루어진 90명 이상의 아동 권리 옹호자들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온라인 회의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도 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 아동의 참여 수준이 낮고 아동이 이를 배우고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아동 친화적이고 접근이 가능한 정보 및 절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0년에 UPR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아동 친화적 가이드를 개발하였고, 이를 위해 UPR Info와 협력 관계도 강화했다.

또한, 최근 Child Rights Connect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고문방지협약 및 SDG's의 목표 16.2인 '아동 폭력 종식'을 구현하기 위해 CTI(Convention against Torture Initiative)의 요청으로 체벌의 대안으로서 '긍정적인 훈육(positive discipline)'을 실행할 수 있는 실천서를 개발하였다(Child Rights Connect, 2021.4.21.). 해당 내용에서는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체벌을 효과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긍정적인 훈육'이라는 대안적인 조치의 활용을 옹호하고 아동을 훈육할 경우 비폭력적이면서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훈육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 체벌에 대한 긍정적인 훈육 및 대안(Positive discipline and alternatives to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교육 및 가족 환경에서 긍정적인 훈육 접근법을 구현하는 방법
- 체벌 전면 금지 사례와 이점
- 법과 실무에서 체벌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할 수 있는 역할
- 체벌 및 기타 형태의 잔인하거나 굴욕적인 아동 처벌을 종식시키는 좋은 국가 정책, 법률 및 실천 사례
- 체벌에 대한 대안적 관행에 대한 설명과 예시, 아동 훈육에 대한 징벌적 접근이 아닌 교육적 접근을 장려하는 방법론

이 외에도 Child Rights Connect에서는 올해 온라인으로 개최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 86~88차 심의회 운영 및 진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제46차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회원국이 환경에 작용하는 아동 인권 옹호자(Child Human Rights Defenders, CHRDs)의 중대한 역할을 강조하는 인권환경 특별보고관의 위임권 갱신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Child Rights Connect는 특별보고관이 계속해서 관여해야 할 이해관계자 명단에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시키고, 아동과

논의하는 일을 각 국가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어 아동의 역할과 권리 및 견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것임을 밝혔다(Child Rights Connect, 2021.4.28.).

2) 시민단체의 아동권리협약이행 활동 동향

(1) 아동권리협약이행과 모니터링의 필요성

2021년은 한국이 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⁹⁾, 2019년 제 5·6차 최종견해가 채택된 이후 2년이 되는 해이다.¹⁰⁾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제7차 국가보고서 제출기한이 2024년 12월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2021년은 협약이행 상황을 점검하기에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5년을 주기로 제출하는 당사국의 이행보고서는 어느 한순간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다. 이행보고서는 아동권리위원회의 종전 권고가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고,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행을 어렵게 하는 이유와 배경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어야 하며,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소명해야 하기 때문이다.¹¹⁾ 즉, 협약이행은 특정 시점의 협약이행 정도를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권리보장과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과정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아동의 입체적 삶을 조금씩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 기록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협약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이다.

9) 한국은 1991년 11월 20일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1991년 12월 20일 국내에서 발효되었다(협약 제49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은 해당 국가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에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10) 한국의 제5·6차 아동권리협약이행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CRC/C/KOR/CO/5-6)는 2019년 9월 27일 제2430차 회의에서 채택되었고, 10월 24일 공표(publication)되었다.

11) 아동권리협약 제44조 1항(b)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할 정기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조약 관련 지침 (CRC/C/58/Rev.3) 참고(UNCRC, 2015).

한편, 아동권리협약은 협약이행 모니터링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을 명시한 최초의 국제인권조약이라는 의미도 있는데(김희진, 2019), 협약 제45조 가항 “위원회는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권한 있는 기구(other competent bodies)에게 각 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 협약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기타 권한 있는 기구’를 협약이행에 조언과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NHRIs) 및 개인 전문가와 아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명하여, 협약이행에 있어 시민사회의 능동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¹²⁾ 시민사회나 독립인권기구가 제출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국가심의 전 비공개 사전 심의를 개최하는 이유도 같은 취지이다. 국가권력이 협약 본연의 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아동권리협약이행이 어느 일면에 치우치지 않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시행되도록,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한국이 지난 제5·6차 심의에서 받은 주요한 권고사항을 살펴보고,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의 동향을 정리함으로써 당사국의 진전사항과 어려움을 분석하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주요 내용

2019년 한국의 아동권리협약이행 제5·6차 국가심의는 분명 상당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입양특례법」은 물론 「민법」상 입양허가제가 도입되면서 협약 제21조 (a)항의 유보가 철회되었고, 아동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를 운영하며 출생등록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확보하였다. 아동을 직접 대상

12) 관련 내용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활동 참여(Participation in the work of the Committee)” 항목 중 “파트너에 대한 정보(Information for partners)”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www.ohchr.org/EN/HRBodies/CRC/Pages/InfoPartners.aspx>에서 2021년 7월 15일 인출).

으로 하는 아동수당제도가 전면 시행되었고,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을 통해 일련의 아동복지서비스가 통합되며 공공의 아동보호체계가 강화되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실현할 가능성이 적극 고려될 기회도 마련되었다. 2011년 9월 진행된 제3·4차 국가심의 이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아동학대 예방과 처벌강화, 과도한 사교육 의존도와 학업 경쟁 완화 및 공교육 강화 등에 대한 종전 권고를 이행하려는 노력도 성과로 평가되었다.

다만, 상당수 권고는 제3·4차 심의에서도 우려된 내용으로, 협약이행의 범주는 확장되었을지라도 이행의 질적 측면은 미비한 측면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사법부 관계자의 협약과 아동권리에 대한 역량 강화(제7항), 포괄적 정책 이행과 모니터링, 평가를 위한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 할당(제8항),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제9항), 아동 예산 확충 및 지자체 격차 감소(제10항), 자료수집 체계 개선(제11항)과 독립 모니터링 기구의 독립성 보장과 권한 강화(제12항), 관련 종사자 대상 의무적 아동권리교육 제공(제13항), 국제협력을 위한 ODA 증액(제14항), 그리고 아동권리에 대한 기업의 책무(제15항) 등 일반이행조치 전반에 이전의 권고를 반복하고, 유사한 내용을 제시한 결과는 구조적 측면에서 아동권리 협약이행이 체계적으로 이행되고 모니터링되지 않는 현실을 드러낸다. 일반이행조치는 협약이 명시한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취하는 입법적·행정적 조치 및 기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아우르는 개념이기 때문이다.¹³⁾

이와 함께 새롭게 검토된 아동권리 이슈가 늘어나고 보다 구체적인 권고가 제시된 결과도 주목할 수 있다. 가슴기 살균제 피해 구제와 미세먼지, 학교 석면 문제(제19-20항), 아동 참여와 관련된 연령 제한 폐지(제21항), 베이비박스 금지 및 익명출산제 문제(제22-23항), 선거연령 및 정당 가입 연령 하향(제24항), 온라인

13) CRC/C/GC/5, para. 1. 참고(UNCRC, 2003)

그루밍 법제화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대상아동 규정 삭제(제28-29항), 탈시설 계획 수립(제32항)과 수용자 자녀 권리보장(제35항), 아동노동 실태 확인 및 노동권 보장 조치(제44항), 우범소년 규정 삭제(제46-47항) 등이 다루어졌다. 협약이행 과제로 새롭게 언급된 사항들은 시민사회가 제출한 민간보고서와 심의 대응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굴된 것들이다. 아동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협약이행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졌다는 성과와 함께 나아갈 방향과 정부 및 시민사회의 상호협력이 절실히 요청될 필요를 시사한다.

(3) 협약이행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 동향

한국의 아동권리협약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가 제출되고, 그에 따른 시민사회의 심의 대응은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아동권리 문제를 인지하는 과정이었으며, 그만큼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연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포함한 조약기구에 자주 등장하는 권고사항 중 하나이나, 지금까지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이주와 장애에 따른 차별금지에 집중된 아쉬움이 있었다.¹⁴⁾ 그러나 협약 제2조를 포함하여 국제인권조약이 강조하는 ‘차별금지’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연령에 따른 차별금지도 중요한 요소이다. 아동·청소년이기에 성별, 성소수자, 이주, 장애, 노동상황과 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권리구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최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연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의 활동을 살펴보면, 2021년 5월 25일 시작된 “평등의 에코(echo)-100(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5.21.)”과 “차별금지법 제

14) CRC/C/KOR/CO/3-4, paras. 28-29. 참고(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5.24.)” 활동 등에 연령에 따른 차별금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보장 필요성도 더욱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다수의 시민단체가 입문자나 초보자에게 “O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대하기보다는 미숙하고 부족한, 가르침이 필요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타난 변화라 할 수 있다.¹⁵⁾ 청소년 활동가와 아동단체의 목소리가 전면에서 더해지며, “아동을 포함한 모든 이의 존엄과 평등을 향한 시작선”을 세우는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가시화되었다.¹⁶⁾ 그 결과, 2007년 이후 매 순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2021년 6월 14일, 10만 명의 지지를 받으며 청원이 성사되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어떠한 사유로든 누군가의 존엄을 해하는 배제’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이고, 국가의 책무 확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아동의 권리 주체성을 실현하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취약성을 사회안전망으로 지지하는 ‘아동친화환경’ 구축에 필수요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출생등록과 정체성에 대한 권리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에 대한 시민단체의 꾸준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14년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가 출범한 이후, 출생등록 이슈는 다양한 아동단체와 법률가 단체, 미혼모단체, 이주인권단체가 연대하며 제도의 한계와 공백을 짚고, 단계별 개선방향을 모색해 왔다.¹⁷⁾ 2015년 친생부의 출생신고 제도 개선(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 2016년 인우보증제도 폐지(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4항 및 제44조의2,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0호), 검사·지방자치단체장

15) 국제아동인권센터(2020.10.8.) “한글 속 아동인권 찾기”; 세이브더칠드런(2021.5.3.) “[논평] 아동에 대한 차별의 언어, 바꿔야 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2021.5.31.) “주린이, 등린이, 헬린이?... ‘O린이’에 담긴 편견”.

16)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 가이드라인(<https://equalityact.kr/차별금지법-제정-가이드라인/>) 참조.

17)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홈페이지(<http://www.ubr Korea.org/>) 참조.

의 출생신고 제도 신설(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4항), 그리고 2020년 신속한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제도 보완(가족관계등록법 제23조의2)에 이어 2021년에는 모를 특정할 수 있더라도 소재불명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 출생신고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개정(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 제2항)도 있었다. 2021년 6월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었는데(법무부, 2021.6.21.), 이러한 변화도 지난 5~6년간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와 연대단체가 진행한 각종 연구조사와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개선과제를 토대로 한 것이며, 2019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제5·6차 본심의 이후로도 정부와 국회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역할을 촉구한 시민단체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¹⁸⁾

한편,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최근 출생통보제 도입과 함께 정부가 병행도입을 검토 중인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에 대한 문제제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 금지와 함께 권고한 것처럼,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출생등록이란 태어난 즉시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지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아동이 부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자신의 뿌리를 알고 그 기록에 접근할 가능성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고 보호되는 상황에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익명출산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부는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한 때부터,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병원출산을 기피할 우려를 언급하며 아동과 임신부 보호를 명목으로 익명출산제 도입이

18) 2021년 4월 30일 개최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간담회 자료집”을 포함해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의 연구조사 결과와 행사 자료는 홈페이지(<http://www.ubrkorea.org/>) 또는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ubrcampaign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20년 12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2021년 5월에는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부모를 알고 부모와 함께 자라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익명출산제에 대한 논의에 우려를 표하며, 익명출산제를 저지하기 위한 대정부/대국회 활동에도 집중하고 있다. 어떠한 아동도 누락 없이 국가기관에 통보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앞둔 현재,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이들이 가정에서 자라날 권리를 배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중이다. ‘감추고 싶은 출산’을 전제하는 익명출산제는 그 자체로 아동과 여성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며, 결코 모든 사람의 동등한 존엄성에 바탕한 ‘권리로서의 보호’라 할 수 없다. 유리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결과에 대응하기에 앞서, 아동유기가 나타나지 않도록 위기임신·출산 및 아동과 가족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노력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③ 아동참여와 견해 존중, 표현의 자유

2020년 1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며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결과도 최종견해 이후로 나타난 진전사항 중 하나였다. 다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권 연령이 조정되었을 뿐, 주민투표와 국민투표는 기존의 만 19세 이상 연령 기준이 달라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정당법」 제22조)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60조)이 금지된다. 2021년 5월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의 발기·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는 한편, 청소년 대상 모의투표 교육을 허용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지만(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5.25.),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아동의 정치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각은 유지되고 있다. 관련하여, 청소년·교육단체 등 3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정당활동을 통해 정책 형성 과정부터 참여하는 일은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치를 만드는데 필수

적”이며, “선거운동의 자유는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라고 강조하며, 유예된 시민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아동·청소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보장을 위한 변화를 촉구하였다(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2021.5.26.).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포함해 아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는 충분한 정보접근과 의견표명의 기회 보장뿐만 아니라, 그 견해가 모든 의사결정에 진지하게 고려되고 반영되는 과정과 결과를 포함한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선거 및 정당 관련 법 개정과 더불어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학칙 제·개정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반영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또는 「학생인권법」 제정, 그리고 국가의 실효적인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삶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당사자성과 주인의식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 그들의 시각에서 삶의 주도권을 존중하는 것, 이들의 온전한 권리보장을 위한 보호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 아동·청소년의 참여의 경험이 쌓이고 성인의 경청과 소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면서 가장 작은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위한 사회구조로 서서히 변화하는 것,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 아동과 성인 간의 정보 공유와 대화를 통해 아동은 자신의 견해와 성인의 견해가 어떻게 고려되어 의사 결정 과정의 결과를 형성하는지 배울 수 있다.¹⁹⁾ 특별히 아동참여에 있어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아동복지법」에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의견 청취와 참여에 대한 아동권리가 협약의 본질적 가치임을 보여준다.

④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

양천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은 국내 아동보호체계의 공백과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입양은 공공의 아동보호체계의 한 종류로서, 아동 최

19) CRC/C/GC/12, para. 3. 참고(UNCRC, 2009)

상의 이익을 실천하기 위한 대안양육에 해당하며, 협약 제21조에 따라 입양이 결정되는 과정에 친생부모의 자발적인 동의와 아동의 필요와 욕구에 대한 존중, 입양된 이후에도 자신의 출생기록에 접근할 아동의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만큼 입양 결정은 전문성 있고 권한 있는 당국의 철저한 검토와 객관적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하며, 일련의 과정은 아동에게 최선의 조치인지를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입양과 아동학대 사례가 결합된 양친입양아동학대사건은 아동을 중심에 둔 ‘아동보호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며, 관계 종사자의 역량도 확보되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2021년 1월 발표된 정부의 대책은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있으면 즉각분리 조치를 시행한다거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교육 시간을 늘리는 등 단편적인 대책을 열거할 뿐이었다(보건복지부, 2021.1.19.). 양친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은 예외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 아니었다. 2014년 울산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 2016년 평택아동학대사망사건, 2017년 대구·포천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 2019년 인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이미 입양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등으로 공공이 개입한 이후에도 학대로 사망한 사례들은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 도입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변화가 시작되는 현재, 기존 제도의 공백을 철저히 진단하며, 짜임새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시스템과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방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연대성명서가 발표되었는데, 당시 91개의 시민사회단체라는 유례없이 많은 연대가 이루어지며, 지키지 못한 생명을 애도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하였다. 2021년 2월 발의된 「양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도 시민사회연대가 이끌어낸 결과였으며, “#죽음에서 배울 의무 캠페인”²⁰⁾을 비롯해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를

20) 캠페인 웹사이트(<https://campaigns.kr/campaigns/307/pickets>) 참조.

거듭하며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진상조사 특별법안 제정과 같은 맥락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일련의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2021년 1월 「민법」 제915조 징계권 규정이 폐지되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62번째로 ‘아동 체벌 금지’ 국가가 되었다(베이비뉴스, 2021.3.26.).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체벌”과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가 직접적으로 이행된 것이다. 63년 만의 「민법」 개정은 결코 자랑스러운 결과라거나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라 할 수 없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끌어낸 심의 대응 연대활동을 포함해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한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라는 징계권 삭제 캠페인(세이브더칠드런, 2019.9.18.), 그리고 다양한 아동·청소년 인권단체가 아동폭력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을 환기한 성과였다.

양천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 이후로 다시금 화성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이 발생한 현실에서, 입양의 공공성 강화와 진실규명에 목적을 둔 연대회의(이하 입양연대회의)도 창립되었다. 입양연대회의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입양특례법은 입양을 보내기 위한 법이 아니라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법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내입양인과 해외입양인, 입양부모는 물론, 입양 보낸 친생부모, 미혼모 및 이들과 연대하는 사회단체, 개인이 참여하고 있다. 입양허가제가 도입되었고, 2021년 7월부터는 입양 초기상담을 지자체가 담당함으로써 입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변화의 과정 속에 단 한 명의 아동도 놓치지 않기 위한 보완책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보다 신속한 체계 보완, 전문성과 역량 강화, 자원 확보, 무엇보다 공공의 담당자가 제도의 중심에 아동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미신고 아동시설 학대사건을 통해 거듭 확인되는 아동보호체계의 공백을

모니터링하며(베이비뉴스, 2021.5.13.), 근본적으로 아동보호체계의 탈시설 정책을 논의하는 움직임도 있다(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2020). 이주아동에게 체류권을 부여하는 법무부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을 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법무부, 2021.4.19.),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3) 아동권리보장원(아동권리 전담기구)의 아동인권사업 현황

아동권리보장원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아동권리협약 상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교육과 홍보’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적 아동권리 전담기구로서 아동권리 분야에서 중요한 기능을 갖는 기관이다. 설립 초기 단계이지만 아동권리보장원의 인권사업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아동인권 정책을 가늠하고 향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보장원의 역할을 기대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1)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의의

그동안 공급체계 중심의 분절적으로 제공되어오던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19년 7월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되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초기상담-보호-보호종료-사후관리 쉼 단계를 아동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관련 정보시스템의 일원화 된 관리체계 구축, 아동권리 증진 및 정책조정기능의 강화에 대한 대내외 기대감이 반영되어 기관설립 이후 계속 확장되어가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대책, 아동학대 대응 대책 등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고, 촘촘한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중대한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아동 이익에 관한 중앙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첫발을 떼는 이슈의 중심에 있기도 하다. 또한

기초·광역단위 지자체에 대한 종합적 지원, 국제기구 및 NGO와 협력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전달체계에서의 아동권리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을 원칙으로 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통합적인 아동 관점에서의 아동인권 증진을 위해 기획·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한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지원체계 구축·운영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을 위해서는 입법, 행정, 모니터링의 각 체계가 아동 관점에서 균형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권리에 관한 다양한 소관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대한민국 정부를 향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우선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 권고사항(130여건)에 대한 부처별 이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이행점검 전담 TF를 구성하여 제7차 국가보고서 제출 기한 내에 주요 과제별 이행 진전 노력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정리된 점검 보고서는 주요 정책 변화 내용을 중심으로 아동위원의 감수를 받아 공개하여 우리나라 아동권리보장의 바로미터로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한 부처 이행계획에 대해서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의제로 발굴하고, 회의 개최를 지원하는 등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사무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국민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정책의 주요 변화에 대해 폭넓게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역시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을 위해서 중요한 과업이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매년 아동권리 인식도 조사를 시행하여 성인과 아동 당사자의 아동권리 인식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아동권리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2020년 시행한 「아동권리인식도 조사」²¹⁾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권리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나아가, 각 아동권리에 대한 체감 정도를 추가 질의하여 인식도와 체감도의 차이, 그에 따른 성인과 아동 집단 간의 유사점, 차이점 등을 함께 분석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해 온 다양한 NGO 단체와의 협력에 기반한 기획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정례적인 회의체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중대한 아동권리 이슈에 대한 연대책임으로 공동으로 선언하고, 논의하는 자리도 지속해가고 있다.

국제기준에 준하는 아동권리보장 수준에 이르기 위한 전문교류를 위해 국내뿐 아니라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업무체계도 가동되었다. 2019년 심의 당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아세안 국가와의 국제협력 참여를 더욱 활발히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사회 이슈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아동인권 국제동향’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발간한 전문 자료의 국문번역 및 전문 감수 자료를 대외에 제공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주최의 일반논평, 일반토론의 날 의견 수렴과정에 참여하였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위한 아젠다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3)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아동권리 증진 노력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교육,

21) 2020 아동권리인식도 조사는 9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1,000명과 만 18세 미만 아동 1,205명이었다. 아동에는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과 학교 밖 아동이 포함되었다. 조사결과 전체 아동권리 인식도 점수는 86.52점, 체감도 점수는 71.3점으로 나타났다. 성인과 아동의 인식도/체감도 점수는 각각 85.19점/65.88점, 88.18점/75.84점이었다(100점 만점 기준). 2019년에 비해 아동권리인식도는 성인, 아동집단 모두 낮아졌고, 가장 낮은 체감도를 보인 영역은 공통적으로 아동학대 관련 문항이었다. 코로나19 등 사회적 상황으로 아동권리교육에 대한 기회가 전년 대비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아동권리보장원, 2020).

돌봄, 학대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되는 아동권리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각 권리영역별 당사국의 역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²²⁾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단계부터 지금까지, 위기상황에서 가장 먼저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아동을 위한 여러 대응활동을 펼쳐오는 중이다. 감염병 대응에 관한 즉각 개입 및 긴급 돌봄을 위한 사업별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고, 일련의 대응 활동을 기록서 형태로 발간하였다. 또한 감염병 대응 전문가와 협력하여,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에 따른 대면 서비스, 시설 운영, 학대 피해아동에 관한 조사 등 서비스 현장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업무가이드를 마련하였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사회 아동·가족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설문조사 보고서)를 2020년 11월~12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아동(만0-18세)과 보호자(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전체 응답인원 중 아동이 75,096명, 보호자(부모)가 84,839명이었다. 설문내용은 아동의 일상생활 변화, 가족의 일상생활 변화,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욕구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여 시행했다. 조사결과 코로나19 확산이 초래한 사회적 변화는 사회 공동체 내 ‘모든’ 아동의 돌봄, 생활,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안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아동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관한 ‘재난대응 아동보호 매뉴얼 개발’

22)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20년 4월 8일, ‘코로나19 성명 발표’를 통해 ① 생존권 보장(영양가 있는 음식과 물의 공급, 의료 및 위생, 출생등록과 같은 기본 서비스의 제공), ② 발달권 보장(온라인 학습 지원, 여가 및 놀이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 ③ 보호권 보장(가정 내 격리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선별적 조치), ④ 참여권 보장(코로나19 대응 정보를 아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이 참여할 기회 제공) 등의 당사국 역할을 요구하였다(UNCRC, 2020.4).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다.

시의성 있는 다양한 아동권리 이슈에 대해 통합적 관점에서 전문가 의견을 논의하는 아동권리포럼도 정기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별히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의 온라인 공간 속 아동권리보장 실태를 진단하고, 아동권리보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온택트 시대, 온라인에서의 아동권리: 위기에서 기회로’라는 주제의 포럼이 진행되었다. 1주제로 비대면 시기 ‘새로운 온라인 세상’에서의 아동친화적 참여공간의 재발견으로 아동권리 보호를 넘어선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2주제로 ‘안전한 온라인 세상’을 위한 아동 성착취·학대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자리였다.

(4) 아동참여 기회 확대 및 의견표명권 존중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지수 조사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아동권리 지수 중 아동 참여권에 대한 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2018 굿네이버스 연구결과²³⁾가 있다. 그동안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정책수립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조회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집중되었고, 경험 위주의 단편적인 체험활동에 그치는 사례도 많았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축소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회, 아동정책토론회 등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아동의 참여권 보장은 온·오프라인 방식을 포함하여 다양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가정-지역사회-국가체계에서 아동 의견표명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각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아동정책 참여 의견이 분산되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정책화를 실현할 수 있는 중앙-지역 간의 협력도 필요하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기관 고유사업의 자문, 주요 아동권리 이슈에 대한 아동참여

23) 2018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결과(이봉주, 장희선, 신원영, 2018)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4대 권리지수는 보호권(89.6), 발달권(72.7), 생존권(65.5), 참여권(57.1)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참여권 지수(57.1) 경우는 평균지수(71.2)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아동을 추천받아 상설기구인 ‘아동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아동위원회 위원 12명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판」 제작에 참여하였고, 아동권리보장원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더 많은 아동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특별히 202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6호 주제가 ‘기후변화와 아동권리’로 선정됨에 따라, 환경을 지키는 미래세대로서의 권리 행사를 위한 아동위원회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아동의 의견표명권 보장은 아동친화적인 정보 제공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방역 대책, 교육정책 등은 아동의 삶에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부처에서 발표하는 주요 보도 내용 중 아동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온라인 개학,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를 발췌한 ‘아동브리핑’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질병관리청 누리집과의 연계로 대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아동만의 온라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아동참여 게시판 ‘나 할 말 있어요!’를 개설하였다. 평소 질의하고 싶었던 개인적 사항뿐 아니라, 간단한 댓글달기부터 정책 제안 의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위의 온라인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중대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거나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게시글도 늘어가고 있다. 모든 글은 공개되고 있으며, 적극적 피드백과 더불어 아동정책을 수립하는데 주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근 아동의 의견표명권이 일상과 지역사회 내에서 보장되고, 중앙단위로 연결되어 정책화하는 협력체계를 확대해가고 있다. 2021년 진행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 사업은 예년처럼 한국아동단체협의회를 통해 17개 거점별 지역대회를 개최하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와 협력하여 회원도시의 아동의회 아동위원 참여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역대회-전국대회를 거쳐 채택되는 결의문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며, 참여했던

각 지역도시의 장에게 전달되어 아동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5) 다양한 아동권리 이슈에 대한 기획 사업 추진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고정된 고유사업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높은 요구와 시의성 있는 아동권리 주제에 따라 기획 사업을 추진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2년은 아동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념일인 ‘어린이날’이 100회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 아동권리가 사회역사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을 조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를 발간할 계획이다. 3개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은 2020년 보건·법률·복지·교육·보육·실천현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한 편찬위원회 구성과 자료수집을 시작으로 올해는 본격적으로 집필 중에 있다.

아동권리의 통합적 관점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통계 생산과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 수립기반을 마련하고자 ‘보호대상아동 통합패널’을 구축 중에 있다. 2020년에는 ‘보호대상아동 통합패널’ 구축방안을 연구하였고, 2021년에는 통합패널 연구를 설계하고 예비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반논평 제25호를 발표하고, 아동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협약 당사국의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아동이 직접 출연하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1인 콘텐츠 제작자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의 아동권리 침해 관련 모니터링 및 조사에 착수하였다. 해당 모니터링 결과는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구체화하고, 인식 개선 및 제도적 보완 필요사항을 공론화하여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과열된 사교육 현황을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아동의 놀이, 휴식, 여가 증진에 관한 정책 지원을 권고하였다.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핵심과제의 20%가 아동 놀 권리보장에 관한 과제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래 놀이혁신위원회(아동·건축 등 전문분야의 민간위원, 복지부·교육부·행안부 등 정부위원, 총 19명)가 중앙지원체계로서 마련되었다. 2020년 놀이혁신 선도지역 시범 선정(10개소) 및 컨설팅 지원, 놀이혁신 행동지침 마련(2021년 배포 예정) 등 지역사회의 놀이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이 일부 진행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향후 아동의 놀 권리보장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여, 각 추진단계별 소관 부처 간 협력체계의 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6) 아동 최우선의 원칙 실현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관련 정책 수립 시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9년부터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운영해왔다. 2020년부터는 평가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범평가 단계를 거쳐 2021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모든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 즉 아동 관점에서 현황을 해석하고, 아동권리 기반의 분석 프레임이 안착되어야 한다. 앞으로 아동정책 수립, 서비스 전달체계 간 효과적 정책 조정 및 통합 과정에서 아동권리보장원 역할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에 관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아동인권사업이 또 하나의 사업 영역으로써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권리보장원의 모든 사업이 아동권리에 기반을 둔 통합적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4) 코로나19와 국내외 아동·청소년의 인권

2020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 자체를 흔들며 놓았다. 특히,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서 학교의 장기 휴교나 온라인 수업의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지속됨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여가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놀 권리 등은 자연스럽게 등한시되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위기지만, 그중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가장 큰 희생자가 될 위험이 있고, 일부 아동에게는 그 영향이 평생 지속될 수도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해로운 영향은 최빈국의 아동과 이미 불우하거나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UNICEF, 2020.3.). 이에 코로나19가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국내외 현실을 살펴보았다.

유니세프의 데이터 허브에서 ‘코로나19와 아동’을 주제로 게재된 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더 많은 가구들이 빈곤해졌고, 원래 경제적으로 취약했던 가정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약 1억 5천만 명의 아동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교육, 의료, 주거, 영양, 위생 또는 물을 이용할 수 없는 다차원적 빈곤 속에 살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동안 학교 폐쇄와 준비되지 않은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해 아동들의 학업 위기가 심화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는 본질적으로 아동의 생존과 건강에 대한 위협에 노출되도록 하여 불편한 의료 체계와 예방 접종 및 산전 관리와 같은 의료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에 따라 아동의 사망률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 착취 및 학대의 위험 또한 증가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 및 기관 등이 폐쇄됨에 따라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 내에만 머무르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가정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보호자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 추가, 경제적 불확실성, 실직 또는 생계 중단,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였고, 아동 보호 서비스가 약화되면서 아동에 대한 폭력의 위험이 증가하기도 했다(UNICEF, 2020.3.).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 및 보육기관이 휴교(원)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아동과 청소년은 거의 가정 내에서만 생활하게 되었다. 엄격한 방역 지침으로 개인의 이동이 제한되자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온 가족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가족 구성원 간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졌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실업 및 소득 감소로 인한 빈곤, 교육 접근성의 제한, 아동의 디지털 환경에의 위험 노출 증가 및 부모의 감시 약화, 아동과 부모를 위한 지역사회 지원 체계 붕괴, 평범한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등은 결국 가족 간의 불화와 아동학대를 증가시킬 수 있다(이윤호, 2021).

실제로, 코로나19로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외부와 단절된 채,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학대²⁴⁾가 이루어지거나 보호자 없이 아이들만 집에서 생활하다가 사고²⁵⁾가 발생하는 등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아동학대와 방임과 관련된 기사와 뉴스가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고, 그에 따라 사회적인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아동학대의 모니터링과 감시자 역할을 해왔던 학교나 보육시설,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기능이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영향도 크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이에 코로나19가 아동과 청소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기

-
- 24) YTN 뉴스 (2021.03.13.). "집이 더 위험하다" 코로나19 1년... 늘어나는 아동학대 사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1562011>에서 2021년 6월 2일 인출. 헤럴드 경제 (2021.5.24.). 아동학대 21% 급증...가슴아픈 '집콕 현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524000650>에서 2021년 6월 2일 인출.
- 25) 연합뉴스 (2020.10.21.) 끝내 돌아오지 못한 '인천 화재 형제' 동생...돌봄 사각지대 비극.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1155500065?input=1195m>에서 2021년 6월 2일 인출.

위해 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 등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 6월, 통계청에서 주최한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국민들과 청소년의 삶의 질과 여가생활의 변화를 논의하였으며, 교육부에서는 2021년 5월에 ‘2020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하여 코로나19의 확산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추어 교육분야에 대응 과정들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감염병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학교 및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교육부, 2021.5.6.).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21년 현재,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아동인권 보장 실태조사와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정책 대응 방안을 통해 코로나 이후 사회·환경적인 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2020년에 만0~18세까지의 아동(만0~9세 아동은 보호자가 응답)과 보호자(부모)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아동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김선숙, 김세원, 박호준, 김성희, 문영원, 2021).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아동들의 일상 및 정신건강, 교육·학습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특히 빈곤가구 아동들에게 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공교육과 돌봄 기관의 운영이 일부 중단되면서 아동이 가정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나 결식률이 증가되었고,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은 감소한 반면, 우울감과 자살 생각은 증가하였다. 또한, 학교가 휴교되거나 온라인 학습이 증가됨에 따라 아동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학업성취도가 낮아졌으며, 소득 및 가구 유형에 따라 학습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21년 6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교육부, 2021.6.1.)에서 중, 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난 것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

들의 학습, 정서, 사회성 영역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식함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모든 학생들의 교육회복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을 지원하고, 심리·정서 치료와 학교 일상회복 및 또래체험활동 등을 통해 사회성을 함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21.7.28.).

이렇듯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는 아동과 청소년의 삶에 지속적이면서도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불확실하고 불안이 가중된 현실에서 아동은 학교의 폐쇄나 휴교, 다른 스트레스 요인 등으로 인해 더 취약해질 수 있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코로나19 영향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지표체계 결과를 분석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인권 현황을 모니터링 할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된 해석을 제시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뉴노멀 사회로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그 안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다변화된 인권 이슈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이 절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편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최근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SDGs는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 권리에 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를 담고 있다²⁶⁾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주요 지침이 될 수 있다. 특히, SDGs 목표 달성기한이 2030년까지라는 시점을 고려하면 아동과 성인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인식(UNICEF, 2016)과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Leaving no one behind)’는 SDGs 핵심원칙 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살펴야 할 집단이 아동이라는 점²⁷⁾은 아동의 권리와 웰빙 증진에서 SDGs의 중요성을 짐작케 한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발 과정에서 SDGs를 이미 검토한 이유이기도 하다(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김진호, 2017; 김영지 외, 2020).

그러나 2020년과 2021년은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및 국가 차원 SDGs 지표체계(K-SDGs) 모두에서 개편이 있었다. 특히, K-SDGs 지표 개편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환경 분야에서의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가정 내 경제적 갈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아동학대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아동집단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²⁸⁾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개편된 SDGs 지표체계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에 고려

26) 17개 SDGs 가운데 1-15번 목표는 인권의 전통적 범주에서 경제사회문화 및 환경적 권리를, 16번 목표는 시민정치적 권리와 민주주의 권리를 다루고 있다(이성훈, 2017).

27)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ICEF. Why is a children's rights approach needed?. https://ohchr.org/Documents/Issues/Children/VisualBrief_ChildRights_SDGs.pdf에서 2021년 7월 11일 인출.

28) 한겨레(2021.6.14.). '온라인 수업'의 역설...학교폭력 줄었지만 아동학대는 늘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9293.html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연합뉴스(2021.3.4.). "코로나19로 이주·난민 아동 삶의 질, 일반 아동보다 악화".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4126400371>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UN 및 K-SDGs 지표 체계 개편 현황을 살펴보고 개편안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과 연관된 지표를 파악해보았다. 그리고 2020년 구축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에 UN 및 K-SDGs 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를 판별한 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²⁹⁾

1) 유엔(UN) SDGs 및 K-SDGs 지표 개편 현황

SDGs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성취해야 할 17개 분야의 정책목표를 말한다. 17개 목표는 빈곤종식, 불평등 감소, 성평등 달성, 기후변화대응 등 사회·경제·환경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매년 UN은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을 개최하여 세계적 수준에서 SDGs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2030년까지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의 전향적인 정책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목표 이행 점검은 230여 개 SDGs 지표에 근거한다(박영실, 홍현정, 진유강, 윤민희, 이은경, 2021).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SDGs가 채택된 이래, 세계적으로 SDGs를 자국화(localization)하는 노력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³⁰⁾ 한국 또한, 2018년 K-SDGs를 구축하였고, 2년 주기로 지표에 근거한 지속가능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SDGs 이행 6년 차에 접어들며 지표 방법론 발전 및 데이터 가용성 확장 등에 따라 SDGs 지표 체계에서도 일부 변화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먼저 UN SDGs와 K-SDGs에서 그간 추진된 지표 개발 및 개편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9) SDGs 채택과정 및 의미 등에 대한 검토는 연속과제인 본 연구의 2017년도 연구(김영지 외, 2017)에서 이루어진 바, 이번 연구에서는 지표 개발 및 개편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였다.

30) HLPF에서는 글로벌 이행현황을 점검할 뿐 아니라 국가별 모범사례 및 도전사항 등에 관한 자발적 국가보고(VNR, Voluntary National Review)가 진행된다. VNR 발표 기회는 2030년까지 국가당 2~3회 정도 부여되며, 2016~2020년도 HLPF에 최소 한번 이상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국가 수는 168개국이다. 거의 대다수 국가가 SDGs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UN SDGs 지표

SDGs 채택 문서인 ‘세계의 변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는 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지표 개발을 UN통계위원회의 역할로 규정하였다. UN통계위원회는 2015년 3월 SDGs 지표 전문가 그룹(IAEG-SDGs, Inter-Agency &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을 창설하였다(UN, 2015). IAEG-SDGs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27개 국가통계청을 회원으로 하며, 지역 및 국제기구가 참관 기관으로 활동한다. 이 그룹은 지표선정 기준으로, 연관성(relevance), 방법론적 명확성(methodologically sound), 측정가능성(measurable), 해석용이성 및 접근가능성(facilitate the use and interpretation)의 원칙 하에 지표를 개발하였다(UNSC, 2015). 개발된 지표안은 2017년 UN 통계위원회 합의(3월) 후 UN 경제사회이사회(6월)와 UN총회채택을 거쳤다.³¹⁾

지표체계는 방법론 발전 및 데이터 이용가능성 확장 등의 이유로 2020년과 2025년 두 차례 종합개편(comprehensive review)이 계획되었다. 종합개편 기준은 ① 지표가 세부목표를 반영하는지, ② 세부목표의 모든 면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지표가 필요한지, ③ 새로운 데이터 원천이 확보되었는지, ④ 티어3 지표의 방법론 개발이 지연되거나 예상되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지, ⑤ 세부목표 진행상황을 지표가 측정하지 못하는지 등이다(UNSC, 2017). 2020년 개편 결과, 231개 지표안이 확정되었다. 기존안과 비교할 때 36개 지표가 수정, 추가, 삭제된 것이다(UNSC, 2020).

IAEG-SDGs는 방대한 양의 SDGs 지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티어(tier)

31) SDGs 이행원년인 2016년 3월에 230개 지표안이 제언되었으나, UN 통계위원국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년간의 수정보완을 거쳐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체제와 지표 소관 기구(custodian agency)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박영실, 이영미, 김석호, 차은지, 2017). 먼저, 지표는 방법론 개발 및 데이터 생산 유무에 따라 3개 티어로 분류된다. 3개의 티어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①티어1은 지표의 개념이 명확하며 방법론 및 표준이 정립되어 있고 해당 국가의 정부가 정기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②티어2는 지표의 개념이 명확하며 방법론 및 표준은 정립되어 있으나 정기적으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③티어3은 지표에 대한 방법론 및 표준이 없거나 현재 개발단계인 경우이다(박영실 외, 2017).³²⁾

지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두 번째 방안은 지표별로 소관 기구(custodian agency)를 둔 것이다. 지표 소관 기구의 역할은 지표 방법론 개발 및 데이터 수집, 국가통계역량강화 지원 등이다. 특히, 데이터 수집 관련해서 지표 소관 기구가 각국에 데이터 수집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국제적인 비교가능성에 따라 보정한 후 유엔 SDGs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현재,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유엔 SDGs 한국 데이터 책임기관(focal point)으로 지정되어, 데이터 관리 총괄 역할을 수행 중이다. 국제기구 요청에 따른 데이터 제공 업무와 함께, 오픈 플랫폼을 통한 SDGs 한국 데이터 서비스(<https://kostat.go.kr/sdg>), 데이터 기반 SDGs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발간 사업, 데이터 가용성 향상을 위한 SDGs 지표 개선 개발 연구 사업을 진행 중이다(통계청, 2021).

(2) K-SDGs 지표

UN SDGs 국내화 과정은 환경부 소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도하에 진행되었다. 정부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16-2020)에 의거하여, 2018년 2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민관학

32) 방법론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티어3에 해당하는 지표는 2020년 종합개편 과정에서 수정 및 대체 되는 과정을 거쳐, 현재는 티어3 지표가 없는 상황이다.

공동작업반을 구성한 후,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K-SDGs를 수립하였다. K-SDGs는 UN SDGs의 기본 형식을 준수하되, 내용적으로는 국내에서 이미 달성되었거나 한국적 맥락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것은 삭제하고 한국적 이슈는 추가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K-SDGs는 17개 분야, 122개 세부목표 및 214개 지표로 구성되었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9).

그러나, 세부목표의 정책부합성, 지표의 측정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21-2025) 수립과정에서 K-SDGs 지표 개편이 진행되었다. 개편 결과를 기존의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와 비교해 보면, 세부목표 차원에서는 29개가 보완·2개가 신설되었고, 지표 차원에서는 75개가 보완·72개가 신설되었다. 최종 개편안은 17개 목표, 119개 세부목표, 236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아동·청소년지표 관련해서는 실종아동 미발견 건수가 새롭게 추가되었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21).

표 II-2-1. UN SDGs 및 K-SDGs 지표 개발 및 개편 현황

구분	목표년도	목표	세부목표	지표 수	
UN SDGs	초안(2017)	2030	17	169	232
	개편안(2020)	2030	17	169	231
K-SDGs	초안(2018)	2030	17	122	214
	개편안(2021)	2040	17	119	236

* 출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21).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21-2040.
UNSC (2020). Report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E/CN.3/2020/2)

2) SDGs 지표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연계 분석

(1) SDGs와 아동·청소년의 관계

① UN SDGs 내 아동·청소년 지표 현황

IAEG-SDGs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SDGs 지표별로 소관 기구를 두어 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국제아동긴급구호기금(UNICEF,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은 아동 관련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231개 SDGs 지표 중 18개 지표를 담당하고 있다. 이 중 9개 지표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나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등 다른 국제기구와 공동 소관이다.

SDGs 분야에서 UNICEF의 역할은 지표 소관을 넘어 여러 국제기구에 산재되어 있는 '아동 관련 지표(child-related SDG indicators)'를 종합적으로 수집, 분석, 보고하는 총괄 기능으로 확장된다. 구체적으로, SDGs 지표 중 아동 권리 및 웰빙과 직접 연관되는 35개 SDGs 지표를 선정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는 2018년부터 "Progress for Every Child in the SDG Era"라는 보고서로 발간된다. UNICEF는 이 보고서에서는 아동권리를 5개 영역, 생존과 발달(Survive+thrive), 학습(Learning), 보호(Protection), 환경(Environment), 형평성(Fair chance)으로 구분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이외에도 환경과 형평성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지표 데이터는 UNICEF Data Warehouse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아래 <표 II-2-2>와 [그림 II-2-1]은 동 보고서에서 모니터링 대상 지표로 삼고 있는 지표 리스트와 이 지표가 SDGs 어느 목표에 속하며, 연관된 아동권리 영역은 무엇인지를 맵핑한 결과이다.³³⁾ 생존과 발달은 목표2(영양)·목표3(건강)

33) 35개 지표는 연령별 세분화, 내용 세분화에 따라 44개로 재 지표화되어 관리된다. 예를 들면, 목표2에는

에, 학습은 목표4(교육)에, 폭력 및 착취·유해한 관습으로부터의 보호는 목표5(성평등)·목표8(일자리)·목표16(평화)에,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은 목표6(물)·목표7(에너지)·목표13(기후변화)·목표3(건강)·목표1(빈곤)과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형평성 관련 지표는 목표1(빈곤)에 포진되어 있다(UNICEF, 2019). 한편, 2020년 SDGs 지표 종합개편 과정에서 UNICEF와 Save the Children 공동 소관의 '빈곤 친화적 공공사회지출' 지표가 신규 포함되었는데, 이 지표도 향후 UNICEF의 아동 권리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검토에서 반영하였다.

표 II-2-2. UNICEF 5대 아동권리영역에 포함되는 SDGs 지표 리스트

영역	지표 번호	지표명
생존과 발달	2.2.1	5세 미만 발육부진 아동 비율
	2.2.2	5세 미만 영양불량 아동 비율(저체중, 과체중)
	3.1.1	모성사망비
	3.1.2	숙련된 의료인력이 참여한 출산 비율
	3.2.1	5세 미만 사망률(출생아 1천 명당)
	3.2.2	신생아 사망률(출생아 1천 명당)
	3.3.1	비감염인구 1천 명당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신규 감염자 수(5세 미만, 성별)
	3.8.1	필수 보건서비스 보장범위
	3.b.1	국가 정책에 포함된 모든 백신을 접종한 인구 비율 (MCV1, DTP3)
	3.7.2	여성 청소년 인구 1천 명당 출산율
	3.3.3	인구 1천 명당 말라리아 발생 건수
	학습	4.1.1
4.2.1		건강, 학습 및 심리사회적 웰빙 측면에서 정상 발달과정에 있는 24-59개월 아동 비율(성별)
4.2.2		(정규 초등교육 입학연령이 되기 1년 전) 조직화된 학습 참여 비율(성별)
4.a.1		기본 서비스 제공하는 학교 비율(서비스 유형별)
보호	5.2.1	파트너가 있었(었던)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과거의)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폭력, 정서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연령 및 폭력 형태별)
	5.2.2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친밀한 파트너 이외에 다른

아동관련 SDGs 지표가 2개(발육부진, 영양불량)있으나, 이 중 영양불량 지표는 저체중과 과체중으로 나누어 관리된다.

영역	지표 번호	지표명
		사람들로부터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연령 및 사건발생 장소별)
	5.3.1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를 했던 비율
	5.3.2	15~49세 여아와 여성 중 여성 성기절제를 한 인구 비율(연령별)
	8.7.1	5~17세 아동노동 인구수와 비율(성 및 연령별)
	16.1.1	인구 1십만 명당 고의에 의한 살인 범죄 피해자 수(성 및 연령별)
	16.1.2	인구 1십만 명당 분쟁 관련 사망자 수(성, 연령 및 사유별)
	16.2.1	지난 1개월간 보호자로부터 체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는 1~17세 아동 비율
	16.2.3	18~29세 인구 중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인구 비율(성별)
	16.9.1	5세 미만 중 행정 당국에 출생 등록된 자의 비율(연령)
환경	1.4.1	기초 서비스(식수, 위생시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3.9.1	실내 공기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6.2.1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서비스 시설, 비누와 물이 있는 손 씻기 시설 이용 인구 비율, 야외 배변 인구 비율
	7.1.2	청정연료 및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 비율
	13.1.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수
	1.1.1	국제 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
형평성	1.2.1	국가 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및 연령별)
	1.2.2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 비율
	1.3.1	사회보호제도 보장인구 비율(성, 아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신생아, 산업재해자, 빈곤층 및 취약계층별)
	1.b.1	빈곤친화적 공공사회지출

* 출처: UNICEF (2019). Progress for Every Child in the SDG era : Are we on track to achieve the SDGs for Children?. <https://data.unicef.org/resources/progress-for-every-child-in-the-sdg-era-2019/>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 주: 굵은 글씨는 유니세프 (공동)소관 지표임. 2020 지표 개편과정에서 UNICEF/Savethechildren 소관으로 추가된 빈곤친화적 공공사회지출 지표를 추가하여, UNICEF(2019)를 수정함.

② K-SDGs 지표 내 아동·청소년 지표 현황

김영지 외(2020)는 K-SDGs 지표 중 아동·청소년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를 선정하여 UNICEF에서 제시한 5대 아동권리영역에 따라 분류한 바 있다. 그런데,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 따른 K-SDGs 지표 개편과정에서 상당수의 지표에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개편안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지표를 재선정하였다. 지표선정은 첫째 김영지 외(2020)에서 아동·청소년 지표로 분류한 것은 유지, 둘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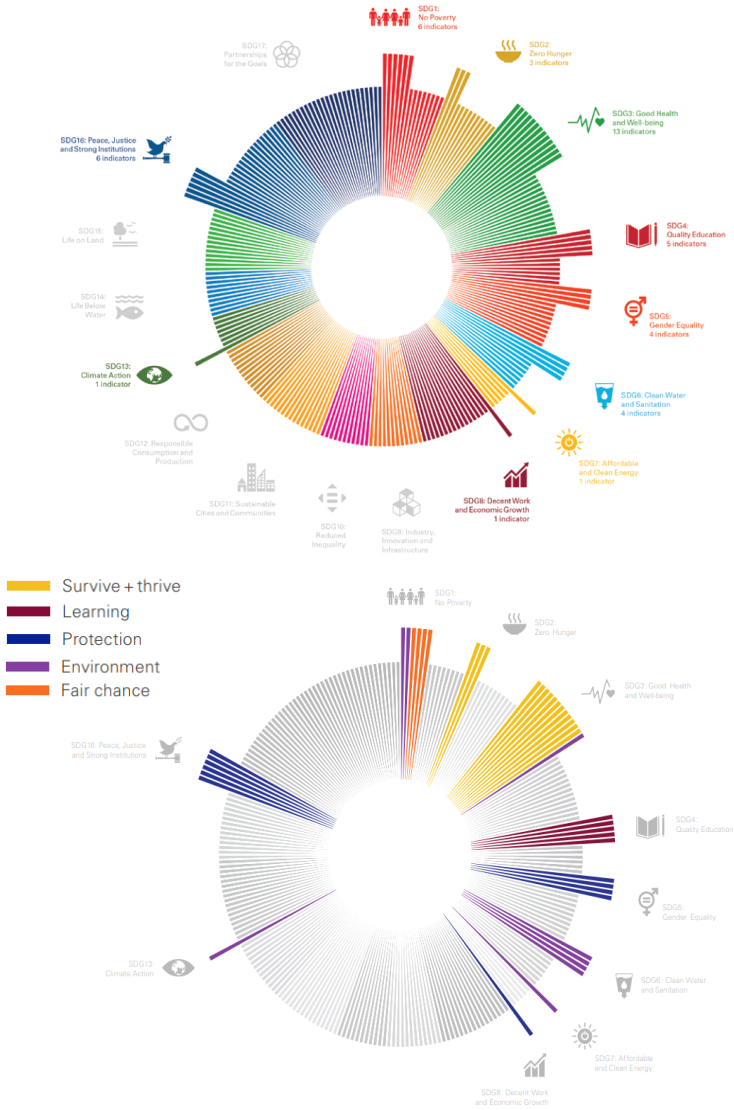
K-SDGs 신규 혹은 변경된 세부목표에 아동·청소년 정책이 포함되었거나, 신규 지표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예컨대,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세부목표 5-1과 5-2 지표인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및 미검거율 지표가 신규 추가되었다.

지표선정 결과, 62개 지표가 아동·청소년 지표로 분류되었다. 이중 K-SDGs 지표 개편 과정에서 신규로 편입된 것은 23개이다. 다음의 <표 II-2-3>은 선정된 62개 지표를 5개 아동권리 영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2018년 지표체계와 비교해 볼 때, 보호영역에서 신규 지표 진입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디지털 관련 이슈(디지털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및 미검거율, 디지털 정보격차 감소율), 성과 관련된 정보 제공 이슈(초중고에서 성교육 수행 비율, 피임실천율), 이주민 수용성 이슈(지자체 외국인 주민 통합조례 제정률,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지표) 등이 포함된다.

표 II-2-3. K-SDGs 지표 내 아동·청소년 지표 현황 (단위: 개, %)

구분	전체 지표 수	아동·청소년 지표 수	5대 권리 영역				
			생존과 발달	학습	보호	환경	형평성
2018 K-SDGs	214	53 (24.8%)	2	23	13	10	5
2021 K-SDGs	236	62 (26.3%)	4	23	20	8	7

* 주: 2018년 수치는 김영지 외(2020)를 참조하여 산출함.



* 출처: UNICEF (2019). Progress for Every Child in the SDG era : Are we on track to achieve the SDGs for Children?. <https://data.unicef.org/resources/progress-for-every-child-in-the-sdg-era-2019/> 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그림 II-2-1. SDGs 아동청소년 지표와 UNICEF 5대 아동권리영역 간 연계도

표 II-2-4. K-SDGs 지표 체계 내 아동·청소년 지표 현황

권리 영역	지표번호	지표	
생존과 발달	3.6.1	출생아 1천 명당 신생아사망률	
	3.6.2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3.6.3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	
	3.8.1	영아사망률	
학습	4.1.1	취학률	
	4.1.2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 2-6 수준 학생비율)	
	4.1.3	국가 차원의 학습성과지표 산출	
	4.2.1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well-being) 측면에서 발달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	
	4.2.2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이용률(%)*	
	4.2.3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4.2.4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	
	4.3.1	학생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4.4.2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4.4.3	청소년 및 성인의 ICT 역량수준	
	4.5.1	모든 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통계 도입	
	4.6.1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비율(PIAAC)	
	4.7.1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주류화 정도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생평가)	
	4.7.2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교육정책 사업 비율	
	4.7.3	교육과정 내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요소 반영 비율	
	4.7.4	교원 중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경험자 비율	
	4.8.1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4.8.3	Wee클래스 설치 비율(%)	
	4.9.1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비율(%)	
	4.10.1	교사 1인당 학생 수	
	4.10.2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	
	4.10.3	특수교사 1인당 특수학생 수	
	4.10.4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	
	보호	5.2.1	가정폭력 실신고건수 및 대응률(%)
		5.2.2	성폭력 발생사건 및 미검거율(%)
		5.2.3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및 미검거율
		5.5.1	성·재생산권과 건강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마련 여부

권리 영역	지표번호	지표
	5.5.2	초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수행한 비율
	5.5.3	피임실천율
	8.5.1	연소 근로자 고용 비율
	10.5.1	이주민(새터민 포함) 권리보장 관련 국제·국내 인권기구 권고 수용률
	10.5.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통합조례 제정률
	10.5.3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지표
	16.1.1	범죄율(살인, 강도, 폭력, 성범죄)
	16.1.2	학교폭력 피해 경험
	16.2.1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수
	16.2.2	실종아동 미발견건수
	16.8.1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존재 여부
	16.9.2	기본적 자유 침해 경험 비율
	16.11.1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
	16.11.2	차별 경험 비율
	16.12.1	사이버 침해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
	16.12.2	디지털 정보격차 감소율
환경	11.2.1	대중교통 수단 부담률
	11.2.2	저상버스 보급률
	11.2.3	자전거 수단부담률
	11.7.1	1인당 도시공원 면적
	11.7.2	공원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
	12.8.1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12.8.2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13.3.2	기후변화 교육 의무화 학교 비율
형평성	5.1.1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5.6.1	성별 스마트폰 보유율
	5.6.2	대학교 여성과학기술인력 졸업 현황
	5.7.1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이견 수용률
	10.2.1	소득 5분위 배율
	10.2.2	소득 1, 2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
	10.3.2	장애인의무고용률

* 주: 굵은 글씨는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서 신규로 진입한 지표

③ UN SDGs와 K-SDGs 비교 분석

〈표 II-2-5〉는 UN SDGs와 K-SDGs 내 아동·청소년 지표를 UNICEF 기준 아동권리 5개 영역별로 비교해 본 것이다. 각 지표 체계 내에서 아동·청소년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K-SDGs(26.3%)가 UN SDGs(15.2%)에 비해 높은 가운데, UN SDGs에서는 생존과 발달, 보호 순으로, K-SDGs에서는 학습, 보호 순으로 지표 수가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지표체계가 갖는 사회적 특성을 보여준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아동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UN SDGs에서 생존권 지표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반면, K-SDGs에서 학습 영역의 아동·청소년지표 개발이 두드러진 것은 교육을 중시하는 한국적 현실이 투영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UN SDGs와 K-SDGs 모두에서 지표 개발이 가장 더딘 영역은 형평성으로 나타났다.

표 II-2-5. UN SDGs 및 K-SDGs 지표 개발 및 개편 현황

구분	전체	아동지표 전체	생존과 발달	학습	보호	환경	형평성
UN SDGs	231	36 (15.6%)	11	4	10	6	5
K-SDGs	236	62 (26.7%)	4	23	20	8	7

* 주: 본문에 있는 영역을 진하게 표시함.

다음으로, UN SDGs와 K-SDGs를 연계해 지표 수준에서 비교 분석해 보았다. 연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첫째 지표 측정 방법이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둘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표는 아니지만 연령에 따라 지표를 세분화하면 아동·청소년 지표 산출이 가능한 경우, 셋째 지표 측정 방법에서 차이가 있으나 유사한 주제인 경우이다. [그림 II-2-2]는 지표연계결과를 제시해 줄 모형이다. 세 층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UN 및 K-SDGs 모두에서 아동·청소년지표로

분류된 경우(A), UN SDGs 아동·청소년 지표와 K-SDGs 아동·청소년 이외 지표와 중첩되는 경우(B)와 반대의 경우(B'), 그리고 UN SDGs 아동·청소년지표가 K-SDGs와 전혀 중첩되지 않는 경우(C)와 반대의 경우(C')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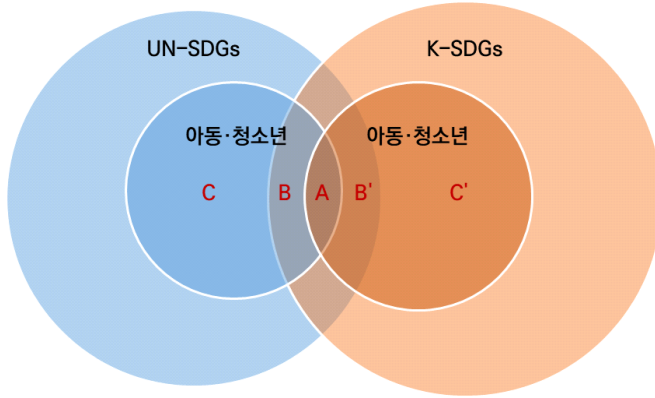


그림 II-2-2. UN SDGs 와 K-SDGs 지표 연계 모형

각 영역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가 해당하는지 <표 II-2-6>과 <표 II-2-7>을 통해 제시하였다. 먼저, 양 지표 체계 모두에서 아동·청소년지표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신생아 사망, 학업성취도, 아동 웰빙, 보육서비스, 아동노동, 아동학대, 아동 출생등록 관련 7개 지표이다.³⁴⁾ 다음으로 B와 B' 영역에 해당되는 지표를 검토해 보자. 먼저 UN SDGs에서는 아동·청소년지표로 분류되었으나, K-SDGs에서는 아동·청소년지표로 분류되지 않은 B 영역에 6개 지표가 포함되었다. 내용은 모성 사망, 국가 빈곤, 사회보장제도, 공공사회복지지출, 말라리아 발생, 안전한 식수 이용이다. 반대로, K-SDGs에서 아동·청소년지표로 분류되었으나, UN SDGs에서는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지 않은 B' 영역에는 ICT 역량수준, 성 및 재생산권에 관한 정보 제공, 세계시민교육, 세분화 통계, 문해력, 스마트폰 보유, 보육교사

34) 양 지표체계 간 용어차이로 인해 측정내용을 중심으로 한 핵심키워드로 제시하고자 함

자격, 직업교육훈련, 대중교통 수단분담, 차별 경험 관련 지표가 담겨있다. K-SDGs 기준으로는 13개 지표인데, UN SDGs 기준으로는 10개 지표이다. 세계 시민교육 관련 4개 지표가 UN SDGs에서는 단일지표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표 II-2-6. UN SDGs와 K-SDGs 지표 연계 결과 1

UN SDGs	K-SDGs
UN SDGs 아동·청소년 지표와 K-SDGs 아동·청소년 지표 공통 영역(A)	
신생아 사망률	출생아 1천 명당 신생아 사망률
(a) 초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시점, (b) 초등학교 말 (c) 중학교 말에 (i) 읽기와 (ii) 수학 분야 최소 숙달수준에 도달한 아동 및 청소년 비율(성별)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 2~6수준 학생 비율)
건강, 학습 및 심리사회적 웰빙 측면에서 정상 발달과정에 있는 24~59개월 아동 비율(성별)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well-being) 측면에서 발달 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
(정규 초등교육 입학연령이 되기 1년 전) 조직화된 학습 참여 비율(성별)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
5~17세 아동노동 인구수와 비율(성 및 연령별)	연소근로자 고용 비율
지난 1개월간 보호자로부터 체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는 1~17세 아동 비율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수
5세 미만 중 행정 당국에 출생 등록된 자의 비율(연령별)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존재 여부
UN SDGs 아동·청소년 지표 영역과 K-SDGs 아동·청소년 지표 외 영역(B)	
모성사망비	모성사망비
국가 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및 연령별)	중위 가치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성별, 연령집단별, 장애집단여부별)
사회보호제도 보장인구 비율(성, 아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신생아, 산업재해자, 빈곤층 및 취약계층별)	고용보험 가입률
빈곤친화적 공공사회지출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및 비율
인구 1천 명당 말라리아 발생건수	인구 십만 명당 말라리아 발생률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
UN SDGs 아동·청소년 지표 외 영역과 K-SDGs 아동·청소년 지표 영역(B')	
정보통신기술(ICT) 능력을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의 비율(기술유형별)	청소년 및 성인의 ICT 역량 수준

UN SDGs	K-SDGs
성 및 생식 보건에 대한 정보와 교육에 대해 15세 이상의 여성 및 남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된 국가의 수	성·재생산권과 건강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 여부
(i) 세계시민교육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 평가 영역에서 주류화된 정도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주류화 정도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생평가)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교육정책 사업 비율
	교육과정 내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요소 반영 비율
	교원 중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경험자 비율
교육지표에 대한 형평지수(성, 도농, 소득분위, 장애상태, 원주민, 분생영향 여부별)	모든 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통계 도입
특정 연령 집단에서 기능적 (a) 문해력과 (b) 수리력이 최소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인구 비율(성별)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 비율
휴대폰 소유 인구 비율(성별)	성별 스마트폰 보유율
최소 자격요건을 갖춘 교사 비율(교육단계별)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
지난 12개월 동안 형식 및 비형식 교육·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 비율(성별)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승객 및 화물 운송량(운송 수단별)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 경험을 보고한 인구 비율	차별 경험 비율

* 주: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아동·청소년 지표로 분류된 지표임.

〈표 II-2-7〉은 UN SDGs와 K-SDGs에서 아동·청소년지표로 선정되었으나, 상대 지표체계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리스트이다. 연계결과, UN SDGs에만 있는 아동·청소년지표는 23개, K-SDGs에만 있는 아동·청소년지표는 42개로 나타났다. 우선, UN SDGs에만 해당되는 지표를 아동권리영역에 따라 살펴보면 예상대로 생존 및 발달 영역지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제빈곤선 미만 인구, 숙련된 의료인력에 의한 출산, 백신접종, 청소년 출산율 등은 이미 국내에서 SDGs 목표치를 달성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K-SDGs에만 있는 아동·청소년 지표의 특성을 보면, 학습과 보호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가 다수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포함된 지표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국내에서는 장애 및 위기학생 통합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의 설치, 특수교사 1인당 특수학생 수, Wee 클래스 설치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주민 권리보장, 외국인 주민 통합조례다문화 수용성 등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표와 아울러, 차별금지법 이행 및 자유 침해 경험 비율 등도 주목해볼 만하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배제 가능성이 높은 인구집단을 포용하고자 하는 정책적 지향점을 감지할 수 있다.

한편, 환경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는 양 지표체계에서 뚜렷한 내용 차이를 보였다. UN SDGs에서는 식수와 재난 등 생존과 직결되는 지표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K-SDGs에서는 환경 교육 관련 지표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미래세대의 환경에 대한 가치관 형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I-2-7. UN SDGs와 K-SDGs 지표 연계 결과 2

UN SDGs에만 있는 아동·청소년 지표 (C)	
생존과 발달	5세 미만 발육부진 아동 비율
	5세 미만 영양불량 아동 비율(저체중 및 과체중별)
	숙련된 의료인력이 참여한 출산 비율
	5세 미만 사망률
	비감염인구 1천 명당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신규 감염자 수(성, 연령 및 주요 인구 특성별) 5세 미만
	여성 청소년 인구 1천 명당 출산율
	필수 보건서비스 보장범위
	국가 정책에 포함된 모든 백신을 접종한 인구의 비율(MCV1)
학습	기본 서비스 제공하는 학교 비율(서비스 유형별)
보호	파트너가 있(었)던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과거의)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연령 및 폭력 형태별)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친밀한 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 부터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연령 및 사건발생 장소별)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를 했던 비율
	15~49세 여아와 여성 중 여성 성기절제를 한 인구 비율(연령별)
	인구 1십만 명당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수(성 및 연령별)
	인구 1십만 명당 분쟁 관련 사망자 수(성, 연령 및 사유별)
	18~29세 인구 중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인구 비율

환경	실내공기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서비스시설, 비누와 물이 있는 손 씻기 시설 이용 인구 비율, 야외 배변 인구 비율
	청정연료 및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 비율
	인구 십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형평성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국제 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연령, 고용상태 및 지역별)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 비율
K-SDGs에만 있는 아동·청소년 지표 (C')	
생존과 발달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
학습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취학률
	국가수준 학습성과지표 산출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학교 내진보강률
	Wee 클래스 설치 비율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 부담 비율
	교사 1인당 학생 수
특수교사 1인당 특수학생 수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	
보호	가정폭력 실신고건수 및 대응률
	성폭력 발생사건 및 미검거율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및 미검거율
	초·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수행한 비율
	피임 실천율
	이주민(새터민 포함) 권리보장 관련 국제·국내 인권기구 권고수용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통합조례 제정률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지표
	범죄율(살인, 강도, 폭력, 성범죄)
	학교폭력 피해 경험
실종아동 미발견건수	
기본적 자유 침해 경험 비율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	
사이버 침해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	
디지털 정보격차 감소율	

환경	저상버스 보급률
	자전거 수단분담률
	1인당 도시공원 면적
	공원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 비중
	인구 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기후변화 교육 의무화 학교 비율
형평성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 이행률
	대학교 여성과학기술인력 졸업 현황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의견 수용률
	소득 5분위 배율
	소득 1, 2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
	장애인의무고용률

(2) SDGs 지표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연계

여기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개편된 SDGs 지표체계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와의 비교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틀을 토대로 구성되었으며, 2021년 기준으로 7개 대분류, 115개 지표 항목으로 이루어져있다.³⁵⁾ 영역별 지표 수 현황을 보면, 제1영역인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11개 지표, 제2영역 ‘시민적 권리와 자유’ 16개, 제3영역 ‘폭력 및 학대’ 11개 지표, 제4영역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1개 지표, 제5영역 ‘장애·기초 보건 및 복지’ 28개 지표, 제6영역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13개 지표, 제7영역 ‘특별보호조치’ 25개 지표이다.

UN SDGs와 K-SDGs에서 도출된 아동·청소년 지표 91개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를 연계하였다. 연계기준은 앞과 동일하게, 지표 측정 방법이 정확히 일치하거나, 연령에 따라 지표를 세분화하면 아동·청소년 지표 산출이 가능한 경우, 지표

35)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초기에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영역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2개 영역씩 나눠 각기 다른 해에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 하에서는 인권지표가 정체성을 갖기 힘들며 중요 인권지표가 누락되어 인권실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2013년부터 4개 아동·청소년 인권영역을 통합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틀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김영지, 김경준, 2013: 4).

측정 방법에서 차이가 있어도 주제가 유사한 경우이다. 연계 결과 3개 지표체계에
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지표는 인권교육, 휴대폰 등 매체 이용 및 디지털 역량,
아동학대, 유아교육, 사망, 비만 등 질병, 아동빈곤, 직업교육이었다(〈표 II-2-8〉).

표 II-2-8.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와 SDGs 아동·청소년 지표 연계 결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2020)	UN SDGs 아동·청소년	K-SDGs 아동·청소년
1-1-3-2. 인권교육 경험 여부	(i) 세계시민교육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평가 영역에서 주류화된 정도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주류화 정도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생평가)
1-2-1-1. 차별받은 경험 7-1-2-2.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차별 경험		차별 경험 비율
2-5-1-1. 매체이용률	휴대폰 소유 인구 비율(성별)	성별 스마트폰 보유율
2-5-2-2. 미디어역량	정보통신기술(ICT) 능력을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의 비율(기술 유형별)	청소년 및 성인의 ICT 역량 수준
3-1-1-1. 가정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3-2-1-1. 아동학대 사례 건수 3-2-1-3. 가정 내 방임정도	지난 1개월간 보호자로부터 체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는 1~17세 아동 비율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수
3-1-1-2. 교사로부서의 폭력피해 경험 3-1-1-3.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학교폭력 피해 경험
3-1-1-4.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사이버 침해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
3-1-2-1.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인구비율	18-29세 인구 중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인구 비율 (여)	
4-1-2-1.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수준	(정규 초등교육 입학연령이 되기 1년 전) 조직화된 학습 참여 비율(성별)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5-1-1-2.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비율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5-2-1-1.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영아사망률
5-2-2-1. 범죄피해율	인구 1십만 명당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 수(성별, 연령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2020)	UN SDGs 아동·청소년	K-SDGs 아동·청소년
5-3-1-3. 정신보건 및 심리 상담 기관 현황		Wee 클래스 설치 비율
5-4-1-4. 아동 청소년의 질병 유형	5세 미만 아동 영양불량 비율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
5-5-2-1. 취약계층아동현황 (빈곤을 포함)	국가 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및 연령별)	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상 대빈곤율(성별, 연령, 장애집단 여부별)
6-1-1-1.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 비 정부부담 비율
6-1-1-2. 교원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
6-2-2-1. 진로교육 현황 6-2-2-2. 직업교육 현황	지난 12개월 동안 형식 및 비형식 교육·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 비율(성별)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 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번호의 맨 앞자리는 대분류 영역을 의미함

SDGs에서 아동·청소년지표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SDGs 지표도 있었다(〈표 II-2-9〉). 자살 및 안전사고 관련 사망, 흡연 및 음주, 범죄 피해 및 두려움 관련 지표가 여기에 해당하였다. 이와 함께, 7영역(특별보호조치)에 해당하는 지표, 예컨대 난민 및 아동노동 관련 지표 연계율이 높았다.

표 II-2-9.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와 SDGs 아동·청소년 이외 지표 연계 결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2021)	UN SDGs	K-SDGs
1-1-1-2.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기구 및 조직현황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5-2-2-2. 지역사회 내 안전에 대한 인식률	살고 있는 동네를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5-2-1-2. 사고 사망률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사망률의 비중
5-3-3-1. 흡연율	연령 표준화한 15세 이상 인구의 현재 흡연율	성인 흡연율
5-3-3-2. 음주율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순 알코올 소비량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량

아동·청소년 인권지표(2021)	UN SDGs	K-SDGs
5-4-2-1. 자살생각과 그 이유	자살률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7-1-1-1. 아동·청소년 난민 수	난민 인구 비율(출신국별)	
7-2-1-2. 소년범죄자의 교도소 수용현황 7-2-2-4. 소년보호사건 항고 및 재항고 접수 건	교정시설 수용자 중 형 미선고자 비율	
7-3-1-1. 청소년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 7-3-1-2.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수준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성, 연령, 직업 및 장애별)	
7-3-1-3. 청소년 실업률 추이	실업률(성, 연령 및 장애별)	

아동·청소년 인권 영역별로 연계현황을 보면, 제3영역(폭력 및 학대), 제5영역(장애·기초 보건 및 복지), 제6영역(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과 연계되는 지표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SDGs와의 연계율이 낮은 영역은 제2영역(시민적 권리와 자유)과 제4영역(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이었다.

3) 시사점

지금까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발전적 제언을 위해 UN 및 K-SDGs 개편 지표안을 검토해보았다. 첫째, UN SDGs와 K-SDGs 지표 내에서 아동·청소년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UNICEF 아동권리영역에 따라 분류한 후 영역 및 지표 수준별로 두 지표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SDGs 지표체계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연계해봄으로써, SDGs 관점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적 특수성과 국제적 보편성 차원에서의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한국적 특수성 차원에서의 시사점이다. UN SDGs 와 비교한 K-SDGs 아동·청소년지표의 특성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서 한국적 특수성이 보장될 분야가 도출될 수 있다. 아동권리영역 중 학습과 보호영역, 그리고 환경영

역의 지표이다. 학습과 보호영역은 K-SDGs에서 UN SDGs에 비해 지표가 발전되었다. 특히 2021년 K-SDGs 지표 체계 개편 과정에서 보호영역에서의 신규지표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다. 디지털, 성 및 재생산권 정보, 다문화 수용 등이 그 예이다. 환경영역은 생존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UN SDGs와 달리 K-SDGs는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 교육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영역들은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이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지표개발역량을 축적하여 국제적 차원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영역 개발 과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UN 및 K-SDGs 양 지표 체계에서 지표 개발이 가장 더딘 영역은 형평성인데, 최근 국내에서 공정성 논쟁이 치열하다. 공정성은 다른 모든 영역에서의 불평등을 양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교육제도와 연관되어 청년층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다³⁶⁾. 해당 영역에 대한 지표 개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국제적 보편성 차원에서의 시사점이다. 아동·청소년인권은 국가를 넘어 국제적 보편성을 띤다. UN SDGs와의 연계분석을 통해 국제비교 가능한 지표를 선정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추가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영역을 발굴할 수 있었다. 첫째, 국제비교 가능한 지표의 후보군은 앞의 <표 II-2-8> 및 <표 II-2-9>에서 UN SDGs와 연계되는 지표가 해당한다. 이 중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지표는 국제비교지표로 즉각 관리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신생아 및 5세 미만 사망률이나 보육시설 이용률, 휴대폰 소유 인구비율 등이 있다. 둘째, UN SDGs와 K-SDGs에서 공통적으로 아동·청소년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지표 중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에 부재한 지표는 향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후보군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 학업성취에서의 최소 숙달수준, 아동노동, 신체적·학습·심리사회적 안녕

36) 문화일보(2020.5.25.). '사회발전 퇴보 가르는 핵심은 공정성... 그 중심엔 교육의 공정성'.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52501031442000001>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측면에서의 아동의 발달,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등과 관련된 지표가 여기에 해당한다. 국제학업성취도(PISA)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소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달성한 학생 비율이 2012년 이래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었다(박영실 외, 2021). 아동노동을 근절하고자 하는 SDGs 목표를 상기한다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에서도 엔터테인먼트 및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아동노동이 확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표 서비스 차원에서의 시사점이다. 지표 개선 및 개발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지표 서비스에 대한 고민도 수반되어야 한다. 데이터 개방과 공유는 지표의 정책적 활용 제고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114개 중 행정통계와 2차 자료 통계를 통해 생산되는 지표 항목은 73개이며,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설문조사를 통해 결과를 생산하는 지표 항목은 42개이다. 모든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데이터에 접근성은 낮은 편이다.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경우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행정통계와 2차 자료 통계를 통해 생산되는 지표 데이터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UNICEF는 여러 지표 소관 기구에서 수집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지표를 집적하여 서비스하는 데이터웨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오픈소스를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SDGs 한국 데이터를 서비스 중이다. 서비스 형태는 그래프, 표, 지도 등 다양하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실시한다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지표 활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2021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개선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구성³⁷⁾

본 연구는 제1기 및 제2기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인권지표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면서 진행되는 연구로, 현재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제2기에 해당하는 2013년도에 지표체계를 전면 개편한 틀을 기본틀로 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2013년과 2015년 유엔 인권지표 연구 시사점 반영, 2015년 유엔 국가보고서 작성지침(CRC/C/58/Rev.3) 변화에 따른 대분류 영역 보완, 2017년 SDGs 지표 논의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부지표 항목과 통계자료원 발굴 및 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구성 원리는 1차적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인권영역과 하위내용(협약조항)을 각각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대분류와 중분류로 적용하고, 다음 단계로 지표체계로서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중분류 단위를 통합하거나 새로운 명칭으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2015: 25-26).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보고서 구성 주요 목차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대분류와 중분류 영역 구성으로 연결되는 형태이다.

유엔 국가보고서 지침을 기반으로 한 <표 II-3-1>의 내용에 매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발표된 일반논평 내용을 참고하여 지표 개선의 시사점을 얻고 있다. 2021년에는 일반논평 제25호(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최종안이 발표되어 이를 추가 검토하였다.

37) 본 연구는 연속과제로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가 개발되어온 과정과 지표의 기본틀은 동일하게 공유하는 내용이므로 2019년과 2020년도 보고서의 해당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고(김영지 외, 2019: 36; 김영지 외, 2020: 34) 2021년도에 공표된 유엔문서인 일반논평 등 새롭게 검토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표 II-3-1.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체계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협약 영역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하 위 내 용 (협약 조항)
1.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협약 4, 42, 44(6)조		1) 당사국의 협약이행의무(제4조) - 유보조항, 입법, 국가행동계획, 담당조직, 예산 배분, 국제협력, 독립적 인권기구, 시민사회와의 협력, 아동권리와 기업(재계) 2) 협약 홍보(제42조) - 협약 및 선택의정서 홍보 및 인권교육, 권고사항 홍보 3) 국가보고서 활용(제44조 6항) • 아동 인권보호와 증진에 있어서 독립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일반논평 제2호, 2002) •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일반 조치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총평(일반논평 제5호, 2003) • 아동권리에 대한 기업의 영향에 대한 국가의무(일반논평 제16호, 2013) •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공공예산(일반논평 제19호, 2016) • 청소년기 아동의 권리 이행(일반논평 제20호, 2016)
2. 아동의 정의 : 협약 1조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1) 국내법상 아동의 정의(제1조) - 만 18세 미만 아동 관련 보호와 권리 관련 연령(남·여아 혼인 최소 연령 포함) • 아동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권리(일반논평 제14호, 2013) • 아동 의견표명권(일반논평 제12호, 2009) • 원주민 아동과 협약상의 권리(일반논평 제11호, 2009)
3. 일반 원칙 : 협약 2, 3, 6, 12조		1) 차별금지의 원칙(제2조) - 성, 장애, 소수인종, 원주민 아동 권리보장 조치 등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 -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 - 입법, 행정, 사법결정 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이행 현황 3) 아동의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제6조) - 사형제도, 아동의 사망과 불법 살해, 자살예방 및 유아살해 퇴치, 기타 생명·생존·발달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4) 아동 견해 존중(의견표명)의 권리(제12조) - 입법, 행정, 사법 결정 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이행 현황
4. 시민적 권리와 자유 : 협약 7, 8, 13-17조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이름과 국적(제7조) 2) 신분의 등록 및 유지(제8조) 3) 표현의 자유와 정보 공유(제13조) 4)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5)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6) 사생활의 보호(제16조)

협약 영역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하 위 내 용 (협약 조항)
		7) 정보접근권 및 유해정보로부터의 보호(제17조) 8) 아동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일반논평 제25호, 2021)
5. 아동에 대한 폭력 : 협약 19, 24(3), 28(2), 34, 37(a), 39조	3. 폭력 및 학대	1) 아동학대와 유기(제19조) 2) 유해한 전통관습 폐지(제24조 3항) 3)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제34조) 4)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제37조 가, 제28조 2항) 5) 피해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6) 아동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 유무 • 신체적 처벌 및 기타 잔혹하거나 굴욕적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8호, 2006) •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13호, 2011) • 유해한 관습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31호) 및 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일반논평 제18호, 2014)
6.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협약 5, 9-11, 18(1,2), 20, 21, 25, 27(4)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 아동의 성장하는 능력에 맞는 가족환경과 부모의 지도(제5조) 2) 부모의 공동 책임, 부모에 대한 지원,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제18조) 3) 부모로부터의 분리(제9조) 4) 가족의 재결합(제10조) 5) 아동 양육비 확보(제27조 4항) 6) 가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제20조) 7) 보호 및 양육 관련 조치의 정기적 심사(제25조) 8) 입양(제21조) 9) 불법 해외 이송 및 미귀환(제11조) 10) 감금된 부모의 자녀와 교도소에서 모와 함께 사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 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 이행(일반논평 제7호, 2005. 수정 2006) • 아동 대안양육을 위한 가이드라인(유엔총회 결의안 64/142, 부록)
7.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 협약 6, 18(3), 23, 24, 26,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1) 장애아동(제23조) 2) 생존 및 발달(제6조) 3) 건강 및 보건서비스(제24조) 4)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복지증진 및 감염병과 비감염성 질환 예방 치료 노력 5) 청소년의 생식보건과 건강한 생활습관 증진 조치 6) 약물남용 보호조치(제33조) 7) 사회보장과 아동보호 서비스 및 시설(제26조, 제18조 3항)

협약 영역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하 위 내 용 (협약 조항)
27(1-3), 33조		8) 기본적 의식주를 포함, 적절한 생활수준(제27조 1~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V/AIDS와 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3호, 2002) • 아동권리협약 맥락에서 청소년 건강과 발달(일반논평 제4호, 2003) • 장애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9호, 2007) • 달성 가능한 최상의 건강을 누릴 아동의 권리(제15호, 2013)
8.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협약 28-31조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1) 직업훈련과 지도를 포함한 교육에의 권리(제28조) 2) 교육의 목적, 교육의 질(제29조) 3) 원주민, 소수집단 아동의 문화권(제30조) 4) 인권교육과 시민교육 5) 휴식, 놀이, 여가, 오락 및 문화예술활동(제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의 목적(일반논평 제1호, 2001) • 유년기 아동권리의 이행(일반논평 제7호, 2005. 수정 2006) • 장애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9호, 2007) • 원주민 아동과 협약상의 권리(일반논평 제11호, 2009) • 휴식, 레저, 놀이, 여가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제17호, 2013)
9. 특별보호 조치 : 협약 22, 30, 32~36, 37(b-d), 38-40조	7. 특별보호 조치	1) 난민아동(제22조), 망명신청을 한 부모 없는 아동, 이주에 의해 영향을 받은 아동 2) 소수민족, 원주민 아동(제30조) 3) 거리에서 생활하는 아동 4) 착취상황하의 아동과 그들의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제32조) - 마약과 향정신성 약물 불법 생산 및 거래에서 아동이용(제33조) -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제34조) - 인신매매, 불법거래, 유괴(제35조) - 기타형태의 착취(제36조) 5) 법에 저촉된 아동, 아동 피해자, 범죄 목격 아동과 청소년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사법 운영(제40조), 특수법원의 존재, 형법적 책임에 대한 최소 연령 적용 여부 - 구속, 수감 등 자유가 박탈된 아동 구금 최소화 및 법적 및 기타 지원 신속 제공 조치(제37조 나~라) - 사형 및 종신형의 금지와 회복적 접근에 기반한 대안처벌 유무(제37조 가) -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 청소년 사법 시스템에 관여하는 모든 전문가 대상 사법처리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청소년 사법 분야 훈련활동

협약 영역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하 위 내 용 (협약 조항)
		<p>6)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를 비롯한 무력분쟁 하의 아동(제3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신국의 외부에 있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대우(일반논평 제6호, 2005) • 청소년 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10호, 2007) • 원주민 아동과 협약상의 권리(일반논평 제11호, 2009) • 거리의 아동(일반논평 제21호, 2017) • 이주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22호, 제23호, 2017.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공동) • 아동사법 체계에서의 아동권리(일반논평 제24호, 2019)
10.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물에 관한 아동권리 협약 선택의정서 후속조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택의정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사항 2)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법적, 정책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와 제3조의 형법 포함 여부, 치외법권 행사 여부 3) 선택의정서 위반에 대한 법인의 책임 수립 4) 선택의정서 위반의 유해 효과 인식 증진 및 예방 5) 선택의정서 위반으로 인한 아동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조치 및 보상 절차 6) 선택의정서 위반 관행 목격아동과 피해아동 보호 조치 7) 선택의정서 위반 예방, 감시, 조사, 기소, 처벌 관련 국제협력 8) 선택의정서 위반에 따른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사회복귀, 본국 송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조치
11.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후속조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택의정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사항 2) 군대 징집 최소연령 3) 자원입대 최소연령 4)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법적, 정책적 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권 행사 여부 5) 아동의 적대행위 가담 여부 6) 적대행위에 모집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조치 7) 아동 망명 신청자와 이민자 중 무력분쟁 영향 아동 식별절차 및 이들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회복 지원 8) 적대행위에 모집되어 전쟁 범죄로 기소된 아동 유무

* 출처 : 김영지 외(2019).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pp.37-40 표에 2021년에는 제25호(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최종안이 발표되어 추가함.

* 원자료: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15). Treaty-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C/58/Rev.3).' 내용을 표로 구성하고 매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발표한 일반논평을 추가하고 있음.

2) 2021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보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보완작업은 매년 전반적인 검토와 영역별 집중검토를 병행해 왔다. 2020년에는 인권 이슈가 집중되었던 특별보호조치 영역을 전면 정비하였고, 올해에는 3영역인 폭력 및 학대의 첫 번째 중분류인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영역을 소폭 정비하였다. 기존의 '3-1-1-1. 폭력피해 경험' 지표 항목 안에 여러 유형의 학교폭력과 부모, 교사로부터의 언어 폭력이 포함되어 있고 신체적 체벌과 관련된 '3-1-3-1. 체벌 경험률'만 별도의 지표(소분류)로 나누어져 부모와 교사의 폭력(언어적, 신체적) 지표가 분리되어 있었던 것을 '3-1-1. 폭력 경험률'로 이동하여 하나의 지표(소분류) 내용으로 통합시켰고 폭력 주체별로 지표 항목을 구분하였다. 분리되어 있었던 유사한 지표를 합치는 목적과 더불어 체벌이 '폭력'임을 명확히 하는 의미도 있다.

표 II-3-2. 2021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수정내역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 항목 변경내역			
			2020년	2021년		
3. 폭력 및 학대	3-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가, 제28조 2항)	3-1-1. 청소년폭력 경험률	3-1-1-1. 폭력피해 경험* - 보호자 및 교사로부터의 정서적(언어) 폭력 경험 -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유형별 피해 경험	3-1-1-1. 가정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3-1-1-2.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3-1-1-2. 교사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3-1-2.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3-1-2-1.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3-1-2-1.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3-1-3. 체벌 경험률	3-1-2-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3-1-2-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3-1-3-1. 체벌 경험률* - 보호자 및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	3-1-3-1.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3-1-3-1.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3-1-4.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3-1-4.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3-1-2-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3-1-2-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삭제 (3-1-1-1, 3-1-1-2 항목으로 이동)	

* 주) *표시는 설문조사항목임.

한편 2020년에 인권 이슈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지표체계 정비는 했으나 가용 자료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었던 특별보호조치 영역의 자료 해결을 위해 2021년에는 관련 행정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내부 행정자료 지원을 받아 결과를 정리하였다. 7개 지표 항목이 이에 해당하며 관련 자료를 생산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법무부, 대검찰청 등의 4개 부서이다.

표 II-3-3. 정부부처 생산 지표 자료원 협력 현황(2021)

지표 항목	내 용	자료원 및 생산기관
5-3-1-1. 보건교사 배치 현황 5-3-1-2. 어린이전문 의료기관(어린이 전문병원)설치현황 5-3-1-3. 정신보건 및 심리상담 기관 현황	표 III-6-13.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 운영 현황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7-1-2-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구금 현황	표 IV-7-14. 이주아동 구금 현황 (2015~2020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7-2-2-1.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선정 수	표 IV-7-22.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조력 횟수(2011~2020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7-2-2-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수용률	표 IV-7-23. 전국 소년분류심사원 연도별 수용 현황(2008~2019년) 표 IV-7-24. 전국 소년원 연도별 수용 현황(2008~2019년)	
7-4-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현황	표 IV-7-48.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2015~2021년)	대검찰청 형사4과

3) 2021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보완 과정을 통해 최종 수정된 2021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7개 대분류, 24개 중분류, 51개 소분류, 115개 지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115개 지표 항목 중 행정통계 및 2차 자료 통계를 통해 생산되는 지표 항목은 73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설문조사로 생산되는 지표 항목은 42개이다(〈표 II-3-4〉).

대분류 영역별로 살펴보면, 제1영역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은 11개 지표 항목, 제2영역 ‘시민적 권리와 자유’는 16개, 제3영역 ‘폭력 및 학대’ 11개, 제4영역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1개, 제5영역 ‘장애·기초 보건 및 복지’ 28개, 제6영역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13개, 제7영역 ‘특별보호조치’ 25개 등으로 2020년 대비 ‘폭력 및 학대’ 영역에서 1개 지표 항목이 늘어났다.

한편 본 연구의 일환으로 발간되는 기초분석보고서 부록 4.의 1)번 자료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세부내역 정보를 제시한 것으로, 지표 항목별로 지표유형, 자료원(생산기관), 생산주기, 조사대상, 자료유형 등을 정리하여 지표체계 세부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지표 항목의 성격을 정량과 정성 지표로 구분한 ‘지표유형’을 보면 149개 항목이 정량지표이고 정성지표는 15개임을 알 수 있다 (지표 항목 결과를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성격의 다중 자료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총 지표 항목 개수를 초과함).

표 II-3-4. 2021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 항목(*표시는 설문조사항목)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1-1. 인권일반 (제4조, 42조)	1-1-1.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	1-1-1-1. 아동·청소년인권 관련 법제도
			1-1-1-2.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1-1-1-3.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1-1-2. 인권에 대한 인식	1-1-2-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1-1-2-2.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가정, 학교, 우리나라전체, 사이버공간)
			1-1-2-3. 인권의식 및 태도*
	1-2. 일반원칙 (제2조, 제3조)	1-2-1. 차별 경험률	1-2-1-1. 차별받은 경험*
			1-2-1-2. 차별해 본 경험*
		1-2-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정도	1-2-2-1. 아동영향평가 실시 현황
			1-2-3-1. 인권교육 실시 현황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1. 의견표명권 (제12조), 표현의 자유 (제13조)	2-1-1.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	2-1-1-1. 가정에서의 참여정도(의사결정 시 <u>보호자의</u> 태도)*
			2-1-2.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
		2-1-2-2.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2-1-2-3.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정도*		
	2-1-3.	2-1-3-1. 아동·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 항목(*표시는 설문조사항목)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	2-1-3-2.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2-1-3-3.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장애 이유*
	2-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	2-2-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2-2-2. 종교자유 보장정도	2-2-1-1.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정도* 2-2-2-1.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가정, 학교)*
	2-3.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2-3-1. 결사·집회 경험률	2-3-1-1. 결사·집회 경험률(경험여부, 피해 경험)*
	2-4.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2-4-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2-4-2. 학생 정보 보호정도	2-4-1-1. 용모·복장 제한 및 소지품 검사 경험률* 2-4-2-1.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u>보호정도</u> (교육비 미납, 징계처분 내용, 개인 성적)*
	2-5. 정보접근권 (제17조)	2-5-1. 매체 접근율 2-5-2. 미디어 리터러시	2-5-1-1. 매체 이용률 2-5-1-2. 유해매체 이용 경험 2-5-2-1. 매체이용 교육 경험 2-5-2-2. 미디어 역량
3. 폭력 및 학대	3-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가, 제28조 2항)	3-1-1. 청소년폭력 경험률	3-1-1-1. <u>가정(부모)에서의 폭력피해 경험*</u> 3-1-1-2. <u>교사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u> 3-1-1-3. <u>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u> 3-1-1-4.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3-1-2.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3-1-2-1.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3-1-2-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3-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19조, 제39조)	3-2-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3-2-1-1. 아동학대 사례건수 3-2-1-2.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3-2-1-3. <u>가정 내 방임 정도*</u>
		3-2-2. 학대 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3-2-2-1. 아동학대사례 보호 건수 및 보호기관 수 3-2-2-2.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4-1. 부모의 지도와 책임 (제5조, 제18조 1항, 2항)	4-1-1. 부모와의 관계	4-1-1-1.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4-1-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4-1-2-1.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 4-1-2-2.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
	4-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제20조)	4-2-1. 입양률	4-2-1-1. 국내외 입양현황과 추이 4-2-1-2. 입양 사후관리
		4-2-2. 대안양육 비율	4-2-2-1. 보호대상아동 현황 4-2-2-2.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 항목(*표시는 설문조사항목)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4-3.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제25조)	4-2-3. 가출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4-2-3-1. 가출청소년 비율과 가출 이유* 4-2-3-2.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 4-2-3-3. 가출시 서비스 이용기관 및 만족도*
		4-3-1. 양육·보호 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	4-3-1-1. 양육·보호 서비스 모니터링
	5-1. 장애(제23조)	5-1-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	5-1-1-1.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 수 5-1-1-2.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비율 5-1-1-3.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5-2. 생존 및 발달 (제6조 2항)
	5-2. 생존 및 발달 (제6조 2항)	5-2-1. 사망률	5-2-1-1.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5-2-1-2. 사고 사망률
		5-2-2. 안전에 대한 인식률	5-2-2-1. 범죄 피해율 5-2-2-2. 지역사회 내 안전에 대한 인식률*
	5-3. 보건서비스 (제24조)	5-3-1.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5-3-1-1. 보건교사 배치 현황 5-3-1-2. 어린이전문 의료기관(어린이 전문병원) 설치현황 5-3-1-3. 정신보건 및 심리상담 기관 현황
			5-3-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5-3-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5-3-3-1. 흡연율 5-3-3-2. 음주율 5-3-3-3. 기타 약물 사용률 5-3-3-4.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5-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제24조)	5-4-1. 신체적 건강	5-4-1-1. 주관적 건강평가* 5-4-1-2. 운동 실천율* 5-4-1-3. 수면시간과 수면부족 이유* 5-4-1-4.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
5-4-2. 정신적 건강			5-4-2-1. 자살 생각과 그 이유* 5-4-2-2. 우울감* 5-4-2-3.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5-4-2-4. 삶의 만족도* 5-4-2-5. 자아존중감* 5-4-2-6. 고민거리 대화상대*
5-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제26조 및 제18조 3항)	5-5-1. 아동·청소년복지 예산	5-5-1-1.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5-5-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	5-5-2-1. 취약계층아동현황(빈곤율 포함) 5-5-2-2.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 항목(*표시는 설문조사항목)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6-1.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6-1-1. 교육기회 보장 정도	6-1-1-1. GDP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6-1-1-2. 교원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6-1-1-3. 학생 1인당 사교육비	
		6-1-2. 학교 부적응률	6-1-2-1. 학업중단을 6-1-2-2. 학업중단 생각과 이유*	
	6-2. 교육의 목표 (제29조)	6-2-1.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	6-2-1-1. 학교생활 만족도*(친구간 존중, 교사의 존중, 수업의 재미, 학교 즐거움)	
		6-2-2. 진로·직업교육	6-2-2-1. 진로교육 현황 6-2-2-2. 직업교육 현황	
	6-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제31조)	6-3-1. 여가·문화·활동 인프라 및 이용만족도	6-3-1-1. 청소년 여가·문화·활동시설 수*	
			6-3-1-2. 청소년 여가·문화·활동 시설 이용만족도*	
		6-3-2.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 정도	6-3-2-1.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도 6-3-2-2.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6-3-2-3. 하루 평균 학습시간*	
	7. 특별 보호 조치	7-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7-1-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구 수	7-1-1-1. 아동·청소년 난민 수 7-1-1-2. 탈북 난민 아동·청소년 수 7-1-1-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수
			7-1-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	7-1-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7-1-2-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차별 경험 7-1-2-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구금 현황
			7-1-3.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7-1-3-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시설 이용률
		7-2. 소년 사법	7-2-1.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현황	7-2-1-1.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시설 수용인원수 7-2-1-2. 소년범죄자의 교도소 수용 현황
			7-2-2. 인권친화적 사법환경	7-2-2-1.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선정 수 7-2-2-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수용률 7-2-2-3.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7-2-2-4. 소년보호사건 항고 및 재항고 접수 건
7-2-3. 회복적 프로그램 (다이버전) 운영			7-2-3-1. 사회 내 처분(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수 7-2-3-2. 조건부 기소유예 비율	
7-3. 경제적 착취		7-3-1. 청소년노동조건 수준	7-3-1-1. 청소년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 7-3-1-2.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수준 7-3-1-3. 청소년 실업을 추이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 항목(*표시는 설문조사항목)
		7-3-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노력	7-3-2-1.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7-3-2-2.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7-3-2-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률
	7-4. 성적 착취	7-4-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수준	7-4-1-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7-4-2.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정도	7-4-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현황	
			7-4-2-1.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현황
			7-4-2-2.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 출처: 연구진 작성

* 주: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2020년도 수정사항이며, 밑줄과 기울임 표시 부분은 2021년도 수정된 내용임.



제3장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분석 : 20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1. 조사개요 및 방법
- 2.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3. 시민적 권리와 자유
- 4. 폭력 및 학대
- 5.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6. 장애, 기초 보건과 복지
- 7.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8. 특별보호조치

1. 조사개요 및 방법

1) 조사목적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402001호)로서 국내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설문조사 결과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115개 지표 항목 중 42개 지표 항목의 결과 생산에 활용되며, 73개 지표 항목은 행정자료 및 타분야 통계 등 2차 자료를 활용하여 결과를 산출한다.

통계청 정기·자체 통계품질진단을 통해 조사계획에서부터 조사방법, 결과물 공표 등 모든 과정에 있어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통해 조사와 결과물 활용에 대한 생명윤리를 준수하고 있다.

본 조사는 반복 횡단조사로서 매년 축적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해당 지표의 다년 간 추이를 분석하고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본 보고서 발간을 통해 기초통계를 공표하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업로드하여 통계 데이터를 공표하고 있다.

38) 3장 2절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은 김영지 선임연구위원이, 3절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과 5절 가정환경과 대안양육은 유설희 전문연구원이, 1절 조사개요 및 방법과 4절 폭력 및 학대 영역의 2) 아동학대 분야와 5절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영역은 최홍일 전문연구원이 집필하였다. 4절의 1) 폭력 분야와 7절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은 이민희 교수가, 8절 특별보호조치 영역은 김진호 교수가 집필하였다.

활용 가능성 높은 원 데이터(Microdata)는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연구자 및 현장 전문가들의 학술 및 연구에 활용되어 국내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 조사대상

(1) 모집단

본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며 조사시점 기준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현재 재학 중인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응답자 특성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표본사례 수는 8,718명이었으며 대상자에 대한 응답자 특성은 다음의 <표 III-1-1>과 같다. 전체 대상자 중 남자 청소년은 4,518명(51.8%)이었으며 여자 청소년은 4,200명(48.2%)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다. 학교급에서 초등학생은 2,932명(33.6%)이었으며, 중학생이 2,876명(33.0%), 고등학생 2,910명(33.4%)으로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등학생, 중학생 순이었다. 지역규모의 경우 대도시 3,321명(38.6%), 중소도시 4,377명(50.2%), 읍면지역 1,020명(11.7%)으로 중소도시 거주 학생이 가장 많았다. 가족 유형 중 양부모가정이 7,778명(89.8%)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부모가정 664명(7.7%), 조손가정 88명(1.0%), 기타 134명(1.5%) 순으로 분석되었다. 학업 성적은 중위권 대상자가 3,702명(42.7%)으로 가장 많았고 상위권 3,053명(35.2%), 하위권 1,918명(22.1%)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제수준의 경우 상위권이라고 인식하는 아동·청소년이 4,996명(57.6%)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위권 2,962명(34.1%), 하위권 716명(8.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1-1. 조사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8,718	100.0
성별	남학생	4,518
	여학생	4,200
학교급	초등학교	2,932
	중학교	2,876
	고등학교	2,910
고교유형 ³⁹⁾	일반계고	2,320
	특성화계고	590
지역규모	대도시	3,321
	중소도시	4,377
	읍면지역	1,02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778
	한부모가정	664
	조손가정	88
	기타	134
학업성적	상	3,053
	중	3,702
	하	1,918
경제적 수준	상	4,996
	중	2,962
	하	716

* 주: 일부 시스템 결측치가 있음. 가족 유형(n=54), 학업성적(n=45), 경제적 수준(n=44)

3) 조사내용

(1) 조사도구 보완 과정

조사품질 향상을 위해 2020년도 조사항목의 검토 및 보완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참고하여 설문지 확정을 완료하였다. 검토 및 보완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20년 설문지와 조사내용, 조사결과, 정책 현황 등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인권

39) 본 연구에서 고등학교 유형은 '일반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계고등학교'로 구분하였다. '일반계고'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 상 특성화고를 제외한 '일반고, 특수목적고 일부(외고, 과학고 등), 자율고'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반고'보다 더 큰 범위의 용어이다. '특성화계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제91조)에서 말하는 '특성화고' 뿐만 아니라 특수목적고 중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를 포괄하여 직업계고 성격의 학교를 통칭하므로 '특성화고'보다 더 큰 개념의 구분이다(김영지 외, 2017: 71; 김영지 외, 2020: 170에서 보완 인용).

지표체계 및 인권실태조사 설문지 검토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삭제, 수정, 보완 등이 필요한 문항들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서면조사도 병행하여 개선방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 과정을 거치는 동시에 설문조사를 수행할 항목들에 대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을 의뢰하였고,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가 없음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확정된 설문항목과 조사 및 연구과정을 대상으로 5월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그 결과 연구계획서상 설문 관련 동의 과정에 적절하며 별도의 윤리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법정대리인 서면동의 면제’ 사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심의결과 승인 되었다(과제번호: NYPI-202105-HR-고유-008-01).

(2) 조사항목 수정 내역

2020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많은 지표 항목에서 수치 변화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조사항목에 대한 COVID-19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20년도의 문항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정확한 의미전달과 가독성을 위해 일부 용어와 문구 등을 보완하였다. 첫째, 초등용과 중·고등용 설문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어려운 이유를 묻는 초등용 문항에서 ‘학교운영, 사회문제 등’을 ‘학교운영이나 사회문제 등’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초등용, 중·고등용 공통으로 인권교육 경험 유무를 묻는 문항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로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초등용, 중·고등용 공통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최근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을 SNS의 예시로 추가하였다.

(3) 성인 대상 인권 실태조사 비교문항 검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부터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승인통계로 국가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한준, 이희길, 정병은, 김대훈, 김월화, 2019). 아동·청소년 대상 조사와 성인 대상 조사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연구진과 협력하여 조사항목을 개발하였다. 총 5개 조사항목(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인식, 아동·청소년 사회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인권교육 경험, 차별 경험)을 공통문항으로 선정하였으며, 아동·청소년과 성인의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한 내용을 본 보고서 제3장 2절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에 기술하였다.

(4) 2021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조사항목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확정된 2021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설문조사항목은 <표 III-1-2>와 같다. 인권 일반과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과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7개 영역별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행정통계 및 관련 2차 자료들을 통해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종합적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파악하였다.

표 III-1-2. 2021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조사항목

조 사 내 용			문항 번호	
			초등용	중·고등용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인권일반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26(1~3)	34(1~3)
		인권 존중정도(가정, 학교, 사회, 사이버 공간)	27(1~4)	35(1~4)
		<i>인권 의식 및 태도</i> (결정 능력, 사회참여, 자치조직, 표현의 자유, 차별-경제적 이유, 성별, 민족/인종)	28(1~7)	36(1~7)
		인권교육 경험	29	37
		인권교육 받은 기관	29-1	37-1

조 사 내 용		문항 번호		
		초등용	중·고등용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인식, 태도, 행동)	29-2(1~3)	37-2(1~3)
	일반원칙	차별 피해 경험 (성별, 학력, 연령, 외모, 경제적 이유, 고향/지역, 종교, 가족 유형, 장애, 인종)	30(1~10)	38(1~10)
차별 가해 경험 (성별, 학력, 연령, 외모, 경제적 이유, 고향/지역, 종교, 가족 유형, 장애, 인종)		31(1~10)	39(1~10)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의견 표명권	의사결정시 <u>보호자의</u> 태도 (가정사, 진학, 진로, 학습)	1(1~2)	1(1~4)
		학생회 <u>활동</u> 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자율성, 자격조건, 활동여건, 의견반영)	-	2(1~4)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	3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정도	2(1)	4(1)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3	5
		<u>아동·청소년</u> 참여권 보장 수준	4	6
		참여 장애 이유	5	7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 정도	-	8(2)
		<u>종교의 자유 보장수준(학교)</u>	-	9, 9-1
		<u>종교의 자유 보장수준(가정)</u>	-	8(1)
	결사 및 집회의 자유	결사·집회 경험률	-	10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	10-1
	사생활의 보호	학교에서의 <u>사생활 보호</u>	-	11(1~3)
		<u>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u>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 징계처분 내용 공개, 시험성적 공개)	-	4(2~4)
	3. 폭력 및 학대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u>가정에서의 폭력피해 경험</u> (체벌, 모욕적인 말·욕설)	6(1~2)
<u>학교에서의 폭력피해 경험</u> (체벌, 모욕적인 말·욕설)			6(3~4)	12(3~4)
<u>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u> (욕설, 구타, 따돌림, 금품갈취, 성추행, 강제 심부름)			7(1~6)	13(1~6)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 경험률			8(1~5)	14(1~5)
성적 피해 경험률 및 도움 제공자			20, 20-1	28, 28-1

조 사 내 용			문항 번호	
			초등용	중·고등용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가정 내 방임 유형 및 정도 (야간시간 방임, 비위생적 의복·침구사용, 질병 무관심, 결석 시 방치, 결석 무관심)	9(1~5)	15(1~5)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가출 경험 여부	10	16
		가출 이유	10-1	16-1
		가출시 서비스 이용 기관 및 이용 만족도	-	16-2, 3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생존 및 발달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거주지역의 안전수준 (범죄, 교통사고)	11(1~2)	17(1~2)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12	18
		운동 실천율	13	19
		수면시간	14	20
		수면부족 여부	15	21
		수면부족 이유	15-1	21-1
		자살에 대한 생각	-	22
		자살 생각 이유	-	22-1
		우울감	16(1~3)	23(1~3)
		자아존중감	16(4~6)	23(4~6)
		행복도	17	24
		행복하지 않은 이유	17-1	24-1
		삶의 만족도	18	25
고민거리 대화상대	19	26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교육에의 권리	학업중단 생각 여부	21	29
		학업중단 생각 이유	21-1	29-1
	교육의 목표	학교생활 만족도 (친구간 존중, 교사의 존중, 수업의 재미, 학교 즐거움)	22(1~4)	30(1~4)
		<i>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i>	23	31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i>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만족도</i>	23-1	31-1
		하루평균 여가활동 시간	24	32
		하루평균 학습시간	25	33
7. 특별보호조치	경제적 착취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아르바이트 경험, 부당처우 경험)	-	27, 27-1(1~9)

* 주: 밑줄과 기울임 표시 부분은 2021년도 수정된 내용임.

4) 조사방법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당시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2020년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층: 학교구분, 집락: 학교/학급)을 통해 총 9,000명을 목표 표본 수로 정하고 표본을 추출하였다.



* 출처: 한국리서치(2021). 2021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 결과보고 자료.

* 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통계청 승인통계로 매년 동일한 표본추출 과정을 수행함.

그림 III-1-1. 표본추출 방법

조사 진행을 위하여 학교표집 후 협조공문과 조사안내문을 발송하고 조사수락을 요청하였으며 거절 시 대체표본을 섭외하였다(원표본 비율은 85.3%로 2020년의 73.0%보다 상승). 또한 COVID-19 등의 상황으로 인해 면접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면접조사 비율은 30% 내외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중 총 340개 학교에서 8,718명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다(〈표 III-1-3〉).

표 III-1-3. 2021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조사개요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전국의 초(4~6학년)·중(1~3학년)·고등학교(1~3학년) 학생
표집틀	2020년 교육통계연보
표본 수	9,000여 명 → 8,718명 최종 조사완료(목표치의 96.9%)
추출학교 수	전국 17개 시·도 354개교 중 340개교 완료
표집방법	층화다단계집락표집
조사시기	2021년 6월~8월
조사방법	학교 방문 집단 면접 조사 및 우편조사 병행(자기기입식 응답)
실시기관	(주)한국리서치

2.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⁴⁰⁾

1) 인권일반

(1) 인권 인프라 구축 정도

①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법·제도⁴¹⁾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은 협약 제4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해 모든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는다(UN, 1989). 정부가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제·개정된 주요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법」 개정(개정 2020.12.29., 시행 2021.3.30.)을 통해 학대 고위험군 아동 예측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보를 토대로 관련기관 간 연계조치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경우만 원가정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개정 및 시행 2021.1.26.)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40) III 장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표II-3-4)’에 따라 지표 항목별 결과를 제시하는 장이다. 지표체계의 대분류(보고서의 ‘절’ 단위)-중분류(‘1’ 단위)-소분류(‘(1)’ 단위)-지표 항목(‘㉠’ 단위) 체계로 지표결과를 기술하였다. 본 과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 추이를 살펴보는 연속과제로, 과거 인용된 행정통계나 타분야 통계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게 되므로 출처 표기 시 연도별 누적이 많아질 경우는 일부 자료 성격에 따라 전년도 인권보고서를 포괄적인 출처로 제시하거나 각 연도 자료명을 대표로 제시하고, 신규로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추가로 기재하였다(김영지 외, 2020: 170). 교차분석표는 지표별로 주요 값을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며 전체 통계결과표는 별권인 「202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연구보고 21-R10-2)」에서 참고할 수 있다.

41) 법률 제·개정 자료는 2021년 7월 2일~8월 30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을 검색하여 법령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진 검토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이나, 일부 주요 개정사항의 경우 하반기에 개정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신설하는 등 현장출동,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 현행법상 아동학대사건 대응 절차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제10조제4항 수사기관 즉시 조사는 1년 후 시행). 또한 같은 해 3월 동법 개정(2021.3.16.)을 통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선정을 의무화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개정 2020.12.8., 시행 2021.6.9.)을 통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13세 미만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청소년이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과 피해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제25조제3항 진술조력은 공포 시 시행). 동법에 대한 2021년 3월 개정(개정 2021.3.23., 시행 2021.9.24.)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심각하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였다.

「학교보건법」 개정(개정 2021.6.8., 시행 2021.12.9.)을 통해 감염병 확산 등으로 증가한 학교 건강관리 필요성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영유아보육법」 개정(개정 및 시행 2021.12.29.)을 통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등이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동법에 대한 2021년 6월 개정(개정 2021.6.8., 시행 2021.12.9.)을 통해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어린이집 위생관리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개정 2021.3.23., 시행 2021.9.24.)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견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원센터 평가 근거를 마련하였다(제6조제1항은 실태조사 주기 단축은 공포 시 시행).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개정 2020.10.20., 시행 2021.4.21.)을 통해 학생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 대상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및 인권침해 발생 시 심리치료와 안전조치를 의무화하였다. 2021년 3월 23일 동법 개정(시행 2024.3.24.)을 통해 학생선수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최저학력 미도달 시 교육부령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하는 경우 학생선수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제11조제4항 합숙훈련 시 인권보호 조치는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개정 2020.12.22., 시행 2021.6.23.)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하고, 학교의 장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학생과 가해자를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다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개정 2020.10.20., 시행 2021.4.21.)을 통해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 등이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할 경우 1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소년 등에 대한 처우 및 징계사항을 심의하는 ‘보호소년 등 처우·징계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두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근신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 등에게도 매주 1회 이상 체육활동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민법」 개정(개정 및 시행 2021.1.26.)을 통해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동 조항이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자녀에 대한 징계와 감화·교정기관 위탁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제924조의2와 제945조의 내용도 정비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도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노동인권 관련 조례는 충청남도를 비롯하여 총 12건이 제정되었으며, 놀 권리 관련 조례는 부천시를 비롯하여 총 10건이 제정되었다.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 관련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하여 총 13건이 제정되었으며, 부모의 채무가 아동·청소년에게 상속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상속채무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서초구를 비롯하여 총 10건이 제정되었다. 아동·청소년 의회 관련 조례는 공주시를 비롯하여 총 11건이 제정되었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는 전북 부안군을 비롯하여 총 13건이 제정되었으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를 비롯하여 총 58건이 제정되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참여 활성화 관련 조례는 목포시를 비롯하여 총 12건이 제정되었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관련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등을 비롯하여 총 10건이 제정되었다. 학생선수 학습권과 인권 보장 관련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등에서 제정되었으며, 학생인권조례는 제주도교육청(제정 및 시행 2021.1.8.) 과 인천광역시교육청(제정 2021.4.12., 시행 2021.9.1.)에서 제정되어 전국적으로 총 7개 지역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게 되었다⁴²⁾.

②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주무부처는 아동권리협약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이며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독립 인권모니터링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행정부의 인권정책 주무부처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법무부 등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별 소관 부처가 25개에 달하는 만큼 모든 부처 정책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김영지 외, 2020: 174-175).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대표적인 기구는 아동정책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평가·조정을 담당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와 2019년 7월에 출범한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인권 전담기구인 아동권리보장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지원업무를 담당한다.⁴³⁾ 2021년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9월 까지 기준).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4월에 1회 서면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안건은 2021년도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현황 보고, 놀이혁신 행동지침 보고 등이었다. 아동정책실무위원회는 2월 대면회의와 4월

42)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명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이다.

43) 아동복지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아동권리 업무 전담기구 기능을 수행하게 된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사업의 종합적 수행기관으로서 아동·청소년 인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Ⅱ장 1장에서 별도로 운영 현황을 소개하였다.

서면회의 등 총 2회 개최되었는데 2월 회의에서는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운영계획,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4월 회의에서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 및 보고 안건을 사전 검토하였다. 전문위원회인 놀이혁신위원회는 놀이혁신 행동지침안에 대한 자문을 안건으로 4월에 1회 서면회의가 진행되었다(아동권리보장원, 2021a, 내부자료).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인권 업무는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2011년부터 위탁 운영하던 청소년 권리 전담기구인 청소년희망센터를 2017년부터 자체 고유사업으로 전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청소년 인권교육, 인권교육 강사 양성, 인권교육 매뉴얼 개발·보급, 청소년 권리침해 예방 및 보호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a: 116-117).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중에 ‘아동권리위원회’는 3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어 아동·청소년 관련 진정사건과 직권조사(장애사건 제외), 아동보호시설·소년원 등 진정사건, 직권·방문조사 등을 실시한다. 2020년에는 총 11회 회의를 개최하여 220건의 안건을 논의하였다(의결사항 166건, 보고사항 54건)(국가인권위원회, 2021.5: 373). 아동·청소년 분야 인권정책 권고 현황을 보면, 2020년에 권고 4건, 의견표명 13건 등 총 17건의 정책권고를 하였으며, 4건의 권고에 대해 2건은 수용(교육부, 고등학교장), 2건은 검토 중(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으로 권고 수용률은 100%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1.7: 27-29).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개선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정책 권고’로 학생상담 시스템 운용(2.7. 일부 수용), 장기결석 학생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3.10. 수용),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6.23. 검토 중), 보호종료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12.24. 검토 중) 등이 있었다. ‘의견표명’으로는 유치원 특수학급 운영 개선(1.29), 인권친화적 학생 복장 관련 규정 마련(4.7), 중학교 전학 시 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의견표명(5.12), 대학수학능

력시험 시 난독증 수험생 편의 미제공 제도 개선(6.12),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반 편성 관련 학교규칙 개선(6.12), 교육 현장에서의 혐오표현 예방(7.2), 학교 전담경찰관의 학생 면담 시 신뢰관계자 동석(7.28),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8.13),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8.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9.3), 교과서의 성소수자 혐오 표현으로 인한 차별(9.22), 학교 밖 청소년의 국회 체험 프로그램 참여 불가에 대한 의견표명(9.22), 소수 종교 학생들에 대한 할랄급식 미제공에 대한 차별(9.22), 비학생 청소년 교통시설 이용상 차별(9.2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10.8), 아동복지시설 CCTV 설치 및 운영(11.17), 흑서기 초등학생 정구대회 개최(11.17), 교사 등의 학생의 양심의 자유 침해 관련 의견표명(12.21) 등이 이루어졌다(국가인권위원회, 2021.5: 381-387).

③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5·6차 권고를 통해 정부가 GDP 대비 아동예산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10),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예산의 범위와 산출기준을 정하기 위한 논의와 관련 공식 통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획재정부의 '나라살림 예산' 자료에서 부처별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사업 항목명을 중심으로 관련성을 판단하여 해당 예산을 합산하여 제시하고 있다(10월 현재 나라살림 예산 전체본 미발간으로 2021년도 예산은 추후 업데이트 예정). 아동인구 수는 다음 해에 공표되는 이전 년도 최종 인구수를 적용하여 1인당 지출비용과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 비율을 재산정하고 있다. 2020년도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비율은 3.6%로 2019년 3.5% 대비 0.1%p 증가하였다(<표 III-2-1>).

표 III-2-1.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변화 추이(2017~2021년)

(단위 : 천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국가 전체 예산(A)	275,010,413,607	301,417,202,896	331,777,014,900	356,568,644,000	380,850,870,000
아동·청소년 예산	47,149,425,794	53,716,467,248	59,401,432,000	60,412,600,000	58,637,500,000
유아·초중등교육	47,149,425,794	53,716,467,248	59,401,432,000	60,412,600,000	58,637,500,000
· 소년사법	22,371,000	23,967,000	23,864,000	27,043,000	-
· 아동복지	245,178,000	899,377,000	2,385,469,000	2,541,321,000	-
· 보육	5,373,451,000	5,505,231,000	5,689,214,000	5,872,783,000	-
(아동폭력예방)	11,773,000	12,251,000	99,909,000	122,217,000	-
· 청소년	87,169,000	77,353,000			
· 소계(B)	52,889,367,794	60,234,646,248	67,558,216,000	68,975,964,000	-
(B)/(A)*100(%)	19.2	20.0	20.3	19.3	-
아동청소년 인구(명)	8,480,447	8,176,335	7,964,880	7,710,946	7,543,244
1인당 지출비용(천원)	6,237	7,367	8,487	8,945	-
GDP(국내총생산)	1,730.4조원	1,782.3조원	1,919.9조원	1,933.2조원	-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 비율(%)	3.1	3.4	3.5	3.6	-

- * 예산 출처: 기획재정부(2017-2020). 나라살림예산. 기획재정부(2021). 나라살림 예산개요.
- * 아동·청소년 예산 산출식: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 기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051항 유아 및 초중등교육 + (소년사법 예산: 1632항 소년보호) + (아동복지 예산: 1300항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2539항 아동수당 지원) + (보육 예산: 3100항 보육지원강화) + (청소년 예산: 2200항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 + 2136항 아동·여성안전정책지원 + 2137항 아동·청소년 성보호정책지원)
- * 전체 국가 예산(A)은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임.
- * 2019년부터 '청소년' 예산에 여성가족부의 '아동폭력예방' 예산을 통합하여 산출함. (여성가족부 가족정책 예산 일부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 아동수당 예산은 2018년도부터 포함됨.
- * 인구 출처: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중 0세~17세 인구수의 합(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outLink=Y&entrType=#SelectStatsBoxDiv에서 2021.10.8. 인출. 아동·청소년 인구는 2021년 9월 기준 수치로, 2021년 최종 아동·청소년 인구수는 2022년에 업데이트됨.)
- * 2020년 예산 및 아동·청소년 인구는 최종 공지된 예산과 인구수(2020.12. 기준)로 업데이트하여 재산출되었음.
- * GDP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http://ecos.bok.or.kr/>에서 2021.10.8. 인출. 2020년도 GDP는 2021년에 발표됨.
- *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 비율(%) 산출식: 아동·청소년 예산(총계)/GDP×100
- * 최근 년도 예산자료에 제시된 기준으로 이전년도 예산수치를 수정함.

(2) 인권에 대한 인식

①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인권에 대한 인식’ 지표(소분류)의 첫 번째 지표 항목인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파악하는 항목이다. 먼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모른다’

32.0%, '이름만 들어봤다' 47.9%,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20.1%로 10명 중 2명 정도가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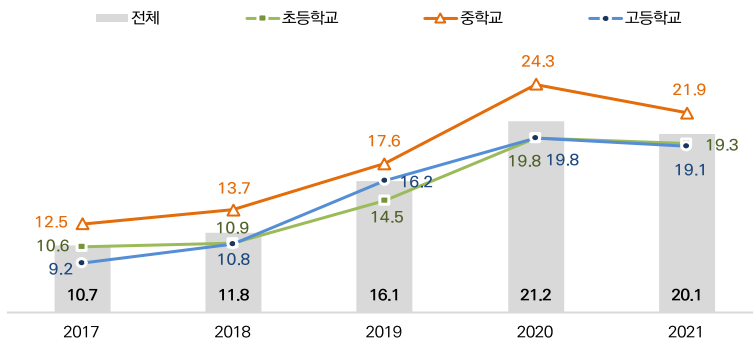
표 III-2-2.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1) 유엔(UN) 아동권리협약

(단위 : %(명))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χ^2	
전체	32.0	47.9	20.1	100.0(8,661)		
성별	남학생	34.5	46.0	19.4	100.0(4,482)	28.079***
	여학생	29.2	49.9	20.8	100.0(4,179)	
	초등학교	40.9	39.9	19.3	100.0(2,917)	
학교급	중학교	25.9	52.2	21.9	100.0(2,849)	180.243***
	고등학교	29.0	51.9	19.1	100.0(2,895)	
	일반계고	28.5	52.1	19.4	100.0(2,307)	
고교유형	특성화계고	31.0	51.0	18.0	100.0(589)	1.570
	대도시	30.5	48.4	21.0	100.0(3,299)	
지역규모	중소도시	32.7	47.8	19.5	100.0(4,349)	6.917
	읍면지역	33.9	46.8	19.3	100.0(1,013)	

*** $p < .001$.

아동권리협약 인지도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20.8%)이 남학생(19.4%)보다, 중학생(21.9%), 초등학생(19.3%), 고등학생(19.1%) 순으로 협약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일수록(대도시 21.0%, 중소도시 19.5%, 읍면지역 19.3%) 인지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III-2-2〉).



* 주: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III-2-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1) 유엔(UN) 아동권리협약(연도별 추이)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률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7년 10.7%에서 2020년 21.2%까지 상승했다가 2021년에 20.1%로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III-2-1).

나. 학생인권조례

교육청 단위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2010년), 광주광역시(2011년), 서울특별시(2012년), 전라북도(2013년), 충청남도(2020년), 제주도(2021년), 인천광역시(2021년) 등 7개 지역에서 제정·운영 중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모른다’ 51.7%, ‘이름만 들어봤다’ 40.7%,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7.6%로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다. 배경변인별로는 남학생(8.1%)이 여학생(7.1%)보다, 학교급이 높을수록(초 6.0%, 중 6.5%, 고 10.4%), 중소도시(8.7%), 읍면지역(8.3%), 대도시(5.9%) 순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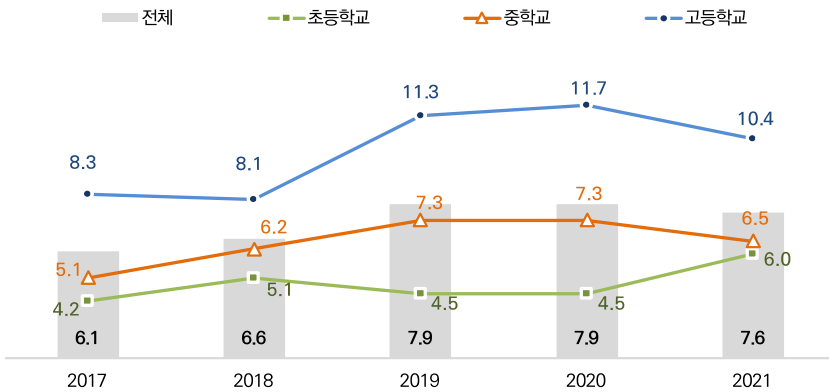
표 III-2-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2) 학생인권조례

(단위 : %(명))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χ^2	
전체	51.7	40.7	7.6	100.0(8,652)		
성별	남학생	52.7	39.2	8.1	100.0(4,477)	9.784**
	여학생	50.6	42.3	7.1	100.0(4,175)	
학교급	초등학교	60.2	33.8	6.0	100.0(2,906)	166.769***
	중학교	50.4	43.2	6.5	100.0(2,850)	
	고등학교	44.5	45.2	10.4	100.0(2,895)	
교교육유형	일반계고	42.7	46.7	10.6	100.0(2,307)	14.071**
	특성화계고	51.3	39.1	9.6	100.0(589)	
지역규모	대도시	54.7	39.4	5.9	100.0(3,295)	31.918***
	중소도시	50.1	41.2	8.7	100.0(4,344)	
	읍면지역	49.0	42.7	8.3	100.0(1,013)	

** $p < .01$, *** $p < .001$.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최근 5년간 인지도를 보면 2017년 6.1%에서 2021년 7.6%까지 6~7%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소폭 증가하다가 2021년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초등학생은 2019~2020년에 감소했다가 2021년에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III-2-2).



* 주: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III-2-2.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2) 학생인권조례(연도별 추이)

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모른다' 22.3%, '이름만 들어봤다' 54.0%,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곳인지도 알고 있다' 23.7%로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배경변인별로는 여학생(25.4%)이 남학생(22.2%)보다, 중학생(25.4%), 고등학생(25.2%), 초등학생(20.6%) 순으로, 그리고 대도시일수록(대도시 26.2%, 중소도시 22.4%, 읍면지역 21.3%)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III-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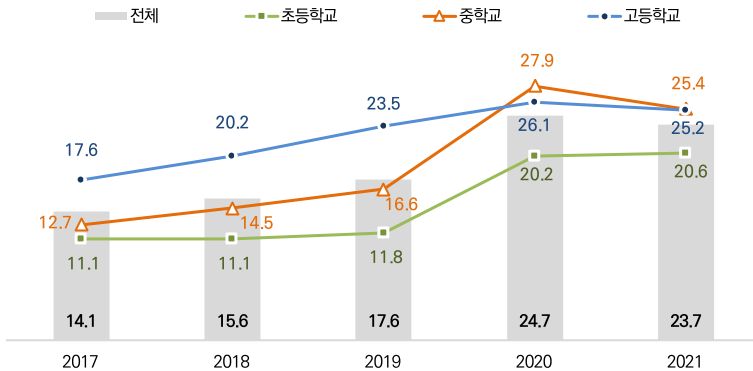
표 III-2-4.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3) 국가인권위원회

(단위 : %(명))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χ^2
전체	22.3	54.0	23.7	100.0(8,654)	37.113***
성별					
남학생	24.8	53.0	22.2	100.0(4,479)	65.665***
여학생	19.6	55.0	25.4	100.0(4,175)	
학교급					10.055**
초등학교	26.8	52.6	20.6	100.0(2,907)	
중학교	21.3	53.3	25.4	100.0(2,850)	
고등학교	18.8	56.0	25.2	100.0(2,897)	21.962***
고교유형					
일반계고	17.8	56.0	26.2	100.0(2,308)	10.055**
특성화계고	22.6	56.1	21.4	100.0(589)	
지역규모					21.962***
대도시	21.8	52.0	26.2	100.0(3,298)	
중소도시	22.1	55.5	22.4	100.0(4,342)	
읍면지역	24.8	53.9	21.3	100.0(1,014)	

** $p < .01$, *** $p < .001$.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14.1%에서 2020년 24.7%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했다가 2021년 23.7%로 소폭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2021년도 응답률은 전년도 대비 소폭 줄어든 반면 초등학생의 인지도는 전년도 대비 미세하게 증가하였다(그림 III-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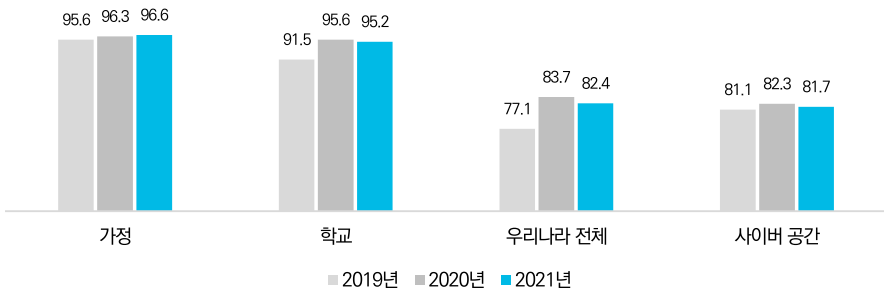


* 주: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III-2-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3) 국가인권위원회(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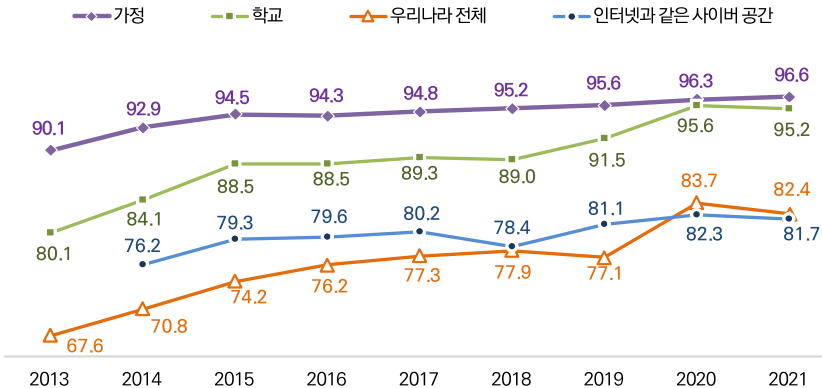
②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가정, 학교, 우리나라 전체, 사이버 공간)

‘인권에 대한 인식’ 지표(소분류)의 두 번째 지표 항목은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로 가정, 학교, 우리나라 전체, 사이버 공간 등에서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는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다. 2021년을 기준으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정(96.6%), 학교(95.2%), 우리나라 전체(82.4%), 사이버 공간(81.7%)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III-2-4).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III-2-4.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전체 영역)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III-2-5.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_전체 영역(연도별 추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응답률 추이를 보면, 가정, 학교, 우리나라, 사이버 공간 등 모든 영역에서 인권 존중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21년에는 전년도 대비, 가정을 제외하고 학교, 우리나라, 사이버 공간 등에서의 인권 존중도가 미세하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학교와 우리나라 전체에서 인권 존중도의 경우 2020년에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반면 가정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 존중도는 변화폭이 완만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III-2-5).

가. 가정

가정에서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96.6%(존중받는 편 39.4%, 매우 존중 57.2%)였으며, 남학생(97.1%)이 여학생(95.9%)보다,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96.7%, 중 96.6%, 고 96.4%), 양부모가정인 경우(양부모가정 96.8%, 한부모가정 93.9%, 조손가정 92.2%), 학업성적(상 97.6%, 중 97.1%, 하 94.0%)과 경제적 수준(상 97.9%, 중 96.2%, 하 88.7%)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존중받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보면(4점 만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급의 경우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가족 유형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양부모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순으로,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인권 존중 정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표 III-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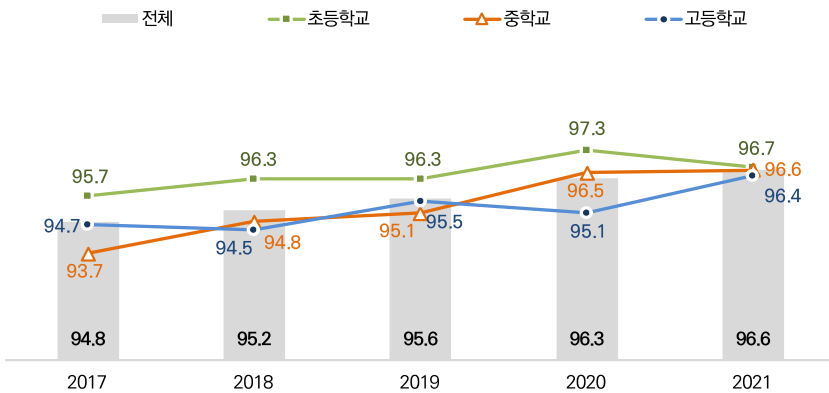
표 III-2-5.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3.53(0.58)	0.6	2.9	39.4	57.2	100.0(8,663)	11.492**	
성별	남학생	3.55(0.57)	0.5	2.3	38.8	58.3		100.0(4,484)
	여학생	3.51(0.60)	0.7	3.4	39.9	56.0	100.0(4,179)	
학교급	초등학교	3.56(0.58)	0.7	2.5	36.3	60.4	100.0(2,919)	22.659**
	중학교	3.51(0.58)	0.5	2.9	41.4	55.2	100.0(2,848)	
	고등학교	3.52(0.59)	0.6	3.1	40.5	55.9	100.0(2,896)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54(0.58)	0.5	2.6	38.8	58.0	100.0(7,729)
	한부모가정	3.41(0.64)	1.0	5.0	45.6	48.3	100.0(658)
	조손가정	3.47(0.67)	1.1	6.7	36.5	55.7	100.0(88)
	기타	3.44(0.67)	2.9	1.4	44.7	51.0	100.0(134)
학업 성적	상	3.63(0.54)	0.3	2.1	31.9	65.7	100.0(3,030)
	중	3.52(0.57)	0.5	2.4	42.1	55.0	100.0(3,680)
	하	3.41(0.64)	1.1	4.9	46.2	47.8	100.0(1,910)
경제적 수준	상	3.63(0.53)	0.2	1.8	32.8	65.1	100.0(4,965)
	중	3.45(0.59)	0.5	3.3	47.3	48.9	100.0(2,943)
	하	3.21(0.72)	3.0	8.3	53.2	35.5	100.0(712)

** $p < .01$, *** $p < .001$.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2-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연도별 추이)

가정에서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는 응답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초등학생은 2020년도 대비 미세하게 감소한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Ⅲ-2-6).

나.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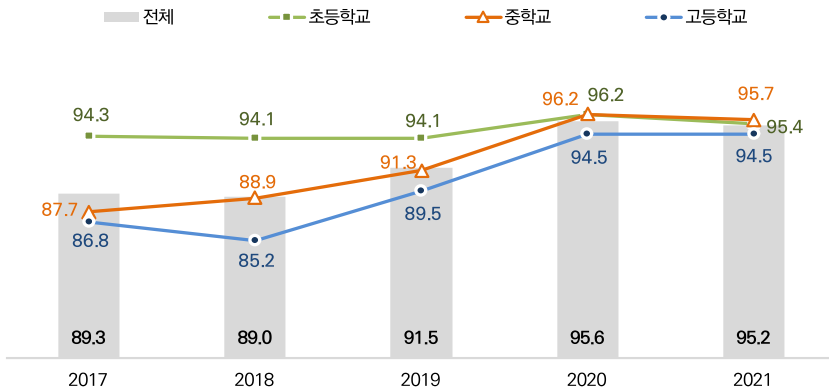
학교에서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95.2%(존중받는 편 55.3%, 매우 존중 39.9%)였으며, 배경변인별로는 여학생(95.8%)이 남학생(94.6%)보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95.7%), 초등학생(95.4%), 고등학생(94.5%) 순으로, 지역규모가 작을수록(대도시 94.7%, 중소도시 95.4%, 읍면지역 95.9%), 가족 유형은 양부모가정(95.5%), 한부모가정(92.6%), 조손가정(91.8%) 순으로, 학업성적(상 96.7%, 중 95.6%, 하 92.1%)과 경제적 수준(상 96.0%, 중 95.2%, 하 90.4%)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인권 존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 평균값을 보면(4점 만점) 여학생인 경우, 학교급이 낮을수록,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중소도시보다, 양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순으로,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인권 존중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표 III-2-6〉).

표 III-2-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3.34(0.59)	0.7	4.1	55.3	39.9	100.0(8,658)	12.679**
성별							
남학생	3.34(0.61)	0.8	4.6	54.1	40.5	100.0(4,482)	28.484***
여학생	3.35(0.57)	0.5	3.6	56.6	39.2	100.0(4,176)	
학교급							13.710*
초등학교	3.38(0.59)	0.4	4.2	52.3	43.1	100.0(2,915)	
중학교	3.34(0.58)	0.6	3.7	56.8	38.9	100.0(2,847)	
고등학교	3.31(0.60)	1.0	4.5	56.9	37.6	100.0(2,896)	27.922**
지역 규모							
대도시	3.35(0.60)	0.7	4.6	53.4	41.3	100.0(3,295)	
중소도시	3.34(0.59)	0.7	3.8	56.6	38.8	100.0(4,347)	210.610***
읍면지역	3.35(0.57)	0.2	3.9	56.2	39.7	100.0(1,016)	
가족 유형							203.462***
양부모가정	3.35(0.58)	0.6	3.8	55.1	40.4	100.0(7,724)	
한부모가정	3.27(0.62)	0.9	6.5	57.7	34.9	100.0(658)	
조손가정	3.22(0.63)	1.4	6.7	60.5	31.3	100.0(88)	
기타	3.31(0.69)	2.3	6.3	49.4	42.1	100.0(134)	210.610***
학업 성적							
상	3.45(0.58)	0.4	2.8	47.6	49.1	100.0(3,028)	
중	3.32(0.57)	0.6	3.8	59.0	36.6	100.0(3,677)	210.610***
하	3.23(0.62)	1.2	6.7	60.5	31.6	100.0(1,910)	
경제적 수준							203.462***
상	3.41(0.59)	0.5	3.6	50.3	45.7	100.0(4,960)	
중	3.28(0.58)	0.8	4.0	61.7	33.5	100.0(2,943)	
하	3.15(0.61)	1.3	8.3	64.4	26.0	100.0(712)	

* $p < .05$, ** $p < .01$, *** $p < .001$.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III-2-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연도별 추이)

학교에서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는다는 응답률은 2017년 89.3%에서 2021년 95.2%로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2019년까지는 초등학생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 2020년부터 중학생의 응답률이 미세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그림 III-2-7).

다. 우리나라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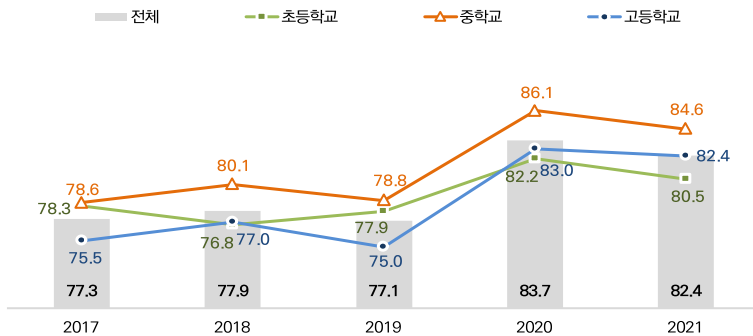
우리나라 전체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82.4% (존중받는 편 59.8%, 매우 존중 22.6%)로 나타났으며, 배경변인별로는 여학생(84.0%)이 남학생(81.1%)보다, 중학생(84.6%), 고등학생(82.4%), 초등학생(80.5%) 순으로, 양부모가정(83.0%)이 한부모가정(78.2%)과 조손가정(74.5%)보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집단별 평균값을 보면(4점 만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중학생(3.04)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각각 3.01)보다, 양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순으로,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인권을 존중받는다고 응답하였다(〈표 III-2-7〉).

표 III-2-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3.02(0.70)	3.2	14.3	59.8	22.6	100.0(8,645)	53.822***	
성별								
남학생	3.01(0.75)	4.2	14.7	56.9	24.2	100.0(4,474)	57.375***	
여학생	3.03(0.66)	2.1	13.9	63.0	21.0	100.0(4,171)		
학교급							22.279**	
초등학교	3.01(0.76)	4.6	14.9	55.5	25.0	100.0(2,901)		
중학교	3.04(0.66)	2.2	13.2	62.8	21.8	100.0(2,848)		
고등학교	3.01(0.68)	2.7	14.9	61.3	21.1	100.0(2,896)	83.22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3(0.70)	3.1	13.9	60.1	22.9	100.0(7,715)		151.172***
한부모가정	2.94(0.71)	3.3	18.6	58.9	19.3	100.0(656)		
조손가정	2.87(0.80)	6.6	19.0	54.9	19.6	100.0(88)		
기타	3.02(0.75)	5.3	10.7	60.7	23.4	100.0(133)	83.224***	
학업 성적								
상	3.10(0.71)	2.9	12.3	57.1	27.6	100.0(3,022)		
중	3.00(0.69)	3.0	14.7	61.2	21.0	100.0(3,671)	151.172***	
하	2.94(0.70)	3.7	16.6	62.0	17.7	100.0(1,908)		
경제적 수준							151.172***	
상	3.08(0.70)	2.5	13.0	58.1	26.3	100.0(4,956)		
중	2.97(0.68)	3.3	14.8	63.1	18.7	100.0(2,934)		
하	2.78(0.74)	6.5	21.5	59.3	12.7	100.0(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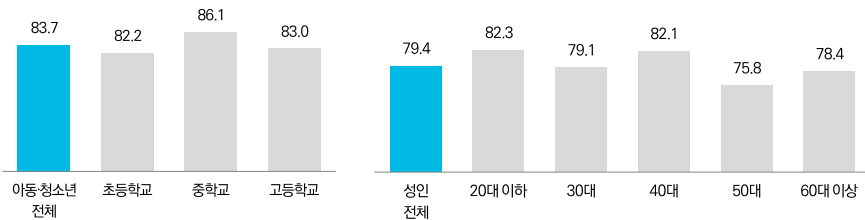
** $p < .01$, *** $p < .001$.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III-2-8.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연도별 추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는다는 응답률은 미세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2017년 77.3%에서 2021년 82.4%로 상승하였다. 2021년에는 모든 학교급에서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는데 2020년과 동일하게 초등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그림 III-2-8).



* 출처: 김영지 외(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준, 정병은, 장미혜, 김대훈, 김월화 (2020). 2020 국가인권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 주: 1)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2) 2020 국가인권실태조사는 2020년 8월에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 면접조사로 실시되었으며, 최종 응답한 사례 수는 14,525명임.
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는 익년 1월 공표, 국가인권실태조사는 익년 6월에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당해에 데이터 비교가 어려우므로 전년도인 2020년도 결과로 작성함.

그림 III-2-9.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 아동·청소년과 성인 비교

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실태조사'가 아동·청소년과 성인의 인권 관련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설정한 공통문항 중에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2020년도 응답률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은 83.7%, 성인의 경우 79.4%가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았다고 응답하여 청소년이 성인보다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III-2-9).

라. 사이버 공간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해 81.7%(존중받는 편 59.0%, 매우 존중 22.7%)의 아동·청소년이 존중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로는 여학생(84.8%)이 남학생(78.9%)보다,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83.0%, 중 82.6%,

고 79.6%), 대도시일수록(대도시 82.6%, 중소도시 81.7%, 읍면지역 78.7%), 학업성적(상 83.7%, 중 81.9%, 하 78.4%)과 경제적 수준(상 82.6%, 중 80.6%, 하 73.1%)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는다고 응답하였다(〈표 III-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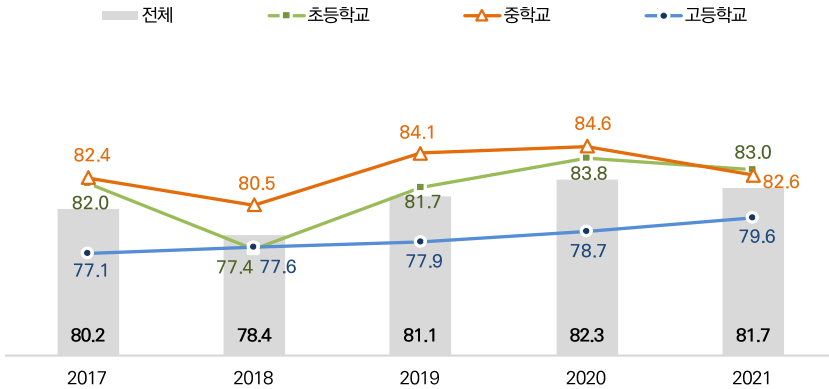
표 III-2-8.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2.99(0.75)	5.2	13.0	59.0	22.7	100.0(8,635)	76.304***
성별							
남학생	2.95(0.80)	7.0	14.2	56.0	22.9	100.0(4,469)	109.634***
여학생	3.04(0.69)	3.4	11.8	62.2	22.6	100.0(4,166)	
학교급							17.518**
초등학교	3.05(0.80)	6.3	10.7	54.8	28.2	100.0(2,895)	
중학교	2.99(0.71)	4.2	13.2	61.8	20.8	100.0(2,845)	
고등학교	2.93(0.74)	5.2	15.3	60.5	19.1	100.0(2,896)	90.169***
지역 규모							
대도시	3.02(0.76)	5.2	12.2	58.5	24.1	100.0(3,282)	
중소도시	2.99(0.75)	5.2	13.1	59.1	22.6	100.0(4,338)	135.401***
읍면지역	2.92(0.75)	5.7	15.6	60.0	18.7	100.0(1,015)	
학업 성적							135.401***
상	3.07(0.76)	4.8	11.5	55.6	28.1	100.0(3,018)	
중	2.97(0.74)	5.2	12.8	61.5	20.4	100.0(3,669)	
하	2.91(0.76)	5.9	15.7	59.9	18.5	100.0(1,906)	
경제적 수준							
상	3.06(0.75)	4.7	11.6	57.0	26.6	100.0(4,950)	
중	2.93(0.73)	5.6	13.8	62.3	18.3	100.0(2,934)	
하	2.79(0.76)	7.4	19.5	59.7	13.4	100.0(710)	

*** $p < .001$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증감을 반복하며 2017년 80.2%에서 2021년에 81.7%로 상승하였는데, 2021년(81.7%) 응답률은 전년도(82.3%)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사이버 공간에서 인권을 존중받는다 는 응답률은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꾸준히 높았으나 2021년에는 초등학생의 응답률이 중학생보다 미세하게 높았다(〈그림 III-2-10〉).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III-2-10.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연도별 추이)

③ 인권의식 및 태도

‘인권의식과 태도’ 지표 항목은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 능력, 사회참여 필요성, 자치조직,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문항과 경제적 수준, 성별, 민족에 따른 차별 관련 문항 등 총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의 의사결정 능력과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2개의 문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 실태조사’와 공통문항으로 설정하여 아동·청소년과 성인의 인식을 비교하였다(〈표 III-2-9〉).

아동·청소년의 주체적 능력에 대해 69.7%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청소년의 주체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질문이므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값을 합산), 배경변인별로는 여학생(73.7%)이 남학생(65.8%)보다, 학교급이 높을수록(초 60.9%, 중 72.8%, 고 75.4%),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71.9%)가 높은 경우(상 70.2%, 중 68.3%)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상 68.1%, 중 71.9%, 하 72.5%) 아동·청소년의 주체적 결정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표 III-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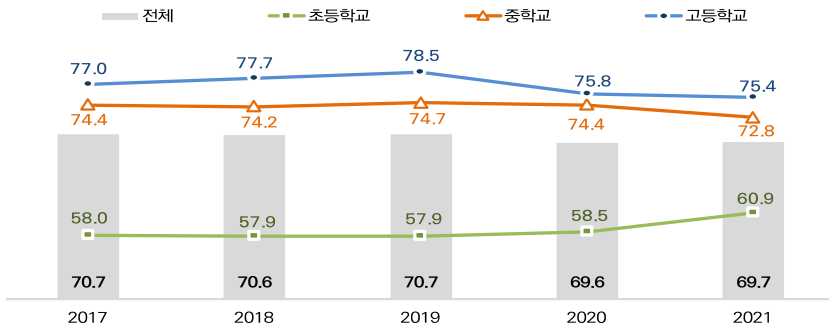
표 III-2-9. 인권의식 및 태도_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
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09(0.83)	26.0	43.7	26.1	4.2	100.0(8,665)	66.614***
성별							
남학생	2.15(0.84)	24.2	41.6	29.2	5.0	100.0(4,486)	208.765***
여학생	2.02(0.80)	27.8	45.9	22.8	3.4	100.0(4,178)	
학교급							31.622***
초등학교	2.24(0.88)	22.0	38.9	31.8	7.3	100.0(2,918)	
중학교	2.02(0.78)	27.2	45.6	24.8	2.4	100.0(2,850)	
고등학교	1.99(0.79)	28.7	46.7	21.7	2.9	100.0(2,897)	30.893***
학업 성적							
상	2.07(0.84)	27.4	42.8	25.2	4.6	100.0(3,028)	
중	2.13(0.82)	23.4	44.9	27.4	4.4	100.0(3,682)	100.0(711)
하	2.02(0.81)	28.9	43.0	24.9	3.1		
경제적 수준							
상	2.12(0.84)	25.2	42.9	27.1	4.8	100.0(4,968)	100.0(711)
중	2.05(0.80)	26.3	45.6	24.6	3.5	100.0(2,943)	
하	1.99(0.81)	30.6	41.9	25.2	2.3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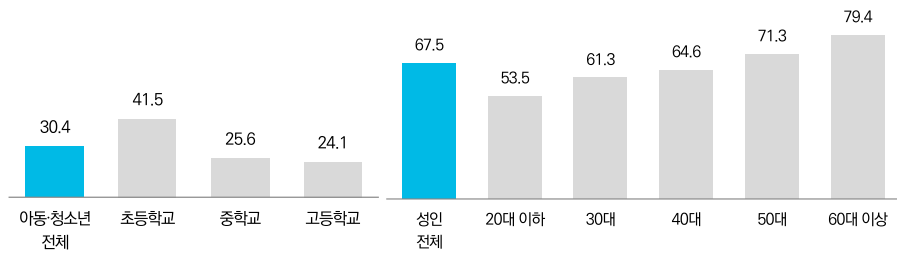
아동·청소년의 주체적 결정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률 추이를 보면 2017년 70.7%에서 2021년 69.7%로 미세하게 감소하였다. 전년도 대비 2021년 응답값을 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소폭 감소한 반면, 초등학생은 2020년 58.5%에서 2021년 60.9%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III-2-11).



* 주: '청소년의 주체적 결정 능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응답률('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의 합계)로 그래프 제시(단위: %)

그림 III-2-11. 인권의식 및 태도_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비동의(연도별 추이)

2020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와 성인 대상 조사결과인 ‘국가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아동·청소년은 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성인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아동·청소년 30.4%, 성인 67.5%가 동의하여 아동·청소년의 주체적 결정 능력에 대해 성인이 더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성인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아동·청소년의 주체적 결정 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20대 이하 53.5%, 60대 이상 79.4%)(그림 III-2-12).



* 출처: 김영지 외(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준 외(2020) 2020 국가인권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 주: 1) ‘매우 동의한다’와 ‘동의하는 편이다’의 합계(단위: %)
2) 2020 국가인권실태조사는 2020년 8월에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 면접조사로 실시되었으며, 최종 응답한 사례 수는 14,525명임.
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는 익년 1월 공표, 국가인권실태조사는 익년 6월에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당해에 데이터 비교가 어려우므로 전년도인 2020년도 결과로 작성함.

그림 III-2-12.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아동·청소년과 성인 비교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가 필요하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87.7%(그런 편 54.9%, 매우 32.8%)로 나타났으며, 배경변인별로는 여학생(90.2%)이 남학생(85.4%)보다, 학교급이 높을수록(초 83.1%, 중 87.4%, 고 92.6%),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89.9%, 중 87.1%, 하 85.9%),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상 87.5%, 중 88.4%, 하 87.8%) 아동·청소년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표 III-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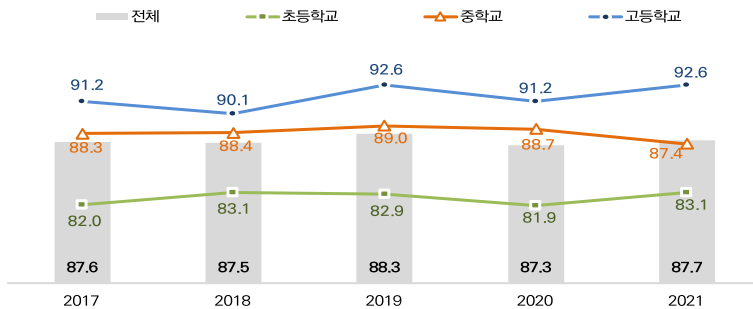
표 III-2-10. 인권의식 및 태도_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18(0.71)	2.8	9.5	54.9	32.8	100.0(8,660)	65.821***
성별							
남학생	3.12(0.73)	3.5	11.1	55.5	29.9	100.0(4,484)	156.090***
여학생	3.24(0.68)	2.1	7.7	54.3	35.9	100.0(4,177)	
학교급							153.987***
초등학교	3.13(0.79)	4.3	12.6	49.1	34.0	100.0(2,915)	
중학교	3.14(0.69)	2.4	10.2	58.0	29.4	100.0(2,849)	
고등학교	3.26(0.64)	1.7	5.7	57.6	35.0	100.0(2,897)	33.217***
학업 성적							
상	3.29(0.70)	2.1	8.0	48.7	41.2	100.0(3,026)	
중	3.14(0.70)	2.8	10.1	57.8	29.3	100.0(3,679)	100.0(1,912)
하	3.09(0.71)	3.7	10.3	59.3	26.6		
경제적 수준							100.0(4,966)
상	3.20(0.72)	2.7	9.8	52.6	34.9		
중	3.16(0.68)	2.6	9.1	58.5	29.9	100.0(2,939)	
하	3.15(0.73)	4.1	8.2	56.4	31.4	100.0(712)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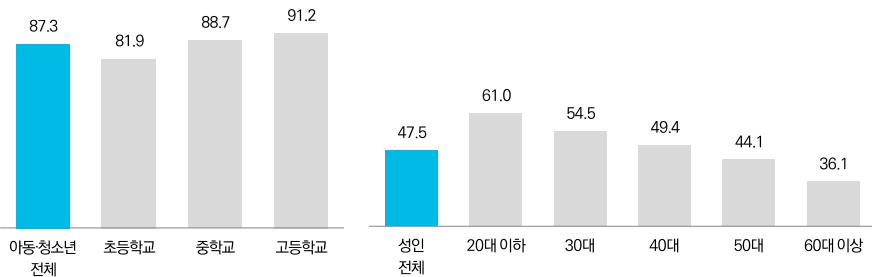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률 추이를 보면, 2017년 이후로 전체적으로 87% 이상의 비율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다. 2021년 응답률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사회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초등학교생과 고등학교생의 비율은 소폭 증가한 반면, 중학생의 응답률은 2020년 88.7%에서 2021년 87.4%로 감소하여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그림 III-2-13).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II-2-13. 인권의식 및 태도_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연도별 추이)

2020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와 성인 대상 조사결과인 ‘국가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한 아동·청소년은 87.3%인 것에 비해 성인은 47.5% 만이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청소년의 결정 능력에 대한 응답과 마찬가지로 성인의 경우 연령대가 높을수록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20대 이하 61.0%, 60대 이상 36.1%)(그림 III-2-14).



* 출처: 김영지 외(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준 외(2020). 2020 국가인권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 주: 1)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2) 2020 국가인권실태조사는 2020년 8월에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 면접조사로 실시되었으며, 최종 응답한 사례 수는 14,525명임.
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는 익년 1월 공표, 국가인권실태조사는 익년 6월에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당해에 데이터 비교가 어려우므로 전년도인 2020년도 결과로 작성함.

그림 III-2-14.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과 성인 비교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치조직의 의의와 관련하여 청소년 자치조직이 학교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87.7%(그런 편 59.6%, 매우 28.1%)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는 여학생(89.1%)이 남학생(86.4%)보다, 중학생인 경우(중학생 88.8%, 초등 및 고등학생 각각 87.1%), 학업성적(상 89.7%, 중 87.5%, 하 85.1%)과 경제적 수준(상 88.9%, 중 87.4%, 하 82.0%)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아동·청소년 자치조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급별 평균 차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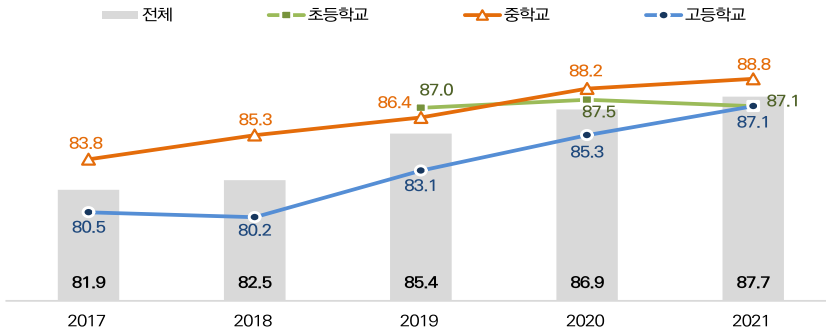
보면(4점 만점) 학교급이 낮을수록 아동·청소년 자치조직이 학교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초 3.18, 중 3.12, 고 3.09)(〈표 III-2-11〉).

표 III-2-11. 인권의식 및 태도_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13(0.69)	2.9	9.4	59.6	28.1	100.0(8,657)	35.710***
성별							
남학생	3.09(0.71)	3.9	9.8	59.8	26.6	100.0(4,484)	86.605***
여학생	3.17(0.66)	1.9	9.0	59.4	29.7	100.0(4,173)	
학교급							204.324***
초등학교	3.18(0.73)	3.2	9.7	53.3	33.8	100.0(2,912)	
중학교	3.12(0.65)	2.4	8.7	63.5	25.3	100.0(2,848)	
고등학교	3.09(0.68)	3.2	9.8	62.0	25.1	100.0(2,897)	98.616***
학업 성적							
상	3.24(0.71)	2.9	7.4	52.6	37.1	100.0(3,026)	
중	3.09(0.66)	2.5	9.9	63.4	24.1	100.0(3,675)	204.324***
하	3.03(0.68)	3.6	11.3	63.8	21.3	100.0(1,912)	
경제적 수준							98.616***
상	3.18(0.69)	2.7	8.4	57.1	31.8	100.0(4,963)	
중	3.08(0.67)	2.9	9.8	63.7	23.7	100.0(2,939)	
하	2.98(0.71)	4.1	13.9	61.5	20.5	100.0(712)	

*** $p < .001$.



* 주: 1)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2) 초등학교 대상 조사는 2019년부터 추가됨.

그림 III-2-15. 인권의식 및 태도_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연도별 추이)

아동·청소년 자치조직의 의의에 대한 응답률은 2017년 81.9%에서 2021년 87.7%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급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응답률은 소폭 상승한 반면, 초등학생은 미세하게 감소하였다(2020년 87.5% → 2021년 87.1%)(그림 III-2-15).

의견표명권에 대해 96.2%(그런 편이다 33.8%, 매우 그렇다 62.4%)의 아동·청소년이 표현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배경변인별로는 여학생(97.2%)이 남학생(95.3%)보다, 학교급이 높을수록(고 96.8%, 중 96.5%, 초 95.5%), 학업성적(상 97.2%, 중 96.0%, 하 95.6%)과 경제적 수준(상 96.6%, 중 96.3%, 하 94.3%)이 높을수록 의견표명권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표 III-2-12)).

표 III-2-12. 인권의식 및 태도_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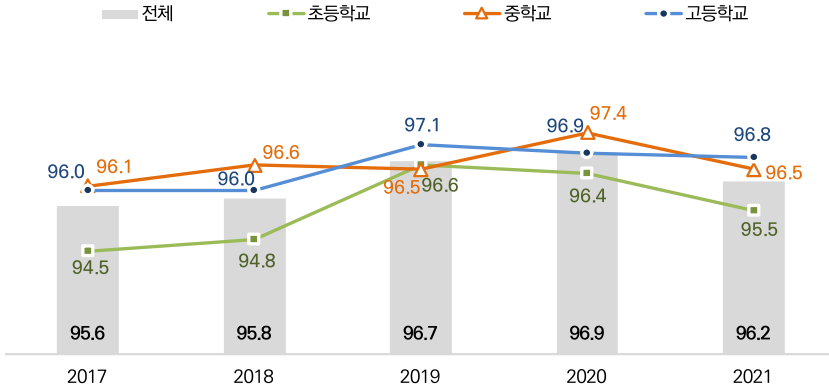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57(0.61)	1.2	2.5	33.8	62.4	100.0(8,653)	97.790***
성별							
남학생	3.51(0.64)	1.7	2.9	37.6	57.7	100.0(4,480)	120.592***
여학생	3.64(0.56)	0.7	2.1	29.7	67.5	100.0(4,172)	
학교급							151.303***
초등학교	3.63(0.62)	1.6	3.0	26.3	69.2	100.0(2,915)	
중학교	3.54(0.59)	0.8	2.7	37.8	58.7	100.0(2,846)	
고등학교	3.55(0.60)	1.3	1.9	37.5	59.3	100.0(2,892)	56.614***
학업 성적							
상	3.67(0.56)	1.0	1.8	26.2	71.0	100.0(3,026)	
중	3.53(0.61)	1.0	3.0	37.5	58.5	100.0(3,677)	100.0(1,906)
하	3.51(0.64)	1.8	2.6	38.8	56.8	100.0(1,906)	
경제적 수준							
상	3.61(0.59)	1.1	2.3	31.0	65.6	100.0(4,961)	100.0(2,937)
중	3.54(0.61)	1.1	2.5	37.8	58.5	100.0(2,937)	
하	3.50(0.66)	1.8	3.9	37.1	57.2	100.0(712)	

*** $p < .001$.

의견표명권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률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7년 95.6%에서 미세하게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2021년도 응답률은 모든 학교급에서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볼 수 있다([그림 III-2-16]).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II-2-16. 인권의식 및 태도_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연도별 추이)

‘인권 의식 및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다음 질문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 성별, 민족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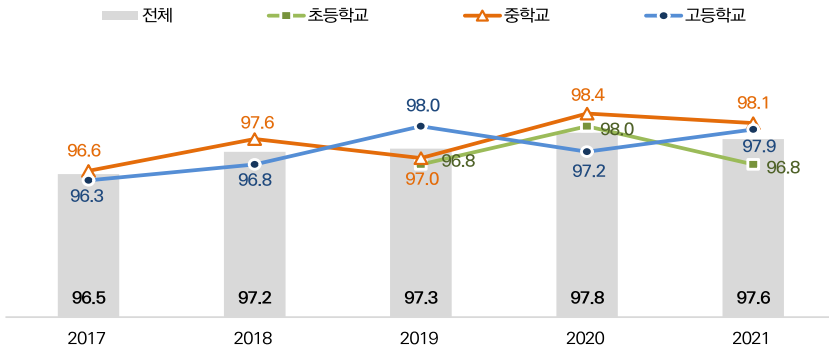
먼저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질문에 대해 97.6%(그런 편이다 19.1%, 매우 그렇다 78.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로는 여학생(98.6%)이 남학생(96.7%)보다, 중학생(98.1%), 고등학생(97.9%), 초등학생(96.8%) 순으로, 학업성적(상 97.8%, 중 97.5%, 하 97.4%)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중’인 경우(중 97.9%, 상 97.6%, 하 96.3%)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 평균 차이를 보면(4점 만점),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생 3.79,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각 3.72),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 3.77, 중 3.72, 하 3.71) 인권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표 III-2-13>).

표 III-2-13. 인권의식 및 태도_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75(0.53)	1.2	1.2	19.1	78.5	100.0(8,653)	136.589***	
성별	남학생	3.68(0.59)	1.8	1.6	23.1	73.6		100.0(4,480)
	여학생	3.82(0.45)	0.6	0.8	14.9	83.7		100.0(4,173)
학교급	초등학교	3.79(0.55)	1.9	1.4	12.1	84.7	100.0(2,911)	155.035***
	중학교	3.72(0.52)	0.8	1.1	23.1	75.0	100.0(2,846)	
	고등학교	3.72(0.53)	1.0	1.2	22.3	75.6	100.0(2,895)	
학업 성적	상	3.80(0.50)	1.2	1.0	14.4	83.4	100.0(3,024)	76.752***
	중	3.73(0.55)	1.3	1.2	20.7	76.8	100.0(3,674)	
	하	3.70(0.55)	1.1	1.5	23.5	73.9	100.0(1,912)	
경제적 수준	상	3.77(0.53)	1.4	1.0	16.7	80.9	100.0(4,961)	62.143***
	중	3.72(0.52)	0.8	1.3	23.0	74.9	100.0(2,938)	
	하	3.71(0.60)	1.8	1.9	19.9	76.4	100.0(712)	

*** $p < .001$.



* 주: 1)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2) 초등학교 대상 조사는 2019년부터 추가됨.

그림 III-2-17. 인권의식 및 태도_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연도별 추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2017년 96.5%에서 2020년 97.8%까지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는 97.6%로 약간 감소하였다. 학교

급별로는 소폭의 증감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2020년도에 비해 응답률이 감소한 반면 고등학생은 소폭 증가하였다(그림 III-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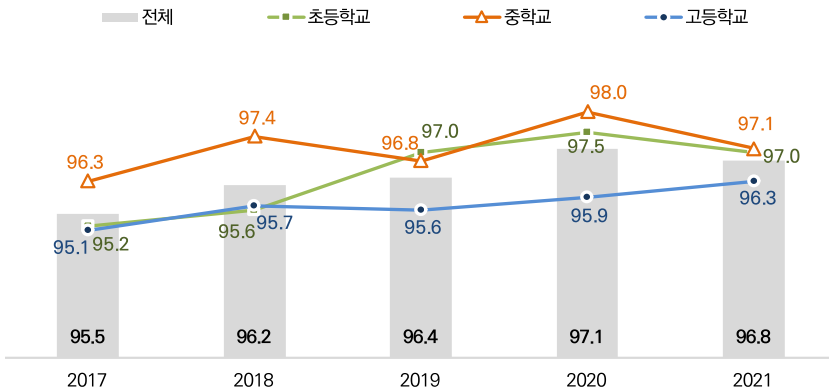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96.8%(그런 편 21.8%, 매우 75.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배경변인별로는 여학생(97.9%)이 남학생(95.7%)보다, 중학생(97.1%)이 초등학생(97.0%)과 고등학생(96.3%)보다 양성평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학교급이 낮을 수록(초 3.77, 중 3.69, 고 3.67), 학업성적(상 3.74, 중 3.71, 하 3.6)과 경제적 수준(상 3.73, 중 3.68, 하 3.62)이 높을수록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표 III-2-14)).

표 III-2-14. 인권의식 및 태도_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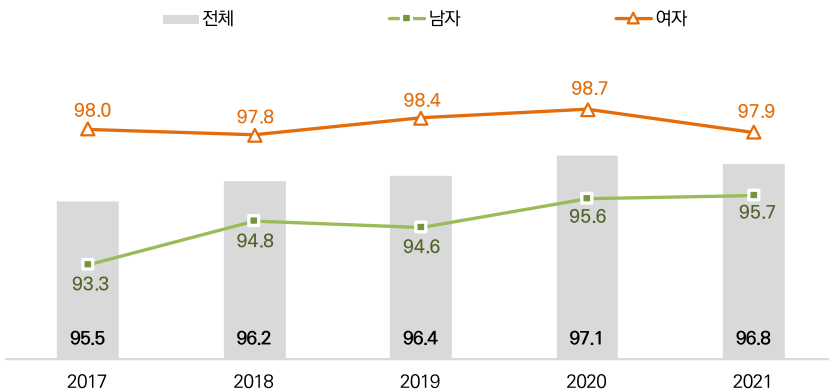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71(0.56)	1.1	2.1	21.8	75.0	100.0(8,659)	154.413***
성별							
남학생	3.64(0.62)	1.6	2.7	26.2	69.5	100.0(4,484)	97.683***
여학생	3.78(0.49)	0.6	1.5	17.0	80.9	100.0(4,176)	
학교급							44.822***
초등학교	3.77(0.54)	1.2	1.8	16.1	80.9	100.0(2,917)	
중학교	3.69(0.55)	0.6	2.3	24.8	72.3	100.0(2,847)	
고등학교	3.67(0.60)	1.5	2.2	24.6	71.7	100.0(2,896)	58.003***
학업 성적							
상	3.74(0.54)	1.1	1.9	18.6	78.4	100.0(3,027)	
중	3.71(0.55)	1.0	1.8	22.7	74.6	100.0(3,677)	100.0(712)
하	3.65(0.60)	1.3	2.8	25.2	70.6	100.0(1,912)	
경제적 수준							100.0(712)
상	3.73(0.55)	1.0	2.1	19.3	77.6	100.0(4,963)	
중	3.68(0.56)	1.1	1.6	25.3	72.0	100.0(2,941)	
하	3.62(0.65)	2.0	3.5	24.8	69.8	100.0(712)	

*** $p < .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II-2-18. 인권의식 및 태도_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학교급별)(연도별 추이)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II-2-19. 인권의식 및 태도_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성별)(연도별 추이)

연도에 따른 학교급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양성평등 의식은 2020년 97.1% 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21년에 소폭 감소하여 96.8%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2021년 응답률 변화를 보면, 고등학생 응답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소폭 감소하였다(그림 III-2-18). 성별의 경우 여학생은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여 97.9%로 나타난 반면 남학생은 2017년 93.3%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95.7%의 응답률을 보여 남학생과 여학생의 인식 차이(2.2%)가 가장 작게 좁혀졌다(그림 III-2-19).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94.3%(그런 편 32.2%, 매우 62.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로는 여학생(96.2%)이 남학생(92.6%)보다, 중학생(95.2%)이 초등학생(94.5%)과 고등학생(93.1%)보다, 학업성적(상 95.4%, 중 94.2%, 하 93.3%)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중’인 경우(중 95.0%, 상 94.4%, 하 92.1%) 이주배경 주민의 교육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 평균 차이를 보면(4점 만점),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3.63, 중 3.56, 고 3.45), 경제적 수준은 높을수록(상 3.58%, 중 3.52%, 하 3.46%) 인권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표 III-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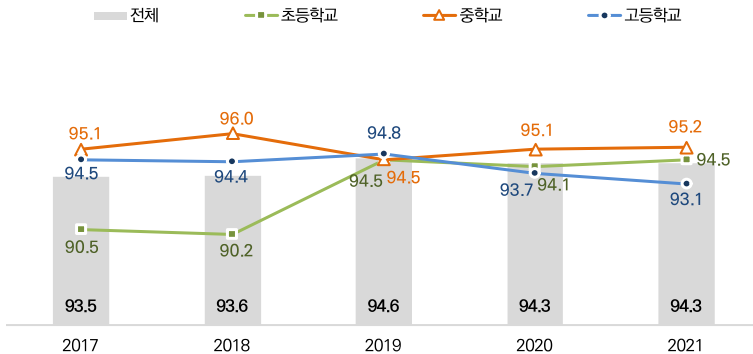
‘이주배경 주민도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률의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이후 꾸준히 약 93~94% 내외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학생은 2018년 96.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이래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고등학생은 2019년 94.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이래 감소하는 추세이며, 반면 초등학생은 2017년 90.5%에서 2021년 94.5%까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III-2-20).

표 III-2-15. 인권의식 및 태도_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55(0.65)	1.7	4.0	32.2	62.1	100.0(8,658)	111.739***
성별							
남학생	3.48(0.70)	2.3	5.1	35.3	57.3	100.0(4,484)	186.407***
여학생	3.62(0.59)	1.0	2.8	28.9	67.3	100.0(4,174)	
학교급							92.294***
초등학교	3.63(0.65)	1.9	3.6	23.8	70.7	100.0(2,917)	
중학교	3.56(0.62)	1.1	3.6	33.8	61.4	100.0(2,847)	
고등학교	3.45(0.68)	2.0	4.9	38.9	54.2	100.0(2,895)	60.122***
학업 성적							
상	3.63(0.63)	1.6	3.0	26.6	68.8	100.0(3,027)	
중	3.52(0.65)	1.5	4.3	35.0	59.2	100.0(3,679)	100.0(712)
하	3.49(0.68)	2.1	4.6	35.8	57.5	100.0(1,909)	
경제적 수준							100.0(4,964)
상	3.58(0.65)	1.6	4.0	29.2	65.2	100.0(4,964)	
중	3.52(0.64)	1.5	3.5	36.6	58.4	100.0(2,939)	
하	3.46(0.72)	2.7	5.2	35.3	56.8	100.0(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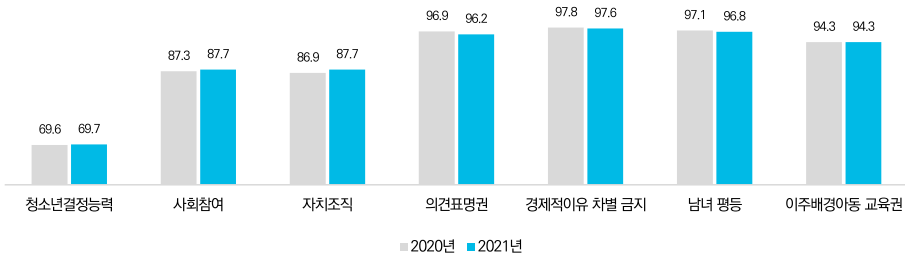
*** $p < .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II-2-20. 인권의식 및 태도_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연도별 추이)

‘인권 의식 및 태도’ 지표 항목을 구성하는 7개 문항의 ‘그렇다’ 값(부정문인 청소년 결정 능력의 경우 ‘그렇지 않다’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아동·청소년 사회참여 필요성과 자치조직 의의에 대해 80% 후반대의 응답률을, 의견표명권과 비차별 인식의 경우 90% 후반대의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III-2-2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II-2-21. 인권의식 및 태도_전체

(3) 인권교육

① 인권교육 실시 현황

아동·청소년 대상 인권교육은 사회과, 도덕과 등 교과와 관련 단위 학습과정이나 범교과 학습주제의 하나로서 교육 활동 전반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학생인권 조례 운영 지역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학생과 교사 대상의 인권교육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그 외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인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소년사법 분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별로 인권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인권교육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공식 통계치는 생산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권교육 실시 현황’ 지표 항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추진 실적을 제시하였다(〈표 III-2-1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통계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수치를 분리해낼 수는 없지만 매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권교육 현황을 발표하고 있는 유일한 통계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

회법」제19조(업무)와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에 따라 추진하는 인권교육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에 전문교육과정 운영 150회, 방문 프로그램 163회, 사이버 인권교육 1,131회, 인권특강 733회 등 인권교육을 총 2,177회, 257,949명에게 실시하였다(나라배움터 교육 제외). 학교 인권교육으로는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권역별 학교 관리자 인권리더십과정, 학교 노동인권교육 교사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1.5: 268-272).

표 III-2-1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 회, 명)

구분	계		교육과정 운영		방문 프로그램		사이버 인권교육		인권특강		(나라배움터) 콘텐츠공동 활용교육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16	4,247	242,147	734	33,953	380	5,930	828	71,434	1,760	96,302	545	34,528
2017	4,447	249,428	494	28,916	533	10,974	915	79,799	1,968	101,482	537	28,257
2018	5,189	344,562	427	19,957	484	8,542	1,133	166,183	2,116	106,189	1,029	43,691
2019	6,282	445,807	330	12,527	556	10,694	1,363	261,505	2,699	107,372	1,334	53,709
2020	3,443	362,459	150	5,011	163	2,700	1,131	220,392	733	29,846	1,266	104,510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21.5). 2020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p.269.

* 주: 1) 2017년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던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2018년에는 '인권특강'으로 분류됨.
2) 통계결과는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수정된 결과임.

② 인권교육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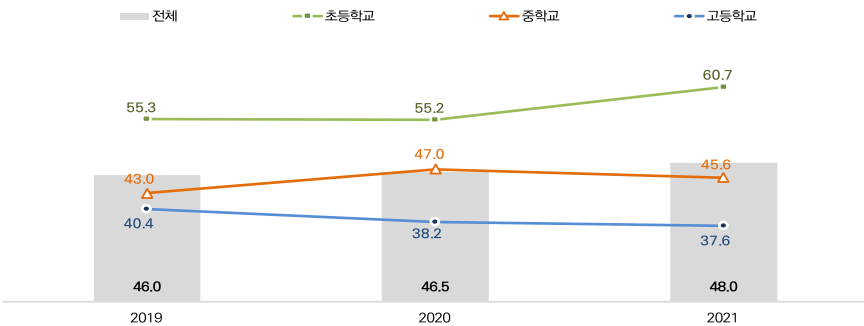
최근 1년간 학교나 학교 밖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48.0%의 아동·청소년이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2.0%는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 응답 차이를 보면, 여학생(51.8%)이 남학생(44.3%)보다,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60.7%, 중 45.6%, 고 37.6%), 대도시일수록(대도시 49.4% 중소도시 48.0%, 읍면지역 43.0%),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 50.8%, 하 44.7%, 중 43.8%)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다고 응답하였다(〈표 III-2-17〉).

표 III-2-17. 인권교육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48.0	52.0	100.0(8,597)	48.257***
성별				
	남학생	55.7	100.0(4,443)	317.525***
	여학생	48.2	100.0(4,154)	
학교급				0.264
	초등학교	39.3	100.0(2,872)	
	중학교	54.4	100.0(2,832)	
	고등학교	62.4	100.0(2,893)	12.973**
고교유형				
	일반계고	62.2	100.0(2,307)	
	특성화계고	63.3	100.0(586)	39.616***
지역규모				
	대도시	50.6	100.0(3,277)	
	중소도시	52.0	100.0(4,323)	0.264
	읍면지역	57.0	100.0(997)	
경제적 수준				
	상	49.2	100.0(4,928)	12.973**
	중	56.2	100.0(2,920)	
	하	55.3	100.0(709)	

** $p < .01$, *** $p < .001$.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률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9년 46.0%, 2020년 46.5%, 2021년 48.0%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험률은 소폭 감소한 반면, 초등학교의 인권교육 경험률은 2020년 55.2%에서 2021년 60.7%로 5.5%p 증가하였다(그림 III-2-22).



* 주: 1) '있다' 응답값(단위: %)
2) 2019년부터 '횟수' → '경험유무'로 척도 변경됨.

그림 III-2-22. 인권교육 경험(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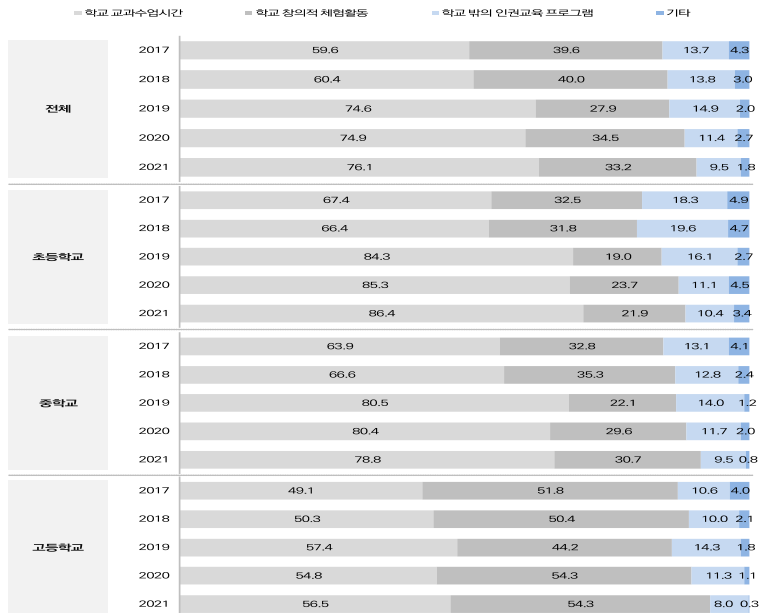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는 학교 교과수업시간(사회, 도덕 등)이 76.1%로 가장 많았고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33.2%,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사회단체 등) 9.5%, 기타 1.8%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86.4%, 중 78.8%, 고 56.5%) 교과수업시간에 인권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많았고, 고등학생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54.3%로 타 학교급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III-2-18>)

표 III-2-18.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복수응답)

(단위 : %, 명)

구분	학교 교과 수업시간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기타	전체(N)	
전체	76.1	33.2	9.5	1.8	4,055	
성별	남학생	73.5	32.9	10.3	1.7	1,922
	여학생	78.5	33.6	8.8	1.9	2,132
학교급	초등학교	86.4	21.9	10.4	3.4	1,705
	중학교	78.8	30.7	9.5	0.8	1,280
	고등학교	56.5	54.3	8.0	0.3	1,070
고교 유형	일반계고	56.9	54.6	7.3	0.2	862
	특성화계고	55.1	53.0	11.3	1.0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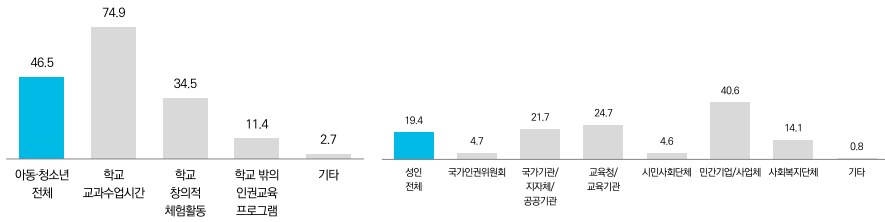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학교 교과수업시간 응답률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학교 밖 인권교육프로그램 경험은 줄어드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 교과수업시간에 인권교육을 받았다는 응답률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반면, 중학생은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률의 경우 초등학생은 2020년에 증가 후 2021년 감소, 중학생은 2020년과 2021년 모두 증가, 고등학생도 2020년에 증가 후 이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III-2-23]).



* 주: 단위: %

그림 III-2-23.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복수응답)(연도별 추이)

2020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와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인권 교육 경험의 아동·청소년과 성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46.5%가 지난 1년간 인권교육 경험이 있었고, 성인의 경우 19.4%가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인권교육을 받은 곳은 아동·청소년은 학교 교과수업시간이 74.9%로 가장 많았고, 성인의 경우 민간기업/사업체에서 인권교육을 받았다는 응답률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III-2-24).



* 출처: 김영지 외(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준 외(2020). 2020 국가인권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 주: 1) 2020 국가인권실태조사는 2020년 8월에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 면접조사로 실시되었으며, 최종 응답한 사례 수는 14,525명임(단위: %).
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는 익년 1월 공표, 국가인권실태조사는 익년 6월에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당해에 데이터 비교가 어려우므로 전년도인 2020년도 결과로 작성함.

그림 III-2-24. 인권교육 경험 및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 아동·청소년과 성인 비교

인권교육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세 가지 인권교육 목표별(지식, 태도, 실천)로 도움이 되는 정도를 질문하였다. 먼저 인권교육이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92.2%(그런 편 62.1%, 매우 30.1%)로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94.8%, 중 91.8%, 고 88.3%)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표 III-2-19〉).

두 번째 인권교육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92.4%(그런 편 53.5%, 매우 38.9%)였으며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96.3%, 중 91.3%, 고 87.2%)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았다(〈표 III-2-19〉).

마지막으로 인권교육이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87.2%(그런 편 54.5%, 매우 32.7%)였으며 역시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93.1%, 중 86.0%, 고 79.3%)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았다(〈표 III-2-19〉).

모든 문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계고가 일반계고보다 인권교육 효과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인권교육 목표

세 가지에 대해 ‘태도(92.4%) > 지식(92.2%) > 실천(87.2%)’ 순으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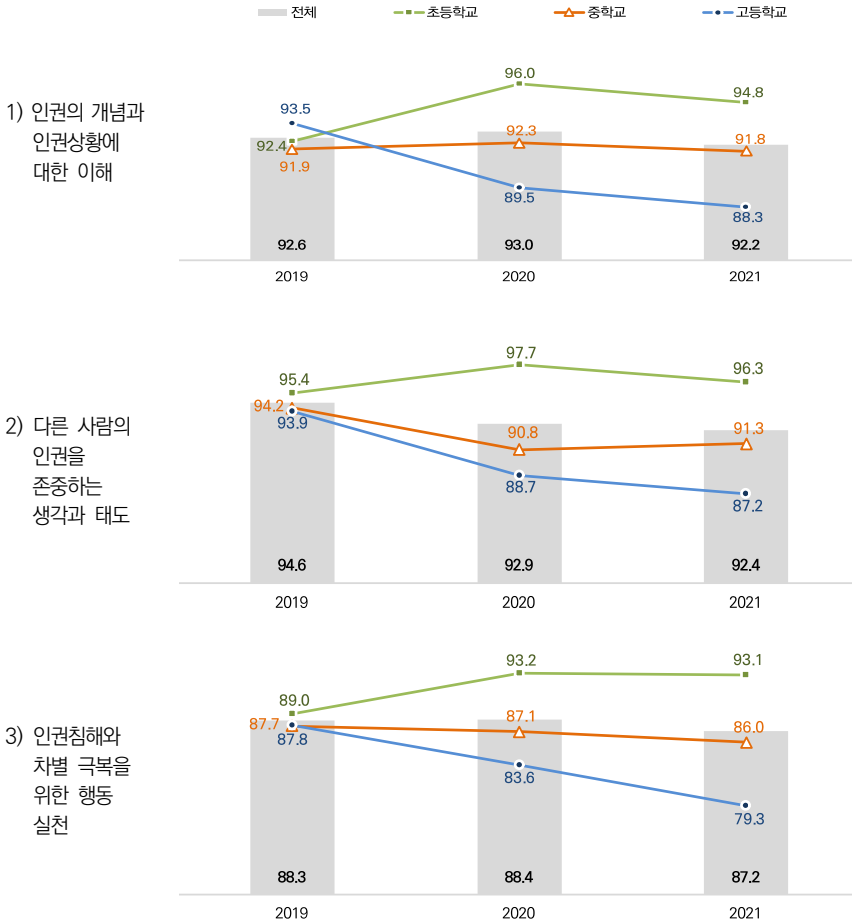
표 III-2-19. 인권교육 목표별 도움 정도(교급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N)	χ^2
1)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	전체	3.20(0.63)	1.9	5.9	62.1	30.1	100.0(4,073)	97.928***
	초등학교	3.30(0.61)	1.4	3.7	57.9	36.9	100.0(1,724)	
	중학교	3.16(0.60)	1.4	6.7	65.9	25.9	100.0(1,278)	
	고등학교	3.09(0.67)	3.3	8.5	64.1	24.2	100.0(1,072)	
2)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	전체	3.29(0.67)	2.1	5.6	53.5	38.9	100.0(4,067)	260.206***
	초등학교	3.47(0.60)	1.0	2.6	44.2	52.1	100.0(1,718)	
	중학교	3.20(0.65)	2.1	6.6	60.9	30.4	100.0(1,277)	
	고등학교	3.11(0.71)	3.7	9.0	59.5	27.7	100.0(1,072)	
3)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	전체	3.17(0.71)	2.8	10.0	54.5	32.7	100.0(4,066)	243.437***
	초등학교	3.36(0.65)	1.5	5.5	48.8	44.3	100.0(1,717)	
	중학교	3.08(0.69)	2.9	11.1	60.7	25.3	100.0(1,277)	
	고등학교	2.97(0.76)	4.9	15.8	56.4	22.9	100.0(1,072)	

*** $p < .001$.

인권교육의 세 가지 목표별 도움 정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인권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지식)’와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실천)’의 경우 2020년에 증가했다가 2021년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태도)’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모두 미세한 수준의 변화였다. 전년도 대비 2021년도 변화를 보면, 초등학생은 지식과 태도 영역은 감소, 실천 영역은 증가하였고, 중학생은 지식과 실천 영역은 감소, 태도 영역은 증가하였으며, 고등학생은 지식, 태도, 실천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III-2-25〉).



*주: 1) '도움이 되는 편이다'와 '매우 도움이 된다' 응답값의 합계(단위: %)

2) 2019년부터 하위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함.

그림 III-2-25. 인권교육 목표별 도움 정도(연도별 추이)

2) 일반원칙

(1) 차별 경험률

차별 경험은 성, 학업성적, 나이, 외모 및 신체조건, 경제적 이유, 고향/지역, 종교, 가족 유형, 장애, 다문화가정 등 10가지 차별유형에 대해 최근 1년간 차별받은 경험(차별 피해)과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차별 가해)에 대해 설문하였다(〈표 III-2-20〉). 2019년도에 설문지를 간소화하기 위해 삭제했던 하위문항(차별받은 경험 6개, 차별한 경험 3개 문항)은 2020년부터 다시 포함되었다(김영지 외, 2020: 206).

표 III-2-20.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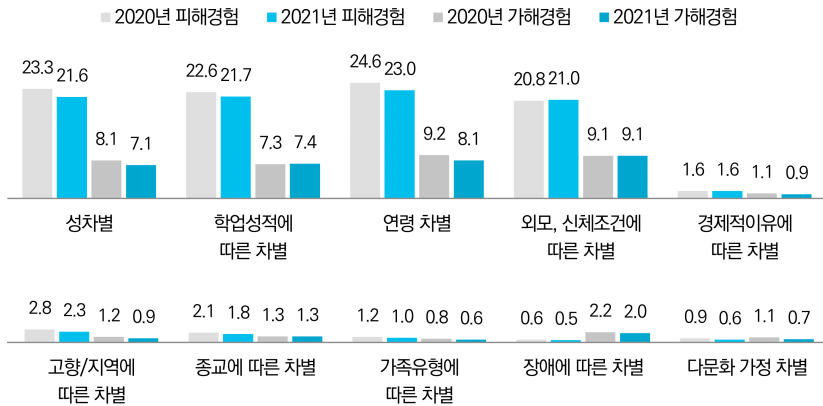
(단위 : %)

차별사유	차별 피해 경험				차별 가해 경험			
	1년에 1회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1주일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1주일에 1회 이상
1) 성별	21.6	6.5	2.9	0.9	7.1	1.4	0.5	0.2
2) 학업성적	21.7	7.7	3.4	1.1	7.4	2.1	0.8	0.2
3) 나이	23.0	7.5	3.0	0.9	8.1	2.1	0.8	0.3
4) 외모·신체조건	21.0	8.0	3.9	1.6	9.1	2.8	1.3	0.5
5) 경제적 이유	1.6	0.5	0.1	0.0	0.9	0.3	0.1	0.0
6) 고향/지역	2.3	0.8	0.3	0.1	0.9	0.4	0.1	0.0
7) 종교	1.8	0.6	0.2	0.1	1.3	0.4	0.1	0.0
8) 가족유형	1.0	0.4	0.2	0.1	0.6	0.3	0.1	0.0
9) 장애	0.5	0.2	0.1	0.1	2.0	0.5	0.2	0.1
10) 다문화가정	0.6	0.3	0.1	0.0	0.7	0.3	0.1	0.0

* 주: '1년에 1회 이상' 값은 '① 1년에 1~2회 정도', '② 2~3개월에 1~2회 정도', '③ 한 달에 1~2회 정도', '④ 1주일에 1~2회 정도' 등 전체 선택지 응답률의 합산 값이며, '3개월에 1회 이상' 값은 ②, ③, ④번 선택지의 합산 값, '한 달에 1회 이상' 값은 ③, ④번 선택지의 합산 값임.

1년에 한 번이라도 '차별받은' 경험은 나이(23.0%), 학업성적(21.7%), 성별(21.6%), 외모·신체조건(21.0%) 등에 의한 차별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고향/지역(2.3%), 종교(1.8%), 경제적 이유(1.6%), 가족 유형(1.0%), 다문화

가정(0.6%), 장애(0.5%) 순으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1년에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은 외모·신체조건(9.1%), 나이(8.1%), 학업성적(7.4%), 성별(7.1%)에 따른 차별 경험이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장애(2.0%), 종교(1.3%), 경제적 이유(0.9%)와 고향/지역(0.9%), 다문화가정(0.7%), 가족유형(0.6%) 순으로 차별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받은’ 경험은 나이(23.0%)에 따른 차별 경험,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은 외모·신체조건(9.1%)에 따른 차별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주일에 1회 이상 일상적 차별 피해 및 가해를 경험한 비율은 외모·신체조건이 각각 1.6%와 0.5%로 가장 높았다.(<표 III-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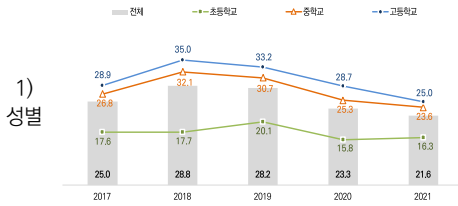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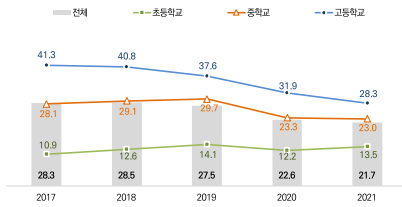
그림 III-2-26.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1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차별받은’ 경험과 ‘차별한’ 경험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차별받은’ 경험이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에 비해 많게는 3배 정도의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2021년에는 전년도 대비 외모·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피해경험과 학업성적에 따른 가해경험이 소폭 증가하였다(그림 III-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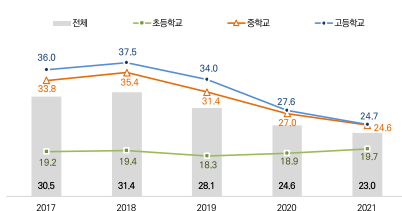
차별 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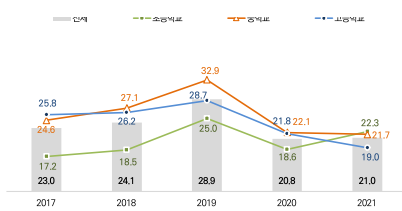
2) 학업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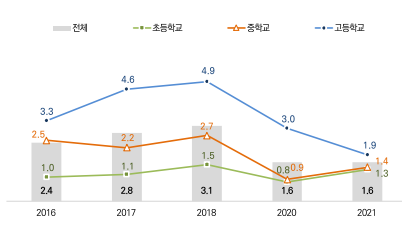
3) 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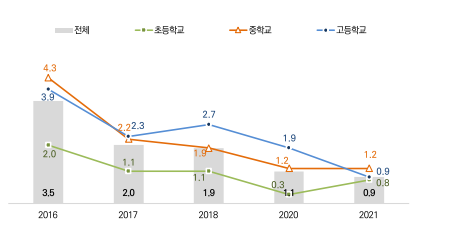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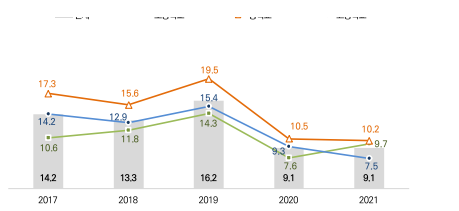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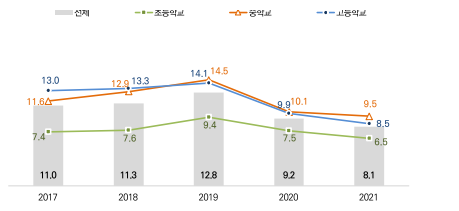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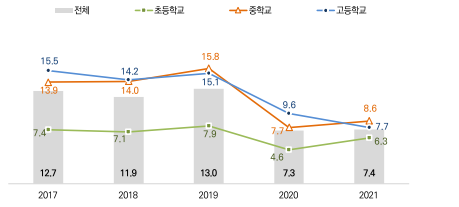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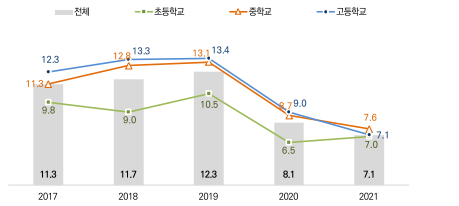
4) 외모·신체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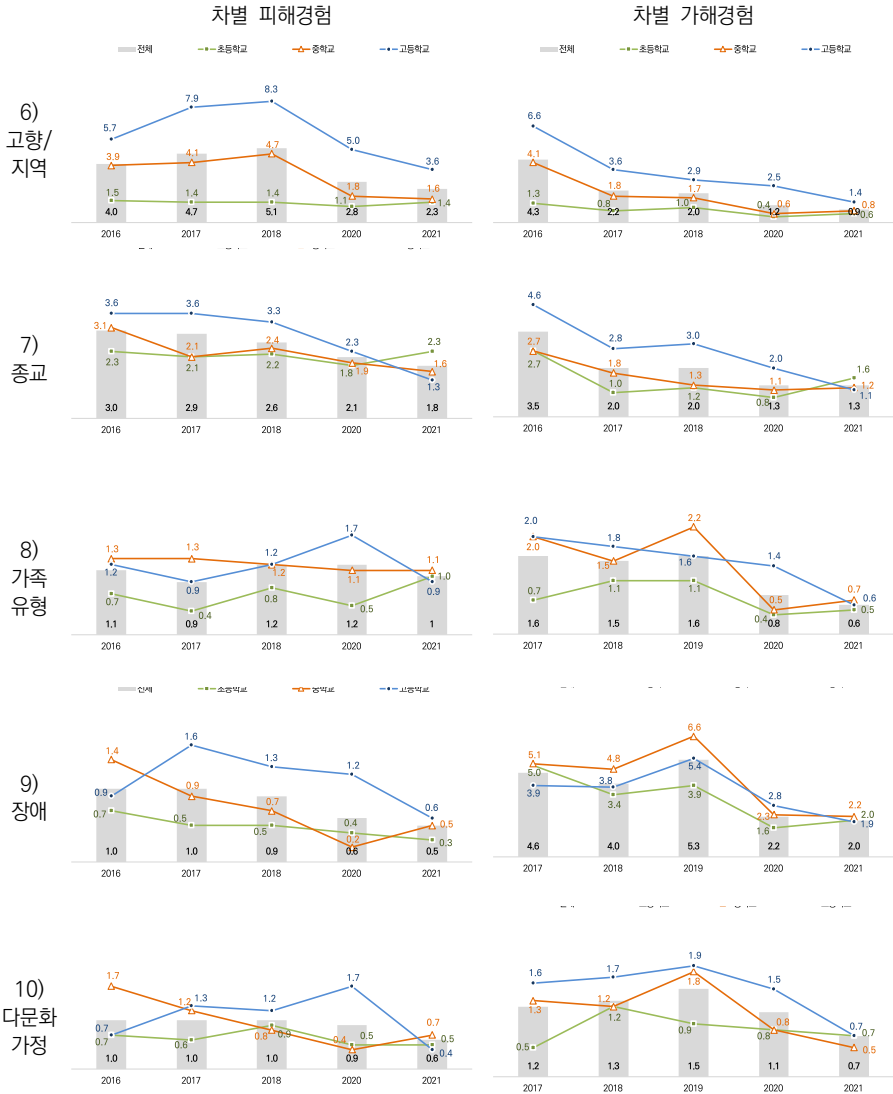
5) 경제적 이유



차별 가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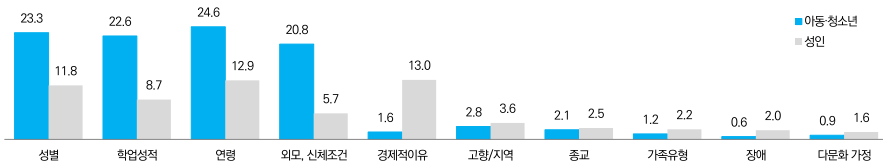
* 주 :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 주: 1)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2) 차별 피해 경험 중에 '경제적 이유, 고향/지역, 종교, 가족유형, 장애, 다문화가정' 등 6개 문항과 차별 가해 경험 중에 '경제적 이유, 고향/지역, 종교' 등 3개 문항은 2019년 제외되었다가 2020년부터 다시 포함됨.

그림 III-2-27. 차별 경험(연도별 추이)

성별, 학업성적, 나이, 외모·신체조건, 경제적 이유, 고향/지역, 종교, 가족 유형, 장애, 다문화가정 등 10가지 차별 경험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차별받은 경험과 차별한 경험 모두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전년도 대비 증가한 것은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경험 0.1%p, 외모·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경험 0.2%p). 전반적으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차별 경험이 많은 경향이 있었는데 외모·신체조건으로 차별한 경험과 차별받은 경험,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경험에서는 중학생의 경험률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III-2-27).



* 출처: 김영지 외(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준 외(2020). 2020 국가인권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 주: 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 국가인권실태조사: '있다' 응답값(단위: %)
2) 2020 국가인권실태조사는 2020년 8월에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 면접조사로 실시되었으며, 최종 응답한 사례 수는 14,525명임.
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는 익년 1월 공표, 국가인권실태조사는 익년 6월에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당해에 데이터 비교가 어려우므로 전년도인 2020년도 결과로 작성함.
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과 '국가인권실태조사'의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의 개념은 다르므로 단순 비교할 수 없음 유의.

그림 III-2-28. 차별받은 경험: 아동·청소년과 성인 비교

2020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와 '국가인권실태조사'의 차별받은 경험률을 살펴보면(그림 III-2-28), 성차별(아동·청소년 23.3%, 성인 11.8%), 연령차별(아동·청소년 24.6%, 성인 12.9%), 외모·신체조건에 따른 차별(아동·청소년 20.8%, 성인 5.7%) 등은 아동·청소년의 차별 경험이 성인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 가량 많게 나타났다. 경제적 이유, 고향/지역, 종교, 가족 유형, 장애,

다문화가정 등에 따른 차별 경험은 성인이 아동·청소년보다 차별 경험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① 아동영향평가 실시 현황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제1항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UN, 1989).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은 협약의 네 가지 기본원칙 중 하나로,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 의사결정 과정 등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한국 정부가 아동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 것을 환영하면서 아동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아동영향평가제도를 확장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18).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복지법 제11조2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의거하여 2019년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2019년 1차 시범운영은 3개의 전문평가(어린이·청소년 화장품 관리 정책, 지역축제 운영 정책, 대중교통 정책 운영체계)와 6개 지역의 자체평가로 이루어졌다. 2020년 2차 시범운영은 2개의 전문평가(아동 디지털성범죄, 청소년보호종합대책)와 12개 지역의 자체평가가 진행되었다(<표 III-2-21>). 2021년부터는 전문평가 본 사업으로 3개의 아동정책 이슈에 대한 전문영향평가(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아동의 법정대리인 제도, 보호대상아동 정신건강)를 실시하였으며, 자체평가 본 사업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해당 법령·자치법규·계획·사업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100개 지자체가 238건의 자체 평가서를 제출하였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정책영향평가 고시 제정 지원, 매뉴얼

제작·배포 및 자체평가 컨설팅 지원, 담당 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아동권리보장원, 2021b, 내부자료).

표 III-2-21.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시범운영 현황(2019~2020년)

연도	지자체	부서	대상사업
2019	강원도 횡성군	농업지원과 농업안정지원담당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주민복지지원과 여성가족담당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팀	아동수당 지원
	전라북도 완주군	교육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친화팀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계획
충청남도 논산시	사회복지과 아동보육친화팀	어려운 아동 간식비 지원	
	사회복지과 아동보육친화팀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2020	경기도 의왕시	아동친화팀	놀이터플러스 사업(놀이환경진단)
			의왕시아동학대예방관련조례
	경기도 용인시	아동보육과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아동권리교육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정책과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육청소년과	아동참여예산제 운영
			아동권리주간행사 운영
	전라남도 장흥군	주민복지과 아동친화팀	아동친화도시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가정활력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충청남도 예산군	아동친화보육팀	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사회복지과 아동보육친화팀	어려운 아동 간식비 지원	
	사회복지과 아동보육친화팀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2021b). 내부자료: 2021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한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아동영향평가 시행 여부가 친화도시 인증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지역 수준에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 9월 3일 기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자체는 57개이

며, 112개 지역이 인증 추진 중이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지역은 2020년 12월 4일 기준 47개에서 2021년 9월 현재 57개로 10개 지역이 증가하였다.⁴⁴⁾

3) 소결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대분류 영역은 아동권리협약 상 일반이행조치와 일반원칙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영역으로 ‘인권인프라’ 지표에 법·제도, 인권기구·조직, 예산 등 3개 지표 항목, ‘인권인식’ 지표에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인권 존중 정도, 인권의식 및 태도 등 3개 지표 항목 ‘인권교육’ 지표에 인권교육 실시 현황과 인권교육 경험 등 2개 지표 항목, ‘차별 경험률’ 지표에 차별받은 경험과 차별해 본 경험 등 2개 지표 항목,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정도’ 지표에 아동영향평가 실시 현황에 대한 1개 지표 항목 등 총 11개의 지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법 제·개정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아동·청소년 성보호, 안전, 학교 밖 청소년, 학생선수 인권, 학교폭력, 보호소년, 민법 징계권 삭제 등 아동·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기초학력 보장, 원격교육, 국가교육위원회,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률 등이 제정되었다. 지역단위에서는 노동인권, 놀 권리, 시설 퇴소청소년 지원, 아동·청소년의회 및 청소년참여,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과 관련된 조례가 지속적으로 제정되고 있으며, 제주도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아동·청소년 인권 기구·조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 심의·조정기구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분야 소위원회인 아동권리위원회 등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2020년도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 비율은 3.6%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20.1%), 학생인권조례(7.5%), 국가인권위원회(23.7%) 등에

44)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지도. <http://childfriendlycities.kr/0201map.html>에서 2021년 9월 3일 인출.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으로 모두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생활영역별로 인권을 존중받는다라는 응답률은 가정(96.6%), 학교(95.2%), 우리나라 전체(82.4%), 사이버 공간(81.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인권존중도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이나 전년도 대비 우리나라 전체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존중도가 미세하게 낮아졌다.

인권의식과 태도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주체적 결정 능력(69.7%), 아동·청소년 사회참여 필요성(87.7%), 자치조직의 의의(87.7%),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권(96.2%) 등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차별상황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유의 차별금지(97.6%), 양성평등(96.8%),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94.3%) 보장 등 높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결정능력, 사회참여, 자치조직 관련 인식은 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의견표명권, 경제적 이유의 차별금지, 양성평등 관련 인식은 소폭 하락하였다.

인권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48.0%로 전년도 46.5%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고 인권교육을 받은 곳은 학교 교과수업시간이 76.1%,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33.2%로 나타났다(복수응답). 인권교육의 목표별 도움정도는 '태도(92.4%) > 지식(92.2%) > 실천(87.2%)' 순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차별받은' 경험은 나이(23.0%), 학업성적(21.7%), 성별(21.6%), 외모·신체조건(21.0%) 등에 의한 차별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1년에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은 외모·신체조건(9.1%), 나이(8.1%), 학업성적(7.4%), 성별(7.1%)에 따른 차별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차별받은' 경험은 나이에 따른 차별 경험,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은 외모·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경험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실현을 위한 아동정책영향평가는 2019년과 2020년 시범운영을 통해 2021년부터 전문평가와 자체평가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정책영향평가

고시 제정 지원, 매뉴얼 제작·배포 및 자체평가 컨설팅 지원, 담당 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의 지표결과를 보면,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구에 대한 인지도는 낮고 아동·청소년이 인식하는 인권교육 경험율도 48.0%로 낮은 편이었지만 인권인식 및 태도와 주관적인 인권존중도는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10명 중 2명 정도가 나이, 학업성적, 성별, 외모·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고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1)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

①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

아동과 청소년이 가정에서 집안의 대소사나 자신의 진학과 진로, 학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할 때 보호자로부터 그에 대해 존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3-1>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응답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집안의 중대사 결정에 대해서는 90.9%가, 상급학교는 94.0%, 진로(직업)는 94.6%, 공부시간·방법은 91.1%가 자신이 결정하고 이에 대해 보호자(부모)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하였다. 즉, 가정 안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가족 구성원의 한 존재로서 가사나 학업, 진로 및 진학 등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그에 대해 보호자(부모) 또한 자녀의 견해를 존중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교급이 높아질수록 보호자(부모)는 자녀의 의사를 더욱 존중해주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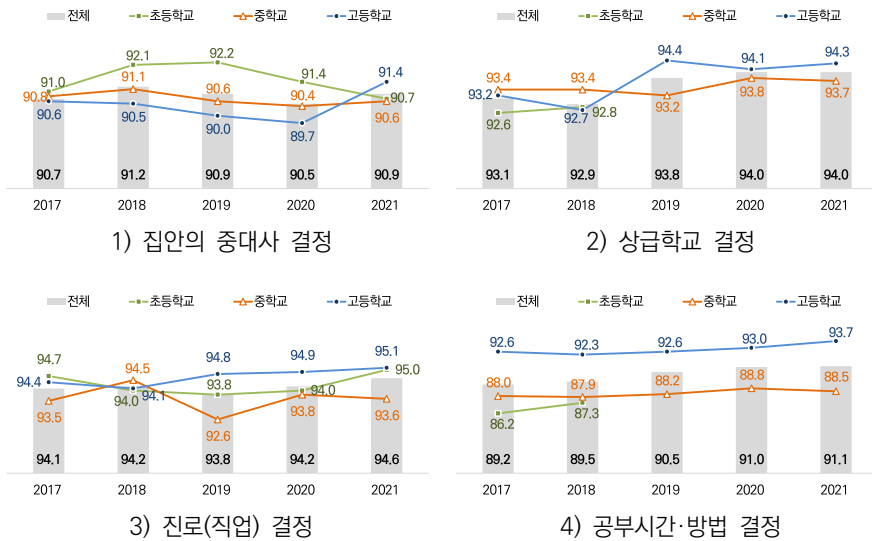
표 III-3-1. 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의견 존중 정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1) 집안의 중대사 결정	전체	3.34(0.68)	1.5	7.5	46.1	44.8	100.0(8,680)	16.596*
	초등학교	3.32(0.68)	1.5	7.8	47.5	43.2	100.0(2,911)	
	중학교	3.33(0.68)	1.3	8.0	47.0	43.6	100.0(2,869)	
	고등학교	3.37(0.69)	1.7	6.8	43.9	47.5	100.0(2,899)	
2) 상급 학교 결정	전체	3.49(0.64)	1.0	4.9	38.4	55.6	100.0(5,757)	12.381**
	중학교	3.46(0.64)	1.0	5.3	40.4	53.3	100.0(2,859)	
	고등학교	3.51(0.64)	1.1	4.6	36.5	57.8	100.0(2,898)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3) 진로(직업) 결정	전체	3.54(0.63)	1.0	4.4	34.3	60.3	100.0(8,627)	22.306**
	초등학교	3.56(0.62)	1.0	4.0	32.7	62.3	100.0(2,874)	
	중학교	3.49(0.65)	1.3	5.1	36.6	57.0	100.0(2,855)	
	고등학교	3.56(0.61)	0.8	4.1	33.5	61.6	100.0(2,899)	
4) 공부시간· 방법 결정	전체	3.40(0.69)	1.4	7.5	40.8	50.3	100.0(5,748)	87.549***
	중학교	3.32(0.72)	1.7	9.9	43.4	45.1	100.0(2,850)	
	고등학교	3.48(0.65)	1.2	5.1	38.2	55.5	100.0(2,898)	

* $p < .05$, ** $p < .01$, *** $p < .001$.



* 주: 1)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2) 2019년 조사부터 상급학교 결정과 공부시간 결정 문항은 초등 설문지에서 제외됨

그림 III-3-1. 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의견 존중 정도)(연도별 추이)

최근 5개년 동안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가정에서 보호자(부모)가 아동과 청소년인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그림 III-3-1). 코로나19가 시작되어 모두가 혼란을 겪었던 시기인 2020년에는 집안의 대소사와 관련하여 보호자(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주었

던 정도가 모든 교급에서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지만, 2021년에는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다.

(2)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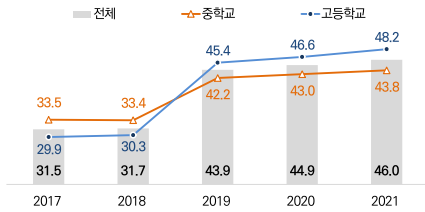
①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하는 중·고등학생 청소년이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다음 <표 III-3-2>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교사와 교장의 간섭없이 학생회 활동을 보장받고 있다는 응답은 46.0%, 임원후보의 성적기준에 관계없이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1%였으며, 학생회 활동을 위한 예산과 장소, 시간이 보장되고 있다는 48.5%, 학생회의 의견이 존중되며 반영된다는 58.3%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그러나 학생회 활동에 대해 자율권 보장과 관련된 각 부분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1/3이상 차지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의 비율 또한 학생회 의견 존중 및 반영 분야를 제외하고는 과반을 넘고 있지 않아 학교 내에서 학생회 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율성이 온전하게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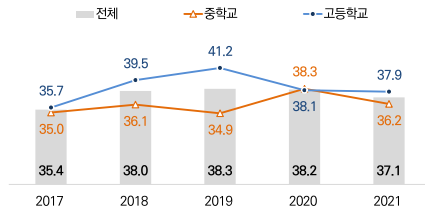
표 III-3-2.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

구분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1) 교사·교장의 간섭없이 활동(자치권)	전체	7.5	46.0	46.4	100.0(5,760)	26.846***
	중학교	6.5	43.8	49.7	100.0(2,867)	
	고등학교	8.5	48.2	43.2	100.0(2,894)	
2) 임원후보 성적기준 있음(*역문항)	전체	37.1	26.2	36.8	100.0(5,752)	2.986
	중학교	36.2	26.0	37.8	100.0(2,861)	
	고등학교	37.9	26.3	35.7	100.0(2,891)	
3) 예산, 장소, 시간 보장	전체	2.8	48.5	48.7	100.0(5,739)	2.620
	중학교	2.6	47.7	49.7	100.0(2,852)	
	고등학교	3.0	49.3	47.8	100.0(2,886)	
4) 학생회 의견 존중 및 반영	전체	3.0	58.3	38.7	100.0(5,749)	49.937***
	중학교	2.0	62.5	35.4	100.0(2,855)	
	고등학교	4.0	54.1	41.9	100.0(2,8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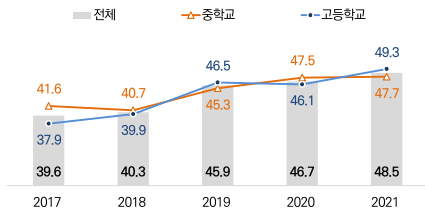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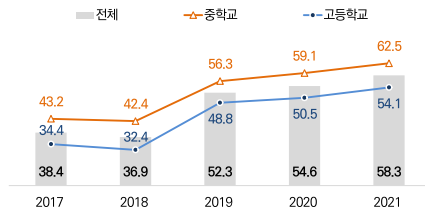
1) 자치권 보장



2) 임원후보 성적제한 없음



3) 예산, 장소, 시간 보장



4) 학생회 의견 존중 및 반영

* 주: 1) 1), 3), 4)는 '그렇다'의 응답값(단위: %)

2) 2)는 '아니다' 응답값(부정적 질문이므로 '아니다' 값을 반영하여 성적제한이 없음을 나타냄).

그림 III-3-2.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연도별 추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최근 5년 동안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그림 III-3-2). 특히,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치권이나 예산 및 장소, 시간 보장, 학생회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정도가 2018년 이후 2019년부터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이는 2018년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스쿨 미투' 이후,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의 학생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학생회 활동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에 대한 학생과 교사 및 교장 등의 학교 교직원들의 인식도 변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정도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결과, 참여할 수 있으며 발언권도 있다는 응답이 26.8%,

참여는 할 수 있지만 발언권은 없다는 응답이 6.2%, 참여할 수 없다가 5.2%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1.8%로 가장 많았다(〈표 III-3-3〉). 교급별 응답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성별에 따라 여학생(31.2%)이 남학생(22.7%)보다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발언권을 가지고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III-3-3.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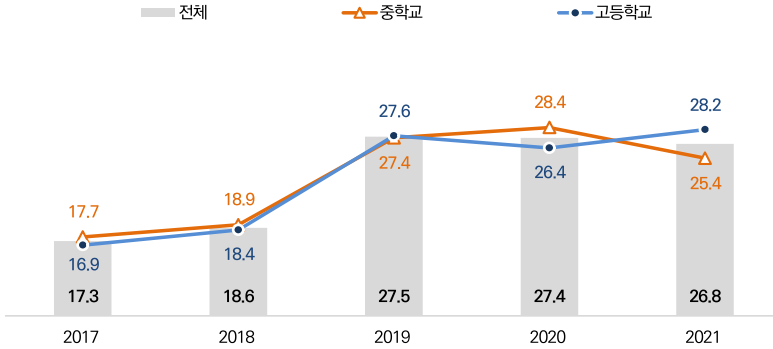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참여할 수 없다	참여 가능, 발언권 없음	참여 가능, 발언권 있음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전체	5.2	6.2	26.8	61.8	100.0(5,389)	53.134***
성별						
남학생	6.1	6.6	22.7	64.7	100.0(2,753)	5.720
여학생	4.3	5.7	31.2	58.8	100.0(2,636)	
학교급						5.720
중학교	5.3	6.5	25.4	62.9	100.0(2,647)	
고등학교	5.2	5.9	28.2	60.8	100.0(2,742)	

*** $p < .001$.

또한,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까지 10%대 후반에 머물렀던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발언권을 가지고 참여하는 정도가 2019년 이후에는 27%대로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 지속적으로 26~27%대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III-3-3). 그러나 학생이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한 일원으로서 주체적인 존재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 대표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과 관련된 학교 내 교육 활동이나 교육과정, 생활규칙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비율은 매우 미약한 편이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는 교원 및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서 학생은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민주적인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학생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결정할 때 당사자인 학생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주: '참여가능, 발언권 있음'의 응답값(단위: %)

그림 III-3-3.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연도별 추이)

③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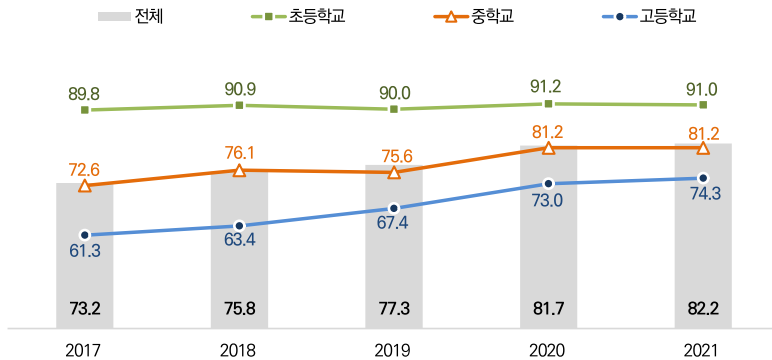
학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학생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2.2%는 학교 규칙이나 규정 등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하였다(〈표 III-3-4〉). 성별에 따라 남학생(81.7%) 보다는 여학생(82.7%)이, 교급별로는 초등학생(91.0%), 중학생(81.2%), 고등학생(74.3%) 순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교의 규칙 및 규정 제·개정에 대해 학생이 참여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참여 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III-3-4.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02(0.74)	4.2	13.7	58.3	23.9	100.0(8,647)	14.670**
성별							
남학생	3.01(0.76)	4.9	13.3	57.4	24.3	100.0(4,473)	14.670**
여학생	3.03(0.71)	3.4	14.0	59.3	23.4	100.0(4,174)	
학교급							696.425***
초등학교	3.28(0.69)	2.3	6.7	52.0	39.0	100.0(2,896)	
중학교	2.96(0.70)	4.0	14.7	62.6	18.6	100.0(2,862)	
고등학교	2.82(0.74)	6.1	19.6	60.5	13.8	100.0(2,889)	

** $p < .01$, *** $p < .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II-3-4.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연도별 추이)

최근 5개년 간 연도별 추이를 보면, 학교 규칙 제·개정에 대한 학생의 참여 및 존중 정도는 2017년 73.2%에서 2021년 82.2%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의견도 존중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학생의 역할과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3) 사회에서의 참여정도

① 아동·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 정도

아동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결정과정에서 정책당사자의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개최하여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각 지역대회에서 선발된 지역아동대표가 전국대회에 참여하여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 증진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한 결과를 결의문에 담아 정부에 전달하게 된다. 아동총회에서 논의된 결의문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아동과 관련된 정책에 반영이 되기도 한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오프라인 모임이 병행되었으며, 2020년에 개최된 제17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는 ‘참여, 놀 권리, 진로, 건강’을 주제로 한 15가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정부에 전달하였다.

표 III-3-5. 제17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로건: 아직, 아동들이 직접 말하지 못한 이야기 • 키워드: 참여, 놀 권리, 진로, 건강 • 지역대회: 2020년 7월~10월, 전국 16개 지역 • 전국대회: 2020년 11월 6일~11월 28일 • 주최 및 주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결의문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학부모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아동들이 직접 놀 권리 침해에 대한 고충을 이야기하는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한 달에 1~2번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해 주세요. 2. 학생들의 성적 부담을 줄이고 진로를 찾기 위해 진로 활동을 늘리고, 대학 입학 기준에서 성적 비중을 줄여주세요. 3. 정규 수업시간을 활용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효과가 입증된 전문가의 심리 안정 및 치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주세요. 4. 진로교육을 할 때, 새로운 직업군에 대한 안내 및 체험활동을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어 추가적으로 실시해주세요.

5. 일주일에 한 번 정규시간에 아동 주도로 관심사별 프로그램을 기획, 활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6. 서울 시내 일부 학교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과 같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세요.
7. 실내에만 머물러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쌍방향 소통 운동 프로그램을 제작해주세요.
8.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선생님의 학급회의 참여와 의견 피드백을 의무화해주세요.
9.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진로 동아리를 만들 경우, 국가나 교육청 차원에서 동아리를 지도해 줄 수 있는 멘토를 파견해주고, 진로캠프나 현장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해주세요.
10. 진로 적성 검사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시설의 위치, 다양한 직업 소개 영상 등을 다루는 복합적인 진로 관련 사이트를 만들어 주세요.
11. 아동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을 1년에 4번 의무화해주세요.
12.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아동총회를 실시하여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더 많은 아동들의 참여권을 보장해 주세요.
13.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초등 6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립 실내 놀이시설을 만들어주고, 매달 1번씩 시설점검을 의무화해주세요.
14. 아동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간 놀이시간을 국내 초등학교에 확대하고, 공교육을 강화해 주세요.
15. 아동용 진로체험 어플 '진로를 찾아서'를 개발해 아동들이 원하는 직업 종사자를 만나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직업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출처: 한국아동단체협의회(2021.1.7.). 2020년 제17회 대한민국아동총회 결의문. 그림을 표로 재구성.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웹사이트 http://kocconet.or.kr/bbs/board.php?bo_table=gallery&wr_id=36에서 2021년 9월 13일 인출.

2021년은 '따뜻한 보호 속, 성장하는 아동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뛰노는 우리들-'을 주제로 하여, 6~8월 동안 17개 시·도에서 지역대회가 운영되었으며, 9월 3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전국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총회를 통해 아동들은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와 정책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보고 자유롭게 의견을 할 수 있는 참여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정책의 형성과 집행, 평가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이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17개 시·도의 청소년과 전문가와의 토론과 활동을 통해 정책 과제를 발굴 및 정부에 제안하여 정책화에 기여하는 전국단위 규모의 '청소년특별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a).

표 III-3-6.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14~2020년)

(단위 : 개(%))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청소년참여위원회	197 (81.1)	204 (84.0)	216 (88.9)	221 (90.9)	230 (94.7)	239 (98.4)	239 (98.4)
청소년운영위원회	305	305	305	305	305	305	331

* 출처: 여성가족부(2020a). 2020 청소년백서, pp.119-120. 재구성.

* 주: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율 = 위원회수/전국 지자체 수*100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운영 주체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나, 주로 정기·임시회의를 통해 청소년정책을 모니터링하거나 정책 제안 및 자문, 토론회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각 위원회별 참여 규모는 10~3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현재 약 4,400여 명의 청소년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고자 구성되었으며, 2020년 현재 331개소에서 각 지역별 운영위원회에서는 10~20명 내외의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는 주로 수련시설의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홍보, 관련된 정책 제안 및 평가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a).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의해 2004년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약 5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여 5~10월동안 예비회의와 본회의에서 제안된 논의와 온라인 정책제안을 통해 자립과 관련하여 취업, 정보, 보호, 경제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선정된 5개 영역 33개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하였다. 그 결과, 정부에서는 32개 정책과제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여성가족부, 2020a).

표 III-3-7.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2011~2020년)

연도	의제	수용률(%)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 -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성보호 등 3개 영역 41개 과제 제안 	36개 수용 (87.8)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 활동 - 청소년 체험활동 여건조성 등 3개 영역 30개 과제(89개 세부과제) 제안 	81개 수용 (91.0)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 - 진로체험활동 등 3개 영역 29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6.5)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 - 청소년 참여로 만드는 안전 등 4개 영역 31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0.3)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역사이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 - 역사교육 질적 강화 및 역사 인재 양성 등 3개 분야 23개 과제 제안 	20개 수용 (87.0)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틀림이 아닌 다름, 소수를 사수하라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등 4개 분야 29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6.5)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 -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등 3개 분야 30개 과제 제안 	24개 수용 (80.0)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울림이 되다 - 청소년 참정권 확대 등 3개 분야 22개 과제 제안 	20개 수용 (90.9)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양성평등, 학교밖청소년 지원, 안전, 경제활동 - 청소년 기초 노동 지원 프로그램 등 5개 분야 28개 과제 제안 	25개 수용 (89.9)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서는 청소년, 세상의 중심에서 미래를 외치다 - '자립' 정책영역의 취업, 정보, 보호, 경제 등 5개 분야 33개 과제 제안 	32개 수용 (96.9)

* 출처: 여성가족부(2020a). 2020 청소년백서. pp.121-122.

②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초, 중, 고등학생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 지역사회 및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 여부와 활동 경험을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1.0%가 알고 있다고 하였고, 그 중에서도 2.0%만 참여기구에서 활동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표 III-3-8〉). 2021년 현재,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50.0%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해당하고 있으며, 참여기구명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잘 모른다는 응답도 39.0%에 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전반적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은 아동·청소년정책의 당사자로서 관련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참여기구를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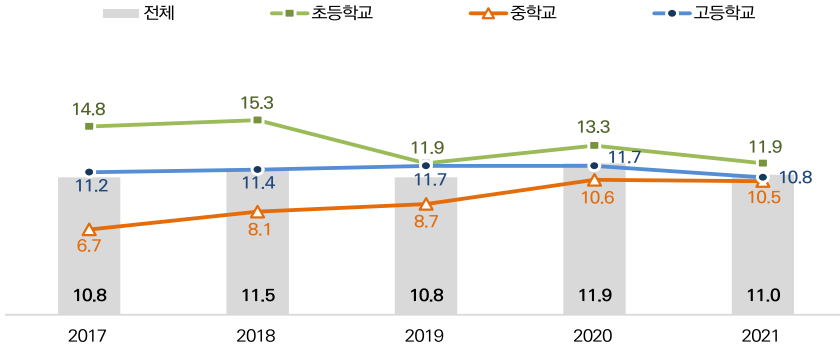
표 III-3-8.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들어본 적 없다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 않았다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알고 있다 합계	전체(N)	χ^2
전체	50.0	39.0	9.0	2.0	11.0	100.0(8,603)	32.285***
성별							
남학생	52.9	36.4	8.8	1.9	10.7	100.0(4,448)	41.389***
여학생	46.9	41.7	9.3	2.1	11.4	100.0(4,154)	
학교급							41.389***
초등학교	47.3	40.8	10.5	1.4	11.9	100.0(2,869)	
중학교	52.4	37.1	8.7	1.8	10.5	100.0(2,846)	
고등학교	50.3	38.9	7.9	2.9	10.8	100.0(2,888)	

*** $p < .001$.

이러한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는 연도별 추이에서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그림 III-3-5). 최근 5년 동안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는 10%대 후반에서 11%대에 머무르고 있었다. 다만, 중학생의 참여기구 인지도는 증가하고 있었는데,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018년 이후 감소하는 추이를, 고등학생은 11%대에 머무르다가 2021년 들어서는 10.8%로 하락하였다.



* 주: 1)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 않았다'와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의 합계(단위: %) 2) 2016년부터 전체값에 초등학생 응답이 포함됨.

그림 III-3-5.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연도별 추이)

③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장애 이유

가. 참여권 보장 수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우리사회에서 이들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2.6%는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 및 학교급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학생(73.4%)이 남학생(71.7%)보다,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생 82.7%, 중학생 73.6%, 고등학생 61.2%) 우리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받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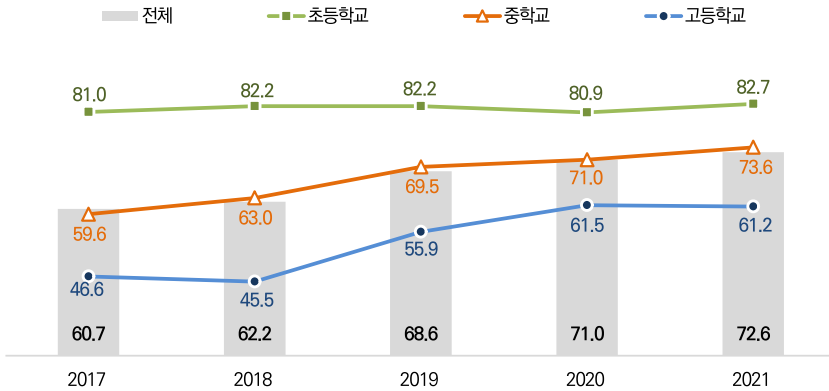
이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III-3-6]). 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응답자의 80% 이상 정도가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의견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초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권 보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낮았던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2018년 이후에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III-3-9.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88(0.79)	5.3	22.2	51.8	20.8	100.0(8,660)	47.763***
성별							
남학생	2.84(0.81)	6.7	21.6	52.7	19.0	100.0(4,478)	377.440***
여학생	2.92(0.78)	3.9	22.7	50.8	22.6	100.0(4,182)	
학교급							377.440***
초등학교	3.06(0.74)	3.4	13.8	55.7	27.0	100.0(2,901)	
중학교	2.89(0.78)	4.9	21.5	53.3	20.3	100.0(2,861)	
고등학교	2.69(0.82)	7.6	31.1	46.3	14.9	100.0(2,898)	

*** $p < .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II-3-6.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연도별 추이)

나. 참여의 장애요인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을 행사하고 보장받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초, 중, 고등학생 전체 응답자 중 30.7%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으로, 29.2%는 시간을 내기 어렵다, 24.2%가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12.7%는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성별 및 교급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초등학생은 시간을 내기 어렵다가, 여학생과 중·고등학생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에서 여전히 자신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을 스스로 지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등에 몰두하여 참여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현실도 이해할 수 있었다.

표 III-3-10. 아동·청소년 참여의 장애요인

(단위 : %(명))

구분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부족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 부족	전체(N)	χ^2
전체	29.2	24.2	1.9	1.2	30.7	12.7	100.0(8,590)	68.104***
성별	남학생 32.0 여학생 26.3	22.8 25.7	2.1 1.7	1.8 0.6	29.7 31.8	11.7 13.9	100.0(4,443) 100.0(4,147)	
학교급	초등학교 31.3 중학교 30.7 고등학교 25.7	24.3 21.6 26.8	3.3 1.6 0.7	0.8 1.0 1.8	23.6 34.5 34.0	16.6 10.6 11.0	100.0(2,880) 100.0(2,845) 100.0(2,866)	221.316***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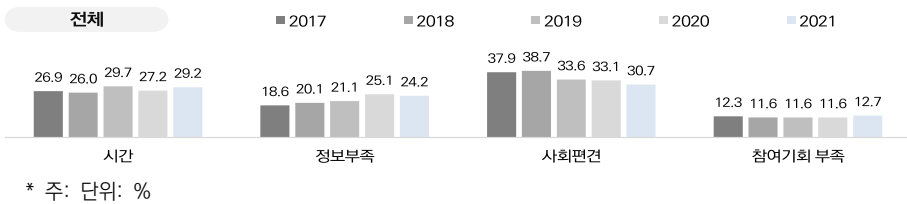


그림 III-3-7. 아동·청소년 참여의 장애요인(연도별 추이)

최근 5개년에 해당하는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이 참여의 장애요인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이는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또한,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과 참여 기회나 방법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III-3-7).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①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 정도

중, 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인의 부당한 간섭없이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지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2.1%는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III-3-11〉). 성별 및 교급별로 비교해보면, 여학생(92.7%)이 남학생(91.3%)보다, 고등학생(93.3%)이 중학생(90.8%)보다 사상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음을 더 높게 인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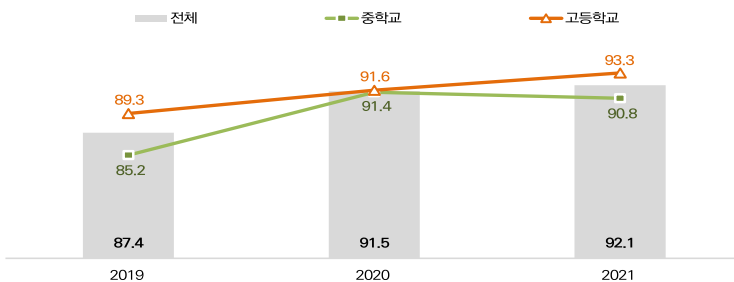
표 III-3-11.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35(0.67)	1.6	6.4	47.5	44.6	100.0(5,714)	15.844**
성별							
남학생	3.34(0.70)	2.2	6.5	46.2	45.1	100.0(2,962)	18.363***
여학생	3.36(0.64)	0.9	6.3	48.8	43.9	100.0(2,752)	
학교급							18.363***
중학교	3.31(0.69)	1.8	7.4	48.5	42.3	100.0(2,851)	
고등학교	3.39(0.65)	1.4	5.4	46.5	46.8	100.0(2,863)	

** $p < .01$, *** $p < .001$.

이러한 응답 결과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상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는 정도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인식 정도가 매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II-3-8.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연도별 추이)

(2) 종교 자유 보장 정도

①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가정, 학교)

가정과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중, 고등학생 전체 응답자 중 82.1%는 부모·형제와 관계없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종교재단 학교에 재학 중인 응답자 중 49%만이 학교 내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III-3-12)).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정 내에서는 청소년 자녀의 종교 선택에 대한 자유가 어느 정도는 보장되고 있었지만, 종교재단에 기반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에서 제한이 따름을 확인하였다. 특히, 고등학생(46.9%)보다는 중학생(55.3%)의 경우, 교내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고등학교에서는 종교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5년 동안 가정과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확인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지켜진다는 의견이 매년 80%대 초반의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는 가정의 절반 수준인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 정도로 보고되었다(그림 III-3-9)). 이러한 결과는 학교 내에서 학생 개인의 선택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종교행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업이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III-3-12.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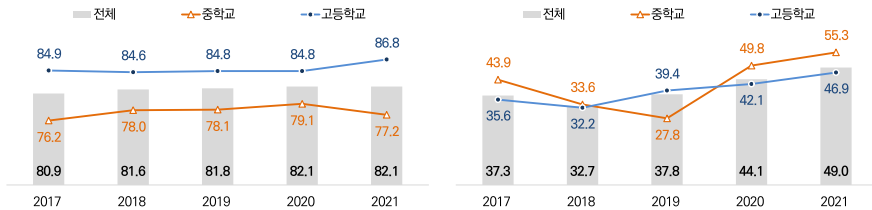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1) 부모·형제와 관계없이 종교선택	전체	3.23(0.87)	5.4	12.6	35.9	46.2	100.0(5,732)
	중학교	3.11(0.92)	7.3	15.5	36.6	40.6	100.0(2,859)
	고등학교	3.35(0.80)	3.5	9.8	35.1	51.7	100.0(2,874)

113.868***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2) 학교 종교행사에 자율적 참여	전체	2.40(1.06)	26.5	24.5	31.1	17.9	100.0(462)	16.359**
	중학교	2.63(1.14)	22.4	22.3	25.0	30.3	100.0(119)	
	고등학교	2.32(1.03)	28.0	25.2	33.3	13.6	100.0(343)	

* 주: '학교 종교행사에 자율적 참여' 문항은 종교재단 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

** $p < .01$, *** $p < .001$.



1)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2)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 주: 1)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2)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2017년부터 전체 값에 중·고등학교 응답값만 포함됨.

3) '학교 종교행사에 자율적 참여' 문항은 종교재단 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

그림 III-3-9.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연도별 추이)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1) 결사·집회 경험률

① 결사·집회 경험률(경험 여부, 피해 경험)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문제에 대해 경험해 본 참여활동을 물어본 결과,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봤다는 경험이 11.2%,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5.7%로 나타났다 (<표 III-3-13>).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가담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과 비용을

할애해야 하므로,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등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소극적인 참여활동에 비해 참여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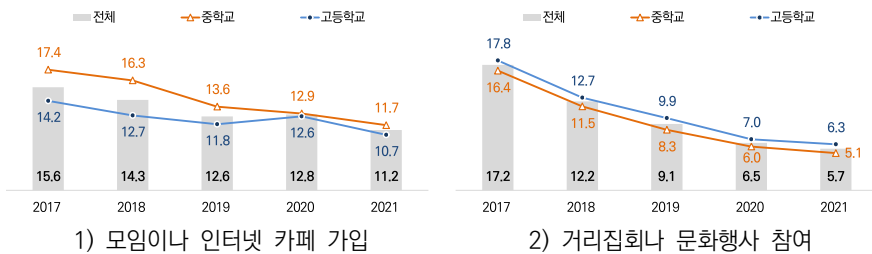
표 III-3-13.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전체(N)	χ^2
1)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전체	1.55(0.76)	58.6	30.2	8.7	2.5	100.0(5,670)	3.586
	중학교	1.57(0.76)	57.4	30.9	9.0	2.7	100.0(2,811)	
	고등학교	1.53(0.75)	59.8	29.5	8.4	2.3	100.0(2,859)	
2) 거리 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전체	1.41(0.62)	66.0	28.3	4.9	0.8	100.0(5,636)	20.744***
	중학교	1.42(0.61)	64.1	30.8	4.5	0.6	100.0(2,789)	
	고등학교	1.39(0.64)	67.9	25.8	5.3	1.0	100.0(2,847)	

*** $p < .001$.

이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대통령 탄핵 이슈가 있었던 2017년에는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과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활동 경험 비율은 10%대 중후반으로 보고되었다가 매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III-3-10). 특히, 거리집회나 문화행사와 같은 적극적인 참여활동은 2017년에 비해 2021년에는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 주: '가끔 있다'와 '자주 있다'의 합계(단위: %)

그림 III-3-10.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연도별 추이)

사회문제와 관련된 참여활동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참여활동을 통해 학교에서 경고 및 훈계, 교내 상담 및 학부모 상담, 선도위원회 개최를 통한 징계 처분 등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그림 III-3-11). 그 결과, 2021년에는 응답자 중 2.1%가 참여활동으로 인해 학교에서 경고 및 상담, 징계 등의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연도별 추이는 2017년 3.8%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1년 2.1% 정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밝혀진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참여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은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등의 소극적 참여활동보다 외현적으로 더 잘 드러나고 고등학생의 참여율이 더 많으므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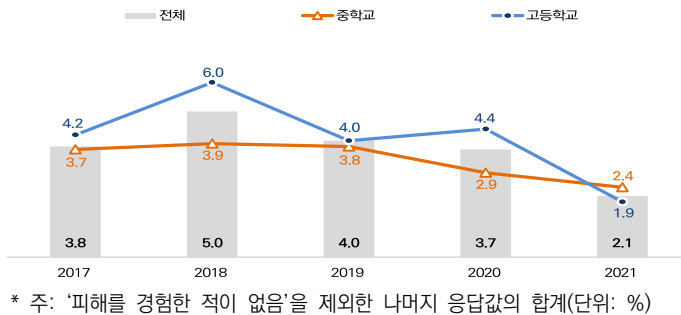


그림 III-3-11.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연도별 추이)

4) 사생활의 보호

(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① 용모·복장 제한 및 소지품 검사 경험률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용모나 복장,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년에 1회 이상 용모 검사를 경험했다

는 비율이 21.3%, 복장 검사는 28.9%, 소지품 검사는 6.2%라고 나타났다(〈표 III-3-14〉). 1년에 1회 이상 경험률을 교급별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용모 검사와 복장 검사 모두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10%p 이상 더 많이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머리길이나 염색, 화장 등의 용모와 바지 및 치마 길이 등에 대한 복장 검사와 개인 소지품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3-14.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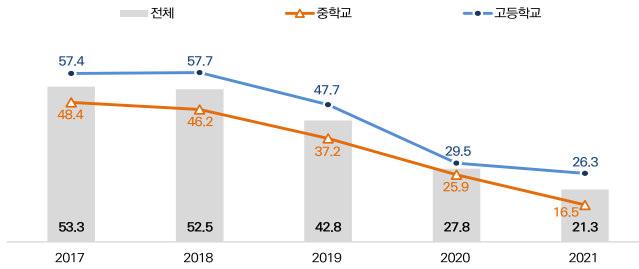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1) 용모 검사	전체	78.6	10.9	3.8	2.8	3.8	21.3	100.0(5,771)	116.506***
	중학교	83.5	7.4	2.4	2.5	4.2	16.5	100.0(2,868)	
	고등학교	73.6	14.3	5.3	3.2	3.5	26.3	100.0(2,903)	
2) 복장 검사	전체	71.1	12.2	4.6	4.3	7.8	28.9	100.0(5,774)	146.010***
	중학교	78.2	8.7	3.4	3.7	6.1	21.9	100.0(2,869)	
	고등학교	64.0	15.8	5.8	4.9	9.5	36.0	100.0(2,904)	
3) 소지품 검사	전체	93.7	4.8	0.7	0.4	0.3	6.2	100.0(5,773)	7.545
	중학교	94.0	4.8	0.6	0.4	0.1	5.9	100.0(2,869)	
	고등학교	93.4	4.8	0.8	0.5	0.5	6.6	100.0(2,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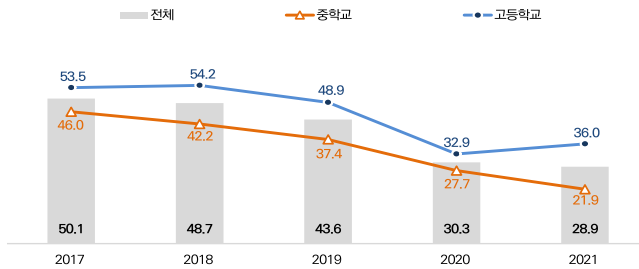
*** $p < .001$.

이에 대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7년 이후로 학교에서 용모 및 복장, 소지품 검사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그림 III-3-12〉). 또한, 전반적으로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용모 및 복장, 소지품 검사 경험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되었던 2020년에는 학기 중에 비대면 수업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용모나 복장, 소지품 검사 경험률도 가파르게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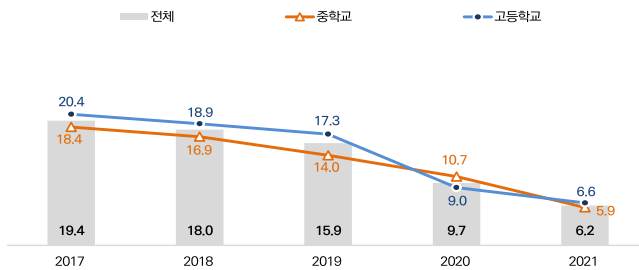
1) 용모 검사



2) 복장 검사



3) 소지품 검사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II-3-12.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연도별 추이)

(2) 학생 정보 보호 정도

①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정도(교육비 미납, 징계처분 내용, 개인 성적)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III-3-15>와 같다. 학교 상황에서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교육비 미납 및 징계 사항, 개인 시험 성적과 관련된 부문을 물어보았고, 이에

대해 전체 응답자들은 교육비 미납에 대해 5.4%가, 징계 사항은 12.4%가, 시험 성적은 10.4%가 공개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를 교급별로 비교해보면, 징계 사항 공개와 관련해서는 초등학생(14.4%)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등학생(12.2%), 중학생(10.7%) 순이었다. 또한, 시험성적 공개와 관련해서는 대학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11.5%)이 중학생(9.2%)보다 더 높게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III-3-15.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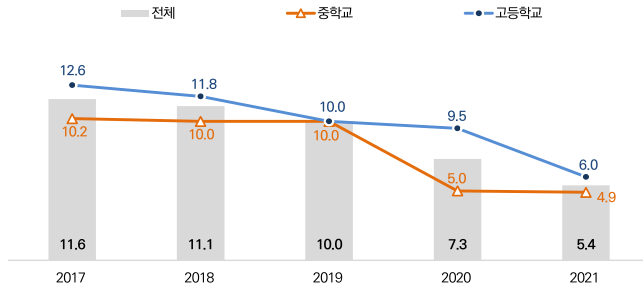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1) 교육비 미납	전체	1.30(0.60)	76.4	18.2	4.4	1.0	100.0(5,745)	6.328
	중학교	1.30(0.59)	75.9	19.2	4.0	0.9	100.0(2,857)	
	고등학교	1.30(0.61)	76.9	17.2	4.9	1.1	100.0(2,888)	
2) 징계 사항	전체	1.63(0.76)	51.8	35.8	10.1	2.3	100.0(8,549)	24.040**
	초등학교	1.65(0.79)	51.9	33.7	11.9	2.5	100.0(2,832)	
	중학교	1.60(0.73)	53.1	36.3	8.7	2.0	100.0(2,836)	
3) 개인 시험 성적	전체	1.54(0.72)	58.0	31.7	8.8	1.6	100.0(5,725)	44.258***
	중학교	1.48(0.69)	62.1	28.8	8.1	1.1	100.0(2,845)	
	고등학교	1.60(0.75)	53.9	34.5	9.4	2.1	100.0(2,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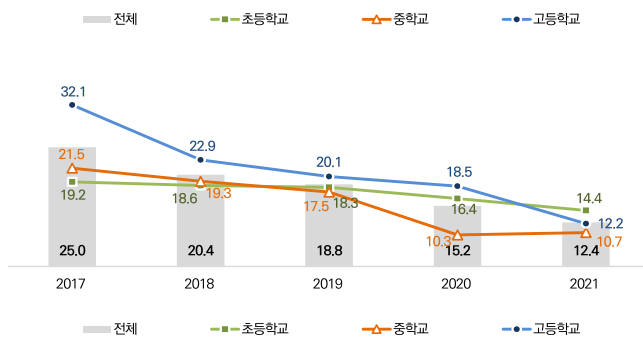
** $p < .01$, *** $p < .001$.

학교에서 개인의 정보가 보호되고 있는 정도에 대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17년에서 2021년에 이르기까지 교육비 미납 및 징계 사항, 시험 성적 공개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공개 정도가 절반 이상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III-3-13]). 교급별로 살펴보면, 각 부문에 대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개인정보가 덜 보호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과거에 비해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주의 깊게 다루고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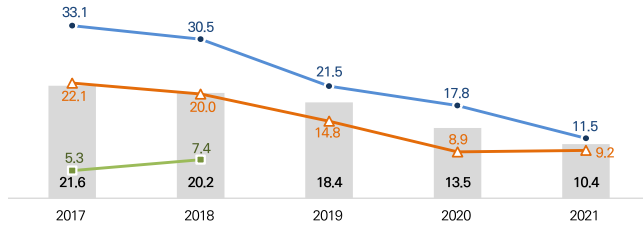
1) 교육비 미납



2) 징계 사항



3) 개인 시험 성적



* 주: 1)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2) 시험성적 공개 문항은 2019년부터 초등문항에서 제외됨.

그림 III-3-13.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정도(연도별 추이)

5) 정보접근권

(1) 매체 접근율

① 매체 이용률

아동과 청소년들이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살펴보고자 최근 1년 간 매체별 이용률을 살펴본 결과, 2020년 현재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94.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인터넷/모바일 메신저’가 93.6%, ‘지상파 TV’ 88.0%, ‘지상파 제외 TV’ 84.7% 순으로 보고되었다. 2018년 결과와 비교해보면, 신문이나 잡지/책, 만화책 등 인쇄물을 기반으로 한 매체와 전통적인 대중매체인 TV를 활용한 매체 이용률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2020년에 새롭게 추가된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OTT) 이용률은 교급별로도 55%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아동과 청소년이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전통적인 인쇄나 영상, 음성 매체를 넘어서서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16. 최근 1년간 매체별 이용률

(단위 : %)

구분	지상파 TV	지상파 제외 TV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OTT)	종이 신문	종이 만화책	종이 잡지/책	인터넷 신문	인터넷 만화(웹툰)	인터넷 잡지 및 전자책(E-book)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인터넷 / 모바일 메신저	SNS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전체	2018	92.6	91.0	-	20.3	56.3	63.6	51.7	76.3	19.8	93.5	92.4	74.3	24.6	
	2020	88.0	84.7	59.3	13.4	45.3	56.6	48.3	71.2	21.6	94.6	93.6	73.2	26.3	
학교급	초등학교	2018	92.8	85.6	-	20.3	78.7	71.3	31.4	59.8	18.9	91.4	83.6	44.5	17.1
		2020	88.9	81.4	55.3	17.1	68.4	66.1	34.9	56.4	21.0	91.3	85.5	45.5	19.1
	중학교	2018	93.1	93.0	-	19.3	54.3	61.3	51.5	81.3	19.3	95.2	96.6	86.2	22.5
		2020	89.1	87.6	61.2	11.0	41.3	53.9	49.2	78.3	20.7	96.9	98.0	85.1	29.1
	고등학교	2018	92.0	93.6	-	21.1	40.1	59.3	67.9	85.5	20.9	93.8	95.9	88.2	32.2
		2020	86.1	85.3	61.5	11.9	26.7	50.1	60.3	78.9	23.1	95.5	97.4	89.1	30.5

* 출처: 여성가족부(2020b).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66.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 2) '20년에는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OTT)(IPTV, 넷플릭스, WAVE, tving 등)'에 대한 질의를 추가함.
- 3) '18년도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아프리카TV, 판도라TV, 유튜브)'를 '20년도는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유튜브, 팝콘TV, 팟캐스트, 아프리카TV, 틱톡 등)'로 변경하여 질의함.
- 4) '18년도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를 '20년도는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로 변경하여 질의함.
- 5) '18년도 Social Network Services(SNS)의 예시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텀블러, 인스타그램,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으로 변경하여 질의하였고 '20년에는 예시에 밴드가 추가됨.
- 6) '18년도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토렌트, 프루나, 파일구리 등)'를 '20년도는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웹하드, 클라우드, 토렌트, 프루나, 파일구리 등)'로 변경하여 질의함.

또한, 아동과 청소년이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 빈도와 주 평균 이용시간을 살펴본 결과, 3세 이상의 응답자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하루에 1회 이상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도별 추이를 보면, 3~9세 아동이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2016년 54.0%에서 2020년 82.3%로, 주 평균 이용시간은 5.3시간에서 12.5시간으로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유아와 아동의 인터넷 이용 빈도와 시간 늘어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이미 우리의 생활 전반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이 일상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 잡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유아와 아동이 인터넷 콘텐츠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III-3-17.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시간(2016~2020년)

(단위 : %, 시간)

구분		하루에 1회 이상	일주일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미만	주 평균 이용시간
2016	3~9세	54.0	42.9	2.9	0.2	5.3
	10대	93.9	5.6	0.3	0.2	15.4
	20대	99.6	0.4	-	-	22.8
2017	3~9세	73.1	15.2	11.0	0.7	7.2
	10대	98.1	0.9	1.0	-	16.9
	20대	100.0	-	0.0	-	23.6

구분		하루에 1회 이상	일주일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미만	주 평균 이용시간
2018	3~9세	75.5	16.2	7.6	0.7	8.9
	10대	98.1	1.2	0.7	-	17.8
	20대	99.9	0.1	0.0	-	24.2
2019	3~9세	82.3	15.2	2.5	0.0	9.3
	10대	96.9	2.6	0.5	0.0	17.6
	20대	98.6	0.9	0.4	0.0	24.3
2020	3~9세	85.6	13.2	1.1	0.1	12.5
	10대	98.5	1.5	0.0	0.0	27.6
	20대	99.3	0.6	0.14	0.0	29.5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8a, 2019a). 2017~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20a).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76-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a).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114-115.

3세 이상부터 20대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3~9세는 TV 시청, 라디오 청취, 음악 감상, 동영상 및 영화 보기, 게임 등의 '여가활동'이 89.3%로 가장 높았다. 또한, 10대는 '교육·학습(99.9%)' '여가활동(99.1%)', SNS, 메신저 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98.5%)', '자료 및 정보획득(95.2%)'의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였고, 20대도 10대와 유사하게 '자료 및 정보획득(100%)', '커뮤니케이션(99.9%)', '여가활동(99.8%)', 인터넷 뱅킹, 상거래 행위, 여행, 교통 서비스 예약 및 이용 등 '기타(96.2%)'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었다.

표 III-3-18. 인터넷 이용 목적(2016~2020년)

(단위 : %)

구분		커뮤니케이션	여가활동	자료 및 정보획득	홈페이지 등 운영	교육·학습	직업·직장	기타
2016	3~9세	35.3	95.0	16.9	5.7	33.9	-	-
	10대	95.1	94.5	88.4	51.5	72.4	7.9	-
	20대	99.9	98.5	99.8	74.7	60.4	42.2	-
2017	3~9세	42.2	97.7	31.5	5.6	42.9	-	-
	10대	97.1	98.9	92.6	53.8	73.6	7.8	-
	20대	100.0	99.4	100.0	78.2	64.3	51.3	-

구분	커뮤니케이션	여가활동	자료 및 정보획득	홈페이지 운영	등	교육·학습	직업·직장	기타
2018	3~9세	46.4	97.0	37.5	12.2	51.6	-	0.4
	10대	98.2	99.5	95.6	70.1	83.8	7.7	30.5
	20대	100.0	99.7	100.0	90.9	65.5	59.8	93.4
2019	3~9세	48.9	96.1	36.0	10.3	50.0	0.0	3.4
	10대	98.6	99.5	96.0	69.9	83.5	8.9	27.3
	20대	100.0	99.7	100.0	91.8	70.2	60.8	91.0
2020	3~9세	53.1	89.3	43.1	18.6	48.5	2.4	3.1
	10대	98.5	99.1	95.2	64.8	99.9	9.4	37.7
	20대	99.9	99.8	100.0	87.4	82.6	51.5	96.2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8a, 2019a). 2017-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20a).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7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a).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118.

- * 주: 1) 복수응답 결과.
 2) '기타'항목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추가됨.

아동과 청소년들의 일주일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의 경우, 2020년 현재 3~9세(33.5%)와 10대(35.9%), 20대(32.1%) 모두 7시간~14시간 미만 동안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주 평균 이용시간은 3~9세가 7.1시간, 10대가 13.6시간, 20대가 16.2시간으로 나타나,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을 소유할 수 있으며 스스로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조작하고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표 III-3-19. 주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2016~2020년)

(단위 : %, 시간)

연도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3시간 미만	3시간~7시간 미만	7시간~14시간 미만	14시간~21시간 미만	21시간~35시간 미만	35시간 이상	주평균 (시간)
2016	3~9세	18.7	38.1	23.7	16.1	2.6	0.7	0.2	3.4
	10대	2.0	8.8	18.9	41.8	19.8	7.5	1.1	9.6
	20대	0.2	2.6	10.6	41.4	27.9	14.6	2.8	12.7
2017	3~9세	9.7	19.1	30.5	31.6	6.7	1.8	0.6	5.7
	10대	1.1	5.2	16.3	42.4	22.4	11.0	1.6	10.9
	20대	0.0	1.1	7.4	38.1	31.1	18.6	3.7	14.3

연도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3시간 미만	3시간~7시간 미만	7시간~14시간 미만	14시간~21시간 미만	21시간~35시간 미만	35시간 이상	주평균 (시간)
2018	3~9세	7.9	17.8	22.3	35.8	12.1	3.7	0.4	7.2
	10대	1.2	4.9	14.4	34.6	29.9	13.3	1.8	12.0
	20대	0.3	1.4	7.4	33.3	32.2	21.6	3.8	14.8
2019	3~9세	15.6	17.4	26.1	29.1	8.7	2.6	0.5	5.8
	10대	3.8	6.2	12.8	35.8	25.3	13.9	2.3	11.7
	20대	2.2	3.1	6.7	32.8	30.0	19.8	5.4	14.9
2020	3~9세	9.2	15.6	24.9	33.5	11.8	4.5	0.5	7.1
	10대	1.5	5.3	9.8	35.9	26.5	15.5	5.5	13.6
	20대	0.4	2.9	7.0	32.1	27.0	21.4	9.2	16.2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각 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20b).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p.5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b).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p.48.

이렇듯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표 III-3-20>에서 볼 수 있듯이 2020년 현재 10대 청소년의 35.8%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5.6%p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고위험군은 5.0%, 잠재적 위험군은 30.8%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해 각각 1.2%p, 4.4%p가 증가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학생이 과의존 위험군(39.6%), 고위험군(5.8%), 잠재적 위험군(33.8%)에 속하는 비율이 전체 학교급 중에서도 가장 높게 보고되어, 이들이 스마트폰 과몰입으로 인해 학업이나 일상생활, 대인관계 등에 대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10대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영상 매체를 접하거나 취미 활동, 음악 감상, 게임 등의 여가활동뿐만 아니라 학업 및 상거래 정보 탐색, 메신저 등을 통한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를 함으로써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표 III-3-20. 스마트폰 과의존¹⁾ 실태 및 주이용 콘텐츠

(단위 : %)

	과의존 위험군 ²⁾	주이용 콘텐츠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메신저	영화 TV 동영상	학업 업무용 검색	게임	관심사 (취미) 검색	음악	상품/서비스 정보 검색
2019	30.2	3.8	26.4	97.3	97.5	93.9	93.1	91.0	88.5	79.0
2020	35.8	5.0	30.8	98.3	98.2	96.6	95.6	95.2	91.1	85.1
초등학생	30.5	4.3	26.2	88.2	97.6	83.3	95.6	74.4	79.3	54.9
중 학생	39.6	5.8	33.8	98.6	98.3	98.1	97.0	69.9	93.2	88.8
고등학생	35.0	5.3	29.7	99.7	98.4	98.5	93.8	98.9	95.6	93.3

*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2021.5.24.), 2021 청소년 통계, p.32.

* 원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0),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 주: 1)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 능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
 2) 10~19세 청소년 중 과의존 위험군 비율
 3) 2020년 기준,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은 상위 7개 콘텐츠를 제시함.
 4) 복수응답 결과

한편, TV나 스마트 기기 등의 개인적인 도구 이외에 공공 영역에서 매체를 접할 수 있는 도서관 수를 살펴본 결과, 일반 공공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수는 연도별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었다. 2020년 현재 일반 공공도서관은 1,033개관, 어린이도서관은 101개관이 운영되고 있어 전년 대비 각각 3.6%p, 2.0%p가 증가하였다.

표 III-3-21. 일반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수(2012~2020년)

(단위 : 개관)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9	2020
일반 공공도서관	745	780	842	889	918	947	997	1,033
어린이도서관	83	85	88	89	92	95	99	101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20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1.
 문화체육관광부(2019b), 2019년도(2018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4.
 문화체육관광부(2020d), 2020년도('19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4.

또한, 초·중·고등학생의 독서량의 경우, 종이책과 전자책, 오디오북 모두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독서량이 감소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2013년 이후로 65권

이상의 종이책을 꾸준하게 읽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중학생은 20권 내외, 고등학생은 8권 내외의 종이책을 읽고 있었다. 전자책 독서량도 교급에 따라 연도별 추이가 큰 변화없이 소폭 증감을 보이고 있었고, 2019년 새롭게 조사된 오디오북의 경우에도 중, 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이 더욱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2. 학생 독서량(2011~2019년)

(단위 : 권)

구분	종류 연도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2011	2013	2015	2017	2019	2011	2013	2015	2017	2019	2019
초등학교 4~6학년		45.0	65.1	70.8	67.1	69.8	3.6	8.6	8.1	8.7	9.1	7.8
중학교		14.4	22.0	19.4	18.5	20.1	5.3	7.8	5.8	5.4	4.5	0.4
고등학교		15.4	9.8	8.9	8.8	8.8	2.5	5.2	4.0	3.7	3.2	0.3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0a),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pp.76-80.

* 주: 1) 전체 응답자(비독서자 포함) 기준 지난 1년 간 평균 독서량
2) 오디오북 조사는 2019년 신규 추가

② 유해매체 이용 경험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 등의 뉴미디어가 대중화, 보편화됨에 따라 이러한 매체를 통해 유해한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초, 중, 고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을 살펴본 결과, 2020년 현재 전체 응답자 중 37.4%가 성인용 영상물을 접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남학생(44.3%)이 여학생(29.7%)보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성인용 영상물을 많이 접했다. 한편, 연도별 추이를 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으나, 초등학생의 이용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집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았던 2020년에는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이 33.8%로 2018년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요구된다.

표 III-3-23.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2016~2020년)

(단위 : %)

구분	전체	성별		학교급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6	41.5	51.7	30.5	18.6 (5~6학년 16.1)	42.4	58.0
2018	39.4	48.7	29.4	19.6 (5~6학년 17.7)	41.6	53.3
2020	37.4	44.3	29.7	33.8 (5~6학년 29.3)	32.2	45.1

* 출처: 여성가족부(2018a).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53.
여성가족부(2020b).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76.

- * 주: 1) 초등학생의 경우, 4~6학년을 조사대상으로 함.
2) 2016년과 2018년, 2020년 결과는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또한, 초, 중, 고등학생은 성인용 영상물을 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23.9%)’,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17.3%)’, ‘TV 방송(13.5%)’ ‘스마트폰 앱(13.4%)’을 통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II-3-24). 학교급별로 나누어 보면, 전반적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2018년에 비해 2020년에는 매체별 성인용 영상물 시청 경험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2018년에 비해 2020년에는 매체 이용 경로별로 성인용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경험률이 전반적으로 현저하게 상승하였다. 올바른 성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없이 이른 시기에 무분별하게 성인용 영상물이 노출되는 것은 초등학생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의 노출 통로에 대한 관심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표 III-3-24. 최근 1년간 이용 경로별 성인용 영상물 시청 경험

(단위 : %)

구분	TV 방송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SNS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스마트폰 앱		
	2018	2020	2018	2020	2018	2020	2018	2020	2018	2020	2018	2020	2018	2020	
전체	12.9	13.5	28.2	23.9	17.7	17.3	10.5	12.6	16.5	12.8	6.6	5.7	11.0	13.4	
성별	남자	15.2	14.5	37.5	31.3	20.8	19.9	12.9	13.6	18.7	12.8	9.4	6.9	14.0	14.7
	여자	10.4	12.5	18.2	15.9	14.2	14.6	8.0	11.6	14.1	12.8	3.6	4.4	7.9	11.9
학교급	초등학교	9.5	16.1	10.6	19.4	13.8	21.6	10.3	18.4	6.2	11.1	2.6	6.9	11.2	18.5
	중학교	12.6	11.0	31.0	20.1	20.2	14.4	11.5	10.5	18.7	12.5	5.8	4.4	11.5	11.2
	고등학교	15.7	13.3	39.8	31.8	18.7	15.9	9.8	9.0	22.8	14.6	10.4	5.7	10.5	10.3

* 출처: 여성가족부(2018a).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55.
여성가족부(2020b).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77.

-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복수응답
 2) '18년도 'TV방송(유선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IPTV 등)'를 '20년도는 'TV방송(지상파, 케이블, IPTV 등)'로 변경하여 질의함.
 3) '18년도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아프리카TV, 판도라TV, 유튜브)'를 '20년도는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유튜브, 팝콘TV, 팟캐스트, 아프리카TV 등)'로 변경하여 질의함.
 4) '18년도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를 '20년도는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등)'로 변경하여 질의함.
 5) '18년도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토렌트, 프루나, 파일구리 등)'를 '20년도는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웹하드, 클라우드, 토렌트, 프루나, 파일구리 등)'로 변경하여 질의함.

(2) 미디어 리터러시

① 매체이용 교육 경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는 미디어를 사용하고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능력을 의미한다(정현선, 2006). 아동과 청소년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정도를 파악해보고자 매체이용 교육 경험과 이러한 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2020년 현재, 초, 중, 고등학생들은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을 51.2%,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 교육은 48.4%,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은 73.5%가 받았다. 스마트 기기의 확산과 보급으로 저연령대 아동들도 매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초등학생의 매체이용과 관련된 교육 경험들이 연도별로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III-3-25. 매체이용 교육 경험(복수응답)

(단위 : %)

구분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 교육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전체	60.8	51.3	51.2	34.5	36.5	48.4	72.0	71.0	73.5	
성별	남자	66.2	55.2	55.0	39.0	40.4	52.5	72.1	69.9	73.3
	여자	54.9	47.0	47.1	29.7	32.3	44.0	71.8	72.2	73.6
학교급	초등학교	51.6	49.4	50.3	31.2	31.8	42.4	75.5	75.4	78.4
	중학교	67.6	59.2	55.4	35.6	38.2	51.7	74.6	73.6	75.2
	고등학교	61.7	46.1	48.3	36.1	38.8	51.3	66.9	65.4	67.1

* 출처: 여성가족부(2018a).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83.
여성가족부(2020b).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113.

* 주: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복수응답

또한, 매체이용과 관련된 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해본 결과, 매체이용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을 한 전체 초, 중, 고등학생들의 비율이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교육은 71.7%,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교육이 76.2%,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이 69.0%였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매체이용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밝힌 것을 미루어볼 때, 성인용 콘텐츠와 온라인 도박 등의 피해 예방 교육과 건전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이용과 관련된 교육은 초, 중, 고등학생들의 미디어 활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매체이용 교육은 좀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III-3-26. 매체이용 교육의 도움 정도

(단위 : 명, %)

매체 종류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2016	2018	2020	2016	2018	2020		
1) 성인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	성별	전체	44.8	48.3	52.0	18.6	19.4	19.7	
	성별	남자	42.2	45.5	48.6	18.7	19.0	18.7	
		여자	48.3	51.8	56.3	18.3	19.8	21.1	
	교육	학교	초등학교	46.2	48.9	51.0	46.1	44.2	38.8
			중학교	50.9	54.0	57.1	13.7	12.5	14.3
			고등학교	38.2	41.9	47.6	6.0	5.6	6.6
2)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	성별	전체	44.8	47.5	51.3	27.5	25.5	24.9	
	성별	남자	41.7	44.2	47.9	28.6	26.2	25.5	
		여자	49.2	52.0	55.6	25.8	24.6	24.1	
	교육	학교	초등학교	40.9	42.2	46.5	53.4	52.3	44.5
			중학교	49.4	53.4	56.5	25.2	21.8	23.1
			고등학교	43.3	46.2	50.1	12.7	11.2	11.1
3)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성별	전체	47.2	47.4	50.9	19.0	18.5	18.1	
	성별	남자	45.5	45.1	48.9	20.2	20.0	18.7	
		여자	49.2	49.7	53.1	17.6	17.0	17.5	
	교육	학교	초등학교	50.3	51.6	54.8	39.4	38.1	32.5
			중학교	52.6	50.3	52.8	14.9	13.6	13.9
			고등학교	39.4	40.7	44.6	5.7	5.4	6.6

* 출처: 여성가족부(2018a).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86.
 여성가족부(2020b).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115.

- * 주: 1)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3) 원자료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됨',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에 대한 값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 수치 위주로 제시함.

② 미디어 역량

아동과 청소년이 다양한 매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며,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경향도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미디어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역량을 확인해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0)에서 진행한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의하면, 2020년 현재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온라인 상에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 정보의 신뢰성 판단,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용자 측면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스스로 역량이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반면에

디지털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편집할 수 있다는 정보제공자의 측면에서는 초, 중, 고등학생 모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이었다(초등학생 73.8%, 중학생 67.0%, 고등학생 52.8%). 즉, 아동과 청소년은 미디어를 활용하는 이용자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춘 것으로 보이나, 미디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공자 측면에서의 역량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III-3-27. 디지털 사용 역량

(단위 : %)

매체 종류	온라인상에서 필요한 정보 및 콘텐츠를 잘 찾을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획득한 정보가 신뢰할만한지 판단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편집할 수 있다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에 관련한 이슈를 파악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학업·직업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학교급	초등학교	27.9	72.1	45.2	54.8	56.4	43.6	73.8	26.2	56.3	43.7	40.7	59.3
	중학교	17.5	82.5	28.5	71.5	36.7	63.3	67.0	33.0	39.4	60.6	32.1	67.9
	고등학교	11.8	88.2	20.4	79.6	29.7	70.3	52.8	47.2	32.0	68.0	29.0	71.0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0).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p.77.

6) 소결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에서 ‘2-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의 지표 내용을 보면, ‘2-1-1.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에서는 아동·청소년이 가정 내에서 가사 및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집안 내 중대사는 90.9%, 상급학교는 94.0%, 진로(직업) 94.6%, 공부시간·방법은 91.1%가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대해 보호자(부모)로부터 존중받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2-1-2.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에서는 학생회 활동의 자율권 보장과 관련하여 자치권은 46%, 예산 및 장소, 시간은 48.5%, 학생회 의견 존중과 반영에 대해서는 58.3%가 보장된다고 하였으며, 임원 후보 성적 제한의 경우, 37.1%만이 없다고 답하였다.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

회에 참여하는 정도는 26.8%로, 2017년에 비해서는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학교 규칙이나 규정을 제·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정도는 82.2%로 높은 수준이었다. ‘2-1-3.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사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총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아동총회의 경우, 2020년 현재까지 총 17회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20년에는 참여와 놀 권리, 진로, 건강 분야를 다룬 결의문을 정부에 전달하였다.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20년 현재 239개 지역에서 약 4,400여 명의 청소년이 활동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고자 구성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2020년에 총 331개소에서 각 지역별로 10~20명 내외의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특별회의는 2020년에 약 5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여 취업 및 경제 등의 내용이 담긴 자립을 주제로 한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기구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실제 인지도 및 활동경험은 11%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에 초, 중, 고등학생의 72.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참여권이 보장될 수 없는 방해요인으로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이 30.7%, 29.2%는 시간을 내기 어렵다, 24.2%가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12.7%는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꼽았다.

‘2-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서 ‘2-2-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를 살펴보면, 초, 중, 고등학생의 92.1%는 사회나 정치, 인생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2-2-2. 종교 자유 보장 정도’에서는 가정의 경우, 부모나 형제와 관계없이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비율이 82.1%였으나, 종교재단으로 설립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49%만이 학교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한다고 밝혀져 학교 내에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3. 결사 및 집회의 자유’의 지표 결과를 보면, ‘2-3-1. 결사·집회 경험률’에 서는 중·고등학생 청소년 중에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봤다는 경험이 11.2%,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5.7%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사회문제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에서 경로나 훈계, 상담, 징계 등의 피해 경험률은 2.1%로 밝혀졌다.

‘2-4. 사생활의 보호’에서 ‘2-4-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의 지표 내용을 보면, 중·고등학생 청소년은 1년에 1회 이상 21.3%가 용모 검사를, 28.9%가 복장 검사를, 6.2%가 소지품 검사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4-2. 학생 정보 보호정도’와 관련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에서 교육비 미납에 대한 정보가 5.4%, 징계 사항은 12.4%, 개인 시험성적이 10.4%가 공개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사생활의 보호와 관련된 지표의 추이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인식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5. 정보접근권’의 지표로 ‘2-5-1. 매체 접근율’을 보면, 아동과 청소년은 2020년 현재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94.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인터넷/모바일 메신저’가 93.6%, ‘지상파 TV’ 88.0%, ‘지상파 제외 TV’ 84.7% 순으로 매체를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3세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의 대부분은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고, 주로 TV 시청, 라디오 청취, 음악 감상, 동영상 및 영화보기, 게임 등의 ‘여가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89.3%로 가장 높았다. 일주일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의 경우, 2020년 현재 3~9세(33.5%)와 10대(35.9%), 20대(32.1%) 모두 7시간~14시간 미만 동안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확산됨에 따라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35.8%로, 고위험군은 5.6%, 잠재적 위험군은 30.8%로 나타나 스마트폰 과몰입으로 인해 청소년

이 일상생활에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의와 점검이 요구된다. 한편, TV나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한 개인적인 도구 이외에 공공 영역에서 매체를 접할 수 있는 도서관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20년 현재, 일반 공공도서관은 1,033개소, 어린이도서관은 101개소가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종이책과 전자책, 오디오북 등의 독서량은 감소하였다. 한편, 스마트기기와 뉴미디어가 보편화됨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이 유해매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2020년 현재, 초, 중, 고등학생 중 37.4%가 성인용 영상물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23.9%)’,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17.3%)’, ‘TV 방송(13.5%)’ ‘스마트폰 앱(13.4%)’을 통해 시청했다고 밝혔다. ‘2-5-2. 미디어 리터러시’에서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정도를 파악하고자 매체이용 교육 경험과 도움 정도를 살펴보았다. 2020년 현재, 초, 중, 고등학생들은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교육을 51.2%,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 교육은 48.4%,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은 73.5%가 받았으며, 이러한 매체이용 교육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70% 이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또한, 미디어 역량과 관련하여 2020년 현재, 초, 중, 고등학생들은 온라인 상에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 정보의 신뢰성 판단, 개인정보 보호 등의 측면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스스로 역량이 있다고 하였지만, 디지털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편집할 수 있다는 정보제공자의 측면에서는 초, 중, 고등학생 모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으로 보고되어, 아동과 청소년은 미디어를 활용하는 이용자 측면에서는 역량을 갖추었으나 미디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측면에서의 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폭력 및 학대

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1) 청소년폭력 경험률

① 가정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표 III-4-1〉을 보면 전체 응답자 8,680명 중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욕설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들은 학생들은 10명 중 7명에 가까워 69.5%에 달했다. 남학생(70.1%)과 여학생(68.9%)의 욕설 경험은 그다지 차이가 있지 않았으나, 초등학교(68.5%)이나 중학생(65.9%)보다 고등학교의 욕설 경험이 74.1%나 되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욕설의 경험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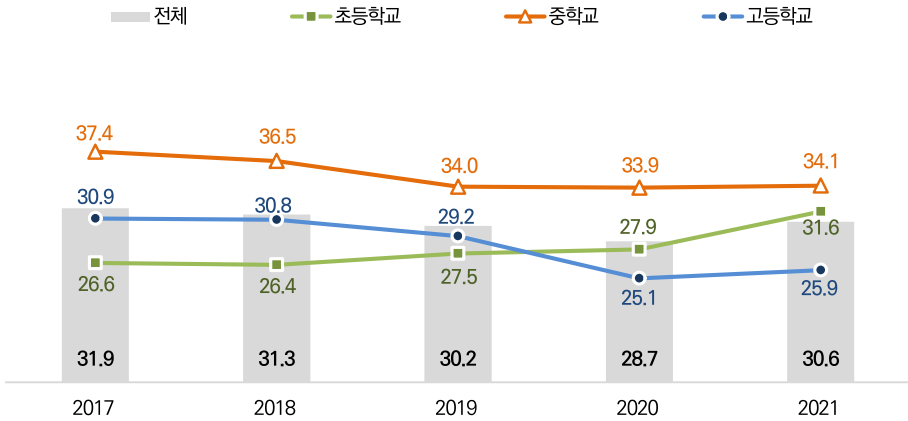
표 III-4-1.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69.5	15.6	6.4	4.7	3.9	100.0(8,680)	3.759
성별							
남학생	70.1	14.9	6.3	4.7	4.0	100.0(4,498)	58.640***
여학생	68.9	16.2	6.4	4.8	3.7	100.0(4,183)	
학교급							122.763***
초등학교	68.5	16.2	6.9	4.3	4.2	100.0(2,909)	
중학교	65.9	16.7	7.2	5.4	4.8	100.0(2,865)	
고등학교	74.1	13.8	5.0	4.5	2.6	100.0(2,906)	
경제적 수준							122.763***
상	71.9	14.9	6.1	4.1	2.9	100.0(4,969)	
중	68.7	16.1	6.1	4.8	4.2	100.0(2,952)	
하	55.9	17.1	9.4	8.7	8.8	100.0(716)	

* $p < .05$, ***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II-4-1.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연도별 추이)

[그림 III-4-1]에서는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의 피해 경험의 연도별 추이가 나타나 있다. 이 추이를 보면 피해 경험 비율이 2017년에는 31.9%였는데 전반적으로 굴곡은 있으나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2020년 전체 피해 응답자는 28.7%로 가장 낮았는데, 2021년에는 30.6%로 소폭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4-2>에는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체벌을 받은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76.0%가 한 번도 없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74.9%)이 여학생(77.2%)보다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체벌 경험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급에서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체벌 경험이 적어서 고등학생은 87.0%가 한 번도 체벌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중학생은 75.9%, 초등학생은 65.1%가 체벌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III-4-2. 체벌 경험여부_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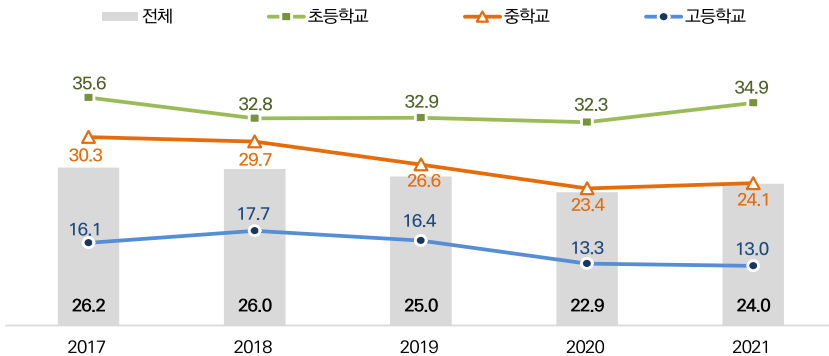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76.0	16.6	4.2	2.3	0.9	100.0(8,689)	9.555*
성별	남학생	74.9	16.9	4.6	2.6	100.0(4,500)	
	여학생	77.2	16.2	3.9	1.9	100.0(4,189)	
학교급	초등학교	65.1	22.3	6.9	3.7	100.0(2,914)	419.471***
	중학교	75.9	17.3	4.2	2.0	100.0(2,866)	
	고등학교	87.0	10.0	1.7	1.1	100.0(2,908)	

* $p < .05$, ***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그림 III-4-2]에는 가정에서의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체벌을 겪은 경험에 관한 추이가 나타나 있다. 2017년 26.2%로 10명 중 3명이 체벌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전체 응답학생의 22.9%로 가장 낮아졌다가 2021년 24.0%로 조금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II-4-2. 체벌 경험여부_부모님(보호자)로부터 신체적 벌(연도별 추이)

② 교사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교사로부터 욕설을 들은 폭력피해 경험은 전체 응답학생 8,670명 중 91.1%가 한 번도 없다고 응답했는데, 한 번도 피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93.3%)이 남학생(89.0%)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89.3%)과 고등학생(89.2%)은 거의 차이가 없고, 초등학생은 욕설을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들은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4.8%로 조사되었다(〈표 III-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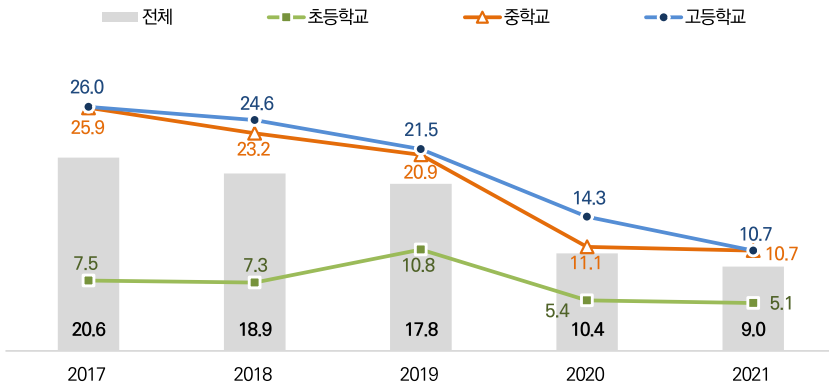
표 III-4-3.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1.1	5.8	1.5	0.9	0.8	100.0(8,670)	67.151***
성별							
남학생	89.0	6.6	2.0	1.2	1.2	100.0(4,494)	85.178***
여학생	93.3	4.9	1.0	0.5	0.3	100.0(4,176)	
학교급							85.178***
초등학교	94.8	3.5	0.8	0.4	0.4	100.0(2,902)	
중학교	89.3	7.4	1.8	0.7	0.8	100.0(2,863)	
고등학교	89.2	6.4	1.9	1.4	1.0	100.0(2,904)	

***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II-4-3.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연도별 추이)

[그림 III-4-3]은 학교선생님으로부터 학생들이 모욕적인 말을 들은 피해 경험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 번도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7년 79.4%에서 2020년 전체응답 학생의 89.7%, 2021년 91.1%로 높아져 언어폭력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4-4. 체벌 경험여부_교사로부터 신체적 벌(체벌)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6.9	2.0	0.6	0.3	0.2	100.0(8,671)	74.243***
성별							
남학생	95.4	2.9	0.9	0.4	0.4	100.0(4,494)	74.243***
여학생	98.6	1.0	0.3	0.1	0.1	100.0(4,176)	
학교급							9.391
초등학교	97.1	1.7	0.5	0.2	0.4	100.0(2,905)	
중학교	97.1	2.1	0.4	0.3	0.2	100.0(2,863)	
고등학교	96.5	2.2	0.8	0.3	0.2	100.0(2,9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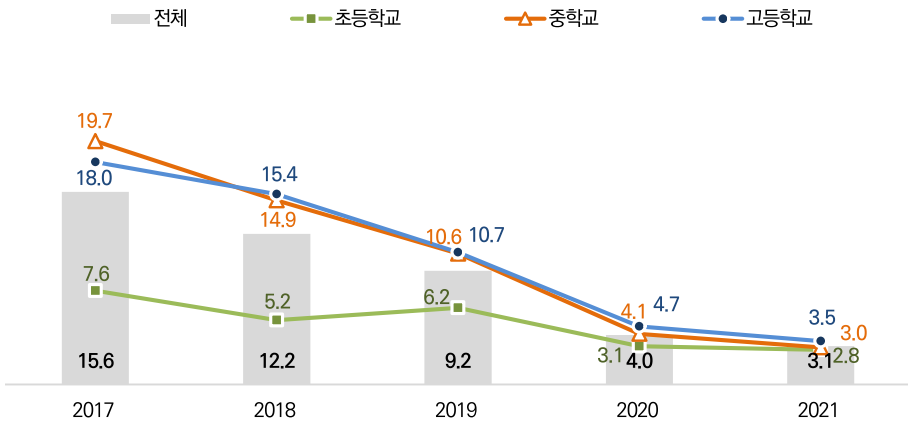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표 III-4-4>를 보면 2021년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체벌을 받은 피해 경험을 물은 조사결과 전체 응답학생 8,671명 중 3.1%가 피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00명 중 3명에 해당하고 있지만, 아직도 학교에서 체벌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실로 심각한 사실이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1.4%)에 대한 교사의 체벌은 남학생(4.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교사로부터 체벌 피해 경험은 2.9%로 동일했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전체응답자의 3.5%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4-4]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교사로부터의 체벌에 관한 학생들의 피해 경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7년 15.6%였던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작년에는

4.0%까지 낮아졌다가 금번 조사년도인 2021년도에는 최저치인 3.1%까지 낮아져 매우 고무적인 조사결과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법령으로 현행 체벌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아직 체벌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일부 교사들의 인권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까운 사실이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II-4-4. 체벌 경험여부_교사로부터 신체적 벌(연도별 추이)

③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표 III-4-5〉에는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 욕설과 같은 언어폭력, 물리적인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이라 할 수 있는 따돌림,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갈취 종류의 폭력, 성적으로 놀리거나 희롱하는 성폭력, 강제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학교폭력의 피해 경험에 관한 2021년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학교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 욕설이나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의 피해 경험은 전체 응답자 8,700명 중 12.2%에 달했고, 남학생이 14.9%로 여학생 9.4%보다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의 피해가 가장 커 19.9%였고, 다음으로 중학교 11.1%, 고등학교에서의 피해 경험이 5.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은 전체 응답자의 5.7%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학생의 피해가 7.7%로 여학생의 3.5% 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학교급에서는 초등학교에서의 신체적 폭력이 가장 많아 14.8%로 나타났고, 중학교에서는 1.7%, 고등학교에서는 0.5%로 나타났다.

따돌림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의 4.5%가 피해 경험을 보였으며,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거의 없어 각각 4.6%와 4.5%로 조사되었다. 학교급에서는 역시 초등학생의 따돌림 피해 경험이 가장 높아 9.0%로 나타났으며, 중학생 2.9%, 고등학생 1.6%로 드러났다.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는 피해 경험은 전체 응답자 중 1.7%가 겪었으며, 남학생이 2.2%로 1.1%인 여학생보다 배가 많았다. 학교급에서는 역시 초등학생의 피해가 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생 1.5%, 고등학생 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 놀림과 희롱과 같은 성폭력 피해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2.2%가 해당되었다. 이와 같은 성폭력의 피해 경험은 남학생이 2.8%로 여학생의 1.7%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에서는 역시 성폭력의 피해 경험도 초등학생이 가장 높아 2.9%였고, 중학생이 2.4%, 고등학생이 1.5%로 조사되었다. 강제적인 심부름과 같은 학교폭력의 피해는 전체 응답학생 중 1.3%가 경험했으며, 남학생이 1.7%로 여학생의 0.7%보다 높았다. 학교급에서 보면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이 가장 높아 2.2%에 해당되었으며, 중학생이 1.0%, 고등학생이 0.6%로 조사되었다.

표 III-4-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욕설· 모욕	전체	87.8	7.7	1.8	1.3	1.4	100.0(8,700)	65.704***		
	성별	남학생	85.1	9.1	2.2	1.7	1.9		100.0(4,506)	
		여학생	90.6	6.2	1.3	0.9	0.9		100.0(4,194)	
	학교급	초등학교	80.1	12.3	2.7	2.4	2.6		100.0(2,922)	288.642***
		중학교	88.9	6.8	1.9	1.0	1.4		100.0(2,869)	
		고등학교	94.3	3.9	0.9	0.5	0.4		100.0(2,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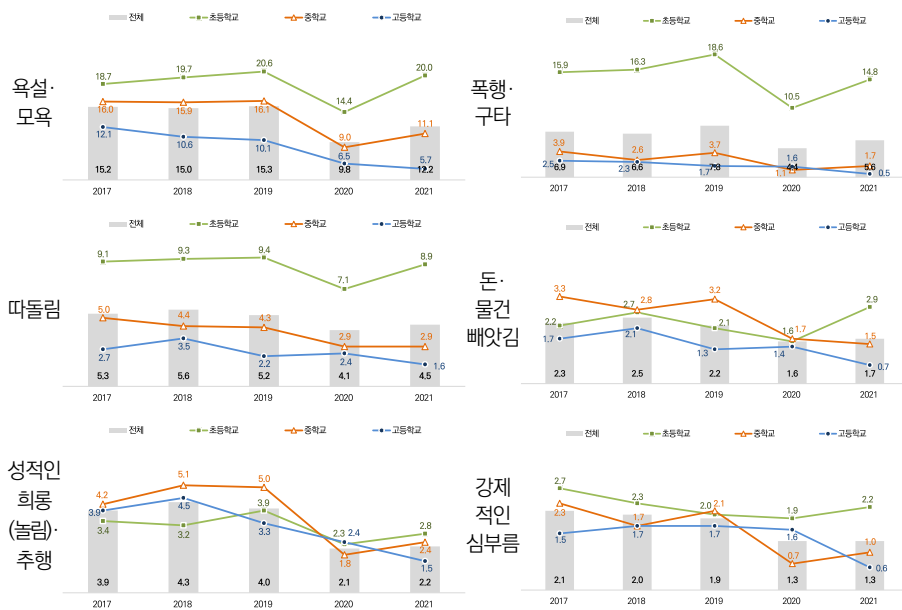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폭행· 구타	전체	94.3	3.3	1.0	0.7	0.6	100.0(8,699)	69.506***		
	성별	남학생	92.3	4.5	1.5	0.9	0.8		100.0(4,507)	
		여학생	96.5	2.1	0.6	0.4	0.4		100.0(4,192)	
	학교급	초등학교	85.2	8.7	2.6	1.8	1.7		100.0(2,920)	682.859***
		중학교	98.3	1.0	0.4	0.1	0.2		100.0(2,871)	
고등학교		99.5	0.3	0.1	0.1	0.0	100.0(2,908)			
따돌림	전체	95.5	3.2	0.7	0.3	0.3	100.0(8,700)	9.399		
	성별	남학생	95.4	3.0	0.8	0.4	0.3		100.0(4,507)	
		여학생	95.5	3.5	0.5	0.2	0.2		100.0(4,193)	
	학교급	초등학교	91.0	6.6	1.2	0.6	0.5		100.0(2,922)	211.181***
		중학교	97.1	2.1	0.5	0.2	0.1		100.0(2,871)	
고등학교		98.4	1.0	0.3	0.2	0.1	100.0(2,908)			
돈· 물건 빼앗김	전체	98.3	1.1	0.4	0.1	0.1	100.0(8,693)	18.196**		
	성별	남학생	97.8	1.3	0.6	0.2	0.1		100.0(4,503)	
		여학생	98.9	0.8	0.2	0.0	0.1		100.0(4,190)	
	학교급	초등학교	97.1	2.0	0.5	0.2	0.2		100.0(2,918)	49.138***
		중학교	98.5	0.8	0.4	0.1	0.2		100.0(2,869)	
고등학교		99.3	0.5	0.2	0.0	0.0	100.0(2,906)			
성적인 희롱 (놀림) 추행	전체	97.8	1.5	0.3	0.2	0.2	100.0(8,701)	16.930**		
	성별	남학생	97.2	1.6	0.5	0.3	0.3		100.0(4,507)	
		여학생	98.3	1.3	0.1	0.1	0.1		100.0(4,194)	
	학교급	초등학교	97.1	1.9	0.3	0.2	0.4		100.0(2,923)	20.399**
		중학교	97.6	1.5	0.5	0.2	0.2		100.0(2,870)	
고등학교		98.5	0.9	0.3	0.2	0.1	100.0(2,908)			
강제 적인 심부름	전체	98.7	0.9	0.2	0.1	0.1	100.0(8,700)	20.306***		
	성별	남학생	98.3	1.1	0.3	0.2	0.1		100.0(4,507)	
		여학생	99.3	0.6	0.1	0.1	0.0		100.0(4,193)	
	학교급	초등학교	97.8	1.4	0.3	0.2	0.3		100.0(2,921)	41.225***
		중학교	99.0	0.8	0.2	0.0	0.0		100.0(2,871)	
고등학교		99.4	0.4	0.1	0.1	0.0	100.0(2,908)			

***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그림 III-4-5]에서는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폭력 경험에 대한 연도별 추이가 잘 드러나 있다. 먼저 심한 욕설이나 모욕과 같은 폭력의 피해 경험 추이는 2017년 이후 다소 상승하다가 2020년에는 9.9%로 크게 줄더니 2021년 12.2%로 다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이나 구타와 같은 신체적 폭력의 피해 경험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3년 7.2%에서 전반적인 감소추이를

보이다가 2019년 7.8%로 다소 상승한 후 2020년 4.4%, 2021년 5.7%의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돌림 피해 경험의 연도별 추이는 2017년 5.3%에서 전반적인 감소 추이를 보여 2021년에는 4.5%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는 피해 경험은 2017년 2.3%에서 전반적인 감소 추이를 보여 2021년에는 1.7%로 낮아졌다. 성적인 놀림이나 추행과 같은 성폭력 피해 경험 추이는 2017년 3.9%에서 다소 굴곡이 있다가 2019년 4.0%, 2020년 2.1%, 2021년 2.2%를 보이고 있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II-4-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강제적인 심부름의 폭력 피해 경험 추이는 2017년 2.1%를 보이다가 전반적인 감소 추이를 나타내 2020년 1.4%, 2021년에는 1.3%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④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표 III-4-6〉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2021년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욕설 및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의 피해 경험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8,698명의 18.1%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학생의 피해가 19.1%로 여학생의 피해 17.1%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에서는 중학생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폭력 피해 경험이 가장 높아 22.4%로 나타났고, 이어서 초등학생 19.8%, 고등학생 12.2%로 차이가 다소 있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헐박과 같은 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2.9%에 달하였다. 남학생(3.3%)의 피해 경험이 여학생(2.4%)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급에서는 초등학생의 피해가 가장 커 4.1%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중학생 3.0%, 고등학생 1.5%로 조사되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희롱(놀림) 피해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3.1%가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3.3%, 남학생이 2.9%의 피해 경험을 응답해 여학생이 다소 피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급에서는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중학생의 피해가 가장 많아 3.3%로 나타났고, 이어서 초등학생 3.2%, 고등학생 2.6%로 조사되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생활 침해의 폭력은 가장 문제가 되는 폭력의 형태인데 전체 응답자의 4.2%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조사결과 남학생(4.0%) 보다는 여학생(4.5%)의 피해가 다소 컸으며, 학교급에서 보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중학생이 피해가 가장 커 5.2%로 나타났고, 초등학생이 4.6%, 고등학생이 3.0%의 피해를 보이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따돌림 피해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1.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학생은 1.9%의 피해 경험이 있었고, 여학생은 이 보다 피해가 적어 1.4%로 나타났다. 학교급을 살펴보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따돌림 폭력 피해 경험은 상급학교로 갈수록 적어져 고등학생이 0.9%, 중학생이 1.3%, 초등학생이 2.8%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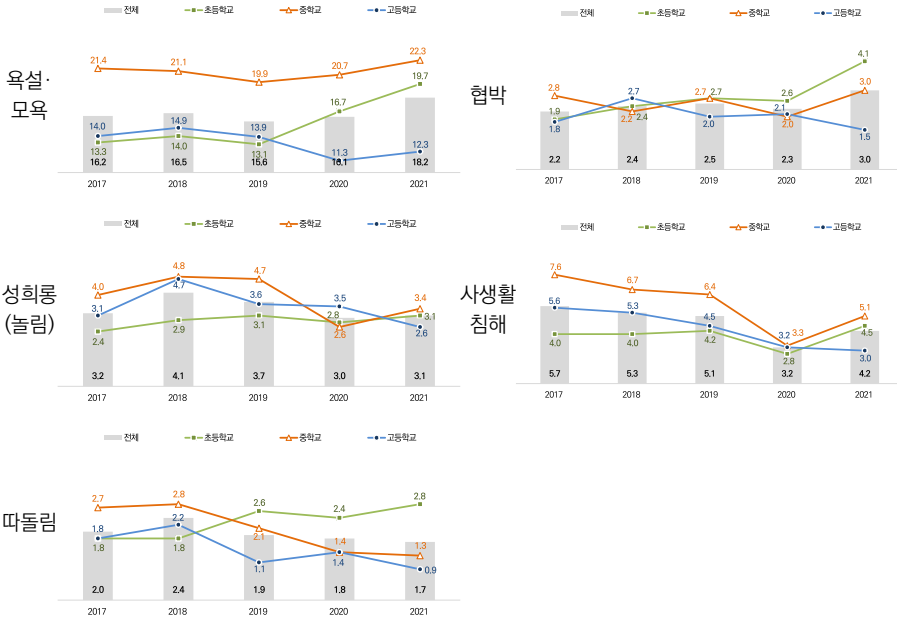
표 III-4-6.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욕설· 모욕	전체	81.9	10.0	3.2	2.4	2.6	100.0(8,698)	54.340***		
	성별	남학생	80.9	9.3	3.4	2.9	3.6		100.0(4,504)	
		여학생	82.9	10.8	2.9	1.9	1.5		100.0(4,194)	
	학교급	초등학교	80.2	11.3	3.4	2.8	2.2		100.0(2,923)	127.963***
		중학교	77.6	11.8	3.5	3.0	4.0		100.0(2,869)	
		고등학교	87.8	7.0	2.5	1.3	1.5		100.0(2,905)	
협박	전체	97.1	1.9	0.5	0.3	0.3	100.0(8,698)	16.398**		
	성별	남학생	96.7	1.9	0.6	0.3	0.5		100.0(4,506)	
		여학생	97.6	1.8	0.3	0.2	0.1		100.0(4,193)	
	학교급	초등학교	95.9	3.0	0.5	0.4	0.2		100.0(2,922)	52.874***
		중학교	97.0	1.8	0.4	0.3	0.5		100.0(2,870)	
		고등학교	98.5	0.8	0.5	0.0	0.2		100.0(2,906)	
성희롱 (놀림)	전체	96.9	1.8	0.6	0.3	0.4	100.0(8,699)	29.225***		
	성별	남학생	97.1	1.3	0.7	0.3	0.6		100.0(4,506)	
		여학생	96.7	2.4	0.5	0.3	0.1		100.0(4,193)	
	학교급	초등학교	96.8	2.0	0.6	0.2	0.3		100.0(2,923)	4.594
		중학교	96.7	2.0	0.6	0.4	0.4		100.0(2,870)	
		고등학교	97.4	1.4	0.5	0.3	0.4		100.0(2,906)	
사생활 침해	전체	95.8	3.0	0.6	0.4	0.2	100.0(8,698)	16.096**		
	성별	남학생	96.0	2.6	0.6	0.5	0.3		100.0(4,506)	
		여학생	95.5	3.5	0.6	0.3	0.0		100.0(4,192)	
	학교급	초등학교	95.4	3.4	0.6	0.4	0.1		100.0(2,922)	29.587***
		중학교	94.8	3.9	0.7	0.4	0.1		100.0(2,870)	
		고등학교	97.0	1.7	0.6	0.4	0.3		100.0(2,905)	
따돌림	전체	98.3	1.0	0.3	0.2	0.2	100.0(8,700)	13.380*		
	성별	남학생	98.1	1.0	0.4	0.1	0.3		100.0(4,507)	
		여학생	98.6	1.0	0.2	0.2	0.1		100.0(4,193)	
	학교급	초등학교	97.2	1.9	0.4	0.2	0.3		100.0(2,924)	37.690***
		중학교	98.7	0.6	0.3	0.2	0.2		100.0(2,871)	
		고등학교	99.1	0.5	0.2	0.1	0.1		100.0(2,905)	

* $p < .05$, ***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II-4-6.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그림 III-4-6]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연도별 추이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 먼저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과 같은 언어폭력의 피해 경험은 변화의 추이가 굴곡이 있어 2017년에는 16.2%에서 2020년에는 16.1%, 2021년에는 19.1%로 다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협박을 당하는 피해 경험에 관한 연도별 추이는 2017년도 2.2%로 나타났다가 이후 다소 굴곡을 보이면서 2020년에 2.3%, 2021년에 2.9%를 보이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희롱(놀림)과 같은 형태의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3.2%였다가 2020년에는 3.0%, 2021년에는 3.1%로 조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이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유포되는 폭력의 피해 경험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7년에

5.7%였다가 소폭 증가와 감소의 굴곡을 보이면서 최근인 2020년에는 3.2%, 2021년에는 4.2%를 보여 여전히 4~5%의 추이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사이버 공간에서의 따돌림 피해 경험의 추이는 2017년에 2.0%에서 전반적인 소폭 감소의 추이를 보이고 있고, 최근인 2020년에는 1.8%, 2021년에는 1.7%를 보이고 있다.

(2)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2021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소분류 지표인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과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의 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①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인구비율

〈표 III-4-7〉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13세 미만을 기준으로 2014년~2019년 기간 동안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실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4년에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범죄 피해의 건수가 1,205건으로 전체 건수 27,111건의 4.4%에 해당되었다.

표 III-4-7.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현황(2014~2019년)

(단위 : 건(%))

연도	구분	계	13세 미만	13세 이상
2014		27,111(100)	1,205(4.4)	25,906(95.6)
2015		27,708(100)	1,268(4.6)	26,440(95.4)
2016		27,056(100)	1,229(4.5)	25,827(95.5)
2017		30,099(100)	1,261(4.2)	28,838(95.8)
2018		29,244(100)	1,278(4.4)	27,966(95.6)
2019		29,676(100)	1,375(4.6)	28,301(95.4)

* 출처: 법무연수원(2021). 2020 범죄백서. p.195.

* 주: 1)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2) 성별, 연령 미상은 제외.

이후에는 증감의 굴곡이 작게 나타나면서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4.6%로 소폭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표를 보면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 사건은 13세 이상에서 95% 이상 발생되지만 초등학교 이하 연령(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5% 가까이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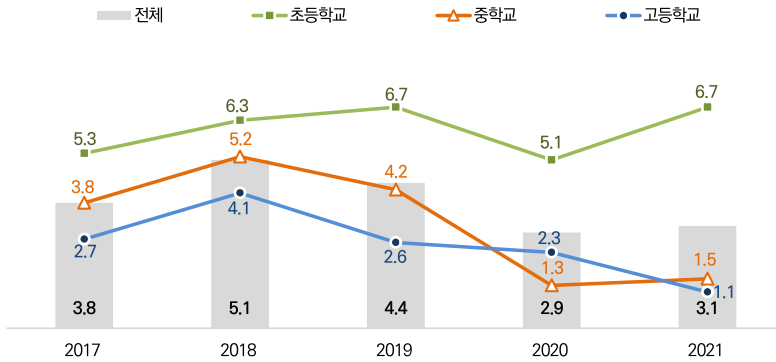
②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2021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성적인 피해 경험을 보면 전체 응답자 8,537명 중 3.1%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피해 경험이 동일하게 3.1%로 나타난 반면, 학교급에서는 큰 차이를 보여 초등학교의 경우가 성적인 피해가 가장 높아 6.7%로 나타났고, 이어서 중학생 1.5%, 고등학생 1.1%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초등학교가 성적 피해에 대한 상대적으로 자기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2011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각한 실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보호 대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표 III-4-8.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3.1	96.9	100.0(8,537)	0.029
성별	남학생	3.1	100.0(4,402)	
	여학생	3.1	100.0(4,136)	
학교급	초등학교	6.7	100.0(2,819)	184.049***
	중학교	1.5	100.0(2,829)	
	고등학교	1.1	100.0(2,889)	

** $p < .01$, *** $p < .001$.



* 주: '있다' 응답값(단위: %)

그림 III-4-7.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그림 III-4-7]은 성적인 피해 경험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7년에는 3.8%의 피해 경험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소폭 증감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에는 2.9%를 보여 가장 낮은 피해 수치를 보였는데, 2021년 다시 3.1%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4-9.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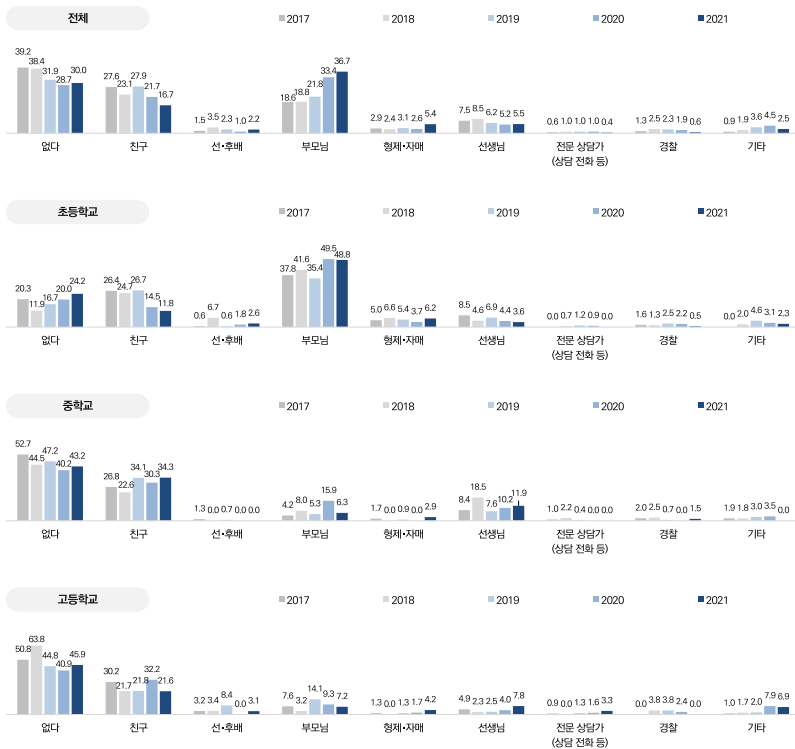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친구	선·후배	부모님(보호자)	형제·자매	선생님	전문상담가(상담전화 등)	경찰	기타	전체(N)	
전체	30.0	16.7	2.2	36.7	5.4	5.5	0.4	0.6	2.5	100.0(261)	
성별	남학생	26.6	16.0	4.2	39.5	4.2	4.2	0.0	0.5	4.8	100.0(136)
	여학생	33.8	17.5	0.0	33.6	6.8	6.8	0.8	0.7	0.0	100.0(125)
학교급	초등학교	24.2	11.8	2.6	48.8	6.2	3.6	0.0	0.5	2.3	100.0(185)
	중학교	43.2	34.3	0.0	6.3	2.9	11.9	0.0	1.5	0.0	100.0(43)
	고등학교	45.9	21.6	3.1	7.2	4.2	7.8	3.3	0.0	6.9	100.0(32)
경제적 수준	상	27.5	13.7	2.2	42.6	4.3	7.2	0.0	0.4	2.0	100.0(155)
	중	31.6	17.2	3.1	29.8	10.0	2.2	0.4	1.2	4.4	100.0(74)
	하	38.3	32.5	0.0	20.9	0.0	5.5	2.8	0.0	0.0	100.0(26)

* 주: 2017년도 조사부터는 전년도 보기 문항 중 '선배'가 '선·후배'로 수정되었으며, '인터넷'이 제외되었음.

〈표 III-4-9〉에서는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에 대한 2021년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성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 261명 중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한 응답자는 30%로 10명 중 3명에 해당되었다.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대상은 부모님(보호자)로 36.7%에 달했고, 이어서 친구가 16.7%, 선생님이 5.5%, 형제나 자매가 5.4%로 나타났고, 선후배 2.2%, 경찰 0.6%, 전문 상담사나 상담전화를 이용한 피해자는 0.4%에 불과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39.5%가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26.6%에 해당되었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33.8%로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33.6%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이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우가 17.5%로, 남학생의 16.0%보다 다소 높게 나왔다. 학교급에서는 먼저 아무에게도 성적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상급학교로 갈수록 커 고등학생이 45.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생이 34.3%, 초등학생이 24.2%로 나타났다.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우와 친구나 선생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학생이 가장 편차가 큰 조사결과를 보였다. 중학생은 그 누구보다 친구로부터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응답하여 34.3%로 보였으며, 선생님이 11.9%, 부모나 보호자는 6.3%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로부터의 도움이 48.8%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친구가 11.8%, 형제나 자매가 6.2%, 선생님이 3.2% 순으로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중학생과 유사하게 친구로부터 성적 피해에 대하여 도움을 받은 경우가 2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선생님으로부터의 도움이 7.8%,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도움이 7.2%에 달하고 있다. 경제적 수준과 성적 피해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우의 관계를 살펴보면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친구로부터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많은 반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도움 받은 경우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4-8]에서는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에 대한 연도별 추이가 나타나 있다. 2017년에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39.2%였는데 가장 최근인 2020년에는 28.7%, 2021년에는 30.0%로 낮아져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모님과 보호자로부터 도움을 받은 응답자가 2017년에 18.6%에 불과했는데 대체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여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33.4%와 36.7%를 보이고 있어 바람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향이 부모나 보호자로 옮겨간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 주: 단위: %

그림 III-4-8.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연도별 추이)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① 아동학대 사례 건수

2019년 전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41,389건으로 집계되었다. 그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총 92.7%(38,380건)로 이 중 신고접수 당시 응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의심되며 12시간 이내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가 3.5%(1,460건), 아동학대 의심사례 89.2%(36,920건)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 동일한 학대 의심사례가 다른 신고자들에 의해 접수되는 동일신고가 1.1%(449건), 일반상담 6.2%(2,560건) 포함되었다.

표 III-4-10.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2019년)

(단위 : 건(%))

아동학대 의심사례			동일 신고	일반 상담	해외발생 사례	계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소계				
1,460 (3.5)	36,920 (89.2)	38,380 (92.7)	449 (1.1)	2,560 (6.2)	0 (0.0)	41,389 (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14.

총 신고접수 41,389건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 38,380건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사례는 전체 신고건의 78.3%인 30,045건으로 나타났다. 조기지원사례 4.1%(1,577건), 일반사례 17.1%(6,549건), 조사진행중사례 0.5%(209건)로 판단되었다.

표 III-4-11. 아동학대 신고접수 사례판단 결과(2019년)

(단위 : 건(%))

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 ¹⁾	조기지원 ²⁾	일반 ³⁾	조사진행중	계
사례 수 (%)	30,045 (78.3)	1,577 (4.1)	6,549 (17.1)	209 (0.5)	38,380 (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20.

- * 주: 1) 아동학대로 판단할 만한 증거 및 진술로 인해 학대의 정황이 뚜렷하다고 판단된 사례
 2) 학대 혐의가 없지만 고위험군으로 판단되어 학대예방을 위한 외부지원이 필요한 사례
 3) 학대 의심사례로 신고접수 되었으나 현장조사 결과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례

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30,045건의 사례에 대하여 피해아동의 성별 및 연령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22,649명의 아동이 30,045건의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아 51.4%(11,642명), 여아 48.6%(11,007명)로 여아보다 남아의 피해사례가 더 많았으며 건수로 살펴보면 남아 50.9%(15,281건), 여아 49.1%(14,746건)로 역시 남아 대상 학대사례가 더 많았지만 명수 대비 성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연령별로 보면, 13세~15세 피해아동의 수가 24.7%(5,591명)로 가장 많았으며 사례 수의 결과에서도 23.5%(7,074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10세~12세가 22.6%(5,108명)/21.8%(6,561건)로 많았으며 7세~9세는 18.4%(4,168명)/18.7%(5,601건), 16세~17세 13.0%(2,935명)/11.8%(3,534건), 4세~6세 11.4%(2,574명)/12.3%(3,680건), 3세 이하 9.9%(2,273명)/11.9%(3,59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세~6세의 경우 16세~17세 보다 학대 피해 아동의 수는 적었지만 학대건수는 높게 나타나 중복학대가 해당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4-12. 아동학대 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2019년)

(단위 : 건, 명(%))

구분		건수(비율)	명수(비율)
성별	남아	15,281(50.9)	11,642(51.4)
	여아	14,764(49.1)	11,007(48.6)
연령별	3세 이하	3,595(11.9)	2,273(9.9)
	4세 ~ 6세	3,680(12.3)	2,574(11.4)
	7세 ~ 9세	5,601(18.7)	4,168(18.4)
	10세 ~ 12세	6,561(21.8)	5,108(22.6)
	13세 ~ 15세	7,074(23.5)	5,591(24.7)
	16세 ~ 17세	3,534(11.8)	2,935(13.0)
계		30,045(100.0)	22,649(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23-24의 내용을 재구성함.

각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의 증가율은 다음과 같다. 2015년 11,715건에서 2016년에는 59.6%의 큰 폭으로 증가하여 18,700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7년에는 19.6% 상승하여 22,367건 발생하였다. 2018년의 경우 10.0% 증가하여 24,604건 발생하였으며 2019년은 22.0%의 증가율을 보여 총 30,04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13.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증가율

(단위 : 건(%))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아동학대 사례수(증가율)	11,715 (16.8)	18,700 (59.6)	22,367 (19.6)	24,604 (10.0)	30,045 (22.0)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21.

학대 가해자와 피해아동 간의 관계를 조사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가 전체 가해자의 75.6%(22,700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대리양육자 16.6%(4,986건), 친인척 4.4%(1,332건), 타인 2.2%(663건), 기타 1.2%(364건)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경우 친부

모가 72.3%(21,713건)로 가장 많았으며 친인척 중에서는 친조부모가 1.6%(498건)로 가장 많았다. 대리양육자에서는 초·중·고 교원이 7.2%(2,154건), 유치원/보육 교직원 5.1%(1,539건)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4-14.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구분	부모				친인척				총계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	소계	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형제자매		소계			
명	21,713	893	94	22,700	498	219	390	225	1,332				
(%)	(72.3)	(3.0)	(0.3)	(75.6)	(1.6)	(0.8)	(1.3)	(0.7)	(4.4)				
구분	대리양육자										타인	기타 ¹⁾	30,045 (100.0)
	부모 동거인	유치원/ 보육 교직원	초중고 교원	학원/ 교습소 종사자	아동복 지시실 종사자	기타 시설 종사자	청소년 시설 종사자	위탁 부모	베이비 시터	소계			
명	363	1,539	2,154	320	408	63	87	11	41	4,986	663	364	
(%)	(1.2)	(5.1)	(7.2)	(1.1)	(1.4)	(0.2)	(0.3)	(0.0)	(0.1)	(16.6)	(2.2)	(1.2)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p.28-29.

* 주: 이웃, 낯선 사람, 부모의 지인,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 강사, 파악 불가 등이 포함

②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전체 학대사례를 각각의 유형별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중복학대의 경우가 48.2%(14,476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서학대가 25.4%(7,622건), 신체학대 13.9%(4,179건), 방임 9.6%(2,885건), 성학대 2.9%(883건)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표 III-4-15.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 건(%))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	계
건수(%)	4,179 (13.9)	7,622 (25.4)	883 (2.9)	2,885 (9.6)	14,476 (48.2)	30,045 (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31.

각 학대사례를 연도별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각 유형 중 중복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방임은 2015년 17.2%에서 2019년 9.6%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신체학대 역시 2015년 16.1%에서 2019년 13.9%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정서학대의 경우 2015년 17.5%에서 2019년 25.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4-16.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 건(%))

구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	계
2015	1,884(16.1)	2,046(17.5)	428(3.7)	2,010(17.2)	5,347(45.6)	11,715(100.0)
2016	2,715(14.5)	3,588(19.2)	493(2.6)	2,924(15.6)	8,980(48.0)	18,573(100.0)
2017	3,285(14.7)	4,728(21.1)	692(3.1)	2,787(12.5)	10,875(48.6)	22,367(100.0)
2018	3,436(14.0)	5,862(23.8)	910(3.7)	2,604(10.6)	11,792(47.9)	24,604(100.0)
2019	4,179(13.9)	7,622(25.4)	883(2.9)	2,885(9.6)	14,476(48.2)	30,045(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122.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121-122,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128-129,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26.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31에서 발췌, 표 재구성.

③ 가정 내 방임 정도

지난 1년간 조사대상이 경험한 방임유형별 수준, 성별과 학교급, 가족 유형, 경제적 수준 등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에 앞서 조사대상자 중 초등학생 4~5학년층을 중심으로 방임유형에 따른 경험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보호자 없이 야간에 홀로 있었던 야간시간 방임의 경우 49.7%가 이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위생적인 의복과 침구 사용을 경험한 비율은 6.2%였으며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우는 3.4%, 식사를 하지 못해도 보호자가 신경 쓰지 않았던 경험은 4.6%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가지 않아도 보호자가 신경 쓰지 않았던 경험은 1.2%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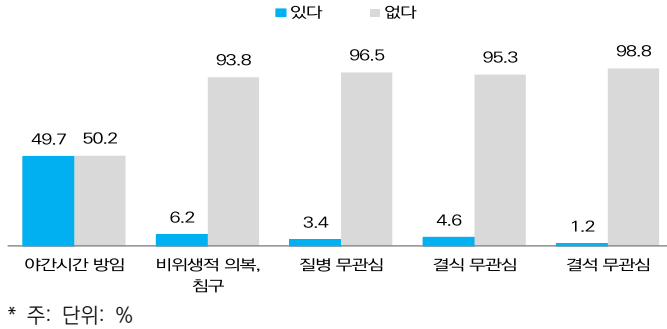


그림 III-4-9. 최근 1년간 1회 이상 경험한 방임유형별 비율

방임유형에 따라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밤늦게 까지 부모님(보호자)이 없는 집에 있었던 경험을 묻는 야간방임의 여부에 대한 문항에서 응답자의 49.7%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성별, 학교급, 가족 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있어서는 중학생이 53.7%로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고등학생 50.8%, 초등학생 45.0% 순으로 높게 나타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가족 유형의 경우 한부모가정 대상자가 63.4%로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였으며, 학업성적에서는 성적이 낮은 집단일수록 방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구에 속한 대상자일수록 야간방임을 낮은 수준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4-17. 방임_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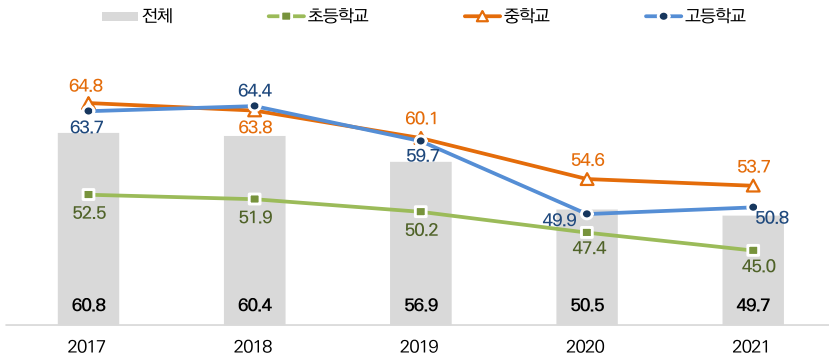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50.2	31.6	8.2	5.4	4.5	100.0(8,703)	1.624
성별	남학생	49.9	32.0	8.4	5.2	100.0(4,509)	
	여학생	50.6	31.2	8.0	5.6	100.0(4,194)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학교급	초등학교	55.0	28.3	6.8	4.5	5.4	100.0(2,926)	75.933***
	중학교	46.4	35.5	9.1	5.6	3.5	100.0(2,870)	
	고등학교	49.3	31.2	8.8	6.2	4.6	100.0(2,90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1.2	32.0	8.1	4.9	3.8	100.0(7,763)	207.545***
	한부모가정	36.6	28.5	10.5	11.3	13.1	100.0(664)	
	조손가정	57.2	28.2	5.3	5.1	4.2	100.0(88)	
학업 성적	상	54.4	30.6	7.1	4.2	3.7	100.0(3,049)	78.129***
	중	50.1	31.7	8.5	5.4	4.3	100.0(3,694)	
	하	44.1	32.7	9.5	7.4	6.4	100.0(1,916)	
경제적 수준	상	53.3	31.6	7.2	4.3	3.6	100.0(4,987)	138.351***
	중	47.5	31.5	9.8	6.6	4.6	100.0(2,957)	
	하	41.0	31.1	9.0	8.3	10.6	100.0(715)	

***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응답 척도가 변경됨.

야간 방임 경험률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경험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2020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II-4-10. 방임_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 없는 집에 있었던 경험(연도별 추이)

깨끗하지 않은 옷과 이부자리의 사용에 대한 문항에서, 전체의 6.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에서 경험 정도는 모든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학생(5.3%)에 비해 남학생(7.0%)이 더 많이 경험하였으며 중학생(8.0%)이 초등학생(5.8%)이나 고등학생(4.9%)보다 경험률이 더 높았다. 가족 유형의 경우 양부모가정(5.8%)에 비해 한부모가정(9.2%)과 조손가정(9.7%), 기타가정(11.5%)이 더 높게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업성적에 있어서는 성적이 “하”(8.1%)인 대상자가 “상”(5.5%)과 “중”(5.8%)인 대상자에 비해 경험이 많았으며 경제적 수준의 경우 “하”(12.5%)인 대상자가 “상”(5.0%)과 “중”(6.7%)인 대상자보다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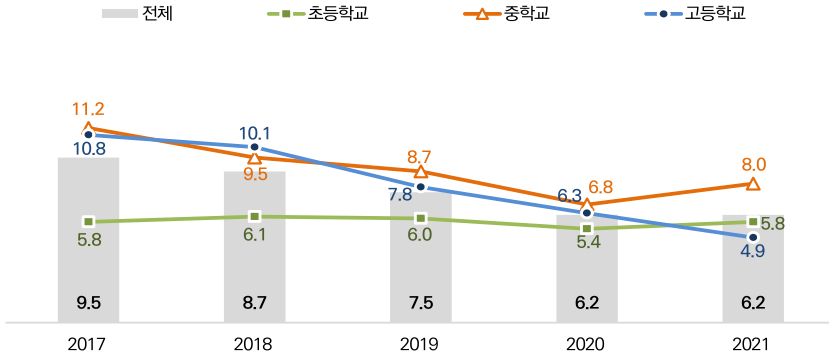
표 III-4-18. 방임_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3.8	4.4	0.7	0.6	0.5	100.0(8,697)	19.752**
성별	남학생 92.9	4.9	1.0	0.5	0.6	100.0(4,506)	
	여학생 94.8	3.9	0.4	0.6	0.4	100.0(4,192)	
학교급	초등학교 94.1	4.4	0.5	0.2	0.7	100.0(2,922)	52.662***
	중학교 92.0	5.9	1.1	0.5	0.5	100.0(2,870)	
	고등학교 95.2	3.0	0.7	0.9	0.3	100.0(2,90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4.2	4.2	0.6	0.5	0.5	100.0(7,759)	34.846***
	한부모가정 90.8	5.6	1.6	1.1	0.9	100.0(664)	
	조손가정 90.3	5.4	2.4	1.9	0.0	100.0(87)	
	기타 88.5	8.7	1.1	0.9	0.8	100.0(133)	
학업 성적	상 94.5	4.2	0.4	0.5	0.4	100.0(3,047)	26.043**
	중 94.3	4.1	0.8	0.4	0.5	100.0(3,689)	
	하 92.0	5.2	1.1	1.0	0.8	100.0(1,917)	
경제적 수준	상 95.0	3.9	0.5	0.3	0.3	100.0(4,987)	82.417***
	중 93.3	4.2	1.1	0.7	0.7	100.0(2,955)	
	하 87.5	8.1	1.3	1.9	1.2	100.0(713)	

** $p < .01$, ***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응답 척도가 변경됨.

깨끗하지 않은 옷과 이부자리의 사용 여부에 대한 경험률의 추세를 살펴보면, 2020년까지 모든 학교급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21년의 경우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상승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II-4-11. 방임 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전체 응답자의 3.4%는 아프거나 질병이 있어도 방치되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가족 유형과 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가족 유형의 경우 조손가정 대상자가 8.8%로 가장 많이 경험했으며, 양부모가정 대상자가 3.1%로 가장 낮게 응답하였다. 또한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하”에 속한 대상자가 5.5%와 8.7%로 가장 높은 방임률을 보였다.

표 III-4-19. 방임 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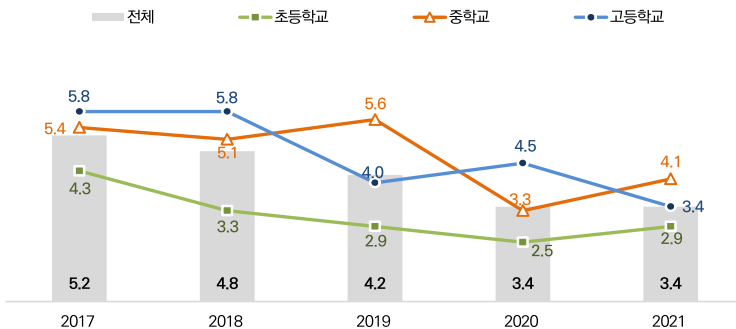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성별	남학생	96.9	2.1	0.6	0.2	0.2	100.0(4,502)
	여학생	96.2	2.7	0.7	0.3	0.1	100.0(4,193)

구분	한 번도 없음	연도에 따른 정도				전체(N)	χ^2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학교급	초등학교	97.0	1.9	0.6	0.3	0.1	100.0(2,920)	8.672
	중학교	95.9	2.8	0.9	0.3	0.1	100.0(2,868)	
	고등학교	96.7	2.5	0.5	0.2	0.2	100.0(2,90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6.9	2.3	0.5	0.2	0.1	100.0(7,760)	46.344***
	한부모가정	93.9	3.3	1.7	0.9	0.2	100.0(661)	
	조손가정	91.2	4.9	3.9	0.0	0.0	100.0(87)	
학업 성적	기타	93.7	4.6	0.8	0.9	0.0	100.0(133)	48.267***
	상	97.7	1.8	0.4	0.0	0.1	100.0(3,045)	
	중	96.6	2.4	0.6	0.3	0.0	100.0(3,691)	
경제적 수준	하	94.6	3.4	1.3	0.4	0.4	100.0(1,915)	116.921***
	상	97.7	1.6	0.4	0.1	0.1	100.0(4,984)	
	중	95.8	3.2	0.8	0.1	0.1	100.0(2,955)	
	하	91.3	4.7	2.0	1.4	0.6	100.0(713)	

***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질병 발생 시 방임에 대한 경험률의 연도별 추세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의 경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경험률은 2021년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상승과 감소를 반복해오다 2021년 중학교의 경우 증가, 고등학교의 경우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II-4-12. 방임_3)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다(연도별 추이)

식사를 못 하더라도 신경을 쓰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응답자의 4.6%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급에 있어서 초등학생(4.0%)보다 중학생(4.8%), 고등학생(5.2%)이 더 높은 방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유형에서는 조손가정(8.1%)과 한부모가정(7.3%)이 양부모가정(4.4%)에 비해 높은 방임률을 보였다. 학업성적의 경우 “하” 집단이 7.2%, 경제적 수준에서도 “하”집단이 11.4%로 다른 집단에 비해 방임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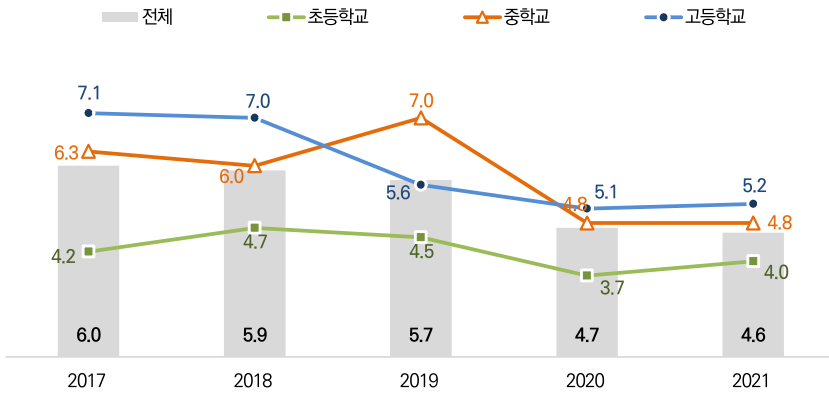
표 III-4-20. 방임_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5.3	3.0	0.7	0.5	0.4	100.0(8,695)	5.186	
성별								
	남학생	95.7	2.6	0.7	0.5	0.5	100.0(4,504)	17.989*
	여학생	94.9	3.4	0.7	0.6	0.4	100.0(4,192)	
학교급	초등학교	96.0	2.7	0.4	0.4	0.5	100.0(2,920)	49.892***
	중학교	95.2	3.3	0.5	0.6	0.4	100.0(2,870)	
	고등학교	94.8	3.0	1.2	0.5	0.5	100.0(2,90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5.6	2.9	0.6	0.4	0.4	100.0(7,757)	46.943***
	한부모가정	92.7	3.6	1.5	1.5	0.7	100.0(664)	
	조손가정	91.9	1.4	1.4	3.2	2.1	100.0(87)	
	기타	93.7	3.9	0.3	1.6	0.5	100.0(133)	142.238***
학업 성적	상	96.2	2.6	0.5	0.4	0.2	100.0(3,046)	
	중	95.9	2.7	0.5	0.5	0.4	100.0(3,688)	
	하	92.8	4.1	1.4	0.7	1.0	100.0(1,917)	
경제적 수준	상	96.9	2.2	0.3	0.3	0.3	100.0(4,986)	142.238***
	중	94.4	3.4	1.3	0.7	0.3	100.0(2,954)	
	하	88.6	6.4	1.4	1.5	2.1	100.0(712)	

* $p < .05$, ***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응답 척도가 변경됨.

결식에 대한 방임에 있어서 대부분 교급이 2020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1년에는 2020년의 수준을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OVID-19 이후 다양한 사유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변화가 2021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II-4-13. 방임_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연도별 추이)

학교를 가지 않아도 보호자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전체 대상자의 1.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적을 제외한 배경변인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1.5%)은 여학생(0.8%)에 비해 방임 경험이 더 많았으며 학교급에서는 초등학생(1.5%)과 고등학생(1.2%)이 중학생(0.8%)에 비해 높은 방임률을 보였다. 가족 유형에 있어서 조손가정의 응답자가 3.9%로 다른 가정에 비해 방임 경험이 많았으며 경제적 수준의 경우 “하”집단(2.0%)의 방임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4-21. 방임_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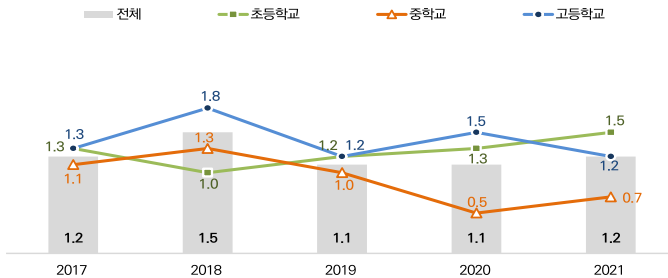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8.8	0.7	0.2	0.1	0.2	100.0(8,692)	19.495**
성별	남학생 98.5	0.8	0.3	0.1	0.3	100.0(4,503)	
	여학생 99.2	0.6	0.0	0.0	0.1	100.0(4,190)	16.025*
학교급	초등학교 98.5	0.9	0.1	0.1	0.4	100.0(2,917)	
	중학교 99.2	0.4	0.2	0.0	0.1	100.0(2,870)	37.915***
가족 유형	고등학교 98.8	0.8	0.2	0.1	0.1	100.0(2,906)	
	양부모가정 99.1	0.6	0.1	0.1	0.2	100.0(7,754)	14.724
	한부모가정 97.1	1.4	1.0	0.2	0.3	100.0(664)	
	조손가정 96.1	2.5	1.4	0.0	0.0	100.0(87)	
	기타 97.6	1.7	0.8	0.0	0.0	100.0(133)	19.768*
학업 성적	상 99.3	0.4	0.1	0.1	0.2	100.0(3,045)	
	중 98.8	0.8	0.3	0.0	0.1	100.0(3,690)	
	하 98.3	1.0	0.2	0.2	0.3	100.0(1,913)	19.768*
경제적 수준	상 99.1	0.7	0.1	0.0	0.2	100.0(4,979)	
	중 98.7	0.6	0.3	0.1	0.2	100.0(2,955)	
	하 98.0	1.2	0.4	0.2	0.2	100.0(714)	

* $p < .05$, ***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응답 척도가 변경됨.

결석에 대한 방임 경험률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부모의 관심이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초등학생의 경우 2021년에는 2020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 2018년부터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상승과 감소를 반복하다 2021년 1.2%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II-4-14. 방임_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연도별 추이)

(2) 학대 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① 아동학대사례 보호 건수 및 보호기관 수

각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건수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6년 5,202건이었던 아동학대사례는 2013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 2014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10,027건이 발생한 이후, 2019년 현재 30,045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2006년 42개소에서 서서히 증가하여 2019년 67개소에 이른다. 한편 아동학대 사례건 수 대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소수를 이용하여 기관의 평균 담당 사례수를 분석한 결과 2006년 기관당 연평균 담당 사례 수는 123.9건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448.4건으로 기관의 연간 평균 담당 사례 수가 4배 가까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4-2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2006~2019년)

(단위: 건, 개소)

구분	아동학대 사례 건수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	기관 평균 담당 학대 사례 수	구분	아동학대 사례 건수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	기관 평균 담당 학대 사례 수
2006	5,202	42	123.9	2013	6,796	50	135.9
2007	5,581	43	129.8	2014	10,027	51	196.6
2008	5,578	43	129.7	2015	11,715	56	209.2
2009	5,685	44	129.2	2016	18,700	59	316.9
2010	5,657	44	128.6	2017	22,367	60	372.8
2011	6,058	44	137.7	2018	24,604	62	396.8
2012	6,403	46	139.2	2019	30,045	67	448.4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21.

지역별 설립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다음과 같다. 경기지역이 2018년 대비 2개소 증가하여 14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울이 9개소로 많이 개소되어 있다. 그 뒤로 부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4곳 등 전국에 총 67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소되어 있다.

표 III-4-23.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2015~2019년)

(단위: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15	8	3	2	4	1	1	1	-	11	4	3	3	3	3	4	3	2	54
2016	8	4	3	3	2	1	1	-	12	4	3	3	3	3	4	3	2	57
2017	9	4	3	3	2	1	2	-	12	4	3	3	3	3	4	3	2	61
2018	9	4	3	3	2	1	2	1	12	4	3	3	3	3	4	3	2	62
2019	9	4	3	3	2	2	2	1	14	4	3	3	4	4	4	3	2	67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265-268.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7.01.01.기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8.10.기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p.17-18.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22.

② 서비스 제공 정도와 조치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 및 부모, 가족에게 제공한 서비스 실적은 다음과 같다. 2019년도의 경우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555,312건, 학대 행위자 대상 서비스 제공 259,967건, 부모 또는 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 144,634건으로 총 956,913건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이는 2013년도 434,331건에 비하여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이러한 증가는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의 증가보다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증가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4-24.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2013~2019년)

(단위: 건)

구분	서비스 건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피해아동	311,599	335,424	492,415	640,378	501,465	461,891	555,312
학대 행위자	63,863	73,817	131,836	193,633	196,458	206,419	259,967
부모 또는 가족	58,869	79,160	142,535	194,931	186,923	137,127	144,634
계	434,331	488,401	766,786	1,028,942	884,846	805,437	956,913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2018). 2013~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4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48.

2019년 피해아동 및 학대 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이 제공된 서비스는 상담 서비스로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된 서비스의 65.0%(359,033건)를 차지하며 학대 행위자를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는 70.0%(182,079건), 부모 및 가족 대상 서비스 중에서는 76.5%(110,583건)의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피해아동 대상 서비스는 심리치료지원(9.9%), 가족기능 강화(8.3%) 등이 많이 제공되었으며,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는 심리치료(8.6%), 행위자 수탁프로그램(7.1%) 등이 많이 제공되었다. 부모 및 가족 대상 서비스 중에서는 가족기능 강화(11.2%), 심리치료지원(7.1%) 등의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었다.

표 III-4-25. 대상별 서비스 제공 실적

(단위: 회, %)

구분	아동		행위자		부모 및 가족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상담	359,033	65.0	182,079	70.0	110,583	76.5
의료지원	6,617	1.2	1,912	0.7	547	0.4
심리치료지원	54,421	9.9	22,390	8.6	10,202	7.1
가족기능 강화	45,844	8.3	13,820	5.3	16,263	11.2
학습 및 보호지원	24,419	4.4	2,453	0.9	1,168	0.8
사건처리지원	39,246	7.1	14,522	5.6	2,114	1.5
행위자 수탁프로그램	460	0.1	18,330	7.1	267	0.2
피해아동 수탁프로그램	451	0.1	273	0.1	54	0.0
기타	21,821	4.0	4,188	1.6	3,436	2.4
계	552,312	100.0	259,967	100.0	144,634	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49.

2019년도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30,045건의 학대 사례 중, 원가정 보호가 83.9%(25,206건)로 가장 많았으며, 분리 보호 12.2% (3,669건), 가정복귀 3.3%(989건), 기타 0.4%(121건), 사망 0.2%(60명)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4-26. 학대 피해아동 보호 현황: 피해아동 상황(2015~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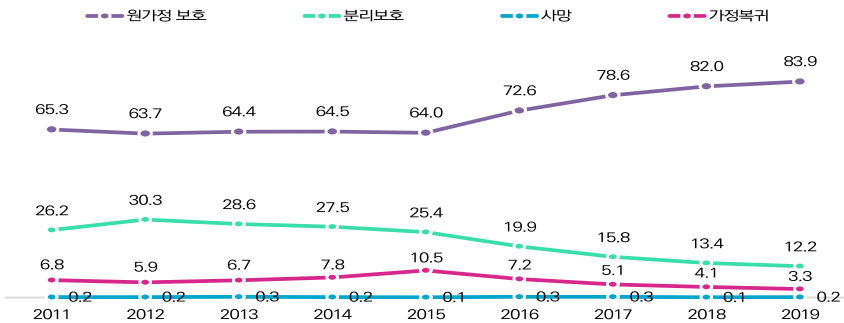
(단위: 건(%))

연도	원가정 보호	분리 보호	사망	기타*	가정복귀	계
2015	11,305(64.0)	4,485(25.4)	26(0.1)	-	1,846(10.5)	17,662(100.0)
2016	13,573(72.6)	3,730(19.9)	50(0.3)	-	1,347(7.2)	18,700(100.0)
2017	17,589(78.6)	3,527(15.8)	58(0.3)	54(0.2)	1,139(5.1)	22,367(100.0)
2018	20,164(82.0)	3,287(13.4)	32(0.1)	101(0.4)	1,020(4.1)	24,604(100.0)
2019	25,206(83.9)	3,669(12.2)	60(0.2)	121(0.4)	989(3.3)	30,045(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2~2018). 2011~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35.

* 주: 피해아동을 분리한 이후 친인척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가정위탁을 제외한 병원 입원 등의 보호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것.

피해아동 보호 현황의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면, 원가정 보호의 경우 아동보호의 원가정 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2015년 64.0%에서 83.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분리 보호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대 피해아동 사망의 경우 2018년 32명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낮은 비율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피해아동 사망에 대해 근절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2~2018). 2011~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1년도 현황 보고서 p.136, 2012년도 현황보고서 p.110. 2013년 현황보고서 p.108, 2014년 현황보고서 p.144, 2015년 현황보고서 p.139, 2016년 현황보고서 p.138, 2017 현황보고서 p.145,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28-29,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35. 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정리하였음.

* 주: 본 그림은 <표 III-4-26>에 해당하는 내용을 도식화한 것임(단위: %).

그림 III-4-15. 학대 피해아동 보호 현황: 피해아동 최종 조치 결과(연도별 추이)

3) 소결

2021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세부지표들은 총 6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4개는 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들이 부모(보호자), 교사, 선후배나 친구로부터,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지표들이다. 다른 2개의 지표들은 성적 폭력과 관련된 피해 경험에 대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지표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서 의견을 보태면 아래와 같다.

‘청소년폭력의 경험률’에 속하는 세부지표들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먼저 가정에서의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폭력은 다소 굴곡은 있으나 2013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가정에서의 폭력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감소 추이는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가정의 부모나 보호자들의 수준도 높아져 과거보다 점차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유추될 수 있다.

학교에서 교사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에 대하여 나타난 실태조사 결과도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체벌)이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인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체벌과 같은 신체적 폭력은 제도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체 응답자의 3.1%가, 즉 100명 중 3명은 아직도 피해를 겪고 있다고 응답한 사실은 주목해야만 할 조사결과이다. 이는 학생들의 인권교육과 동시에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이나 법제도적인 구속력의 필요성도 함께 요청되는 결과이다.

선후배나 친구들로부터의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갈취, 따돌림, 강제적 심부름, 사이버 공간에서의 욕설, 헐박, 따돌림, 원하지 않는 사생활 유포 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 피해 경험에 있어서도 대체로 굴곡은 있지만 지난 2013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와 학교, 학교 밖, 가정 등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계몽과 대책 수립 및 시행의 결과라 평가될 수 있겠다.

성폭력 범죄 사건에 있어서 13세 미만 연령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5%에 가깝게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조사결과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에 대해 초등학생이 6.7%로 응답하여 가장 높았기에 이러한 실태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피해가 2013년 이후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다행히도 2020년과 2021년에는 조사 연도 이래 가장 낮은 2.9%와 3.1%를 보이고 있어 주목을 하면서 계속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성적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에 대한 실태 중 가장 특색이 있는 조사결과는 전반적으로 과거에는 피해 경험 후 혼자 걱정을 많이 하거나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경향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점차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도움을 받은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요인 분석이 요구된다.

또 다른 인권지표인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와 관련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와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학대 및 방임에 대해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19년 신고된 전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41,389건으로 집계되었다. 그 중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가 3.5%(1,460건), 아동학대 의심사례 89.2%(36,920건)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 사례는 30,045건/22,649명으로 최종 집계되었는데 이는 2018년 대비 22.0% 증가한 수치이며 아동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성별과 연령을 보면 남아 51.4%(11,642명)/50.9%(15,281건), 여아 48.6%(11,007명)/49.1%(14,746건)이었으며 연령별로 보면, 13세~15세 피해아동의 수가 24.7%(5,591명)/23.5%(7,047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0세~12세가 22.6%(5,108

명)/21.8%(6,561건)로 높게 나타났다. 학대 가해자는 부모가 전체 가해자의 75.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친부모가 72.3%, 계부모 3.0%, 양부모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친인척 4.4%, 대리양육자 16.6%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학대유형으로는 중복학대가 48.2%(14,476건)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 25.4%(7,622건), 신체학대 13.9%(4,179건), 방임 9.6%(2,885건), 성학대 2.9%(883건)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학대유형을 연도별로 보면, 신체학대, 성학대, 방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정서학대와 중복학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방임의 경우 야간시간의 방임, 비위생적 의복과 침구의 사용, 질병, 결식, 결석에 대한 무관심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으며 전체적인 경험률은 야간시간 방임 49.7%, 비위생적 의복과 침구 사용 6.2%, 질병 무관심 3.4%, 결식 무관심 4.6%, 결석 무관심 1.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야간방임의 경우 응답 대상자의 학교급, 가족 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비위생적인 의복과 침구의 사용은 모든 배경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질병에 대한 무관심에서 응답자의 가족 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결식 무관심 경험은 학교급, 가족 유형, 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결석에 대한 무관심에 있어서는 학업성적을 제외한 나머지 배경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학대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수준을 살펴보면 학대 신고접수 및 보호,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2019년에는 전년 대비 5개소가 증가한 67개소로 나타났으며 기관당 평균 담당 학대사례 수는 448.4건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피해아동 대상 서비스 555,312건, 학대 행위자 대상 서비스 259,967건, 부모 또는 가족 대상 서비스 114,634건으로 2019년 총 956,913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제공된 서비스는 모든 대상에게 있어서 상담 서비스가 가장 많이 제공되었으

며 그 외에 심리치료, 가족기능강화 등의 서비스가 많이 제공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접수된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상황은 원가정 보호가 83.9%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분리보호 12.2%, 가정복귀 3.3%, 기타 0.4%, 사망 0.2%로 원가정 보호의 증가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는 비중은 적지만 실제적인 사례 수는 절대 적지 않으며(2019년 60명),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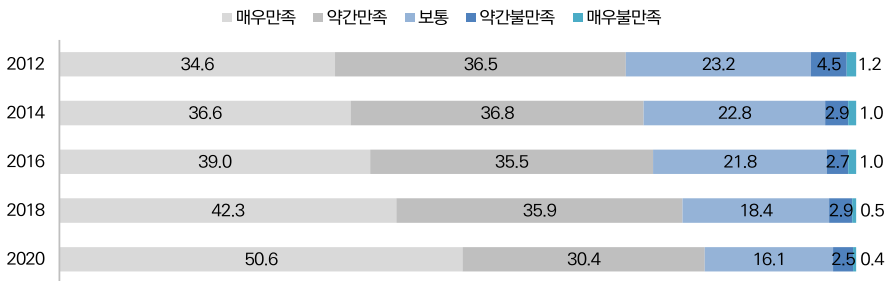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1) 부모와의 관계

①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부모는 아동과 청소년의 삶 전반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부모와의 관계를 토대로 하여 그들이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관계는 그들의 삶 전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통계청 사회조사(제101018호)에서 2년 주기로 조사되고 있는 만13~19세 아동·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2012년 이래로 최근 2020년까지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최근 2020년에 조사된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81%가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어 부모-자녀 간의 관계의 질이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출처: 통계청(2012, 2014, 2016, 2018, 2020). 2012-2020 사회조사.

* 주: 단위: %

그림 III-5-1. 부모와의 관계만족도(13~19세) 연도별 추이

(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①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더불어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증가 등 가족 구조가 다양해지면서 가정 내 돌봄의 역할이 보육시설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가정의 돌봄 기능을 대신하는 연도별, 설립주체별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낮은 출생률에 따른 아동 인구의 감소로 어린이집 수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이를 보였다. 2015년 전체 어린이집의 수는 42,517개소에서 2020년 35,352개소로, 약 7천여 개소가 감소하였고,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 또한 2015년 1,452,813명에서 2020년 1,244,396명으로 약 20만여 명이 감소하였다.

표 III-5-1. 연도별 및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2015~2020년)

(단위 : 개소, 명)

구분·연도	설립주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보육 시설 설치 개소 수 (개소)	2015	2,629	1,414	834	14,626	22,074	155	785	42,517
	2016	2,859	1,402	804	14,316	20,598	157	948	41,084
	2017	3,157	1,392	771	14,045	19,656	164	1,053	40,238
	2018	3,602	1,377	748	13,518	18,651	164	1,111	39,171
	2019	4,324	1,343	707	12,568	17,117	159	1,153	37,371
	2020	4,958	1,316	671	11,510	15,529	152	1,216	35,352
보육 시설 재원 아동 수 (명)	2015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07	4,127	44,765	1,452,813
	2016	175,929	99,113	45,374	745,663	328,594	4,240	52,302	1,451,215
	2017	186,916	96,794	43,404	738,559	321,608	4,580	58,454	1,450,243
	2018	200,783	92,787	41,298	711,209	302,674	4,360	62,631	1,415,742
	2019	232,123	86,775	38,538	664,106	273,399	4,121	66,023	1,365,085
	2020	253,251	78,322	34,066	578,196	230,444	3,716	66,401	1,244,396

* 출처: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통계. pp.2-3, 보건복지부(2016). 2016 보육통계. pp.2-3, 보건복지부(2017). 2017 보육통계. pp.3-5, 보건복지부(2018). 2018 보육통계. pp.2-3, 보건복지부(2019). 2019 보육통계. pp.2-3, 보건복지부(2020). 2020 보육통계. pp.2-3.

전반적인 보육시설의 신규 설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의 수와 함께 재원아동 수 및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0%까지 달성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정책이 실현되고 있으며, 보육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보호자가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와 편의성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III-5-2.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 현황(2015~2020년)

(단위 : 명, %)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2015	정원	188,661	135,741	60,509	942,103	399,649	4,913	59,245	1,790,821
	현원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07	4,127	44,765	1,452,813
	이용률	87.9	73.5	77.4	79.4	86.1	84.0	75.6	81.1
2016	정원	197,365	134,189	58,511	927,517	374,907	5,052	69,683	1,767,224
	현원	175,929	99,113	45,374	745,663	328,594	4,240	52,302	1,451,215
	이용률	89.1	73.9	77.5	80.4	87.6	83.9	75.1	82.1
2017	정원	209,727	131,820	56,514	915,855	360,397	5,506	76,784	1,756,603
	현원	186,916	96,794	43,404	738,559	321,608	4,580	58,454	1,450,243
	이용률	89.1	73.4	76.8	80.6	89.2	83.2	76.1	82.6
2018	정원	230,508	128,810	54,900	886,818	344,412	5,451	81,425	1,732,324
	현원	200,783	92,787	41,298	711,209	302,674	4,360	62,631	1,415,742
	이용률	87.1	72.0	75.2	80.2	87.9	80.0	76.9	81.7
2019	정원	269,500	124,040	51,736	832,749	318,092	5,297	85,459	1,686,873
	현원	232,123	86,775	38,538	664,106	273,399	4,121	66,023	1,365,085
	이용률	86.1	70.0	74.5	79.7	85.9	77.8	77.3	80.9
2020	정원	302,378	119,289	48,839	772,536	290,123	4,958	90,137	1,628,260
	현원	253,251	78,322	34,066	578,196	230,444	3,716	66,401	1,244,396
	이용률	83.8	65.7	69.8	74.8	79.4	74.9	73.7	76.4

* 출처: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16). 2016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17). 2017 보육통계. pp.3-5, 보건복지부(2018). 2018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19). 2019 보육통계. p.17. 보건복지부(2020). 2020 보육통계. p.5.

〈표 III-5-2〉에서는 어린이집의 정원·현원과 이용률 현황을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5년 81.1%에서 2020년 76.4%로 줄어들었는데, 특히, 부모협동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2015년 84.0%에서 2020년 74.9%로 가장 큰 폭인 9.1%p가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7.8%p, 법인·단체 등의 어린이집이 7.6%p가 감소하였다. 직장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5년 75.6%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20년에는 73.7%로 소폭 감소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또한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0년에는 83.8%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②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

가족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가족의 사적인 책임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돌봄 기능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이에 국가와 지역사회, 학교 등에서도 아동 돌봄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는 방과후학교(교육부),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지자체)를 운영함으로써 방과후 돌봄 공백을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한 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 방과후학교 이용현황 및 서비스 만족도

정규수업 이후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과후학교에 2019년도 전체 학생들의 참여율은 48.4%로, 초등학생은 58.7%, 고등학생 47.7%, 중학생 27.4%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초, 중, 고등학교가 휴교가 되거나 온라인 수업이 주로 운영되면서 방과후학교가 급격하게 축소하여 운영되었다. 〈표 III-5-3〉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20년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초등학생은 10.9%, 중학생이 4.2%, 고등학생이 12.0%로 전년도 대비 급격하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2019년에 조사된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교과보다는 특기적성 영역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더 많이 운영되고 있는 편이었다. 매해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프로그램 수 모두 교급별로 모두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 공교육의 연장으로 여겨지는 학교 안 프로그램보다는 사교육 서비스를 더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방과후학교를 이용 중인 학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보면, 대체로 80점대를 웃돌고 있었는데, 초등학생들은 방과후학교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고등학생들은 60점대 후반에서 70점대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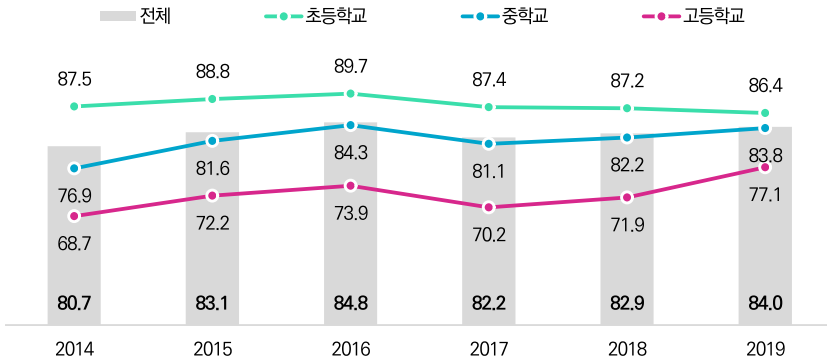
표 III-5-3. 방과후학교 참여 실태¹⁾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4~2019년)

(단위 : %, 만원, 개)

	방과후학교 참여 실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교과(%)	특기적성(%)	계
	참여율	비용 ³⁾	참여율	비용	참여율	비용	참여율	비용			
2014	60.9	2.3	45.3	0.4	70.1	1.9	59.3	1.7	294,396(54.7)	243,712(45.3)	538,108
2015	60.2	2.2	40.8	0.4	67.2	1.7	57.2	1.6	255,079(53.6)	220,611(46.4)	475,690
2016	58.9	2.1	35.0	0.3	68.3	1.8	55.8	1.6	238,916(52.7)	214,475(47.3)	453,391
2017	60.4	2.2	37.2	0.3	59.8	1.3	54.6	2.2	210,488(50.0)	210,487(50.0)	420,975
2018	59.3	2.1	32.1	0.3	52.6	1.1	51.0	1.4	167,907(46.1)	196,192(53.9)	364,099
2019	58.7	2.2	27.4	0.2	47.7	1.0	48.4	1.4	147,416(43.8)	188,971(56.2)	336,387
2020	10.9	0.1	4.2	0.0	12.0	0.2	9.5	0.1	-		

*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2017.4.18). 보도자료: 2017 청소년 통계. p.23.
 통계청(2018.3.15). 보도자료: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19.
 통계청(2019.3.12). 보도자료: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19.
 통계청(2020.3.11). 보도자료: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26.
 통계청 KOSIS (2014~2019) 학교급별 방과후 학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참여비용.
 교육부(2017a). 2016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p.1.
 교육부(2018a). 2017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p.1.
 교육부(2018c). 2018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p.1.
 교육부(2019a). 2019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p.1.

- * 주: 1) 방과후 초·중·고 돌봄 프로그램, 특기·적성관련 프로그램, 교과 관련 프로그램 포함
 2) 참여율은 무상과 유상 합친 비율
 3)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금액
 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의 2020년도 통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조사되지 않았음.



* 출처: 교육부(2019a), 2019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p.2.

* 주: 단위: 점

그림 III-5-2. 방과후학교 교급별 만족도(2014-2019년)

나. 지역아동센터 이용 현황 및 서비스 만족도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내 아동의 육성을 위해 보호·교육과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지역사회 간 연계 등을 통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c). 이러한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의 형태로 운영되다가 2004년에 법제화가 된 이후 신고제로 운영되면서 2004년 895개소에서 2019년 현재 4,217개소로 확대되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수는 10여 년 동안 10만 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생의 이용률이 가장 높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기본 프로그램으로 아동보호 및 일상생활 지도, 급식제공 등의 보호 프로그램, 학교생활준비, 숙제 및 예체능, 안전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 문화 체험, 놀이지원을 하는 문화 프로그램, 상담 및 정서적 지원, 가정방문 등의 복지 프로그램, 지역 내 인적·물적 지원을 연계하고 결연을 후원하는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특화 프로그램으로 주말·공휴일에 참여 가능한 체험학습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을 위한 1:1 학습멘토 연계, 동아리활동,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과 야간보호 프로그램,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등도 제공한다(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2021.9.27. 인출).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2020년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2019년도와 동일하게 4점으로 나타났으며, 시설/환경 만족도와 활동/서비스 도움 정도도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보고되었다([그림 III-5-3]). 다만, 교사만족도는 2019년도 4.15점에서 2020년에는 4.01점으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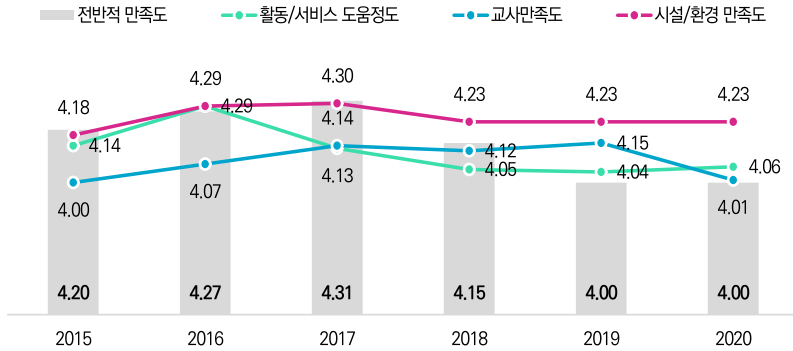
표 III-5-4.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증가 및 이용 아동 현황·추이(2008~2019년)

(단위 : 개소, 명)

구분	센터 개소수	연 인원							
		합계	미취학	초등		중학생	고등학생	탈학생	기타 ^{주)}
				저학년	고학년				
2008	3,013	87,291	4,585	35,972	33,163	11,380	1,862	133	196
2009	3,474	97,926	4,838	39,053	38,032	13,600	2,072	331	-
2010	3,690	100,233	4,376	37,865	40,233	15,075	2,346	338	-
2011	3,985	104,982	4,578	37,407	42,324	17,374	3,014	285	-
2012	4,036	108,357	4,028	38,030	42,396	20,017	3,663	223	-
2013	4,061	109,066	3,714	39,293	41,025	20,817	4,006	211	-
2014	4,059	108,936	3,533	40,425	40,662	20,121	4,035	160	-
2015	4,102	109,661	3,133	42,267	40,113	19,566	4,418	164	-
2016	4,107	106,668	1,872	41,750	40,390	18,156	4,377	123	-
2017	4,189	108,578	1,111	41,970	42,736	17,563	4,185	117	896
2018	4,211	109,610	1,798	43,438	44,063	16,321	3,902	88	-
2019	4,217	108,971	2,146	44,094	43,681	15,531	3,443	76	-

* 출처: 보건복지부(2017c).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2016년 12월 기준). p. iii, p.viii.
 보건복지부(2019c).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p.5, pp.44-45.
 보건복지부(2020a).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2019년 12월말 기준). p.48.

* 주: 1) 2004년 탈학교/기타, 2005년 탈학교, 2009년부터 기타는 별도 조사되지 않음.
 2) 이용 아동 연 인원의 경우, 2019년 말 기준 분석 불가능 시설 136개소 제외됨.



* 출처: 김희진, 임희진, 정운미(2020).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20. p.206, pp.270~277.

* 주: 5점 만점 기준 평균값 수치(단위: 점)

그림 III-5-3.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연도별 추이)

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현황 및 서비스 만족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저소득, 맞벌이, 한부모 가족 등의 구성원으로서 돌봄의 취약계층에 속하는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체험활동이나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적인 교육·복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공공시설 등에 설치되어 연중 1일 4시간 내외로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a).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에 ‘방과후 청소년 생활지원 종합대책’으로 46개소 시범 운영된 것에서 시작하여 2020년 현재, 30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초등학생이 6,440명, 중학생은 5,655명으로 총 12,095명이 이용하여 매년 이용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I-5-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 추이(2009~2020년)

(단위 : 개소, 명)

구분	개소	인원	연인원	구분	개소	인원	연인원
2009	178	7,560	2,177,280	2015	244	9,490	2,325,050
2010	161	6,672	1,754,736	2016	250	9,745	2,368,035
2011	200	8,200	2,148,400	2017	250	9,773	2,345,520
2012	200	8,060	2,095,600	2018	260	10,742	-
2013	200	8,200	2,205,800	2019	280	11,584	-
2014	200	8,091	1,962,492	2020	304	12,095	-

* 출처: 김영지, 유설희, 이민희, 김진호(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VI: 총괄보고서. p.273.
 여성가족부(2016b). 2016 청소년백서. pp.151-153.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백서. pp.167-169.
 여성가족부(2018b). 2018 청소년백서. pp.195-196.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p.198-199.
 여성가족부(2020a). 2020 청소년백서. p.20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인 만족도는 81.8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하고 있긴 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해 만족도 수준은 다소 하락하였다.

표 III-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 만족도(2011~2020년)

(단위 :%)

만족도 영역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만족도	83.5	83.8	83.9	84.2	84.4	85.1	82.5	84.2	85.9	81.8	
프로그램 만족도	84.1	84.4	84.3	84.4	84.4	85.3	84.0	82.5	82.4	80.6	
지도자 만족도	83.9	84.0	85.5	85.2	85.6	86.3	84.0	83.8	86.4	82.5	
교과목강사 만족도	83.3	82.8	85.0	85.2	85.6	86.8	83.1	83.2	85.6	79.8	
주중체험강사 만족도	86.7	87.6	88.2	88.0	88.4	89.9	86.9	85.8	88.0	82.9	
시설환경 만족도	82.3	83.6	85.1	84.2	85.2	87.6	84.3	85.4	87.2	83.1	
급식 만족도	81.1	80.0	74.9	77.8	76.8	74.4	74.7	-	-	-	

* 출처: 양계민, 김승경(2011), 양계민(2012), 양계민(2013), 양계민(2014), 김영지, 김정주, 정은주(2015), 양계민(2016), 서정아, 연보라(2017), 양계민(2018), 서정아, 조아미(2019), 양계민(2020)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사업성과 및 효과·만족도 관련 연구에서 영역별 전체 만족도 평균에 대한 100점 만점 환산 점수를 정리하여 표로 재구성.

* 주: 평균값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며, 2018년부터 급식 만족도를 조사하지 않았음.

세부적인 영역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및 지도자, 교과목 강사, 주중체험 강사,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전년도에 비해 1.8점에서 5.8점이 낮아진 결과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활동이 한정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청소년 이용자의 만족도가 낮아졌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라. 다함께돌봄 운영 현황 및 서비스 만족도

다함께돌봄 사업은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하여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17년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공동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10개소로 설치·운영된 것을 기점으로 2020년 6월 말 기준 총 24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이용 아동에 대한 정원은 6,176명으로, 실제 4,858명의 아동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표 III-5-7.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현황(2020년 6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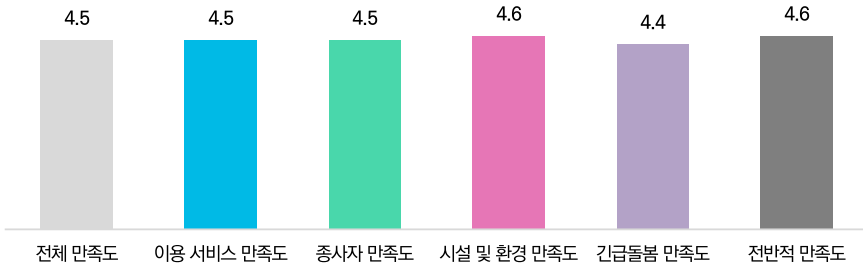
(단위 : 개소)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개소	83	18	1	5	3	2	11	3	44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개소	13	9	11	13	10	9	11	0	246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2020). 2020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 다함께 돌봄 소식지. p.20. 그림을 표로 재구성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만족도는 4.5점(5점 만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그림 III-5-4). 구체적인 다함께돌봄센터 만족도 결과를 보면, 즐겁고 안전한 센터 이용에 대한 이용 서비스 만족도와 이용 아동에 대한 종사자의 태도를 평가한 만족도는 모두 4.5점으로 나타났고, 시설의 위생과 센터 접근성과 관련된 시설 및 환경 만족도와 센터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전반적인 만족도는 모두 4.6점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제공된 긴급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영역은 4.4점의 만족도를 보였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2020).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2020). 2020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 다함께 돌봄 소식지. p.22. 그림을 그래프로 재구성

* 주: 단위: 점

그림 III-5-4. 다함께돌봄 이용자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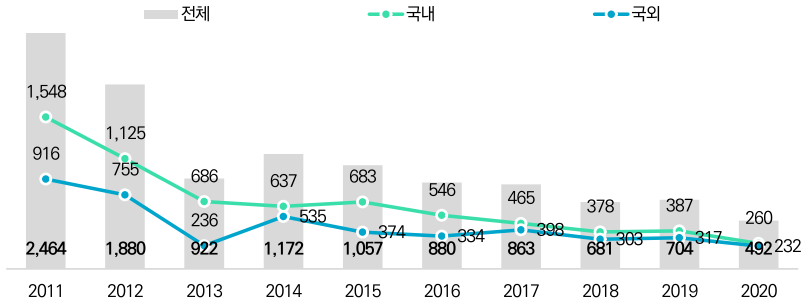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1) 입양률

① 국내·외 입양 현황과 추이

입양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아동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보건복지부, 2021b). 이러한 국내·외 입양 추이는 2011년 이전에는 국내 입양보다 국외 입양 비율이 2배 정도 많았으나, 2011년에서 2013년에는 국내의 입양이 대폭 감소되었고, 국외 입양보다 국내 입양의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2011년 8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국내외 입양의 법원 허가제, 입양숙려제, 양자의 입양정보 접근권 부여, 국내입양 우선 추진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던 것에 기인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2011년 이후로 국내·외 입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에 있으며, 2020년에는 국내 입양 아동수가 260명(52.8%), 국외 입양 아동 수는 232명(47.2%)으로 확인되었다.



* 출처: 보건복지부(각 년도).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국내·외 입양현황(2011-202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0N001&conn_path=I2에서 2021년 8월 25일 인출 및 재구성.

* 주: 단위: 명

그림 III-5-5. 연도별 국내·외 입양 아동 수

표 III-5-8. 국내·외 입양 현황 및 추이

(단위: 명(%))

연도	계	국내	국외	연도	계	국내	국외
계	244,543	78,405 (32.5)	166,138 (67.5)	2015	1,057	683 (64.6)	374 (35.4)
~2010	238,105	74,409 (31.3)	163,696 (68.7)	2016	880	546 (62.0)	334 (38.0)
2011	2,464	1,548 (62.8)	916 (37.2)	2017	863	465 (53.9)	398 (46.1)
2012	1,880	1,125 (59.8)	755 (40.2)	2018	681	378 (55.5)	303 (44.4)
2013	922	686 (74.4)	236 (25.6)	2019	704	387 (55.0)	317 (45.0)
2014	1,172	637 (54.4)	535 (45.6)	2020	492	260 (52.8)	232 (47.2)

* 출처: 보건복지부(각 년도).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국내·외 입양현황(2011-202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0N001&conn_path=I2에서 2021년 8월 25일 인출 및 재구성.

② 입양 사후관리

입양 후 사후관리는 입양특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친양자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동안 입양기관의 담당자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되 1년 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1년간 총 6회 이상 진행되고 그 중 최소한 3번의 가정방문이 필수적으로 진행되고 그 외에는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대면 상담을 하도록 한다. 사후관리는 입양기관의 의무이나 입양가정의 의사를 존중함에 따라 양친의 의사에 의해 입양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b).

입양 후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은 입양기관이 제출한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아동 주소지 관할 내에 있는 아동보호전문요원이 확인하고, 입양가정의 희망 여부에 따라 입양기관과 동행하여 해당 입양가정에 대한 가정방문이나 대면상담을 통해 복지 급여와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입양기관은 사후관리 과정에서 입양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를 인지하였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고(112 또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문공무원(미배치 지역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아동 학대 사례개입 및 보고절차에 따라 가정방문, 보고, 조사 협조, 모니터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사례회의를 추진해야 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b).

국내·외 입양인을 위한 사후서비스 사업은 2014년에 보건복지부가 직접 수행했던 것에서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 사업으로 전환되어 사업 수행 단체는 공모를 통해 국내·외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국외입양인의 모국 방문 및 정착, 국내입양인의 입양 후 양부모와 상호적응 등을 위한 입양 사후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5-9〉와 같다.

표 III-5-9. 국내·외 입양인 지원사업 대상

대상	구분	내용
국외 현지 입양인 및 가족 (재외공관 경유)	한국 문화 체험	한국음식, 명절, 전통음악, 태권도 등 한국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모국에 대한 이해 증진
	입양인 및 입양가족 자조모임 지원	해외 거주 국외입양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모국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현지 사회 적응력 제고
	한국어 교육	한국어 습득을 통한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
국내 단체 (국외 입양인)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지원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을 돕기 위한 단체 지원
	모국방문	연고지 방문 및 문화체험 등 입양인의 목구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돕기 위한 사업
	모국어연수	한국어 습득을 통한 모국에 대한 이해 증진 사업
	모국생활지원	한국에 중장기 체류를 원하는 국외입양인의 안정적 적응을 돕는 사업(한국 국적회복, 취업, 법률 및 재정관련 안내, 사회복지서비스 등)
	문화 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관련 테마를 활용하여 입양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사업
	방문입양인 일시 거주 지원	모국 체류를 희망하는 입양인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사업
국내 단체 (국내 입양인)	기타 행사지원 등	국외입양인 관련 국제행사 등 지원 사업
	입양가족 교육 및 심리상담 지원	입양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입양가족 간 유대감 형성 및 양육방법 등을 교육하는 사업 및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입양가정에 심리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연장아 등 특수육구 입양가족 지원	연장아동(만 1세 이상 아동) 등 특수육구가 있는 입양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
	입양가족 자조모임 지원	국내입양인 및 입양 가족 간 지역별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상호 지지를 돕기 위한 사업
	고위험 위기 입양가정 지원	국내 입양가정 중 상호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해체 위기에 놓인 가정 대상 지원 사업(사례관리 등)
기타 행사지원	기타 국내입양인 관련 행사 지원 사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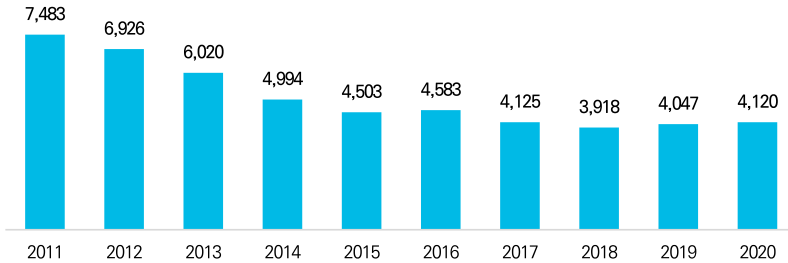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1b). 2021 입양실무매뉴얼. p.84. 아동권리보장원 웹사이트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177&bbsId=1014&nttSn=2680&cataGori=da06&tabName=>에서 2021년 10월 7일 인출.

(2) 대안양육 비율

① 보호대상아동 현황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하면,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방임 포함)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아동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 빈곤이나 부모의 수감, 실직 등으로 가정에서 경제적·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거나 어려움이 처할 위험이 높은 취약 아동을 포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f).

보호대상아동의 수는 2011년 7,483명에서 2018년까지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18년 3,918명에서 2020년에는 4,12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의 빈곤과 실직, 자녀의 학대가 증가하고 비행 및 가출, 부랑에 속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 출처: 보건복지부(2021f).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65716에서 2021년 8월 25일 인출.

* 주: '귀가 및 연고자 인도' 사례는 제외(단위: 명)

그림 III-5-6. 발생유형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 추이(2011~2020년)

표 III-5-10. 발생유형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2014~2020년)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4,994	4,503	4,583	4,125	3,918	4,047	4,120
빈곤·실직·학대 ¹⁾	2,965 (59.4)	2,866 (63.6)	3,139 (68.5)	2,778 (67.3)	2,726 (69.6)	2,865 (70.8)	3,006 (73.0)
비행·가출 ²⁾	508 (10.2)	360 (8.0)	314 (6.9)	227 (5.5)	231 (5.9)	473 (11.7)	468 (11.4)
미혼부모·혼외자	1,226 (24.5)	930 (20.7)	855 (18.7)	847 (20.5)	623 (15.9)	464 (11.5)	466 (11.3)
유기	282 (5.6)	321 (7.1)	264 (5.8)	261 (6.3)	320 (8.2)	237 (5.9)	169 (4.1)
미아	13 (0.3)	26 (0.6)	11 (0.2)	12 (0.3)	18 (0.5)	8 (0.2)	11 (0.3)

* 출처: 보건복지부(2021f).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통계청 e-나라지표 웹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에서 2021년 8월 25일 인출.

- * 주: 1) 학대, 빈곤, 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등 포함
2) 비행, 가출, 부랑 포함

보호유형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건복지부, 2021f)을 살펴보면, 2020년에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이 2,739명으로, 전체 보호대상아동의 66.5%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가정위탁이 1,199명(29.1%), 입양이 104명(2.5%), 소년소녀가정이 5명(0.1%)로 보고되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그 다음으로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 가정위탁, 입양 등에 의한 가정보호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시설보호를 실시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는 있으나(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a), 우리 사회에서 가정위탁과 입양 문화가 널리 활성화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시설보호는 보호대상아동에게 공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주요 대안양육 체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표 III-5-11. 보호유형별 보호대상아동 현황(2014~2020년)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4,994	4,503	4,583	4,125	3,918	4,047	4,120
시설보호 ¹⁾	2,900 (58.1)	2,682 (59.6)	2,887 (63.0)	2,421 (58.7)	2,449 (62.5)	2,739 (67.7)	2,739 (66.5)
가정위탁	1,688 (33.8)	1,582 (35.1)	1,022 (22.3)	994 (24.1)	937 (23.9)	1,003 (24.8)	1,199 (29.1)
입양 ²⁾	393 (7.9)	239 (5.3)	243 (5.3)	285 (6.9)	174 (4.4)	104 (2.6)	104 (2.5)
소년소녀가정	13 (0.3)	0 (0.0)	6 (0.1)	2 (0.0)	1 (0.0)	5 (0.1)	5 (0.1)

* 출처: 보건복지부(2021f).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통계청 e나라지표 웹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에서 2021년 8월 25일 인출.

* 원출처: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주: 1) 시설보호는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포함됨.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요보호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민법상의 입양(사인간의 입양)은 미포함

②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가정의 환경에서 대안적인 양육을 제공받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비율을 파악해보고자, 아동보호서비스 유형 중 가정위탁과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가정위탁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일정기간 동안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체계이다(보건복지부, 2021b). 가정위탁보호는 크게 친조부모나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을 의미하는 ‘대리양육 위탁가정’, 친조부모나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인 ‘친인척 위탁가정’, 일반인에 의해 가정 양육을 위탁하는 ‘일반인 위탁가정’이 있다.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아동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전체 위탁아동 수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대리양육 위탁가정과 친인척 위탁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의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혈연관계에 기반한 가정위탁이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5-12.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아동현황(2013~2019년)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14,596	14,385	13,728	12,896	11,983	11,141	10,384
대리양육 위탁아동	9,776 (67.0)	9,550 (66.4)	9,127 (66.5)	8,578 (66.5)	7,950 (66.3)	7,426 (66.7)	6,905 (66.5)
친인척 위탁아동	3,843 (26.3)	3,816 (26.5)	3,556 (25.9)	3,348 (26.0)	3,100 (25.9)	2,801 (25.1)	2,572 (24.8)
일반 위탁아동	977 (6.7)	1,019 (7.1)	1,045 (7.6)	970 (7.5)	933 (7.8)	914 (8.2)	907 (8.7)

* 출처: 보건복지부(각 년도).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2013~2019).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0_N005&conn_path=l2에서 2021년 8월 21일 인출.

또한,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서 가정복귀, 입양, 가정위탁이 어려운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및 양육하는 아동복지시설 수와 보호아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 현재, 양육시설과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등을 포함한 전체 시설 수는 281개였고, 입소 아동은 11,665명이었다.

표 III-5-13.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¹⁾ 현황(2014~2019년)

(단위 : 개소,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시설 수	278	281	281	280	279	281
현재 입소아동 ²⁾	14,630	14,001	13,689	12,789	12,193	11,665

* 출처: 보건복지부(2020g).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현황.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401121&conn_path=l2에서 2021년 10월 12일 인출.
원출처: 보건복지부(각 연도).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 보고

- * 주: 1)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전국의 아동복지시설로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아동
2) 현재 입소아동: 기아, 사생아, 미아, 비행·가출·부랑아, 빈곤·실직·가정, 전입 등으로 시설에 입소된 아동으로 퇴소아동을 제외한 연말 현재 수용아동 수

표 III-5-14. 공동생활가정 시설 및 보호아동 수(2014~2019년)

(단위 : 개소,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시설 수	480	476	480	510	533	558	578	
이용 인원	계	2,481	2,588	2,636	2,758	2,811	2,872	2,949
	남	1,309	1,351	1,364	1,444	1,477	1,547	1,602
	여	1,172	1,237	1,272	1,314	1,334	1,325	1,347

* 출처: 김영지 외(2017).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p.215.
 보건복지부(2018c). 2018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7.12.31.기준). p.1.
 보건복지부(2019d). 2019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8.12.31.기준). p.1.
 보건복지부(2020d). 2020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9.12.31.현재). p.1

아동복지시설 종류의 하나로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2013년 이래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면서 2019년 기준 578개소였으며, 보호아동 수는 총 2,949명이었다. 이는 대다수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보다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아동이 성장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의 보호형태를 지향하고 있어 공동생활가정의 수와 이용 인원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3) 가출 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① 가출 청소년 비율과 가출 이유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지난 1년간 가출 경험의 응답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2%가 가출 경험이 있었다. 초등학생(3.8%)이 중학생(3.4%)과 고등학생(2.4%)보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가출을 해봤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조손가정(9.5%)의 가출 경험률이 양부모가정(2.8%)의 약 3배 가까이 높았다(〈표 III-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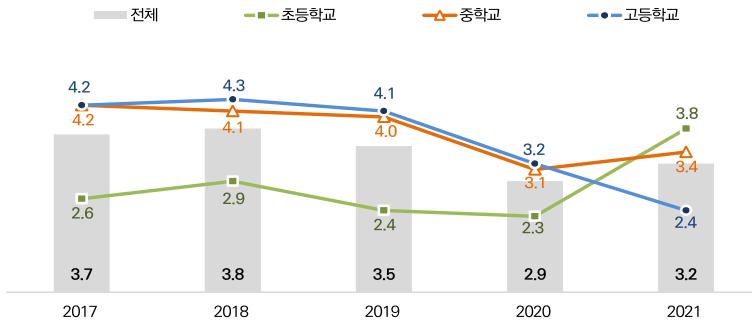
표 III-5-15. 가출 여부

(단위 : %(명))

구분		가출한 적이 있다	가출한 적이 없다	전체(N)	χ^2
전체		3.2	96.8	100.0(8,451)	1.476
성별	남학생	3.4	96.6	100.0(4,359)	
	여학생	2.9	97.1	100.0(4,092)	
학교급	초등학교	3.8	96.2	100.0(2,751)	10.770**
	중학교	3.4	96.6	100.0(2,813)	
	고등학교	2.4	97.6	100.0(2,88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8	97.2	100.0(7,544)	40.601***
	한부모가정	6.6	93.4	100.0(651)	
	조손가정	9.5	90.5	100.0(86)	
기타	기타	4.7	95.3	100.0(125)	42.037***
	상	2.1	97.9	100.0(2,972)	
	중	2.9	97.1	100.0(3,567)	
경제적 수준	하	5.4	94.6	100.0(1,874)	20.546***
	상	2.8	97.2	100.0(4,827)	
	중	3.1	96.9	100.0(2,888)	
하	하	6.0	94.0	100.0(699)	

** $p < .01$, *** $p < .001$.

가출 경험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 가출 경험률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고등학생의 가출 경험률은 감소하는 반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2020년 이후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초등학생의 가출 경험률은 최근 몇 년 간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증감을 반복하다 2020년 대비 2021년에 1.5%p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들의 가출 현황 및 이유에 대해 좀 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그림 III-5-7)).



* 주: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III-5-7. 가출 여부: 학교급별(연도별 추이)

표 III-5-16. 가출한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학업문제 때문에	부모님과의 문제	학교 문제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	기타	전체(N)	χ^2	
전체	18.5	62.4	0.6	1.4	9.7	7.4	100.0(254)	4.314	
성별	남학생	18.7	59.0	0.0	1.9	11.8	8.6		100.0(140)
	여학생	18.2	66.6	1.3	0.8	7.3	5.9		100.0(115)
학교급	초등학교	20.0	54.6	0.0	2.1	8.7	14.6	100.0(95)	19.795*
	중학교	15.3	68.2	0.0	1.2	13.4	1.9	100.0(91)	
	고등학교	20.5	65.7	2.1	0.6	6.4	4.7	100.0(6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9.3	61.9	0.4	1.0	11.9	5.5	100.0(198)	18.436
	한부모가정	19.0	64.3	1.6	2.7	0.0	12.4	100.0(40)	
	조손가정	0.0	75.8	0.0	0.0	0.0	24.2	100.0(7)	
학업 성적	상	20.2	63.5	1.4	1.9	7.0	6.1	100.0(57)	3.287
	중	17.2	60.7	0.0	1.6	11.4	9.1	100.0(96)	
	하	18.0	63.9	0.7	0.9	10.0	6.6	100.0(99)	
경제적 수준	상	20.2	62.4	0.0	0.9	8.7	7.8	100.0(127)	13.135
	중	20.8	59.2	0.9	0.5	10.1	8.4	100.0(84)	
	하	6.4	70.2	1.6	4.8	12.6	4.4	100.0(40)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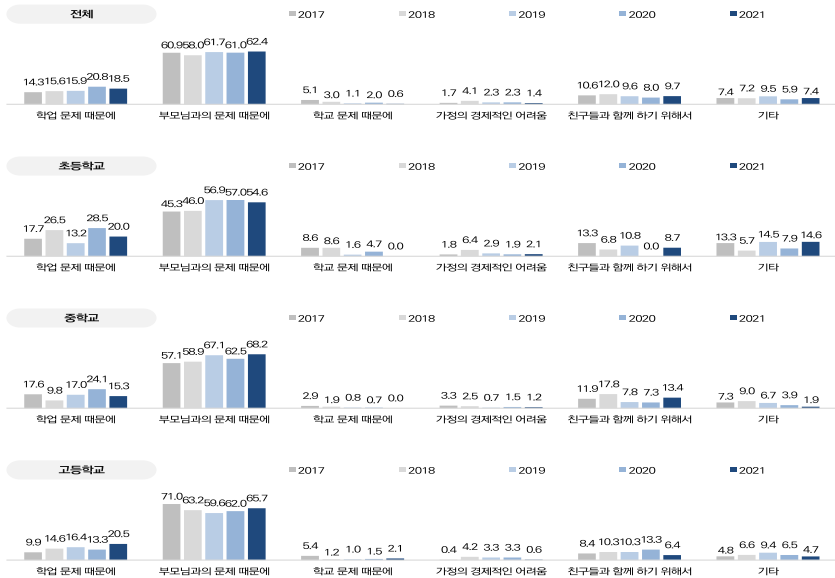


그림 III-5-8. 가출한 주된 이유(연도별 추이)

가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3.2%)에게 가출한 주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 부모님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가 62.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학업문제(18.5%),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9.7%), 기타(7.4%),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1.4%), 학교문제(0.6%) 순으로 응답하였다. 가출 경험자의 5명 중 3명은 부모님과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볼 때, 결국 아동과 청소년의 가출 문제는 부모님과의 관계 개선과 회복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함을 알 수 있다(〈표 III-5-16〉). 가출의 주된 이유에 대한 연도별 추이의 경우, 전체적으로 부모님과의 문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업문제와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그림 III-5-8〉).

② 가출 청소년 보호시설 수

1991년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1992년에 최초로 ‘청소년쉼터’가 설치되었으며, 2004년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청소년쉼터의 법적 설치근거가 마련되었다(여성가족부, 2020a).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의 생활보호와 상담, 자립역량 강화, 고충처리, 문화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가출 청소년들의 가정과 사회로 복귀를 지원하며, 청소년보호시설의 전문화 및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일시, 단기 및 중·장기 쉼터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표 III-5-17. 청소년쉼터의 종류 및 기능

구분	일시쉼터(32개소)	단기쉼터(61개소)	중장기쉼터(40개소)
기간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이내 단기보호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가능)	3년 이내 중장기보호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이용대상	가출·거리배회·노숙 청소년	가출 청소년	가출 청소년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출 청소년 조기구조발견, 단기·중장기 청소년 쉼터와 연결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출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서비스 및 예방활동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 서비스 제공 가정 및 사회복귀 대상 청소년 분류, 전문기관 연계·의뢰 서비스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보호 서비스 제공

구분	일시쉼터(32개소)	단기쉼터(61개소)	중장기쉼터(40개소)
위 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주요 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 출처: 여성가족부(2020a). 2020 청소년백서. p.200.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시쉼터(32개소)는 가출 청소년 및 노숙,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기 위해 24시간~7일 이내로 일시보호를 하고 있고, 단기쉼터(61개소)는 가출 청소년의 보호 및 가정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3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보호 및 상담, 치료, 전문기관 연계·의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3년 이내 중장기 보호가 필요한 가출 청소년들은 중장기쉼터(40개소)에서 안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자립과 관련된 지원도 받을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0a).

표 III-5-18.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및 이용 현황(2010~2020년)

(단위 : 개소, 백만 원, 명)

연도	구분				예산	입소 청소년 수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총계		
2010	10	49	24	83	5,874	9,350
2011	10	48	25	83	6,262	11,657
2012	13	49	30	92	7,287	11,764
2013	21	50	32	103	8,137	15,242
2014	22	50	37	109	8,710	24,079
2015	26	52	41	119	10,002	25,012
2016	28	51	40	119	12,666	30,329
2017	30	53	40	123	13,565	31,197
2018	30	62	38	130	15,570	32,109
2019	31	63	40	134	18,970	32,402
2020	32	61	40	133	19,385	-

*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백서. pp.160-162의 내용과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백서. pp.190-192의 내용, 여성가족부(2020a). 2020 청소년백서 pp.199-201의 내용, 여성가족부(2020c).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p.98.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음.

청소년쉼터는 2010년 총 83개소에서 2020년 현재 총 13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의 수와 함께 예산과 입소 청소년의 수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표 III-5-18〉). 청소년쉼터에서는 운영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쉼터유형별로 운영 모형과 목표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5년에 ‘청소년쉼터 서비스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쉼터 내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 외에도 가출 청소년을 조기 발굴 및 구조, 초기 개입 등을 실현하고자 거리상담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쉼터로 연계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a).

③ 가출 시 서비스 이용 기관 및 만족도

가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가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어떠한 기관도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93.9%로 확인되었다. 일부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쉼터(3.7%), 청소년 상담기관(1.8%), 청소년 수련관 또는 센터(0.6%) 순으로 이용 경험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가출 시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특히, 남학생은 쉼터와 청소년수련관을 아예 이용하지 않았고 소수의 남자 가출 청소년이 상담기관(1.2%)만 이용하고 있었으나, 여학생은 청소년쉼터(7.5%)와 청소년 상담기관(2.4%), 청소년 수련관 또는 센터(1.1%)를 잘 활용하고 있었다(〈표 III-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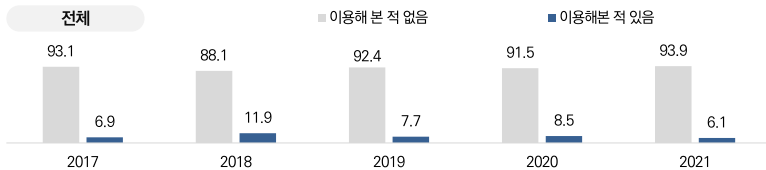
표 III-5-19. 가출 후 이용한 기관

(단위 : %(명))

구분	이용해 본 적 없다	청소년 쉼터	청소년 상담 기관	청소년 수련관 (센터)	청소년 전화 1388	기타	전체(N)	χ^2
전체	93.9	3.7	1.8	0.6	-	-	100.0(158)	7.766
성별	남학생	98.8	0.0	1.2	0.0	-	100.0(79)	
	여학생	89.0	7.5	2.4	1.1	-	100.0(79)	

구분		이용해 본 적 없다	청소년 쉼터	청소년 상담 기관	청소년 수련관 (센터)	청소년 전화 1388	기타	전체(N)	χ^2
학교급	중학교	93.8	3.8	2.4	0.0	-	-	100.0(90)	1.453
	고등학교	94.1	3.6	1.0	1.3	-	-	100.0(68)	
고교 유형	일반계고	93.6	5.0	1.3	0.0	-	-	100.0(49)	3.743
	특성화계고	95.3	0.0	0.0	4.7	-	-	100.0(19)	
지역 규모	대도시	94.0	5.1	0.9	0.0	-	-	100.0(72)	11.574
	중소도시	93.9	3.1	3.0	0.0	-	-	100.0(71)	
	읍면지역	93.9	0.0	0.0	6.1	-	-	100.0(15)	

최근 5년간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가출과 관련된 기관의 이용 경험과 기관 별 이용 여부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에 이용 여부가 11.9%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그 외에는 6~8%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그림 III-5-9). 이는 2018년에 기타 기관(4.7%)을 이용했던 경험이 다른 연도에 비해 높게 응답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짐작된다(그림 III-5-10).



* 주: '기관이용 경험 있음'은 청소년관련 기관들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을 모두 합친 비율(단위:%)

그림 III-5-9. 가출 후 청소년관련 기관 이용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 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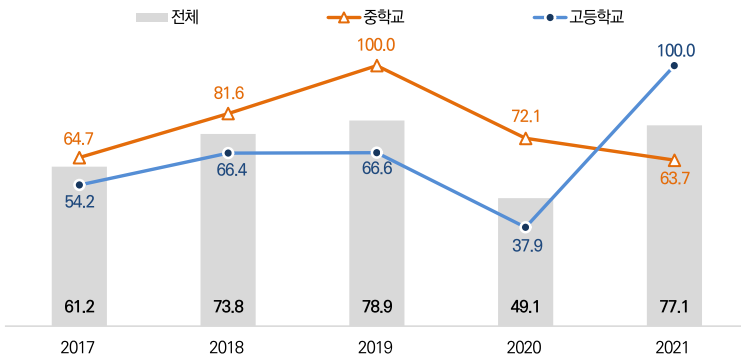
그림 III-5-10. 가출 후 이용한 기관: 전체(연도별 추이)

가출 청소년이 이용해본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77.1%는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그 중에서 남학생(43.6%)보다는 여학생(85.6%)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표 III-5-20)). 이러한 결과는 앞서 조사된 가출 관련 기관을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수가 많지 않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경험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고려할 때, 만족도에 대한 편차도 크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표 III-5-20. 가출 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단위 : %)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N)	χ^2
전체	2.74(0.81)	11.6	11.3	68.4	8.7	100.0(11)	10.000*
성별							
남학생	2.87(1.35)	0.0	56.4	0.0	43.6	100.0(2)	2.857
여학생	2.71(0.75)	14.4	0.0	85.6	0.0	100.0(9)	
학교급							2.857
중학교	2.59(1.02)	18.4	18.0	49.8	13.9	100.0(7)	
고등학교	3.00(0.00)	0.0	0.0	100.0	0.0	100.0(4)	4.286
고교 유형							
일반계고	3.00(0.00)	0.0	0.0	100.0	0.0	100.0(3)	4.286
특성화계고	3.00(0.00)	0.0	0.0	100.0	0.0	100.0(1)	
지역 규모							4.286
대도시	3.00(0.00)	0.0	0.0	100.0	0.0	100.0(4)	
중소도시	2.50(1.12)	22.3	21.8	39.1	16.9	100.0(6)	
읍면지역	3.00(0.00)	0.0	0.0	100.0	0.0	100.0(1)	



* 주: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의 합계(단위: %)

그림 III-5-11. 가출 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연도별 추이)

가출 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최근 5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도에 만족도가 49.1%로 급격하게 감소했던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60~70%

대의 만족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그림 III-5-11].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의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제공되었기에 이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낮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1) 양육·보호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

① 양육·보호 서비스 모니터링

가.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은 3년마다 평가를 받고 그에 따른 결과를 공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아동·청소년에게 양육과 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시설 운영 수준에 대한 지역별, 유형별 차이 파악을 통해 이에 대한 개선과 균형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아동복지시설 평가는 2019년에 이루어졌으며, 3년 주기에 따라 다가오는 2022년에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평가지표(안)를 개선 및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2022년에 변경되는 평가지표(안)는 다음 <표 III-5-21>과 같다.

표 III-5-21. 2019년 평가지표 대비 2022년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안) 비교

2019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22년도 평가지표(안)	
A. 시설 및 환경 (10점)	A1. (전체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수정	A. 시설 및 환경 (10점)	A1. (전체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A2. (전체공통)안전관리	수정		A2. (전체공통)안전관리
	A3. (전체공통)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통합 수정		A3. (전체공통)응급상황 및 화재 예방 안전체계 구축
	A4. (전체공통)화재예방 및 피난 대책			
	A5. 시설구조(거실)	통합		A4. 기본시설의 적절성 및 충분성

	2019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22년도 평가지표(안)
B. 재정 및 조직 운영 (15점)	A7. 심리검사·치료실 및 상담실	수정	A5. 식품보관 위생상태 B1. (전체공통)사업비 B2. (전체공통)법인전입금 및 후원금 B3. (전체공통)회계의 투명성 B4. (전체공통)사회적가치 실현 기업 구매 금액(배점) B5. (전체공통)직원총원율 B6. (전체공통)직원 근속률 B7. (전체공통)직원교육 활동비 및 내·외부교육 참여시간 B8. (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B9. (전체공통)시설장 및 최고중간 관리자(사무국장, 부장)의 전문성 B10. (전체공통)직원교육 B11. (전체공통)직원복지 B12. (전체공통)직원의 권리 및 인권 보호(배점)
	A6. 식품보관 위생상태	유지	
	B2. (전체공통)사업비	수정	
	B1. (전체공통)법인의 자부담(전입금)	통합	
	B3. (전체공통)후원금	통합	
	B4. (전체공통)회계의 투명성	수정	
	B5. (전체공통)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수정	
	C1. (전체공통)직원총원율	수정	
	C3. (전체공통)직원 근속률	수정	
	C4. (전체공통)직원 교육 활동비	통합 수정	
C. 인적 자원 관리 (15점)	C11. 직원교육 활동시간	수정	
	C5. (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수정	
	C6. (전체공통)시설장의 전문성	통합 수정	
	C7. (전체공통)최고 중간 관리자의 전문성	통합 수정	
	C8. (전체공통)직원교육	수정	
	C9. (전체공통)직원복지	수정	
	C10. (전체공통)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	수정	
	B6. 일지 및 입·퇴소 관련 기록	이동 수정	
	C2. (전체공통)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삭제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5점)	D1. 아동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수정
D2. 초기적응 프로그램		유지	
D5.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아동 관리의 적절성		유지	
D7. 퇴소지원 프로그램		유지	
B6. 일지 및 입·퇴소 관련 기록		수정	
		신규	
D11. 사례관리		수정	
D8.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수정	
D16. 식당 및 식사관리		수정	
D10. 가족·연고자 상담		수정	
D22. 멘토-멘티 결연 실적		유지	
		신규	
		신규	
		신규	
D4. 자립지원 및 자립준비의 적절성		유지	
D3. 프로그램 기획 회의	삭제		
D6. 자립지원(취업·학업지도) 프로그램	삭제		

2019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22년도 평가지표(안)	
	D9. 아동 상담	삭제		
	D12. 맞춤형 지도·학습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삭제		
	D13. 정서 및 사회성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삭제		
	D14. 가족의 시설방문 및 아동의 원가족 방문 프로그램	삭제		
	D15. 치료 프로그램	삭제		
	D17. 아동 개인별 사진첩(앨범) 기록 정도	삭제		
	D18.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수준	삭제		
	D19.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적응 프로그램	삭제		
	D20. 영유아 장난감	삭제		
	D21. 직접 서비스 자원봉사자	삭제		
	E. 아동의 권리 (15점)	E1. (전체공통)비밀보장		
E2. (전체공통)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수정	D2. (전체공통)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E3. (생활공통)아동의 고충처리		수정	D3. (전체공통)고충처리	
E5. 서비스 정보제공		유지	D4. (생활공통)서비스 정보제공	
E6. (생활공통)서비스과정에 아동의 참여 및 자기 결정권		수정	D5. (생활공통)서비스과정 참여 및 자기 결정권	
E4. 인권진정함 설치·운영		유지	D6. 인권진정함 설치·운영	
E9. 체벌 금지		수정	D7. 아동의 인권보호	
E8. 교우 및 학교생활 관리		수정	D8. 교우 및 학교생활 관리	
F. 지역 사회 관계 (10점)	F1. (전체공통)외부자원개발	수정	E. 지역 사회 관계 (10점)	E1. (전체공통)외부자원개발
	F2. (전체공통)자원봉사자 관리	유지		E2. (전체공통)자원봉사자 관리
	F3. (전체공통)후원금(품)의 사용 및 관리	수정		E3. (전체공통)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F4. 지역사회 연계	수정		E4. 지역사회 연계
	F5. 지역사회 연계(자립지원시설 및 영유아시설)	수정		E5. 지역사회 연계
현장 평가 위원 종합 평가 (미배점)	1. 시설운영의 전반적인 수준	수정	F. 시설 운영 전반 (5점)	F1. (전체공통)시설운영의 전반적인 수준(시설장 인터뷰)
	2. 프로그램 서비스 질	수정		F2. (전체공통)서비스 질적 수준(직원 인터뷰)
	3. 자체평가의 정확성	수정		F3. (전체공통)자체평가의 정확성
	4. 평가자료의 질적 수준	삭제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0b),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의견수렴 공청회 자료집 :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생활시설 평가지표(안), pp.13-15.

* 주: 2022년도 아동생활시설 평가지표(안) 순서 기준으로 작성됨.

2019년도까지는 평가영역이 ‘A. 시설 및 환경’, ‘B. 재정 및 조직운영’, ‘C. 인적자원 관리’,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E. 아동의 권리’, ‘F. 지역사회 관계’ 등의 6개 영역에 따라 평가되었으나 2022년에는 2019년의 ‘C. 인적자원 관리’ 영역을 ‘B. 재정 및 조직운영’에, 미배점 형태로 현장 평가위원의 종합평가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2022년에는 ‘F. 시설운영전반’의 평가지표에 새롭게 포함되었다.

표 Ⅲ-5-22.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배점

2019년도 평가영역별 배점		2022년도 평가영역별 배점(안)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A. 시설 및 환경	10	A. 시설 및 환경	10
B. 재정 및 조직운영	15	B. 재정 및 조직운영	25
C. 인적자원 관리	15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35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5	D. 아동의 권리	15
E. 아동의 권리	15	E. 지역사회 관계	10
F. 지역사회 관계	10	F. 시설운영전반	5
총계	100	총계	100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0b),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의견수렴 공청회 자료집 : 2022년도 사회복지 시설평가 아동생활시설 평가지표(안), p.9를 재구성.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가 보완 및 변경됨에 따라 각 평가영역에 따른 배점도 변경되었다. 2019년에 ‘B. 재정 및 조직운영’, ‘C. 인적자원 관리’가 각 15점씩 배점이었다면, ‘B. 재정 및 조직운영’으로 통합된 후에는 배점이 25점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추가된 ‘F. 시설운영전반’ 영역 배점은 5점이 할당되었다.

최근에 진행된 2019년 아동복지시설의 평가등급을 보면, 전체 285개 시설 중 A등급은 193개소(67.7%), B등급은 61개소(21.4%), C등급 15개소(5.3%), D등급 5개소(1.8%), F등급은 11개소(3.9%)로 나타나 아동생활시설의 89.1% 정도는 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평가점수는 평균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평가영역별 점수를 보면, 시설 및 환경이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아동의 권리 영역은 연도별로 90점대 이상을 상회하고 있었으나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영역의 점수는 80점대

초·중반에 머무르고 있어 각 시설별로 운영과 인적 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5-23. 아동생활시설 영역별 평가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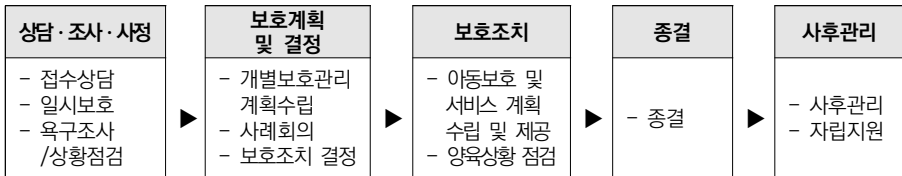
연도	시설 수	평균 점수	영역별 평가점수					
			시설·환경	재정·조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아동권리	지역사회 관계
2010	266	88.4	94.8	83.5	85.6	88.6	94.0	88.8
2013	275	90.0	95.0	88.2	85.1	92.0	95.4	85.0
2016	281	89.6	94.8	86.7	85.1	91.5	92.0	86.2
2019	285	88.8	92.2	81.2	83.7	93.0	90.1	87.6
2019 세부결과	A : 193개소 / B : 61개소 / C : 15개소 / D : 5개소 / F : 11개소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0).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2014.3.6).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 보건복지부(2017.2.15). 보도자료: 인권침해 발생 시설 좋은 평가 못 받는다. 보건복지부(2020.3.31.). 보도자료: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1,258개소)평가 발표.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0a).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나. 아동보호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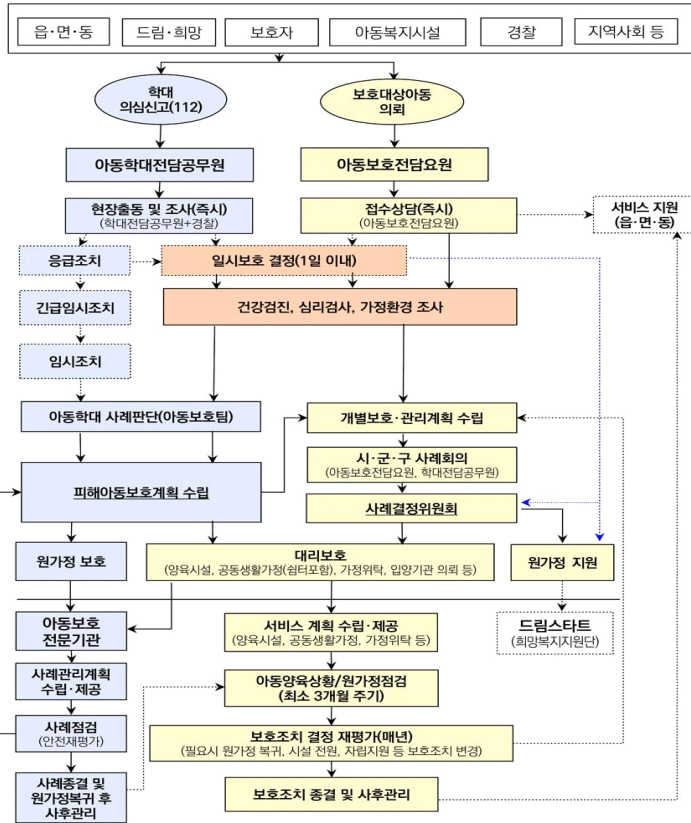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이 발견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았을 때 아동의 최상을 이익을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2016년 「아동복지법」에 아동의 원가정 보호원칙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양육 상황 점검,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하였고, 2019년 5월에는 ‘포용 국가 아동정책’에서도 요보호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첫 번째 핵심과제로 발표하였다. 이렇게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과 원가정 복귀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으로 현실에서는 이러한 체계가 작동하지 못하였고, 민간기관 위주의 보호 및 원가족 복귀 절차가 지자체 내에 없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였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a).

먼저, 아동을 위한 보호서비스는 [그림 III-5-12]와 같은 절차에 따라 아동에 대한 개별보호계획 수립과 양육 상황 점검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호를 제공하고 적절성을 평가한 후 변경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상담 및 가정조사를 통해 보호조치 결정전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과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다음으로 보호계획 및 결정 단계에서는 상담 및 가정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세 번째로 보호조치 단계에서는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의 양육 환경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아동보호조치 변경과 종결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네 번째로 보호조치 종결 단계에서는 양육 상황 점검 결과에 따른 보호조치 목적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한 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를 종결한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아동의 보호기간이 연령에 따라 도래하거나 원가정 복귀 시 같은 사유에 따라 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정방문과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게 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a).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1a). 2021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p.16.

그림 III-5-12. 아동보호서비스의 절차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1a). 2021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p.18.

그림 III-5-13. 아동보호 전담인력별 주요역할

다음으로, 아동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개별 아동에 대해 전문적이고 개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사례결정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서 운영하도록 하여 아동의 보호조치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고 적절한 보호유형과 필요한 지원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피해아동 등에 대한 가정복지가 적절한 지 여부 등 아동의 보호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함에 따라 보호조치의 종결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a).

마지막으로, 지자체에 아동보호에 대한 중심적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의사결정과 자원 투입 범위를 지역사회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아동에 대한 지자체와 민간 간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정보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 중심의 사례관리를 지원하였다. 또한,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하여 아동이 가정에 원만하게 복귀할 수 있는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a).

4) 소결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영역에서 ‘4-1. 부모의 지도와 책임’의 지표 내용을 살펴보면, ‘4-1-1.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만13~19세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2012년 이후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최근 2020년도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81%가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하였다. ‘4-1-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에서는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의 경우, 아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전체 어린이집 수가 2015년 42,517개소에서 2020년 35,352개소로 약 7천여 개소가,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도 2015년 1,452,813명에서 2020년 1,244,396명으로 약 20만여 명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의 수와 재원아동 수,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였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와 관련하여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코로나19로 인해 초등학생은 10.9%, 중학생이 4.2%, 고등학생이 12.0%로 전년도 대비 5분의 1 수준 이하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04년 895개소에서 2019년 현재 4,217개소로 확대되었으며, 최근 10여 년간 이용 아동 수도 10만 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4점대를 유지하였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 2005년 46개소에서 2020년 현재 30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초, 중, 고등학생의 이용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인 만족도는 81.8점이었지만,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2020년 6월 말 기준 총 246개소로, 실제 4,858명의 아동(이용 아동 정원은 6,176명)이 이용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실시한 결과, 전체 만족도는 4.5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4-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에서 ‘4-2-1. 입양률’을 보면, 2011년 8월에 「입양특례법」으로 개정된 이후 국내·외 입양률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2020년 현재, 전체 입양아 492명 중 국내 260명(52.8%), 국외 232명(47.2%)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입양특례법」 제25조제1항에 의거하여 입양 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되, 1년 동안에는 의무적으로 사후관리 모니터링이 총 6회 이상(최소한 3번의 필수적인 가정방문 및 가정 이외 장소에서 대면상담)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4-2-2. 대안양육 비율’의 세부지표 내용을 보면, 보호대상아동 수가 2018년 이후 2019년에 4,047명, 2020년 4,120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고, 2020년 현재 보호대상아동은 시설보호가 66.5%(2,739명), 가정위탁이 29.1%(1,199명), 입양은 2.5%(104명) 순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가정위탁보호의 경우, 친조부모나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을 의미하는 대리양육 위탁가정과 부모 및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으로부터 양육을 받는 친인척 위탁가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아동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2019년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 수(11,665명)가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보호되는 아동 수(2,949명)보다 4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4-2-3. 가출 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초, 중, 고등학생 전체 응답자 중 3.2%가 가출 경험이 있었고, 주로 부모님과 문제(62.4%)와 학업문제(18.5%)로 인해 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출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청소년쉼터가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전문화 및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일시, 단기 및 중·장기 쉼터로 특성화하여 2020년 현재 총 13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가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출 후 관련 기관의 이용 여부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21년에는 6.1%가 가출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이용해보았으며, 이용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77.1%가 만족했다고 보고하였다.

‘4-3.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에서 ‘4-3-1. 양육·보호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의 지표 내용을 보면, 먼저,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평가지표와 결과를 살펴보았다. 3년 주기에 따라 진행되는 아동복지시설 평가는 최근 2019년에 진행되어 전체 285개 시설 중 A등급은 193개소(67.7%), B등급은 61개소(21.4%), C등급 15개소(5.3%), D등급 5개소(1.8%), F등급은 11개소(3.9%)로 나타나 아동생활시설의 89.1% 정도는 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2022년도의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가 보완되어 평가영역 중 기존 ‘C. 인적자원 관리’가 ‘B. 재정 및 조직운영’으로 통합되었고, ‘F. 시설운영전반’이 추가되었다. 아동보호체계와 관련해서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보호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였고, 보호대상아동의 분리보호 결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시군구에서 ‘사례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자체에서 아동에 대한 의사결정 및 자원 투입 범위를 지역사회로 확대함으로써 아동보호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6. 장애, 기초 보건과 복지

1) 장애

(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

①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 수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원 등은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들의 교육권이 공적 영역에서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장애 아동·청소년들의 지원 수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0년 특수학교 수는 전년 대비 5개교가 증가한 182개이며, 특수학급의 수는 556개 늘어나 11,661개로 조사되었다. 학생 수는 장애영아와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모든 학교급에서 학생 수의 증가가 있었는데 총 95,420명으로 전년 대비 2,462명 증가하였다.

표 III-6-1.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2015~2020년)

(단위: 교, 학급, 명)

연도	특수		학생 수							교원수
	학교 수	학급 수	장애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계	
2016	170	10,065	656	5,186	33,770	19,793	23,943	4,602	87,950	18,772
2017	173	10,325	549	5,437	35,505	19,218	23,655	4,989	89,353	19,327
2018	175	10,676	582	5,630	38,031	18,788	22,584	5,165	90,780	20,039
2019(A)	177	11,105	532	5,989	41,091	18,462	21,502	5,382	92,958	20,773
2020(B)	182	11,661	439	6,536	43,205	19,140	20,655	5,445	95,420	22,145
B-A	5	556	-93	547	2,114	678	-847	63	2,462	1,372

* 출처: 교육부(2019b, 2020). 2019~202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5.

세부적으로 장애영아 439명, 유치원 6,536명, 초등학교 43,205명, 중학교 19,140명, 고등학교 20,655명, 전공과 5,445명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교원의

수도 전년 대비 1,372명 증가한 22,145명으로 확인되었는데 2018년 대비 2019년 증가(734명)분의 약 2배 수치이다.

②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비율

2020년 특수교육 대상자 총 95,420명 중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학생은 27.9%(26,615명)이었으며 나머지 72.1%(68,805명)는 일반학교에 배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으로 구분되는데, 특수학급의 경우 52,744명으로 약 77%이며 나머지 16,061명은 일반학급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통합교육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일반학교에 배치되는 학생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그 증가폭은 매년 1% 미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교육의 실현은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임을 인지하고 통합교육의 증가를 위한 노력과 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표 III-6-2.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2015~2020년)

(단위 : 명(%))

연도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학생 수	일반학교 배치학생 수			전체학생 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2015	26,094(29.6)	46,351	15,622	61,973(70.4)	88,067(100.0)
2016	25,961(29.5)	46,645	15,344	61,989(70.5)	87,950(100.0)
2017	26,199(29.3)	47,564	15,590	63,154(70.7)	89,353(100.0)
2018	26,337(29.0)	48,848	15,595	64,443(71.0)	90,780(100.0)
2019	26,459(28.4)	50,812	15,687	66,499(71.6)	92,958(100.0)
2020	26,615(27.9)	52,744	16,061	68,805(72.1)	95,420(100.0)

* 출처: 교육부(2019b, 2020). 2019-202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6.

③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별 졸업자 수와 진학, 취업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0년 졸업자 총 7,339명 가운데 특수학교 졸업자는 2,386명이었으며 그 중 57.3%(1,366명)는 상급학교에 진학하였고 6.3%(64명)는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머지 36.4%(956명)는 무직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통합교육과정 중 특수학급을 졸업한 학생 총 3,796명에서 44.9%(1,705명)는 진학을 하였으며 34.2%(716명)는 취업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III-6-3. 장애 청소년 졸업 후 상황(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단위 : %(명))

연도	구분	졸업자(명)	진학률(명)	취업률(명)	무직률(명)
2017	특수학교	2,546	53.1 (1,353)	5.7 (145)	41.2 (1,048)
	특수학급	3,989	39.9 (1,591)	19.8 (790)	40.3 (1,608)
	일반학급	1,199	53.2 (683)	7.7 (92)	39.1 (469)
	계	7,734	36.8 (3,595)	23.9 (1,847)	40.4 (3,125)
2018	특수학교	2,454	53.8 (1,321)	4.0 (97)	42.2 (1,036)
	특수학급	4,101	40.6 (1,667)	20.1 (824)	39.3 (1,610)
	일반학급	1,256	54.1 (680)	6.8 (85)	39.1 (491)
	계	7,811	47.0 (3,668)	12.9 (1,006)	40.2 (3,137)
2019	특수학교	2,447	55.7 (1,364)	2.6 (64)	41.6 (1,019)
	특수학급	3,952	43.2 (1,707)	18.2 (718)	38.6 (1,527)
	일반학급	1,328	55.8 (741)	5.2 (69)	39.0 (518)
	계	7,727	49.3 (3,812)	11.0 (851)	39.7 (3064)
2020	특수학교	2,386	57.3 (1,366)	6.3 (64)	36.4 (956)
	특수학급	3,796	44.9 (1,705)	34.2 (716)	20.9 (1,375)
	일반학급	1,157	57.4 (664)	13.2 (65)	29.4 (428)
	계	7,339	50.9 (3,735)	23.4 (845)	25.7 (2,759)

* 출처: 교육부(2017b, 2018b, 2019b, 2020). 2017~202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9.

그리고 20.9%(1,375명)는 무직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무직자의 비율은 특수학교, 일반학급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이다. 또 다른 통합과정인 일반학급 졸업자는 총 1,157명인데 그 중 57.4%(664명)가 상급학교 진학, 13.2%(65명)가 취업, 나머지 29.4%(428명)가 무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비통합과정에 비해

통합과정을 경험한 대상자의 경우 더 높은 비율이 진학 또는 취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통합교육의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2) 생존 및 발달

(1) 사망률

①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영아 사망률은 출생 후 27일 이내에 사망한 신생아 사망률과 28일 이후 365일 이내에 사망한 신생아 후기사망률로 구분되며 해당 연도에 출생한 인구수를 통해 산정한다. 2020년도 영아 사망률은 천 명당 2.5명(남아 2.8명/여아 2.2명)이었으며 그 중 신생아 사망률은 천 명당 1.3명(남아 1.4명/여아 1.1명), 신생아 후기사망률은 천 명당 1.2명(남아 1.4명/여아 1.0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6-4. 연도별 영아사망률(2015~2020년)

(단위 : 명/1,000명 당)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신생아 사망률	1.7	1.4	1.5	1.7	1.4	1.6	1.7	1.3	1.5	1.8	1.4	1.6	1.6	1.5	1.5	1.4	1.1	1.3
신생아 후기사망률	1.2	1.1	1.2	1.3	1.1	1.2	1.4	1.1	1.3	1.3	1.1	1.2	1.4	1.0	1.2	1.4	1.0	1.2
영아 사망률	2.9	2.5	2.7	3.1	2.6	2.8	3.1	2.5	2.8	3.2	2.5	2.8	3.0	2.4	2.7	2.8	2.2	2.5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영아사망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8&vw_cd=MT_ZTITLE&list_id=F_27&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2&path=%252Fcommon%252Fmeta_onedepth.jsp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 원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조사(국가승인통계 제101054호).

* 주: 1) 영아사망률: (당해연도 0세 사망아수/당해연도 연간출생아수)×1,000.

2) 통계청으로 통합된 이후 첫 조사(2012년 실시, 2009~2011년 대상) 이후 매년 작성

신생아 이후 연령대별 사망률은 다음과 같다. 2020년도의 사망률은 0세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24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4세는 12.5명, 5~9세 6.2명, 10~14세 8.8명, 15~19세 22.1명, 20~24세 34.2명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0세를 제외하고 20~24세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5~19세, 1~4세, 10~14세, 5~9세 순으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6-5.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2015~2020년)

(단위: 명/10만 명당 사망자 수)

연령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사망자 수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0세	1,190	281.9	1,154	282.1	1,000	270.5	931	280.7	822	268.3	674	240.6
1~4세	287	15.4	278	15.2	261	14.7	220	13.0	233	14.5	185	12.5
5~9세	207	8.9	205	8.7	210	8.9	177	7.6	178	7.7	142	6.2
10~14세	220	8.6	193	8.0	197	8.4	221	9.5	184	8.0	203	8.8
15~19세	685	20.9	718	22.5	626	20.6	620	21.6	610	22.4	563	22.1
20~24세	1,155	32.9	1,131	32.0	1,087	31.1	1,144	33.3	1,126	33.6	1,118	34.2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7&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 주: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

② 사고 사망률

사고에 의한 아동·청소년 사망률에 대한 통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 10만 명당 0세 20.0명, 1~4세 3.5명, 5~9세 2.4명, 10~14세 3.7명, 15~19세 15.6명, 20~24세 24.8명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 20~24세가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0세, 15~19세, 10~14세, 1~4세, 5~9세의 순으로 높은 사고 사망률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6-6. 사고 사망률(2013~2020년)

(단위 : 명/10만 명당)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세	13.8	12.4	14.0	15.2	14.9	12.7	16.6	20.0
1~4세	5.9	4.3	4.6	4.1	4.7	4.0	4.7	3.5
5~9세	4.4	3.7	3.1	2.7	3.3	2.4	2.9	2.4
10~14세	4.0	3.1	3.9	3.0	3.1	3.7	3.4	3.7
15~19세	15.3	17.9	13.2	14.5	13.1	13.9	14.4	15.6
20~24세	25.1	22.7	21.9	21.6	20.5	22.6	23.6	24.8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 주: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 / 사망원인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분류

사고 사망에 따른 외인을 조사한 결과, 0세의 경우 타살이 10만 명당 6.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9세의 경우 운수사고(0.7명)와 타살(0.6명)이 가장 많은 외인으로 작용하였다. 10세 이후의 연령대에서는 모두 자살이 가장 높은 사망 외인으로 조사되었는데, 세부적으로 10~14세는 2.1명, 15~19세 10.4명, 20~24세 19.6명으로 자살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연령에 따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10대 청소년들의 자살 예방을 위한 개입이 매우 시급한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6-7. 연도별 사고 사망의 외인(2013~2020년)

(단위 : 명/10만 명당)

구분	운수사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화재사고	중독사고	자살	타살
2016	0세	1.7	0.5	0.2	-	-	3.7
	1~4세	1.5	0.4	0.4	0.1	-	1.1
	5~9세	1.4	0.2	0.3	-	0.0	0.5
	10~14세	0.8	0.2	0.5	0.2	-	0.9
	15~19세	4.6	0.4	0.7	0.2	0.1	7.9
	20~24세	5.5	0.5	0.5	0.1	0.1	13.3
2017	0세	0.5	0.8	0.3	-	-	4.6
	1~4세	1.5	0.8	0.6	-	0.1	1.0
	5~9세	1.2	0.3	0.3	0.2	-	0.0
	10~14세	0.7	0.1	0.2	0.1	0.0	1.5
	15~19세	4.3	0.4	0.5	0.2	0.1	7.2
	20~24세	4.6	0.5	0.5	0.0	0.3	13.3

구분	운수사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화재사고	중독사고	자살	타살
2018	0세	0.3	0.9	0.3	-	-	2.7
	1~4세	0.9	1.1	0.4	-	0.1	0.9
	5~9세	1.0	0.2	0.2	0.2	0.1	0.0
	10~14세	0.6	0.1	0.2	0.1	0.0	2.1
	15~19세	3.6	0.2	0.5	0.1	0.2	8.7
	20~24세	4.5	0.4	0.4	0.2	0.3	15.3
2019	0세	1.0	1.0	0.7	-	-	4.9
	1~4세	1.2	0.6	0.6	0.1	-	1.0
	5~9세	0.9	0.3	0.3	0.0	0.0	0.1
	10~14세	0.4	0.3	0.3	-	-	2.1
	15~19세	3.0	0.4	0.6	0.1	0.1	8.5
	20~24세	3.9	0.3	0.2	0.1	0.2	17.8
2020	0세	0.4	1.4	0.4	-	-	6.1
	1~4세	0.6	0.9	0.5	0.3	0.1	0.7
	5~9세	0.7	0.3	0.2	0.3	-	0.1
	10~14세	0.2	0.3	0.2	0.2	0.1	2.1
	15~19세	3.7	0.2	0.5	0.0	0.1	10.4
	20~24세	3.0	0.3	0.4	-	0.1	19.6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질병이환 및 사망의 원인에서 2레벨 선택).

- * 주: 1)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2) 운수사고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사고를 의미하며, 육상, 수상, 항공의 교통 및 비교통사고(논발의 트랙터 사고 등)를 포함, 반면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사고를 의미
 3) 추락 사고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포함

(2) 안전에 대한 인식률

① 범죄 피해율

한 해 동안 아동·청소년들이 당하는 범죄피해를 강력범죄, 절도, 폭력범죄 등에 따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20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등록된 만 20세 이하의 전체 청소년 9,401,514명 중 1.0%인 94,371명이 각종 범죄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자 아동·청소년의 경우 총 8,847,451명 중 1.1%(53,491명)가, 여성 아동·청소년의 경우 4,554,063명 중 0.9%(40,880명)

가 범죄피해를 당하였다. 피해 받은 범죄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통화, 사기, 횡령 등의 지능범죄 피해자가 17,4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폭력범죄의 피해(13,481건)가 높게 나타났다. 남자 아동·청소년의 경우, 2019년까지 지능범죄 피해에 비해 폭력범죄 피해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었지만 2020년의 경우 지능범죄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의 감소와 지능범죄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었지만 지난해 폭력범죄의 감소폭과 지능범죄의 증가폭이 더욱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여자 아동·청소년의 경우 지능범죄 피해가 12,60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범죄(6,645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여자 아동·청소년의 경우 역시 폭력범죄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데, 2019년까지 폭력범죄 피해가 7천 건 중·후반대를 이어져 오다 2020년 6천 건 초반대의 수치로 큰 폭 하락하였는데 이 역시 비대면 상황의 결과로 보여진다.

표 III-6-8.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¹⁾(2017~2020년)

(단위 : 건, %)

구분	남자 아동·청소년		여자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전체		
	피해 건수	비율	피해 건수	비율	피해 건수	비율	
2017	강력범죄 ²⁾	627	8.0	7,237	92.0	7,864	100.0
	절도	10,532	72.1	4,277	27.9	14,609	100.0
	폭력범죄 ³⁾	18,691	71.0	7,607	29.0	26,244	100.0
	지능범죄 ⁴⁾	12,066	62.8	7,149	37.2	19,215	100.0
	풍속범죄	113	4.8	2,229	95.2	2,342	100.0
	교통범죄	13,643	68.8	6,198	31.2	19,841	100.0
	기타범죄	4,244	45.0	5,121	55.0	9,381	100.0
	계	59,916	60.1	39,818	39.9	99,496	100.0
	피해율	59,916/5,383,235(1.1)		39,818/5,027,343(0.8)		99,496/10,410,578(1.0)	
2018	강력범죄	643	9.1	6,422	90.9	7,065	100.0
	절도	8,772	70.6	3,650	29.4	12,422	100.0
	폭력범죄	17,310	69.4	7,640	30.6	24,950	100.0
	지능범죄	13,996	64.9	7,582	35.1	21,578	100.0
	풍속범죄	121	5.3	2,159	94.7	2,280	100.0
	교통범죄	11,733	66.1	6,016	33.9	17,749	100.0
	기타범죄	4,101	43.2	5,395	56.8	9,496	100.0
	계	56,676	59.3	38,864	40.7	95,540	100.0
	피해율	56,676/5,204,957(1.1)		38,864/4,868,419(0.8)		95,540/10,073,376(0.9)	

구분	남자 아동·청소년		여자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전체		
	피해 건수	비율	피해 건수	비율	피해 건수	비율	
2019	강력범죄	607	8.8	6,290	91.2	6,897	100.0
	절도	8,905	70.4	3,749	29.6	12,654	100.0
	폭력범죄	15,902	68.1	7,450	31.9	23,352	100.0
	지능범죄	15,554	63.8	8,828	36.2	24,382	100.0
	풍속범죄	124	5.1	2,299	94.9	2,422	100.0
	교통범죄	10,976	65.2	5,855	34.8	16,801	100.0
	기타범죄	4,864	44.8	5,993	55.2	10,857	100.0
	계	56,932	58.4	40,464	41.6	97,365	100.0
	피해율	56,932/5,029,754(1.1)		40,464/4,715,205(0.9)		97,365/9,744,959(1.0)	
2020	강력범죄	478	8.1	5,400	91.9	5,878	100.0
	절도	7,060	72.2	2,717	27.8	9,777	100.0
	폭력범죄	13,481	68.3	6,262	31.7	19,743	100.0
	지능범죄	17,428	58.0	12,609	42.0	30,037	100.0
	풍속범죄	141	5.1	2,619	94.9	2,760	100.0
	교통범죄	9,352	66.9	4,628	33.1	13,980	100.0
	기타범죄	5,551	45.5	6,645	54.5	12,196	100.0
	계	53,491	56.7	40,880	43.3	94,371	100.0
	피해율	53,491/4,847,451(1.1)		40,880/4,554,063(0.9)		94,371/9,401,514(1.0)	

* 출처: 경찰청(2017-2019). 2017-2019 경찰범죄통계.
 경찰청(2020). 경찰범죄통계, pp.466-467.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https://jumin.mois.go.kr/index.jsp#>에서 2021년 9월 12일 인출.

- * 주: 1) 피해율: 전체, 성별에 따른 전체 피해 건수/해당연도 만 20세 이하 인구*100
 (피해자 연령: 만 나이를 적용하여 산정)
 2) 강력범죄: 살인미·기수, 강도, 강간 등
 3) 폭력범죄: 상해, 폭행, 협박 등
 4) 지능범죄: 통화, 문서·인장, 사기, 횡령 등
 5) 전체인구: 2020년 20세 이하 청소년 총 9,401,514명(남:4847451/여:4554063)

② 지역사회 내 안전에 대한 인식률

응답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86.8%가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3.2%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 가족 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의 경우 평균 3.05로 남학생(평균 3.24)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있어서 중학생(평균 3.11)과 고등학생(평균 3.12)보다 초등학생(평균 3.21)이 더 안전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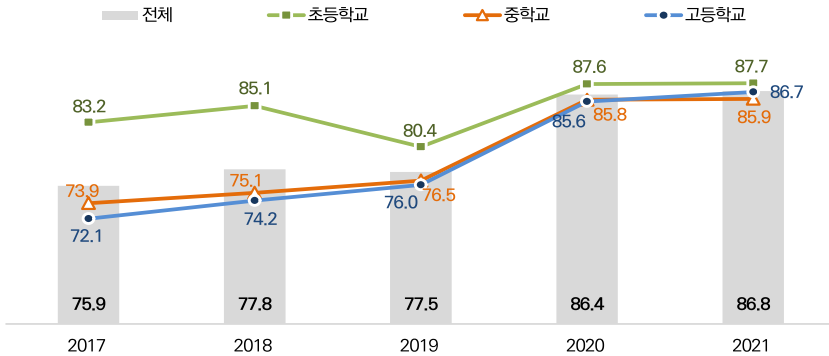
다. 지역 차의 경우 대도시와 읍면지역 보다는 중소도시 대상자가 조금 더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가족 유형에 있어서는 조손가정(평균 2.87)이 한부모가정(평균 2.98) 보다,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평균 3.16)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6-9.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15(0.72)	3.5	9.7	55.6	31.2	100.0(8,693)		
성별	남학생	3.24(0.73)	3.7	7.0	50.0	39.3	100.0(4,504)	318.516***
	여학생	3.05(0.68)	3.3	12.6	61.6	22.5	100.0(4,190)	
학교급	초등학교	3.21(0.75)	4.0	8.2	48.6	39.1	100.0(2,917)	142.736***
	중학교	3.11(0.69)	3.2	11.0	59.1	26.8	100.0(2,872)	
	고등학교	3.12(0.70)	3.4	10.0	59.1	27.6	100.0(2,904)	
지역 규모	대도시	3.16(0.72)	3.1	9.5	53.8	33.6	100.0(3,314)	17.719**
	중소도시	3.13(0.72)	3.7	9.9	57.1	29.4	100.0(4,361)	
	읍면지역	3.15(0.68)	4.0	10.0	54.9	31.1	100.0(1,01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6(0.70)	3.3	9.3	55.6	31.8	100.0(7,756)	53.575***
	한부모가정	2.98(0.78)	4.8	13.7	58.0	23.6	100.0(664)	
	조손가정	2.87(0.83)	1.3	16.9	50.3	31.5	100.0(88)	
	기타	3.18(0.87)	10.1	10.1	51.4	28.4	100.0(133)	
경제적 수준	상	3.22(0.71)	3.1	7.7	52.1	37.1	100.0(4,981)	287.027***
	중	3.07(0.68)	3.9	10.6	60.8	24.7	100.0(2,955)	
	하	2.93(0.80)	4.4	20.5	58.6	16.5	100.0(715)	

** $p < .01$, *** $p < .001$.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안전하다고 느끼는 중,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간의 차이는 지속적으로 좁혀져 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Ⅲ-6-1.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연도별 추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자의 78.7%는 안전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나머지 21.3%는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평균 3.01)의 경우 여학생(평균 2.89)에 비해 안전하다고 응답하였다. 중학생(평균 2.90)은 고등학생(평균 2.96)과 초등학생(평균 2.99)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며 한부모가정(평균 2.89)은 양부모가정(평균 2.96)과 조손가정(평균 2.98)에 비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도 “상”(평균 3.02)에서 “하”(평균 2.71)로 갈수록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6-10.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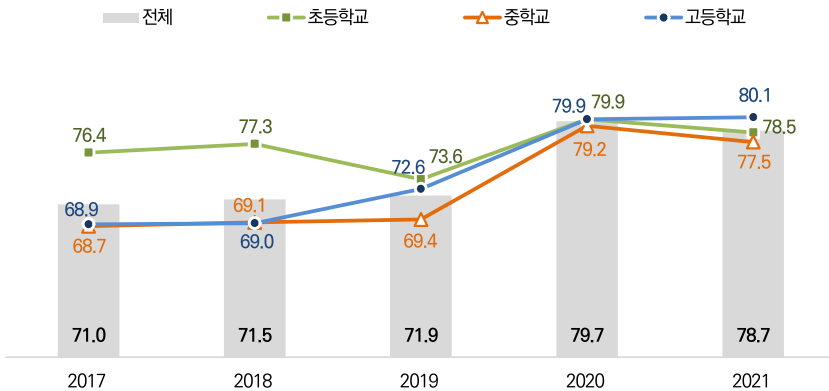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5(0.73)	3.9	17.4	58.3	20.4	100.0(8,642)	148.591***	
성별	남학생	3.01(0.76)	4.4	15.2	55.3	25.1		100.0(4,478)
	여학생	2.89(0.69)	3.4	19.7	61.6	15.3		100.0(4,164)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학교급	초등학교	2.99(0.78)	4.8	16.7	53.7	24.8	100.0(2,884)	78.486***
	중학교	2.90(0.70)	3.7	18.9	60.9	16.6	100.0(2,862)	
	고등학교	2.96(0.70)	3.4	16.5	60.4	19.7	100.0(2,896)	
지역 규모	대도시	2.97(0.72)	3.8	16.3	58.7	21.2	100.0(3,296)	10.540
	중소도시	2.94(0.73)	3.8	18.2	58.2	19.8	100.0(4,334)	
	읍면지역	2.93(0.76)	5.2	17.2	57.4	20.2	100.0(1,01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6(0.72)	3.7	17.1	58.7	20.5	100.0(7,716)	41.449***
	한부모가정	2.89(0.74)	4.3	20.5	57.4	17.8	100.0(655)	
	조손가정	2.98(0.82)	3.3	24.5	43.1	29.1	100.0(88)	
	기타	2.79(0.90)	11.9	17.3	50.4	20.4	100.0(131)	
경제적 수준	상	3.02(0.74)	3.7	15.1	56.8	24.4	100.0(4,953)	185.037***
	중	2.89(0.71)	4.1	18.4	61.4	16.0	100.0(2,939)	
	하	2.71(0.71)	5.0	29.0	56.0	10.0	100.0(709)	

*** $p < .001$.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연도별 추이로 살펴본 결과, 2017년에 비하여 안전하다는 인식이 모든 교급에서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전년 대비, 고등학생의 인식은 유사하게 이어졌지만, 초등학교생과 중학생의 경우 안전하다는 인식이 소폭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II-6-2.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연도별 추이)

3) 보건서비스

(1)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① 보건교사 배치현황

현재까지 보건교사는 모든 학교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20년 전체 개설 학교 수는 11,892개교이며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8,381개교로서 배치율은 70.5%이다. 교급별로 특수학교 배치율이 80.2%로 가장 높으며 초등학교가 74.5%, 고등학교 71.9%이며 중학교는 가장 낮은 61.2%의 배치율을 보인다. 2021년 12월부터 36학급 이상으로 구성된 학교는 2인의 보건교사를 배치할 예정이 있으나 현재까지 1인의 보건교사도 배치되지 않은 학교와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6-11. 보건교사 배치현황(2018~2020년)

(단위 : 개교,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2018	학교 수	6,064	3,214	2,358	175	11,811
	교사 수 (배치율)	4,343 (71.6)	1,770 (55.0)	1,683 (71.3)	140 (80.0)	7,936 (67.1)
2019	학교 수	6,087	3,214	2,356	177	11,657
	교사 수 (배치율)	4,470 (73.4)	1,859 (57.8)	1,706 (72.4)	143 (80.8)	8,035 (69.1)
2020	학교 수	6,120	3,223	2,367	182	11,892
	교사 수 (배치율)	4,562 (74.5)	1,972 (61.2)	1,701 (71.9)	146 (80.2)	8,381 (70.5)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0b). 2020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각 학교급별 직위별 교원수(2)에서 발췌.

표 III-6-12.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율(2013~2020년)

(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보건교사 배치율	64.9	65.4	63.9	64.3	64.5	67.1	69.1	70.5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0b). 2020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② 어린이전문 의료기관(어린이 전문병원) 설치 현황

아동·청소년에게 특화된 보건서비스를 제공, 지원하는 기관의 유형은 크게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 달빛어린이병원이 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에 따라 수익성이 낮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국민 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지역별 공급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진료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보건복지부, 2021a). 현재 2기 사업이 진행 중이며 전국 10개소의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운영 중이다.

소아 전문응급실이 운영되고 있으면서, 소아 연령에 특정 된 의료장비를 갖추고, 소아응급 전문의사가 상주하여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등 총 8곳이 운영 중이며 현재 3곳이 추가적으로 선정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야간시간 경증 소아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24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야간·휴일 진료기관으로서 2014년 8개의 병원으로 시작하여 현재 27개소가 설치 운영 중이다(보건복지부, 2014).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2021년 1호 건립을 시작으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d). 장애아동이 거주지역 안에서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사업은 집중재활치료와 의료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서비스이다(보건복지부, 2018d).

표 III-6-13.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의료기관 유형	운영 현황	개소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	서울(4), 대전(1), 대구(1), 광주(1), 강원(1), 전북(1), 경남(1)	10
소아전문 응급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 : 서울(2), 인천(1), 경기(1), 충남(1) 소아응급실 : 서울(1), 울산(1), 경기(1) 선정과정 진행중 : 세종(1), 충북(1), 전북(1)	8(3)

의료기관 유형	운영 현황	개소
달빛 어린이병원	서울(4), 경기(6), 인천(1), 대전(2), 부산(3), 대구(2), 강원(1), 충남(1), 충북(2), 전북(2), 경남(3), 경남(3), 제주(2)	27

* 출처: 보건복지부(2021a).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계획서. p.9.
 보건복지부 (2021g). 내부자료: 소아전문응급실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현황.
 달빛 어린이병원 홈페이지. <https://www.e-gen.or.kr/moonlight/main.do;jsessionid=E637543A5301B29307DE6C3234DB57F8.egenlb?infoDiv=03>에서 2021년 10월 12일 인출.

③ 정신보건 및 심리상담 기관 현황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Wee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29조에 의거하여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데 시·군·구 상담복지센터와 시·도 상담복지센터의 연계 속에서 청소년 상담전화(1388),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운영, 청소년 동반자,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 또래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여성가족부, 2020a).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통합적이면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 공공정신건강 기관이다(보건복지부, 2021h). 따라서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중독관리 체계 구축, 재활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보건복지부, 2021h). 교육부 사업인 Wee프로젝트는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이 연계하여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등의 운영을 통해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안전망 사업이다(Wee 웹사이트, 2021.9.12. 인출).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시·도 센터 17개소, 시·군·구 센터 219개소로 총 236개소가 설치 및 운영되어 93.5%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설치율은 지역에 따라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대전(50.0%)과 강원(68.4%) 지역의 경우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인천(81.8%),

울산(83.3%) 등의 지역도 센터 증설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6-14.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도	1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사·군·구	219	24	15	8	9	5	2	5	-	32	12	12	15	14	22	21	21	2
계	236	25	16	9	10	6	3	6	1	33	13	13	16	15	23	22	22	3
설치율	93.5	96.2	94.1	100	81.8	100	50.0	83.3	100	100	68.4	100	100	100	100	91.7	100	100

* 출처: 여성가족부(2020a). 2020 청소년백서. p.238.

나. Wee프로젝트 운영 현황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위기학생 안전망인 Wee프로젝트의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Wee클래스는 2020년 기준 7,63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Wee센터는 일반형의 경우 204개소가 운영 중이다. Wee스쿨 15개교까지 전체적으로 총 7,879개소의 Wee프로젝트가 운영 중이며 일반형 Wee센터를 제외하고 증설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III-6-15. (연도별) Wee센터 및 Wee클래스, Wee스쿨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Wee클래스	6,382	6,624	6,965	7,230	7,631	
Wee센터	일반형	204	215	215	218	204
	가정형	12	15	19	19	19
	병원형	5	5	5	9	10
Wee스쿨	11	13	13	14	15	
계	6,614	6,872	7,217	7,490	7,879	

* 출처: Wee 웹사이트. https://www.wee.go.kr/home/cms/cmsCont.do?cntnts_sn=22에서 2021년 9월 12일 인출.

다.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기관은 아니지만, 대상 보다는 증상에 초점을 맞춘 기관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역사회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기 자살과 도박중독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기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광역단위 16개소, 기초단위 241개소, 기본단위 2개소로 총 259개소의 센터가 17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자살예방센터는 서울 2개소, 인천과 충남 1개소, 경기 3개소 총 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세종을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에 49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자살 현황을 고려했을 때 자살예방센터의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6-16.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정신 건강	광역	16	1	1	1	1	1	1	0	1	1	1	1	1	1	1	1	1	
	기초	241	25	16	8	10	5	5	5	1	37	18	14	16	14	21	24	20	2
	기본	2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계	259	26	17	9	11	6	6	6	1	38	19	15	17	15	23	26	21	3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살 예방센터	7	2	0	0	1	0	0	0	0	3	0	0	1	0	0	0	0	0	
중독관리 통합지원	49	3	3	2	5	5	3	2	0	7	3	1	2	2	2	2	5	2	

* 출처: 통계청(KOSIS). 정신건강 관련 기관 설치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920023_A001&conn_path=l2에서 2021년 10월 12일 인출.

* 주: '기본'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는 보건소를 의미.

(2)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률

①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필요할 시 급여를 통해 의료시설 및 의료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 급여로 나뉘며 급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2019년 전체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총 208,316명인데 종별로 1종 대상자 95,653명, 2종 대상자 112,663명으로 2종 대상자가 더 많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 105,666명, 여성 102,650명이고 연령별로는 15~19세 대상자가 89,6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이 어릴수록 대상자 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6-17. 의료급여 대상 아동·청소년 현황(2018~2019년)

(단위 : 명)

구분		0세	1~4세	5~9세	10~14세	15~19세	합계	
2018	전체	계	2,886	20,206	43,927	60,811	101,152	228,982
		남	1,482	10,191	22,319	30,962	51,227	116,181
		여	1,404	10,015	21,608	29,849	49,925	112,801
	1종	계	2,145	11,477	21,534	27,519	40,026	102,701
		남	1,122	5,784	10,745	13,986	20,732	52,369
		여	1,023	5,693	10,789	13,533	19,294	50,332
2종	계	741	8,729	22,393	33,292	61,126	126,281	
	남	360	4,407	11,574	16,976	30,495	63,812	
	여	381	4,322	10,819	16,316	30,631	62,469	
2019	전체	계	2,458	18,156	41,556	56,468	89,678	208,316
		남	1,259	9,140	21,111	28,756	45,400	105,666
		여	1,199	9,016	20,445	27,712	44,278	102,650
	1종	계	1,834	10,448	20,856	26,546	35,969	95,653
		남	943	5,207	10,489	13,404	18,519	48,562
		여	891	5,241	10,367	13,142	17,450	47,091
2종	계	624	7,708	20,700	29,922	53,709	112,663	
	남	316	3,933	10,622	15,352	26,881	57,104	
	여	308	3,775	10,078	14,570	26,828	55,559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 2018 의료급여통계. pp.20-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0). 2019 의료급여통계. pp.20-25.

의료서비스 또는 의료시설 이용이 필요했지만 제공받거나 이용하지 못한 병의원 미치료율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1.8%인 1,391명이 미치료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최근 6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연령별로 15~18세가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치료 경험 응답자의 소득수준을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이 하, 중하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만을 두고 소득이 낮을수록 미치료율이 낮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표 III-6-18. 아동·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2014~2019년)

(단위 : 명, %)

구분		연령					소득수준			
		전체	1~5세	6~11세	12~14세	15~18세	하	중하	중상	상
2014	N	1,458	462	507	222	267	354	367	369	360
	분율 (표준오차)	4.7 (0.7)	1.0 (0.6)	2.8 (0.9)	7.9 (1.8)	8.3 (1.9)	5.2 (1.7)	4.7 (1.3)	5.9 (1.5)	2.4 (0.9)
2015	N	1,333	348	456	240	289	326	341	333	326
	분율 (표준오차)	3.9 (0.7)	1.7 (0.8)	3.4 (1.0)	4.3 (1.8)	6.5 (1.6)	5.0 (1.5)	4.0 (1.2)	3.2 (1.2)	3.7 (1.2)
2016	N	1,667	522	593	254	298	402	423	416	420
	분율 (표준오차)	4.0 (0.6)	1.5 (0.6)	2.8 (0.8)	6.4 (1.7)	6.3 (1.6)	5.4 (1.5)	3.9 (1.0)	2.6 (0.9)	4.2 (1.4)
2017	N	1,507	429	559	232	287	295	308	305	297
	분율 (표준오차)	2.6 (0.5)	2.7 (1.0)	0.3 (0.1)	3.1 (1.1)	5.0 (1.5)	3.5 (1.3)	2.5 (1.2)	2.6 (1.0)	1.1 (0.8)
2018	N	1,371	414	511	206	240	267	289	271	276
	분율 (표준오차)	3.1 (0.6)	1.7 (0.7)	2.3 (0.9)	3.4 (1.4)	5.5 (1.6)	1.4 (0.8)	3.1 (1.1)	3.5 (1.3)	4.5 (1.7)
2019	N	1,391	355	566	216	254	270	289	281	266
	분율 (표준오차)	1.8 (0.5)	0.1 (0.1)	0.9 (0.4)	2.1 (0.9)	4.6 (1.8)	1.7 (0.7)	3.2 (1.3)	0.7 (0.5)	0.4 (0.3)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2017). 2014~2016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2020). 2017~2019 국민건강통계. (엑셀버전 표번호 7-1. 소아청소년 연간미치료율)

- * 주: 1) 소아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차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
3) 변동계수: *는 25~50%, **는 50% 이상.

그러나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류정희 외, 2019)의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2.4%가 미충족 의료욕구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중 14.6%는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세가 경미한 이유(50.2%), 시간이 없어서(17.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사유이다. 따라서 소득수준과 의료욕구 미충족 간에는 일정부분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치과 서비스 미치료율의 경우 병의원 미치료율과 마찬가지로 최근 1년간 치과 관련 진료, 서비스가 필요했지만 이용하지 못한 분율을 의미한다. 2019년 치과 미치료율은 9.3%로 병의원 미치료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역시 15~19세의 미치료율이 13.7%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이 “하”인 경우가 16.9%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미치료율 역시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통해 그 개연성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아동종합실태(류정희 외, 2019)의 결과를 참고하자면, 전체 대상자의 1.7%가 치과 미치료 경험이 있으며 그 중 23.3%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받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치과치료의 경우 일반 외래 진료에 비하여 비용이 높은 치료가 많아 경제적인 이유가 더욱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6-19.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2014~2019년)

(단위 : 명, %)

구분		연령					소득수준			
		전체	1~5세	6~11세	12~14세	15~18세	하	중하	중상	상
2014	N	1,458	462	507	224	265	353	367	371	359
	분율	11.8	7.3	9.2	8.5	21.3	15.2	12.3	5.7	13.2
	(표준오차)	(1.1)	(1.4)	(1.8)	(2.1)	(2.9)	(2.3)	(1.9)	(1.5)	(2.5)
2015	N	1,332	347	456	240	289	325	341	333	326
	분율	10.9	6.1	11.0	6.2	18.3	15.3	12.0	6.3	10.0
	(표준오차)	(1.0)	(1.5)	(1.9)	(1.7)	(2.4)	(2.6)	(1.9)	(1.4)	(2.0)
2016	N	1666	522	592	254	298	401	424	415	420
	분율	7.7	8.3	5.8	6.9	9.7	11.0	6.8	6.9	5.8
	(표준오차)	(0.8)	(1.3)	(1.2)	(1.9)	(1.9)	(2.1)	(1.6)	(1.5)	(1.2)

구분		연령					소득수준			
		전체	1~5세	6~11세	12~14세	15~18세	하	중하	중상	상
2017	N	1,509	430	560	232	287	295	308	305	297
	분율 (표준오차)	7.8 (0.9)	7.8 (1.6)	6.0 (1.2)	5.3 (1.8)	11.1 (2.2)	13.2 (2.6)	6.8 (1.5)	7.3 (1.6)	6.2 (2.2)
2018	N	1,104	291	473	161	179	214	234	214	215
	분율 (표준오차)	9.4 (1.3)	9.4 (2.0)	5.4 (1.4)	11.1 (2.5)	15.0 (3.1)	13.2 (2.3)	10.1 (2.6)	9.2 (2.5)	8.7 (2.5)
2019	N	1,089	259	511	156	163	202	223	237	216
	분율 (표준오차)	9.3 (1.0)	10.8 (2.2)	7.1 (1.5)	7.1 (2.0)	13.7 (2.8)	16.9 (3.3)	8.9 (2.1)	6.2 (1.9)	5.9 (1.8)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2017). 2014-2015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2020). 2017-2019 국민건강통계. (엑셀버전 표번호 7-1. 소아청소년 연간미충족의료율)

- * 주: 1) 소아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치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
 3) 변동계수: *는 25-50%, **는 50% 이상.

(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① 흡연율

제16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은 유독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흡연율의 경우 2019년 6.7%였으나 2020년에는 4.4%로 낮아졌으며 10년 전인 2010년 12.1%에 비하면 더욱 큰 차이를 보인다. 흡연율이 감소한 추세는 모든 학교급과 학년에서 나타났는데 중학교 2학년의 경우 2배가 넘는 감소 폭을 보였다.

한편 이러한 감소세에는 COVID-19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비등교일의 증가하고 그에 따라 또래와의 접촉과 모임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흡연의 기회가 감소했을 수 있다.

표 III-6-20. 흡연을 추이(2009~2020년)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09	12.8	8.3	17.5	4.7	8.7	11.3	16.0	17.9	18.6
2010	12.1	8.0	16.2	4.9	8.7	10.4	14.8	15.6	18.1
2011	12.1	8.1	16.1	4.4	8.7	10.9	15.5	16.1	16.9
2012	11.4	7.2	15.4	3.6	6.9	10.9	14.0	15.9	16.3
2013	9.7	5.5	13.8	2.3	5.5	8.6	12.1	14.3	15.0
2014	9.2	4.7	13.5	1.7	4.1	7.9	11.3	13.5	15.7
2015	7.8	3.3	11.7	0.9	3.2	5.3	9.1	11.9	14.0
2016	6.3	2.5	9.5	0.8	2.3	4.2	7.1	9.4	12.0
2017	6.4	3.0	9.2	0.7	3.2	4.9	7.0	9.7	10.9
2018	6.7	3.0	9.8	0.8	3.2	4.9	7.7	9.4	12.0
2019	6.7	3.2	9.9	1.0	3.5	5.0	8.3	10.0	11.4
2020	4.4	1.7	7.1	0.7	1.6	3.0	4.8	7.2	9.2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2019). 제12-15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20). 제16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p.38-39.

* 주: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

② 음주율

중, 고등학생들의 음주율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2019년 15.0%에서 2020년 10.7%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의 감소율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1과 고2의 경우 각각 6.2%p, 7.0%p 감소하여 타 학교급과 학년에 비해 높은 감소세를 보였다. 음주율의 감소 역시 COVID-19의 영향력으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나 학교 및 지역사회의 대응을 통해 이러한 감소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예방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표 III-6-21. 음주율 추이(2009~2020년)

(단위: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09	21.1	13.3	29.1	9.5	13.4	16.8	24.6	31.1	31.8
2010	21.1	13.3	28.9	9.6	12.8	17.3	24.4	30.2	32.1
2011	20.6	12.0	29.0	8.3	11.8	15.6	24.3	30.6	32.3
2012	19.4	10.3	28.2	6.6	9.8	14.3	22.4	30.0	32.2
2013	16.3	8.3	23.8	5.4	7.8	11.7	17.6	26.5	27.3
2014	16.4	8.3	24.6	4.9	7.5	12.2	18.2	25.6	29.8
2015	16.7	7.4	24.9	4.6	7.1	10.0	17.6	27.5	29.5
2016	15.0	6.5	21.9	3.7	5.9	9.6	16.6	22.4	26.9
2017	16.1	7.6	23.0	4.2	7.7	11.0	16.5	25.1	26.9
2018	16.9	8.5	24.2	4.1	8.1	12.8	18.1	24.7	28.6
2019	15.0	7.6	21.8	3.9	7.4	11.2	17.1	22.8	25.3
2020	10.7	5.4	15.9	3.7	4.9	7.8	10.9	15.8	20.9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2019). 제12~15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20). 제16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87.

* 주: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③ 기타 약물 사용률

부탄가스과 본드, 각성제 등 다양한 불법 약물을 습관적으로 사용한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 2020년에는 전체적으로 0.8%의 경험률을 보여 조사가 진행된 이후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0.8%, 여학생 0.7%로 모두 전년 대비 0.2~0.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음주와 다르게 그 위험성과 중독성이 매우 큰 약물이기에 낮은 비율의 경험률이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표 III-6-22. 평생 약물 경험률(2016~2020년)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남학생	0.5	0.8	0.6	0.5	0.8
여학생	0.3	0.4	0.4	0.5	0.7
전 체	0.5	0.6	0.5	0.5	0.8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2019). 제12~15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20). 제16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 주: 1) 평생 기분의 변화나 환각 등의 경험, 과도한 살 빼기 등을 목적으로 부탄가스, 본드를 비롯하여, 각성제, 히로뵘, 암페타민, 마약, 많은 양의 기침·가래약, 신경안정제 등을 먹거나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2) 20년 조사부터 '평생 약물사용 경험' 문항을 '습관적 약물사용 경험'으로 변경.

④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률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통해 연간 흡연 예방 교육 경험률을 파악하고 있는데, 본 지표에 대한 조사 주기가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8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예방교육의 경험률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예방교육 경험률은 완만하게 향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점차 약물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전체 대상자의 예방교육 경험률은 72.5%로 전년 대비 1.8%p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6-23.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2010~2018년)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0	56.2	64.8	47.6	67.7	64.4	62.3	56.5	51.0	35.2
2011	54.1	62.6	45.7	64.0	63.2	60.6	54.0	48.4	34.3
2012	61.4	68.3	54.8	67.5	68.9	68.5	59.8	59.2	45.3
2013	61.9	68.7	55.4	67.4	70.0	68.8	60.1	59.2	47.1
2014	57.5	63.5	51.9	63.3	64.0	63.3	55.5	55.1	45.2
2015	59.6	65.7	54.2	64.0	67.5	65.5	57.6	59.8	45.5
2016	65.3	71.4	60.2	72.5	71.4	70.5	64.6	64.5	51.5
2017	70.7	77.2	65.4	77.8	78.0	75.7	67.5	70.0	58.8
2018	72.5	79.1	66.7	80.5	79.6	77.3	70.6	70.3	60.4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72.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75.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71.

* 주: 1)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3)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의 출처인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본 지표에 대한 조사를 3년 주기로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7차 조사에 신규년도 조사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임. 올해는 2018년 결과로 대체함.

흡연예방교육과 함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조사주기 변경으로 인해 2018년도 자료를 통하여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을 살펴보면, 흡연예방교육 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전체적으로 교육 경험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대상자의 경험률은 42.0%로 전년 대비 0.8%p 상승하였으며 중학교 1학년의 경험률이

51.4%로 가장 높으며 고등학교 3학년의 경험률이 29.2%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모든 교급과 학년에서 50% 미만의 경험률이 응답되었는데, 흡연예방교육과 함께 음주예방교육을 약물교육으로 통합하여 진행한다면 음주예방교육의 경험률 역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진다.

표 III-6-24.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2010~2018년)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0	36.3	46.6	26.1	53.5	45.8	40.7	33.2	28.5	16.5
2011	35.2	46.0	24.5	50.2	47.3	40.7	30.7	25.7	17.0
2012	34.3	44.3	24.6	47.1	44.6	41.6	29.9	25.9	18.1
2013	38.0	49.2	27.2	51.0	51.3	45.5	33.4	28.9	19.4
2014	33.1	42.0	24.8	45.5	41.5	39.5	30.6	25.3	18.8
2015	34.6	42.8	27.3	45.5	44.4	39.4	32.9	29.7	19.7
2016	38.8	46.8	32.2	49.3	47.4	44.1	36.5	35.3	24.7
2017	41.2	49.3	34.5	50.5	50.1	47.2	37.8	37.7	28.3
2018	42.0	48.8	36.1	51.4	48.3	46.9	41.0	39.4	29.2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124.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135.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125.

- * 주: 1)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술(알코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2)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의 출처인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본 지표에 대한 조사를 3년 주기로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7차 조사에 신규년도 조사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임. 올해는 2018년 결과로 대체함.

4) 신체적, 정서적 건강 증진

(1) 신체적 건강

① 주관적 건강평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건강한 편에 속한다는 응답은 86.5%인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응답 평균은 3.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학교급, 가족 유형, 경제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급에 있어서 초등학교(평균 3.30), 중학교(평균 3.12), 고등학교(평균 3.07) 순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 유형의 경우 양부모가정(평균 3.17)과 조손가정(평균 3.21)에 비해 한부모가정(평균 3.00)은 상대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했으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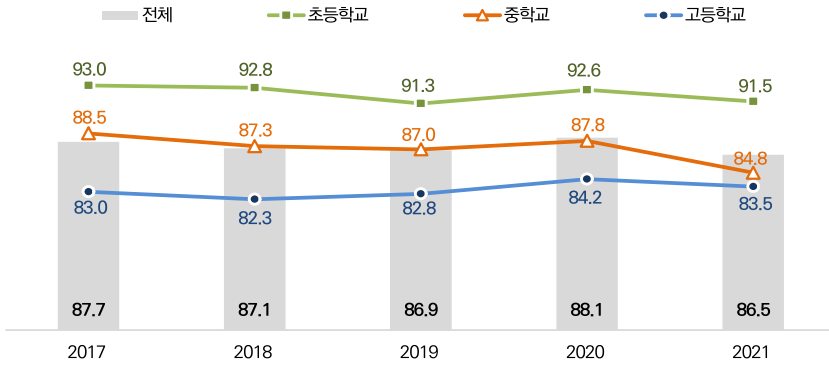
표 III-6-25.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전체(N)	χ^2	
전체	3.16(0.66)	0.9	12.5	55.9	30.6	100.0(8,692)	47.172***	
성별								
	남학생	3.19(0.69)	1.2	12.3	53.0	33.5	100.0(4,501)	215.615***
	여학생	3.13(0.64)	0.6	12.7	59.1	27.5	100.0(4,191)	
학교급	초등학교	3.30(0.64)	0.8	7.8	52.0	39.5	100.0(2,918)	215.615***
	중학교	3.12(0.67)	1.0	14.3	56.6	28.2	100.0(2,871)	
	고등학교	3.07(0.66)	1.0	15.5	59.3	24.2	100.0(2,90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7(0.66)	0.9	11.9	55.9	31.2	100.0(7,757)	52.762***
	한부모가정	3.00(0.66)	1.0	19.0	58.9	21.1	100.0(661)	
	조손가정	3.21(0.67)	0.0	13.8	50.9	35.3	100.0(87)	
	기타	3.25(0.68)	0.2	12.6	48.8	38.3	100.0(134)	
경제적 수준	상	3.27(0.65)	0.7	8.9	53.3	37.1	100.0(4,982)	394.449***
	중	3.07(0.65)	0.9	15.2	60.2	23.7	100.0(2,955)	
	하	2.83(0.69)	2.5	26.3	57.2	14.1	100.0(713)	

*** $p < .001$.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결과를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증감폭이 크지 않지만 중학생의 경우 2020년에 비하여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화되는 COVID-19의 여파로 인해 부족해진 활동량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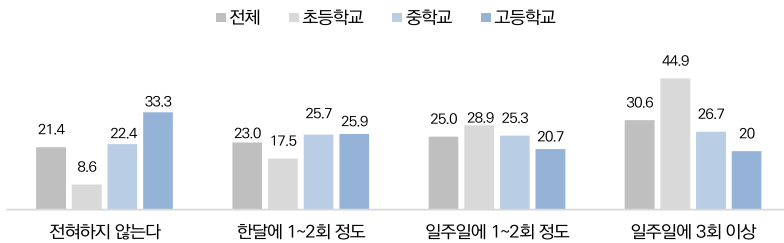


* 주: '건강한 편이다'와 '매우 건강하다'의 합계(단위: %)

그림 III-6-3.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연도별 추이)

② 운동 실천율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천하는 운동 여부와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급에 상관없이 주 3회 이상 운동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0.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 1~2회 정도가 25.0%, 월 1~2회 23.0%로 나타났으며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도 21.4%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주 3회 이상 운동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44.9%로 다른 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운동 실천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 단위: %

그림 III-6-4.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학교급별)

위에서 확인한 결과는 성별, 학교급, 고교유형 등 다양한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주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학생의 경우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학교급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운동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고교유형에 있어서 일반계고 보다는 특성화계고 응답자의 운동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업성적의 경우에는 성적이 좋을수록 운동량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조손가정의 응답자가 다른 가정에 비해 운동량이 월등히 많았으며 경제적 수준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좋다고 응답한 대상자일수록 운동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급의 경우 교과과정 중 체육활동 여부와 횟수가 차이를 가져왔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급이 올라갈수록 체육보다는 교과수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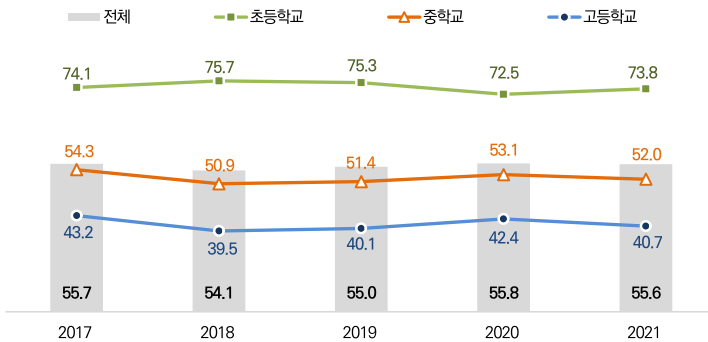
표 III-6-26.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한 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21.4	23.0	25.0	30.6	100.0(8,688)	462.183***
성별	남학생	16.1	18.6	25.5	39.8	100.0(4,498)	
	여학생	27.1	27.8	24.4	20.7	100.0(4,191)	
학교급	초등학교	8.6	17.5	28.9	44.9	100.0(2,913)	828.295***
	중학교	22.4	25.7	25.3	26.7	100.0(2,872)	
	고등학교	33.3	25.9	20.7	20.0	100.0(2,903)	
고교 유형	일반계고	34.0	25.7	21.5	18.8	100.0(2,314)	14.005**
	특성화계고	30.7	26.8	17.6	24.9	100.0(58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1.1	23.0	25.2	30.7	100.0(7,753)	36.205***
	한부모가정	28.3	23.9	22.3	25.6	100.0(662)	
	조손가정	14.2	15.5	26.9	43.3	100.0(88)	
	기타	16.1	28.1	21.5	34.3	100.0(134)	
학업 성적	상	16.6	20.2	28.2	35.0	100.0(3,041)	171.256***
	중	21.4	24.6	24.3	29.7	100.0(3,691)	
	하	29.3	24.6	20.9	25.1	100.0(1,914)	
경제적 수준	상	17.2	21.1	27.3	34.4	100.0(4,982)	208.117***
	중	26.4	25.7	22.1	25.8	100.0(2,953)	
	하	30.5	26.0	20.2	23.2	100.0(713)	

** $p < .01$, *** $p < .001$.

응답문항 중 '전혀 하지 않는다'와 '한 달에 1~2회 정도'를 제외하고 일주일에 1~2회 이상 운동을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이용하여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중, 고등학생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2021년에는 73.8%의 학생들이 주 1~2회 이상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월 1~2회를 포함했을 때보다 수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였는데, 중학생의 경우 52.0%, 고등학생은 40.7%의 수치를 보였다. 연도에 따라서는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 '전혀 하지 않는다'와 '한 달에 1~2회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II-6-5.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연도별 추이)

③ 수면시간과 수면 부족 이유

조사 대상자들의 수면시간에 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평균 7.2시간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시간 이상~9시간 미만 수면하는 응답자가 20.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7시간 이상~8시간 미만이 19.0%, 9시간 이상이 18.0%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6시간 이상~7시간 미만 17.9%, 5시간 이상~6시간 미만 15.1%로 나타났으며 5시간 미만 수면하는 대상자가 9.5%로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학교급, 교고유형, 학업성적에 있어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하여 수면

시간이 적었으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수면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계고에 비해 일반계고의 수면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학업성적의 경우 성적이 상위권일수록 수면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후 제시되는 수면부족의 이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적이 하위권일수록 웹서핑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인해 수면부족을 느끼는 비중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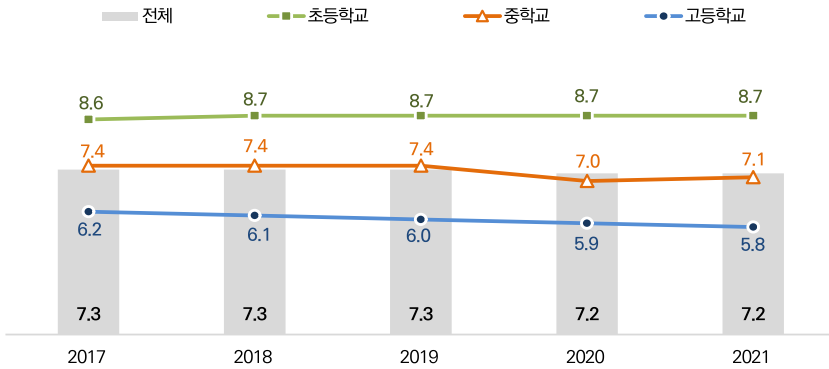
표 III-6-27. 수면 시간

(단위 : %(명))

구분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7시간 이상 -	8시간 이상 -	9시간 이상	평균	전체(N)	χ^2	
		6시간 미만	7시간 미만	8시간 미만	9시간 미만					
전체	9.6	15.1	17.9	19.0	20.3	18.0	7.2	100.0(8,425)	428.888***	
성별										
	남학생	7.3	13.5	17.8	19.4	22.1	19.8	7.3	100.0(4,369)	
	여학생	12.2	16.9	18.0	18.6	18.3	16.0	7.0	100.0(4,057)	
학교급	초등학교	0.7	1.8	4.3	14.0	33.5	45.7	8.7	100.0(2,833)	5,486.631***
	중학교	6.2	12.2	22.1	30.0	22.6	6.8	7.1	100.0(2,776)	
	고등학교	22.0	31.5	27.4	13.2	4.7	1.2	5.8	100.0(2,817)	
고교 유형	일반계고	23.4	34.6	26.7	11.1	3.4	0.8	5.7	100.0(2,242)	295.689***
	특성화계고	16.6	19.1	30.1	21.5	9.8	2.9	6.3	100.0(575)	
학업 성적	상	5.7	12.0	15.1	18.5	24.1	24.5	7.6	100.0(2,991)	1,168.589***
	중	9.4	14.9	17.9	19.3	20.3	18.3	7.2	100.0(3,567)	
	하	16.8	20.9	22.7	19.4	13.8	6.4	6.4	100.0(1,829)	

*** $p < .001$.

앞서 조사된 수면시간의 결과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수면시간이 짧았으며 이러한 추세는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해 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주: 수면시간 평균값(단위: 시간)

그림 III-6-6. 수면 시간(연도별 추이)

조사된 수면시간을 바탕으로 응답자가 체감하는 수면부족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자의 52.4%가 수면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학생의 경우 수면시간이 부족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많았지만, 여학생의 경우는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다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서는 수면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교유형의 경우 일반계고 응답자가 특성화계고 응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는데 67.6%라는 비율은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수치이다. 학업성적에 있어서는 성적이 상위권일수록 수면부족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6-28. 수면 부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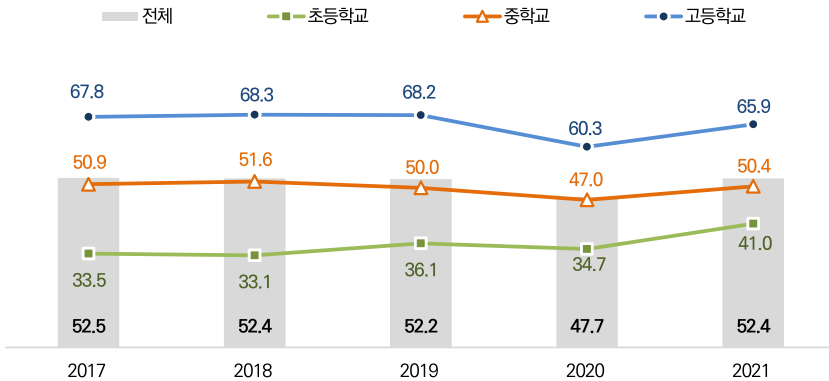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전체(N)	χ^2
전체	52.4	47.6	100.0(8,718)	73.202***
성별	남학생	48.0	100.0(4,518)	
	여학생	57.2	100.0(4,200)	

구분		예	아니오	전체(N)	χ^2
학교급	초등학교	41.0	59.0	100.0(2,932)	368.320***
	중학교	50.4	49.6	100.0(2,876)	
	고등학교	65.9	34.1	100.0(2,910)	
고교 유형	일반계고	67.6	32.4	100.0(2,320)	15.416***
	특성화계고	59.0	41.0	100.0(590)	
학업 성적	상	47.4	52.6	100.0(3,053)	106.965***
	중	51.3	48.7	100.0(3,702)	
	하	62.2	37.8	100.0(1,918)	

*** $p < .001$.

수면부족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수면부족에 대한 응답을 중심으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집단으로 갈수록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으며, 2017년부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오다, 2020년 소폭 하락하였지만 2021년 다시 상승하여 이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수면부족에 '예'라고 응답한 값(단위: %)

그림 III-6-7. 수면 부족 여부(연도별 추이)

수면부족의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를 성별에 따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가정학습으로 인하여 수면이 부족한 경우가 2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학원/과외가 16.0%, 인터넷사이트 13.7%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학습(25.7%), 학원/과외(16.0%), 야간 자율학습(5.7%) 등 수면부족이 학업으로 인한 경우가 총 47.4%로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별에 따라서 남자의 경우 역시 가정학습이 22.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원/과외 16.5%, 게임 16.4% 등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가정학습 28.6%, 학원/과외 15.6%, 인터넷 사이트 방문 14.7% 순으로 남학생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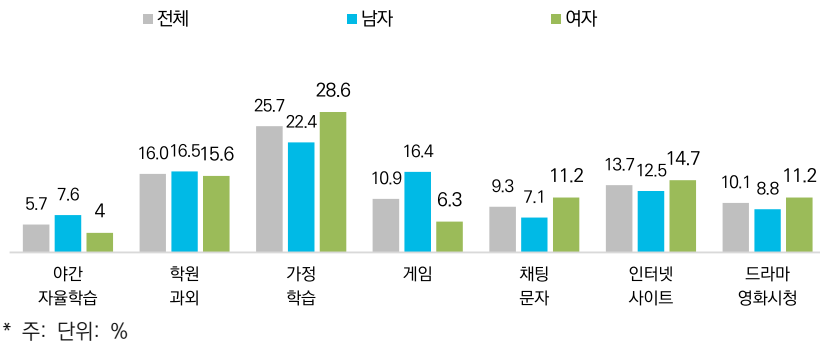


그림 III-6-8. 수면이 부족한 이유(전체, 성별)

수면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면부족의 이유는 성별, 학교급, 고교유형 등 대부분의 배경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먼저 성별의 경우 남학생은 가정학습(22.4%), 학원/과외(16.5%), 게임(16.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가정학습(28.6%), 학원/과외(15.6%), 인터넷사이트 이용(14.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있어서 초등학생은 가정학습(21.4%), 게임(18.9%), 기타(17.1%) 순인데 비해 중학교는 가정학습(25.1%), 학원/과외(15.4%), 인터넷사이트 방문(14.7%) 순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가정학습(28.9%), 인터넷사이트 이용(15.2%), 학원/과외(14.1%) 순으로 응답하여 교급 간의 차이를 보였다. 고교유형에서 일반 계고는 가정학습이 31.7%로 가장 많았고 학원/과외(16.0%)와 인터넷사이트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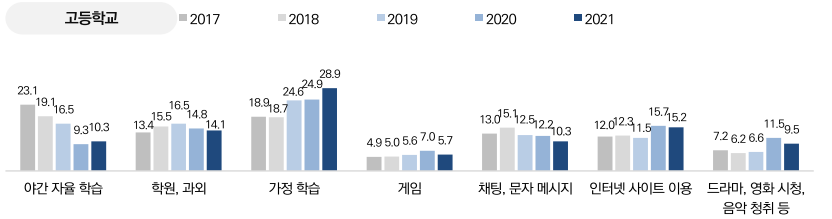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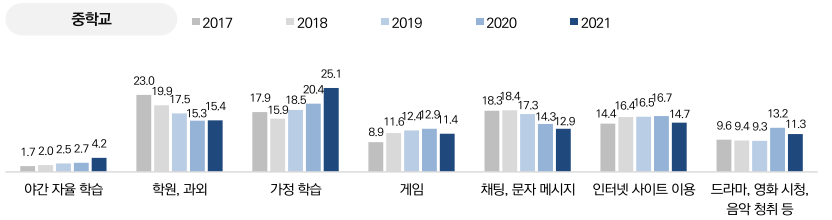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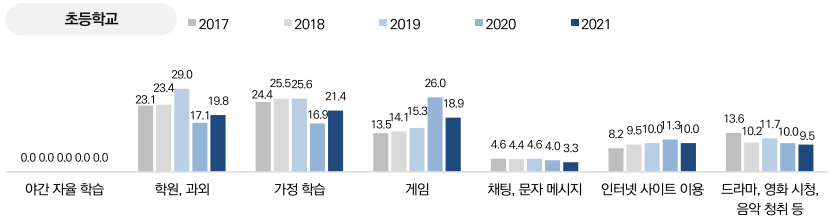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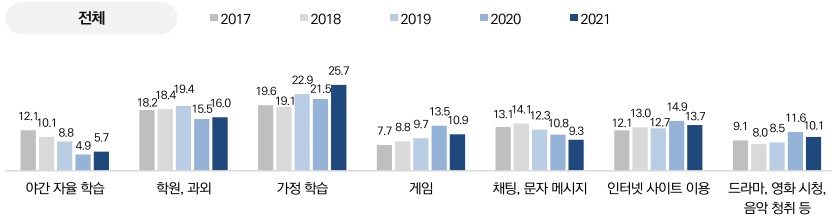
(15.7%)이 높았던 한편 특성화계고는 드라마/영화 시청이 16.4%로 가장 높았다. 가족 유형에서 양부모가정은 가정학습 26.8%, 학원/과외 16.4%로 나타났으나 한부모가정은 가정학습 17.2%, 게임 16.3%, 인터넷사이트 방문 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정의 경우 가정학습 23.7%, 학원/과외 23.6%로 두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정학습으로 인한 수면 부족이 많았으며 채팅, 문자 등의 이유는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많이 응답되었다. 경제적 수준에서 상위권 집단은 가정학습(27.7%)과 학원/과외(18.4%)가 가장 많았으나 중위권 집단은 가정학습(24.4%) 뒤로 인터넷사이트 이용(16.6%)이 그 뒤를 이었다. 하위권 집단에서는 학원/과외 21.0%, 채팅/문자 16.4%, 인터넷사이트 이용이 14.7%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6-29. 수면이 부족한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야간 자율 학습	학원, 과외	가정 학습 (숙제, 인터넷 강의)	게임 (인터넷 게임, 휴대 전화 게임 포함)	채팅 (카톡 등), 문자 메시지	인터넷 사이트 (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기타	전체(N)	χ^2	
전체	5.7	16.0	25.7	10.9	9.3	13.7	10.1	8.6	100.0(4,123)		
성별	남학생	7.6	16.5	22.4	16.4	7.1	12.5	8.8	8.7	100.0(1,914)	174.059***
	여학생	4.0	15.6	28.6	6.3	11.2	14.7	11.2	8.5	100.0(2,209)	
학교급	초등학교	0.0	19.8	21.4	18.9	3.3	10.0	9.5	17.1	100.0(1,072)	472.393***
	중학교	4.2	15.4	25.1	11.4	12.9	14.7	11.3	5.1	100.0(1,315)	
고교	고등학교	10.3	14.1	28.9	5.7	10.3	15.2	9.5	6.0	100.0(1,735)	138.923***
	일반계고	10.8	16.0	31.7	3.8	9.2	15.7	8.0	4.9	100.0(1,426)	
유형	특성화계고	8.2	5.4	16.1	14.5	15.3	13.2	16.4	11.0	100.0(3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8	16.4	26.8	10.0	9.0	13.5	10.1	8.4	100.0(3,624)	74.001***
	한부모가정	5.6	10.8	17.2	16.3	13.6	15.8	9.0	11.6	100.0(374)	
학업 성적	조손가정	0.0	23.6	23.7	14.4	4.5	5.1	17.4	11.3	100.0(33)	184.577***
	기타	5.9	19.6	18.7	23.7	3.9	10.1	12.3	5.8	100.0(62)	
경제적 수준	상	7.3	18.8	33.0	7.9	5.8	10.4	8.2	8.7	100.0(1,324)	87.146***
	중	5.2	16.3	25.5	11.3	9.1	13.6	10.0	9.0	100.0(1,700)	
수준	하	4.7	12.0	17.3	13.8	13.9	17.7	12.7	8.0	100.0(1,075)	100.0(2,157)
	상	5.8	18.4	27.7	9.9	7.5	11.4	10.0	9.3	100.0(1,495)	
수준	중	5.5	13.4	24.4	12.2	9.7	16.6	10.6	7.7	100.0(1,495)	100.0(448)
	하	6.2	13.2	21.0	10.8	16.4	14.7	8.9	8.6	100.0(448)	

*** $p < .001$.



* 주: 단위: %

그림 III-6-9. 수면이 부족한 이유(1순위): 연도별 추이(기타 값 제외)

수면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배경변인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급 전체의 경우 야간자율학습과 채팅/문자메시지 요인은 감소추세에 있지만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던 가정학습 요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 특히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원과 가정학습 요인이 모두 2021년

에 상승하였으며 게임의 경우 2020년 급증하다가 2021년 다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중학생은 점점 야간자율학습과 가정학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원/과외로 인한 수면부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야간자율학습이 감소하고 있지만 가정학습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사이트 이용과 드라마/영화 시청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면이 부족한 이유 1, 2순위를 함께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가정학습이 42.0%로 가장 많은 수면부족 이유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인터넷사이트 이용 31.5%, 학원/과외 29.7%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성별에 있어서 가정학습이 남학생은 37.2%로 가장 높았지만, 여학생은 46.1%로 나타나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가정학습과 게임이 1, 2순위로 나타났지만,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가정학습과 인터넷사이트 이용이 1, 2순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유형에서 일반계고는 가정학습과 인터넷사이트 이용이 높게 조사되었지만, 특성화계고는 인터넷사이트 이용과 드라마, 영화 시청이 가장 높은 원인으로 꼽혔다. 가족 유형에 따라서는 모두 다른 경향을 보였는데, 양부모가정의 경우 가정학습과 인터넷사이트 이용이 가장 많았던 반면, 한부모가정은 인터넷사이트 이용과 게임이 가장 많았고, 조손가정은 가정학습과 게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적에 있어서 중, 상위권 학생들은 가정학습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인터넷사이트 이용이 가장 큰 이유로 확인되었다.

표 III-6-30. 수면이 부족한 이유(복수응답: 1+2순위)

(단위 : %, 명)

구분	야간 자율 학습	학원, 과외	가정 학습 (숙제, 인터넷 강의)	게임 (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채팅 (카톡 등), 문자 메시지	인터넷 사이트 (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기타	전체(N)	
전체	8.5	29.7	42.0	22.5	22.4	31.5	23.8	12.3	4,123	
성별	남학생	10.4	29.3	37.2	32.7	18.5	29.2	21.3	12.9	1,914
	여학생	6.9	30.1	46.1	13.7	25.8	33.6	25.9	11.7	2,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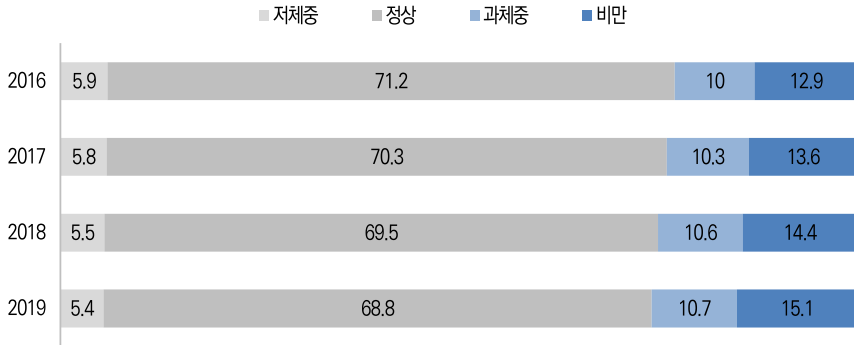
구분		야간 자율 학습	학원, 과외	가정 학습 (숙제, 인터넷 강의)	게임 (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채팅 (카톡 등), 문자 메시지	인터넷 사이트 (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기타	전체(N)
학교급	초등학교	0.0	30.7	43.0	31.5	13.5	21.3	27.4	23.6	1,072
	중학교	7.2	30.1	38.0	24.7	28.4	34.4	24.3	7.5	1,315
	고등학교	14.9	28.8	44.4	15.3	23.4	35.7	21.1	9.0	1,735
고교 유형	일반계고	15.3	32.4	48.3	12.4	21.7	35.8	18.9	7.7	1,426
	특성화계고	12.8	12.3	26.2	28.3	31.2	35.2	31.4	14.8	3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6	30.6	43.4	21.1	22.0	31.5	23.3	12.1	3,624
	한부모가정	8.8	20.7	27.5	32.3	28.5	35.7	25.9	13.8	374
	조손가정	2.2	31.5	49.4	34.4	14.1	11.6	32.5	15.7	33
	기타	10.2	29.6	35.3	30.3	19.0	21.4	39.1	12.3	62
학업 성적	상	11.0	35.6	52.6	17.5	17.8	24.5	20.8	13.5	1,324
	중	7.8	30.5	42.5	22.3	22.5	32.2	23.1	11.8	1,700
	하	6.9	21.3	27.9	28.6	28.3	39.3	28.8	11.5	1,075
경제적 수준	상	8.4	34.6	44.7	21.0	20.6	27.3	23.2	13.2	2,157
	중	8.3	24.7	39.8	24.5	23.0	36.1	25.6	10.8	1,495
	하	10.3	22.8	35.9	21.9	29.7	37.1	21.0	13.0	448

④ 아동·청소년의 질병 유형

가. 비만율

국내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을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학생 건강검사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2019년 조사 결과 비만 15.1%, 과체중 10.7%, 저체중 5.4%, 정상체중은 6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그 추이를 살펴보면, 저체중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비만과 과체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비만 아동·청소년의 증가세는 과체중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정상체중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하여 2020년 본격적으로 유행한 COVID-19로 인해 비대면 상황과 외부활동의 감소로 인해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한층 더 높은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관찰과 개입이 필요하다.



* 출처: 교육부(2017.2.22). 보도자료: 2016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p.9 재편집.
 교육부(2018.3.15). 보도자료: 2017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p.9.
 교육부(2019.3.26). 보도자료: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p.15.
 교육부(2020.7.23). 보도자료: 2019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p.10.

* 주: 1) 본 그림은 <표 III-6-31>의 일부 내용을 도식화한 것임(단위: %).
 2) 2020년 검사는 COVID-19로 인하여 조사율이 높지 않아 결과발표 여부가 논의 중임.

그림 III-6-10. 비만도 현황(연도별 추이)

앞서 나타난 비만율의 결과를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체중의 경우 초등학생 중 남학생 11.5%, 여학생 10.7%였으며 중학생은 남학생 11.3%, 여학생 10.1%로 남학생이 더 많았으나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 9.9%, 여학생 10.0%로 근소한 차이에서 여학생의 수가 더 많았다. 비만인 초등학생은 남학생 16.6%, 여학생 10.6%였으며 중학생은 남학생 17.2%, 여학생 12.5%로 확인되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 19.7%, 여학생 16.1%로 모든 교급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비만율을 보였지만 성별 간 격차는 초등학생 6.0%p, 중학생 4.7%p, 고등학생 3.6%p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6-31. 체질량지수 기준 비만율(2016~2020년)

(단위 : %)

연도/구분		체질량지수(BMI) 기준 비만율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2016	전체	5.9	71.2	10.0	12.9	
	초등학생	남학생	5.9	69.5	10.9	13.8
		여학생	6.6	75.5	9.0	8.8
	중학생	남학생	6.2	68.3	10.3	15.2
		여학생	5.0	74.3	10.1	10.6
	고등학생	남학생	6.8	67.0	9.9	16.3
여학생		4.2	71.9	10.0	13.9	
2017	전체	5.8	70.3	10.3	13.6	
	초등학생	남학생	5.4	69.9	10.8	14.0
		여학생	6.8	73.1	10.2	9.9
	중학생	남학생	5.9	68.7	10.6	14.8
		여학생	5.1	74.5	9.4	11.0
	고등학생	남학생	6.6	64.8	10.4	18.1
여학생		4.8	70.3	9.9	15.1	
2018	전체	5.5	69.5	10.6	14.4	
	초등학생	남학생	4.9	68.3	11.3	15.5
		여학생	6.0	72.9	10.2	10.9
	중학생	남학생	5.7	67.6	10.6	16.0
		여학생	4.8	72.9	9.9	12.4
	고등학생	남학생	6.3	64.6	10.7	18.4
여학생		5.2	69.7	10.4	14.7	
2019	전체	5.4	68.8	10.7	15.1	
	초등학생	남학생	5.1	66.8	11.5	16.6
		여학생	5.8	72.9	10.7	10.6
	중학생	남학생	5.3	66.2	11.3	17.2
		여학생	4.9	72.4	10.1	12.5
	고등학생	남학생	6.0	64.3	9.9	19.7
여학생		5.4	68.6	10.0	16.1	

* 출처: 교육부(2017.2.22). 보도자료: 2016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p.9 재편집.
 교육부(2018.3.15). 보도자료: 2017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p.9.
 교육부(2019.3.26). 보도자료: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p.15.
 교육부(2020.7.23). 보도자료: 2019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p.10.

* 주: 1) 체질량지수(BMI, kg/m²) 기준 비만율 : 저체중군, 5백분위수 미만 / 정상, 5백분위수 이상 85백분위수 이하 / 과체중군, 85백분위수 초과 95백분위수 미만 / 비만군, 95백분위수 이상
 2) 2017년 개정된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과학회) 적용하여 분석
 3) 2020년 검사는 COVID-19로 인하여 조사율이 높지 않아 결과발표 여부를 논의 중임.

나. 그 외 질환별 유병률

전체적으로 천식 2.9%(1세~11세)/2.7%(12~18세), 알레르기 비염 24.2%(1세~11세)/28.7%(12~18세), 아토피피부염 11.7%(1세~11세)/15.5%(12~18세), 주의

력결핍장애 0.6%(1세~11세)/0.7%(12~18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천식의 경우 12~18세 보다는 1세~11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보다는 남자의 유병률이 높았다. 알레르기 비염은 12~18세의 유병률이 더 높았으며 천식과 유사하게 여자보다 남자의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토피피부염의 경우 1~11세 보다는 12~18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주의력결핍장애는 1~11세의 경우 여자보다 남자가 더 발병률이 높긴 했지만, 그 이상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I-6-32. 소아청소년 질환별 유병률

(단위 : %, 명)

연도	연령	남자		여자		전체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2018	천식	1-11세	3.7(1.0)	471	0.9(0.4)	458	2.3(0.5)	929
		12-18세	3.1(1.3)	247	2.5(1.2)	227	2.8(0.9)	474
	알레르기비염	1-11세	21.3(2.7)	471	17.4(2.5)	458	19.4(2.0)	929
		12-18세	25.5(3.0)	247	19.1(3.3)	227	22.4(2.2)	474
	아토피피부염	1-11세	12.1(1.8)	471	9.0(1.8)	458	10.6(1.3)	929
		12-18세	14.7(2.9)	247	18.8(2.8)	227	16.7(2.2)	474
	주의력결핍장애	1-11세	0.5(0.3)	471	0.0(-)	458	0.3(0.2)	929
		12-18세	3.8(1.5)	247	1.3(0.8)	227	2.6(0.9)	474
2019	천식	1-11세	4.2(1.2)	474	1.5(0.7)	451	2.9(0.7)	925
		12-18세	3.3(1.3)	256	2.0(0.9)	231	2.7(0.8)	487
	알레르기비염	1-11세	27.4(2.6)	474	20.8(2.4)	451	24.2(2.1)	925
		12-18세	33.4(3.7)	256	23.4(3.5)	231	28.7(2.9)	487
	아토피피부염	1-11세	11.4(1.8)	474	12.0(1.9)	451	11.7(1.5)	925
		12-18세	14.7(2.7)	256	16.5(3.0)	231	15.5(2.0)	487
	주의력결핍장애	1-11세	1.0(0.5)	474	0.2(0.2)	451	0.6(0.3)	925
		12-18세	0.7(0.7)	256	0.8(0.6)	231	0.7(0.5)	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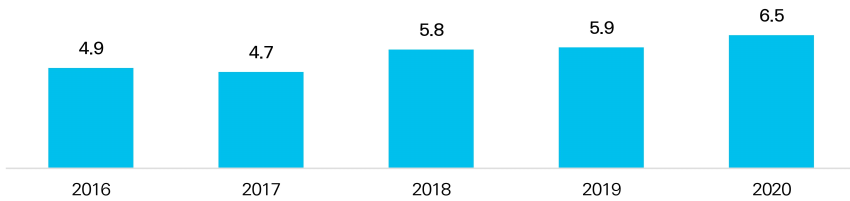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9). 2018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_표번호 24-2. 소아청소년질환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20). 2019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_표번호 24-2. 소아청소년질환별)

(2) 정신적 건강

① 자살 생각과 그 이유

2021년 발표한 '2020 사망원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19세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6.5%로 전년 대비 0.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0대

사망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이며,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청소년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COVID-19의 여파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자살 및 자살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예민한 시기의 아동·청소년에게 예방적 개입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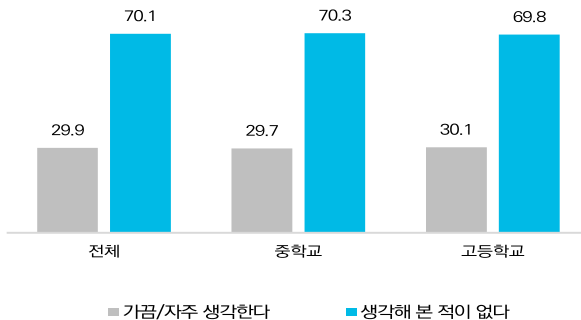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2017.9.22). 보도자료: 2016년 사망원인통계 p.19. 통계청(2018.9.19). 보도자료: 2017년 사망원인통계 p.19. 통계청(2019.9.24). 보도자료: 2018년 사망원인통계 p.18. 통계청(2020.9.22). 보도자료: 2019년 사망원인통계 p.18. 통계청(2021.9.28.). 보도자료: 2020년 사망원인통계 p.18.

* 주: 단위: %

그림 III-6-11. 인구 십만명 당 10~19세 자살률

설문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29.9%는 자살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중학생의 29.7%, 고등학생의 30.1%가 가끔 또는 자주 자살 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 단위: %

그림 III-6-12. 자살 생각 여부

위 결과를 더욱 세부적으로 배경변인에 따라 분석한 결과 학교급을 제외한 나머지 배경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22.7%)보다는 여학생(37.7%)이 자살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였으며 특성화계고(24.7%) 보다는 일반계고(31.5%) 학생이 자살 생각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 유형에 있어서는 조손가정(42.4%)의 아동·청소년들이 양부모가정(29.7%)이나 한부모가정(32.5%) 청소년보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는 하위권에 속한 아동·청소년들이 자살에 대해 생각해보는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6-33. 자살 생각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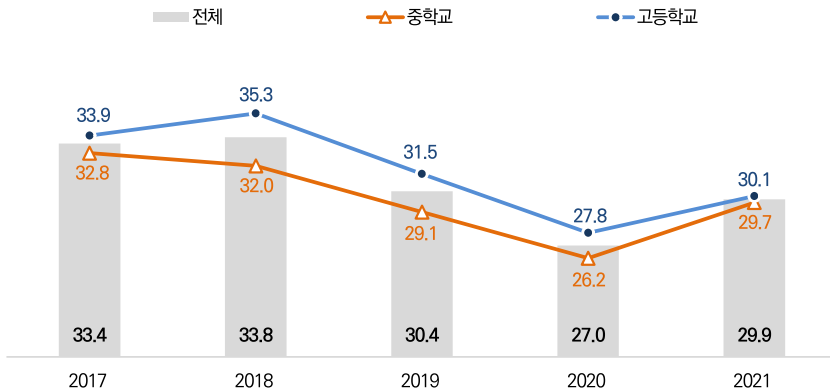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생각해본 적이 없다	가끔 생각한다	자주 생각한다	전체(N)	χ^2	
전체	70.1	25.5	4.4	100.0(5,702)		
성별	남학생	77.3	20.5	2.2	100.0(2,958)	172.895***
	여학생	62.3	30.9	6.8	100.0(2,744)	
학교급	중학교	70.3	25.7	4.0	100.0(2,823)	2.334
	고등학교	69.8	25.3	4.8	100.0(2,879)	
고교 유형	일반계고	68.5	26.8	4.7	100.0(2,302)	13.189**
가족 유형	특성화계고	75.3	19.5	5.2	100.0(576)	12.994*
	양부모가정	70.3	25.5	4.2	100.0(5,069)	
	한부모가정	67.5	25.9	6.6	100.0(510)	
	조손가정	57.6	38.3	4.1	100.0(39)	
	기타	79.6	18.1	2.4	100.0(70)	
학업 성적	상	72.3	24.2	3.5	100.0(1,546)	77.584***
	중	73.8	22.7	3.4	100.0(2,478)	
	하	62.3	30.9	6.8	100.0(1,667)	
경제적 수준	상	74.4	22.5	3.1	100.0(2,862)	150.060***
	중	68.8	27.0	4.2	100.0(2,227)	
	하	53.5	34.7	11.8	100.0(604)	

* $p < .05$, ** $p < .01$, *** $p < .001$.

자살 생각에 대한 경험여부를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2020년까지 점차 감소세를 보이던 자살 생각은 2021년 반등하여 29.9%의 경험률을 보였다. 이는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국립중앙의

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자살 시도로 인한 응급 사례가 매일 100건에 달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COVID-19가 장기화되며 정서적 피해의 결과로 자살시도로 이어지며 특히 청소년층이 더 취약함을 강조했다(연합뉴스, 2021.10.11.).



* 주: '가끔 생각한다'와 '자주 생각한다'의 합계(단위: %)

그림 III-6-13. 자살 생각 여부(연도별 추이)

자살 생각의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자의 가장 많은 45.8%가 학업문제로 인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 20.3%, 가족 간의 갈등 15.9%, 기타 11.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배경변인에 따라 비교한 결과, 성별을 제외한 변인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학생은 학업문제 다음으로 가족 간의 갈등(21.0%)이 두 번째 자살 생각 요인이라고 생각했으며 고등학생은 미래에 대한 불안(26.4%)으로 두 번째 원인을 들었다. 고교유형에 있어서 일반계고 학생들은 학업문제(49.4%)가 가장 큰 이유였으나 특성화계고의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26.7%)과 가족 간의 갈등(22.9%)이 학업문제(21.3%)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부모 가정과 조손가정에 속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학업문제에 대해 40%대의 응답을 보였지만 한부모가정의 경우 학업문제 27.8%, 가족 간의 갈등 23.4%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경제적 수준의 경우 상위권(52.2%)일수록 학생들은 학업문제로 인해 자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6-34. 자살 생각 이유

(단위 : %(명))

구분	학업 문제 (학업 부담, 성적 등)	가족 간의 갈등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 (학교 폭력 등)	경제적 어려움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	기타	전체(N)	χ^2
전체	45.8	15.9	5.2	1.0	20.3	11.9	100.0(1,653)	
성별	남학생	44.0	15.8	4.0	0.8	22.5	100.0(650)	9.145
	여학생	46.9	15.9	6.0	1.1	18.9	100.0(1,003)	
학교급	중학교	46.9	21.0	6.6	0.8	14.1	100.0(820)	66.050***
	고등학교	44.7	10.8	3.8	1.1	26.4	100.0(833)	
고교 유형	일반계고	49.4	8.4	2.9	1.1	26.3	100.0(694)	62.094***
	특성화계고	21.3	22.9	8.8	1.5	26.7	100.0(13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7.7	14.9	4.6	0.6	21.0	100.0(1,459)	66.230***
	한부모가정	27.8	23.4	10.1	4.4	14.8	100.0(160)	
	조손가정	43.0	21.5	14.9	0.0	20.6	100.0(16)	
	기타	50.0	25.2	0.0	0.0	19.0	100.0(14)	
학업 성적	상	49.8	17.7	3.9	0.5	16.2	100.0(421)	22.114*
	중	48.0	15.3	4.6	1.1	19.3	100.0(626)	
	하	40.7	15.2	6.8	1.1	24.2	100.0(606)	
경제적 수준	상	52.2	13.8	4.0	0.3	19.0	100.0(711)	76.750***
	중	45.3	15.8	4.9	0.6	21.8	100.0(677)	
	하	29.8	21.3	9.4	3.8	20.0	100.0(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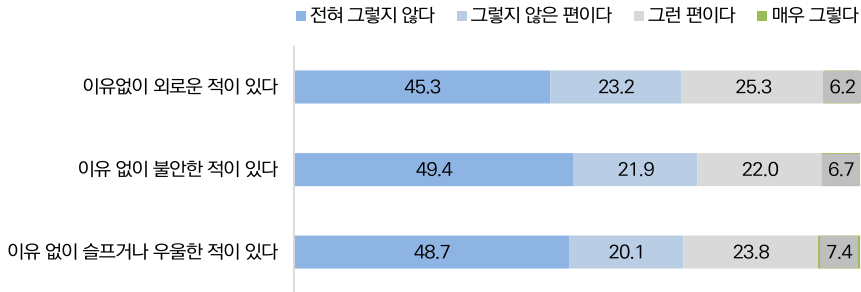
*** $p < .001$.

* 주: 2017년도 조사부터는 전년도 보기문항 중 '학교 성적'이 '학업문제'로 수정되었으며,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보기문항이 새로 추가됨.

② 우울감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세 문항을 통해 대상 아동·청소년의 우울정도를 조사하였으며 세 문항에 대한 전체 대상자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항의 경우 31.5%가 그러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28.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

다.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31.2%의 대상자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즉, 조사대상자의 약 30%는 일상생활에서 이유 없는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주: 단위: %

그림 III-6-14. 우울정도 항목별 조사결과

우울감 질문 첫 번째 문항인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에 대하여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 학교급, 가족 유형, 학업 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먼저 성별의 경우 여학생(평균 2.11)은 남학생(평균 1.75)에 비해 더 외로운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급에 있어서 초등학생(평균 1.67)이 가장 외로운 적이 없었고 고등학생(평균 2.08)이 이유 없이 외로운 경험이 더 많았다. 양부모 가정(평균 1.91)과 조손가정(평균 1.90) 보다는 한부모가정(평균 2.21)의 자녀가 더욱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은 하위권일수록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분석결과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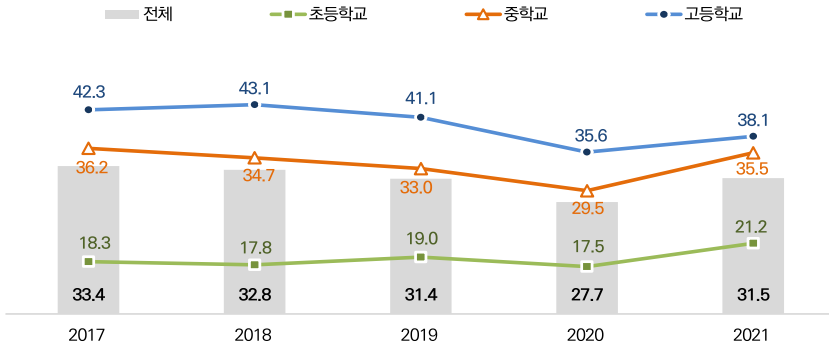
표 III-6-35. 우울_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93(0.97)	45.3	23.2	25.3	6.2	100.0(8,664)	307.219***
성별							
남학생	1.75(0.91)	53.3	22.7	19.8	4.2	100.0(4,481)	339.942***
여학생	2.11(1.00)	36.7	23.6	31.3	8.4	100.0(4,184)	
학교급							70.254***
초등학교	1.67(0.90)	58.5	20.3	17.0	4.2	100.0(2,912)	
중학교	2.02(0.97)	39.6	24.9	29.0	6.5	100.0(2,862)	
고등학교	2.08(0.99)	37.6	24.3	30.1	8.0	100.0(2,890)	235.62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91(0.97)	45.8	23.5	24.7	6.0	100.0(7,736)	
한부모가정	2.21(1.02)	34.2	20.4	35.6	9.8	100.0(657)	
조손가정	1.90(0.99)	48.2	19.2	26.9	5.7	100.0(88)	330.741***
기타	1.75(0.97)	56.3	18.1	19.4	6.1	100.0(130)	
학업 성적							
상	1.77(0.93)	52.7	22.2	20.4	4.7	100.0(3,031)	330.741***
중	1.92(0.96)	44.8	24.2	25.6	5.4	100.0(3,685)	
하	2.20(1.02)	33.9	22.6	33.1	10.4	100.0(1,905)	
경제적 수준							330.741***
상	1.79(0.93)	51.2	22.6	21.9	4.3	100.0(4,967)	
중	2.03(0.99)	40.0	24.3	28.5	7.3	100.0(2,942)	
하	2.44(1.02)	24.6	22.6	37.4	15.4	100.0(713)	

*** $p < .001$.

이유 없이 외로웠던 경험에 대한 응답을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전체 교급에 있어서 2020년까지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1년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향 역시 장기화된 COVID-19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대인관계가 단절되고 급격히 감소한 활동량은 특히 취약한 청소년의 심리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II-6-15. 우울_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우울감 질문 두 번째 문항인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교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성별에 있어 여학생(평균 2.05)은 남학생(평균 1.68)에 비해 더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평균 2.04)은 중학생(평균 1.91)과 초등학생(평균 1.64)보다 불안을 많이 경험했으며 한부모가정의 자녀(평균 2.12)는 양부모가정(평균 1.84)과 조손가정(평균 1.80)의 자녀보다 불안을 더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의 경우 상위권에서 하위권으로 갈수록 더욱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6-36. 우울_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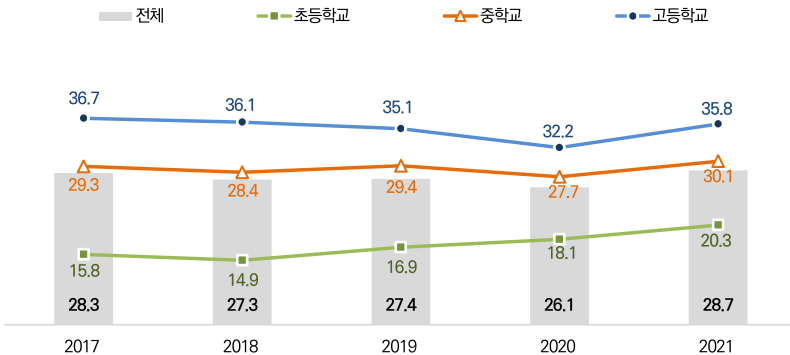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86(0.98)	49.4	21.9	22.0	6.7	100.0(8,662)	317.206***
성별							
남학생	1.68(0.90)	57.7	20.9	17.0	4.3	100.0(4,479)	
여학생	2.05(1.02)	40.5	22.9	27.3	9.3	100.0(4,183)	
학교급							290.967***
초등학교	1.64(0.91)	61.5	18.2	15.6	4.7	100.0(2,910)	
중학교	1.91(0.97)	45.5	24.4	23.6	6.5	100.0(2,862)	
고등학교	2.04(1.02)	41.2	23.1	26.9	8.9	100.0(2,889)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고교 유형	일반계고	2.03(1.01)	40.6	23.9	27.1	8.4	100.0(2,302)	7.650
	특성화계고	2.04(1.06)	43.4	19.6	26.3	10.7	100.0(58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84(0.97)	50.0	22.0	21.7	6.4	100.0(7,734)	67.846***
	한부모가정	2.12(1.05)	39.1	21.1	28.8	11.0	100.0(657)	
	조손가정	1.80(0.91)	48.3	29.0	17.4	5.3	100.0(88)	
	기타	1.61(0.96)	65.8	14.8	12.3	7.1	100.0(130)	
학업 성적	상	1.73(0.95)	56.4	19.7	18.3	5.5	100.0(3,031)	201.614***
	중	1.84(0.96)	49.7	22.4	22.3	5.6	100.0(3,684)	
	하	2.12(1.03)	37.5	24.3	27.4	10.8	100.0(1,903)	
경제적 수준	상	1.74(0.94)	55.4	20.4	19.1	5.1	100.0(4,967)	294.096***
	중	1.95(0.99)	43.9	24.4	24.4	7.3	100.0(2,941)	
	하	2.35(1.06)	29.7	21.5	33.3	15.5	100.0(712)	

** $p < .01$, *** $p < .001$.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에 대한 분석결과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중, 고등학생보다 불안을 덜 느끼지만, 지속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소폭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II-6-16. 우울_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우울감 질문 세 번째 문항인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 학교급, 고교유형 등 모든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평균 2.16)은 남학생(평균 1.66)에 비해 이유 없는 슬픔과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고등학생(평균 2.10)은 중학생(평균 1.97)과 초등학생(평균 1.62)보다 슬프고 우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유형에 있어서 한부모가정(평균 2.17)의 자녀는 양부모가정(평균 1.89)과 조손가정(평균 1.77)의 자녀에 비해 슬픔과 우울의 경험이 더 많았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의 경우 상위권일수록 슬픔과 우울을 경험하는 빈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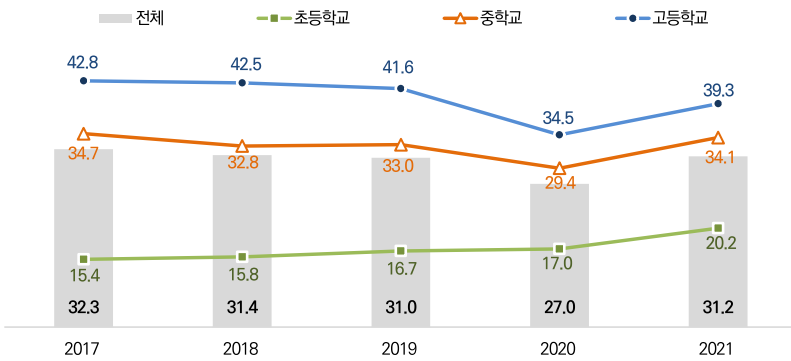
표 III-6-37. 우울_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90(1.01)	48.7	20.1	23.8	7.4	100.0(8,642)	550.045***	
성별								
	남학생	1.66(0.91)	59.6	19.5	16.5	4.4	100.0(4,471)	
	여학생	2.16(1.04)	36.9	20.8	31.6	10.7	100.0(4,171)	
학교급	초등학교	1.62(0.91)	62.7	17.0	15.3	4.9	100.0(2,896)	387.217***
	중학교	1.97(1.00)	44.1	21.8	26.6	7.5	100.0(2,859)	
	고등학교	2.10(1.03)	39.1	21.6	29.5	9.8	100.0(2,887)	
고교 유형	일반계고	2.09(1.02)	38.9	22.5	29.3	9.3	100.0(2,300)	8.223*
	특성화계고	2.14(1.08)	40.0	17.9	30.2	11.9	100.0(58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89(1.00)	49.2	20.2	23.4	7.2	100.0(7,713)	63.335***
	한부모가정	2.17(1.06)	37.4	20.0	31.0	11.7	100.0(658)	
	조손가정	1.77(0.94)	52.9	21.9	20.5	4.7	100.0(88)	
	기타	1.62(0.93)	63.6	15.4	16.2	4.8	100.0(130)	
학업 성적	상	1.75(0.96)	56.3	18.4	19.8	5.5	100.0(3,019)	247.087***
	중	1.88(0.98)	48.7	21.3	23.6	6.4	100.0(3,676)	
	하	2.19(1.06)	36.2	20.7	30.5	12.6	100.0(1,903)	
경제적 수준	상	1.76(0.96)	55.2	19.1	20.4	5.4	100.0(4,952)	372.895***
	중	2.00(1.01)	42.8	22.1	26.9	8.2	100.0(2,935)	
	하	2.46(1.08)	26.5	19.8	34.8	19.0	100.0(713)	

* $p < .05$, ** $p < .01$, *** $p < .001$.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에 대한 경험 여부를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의 경우 중, 고등학생보다 낮은 수준에서 슬픔과 우울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는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감소추세가 2020년을 기점으로 반등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COVID-19에 의한 일시적인 영향인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II-6-17. 우울_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세 문항을 통해 조사된 우울감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각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자의 우울감 평균은 1.89(표준편차 .90)로 나타났으며 성별의 경우 여학생(평균 2.11)은 남학생(평균 1.70)에 비해 더욱 우울함을 느꼈으며, 고등학생(평균 2.07)은 초, 중학생보다 우울의 수준이 높았다.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자녀보다 한부모가정(평균 2.17)의 자녀가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 하위권일수록 이유 없이 슬프고 우울하거나 또는 불안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6-38. 우울감의 배경변인별 차이

(단위 : 명, 점)

구분	전체(N)	우울감			
		M	SD	t/F(Scheffé)	
전체	8,667	1.89	.90		
성별	남학생	4483	1.70	.81	-21.941***
	여학생	4184	2.11	.93	
학교급	초등학교 ^a	2915	1.64	.80	189.334*** c>b>a
	중학교 ^b	2862	1.97	.90	
	고등학교 ^c	2890	2.07	.9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a	7739	1.88	.89	23.936*** b>a>c
	한부모가정 ^b	658	2.17	.95	
	조손가정 ^c	88	1.82	.85	
	기타 ^d	130	1.66	.86	
학업 성적	상 ^a	3031	1.75	.86	133.907*** c>b>a
	중 ^b	3687	1.88	.88	
	하 ^c	1906	2.17	.94	
경제적 수준	상 ^a	4969	1.76	.85	198.816*** c>b>a
	중 ^b	2942	1.99	.91	
	하 ^c	713	2.41	.96	

*** $p < .001$.

③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조사 대상자를 통해 행복한 정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행복한 정도에 있어서 전체 평균은 3.11이었으며 선택문항의 경우 84.1%가 행복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배경변인에 따라 분석하면, 남학생(평균 3.17)이 여학생(평균 3.05)에 비해 더욱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학생(평균 3.28)은 중학생(평균 3.10)과 고등학생(평균 2.96)보다 행복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한부모가정(평균 2.92)의 자녀 보다는 양부모가정(평균 3.12)과 조손가정(평균 3.15)의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학업성적

이 우수할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의 수준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6-39. 행복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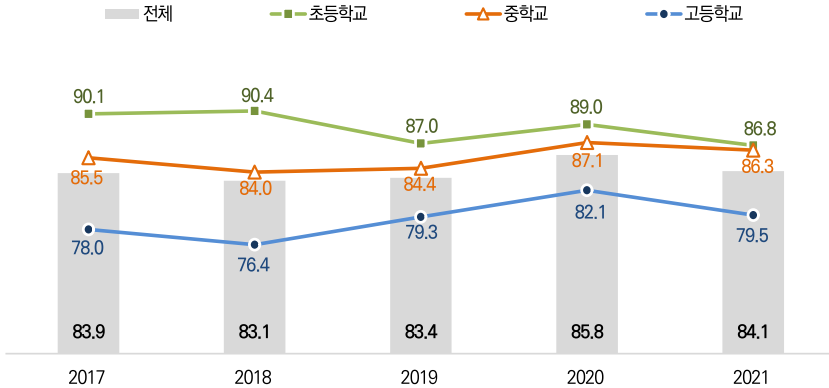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하다	전체(N)	χ^2	
전체	3.11(0.69)	1.4	14.5	55.8	28.3	100.0(8,404)	80.538***	
성별	남학생	3.17(0.69)	1.6	12.2	54.2	32.0		100.0(4,315)
	여학생	3.05(0.68)	1.2	16.8	57.6	24.3	100.0(4,089)	
학교급	초등학교	3.28(0.71)	1.0	12.2	44.6	42.2	100.0(2,698)	441.787***
	중학교	3.10(0.64)	1.0	12.8	61.7	24.6	100.0(2,814)	
	고등학교	2.96(0.68)	2.2	18.3	60.6	18.9	100.0(2,89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2(0.68)	1.3	14.0	55.6	29.1	100.0(7,518)	63.270***
	한부모가정	2.92(0.68)	2.5	20.3	60.1	17.0	100.0(641)	
	조손가정	3.15(0.75)	1.7	16.2	47.1	35.0	100.0(80)	
	기타	3.16(0.72)	3.3	9.2	55.5	32.0	100.0(121)	
학업 성적	상	3.26(0.67)	0.6	10.7	51.0	37.6	100.0(2,949)	345.075***
	중	3.10(0.67)	1.3	14.0	58.0	26.7	100.0(3,557)	
	하	2.89(0.70)	3.0	21.3	59.5	16.3	100.0(1,863)	
경제적 수준	상	3.24(0.66)	0.8	10.5	52.7	36.0	100.0(4,806)	516.665***
	중	2.99(0.66)	1.6	17.7	61.1	19.6	100.0(2,872)	
	하	2.72(0.72)	5.0	28.5	55.9	10.6	100.0(690)	

*** $p < .001$.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행복한 편이다”와 “매우 행복하다”는 응답의 합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행복감의 수준은 증감을 반복하였으며 학교급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순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행복감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지만 90%대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1년에는 중학생의 행복감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반

적으로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보이고 있으며 교급별로 유사한 수준에서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주: '행복한 편이다'와 '매우 행복하다'의 합계(단위: %)

그림 III-6-18. 행복한 정도(연도별 추이)

다음으로 행복하지 않다면 왜 행복하지 않은지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학업문제로 인해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24.0%, 화목하지 않은 가정 때문에 10.5%로 나타났다.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보다 중학교(42.9%)와 고등학교(43.0%) 학생들이 학업 문제로 인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 유형에 있어서 양부모가정의 자녀는 학업 문제로 행복하지 않음이 42.0%로 가장 높았으나, 한부모가정에서는 29.5%, 조손가정에서는 12.1%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조손가정의 자녀는 외모나 신체적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다는 점이 행복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였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문제로 행복해하지 않았으며 중위권으로 갈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행복해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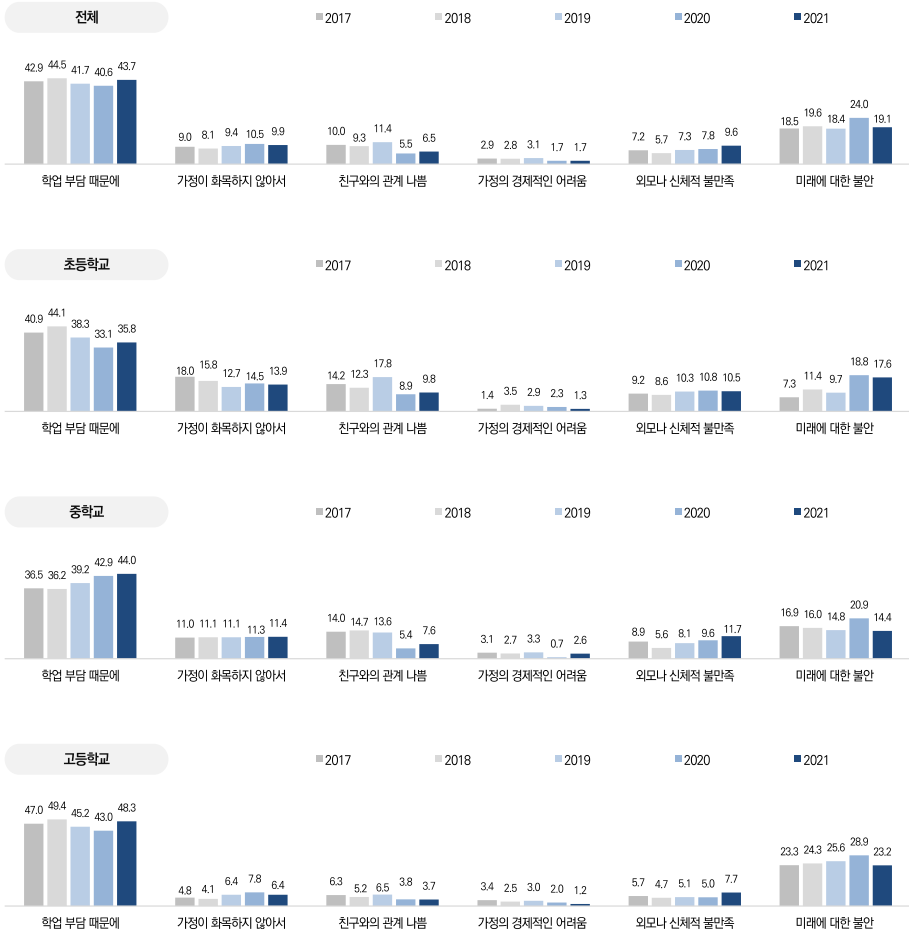
표 III -6-40. 행복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학업 문제 (학업 부담, 성적 등)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기타	전체(N)	χ^2	
전체	40.6	10.5	5.5	1.7	7.8	24.0	10.0	100.0(1,129)		
성별	남학생	42.3	10.8	4.0	2.1	5.3	25.3	10.2	100.0(484)	12.828
	여학생	39.3	10.2	6.6	1.3	9.7	23.1	9.7	100.0(645)	
학교급	초등학교	33.1	14.5	8.9	2.3	10.8	18.8	11.7	100.0(276)	56.473***
	중학교	42.9	11.3	5.4	0.7	9.6	20.9	9.2	100.0(341)	
	고등학교	43.0	7.8	3.8	2.0	5.0	28.9	9.5	100.0(51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2.0	8.9	5.2	1.7	7.4	24.3	10.6	100.0(962)	47.314***
	한부모가정	29.5	20.4	8.1	1.6	10.8	24.2	5.4	100.0(132)	
	조손가정	12.1	13.2	0.0	6.6	28.8	9.3	29.9	100.0(8)	
	기타	54.8	21.0	8.6	0.0	3.4	7.8	4.4	100.0(21)	
학업 성적	상	48.1	11.3	4.0	0.7	6.9	20.1	8.9	100.0(235)	17.955
	중	39.9	11.7	5.6	1.2	7.5	23.8	10.3	100.0(457)	
	하	37.1	8.9	6.3	2.7	8.7	25.9	10.3	100.0(432)	
경제적 수준	상	45.2	8.2	7.0	0.5	7.7	21.0	10.6	100.0(478)	93.488***
	중	38.7	9.2	5.5	0.2	9.8	27.2	9.5	100.0(445)	
	하	33.6	18.6	2.3	7.9	4.1	23.7	10.0	100.0(198)	

*** $p < .001$.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도별로 그 추이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이유였던 학업 부담의 경우 40% 초·중반대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다. 그 외에 외모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다소 작은 폭이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역시 학업부담이 크게 작용하였는데 감소세에서 2021년 상승세가 되었고 그 외에 2020년과 2021년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증가하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 유일하게 학업부담으로 행복하지 않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초, 중학생에 비해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해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 또는 취업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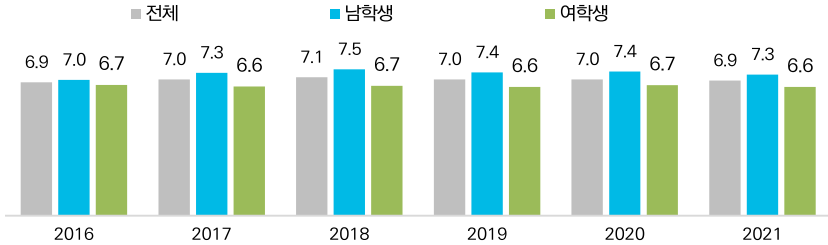
* 주: 단위: %

그림 III-6-19. 행복하지 않은 이유(연도별 추이: 전체, 학교급)

④ 삶의 만족도

조사 대상자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삶의 만족도는 10점을 만점으로 하며 2021년에는 전체 6.9점, 남학생 7.3점, 여학생 6.6점으로 여학생에 비하여 남학생이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매년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주: 삶의 만족도 10점 만점 기준 평균값(단위: 점)

그림 III-6-20. 삶의 만족도(연도별 추이: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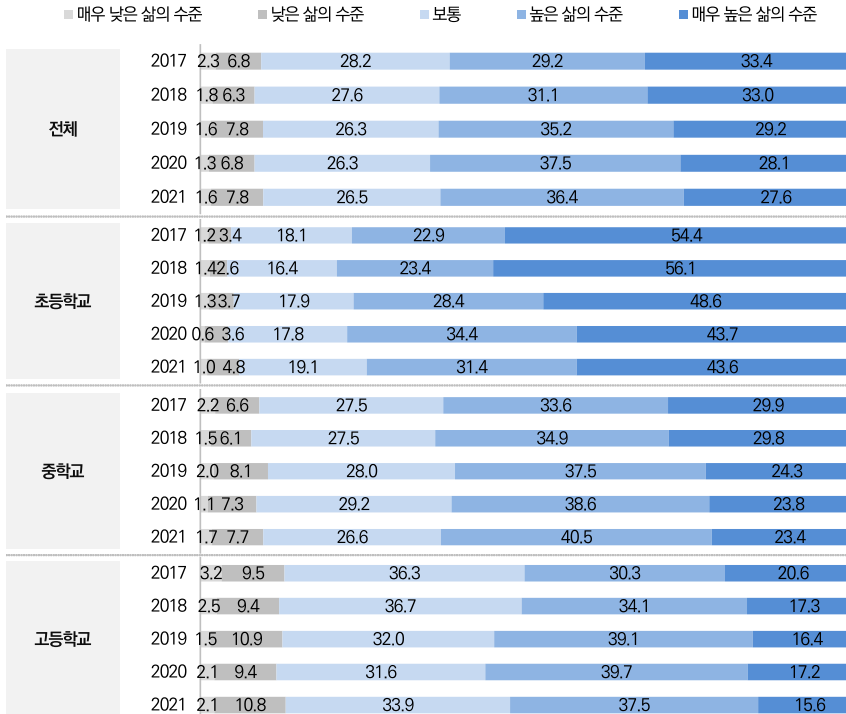
조사된 삶의 만족도를 이용하여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학생(평균 7.25)은 여학생(평균 6.61)에 비하여 삶에 더욱 만족하였으며, 초등학생(평균 7.65)은 중학생(평균 6.84)과 고등학생(평균 6.33)보다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손가정(평균 7.15)의 자녀들은 한부모가정(평균 6.13)과 양부모가정(평균 7.00)보다 본인의 삶에 만족하였으며 학업성적이 상위권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6-41. 삶의 만족도

구분		전체(N)	M	SD	t/F(Scheffé)
전체		8,643	6.94	2.30	
성별	남학생	4,467	7.25	2.22	12.897***
	여학생	4,176	6.61	2.34	
학교급	초등학교 ^a	2,902	7.65	2.23	256.672*** a>b>c
	중학교 ^b	2,849	6.84	2.22	
	고등학교 ^c	2,891	6.33	2.2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a	7,717	7.00	2.28	30.187*** a>b, c>b
	한부모가정 ^b	659	6.13	2.38	
	조손가정 ^c	87	7.15	2.18	
	기타 ^d	130	7.13	2.49	
학업 성적	상 ^a	3,035	7.62	2.10	339.541*** a>b>c
	중 ^b	3,671	6.90	2.22	
	하 ^c	1,897	5.93	2.37	

구분		전체(N)	M	SD	t/F(Scheffé)
경제적 수준	상 ^a	4,965	7.49	2.10	452.996*** a>b>c
	중 ^b	2,931	6.43	2.24	
	하 ^c	708	5.22	2.52	

*** $p < .001$.



* 주: 1) 매우 낮은 삶의 수준: ①, ① 낮은 삶의 수준: ②, ③ 보통: ④, ⑤, ⑥
높은 삶의 수준 ⑦, ⑧ 매우 높은 삶의 수준 ⑨, ⑩

- 2) 본 그림은 최창욱 외(2018)의 [그림 IV-110]에 2019~2021년도 자료를 추가하여 재작성 하였음.
3) 위의 그래프에는 지면상 삶의 만족도 수준의 '매우 낮음'과 '낮음' 수치를 합하여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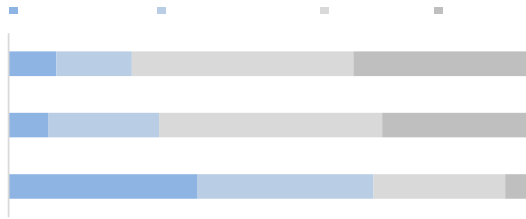
그림 III-6-21. 삶의 만족도(연도별 추이)

삶의 만족도에 대한 교급별 추이를 살펴보면 위의 그림과 같다. 전체적으로 높은 삶의 수준은 조금씩 감소하는 반면 낮은 삶의 수준은 미세하게 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높은 삶의 수준이 중, 고등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중학생의 경우 연도별로 크게 변화가 있지 않지만 낮은 삶의 수준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고등학생은 낮은 삶의 수준이 다른 교급에 비해 높으며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⑤ 자아존중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세 문항을 이용하여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을 파악하였다. 본인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있어서 76.4%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71.1%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지에 대해서는 70.1%의 경우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주: 단위: %

그림 III-6-22. 자아존중감 항목별 조사결과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첫 번째 문항인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를 이용하여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배경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평균 3.04)은 여학생(평균 2.97)에 비하여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더 많았으며, 중학생(평균 3.04)은 고등학생(평균 3.00)과 초등학생(평균 2.98)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가족 유형의 경우 양부모가정(평균 3.03)의 자녀는 한부모가정(평균 2.86)과 조손가정(평균 2.98)의 자녀에 비해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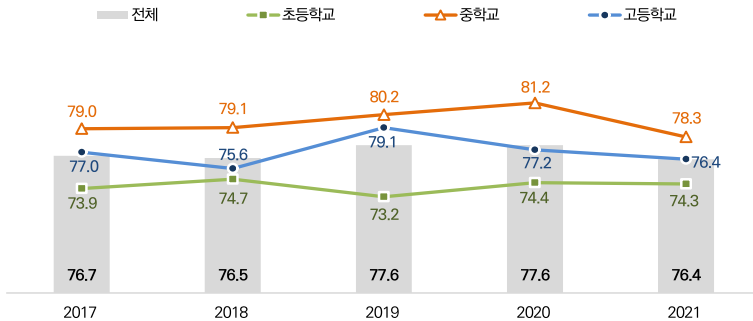
표 III-6-42. 자아존중감_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01(0.92)	9.2	14.5	42.6	33.8	100.0(8,647)	84.397***
성별	남학생	3.04(0.95)	10.3	11.8	41.2	100.0(4,469)	
	여학생	2.97(0.89)	8.0	17.3	44.0	100.0(4,178)	
학교급	초등학교	2.98(1.02)	14.0	11.7	36.9	100.0(2,900)	183.846***
	중학교	3.04(0.85)	6.3	15.3	45.8	100.0(2,858)	
	고등학교	3.00(0.88)	7.3	16.3	45.0	100.0(2,889)	
고교 유형	일반계고	3.05(0.85)	6.2	15.5	45.7	100.0(2,303)	29.769***
	특성화계고	2.84(0.95)	11.4	19.8	42.4	100.0(58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3(0.92)	8.9	13.8	42.9	100.0(7,720)	76.896***
	한부모가정	2.86(0.92)	9.0	23.0	41.0	100.0(655)	
	조손가정	2.98(1.01)	13.6	10.3	40.7	100.0(87)	
	기타	2.80(1.12)	21.6	9.2	36.7	100.0(132)	
학업 성적	상	3.20(0.91)	8.5	8.1	38.5	100.0(3,023)	408.045***
	중	2.97(0.91)	9.4	15.2	44.7	100.0(3,678)	
	하	2.79(0.90)	9.9	23.0	45.2	100.0(1,902)	
경제적 수준	상	3.11(0.92)	8.9	10.7	40.6	100.0(4,957)	313.628***
	중	2.91(0.90)	9.3	17.7	46.0	100.0(2,937)	
	하	2.68(0.90)	11.3	27.5	42.8	100.0(711)	

*** $p < .001$.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문항에 대한 응답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중학생은 초등, 고등학생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2021년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중학생과 격차를 점점 좁혀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II-6-23. 자아존중감_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연도별 추이)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두 번째 문항인 “나는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항에 대한 응답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남학생(평균 2.96)은 여학생(평균 2.87)에 비해 좋은 자질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초등학생(평균 3.02)은 중학생(평균 2.87)과 고등학생(평균 2.86)보다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일반계고 학생(평균 2.90)은 특성화계고 학생(평균 2.70) 보다, 조손가정(평균 3.03)의 자녀는 양부모 가정(평균 2.93)과 한부모가정(평균 2.72)의 자녀보다 좋은 자질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은 상위권에 속할수록 좋은 자질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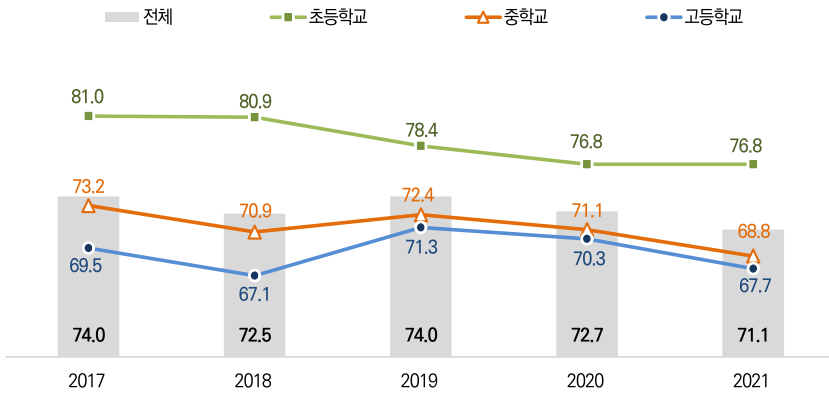
표 III-6-43. 자아존중감_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2(0.89)	7.6	21.3	42.9	28.2	100.0(8,626)	93.763***
성별							
남학생	2.96(0.91)	8.6	17.8	42.5	31.1	100.0(4,460)	93.763***
여학생	2.87(0.86)	6.6	25.0	43.4	25.0	100.0(4,166)	
학교급							88.478***
초등학교	3.02(0.88)	7.1	16.1	44.2	32.6	100.0(2,874)	
중학교	2.87(0.88)	7.6	23.6	43.1	25.7	100.0(2,862)	
고등학교	2.86(0.90)	8.2	24.1	41.4	26.3	100.0(2,889)	26.032***
고교 유형							
일반계고	2.90(0.89)	7.1	23.6	41.7	27.6	100.0(2,302)	26.032***
특성화계고	2.70(0.94)	12.7	25.9	40.3	21.0	100.0(587)	
가족 유형							56.396***
양부모가정	2.93(0.88)	7.3	20.8	43.3	28.7	100.0(7,703)	
한부모가정	2.72(0.91)	10.2	29.2	39.1	21.5	100.0(655)	
조손가정	3.03(0.89)	7.8	14.0	45.3	32.9	100.0(87)	
기타	2.80(1.03)	15.7	17.0	38.7	28.6	100.0(128)	541.561***
학업 성적							
상	3.16(0.84)	5.5	12.5	42.5	39.6	100.0(3,013)	
중	2.87(0.87)	7.3	22.6	45.5	24.6	100.0(3,665)	541.561***
하	2.61(0.90)	11.7	32.6	38.8	17.0	100.0(1,904)	
경제적 수준							374.445***
상	3.06(0.86)	6.1	16.5	43.3	34.2	100.0(4,946)	
중	2.78(0.88)	8.9	25.7	44.2	21.2	100.0(2,925)	
하	2.52(0.90)	13.0	36.5	35.5	15.0	100.0(712)	

*** $p < .001$.

“나는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항의 응답에 따른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다른 교급에 비해 높은 격차로 우위에 있지만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집단의 수준은 유사한 수치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II-6-24. 자아존중감_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연도별 추이)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세 번째 문항인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문항 응답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여학생(평균 2.09)은 남학생(1.88)에 비하여 스스로 자랑스러울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평균 2.11)과 중학생(평균 2.05)은 초등학생(평균 1.79)에 비하여 낮은 자존감을 보였으며 한부모가정(평균 2.24)의 자녀는 다른 가정의 자녀에 비해 자랑스러울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학업성적이 하위권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스스로 자랑스러울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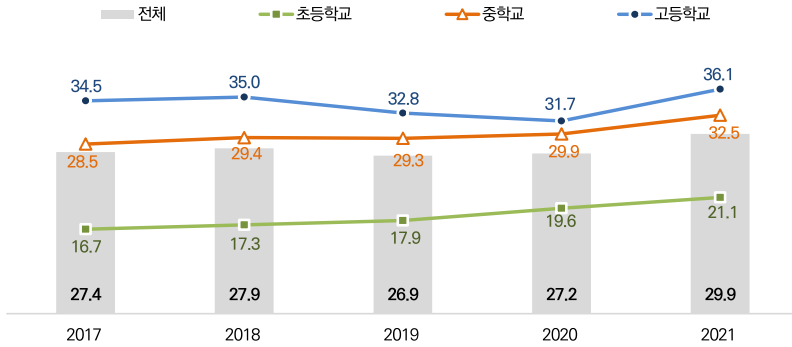
표 III-6-44. 자아존중감_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98(0.89)	36.2	33.9	25.3	4.6	100.0(8,658)		
성별	남학생	1.88(0.87)	40.3	35.3	20.6	3.9	100.0(4,479)	139.020***
	여학생	2.09(0.91)	31.8	32.5	30.3	5.4	100.0(4,179)	
학교급	초등학교	1.79(0.86)	46.2	32.7	17.4	3.7	100.0(2,905)	247.883***
	중학교	2.05(0.88)	31.8	35.6	27.9	4.6	100.0(2,863)	
	고등학교	2.11(0.90)	30.4	33.6	30.5	5.6	100.0(2,889)	
고교 유형	일반계고	2.11(0.90)	30.3	34.2	29.8	5.7	100.0(2,302)	3.384
	특성화계고	2.12(0.91)	30.7	31.3	33.2	4.9	100.0(58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96(0.89)	36.9	34.2	24.6	4.3	100.0(7,728)	67.942***
	한부모가정	2.24(0.92)	25.7	31.6	35.5	7.2	100.0(658)	
	조손가정	1.90(0.91)	42.2	30.8	22.4	4.6	100.0(88)	
	기타	1.85(0.90)	44.2	31.8	19.1	4.9	100.0(132)	
학업 성적	상	1.72(0.82)	49.2	33.2	14.7	3.0	100.0(3,027)	665.260***
	중	2.01(0.86)	33.3	36.2	26.8	3.6	100.0(3,683)	
	하	2.36(0.91)	21.1	30.9	39.1	8.9	100.0(1,905)	
경제적 수준	상	1.81(0.84)	43.6	34.6	19.0	2.8	100.0(4,964)	556.976***
	중	2.15(0.90)	28.3	34.7	31.2	5.9	100.0(2,938)	
	하	2.51(0.91)	17.1	26.5	44.8	11.6	100.0(713)	

*** $p < .001$.

“나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문항 응답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의 경우 다른 교급에 비해 자랑스러운 것이 없다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에 비하여 자랑스러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다소 높은 편이며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II-6-25. 자아존중감_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연도별 추이)

자아존중감 전체 문항의 평균을 이용하여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평균은 2.98이었으며 표준편차는 0.74로 분석되었다. 남학생(평균 3.04)은 여학생(평균 2.92)에 비해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았으며 초, 중, 고등학생 중 초등학생의 자존감이 평균 3.0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 유형에 있어서 조손가정(평균 3.03)과 양부모가정(평균 3.00)의 경우가 한부모가정(평균 2.78)에 속한 경우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였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에 속하는 경우들의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6-45. 자아존중감의 배경변인별 차이

(단위 : 명, 점)

구분	전체(N)	자아존중감			
		M	SD	t/F(Scheffé)	
전체	8,668	2.98	.74		
성별	남학생	4,481	3.04	.72	7.966***
	여학생	4,187	2.92	.74	
학교급	초등학교 ^a	2,914	3.07	.71	35.529*** a>b, a>c
	중학교 ^b	2,864	2.95	.74	
	고등학교 ^c	2,890	2.92	.75	
고교 유형	일반계고	2,303	2.94	.75	4.042***
특성화계고	587	2.81	.74		

구분	전체(N)	자아존중감			
		M	SD	t/F(Scheffé)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a	7,737	3.00	.73	18.765*** a>b>c
	한부모가정 ^b	659	2.78	.76	
	조손가정 ^c	88	3.03	.71	
	기타 ^d	132	2.98	.77	
학업 성적	상 ^a	3,032	3.21	.69	342.485*** a>b>c
	중 ^b	3,687	2.94	.70	
	하 ^c	1,906	2.68	.74	
경제적 수준	상 ^a	4,970	3.12	.70	266.458*** a>b>c
	중 ^b	2,942	2.85	.72	
	하 ^c	713	2.56	.75	

*** $p < .001$.

⑥ 고민거리 대화상대

조사 대상자를 통해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누구와 대화 또는 상담하는지에 대해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어머니와 대화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구(34.8%)와 많이 대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대화할 대상이 없다는 응답이 12.0%로 응답률 3순위로 분석되었는데, 비공식적 자원을 제외하고 공식적인 부분에서 대응해야 할 공백으로 보인다.

위 결과를 배경변인에 따라 분석한 결과, 성별, 학교급, 가족 유형,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친구(31.1%)보다는 어머니(40.1%)와 더 많이 대화했지만, 여학생은 어머니(35.4%)보다 친구(38.7%)와 더 많이 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있어서 초등학생은 어머니(47.4%)와 고민거리를 상담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39.2%와 42.3%로 친구와 고민거리를 더 많이 나누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은 어머니와 고민거리에 대해 많이 대화하는 반면, 한부모가정의 경우는 친구(38.5%)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와 고민에 관해 대화하며 반대로 수준이 낮을수록 친구와 많이 대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6-46. 고민거리 대화상대

(단위 : %(명))

구분	없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담임선생님	학교상담선생님	친구	이웃/친척	청소년상담기관선생님	기타	전체 (N)	χ^2	
전체	12.0	5.0	37.9	6.5	0.6	0.4	34.8	1.2	0.3	1.5	100.0(8,421)	173.360***	
성별	남학생	11.8	7.1	40.1	5.4	1.0	0.4	31.1	1.1	0.4	1.6		100.0(4,324)
	여학생	12.2	2.7	35.4	7.6	0.1	0.4	38.7	1.2	0.2	1.4		100.0(4,096)
학교급	초등학교	10.7	6.3	47.4	6.9	0.2	0.4	23.1	2.1	0.4	2.5	100.0(2,834)	387.773***
	중학교	13.1	4.6	33.7	6.3	0.4	0.4	39.2	1.0	0.3	1.1	100.0(2,792)	
	고등학교	12.3	4.0	32.3	6.2	1.1	0.3	42.3	0.5	0.3	0.7	100.0(2,79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1.8	4.7	38.8	6.4	0.5	0.4	34.8	1.0	0.3	1.4	100.0(7,527)	107.393***
	한부모가정	14.6	7.5	26.7	6.0	1.4	0.5	38.5	2.8	0.5	1.3	100.0(634)	
	기타	14.7	7.2	31.5	8.3	2.1	0.4	28.1	3.6	0.6	3.5	100.0(129)	
학업 성적	상	9.7	5.8	46.2	6.2	0.5	0.2	28.5	1.3	0.2	1.4	100.0(2,970)	272.215***
	중	12.3	4.5	36.5	7.2	0.8	0.3	35.0	1.2	0.4	1.8	100.0(3,567)	
	하	15.4	4.5	26.6	5.6	0.3	0.7	44.6	0.9	0.2	1.0	100.0(1,844)	
경제적 수준	상	9.3	6.1	43.3	5.9	0.5	0.4	31.5	1.1	0.2	1.6	100.0(4,826)	281.914***
	중	14.6	3.4	32.2	7.5	0.8	0.3	38.2	1.3	0.5	1.3	100.0(2,864)	
	하	20.1	3.7	21.9	6.5	0.5	0.9	44.0	0.9	0.2	1.2	100.0(692)	

*** $p < .001$.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1) 아동·청소년복지 예산

①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 간 비교

OECD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이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어느 수준인지를 검토하였다. 2018년 OECD 주요국가의 아동빈곤율(child poverty rate)은 국가 간에 큰 격차를 보였다.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은 12.3%로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가복지가 발달한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3.5%), 덴마크(4.7%) 등은 아동빈곤율이 5% 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보험 중심의 조합주의 복지체제 국가인 프랑스(11.7%)와 독일(11.1%)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의 아동빈곤율을 보였다. 자유주의 복지체제로 평가받는 미국(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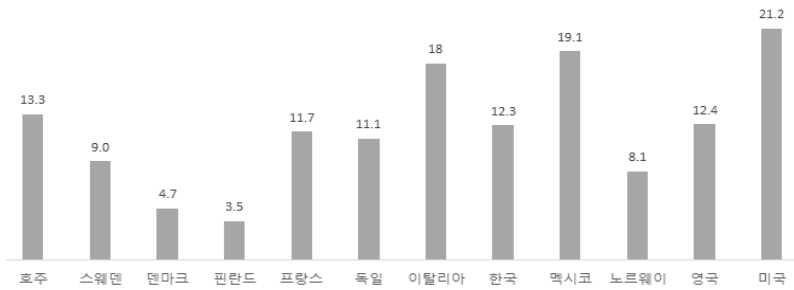
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이탈리아(18.0%), 멕시코(19.1%) 등도 높은 수준의 아동빈곤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6-47. 국가별 아동빈곤율

(단위: %)

국가명	호주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동빈곤율	13.3	9.0	4.7	3.5	11.7	11.1
국가명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영국	미국
아동빈곤율	18.0	12.3	19.1	8.1	12.4	21.2

* 출처: OECD. stat. Family database. Child poverty rate. <https://stats.oecd.org>. 2021년 10월 13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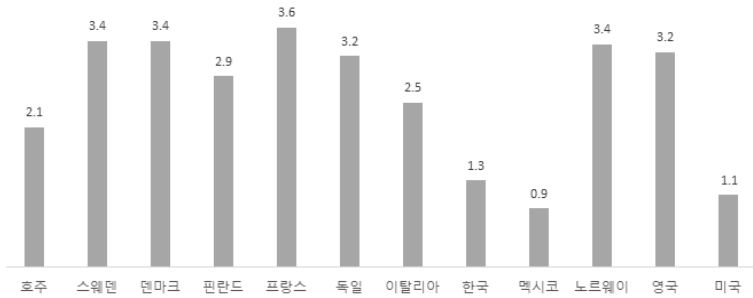
* 출처: OECD. stat. Family database. Total public social expenditure on families as a % of GDP <https://stats.oecd.org/> 2021년 10월 13일 인출.

* 주: 단위: %

그림 III-6-26. 아동빈곤율 국가 간 비교(2018년 기준)

아동빈곤과 관련한 GDP대비 공적 가족지출 비중을 비교하였다. 국가복지가 발달한 북유럽 국가들은 관련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유럽대륙국가인 프랑스 독일 등도 북유럽국가와 유사하며 전반적으로 3% 이상으로 지출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지출 비중은 1.3%로서, 제시된 국가들 중에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다수의 복지국가들은 3% 이상의 지출 비중을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미국(1.1%), 멕시코(0.9%)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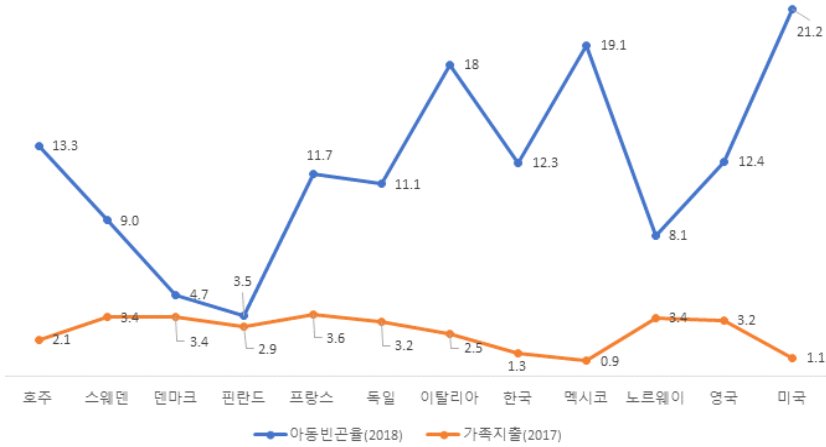
* 출처: OECD. stat. Family database. Child poverty rate. <https://stats.oecd.org>. 2021년 10월 13일 인출.

* 주: 단위: %

그림 III-6-27. GDP 대비 공적 가족지출 비중 국가 간 비교(2018년 기준)

가족 관련 공적지출은 아동빈곤율을 낮춘다는 연구결과에 따라(류연규, 백승호, 2011), 아동빈곤율과 공적 지출 간 관계를 확인하고자 OECD에서 제시한 가족공적지출 비중(GDP)과 아동빈곤율을 한 그림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한 아동빈곤율이 높은(10% 이상) 국가들은 GDP대비 가족지출이 3.0% 미만의 경향을 보였다. 아동빈곤율이 10% 이상인 국가인 호주(13.3%), 이탈리아(18.0%), 미국 (21.2%)등은 가족지출이 3.0% 미만으로 나타났고, 아동빈곤율이 10% 미만인 덴마크(4.7%), 핀란드(3.5%), 스웨덴(9.0%) 등은 가족지출비중이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아동빈곤율이 12.3%이며, 가족지출은 1.3%였다. 따라서 가족공적지출과 아동빈곤율은 관계가 있는 것을 재확인했으며, 우리나라의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에 의한 아동빈곤율의 차이도 유사한 관계임을 보여준다.



* 주: 1) 지출과 정책효과 간 시간차이는 고려하지 않음(단위: %).
 2) [그림 III-6-26]과 [그림 III-6-27]의 수치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

그림 III-6-28. 국가별 아동빈곤율과 가족지출 간의 관계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수준

① 취약계층 아동 현황(빈곤율 포함)

가. 아동빈곤율

아래 표는 우리나라의 상대적 아동빈곤율(중위소득대비 50%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으로 세분화되어있다.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상대적 빈곤은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정책에 의해 일부 완화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시장소득에 의한 전체 빈곤율은 2016년 20.7%에서 2019년 21.4%로 0.7% 증가했지만, 동 기간 경상소득 기준 전체 빈곤율은 2016년 17.9%에서 2019년 17.0%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의 차이는 2016년 2.8%에서 2019년 4.4%로 차이가 확대되었다.

표 III-6-48. 아동빈곤율(2016~2019년)

(단위 : %)

구분	중위소득 50% 기준 전체 빈곤율			중위소득 50%기준 상대적 아동빈곤율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2016	20.7	17.9	17.6	15.5	15.2	15.2
2017	20.8	17.5	17.3	14.5	13.9	14.2
2018	21.0	16.9	16.7	13.1	12.3	12.3
2019	21.4	17.0	16.3	12.1	10.8	10.6

* 출처: 이현주, 박형준, 이정윤(2020). 2020 빈곤통계연보 <표 3-11> 아동빈곤율(중위소득지출) p.53.

* 주: 1) 빈곤율을 조사하는 원자료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변경되어 2016년 이후 수치부터 제시하였다(이현주 외, 2020).

2) 시장소득은 시장(노동, 금융, 서비스 시장 등)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합계, 경상소득은 시장소득+연금·정부지원금등 공적이전소득임.

상대적 아동빈곤율은 전체 빈곤율에 비해 낮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장소득기준으로 상대적 아동빈곤율은 2016년 15.5%에서 2019년 12.1%로 감소했지만, 경상소득기준에는 2016년 15.2%에서 2019년 10.8%로 4.4% 변화되었다.

반면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경상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2019년 시장소득기준 아동빈곤율은 12.1%이지만, 경상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은 10.8%로서 차이가 0.3%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사회수당과 같은 현금급여 지급기간과 지급액의 차이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신현중, 2008).

표 III-6-4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2013~2020년)

(단위 : 명, %)

연도	0~4세	5~9세	10~19세	수급자 전체
2013	20,871	37,804	217,593	1,258,582
	1.7	3.0	8.6	100.0
2014	20,428	34,928	196,479	1,237,386
	1.7	2.8	7.9	100.0
2015	24,242	73,176	353,528	1,554,484
	1.6	4.7	11.4	100.0
2016	21,988	73,282	343,420	1,539,539
	1.4	4.8	11.2	100.0

연도	0~4세	5~9세	10~19세	수급자 전체
2017	19,886	65,139	301,851	1,491,650
	1.3	4.4	10.1	100.0
2018	21,744	64,948	281,224	1,653,781
	1.3	3.9	8.5	100.0
2019	31,570	101,611	222,850	1,792,012
	1.8	5.7	12.4	100.0
2020	27,383	75,857	122,728	2,046,213
	1.3	3.7	6.0	100.0

* 출처: 보건복지부(2017a, 2018a, 2019a, 2020b, 2021i). 2016년~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주: 수급자 전체는 사실수급자(2016년도 91,075명)를 제외한 일반수급자 전체를 말함. 2019년의 구분은 영유아기 0~5세), 학령기(6~11세), 청소년기(12~19세)로 구분되어, 본 표에서 영유아기는 0~4세, 학령기는 5~9세, 청소년기는 10~19세에 기입함.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연령별로 구분한 결과, 0~4세와 5~9세 학령전기의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9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많으며, 연도에 따라 수급자수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10~19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13년 약 21만 명에서 2014년 19만 명으로 감소했다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에는 급격히 감소하여 약 12만 명으로 최근 7년간 최소로 나타났다. 0~9세의 수급자 수가 큰 변동이 없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수급자 수 변화는 지원정책 효과로 인한 것인지 2020년의 COVID-19와 같은 외부효과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가족은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부자가족으로 보호자가 경제활동과 자녀돌봄의 이중부담으로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나 돌봄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수와 지원 대상을 파악하는 것은 취약계층을 확인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부모가구 수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한부모가구 수는 2015년 2,052천 가구에서 2019년 2,061천 가구로 제시되었다. 그중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전체 한부모가구 수

대비 9%의 비중을 보이며, 2015년 9.4%에서 2019년 8.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은 2015년 6.4%에서 2019년 2.5%로 크게 감소하였다. 정책지원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은 전체 한부모가구 수 대비 2015년 15.7%에서 11.4%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I-6-50. 한부모가구 비율(2015~2019년)

(단위 : 천가구, %)

구분	한부모 가구수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소계
2015	2,052(100)	192(9.4)	131(6.4)	323(15.7)
2016	1,995(100)	188(9.4)	62(3.1)	250(12.5)
2017	2,000(100)	181(9.1)	57(2.9)	238(11.9)
2018	2,031(100)	184(9.1)	56(2.8)	240(11.8)
2019	2,061(100)	183(8.9)	51(2.5)	234(11.4)

* 출처: 사회보장위원회(2020). 그림으로 보는 사회통계 2020.

* 주: 한부모가구는 일반가구 중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조사 기간 내 한부모가족의 가구 구성은 모자 가족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비중의 변화도 큰 변동이 없었다. 각 가구별 비중은 모자 가족이 77%~78%, 부자가족은 2016년 22.2%에서 2019년 20.8%로 20~22%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III-6-51. 가구형태별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현황(2016~2019년)

(단위 : 세대, 명, %)

구분		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2016	수	187,841	468,414	145,258	362,674	41,627	103,966	956	2,311
	비율	100.0	-	77.3	-	22.2	-	0.5	-
2017	수	181,023	449,469	141,207	350,674	38,880	96,575	936	2,220
	비율	100.0	-	78.0	-	21.5	-	0.5	-
2018	수	182,731	452,341	142,830	353,658	38,979	96,522	922	2,161
	비율	100.0	-	78.5	-	21.3	-	0.5	-
2019	수	182,606	453,045	143,740	356,895	37,969	94,064	897	2,086
	비율	100.0	-	78.7	-	20.8	-	0.5	-

* 출처: 여성가족부(2021b).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15.

* 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동시보장결정가구 포함)

②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가. 취약계층 보호·양육시설 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부의 보호 및 양육시설 지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관련 예산은 5,300백만원으로 한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 2021년 상승세를 보였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예산은 26,746백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예산 역시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가정위탁아동의 상해보험료 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지원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예산은 940백만원으로 책정되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센터와 월 지원금 모두 증가하였는데, 개소수는 21개소, 지원금은 월 50만 원 상승하였으며 그 결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예산은 전체적으로 5,700백만원 상승하여 148,600백만원으로 책정되었다.

표 III-6-52. 취약계층 보호·양육시설 예산(2012~2021년)

(단위 : 백만 원)

연도	사업명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가정위탁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012	7,600	6,913	960	1,521	78,700 (3,500개소, 월 395만원)
2013	15,261	7,259	1,014	1,369	90,500 (3,742개소, 월 420만원)
2014	7,630	7,407	1,024	1,232	97,900 (3,989개소, 월 433만원)
2015	7,630	8,623	1,021	1,232	103,500 (4,113개소, 월 443만원)
2016	7,630	13,714	1,000	1,232	108,500 (4,113개소, 월 458만원)
2017	6,867	16,476	1,012	1,241	112,100 (4,113개소, 월 473만원)
2018	6,524	19,132	1,021	1,285	122,600 (4,124개소, 월 516만원)
2019	6,198	21,163	3,218	1,500	126,000 (4,135개소, 월 529만원)

사업명 연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가정위탁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020	5,088	22,793	3,028	1,044	142,900 (4,148개소, 월 569만원)
2021	5,300	26,746	3,164	940	148,600 (4,169개소, 월 619만원)

* 출처: 보건복지부(각 연도). 2012~2019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2016, 2017b, 2018b).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2014~2015). 각 연도 복권기금운용계획.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2017~2018). 각 연도 기금사업활동.
 보건복지부(2019b).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복권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bokgwon.go.kr/fund/02_01.jsp에서 2021년 10월 14일 인출.
 보건복지부(2020e).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27.
 보건복지부(2020f).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일반회계). p.428
 보건복지부(2021d).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20, 84.
 보건복지부(2021e).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일반회계). p. 128, 133.

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 명시된 대상자에게 학습, 문화, 심리치료,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20년 3,690개교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사업학교 1,762개교, 연계학교 1,928개교로 구성된다. 2020년 사업예산 지원액은 1,377억원으로 작년 대비 대상 학교수는 증가, 지원예산은 소폭 감소하였다.

표 III-6-5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2006~2020년)

구분	대상지역	대상지역	학교 수 ¹⁾ (초·중·고)	학생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지원액 (교부금/대응투자)
2006	30지역 (기존15, 신규15)	인구 25만 이상	163교 (초99, 중61, 고3)	153,175명 (16,719명)	359억 원 (209억 원, 150억 원)
2007	60지역 (기존30, 신규30)	인구 25만 이상	322교 (초187, 중132, 고3)	326,826명 ²⁾ (35,110명)	642억 원 (374억 원, 268억 원)
2008	60지역 (기존60)	인구 25만 이상	322교 (초187, 중132, 고3)	304,464명 (27,904명)	514억 원 (248억 원, 266억 원)
2009	100지역 (기존60, 신규40)	모든 市	538교 (초304, 중230, 고4)	490,081명 (40,275명)	866억 원 (504억 원, 282억 원)
2010	100지역 (기존60, 신규40)	모든 市	534교 (초296, 중234, 고3)	452,467명 (35,725명)	810억 원 (310억 원, 417억 원)
2011	114개 교육지원청	개별학교	1,356교 (초670, 중681, 고5)	1,086,434명 (71,853명)	1,566억 원 (1,188억 원 367억 원)

구분	대상지역	대상지역	학교 수 ¹⁾ (초·중·고)	학생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지원액 (교부금/대응투자)
2012	143개 교육지원청	개별학교	1,801교 (초906, 중831, 고64)	1,302,250명 (72,881명)	1,663억 원 (1,440억 원 223억 원)
2013	148개 교육지원청	개별학교	1,833교 (초894, 중831, 고63)	1,247,836명 (65,291명)	1,493억 원 (1,172억 원 321억 원)
2014	144개 교육지원청	개별학교	1,828교 (초903, 중880, 고65)	1,256,387명 (60,056명)	1,404억 원 (1,297억 원 107억 원)
2015	142개 교육지원청	개별학교	1,823교 (초890, 중861, 고70)	1,186,303명 (54,357명)	1,286억 원 (1,232억 원 54억 원)
2016	-	개별학교	1,795교	-	1,286억
2017	-	개별학교	1,806교	-	1,352억
2018	-	개별학교	3,573교 (사업학교 1,720교, 연계학교 1,853교)	-	1,426억
2019	-	개별학교	3,578교 (사업학교 1,749교 연계학교 1,829교)	-	1,392억
2020	-	개별학교	3,690개교 (사업학교 1,762교 연계학교 1,928교)	-	1,377억

* 출처: 여성가족부(2015, 2016b, 2017, 2018b, 2019b). 2015~2019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2020a). 2020 청소년백서. p.375.

- * 주: 1) 유치원 원아를 제외한 초·중·고등학생에 한함.
2) 2007년 학생 수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학생 수 포함.

다. 드림스타트 사업

2008년 정부 국정과제로 확대되기 시작한 드림스타트 사업은 사업 초반 16개 지역에서만 실시하였지만 2015년 이후 229개 모든 시·군·구 지역에서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지원대상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a). 2020년 지원대상 아동의 수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여 156,439명이었으며 가구 수로는 102,459가구로 증가하였으나 사업예산은 오히려 551억 원으로 126억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6-54.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현황 및 이용 아동 수(2007~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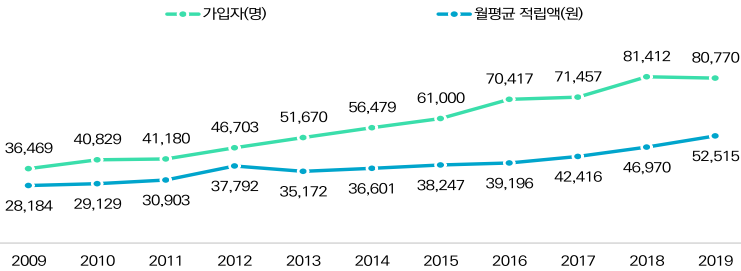
(단위 : 억원, 명, 가구)

구분	시·군·구 (사업실시 단위)	사업예산 (억원)	아동 수 (명)	가구 수 (가구)	구분	시·군·구 (사업실시 단위)	사업예산 (억원)	아동 수 (명)	가구 수 (가구)
2007	16	50	3,769	2,465	2014	220	632	107,127	66,551
2008	32	98	9,901	6,516	2015	229	658	125,562	80,102
2009	75	225	26,208	17,141	2016	229	668	134,853	86,681
2010	101	301	32,641	21,699	2017	229	668	144,289	93,298
2011	131	372	44,651	29,332	2018	229	677	150,052	97,739
2012	181	462	65,724	42,387	2019	229	551	156,439	102,459
2013	211	576	95,133	61,630					

* 출처: 여성가족부(2015, 2016b, 2017, 2018b, 2019b). 2015~2019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2020a). 2020 청소년백서. p.215.

라.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2009년 디딤씨앗통장으로 명칭 변경) 사업은 빈곤의 대물림 방지와 저소득층 아동 자립의지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여성가족부, 2020a). 2019년 기준으로 디딤씨앗통장 가입자는 80,770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이다. 월평균 적립액은 52,515원으로 사업 초기 28,184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상승된 액수이며 적립금 총 누계는 4,570억 원이다. 2019년 가입자의 수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사업 시작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월평균 적립액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여성가족부(2015, 2016b, 2017, 2018b, 2019b). 2015~2019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2020a). 2020 청소년백서. p.221.

* 주: 본 그림은 <표 III-6-55>에 해당하는 내용을 도식화한 것임(단위: 명, 원).

그림 III-6-29. 디딤씨앗통장 가입자 및 월평균 적립액 추이

표 III-6-55. 디딤씨앗통장 저축 현황(2009~2019년)

(단위 : 명, 원, 억원)

연도	가입자(명)	월평균 적립액 (원)	적립금 누계(억 원)		
			아동	정부	계
2009	36,469	28,184	258	223	481
2010	40,829	29,129	377	308	685
2011	41,180	30,903	510	409	919
2012	46,703	37,792	670	527	1,197
2013	51,670	35,172	854	660	1,514
2014	56,479	36,601	1,061	807	1,868
2015	61,000	38,247	1,296	969	2,265
2016	70,417	39,196	1,562	1,150	2,712
2017	71,457	42,416	1,861	1,369	3,230
2018	81,412	46,970	2,229	1,624	3,853
2019	80,770	52,515	2,665	1,906	4,570

* 출처: 여성가족부(2018b, 2019b). 2018~2019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2020a). 2020 청소년백서. p.221.

* 주: 만기(18세) 후 통장보유 아동 제외.

6) 소결

5장은 대분류 중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영역이며 그에 대한 중분류로서 장애와 생존, 보건, 신체 및 정신 건강, 사회보장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영역구성에 따라 특수교육, 사망률 및 사망원인, 범죄피해, 보건 지원 및 기관, 취약계층, 약물사용, 운동과 수면, 자살과 우울감, 복지서비스 등에 대해 다루었다.

장애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원에서 있어서 먼저 특수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특수학교 수는 전년 대비 5개교가 증가한 182개이며, 특수학급의 수는 556개 늘어난 11,661개로 나타났다. 학생 수는 장애영아와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하여 총 95,420명으로 전년 대비 2,462명 증가하였다. 교원의 수는 전년 대비 1,372명 증가한 22,145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 특수교육 대상자 총 95,420명 중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학생은 27.9%(26,615명)이었으며 나머지 72.1%(68,805명)는 일반학교에 배치된 것으

로 조사되었다. 2020년 졸업자 총 7,339명 중 특수학교 졸업자는 2,386명이었으며 그 중 57.3%(1,366명)는 상급학교에 진학했으며 6.3%(64명)는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을 졸업한 학생 총 3,796명 중 44.9%(1,705명)는 진학을 하였으며 34.2%(716명)는 취업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일반학급 졸업자는 총 1,157명인데 그 중 57.4%(664명)가 상급학교 진학, 13.2%(65명)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생존 및 발달과 관련하여 사망률을 먼저 살펴보면, 2020년도 영아 사망률은 천 명당 2.5명(남아 2.8명/여아 2.2명)이었으며 그 중 신생아 사망률은 천 명당 1.3명(남아 1.4명/여아 1.1명), 신생아 후기사망률은 천 명당 1.2명(남아 1.4명/여아 1.0명)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도의 사망률은 0세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24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4세는 12.5명, 5~9세 6.2명, 10~14세 8.8명, 15~19세 22.1명, 20~24세 34.2명으로 조사되었다. 사고에 의한 아동·청소년 사망률에 대한 통계는 인구 10만 명당 0세 20.0명, 1~4세 3.5명, 5~9세 2.4명, 10~14세 3.7명, 15~19세 15.6명, 20~24세 24.8명으로 조사되었다. 사고 사망에 따른 외인은 0세의 경우 타살이 10만 명당 6.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9세의 경우 운수사고(0.7명)와 타살(0.6명)이 가장 많은 외인으로 작용하였다. 10~14세는 2.1명, 15~19세 10.4명, 20~24세 19.6명으로 자살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많았다.

안전과 관련하여 각종 범죄 피해율과 지역사회 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범죄피해를 강력범죄, 절도, 폭력범죄 등에 따라 정리한 결과, 먼저 2020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등록된 만 20세 이하의 전체 청소년 9,401,514명 중 1.0%인 94,371명이 각종 범죄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자 아동·청소년의 경우 총 8,847,451명 중 1.1%(53,491명)가, 여성 아동·청소년의 경우 4,554,063명 중 0.9%(40,880명)가 범죄피해를 당하였다. 피해 받은 범죄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통화, 사기, 횡령 등의 지능

범죄 피해자가 17,4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폭력범죄의 피해(13,481건)가 높게 나타났다. 여자 아동·청소년의 경우 지능범죄 피해가 12,60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범죄(6,645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가에 대해 전체적으로 86.8%가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3.2%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 가족 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78.7%는 안전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나머지 21.3%는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규모를 제외한 나머지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보건서비스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먼저 보건 서비스 인프라의 구축 현황을 보건교사, 의료기관, 각종 관련 기관의 현황을 통해 모니터링 하였다. 2020년 전체 개설 학교 수는 11,892개교이며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8,381개교로서 배치율은 70.5%이다. 아동·청소년에게 특화된 보건서비스를 제공, 지원하는 기관의 유형은 크게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 달빛어린이병원이 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경우 현재 2기 사업이 진행 중이며 전국 10개소의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운영 중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등 총 8곳이 운영 중이며 현재 3곳이 추가적으로 선정되어 운영될 예정에 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2014년 8개의 병원으로 시작하여 현재 27개소가 설치 운영 중이다(보건복지부, 2014).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2021년 1호 건립을 시작으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d). 장애아동이 거주지역 안에서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사업은 집중재활치료와 의료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서비스이다(보건복지부, 2018d).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청소년상담복

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Wee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시·도 센터 17개소, 시·군·구 센터 219개소로 총 236개소가 설치 및 운영되어 93.5%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Wee프로젝트의 경우, 지역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Wee클래스는 2020년 기준 7,63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Wee센터는 일반형 204개소가 운영 중이다. Wee스쿨 15개교까지 전체적으로 총 7,879개소의 Wee프로젝트가 운영 중이다.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광역단위 16개소, 기초단위 241개소, 기본단위 2개소로 총 259개소의 센터가 17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자살예방센터는 서울 2개소, 인천과 충남 1개소, 경기 3개소 총 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세종을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에 49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통계, 국민건강통계를 이용하여 취약계층의 보건서비스 이용률을 확인하였다. 2019년 전체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총 208,316명으로 종별로 1종 대상자 95,653명, 2종 대상자 112,663명으로 2종 대상자가 더 많았다. 의료서비스 또는 의료시설 이용이 필요했지만 제공받거나 이용하지 못한 병의원 미치료율은 전체적으로 1.8%인 1,391명이 미치료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최근 6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며 연령별로 15~18세가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9년 치과 미치료율은 9.3%로 병의원 미치료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역시 15~19세의 미치료율이 13.7%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이 “하”인 경우가 16.9%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남용과 관련하여 제16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은 유독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흡연율의 경우 2019년 6.7%였으나 2020년에는 4.4%로 낮아졌다. 음주율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2019년 15.0%에서 2020년 10.7%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의 감소율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탄가스과 본드, 각성제 등 다양한 불법 약물을 습관적으로 사용한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 2020년에는 전체적으로 0.8%로 평년 대비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0.8%, 여학생 0.7%로 모두 전년 대비 0.2~0.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의 경우 본 연구에서 직접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하였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건강한 편에 속한다는 응답은 86.5%였으며 응답 평균은 3.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학교급, 가족 유형, 경제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실천율 조사 결과 교급에 상관없이 주 3회 이상 운동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0.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 1~2회 정도가 25.0%, 월 1~2회 23.0%로 나타났으며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도 21.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면시간에 관해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7.2시간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시간 이상~9시간 미만 수면하는 응답자가 20.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7시간 이상~8시간 미만이 19.0%, 9시간 이상이 18.0%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6시간 이상~7시간 미만 17.9%, 5시간 이상~6시간 미만 15.1%로 나타났으며 5시간 미만 수면하는 대상자가 9.5%로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52.4%가 수면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 가정학습으로 인하여 수면이 부족한 경우가 2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원 및 과외가 16.0%, 인터넷사이트 13.7% 등으로 나타났다. 가정학습(25.7%), 학원 및 과외(16.0%), 야간 자율학습(5.7%) 등 수면부족이 학업으로 인한 경우가 총 47.4%로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체건강 중 중요한 의미를 갖는 비만율의 경우를 조사한 결과 2019년 조사 결과 비만 15.1%, 과체중 10.7%, 저체중 5.4%, 정상체중은 68.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신체적 질환별 유병률은 천식 2.9%(1세~11세)/2.7%(12~18세), 알레르기 비염 24.2%(1세~11세)/28.7%(12~18세), 아토피피부염 11.7%(1세~11세)/15.5%(12~18세), 주의

력결핍장애 0.6%(1세~11세)/0.7%(12~18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신적 건강과 관련하여 자살 생각, 우울감, 행복감, 자아존중감 등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0 사망원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19세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6.5%로 전년 대비 0.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0대 사망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29.9%는 자살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의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대상자의 가장 많은 45.8%가 학업문제 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 20.3%, 가족 간의 갈등 15.9%, 기타 11.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우울감 조사결과 우울감 평균은 1.89점(표준편차 .90)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보면,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31.5%가 그러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28.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31.2%의 대상자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즉, 응답자의 약 30%는 일상생활에서 이유 없는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복한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3.11이었으며 선택문항의 경우 84.1%가 행복하다고 응답하였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업 문제로 인해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24.0%, 화목하지 않은 가정이 10.5%로 높게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 삶의 만족도는 10점을 만점으로 하며 2021년에는 전체 6.9점, 남학생 7.3점, 여학생 6.6점으로 여학생에 비하여 남학생이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매년 반복되는 결과이다.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을 파악한 결과 자아존중감 평균은 3.01(표준편차 .92)이었으며 문항별로 본인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76.4%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71.1%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지에 대해서는 70.1%

의 대상자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누구와 대화 또는 상담하는지에 대해 파악한 결과 어머니와 대화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구(34.8%)와 많이 대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대화할 대상이 없다는 응답이 12.0%로 응답률 3순위로 분석되었는데, 비공식적 자원을 제외하고 공식적인 부분에서 대응해야 할 공백으로 보인다.

중분류 마지막 지표로서,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영역에서는 복지예산 비교, 취약계층 아동 현황, 서비스 제공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였다. 먼저 빈곤율의 경우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은 12.3%로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3.5%), 덴마크(4.7%) 등은 아동빈곤율이 5% 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며, 프랑스(11.7%)와 독일(11.1%)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의 아동빈곤율을 보였으며 미국(21.2%)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아동빈곤율은 전체 빈곤율에 비해 낮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내 아동빈곤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장소득 기준으로 상대적 아동빈곤율은 2016년 15.5%에서 2019년 12.1%로 감소했지만, 경상소득 기준에는 2016년 15.2%에서 2019년 10.8%로 4.4% 변화되었다. 반면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경상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2019년 시장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은 12.1%이지만, 경상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은 10.8%로서 차이가 0.3%에 불과하였다. 아동·청소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10~19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20년에는 급격히 감소하여 약 12만 명으로 최근 7년간 최소로 나타났다. 0~9세의 수급자 수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으로서 한부모가족의 가구 구성은 모자가족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비중의 변화도 큰 변동이 없었다. 가구별 비중은 모자가족이 77~78%, 부자가족은 2016년 22.2%에서 2019년 20.8%로 20~22% 비중을 보이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부의 보호 및 양육시설 지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 예산은 5,300

백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예산은 26,746백만원, 가정위탁지원예산 940백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148,600백만원으로 책정되었다. 교육 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20년 3,690개교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사업학교 1,762개교, 연계학교 1,928개교로 구성되고 2020년 사업예산 지원액은 1,377억 원으로 작년대비 대상 학교수는 증가, 지원예산은 소폭 감소하였다. 드림스타트 2020년 지원대상 아동의 수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여 156,439명이었으며 가구수로는 102,459가구로 증가하였으나 사업예산은 오히려 551억 원으로 126억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기준으로 디딤씨앗통장 가입자는 80,770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이다. 월평균 적립액은 52,515원으로 사업 초기 28,184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상승된 액수이며 적립금 총 누계는 4,570억 원이다.

7.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1) 교육에의 권리

(1) 교육기회 보장 정도

①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대한민국의 교육과 관련된 인권 수준을 나타내 주는 세부지표 중 하나인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아동·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의 재원을 매년 얼마나 투입하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이다. 이는 국제적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교육에 관한 국가의 재원이 OECD 수준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각국의 실질적인 통화가치가 다르므로 각국은 이를 조정하는 화폐단위인 구매력 지수 PPP(Purchasing Power Parity)를 사용하고 있다.

〈표 III-7-1〉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초등교육과정에서 2012년에 OECD 평균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를 넘어서서 PPP로 연간 US\$ 8,811에 달했으며, 공교육비 비율이 26%를 넘어서 OECD 평균보다 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7년 기준 한국의 초등교육과정의 공교육비 비율은 29%로 OECD 평균인 21%보다 8%p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초등교육과정 공공 재원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래의 교육에 투자하여 교육 강국이 되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이 자타가 공인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추이는 중등교육과정(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다. 그러나 고등교육과정(고등학교 이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에 많이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OECD와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로 비판적인 상황이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이 사립대학이 많은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고등교육과정에 대한 공교육비의 투입이 미흡한 것에서 기인함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III-7-1. OECD와 한국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교

(단위 : ppp, %)

구 분		초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		고등교육과정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2000	한국	3,155	21	4,069	27	6,118	40
(2003)	OECD 평균	4,381	19	5,957	25	9,571	42
2005	한국	4,691	22	6,645	31	7,606	36
(2008)	OECD 평균	6,252	21	7,804	26	11,512	40
2010	한국	7,453	26	8,911	31	9,998	35
(2013)	OECD 평균	7,974	23	9,014	26	13,528	41
2012	한국	8,811	28	9,728	30	9,896	31
(2015)	OECD 평균	8,247	22	9,518	25	15,028	41
2013	한국	9,341	29	9,913	30	9,353	29
(2016)	OECD 평균	8,477	22	9,811	25	15,772	41
2014	한국	9,656	29	10,316	31	9,570	28
(2017)	OECD 평균	8,733	22	10,106	25	16,143	40
2015	한국	11,047	31	12,202	35	10,109	29
(2018)	OECD 평균	8,631	22	10,010	25	15,656	38
2016	한국	11,029	30	12,370	33	10,486	28
(2019)	OECD 평균	8,470	21	9,968	25	15,556	38
2017	한국	11,702	29	13,579	33	10,633	26
(2020)	OECD 평균	9,090	21	10,547	24	16,327	36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2016-2019 간추린 교육통계.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0a). 2020 간추린 교육통계. p.54.

* 원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각 년도.

- * 주: 1)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산출식: 「OECD 교육지표 2018」부터 산출 기준 변경
 기준 산출식: {(경상비+자본비)/학생 수}/PPP
 신규 산출식: {(교육기관 직접 지출)/학생 수}/PPP
 2) 「OECD 교육지표 2019」부터 전년도 이월금 및 적립금이 공교육비에서 제외됨(고등교육단계는 「OECD 교육지표 2018」부터 제외)
 3) 「OECD 교육지표 2017」부터 교육단계 구분 없는 프로그램의 지출액을 각 교육단계에 포함하여 공교육비 산출
 4) 공교육비 비율: 국민 1인당 GDP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율
 5) 한국 1인당 GDP는 '00년 US\$ 15,186, '05년 US\$ 21,342, '10년 US\$ 28,829, 2012년 US\$ 32,022, 2013년 US\$ 32,664, 2014년 US\$ 33,632, 2015년 US\$ 35,204, 2016년 US\$ 37,143, 2017년 US\$ 41,001
 6) 한국 PPP(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환율은 2000년 \$1당 731.19원, 2005년 \$1당 788.92원, 2010년 \$1당 823.67원, 2012년 \$1당 860.25원, 2013년 \$1당 871.41원, 2014년 \$1당 870.74원, 2015년 \$1당 870.93원, 2016년 \$1당 862.55원, 2017년 \$1당 871.70원

②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표 III-7-2〉는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10년간(2011~2020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교육적 환경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인데, 2011년부터 이러한 교육환경이 전 교육과정에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치원의 경우 2011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4.6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11.4명으로 개선되었고, 초등학교에서는 같은 조사연도에 각각 17.3명에서 14.2명으로, 중학교에서는 17.3명에서 11.8명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14.8명에서 10.1명으로 감소하여 교육환경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인 교육환경의 개선은 고등학교의 모든 유형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7-2. 교원 1인당 학생 수(2011~2020년)

(단위 :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유치원	14.6	14.5	14.3	13.4	13.4	13.3	12.9	12.3	11.9	11.4
초등학교	17.3	16.3	15.3	14.9	14.9	14.6	14.5	14.5	14.6	14.2
중학교	17.3	16.7	16.0	15.2	14.3	13.3	12.7	12.1	11.7	11.8
고 등 학 교	전체	14.8	14.4	14.2	13.7	13.2	12.9	12.4	11.5	10.6
	일반고	15.8	15.4	15.2	14.6	14.1	13.7	13.1	12.1	11.1
	특목고	11.0	10.3	10.0	9.7	9.3	9.1	8.9	8.6	8.3
	특성화고 자율고	12.5	12.1	12.0	11.6	11.4	11.0	10.6	9.8	9.1
	15.2	14.6	14.3	13.9	13.7	13.5	13.2	12.4	11.5	11.1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0a). 2020 간추린 교육통계. p.16.
김영지 외(2020).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p.444.

* 주: 교원에는 정규 교원(휴직 교원 포함)과 기간제 교원이 포함되며, 퇴직교원과 강사는 제외됨.

〈표 III-7-3〉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통계치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교육환경이 개선되어 교육이 질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크지만, 출생률이 낮아져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표 III-7-3. 학급당 학생 수(2011~2020년)

(단위 :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유치원	20.9	21.6	21.5	19.7	20.0	19.7	19.0	17.9	17.0	16.7
초등학교	25.2	24.3	23.2	22.8	22.6	22.4	22.3	22.3	22.2	21.8
중학교	33.0	32.4	31.7	30.5	28.9	27.4	26.4	25.7	25.1	25.2
고 등 학 교	전체	33.1	32.5	31.9	30.9	30.3	29.3	28.2	24.5	23.4
	일반고	34.7	34.2	33.6	32.4	31.3	30.6	29.3	27.1	24.2
	특목고	28.4	26.7	25.8	25.0	24.4	24.0	24.7	23.1	22.3
	특성화고	28.5	28.0	27.6	26.9	26.4	25.7	23.7	23.0	21.3
	자율고	33.5	32.3	31.5	30.7	30.3	30.2	29.6	28.1	25.5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0a). 2020 간추린 교육통계. p.16.
김영지 외(2020).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p.445.

또한 <표 III-7-2>에서 살펴본 결과와 같이 학급당 학생 수도 전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년 전인 2011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각각 20.9명, 25.2명, 33.0명, 33.1명으로 확인되었는데, 10년이 지난 2020년에는 각각 16.7명, 21.8명, 25.2명, 23.4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하였다.

<표 III-7-4>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지표에 대한 국제비교 결과를 연도별 추이로 제시하였다. 2000년에는 모든 학교급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에 있어서 OECD 평균에 많은 차이를 보이며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5년 이후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크지 않을 정도로 OECD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에 있어서 차이가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2%p 정도의 차이가 나고, 중학교 과정에서는 3~5%p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를 보면 최근에는 거의 같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경제수준이 높아져 교육환경이 개선된 것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출생율의 저하로 인해 학생 수의 자연감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표 III-7-4.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국제비교

(단위 : 명)

구 분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2000	한국	32.1	21.5	20.9	36.5	38.5
(2002)	OECD 평균	17.7	15.0	13.9	21.9	23.6
2005	한국	28.0	20.8	16.0	32.6	35.7
(2007)	OECD 평균	16.7	13.7	13.0	21.5	24.1
2010	한국	21.1	19.7	16.5	27.5	34.7
(2012)	OECD 평균	15.9	13.7	13.8	21.2	23.4
2015	한국	16.8	15.7	14.1	23.4	30.0
(2017)	OECD 평균	15.2	13.0	13.1	21.1	23.3
2016	한국	16.5	14.7	13.8	23.2	28.4
(2018)	OECD 평균	15.0	12.7	13.0	21.3	22.9
2017	한국	16.4	14.0	13.2	23.1	27.4
(2019)	OECD 평균	15.2	13.3	13.4	21.2	22.9
2018	한국	16.5	13.5	12.2	23.1	26.7
(2020)	OECD 평균	14.6	13.0	13.0	21.1	23.3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0a), 2020 간추린 교육통계, p.51.
원자료: OECD(해당 발표년도),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 주: 1) 교사는 수업담당교사(교장·교감, 영양·사서·보건·전문상담교사 제외)만 대상
2) 구분 연도는 학년도, ()안의 연도는 EAG(Education at a Glance)자료 발표년도

③ 학생 1인당 사교육비

〈표 III-7-5〉에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에 대한 2019년과 2020년 조사결과가 나타나 있다. 학교급별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9년 32만원 1천원, 2020년에는 이보다 적어 28만 9천원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사교육비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고등학생은 1인당 월평균 60만원 가깝게 지출하고 있었다. 증감률로만 보면 초등학생은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용이 감소하고 있으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추론할 수 있다.

표 Ⅲ-7-5.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만원, %)

구 분	전체 학생				참여 학생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9	32.1	29.0	33.8	36.5	42.9	34.7	47.4	59.9
2020	28.9	22.1	32.8	38.8	43.4	31.8	49.2	64.0
증감률	-10.1	-23.7	-3.4	5.9	0.3	-9.0	2.5	5.2

* 출처: 통계청(2021.4.).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보고서. p.33.

표 Ⅲ-7-6. 가구 소득수준별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단위 : 만원, %, %p)

구 분	사교육비			참여율		
	2019	2020	증감률	2019	2020	전년 차
전체	32.2	28.9	-10.1	74.3	66.5	-7.9
200만원 미만	10.4	9.9	-5.2	46.4	39.9	-6.5
200~300만원 미만	17.0	15.2	-10.8	59.9	50.5	-9.4
300~400만원 미만	23.6	19.6	-16.9	70.1	60.3	-9.9
400~500만원 미만	30.2	25.7	-14.9	77.7	67.8	-10.0
500~600만원 미만	35.7	31.0	-13.0	79.6	71.9	-7.7
600~700만원 미만	40.5	35.7	-11.8	83.5	74.2	-9.4
700~800만원 미만	46.7	42.5	-9.1	86.5	79.9	-6.6
800만원 이상	53.9	50.4	-6.4	84.6	80.1	-4.5

* 출처: 통계청(2021.4.).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보고서. p.38.

* 주: 가구소득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의 월 평균 소득 포함

〈표 Ⅲ-7-6〉은 가구 소득수준별 전체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및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2019년보다 2020년에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 비율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에 기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9년이나 2020년에도 소득이 낮을수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 비율이 낮게 나오고 있고, 월평균 200~300만원 소득의 가구의 1인당 사교육비가 16만원 안팎인 것과 비교하여 월평균 소득이 700~800만원인 가구의 1인당 사교육비는 45만원 안팎으로 나타나 소득에 비례하여 사교육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보다 2020년에 전체적으로 1인당 사교육비가 감소하였는

데, 저소득 가구와 고소득 가구보다 중위 소득의 가구의 사교육비 감소의 추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조사결과라 할 수 있다.

(2) 학교 부적응률

① 학업중단율

〈표 III-7-7〉에는 2012~2020년 사이의 9년간 학업중단율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2012년 이후 작은 굴곡이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2년에 초·중·고 전체 학업중단율이 1.0%로 68,188명으로 공식 집계되었으나, 이후 소폭 감소하다가 2019년 다시 1.0%로 복귀하였다. 단지 2020년에는 눈에 띄게 학업중단율이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않고 비대면 학업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수십만 명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표에서 보여주는 추이를 볼 때 다시 대면 수업으로 이어지면 학업중단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III-7-7.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2012~2020년)

(단위 :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초등학교	0.6	0.6	0.5	0.5	0.6	0.6	0.7	0.7	0.4
중학교	0.9	0.8	0.7	0.6	0.6	0.7	0.7	0.8	0.5
고등학교	1.8	1.6	1.4	1.3	1.4	1.5	1.6	1.7	1.1
계 (학업중단자)	1.0 (68,188)	0.9 (60,568)	0.8 (51,906)	0.8 (47,070)	0.8 (47,663)	0.9 (50,057)	0.9 (52,539)	1.0 (52,261)	0.6 (32,027)

* 출처: 교육부(2021.8.26.). 2021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p.14. 교육부 홈페이지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823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1년 9월 16일 인출.

- * 주: 1)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는 학업중단자에 포함
 2) 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사유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 유예, 면제, 제적임.
 3) 사망자는 학업중단자에 미포함
 4) 구분연도는 학년도임.
 5) 학업중단율(%)=학업중단자 수/학생 수*100

② 학업중단 생각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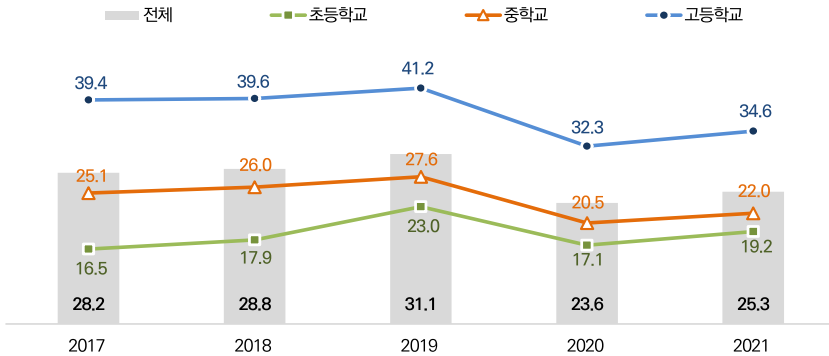
전체 8,571명의 응답 학생 중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5.3%에 달했다. 성별로 보았을 때에 여학생의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이 30.1%로 남학생의 20.9%보다 높게 나와 이에 대한 심층 분석과 대처가 요구된다. 학업중단에 대한 학교급 차이를 보면,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업에 대한 부담이 많아 학업중단에 대하여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이 34.6%, 중학생이 22.0%, 초등학생이 19.2%로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여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중, 상위 그룹의 학생들과 비교해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III-7-8〉).

표 III-7-8. 학업중단 생각 경험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단위 : %(명) χ^2
전체		25.3	74.7	100.0(8,571)	96.178***
성별	남학생	20.9	79.1	100.0(4,423)	
	여학생	30.1	69.9	100.0(4,148)	
학교급	초등학교	19.2	80.8	100.0(2,836)	203.361***
	중학교	22.0	78.0	100.0(2,847)	
	고등학교	34.6	65.4	100.0(2,889)	
학업 성적	상	17.7	82.3	100.0(3,010)	379.116***
	중	23.0	77.0	100.0(3,630)	
	하	42.0	58.0	100.0(1,894)	
경제적 수준	상	21.0	79.0	100.0(4,914)	211.910***
	중	27.8	72.2	100.0(2,915)	
	하	45.7	54.3	100.0(705)	

* $p < .05$, *** $p < .001$.

* 주: 초등학생 문항은 2013년도부터 추가되었음.



* 주: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III-7-1. 학업중단 생각 경험(연도별 추이)

학업중단 생각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2013년 23.2%였다가 다소 굴곡은 있지만 2019년 31.1%로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20년 23.6%, 2021년 25.3%로 다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그림 III-7-1).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최근에 학생들의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이 낮아진 것은 학교에 가지 않고 재택 수업이 이루어진 결과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시 전면적인 대면수업이 재개되면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학업중단을 생각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학생 2,134명 중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3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표 III-7-9〉). 이어서 '공부하기 싫어서'가 27.6%,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16.1%,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가 10.3%, '괴롭힘을 당해서'가 6.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활발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발달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들 중 1/3에 가깝게 무기력하여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학업을 중단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

서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가장 경쟁이 심한 위치에 있는 고등학교 유형을 비교해보면, 특성화계 고등학생은 이러한 학업에 대한 무기력이 39.8%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계고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무기력이 28.3%,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23.5%, 공부하기가 싫어서가 23.8%로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특성화계 고등학생은 공부하기가 싫어서는 12.9%, 성적이 좋지 않아서는 9.3%로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낮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초등학생들도 학업중단의 이유로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로 응답한 학생들이 30.2%에 달하고 있고, '공부하기 싫어서'가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7-9. 학업중단 생각 이유

(단위 : %(명))

구분	괴롭힘을 당해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기타	전체(N)	
전체	6.0	16.1	2.7	0.1	27.6	4.2	10.3	31.0	2.0	100.0(2,134)	
성별	남학생	5.4	12.6	3.7	0.3	29.1	5.3	10.8	30.2	2.5	100.0(906)
	여학생	6.4	18.7	1.9	0.0	26.4	3.3	10.0	31.7	1.6	100.0(1,228)
학교급	초등학교	12.6	10.6	4.8	0.2	31.7	1.7	5.9	30.2	2.4	100.0(536)
	중학교	4.5	13.3	2.2	0.0	33.0	3.7	9.2	32.9	1.3	100.0(619)
	고등학교	3.3	20.9	1.9	0.2	21.8	5.8	13.5	30.4	2.2	100.0(980)
고교 유형	일반계고	2.2	23.5	1.7	0.1	23.8	5.3	12.7	28.3	2.5	100.0(806)
	특성화계고	8.8	9.3	2.3	0.8	12.9	8.3	17.0	39.8	0.7	100.0(173)

* 주: * 항목은 2016년부터 추가되었으며, 2019년 조사부터 1개 선택으로 변경됨(2018년까지는 우선순위에별도 3개 선택).

[그림 III-7-2]에는 학생들의 학업중단 생각 이유에 대한 2017~2021년 기간의 연도별 추이가 나타나 있다.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에 대한 응답은 2017년 19.1%에서 2021년 30.1%로 계속 증가하여 학업중단에 대해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임을 보여준다. 학업중단 생각에 대한 이유 가운데 '공부하기가 싫어서'가 2017년 이래 27% 안팎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보아야 할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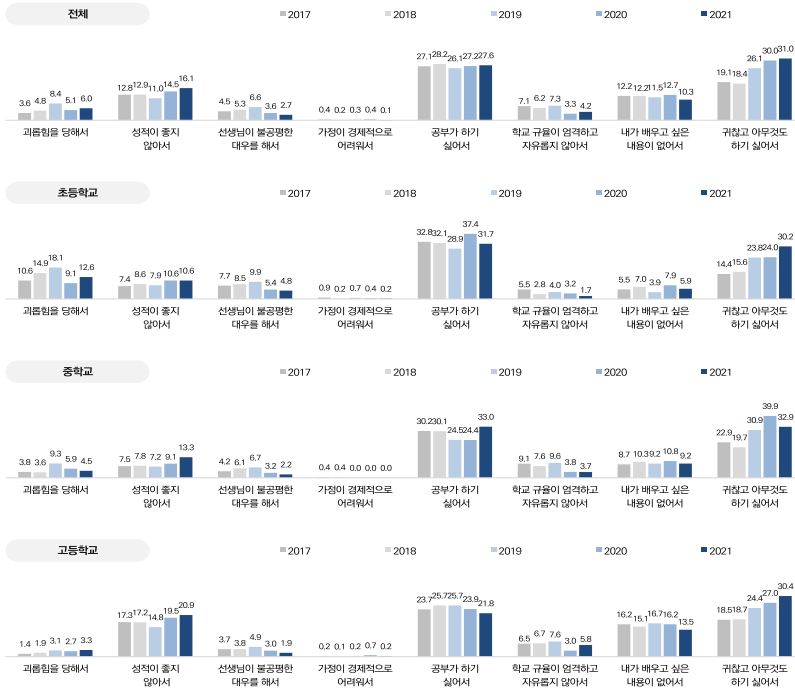


그림 Ⅲ-7-2. 학업중단 생각 이유(1순위) : 연도별 추이(%)

2) 교육의 목표

(1)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

①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 친구들이 응답자를 존중하고 배려해 주고 있는 여부에 관하여 응답 결과를 살펴본 결과, 긍정적인 응답인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는 각각 56.2%와 38.9% 합하여 95.1%를 나타내 대체로 응답자 학생들은 학교 친구로부터 존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긍정적 응답이 94.1%로 여학생(96.2%)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긍정적 응답이 초등학생은 92.4%, 중학생은 96.1%, 고등학생은 97.0%로 상급학년일수록 존중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III-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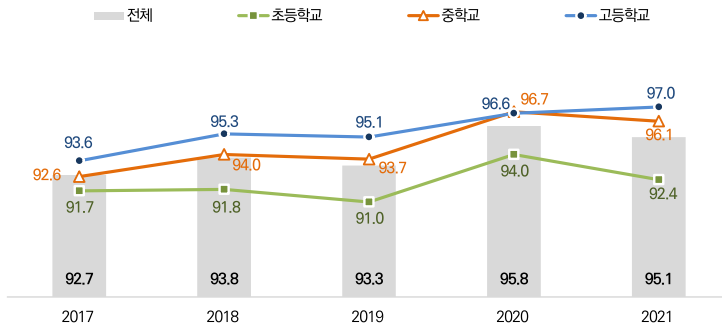
표 III-7-10.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33(0.60)	1.0	3.9	56.2	38.9	100.0(8,667)	48.784***
성별							
남학생	3.29(0.61)	1.4	4.5	58.1	36.0	100.0(4,483)	90.767***
여학생	3.38(0.58)	0.5	3.3	54.2	42.0	100.0(4,184)	
학교급							90.767***
초등학교	3.28(0.64)	1.4	6.2	55.8	36.6	100.0(2,910)	
중학교	3.33(0.58)	0.8	3.1	58.5	37.6	100.0(2,863)	
고등학교	3.39(0.57)	0.7	2.4	54.4	42.6	100.0(2,894)	

*** $p < .001$.

[그림 III-7-3]에서는 이러한 학교 친구들의 자신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볼 수 있다. 2017~2021년의 5년간 추이를 보면 2017년에 긍정적인 응답이 92.7%였는데 다소 굴곡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긍정적 응답의 추세가 강하여 가장 최근인 2020년에는 95.8%와 2021년에는 95.1%를 보여 주고 있어 고무적인 조사결과이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II-7-3.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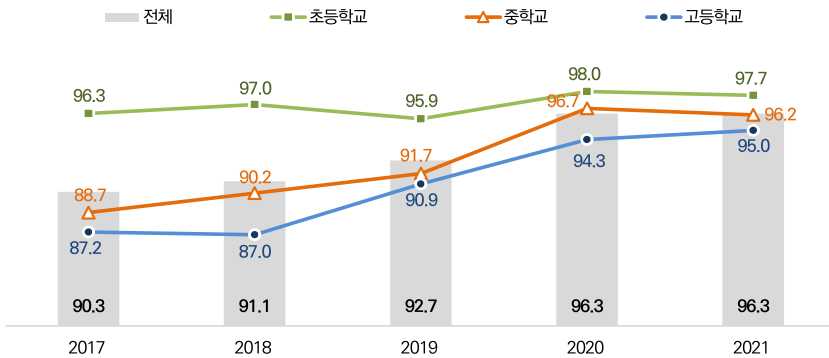
〈표 III-7-11〉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존중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학생들이 응답한 조사결과이다. 긍정적인 응답이라 할 수 있는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가 각각 43.6%와 52.7%로 합하여 96.3%에 달해 학교에서도 대체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긍정적 응답이 남학생은 96.5%, 여학생은 97.7%로 여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더 존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에서도 그다지 편차가 크지 않아 긍정적인 응답이 초등학생은 97.7%, 중학생은 96.2%, 고등학생은 95.0%를 보이고 있어 저학년일수록 더 존중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7-11.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48(0.60)	0.9	2.8	43.6	52.7	100.0(8,666)	4.757
성별							
남학생	3.47(0.61)	1.1	2.8	44.2	51.8	100.0(4,480)	503.373***
여학생	3.49(0.59)	0.8	2.8	42.9	53.6	100.0(4,186)	
학교급							503.373***
초등학교	3.66(0.55)	0.8	1.6	28.4	69.3	100.0(2,910)	
중학교	3.42(0.59)	0.8	3.0	49.5	46.7	100.0(2,863)	
고등학교	3.36(0.62)	1.2	3.8	53.0	42.0	100.0(2,893)	

** $p < .01$, *** $p < .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II-7-4.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연도별 추이)

[그림 III-7-4]는 학교 선생님께서 존중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학생들이 응답한 결과의 2017~2021년의 5년간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7년 긍정적인 응답이 90.3%였는데 지속적으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존중도가 개선되어 가장 최근인 2020년과 2021년에 동일하게 96.3%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21년 조사에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역대 가장 높아 52.7%를 보여주고 있어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존중도가 아주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바람직한 실태를 나타내고 있다.

〈표 III-7-12〉는 응답학생이 학교 수업 시간에 재미를 느끼고 있는가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이다. 전체 8,668명 중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각각 5.9%와 19.7%로 25.6%에 달하고 있어 4명 중 1명이 넘게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성별로 보면 이러한 부정적 응답의 비율이 남학생의 경우는 25.6%, 여학생은 25.7%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학교급으로 보면 초등학교의 부정적 응답 비율이 18.3%, 중학생이 29.1%, 고등학생이 29.6%로 나타나 중학생 시기부터 수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응답학생의 학업 성적과 경제적 수준을 함께 고려해서 보았을 때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응답이 편차를 보이면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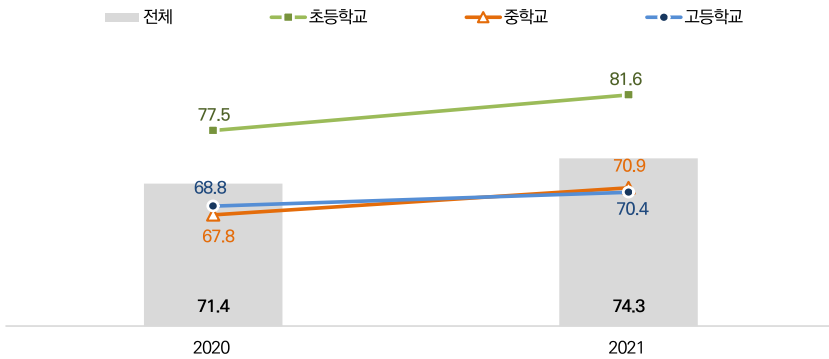
표 III-7-12. 나는 수업 시간이 재밌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4(0.83)	5.9	19.7	49.1	25.2	100.0(8,668)	8.635*	
성별								
	남학생	2.94(0.84)	6.5	19.1	48.5	25.9	100.0(4,480)	
	여학생	2.93(0.81)	5.4	20.3	49.8	24.5	100.0(4,189)	
학교급	초등학교	3.10(0.80)	4.5	13.8	48.6	33.0	100.0(2,912)	200.422***
	중학교	2.86(0.83)	6.6	22.5	48.8	22.1	100.0(2,863)	
	고등학교	2.84(0.82)	6.8	22.8	50.0	20.4	100.0(2,893)	
학업 성적	상	3.18(0.77)	3.4	12.3	47.6	36.7	100.0(3,041)	711.682***
	중	2.93(0.77)	4.5	20.1	53.3	22.1	100.0(3,677)	
	하	2.57(0.87)	12.9	30.5	43.9	12.8	100.0(1,907)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경제적 수준	상	3.06(0.81)	4.6	16.1	48.3	31.0	100.0(4,969)	327.898***
	중	2.82(0.81)	6.4	24.1	50.9	18.6	100.0(2,942)	
	하	2.59(0.87)	13.6	26.0	47.9	12.5	100.0(716)	

*** $p < .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II-7-5. 나는 수업 시간이 재밌다(연도별 추이)

[그림 III-7-5]에는 학교 수업시간의 재미 여부에 대한 가장 최근인 2020년과 2021년의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학교 수업시간이 전혀 재미가 없다고 응답한 결과와 재미가 없는 편이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결과 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28.6%로 나타났고, 2021년에는 25.3%로 나타나 학교 수업시간에 대한 재미가 2021년에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13〉은 학생들에게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운지에 대해 물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8,665명의 응답학생 중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의 합은 24.4%로 4명 1명에 가깝게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성별로 보면 이러한 부정적 응답이 남학생은 25.3%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23.4%로 나타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학교급에서는 초등학생의 부정적 응답이 18.9%로 가장 낮았고, 이어서 중학생이 25.0%, 고등학생이 29.4%로 나타나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업성과 경제적 수준이 하위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각각 39.5%와 40.1%의 비율로 학교생활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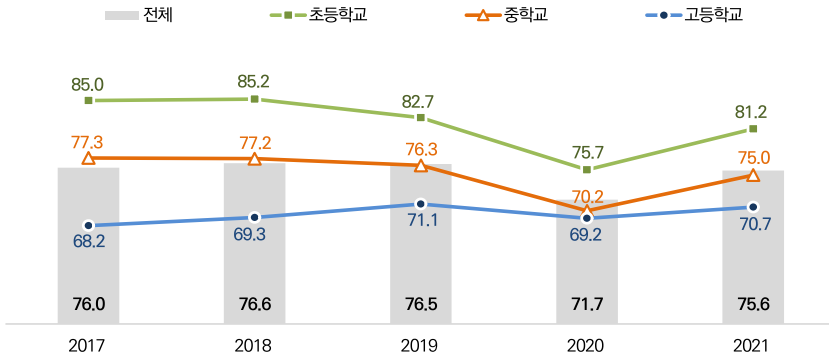
표 III-7-13.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9(0.85)	6.4	18.0	46.3	29.3	100.0(8,665)	12.313**
성별							
남학생	2.96(0.86)	7.1	18.2	46.6	28.1	100.0(4,477)	211.352***
여학생	3.02(0.84)	5.7	17.7	45.9	30.7	100.0(4,188)	
학교급							499.691***
초등학교	3.13(0.86)	6.1	12.8	43.3	37.9	100.0(2,910)	
중학교	2.97(0.84)	6.1	18.9	47.3	27.7	100.0(2,863)	
고등학교	2.86(0.84)	7.1	22.3	48.3	22.4	100.0(2,892)	300.473***
학업 성적							
상	3.20(0.80)	3.9	12.3	44.0	39.8	100.0(3,040)	
중	2.97(0.82)	5.7	17.7	50.0	26.6	100.0(3,678)	18.6
하	2.67(0.90)	11.8	27.7	42.6	17.9	100.0(1,905)	
경제적 수준							300.473***
상	3.10(0.83)	4.8	15.0	45.3	34.9	100.0(4,969)	
중	2.87(0.84)	7.0	21.3	49.1	22.6	100.0(2,939)	
하	2.64(0.95)	14.8	25.3	41.3	18.6	100.0(716)	

*** $p < .001$.

[그림 III-7-6]은 학생들에게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운지에 대해 조사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도별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에 가는 것이 전혀 즐겁지 않다는 응답과 즐겁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결과의 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에는 24%였는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까지 이러한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19년에는 23.5%를 기록하였고, 가장 최근인 2020년에는 28.3%로 상승하였는데, 2021년 24.4%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II-7-6.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연도별 추이)

(2) 진로·직업교육

① 진로교육 현황

‘진로·직업교육’에서 세부지표인 ‘진로교육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2020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현황과 그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참여하고 있는 진로활동에 대한 복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은 수업 중 진로탐색 참여가 8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진로 심리검사에 78.7%, 창업체험에 39.3%, 진로상담에 36.7%가 참여하고 있고, 진로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 중 평균 3.82점이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진로와 직업’ 수업에 91.8%가 참여하였고, 다음으로 진로 심리검사에 84.1%, 진로체험에 82.2%, 진로상담에 59.5%, 진로동아리에 48.9%, 창업체험에 44.2%, 그리고 수업 중 진로를 탐색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6.7%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진로활동에의 참여 만족도는 4.00점이었다. 고등학생은 수업 중 진로를 탐색하는데 참여하고 있다는 비율이 85.2%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진로와 직업’ 수업에 84.1%, 진로 심리검사에 84.0%, 진로

체험에 67.2%, 진로상담에 64.7%, 진로동아리에 57.5%, 창업체험에 35.9%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진로활동 참여에 대한 만족도는 3.84점이 었다. 중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로체험이나 창업체험의 실제적인 진로활동의 비율이 높은 것은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의 도입에 따른 결과라고 추론할 수 있다. 2019년 결과와 비교해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에의 참여가 축소되어서 진로 및 창업 체험과 같이 직접 참여하여 활동하는 비율이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7-14. 학교 진로활동 참여 현황 및 만족도

(단위 : %, 점)

학교급	학교 진로활동 참여 비율							진로활동 만족도(평균)
	수업 중 진로탐색	「진로와 직업」 수업	진로 심리검사	진로체험	진로상담	진로 동아리	창업체험	
초등학교	84.0	-	78.7	65.5	36.7	-	39.3	3.82
중학교	36.7	91.8	84.1	82.2	59.5	48.9	44.2	4.00
고등학교	85.2	84.1	84.0	67.2	64.7	57.5	35.9	3.84

* 출처: 서유정, 김민경, 류지영, 박나실, 김나라, 안유진, 안중석(2020).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세종: 교육부,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pp.86-90.

* 주: 1) 본 조사에는 초등학교 6학년 6,352명, 중학생 3학년 8,339명, 고등학교 2학년 8,532명 등 총 23,223명이
참여함.

2) 만족도 문항의 응답 범위는 1점(매우 불만족)~5점(매우 만족)임.

② 직업교육 현황

가. 직업교육 경험

〈표 III-7-15〉에서는 15세~29세의 청소년 및 청년이 학교 교육 외에 학원이나 훈련 기관 및 시설에서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한 경험에 대한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의 통계를 살펴보았다. 2018년에는 조사대상인 15세~29세 청년인구 915만 7천 명 중 18.8%가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가 16.3%, 여자가 21.3%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업교육에의 경험 비율은 조사의 개시

연도인 2018년 이후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최근인 2020년에는 18.2%, 2021년에는 더 낮아져 17.9%를 보이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을 위하여 청년들이 사교육비를 지출하도록 하는 것에는 국가의 책임이 크다. 독일의 직업교육 시스템인 현장과 연계된 도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확대하고,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III-7-15. 15~29세 청년 직업교육(훈련) 경험(2018~2021년)

(단위 : 천명, %)

년도	청년 인구	경험 비율	남자	여자
2018	9,157	18.8	16.3	21.3
2019	9,073	18.0	15.4	20.6
2020	8,934	18.2	15.8	20.6
2021	8,799	17.9	15.4	20.5

* 출처 : 통계청(2018~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53S&conn_path=I2에서 2021년 8월 11일 인출. 인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제시함. 통계청(2021.7.20). 보도자료: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p.9.

* 주: 학교 교육 외에 학원이나 훈련 기관 및 시설 등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

나.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

〈표 III-7-16〉은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학생들의 상황에 대한 2017~2019년의 3년간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7년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총수는 9만 5,131명이었고, 이 중 32.4%인 2만 1,767명이 상급학교로 진학하였다. 졸업 후 취업자는 50.4%인 4만 7,946명이었고, 무직 및 미상이 16.6%로 나타났다. 졸업 후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9년에는 42.2%가 되었고, 반면 취업자는 31.3%로 더 낮아졌다. 진학의 대상은 대체로 전문대학이 가장 많아 전체 진학을 대비 약 70% 정도였고 일반대학으로의 진학률은 27.5% 정도였다.

표 III-7-16.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2017~2019년)

(단위 : 명, (%))

년도	졸업자 총계 (A)	진학자(B)							취업자	무직 및 미상	기타
		소계	국내진학				국외진학				
			전문 대학	교육 대학	대학	각종 학교	전문 대학	대학			
2017	95,131	30,839 (32.4)	21,767	3	8,489	396	78	106	47,946 (50.4)	15,770 (16.6)	576 (0.6)
2018	90,921	32,372 (35.6)	23,333	4	8,696	183	65	91	37,954 (41.7)	19,918 (21.9)	677 (0.7)
2019	89,146	37,642 (42.2)	26,929	6	10,386	135	34	152	27,865 (31.3)	22,769 (25.5)	870 (1.0)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 2017-2019 교육통계연보(유초중등통계). https://kess.kedi.re.kr/publ/publFile?survSeq=2019&menuSeq=3894&publSeq=2&menuCd=80628&menuId=1_8_68&itemCode=02&language=en에서 2020년 10월 6일 인출.

- * 주: 1) 대학에는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이 포함되며, 기타는 입대자와 특수학교 전공과가 포함됨.
2) 소계: (A/B)%

표 III-7-17. 직업계고 졸업자 졸업 후 상황(2020년)

(단위 : 명, (%))

년도	졸업자	취업자 (취업률)	취업자 현황			입대자	제외 인정자	미취업 자	진학자 (진학률)	진학자 현황	
			보험 가입자	해외 취업자	농림 어업 종사자					전문 대학	대학
2020	89,998	24,938 (27.8)	24,858	-	80	1,585	970	24,290	38,215 (42.5)	27,169	11,046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0c). 직업계고 취업통계. <https://kess.kedi.re.kr/stats/intro?menuCd=0112&survSeq=2020&itemCode=01#>에서 2021년 8월 11일 인출.

- * 주: 1) 2020년부터 직업계고 취업통계는 유초중등통계와 분리되어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통계청 승인번호 제920024호)'를 통해 생산됨.
2) 취업률(%)={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100
3) 진학률(%)=(진학자/졸업자)×100
4) 전문대학: 단기산업교육시설(전문대학 학력 인정)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포함

〈표 III-7-17〉은 가장 최근인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에 대한 통계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직업계고 졸업자 총 8만 9,998명 중 진학자는 3만 8,215명으로 42.5%를 차지하였고, 취업자 수는 2만 4,938명으로 27.8%에 해당

되었다. <표 III-7-16>과 비교해보면,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취업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미취업자가 27%에 가까워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직업교육 및 훈련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1) 여가·문화·활동 인프라 및 이용 만족도

① 청소년 여가·문화·활동 시설 수

<표 III-7-18>에는 가장 최근인 2019년과 2020년의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에 총 814개소였던 것이 2020년에는 799개로 15개소가 감소되었다. 이중 숙박형 시설의 감소가 많아 청소년수련원이 12개소, 청소년야영장이 6개소, 유스호스텔이 6개소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숙박형 도시 근린시설인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은 각각 3개소와 5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18.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년 도	구 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2019	전 체	814	188	289	171	38	114	14
	전 체	799	191	294	159	32	108	15
2020	공 공	601	190	290	62	18	27	14
	민 간	198	1	4	97	14	81	1

* 출처: 여성가족부(2020.3.31.). 2019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19.12.31.기준).
 여성가족부(2021.3.2.). 2020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20.12.31.기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791에서 2021년 8월 11일 인출.

〈표 Ⅲ-7-19〉는 2020년의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시·도별 현황을 보여준다. 전체 총 799개소의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문화의집이 294개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수련원이 159개소, 청소년수련관이 191개소, 유스호스텔이 108개소, 청소년야영장이 32개소, 청소년특화시설이 15개소로 나타났다.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총 157개소로 가장 많이 청소년수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강원도와 경남이 77개소, 서울이 67개소, 경북이 61개소, 전남이 56개소, 전북이 51개소, 제주가 50개소 등의 순으로 설치되어 있다.

표 Ⅲ-7-19. 전국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799	191	294	159	32	108	15
서울	67	32	19	3	-	4	9
부산	22	8	9	3	1	1	-
대구	17	5	6	2	-	2	2
인천	22	8	6	3	-	5	-
광주	15	5	8	1	-	-	1
대전	15	4	8	2	-	1	-
울산	11	3	7	1	-	-	-
세종	4	1	3	-	-	-	-
경기	157	37	65	32	8	14	1
강원	77	16	32	15	3	10	1
충북	43	6	15	17	1	4	-
충남	51	11	16	13	3	8	-
전북	54	11	19	13	3	7	1
전남	56	8	23	12	5	8	-
경북	61	15	17	13	2	14	-
경남	77	18	17	25	4	13	-
제주	50	3	24	4	2	17	-

* 출처: 여성가족부(2020.3.31.). 2019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19.12.31.기준). 여성가족부(2021.3.2.). 2020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20.12.31.기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791에서 2021년 8월 11일 인출.

〈표 III-7-20〉에는 전국의 문화기반시설의 2013~2020년 동안의 연도별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전국의 문화기반시설은 공공도서관이 2020년 현재 1,134개소고 박물관이 897개소, 미술관이 267개소, 문예회관이 256개소, 지방문화원이 230개소, 2020년부터 새로이 통계에 편입된 생활문화센터가 129개소, 문화의집이 101개소, 국립도서관이 3개소로 총 3,017개소에 이르고 있다.

표 III-7-20.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2013~2020년)

(단위 : 개소)

연도	구분	계	국립 도서관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 문화센터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2013		2,182	-	828	740	171	-	214	229	-
2014		2,375	1	865	754	190	-	220	229	116
2015		2,519	1	930	809	202	-	232	229	116
2016		2,595	1	978	826	219	-	229	228	114
2017		2,657	1	1,010	853	229	-	236	228	100
2018		2,749	1	1,042	873	251	-	251	231	100
2019		2,825	3	1,096	881	258	-	255	231	101
2020		3,017	3	1,134	897	267	129	256	230	101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0c). 2020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p.19. 문화체육관광부 웹사이트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453&pDataCD=0417000000&pType=](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453&pDataCD=0417000000&pType=에서)
 에서 2021년 9월 14일 인출.

〈표 III-7-21〉은 2010~2019년까지 10년간의 전국 공공체육시설의 연도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에 총 15,137개소였던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이 10년이 지나 2019년에는 30,185개소로 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가장 많은 공공체육 시설은 간이운동장으로 전국에 22,866개소이며, 다음으로 체육관이 1,139개소, 축구장이 1,040개소, 테니스장이 818개소이며 기타 시설이 4,322개소에 이르고 있다.

표 III-7-21. 전국 공공체육시설 연도별 현황(2010~2019년)

(단위 : 개소, m²)

연도	구분	공공체육시설 수					1인당 체육시설 면적	
		계	축구장	체육관	간이운동장	테니스장		기타
2010		15,137	618	639	11,458	549	1,783	3.12
2011		16,127	649	681	12,194	565	2,038	3.29
2012		17,157	718	738	12,855	598	2,248	3.31
2013		19,398	801	819	14,536	660	2,582	3.57
2014		21,317	852	875	16,046	696	2,848	3.81
2015		22,662	886	905	17,111	718	3,042	3.89
2016		24,303	928	955	18,394	740	3,286	4.05
2017		26,927	984	1,010	20,602	772	3,559	4.28
2018		28,578	1,019	1,066	21,847	797	3,849	4.45
2019		30,185	1,040	1,139	22,866	818	4,322	4.51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0e).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e-나라지표 웹사이트
https://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751&board_cd=INDX_001
 에서 2021년 9월 14일 인출.

〈표 III-7-22〉에는 2021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물어본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한 번도 공공도서관을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8,538명 중 37.4%에 해당하였고, 1주일에 1~2회 이상 자주 이용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7.1%에 불과하였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42.6%, 여학생은 31.8%로 여학생의 공공도서관 이용이 더 많이 나타났다. 학교급에서는 저학년일수록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많아 1주일에 1~2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는 초등학생이 12.0%, 중학생이 6.3%, 고등학생이 3.0%로 조사되었다.

표 III-7-22.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1) 공공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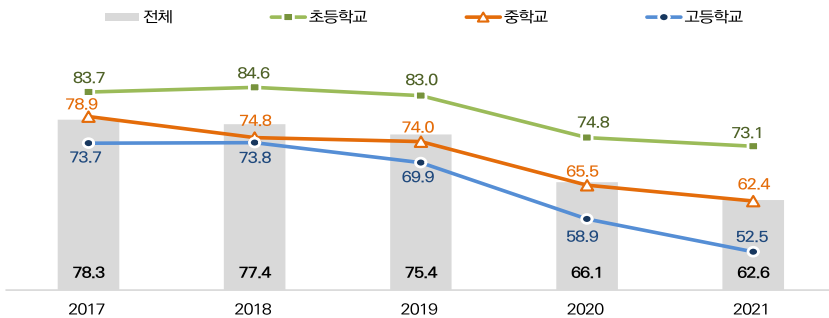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37.4	29.3	14.7	11.5	7.1	100.0(8,538)	116.478***
성별							
남학생	42.6	27.6	13.9	10.0	5.9	100.0(4,412)	
여학생	31.8	31.1	15.6	13.1	8.3	100.0(4,125)	
학교급							429.423***
초등학교	26.7	29.2	16.2	15.7	12.0	100.0(2,801)	
중학교	37.6	29.5	15.2	11.4	6.3	100.0(2,850)	
고등학교	47.5	29.2	12.8	7.5	3.0	100.0(2,887)	

***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그림 III-7-7]은 학생들의 공공도서관의 이용 경험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최근인 2020년과 2021년을 살펴보면 한 번도 공공도서관을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3.8%와 37.4%로 나타났는데, 2019년의 24.6%에 비하면 코로나19 이후 이용률이 더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II-7-7.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1) 공공도서관(연도별 추이)

<표 III-7-23>은 학생들의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을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전체 8,437명 중 80.4%에 달해 5명 중 1명

정도만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이용 경험은 거의 차이가 없어 남학생이 19.2%, 여학생이 20.1%의 비율로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을 보면 저학년일수록 이용 경험이 많게 나타났는데, 이용 경험이 있는 초등학교생의 비율은 23.9%, 중학생은 19.7%, 고등학생은 15.6%로 나타났다.

표 III-7-23.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 2)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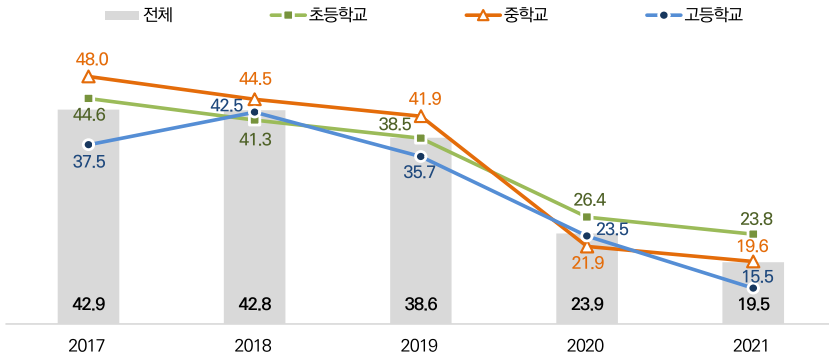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80.4	12.7	3.0	2.2	1.6	100.0(8,437)	5.654
성별	남학생 80.8	12.6	3.2	2.0	1.4	100.0(4,358)	
	여학생 79.9	12.9	2.8	2.5	1.8	100.0(4,079)	
학교급	초등학교 76.1	14.6	3.8	2.5	2.9	100.0(2,723)	95.478***
	중학교 80.3	12.4	3.3	2.6	1.3	100.0(2,829)	
	고등학교 84.4	11.3	1.9	1.6	0.7	100.0(2,884)	

* $p < .05$, ***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그림 III-7-8]은 앞서 서술한 학생들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경험에 대한 연도 별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도 공공도서관의 이용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2019년도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38.6%였는데 2020년에는 23.9%, 2021년에는 19.5%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II-7-8.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2) 청소년수련시설(연도별 추이)

표 III-7-24.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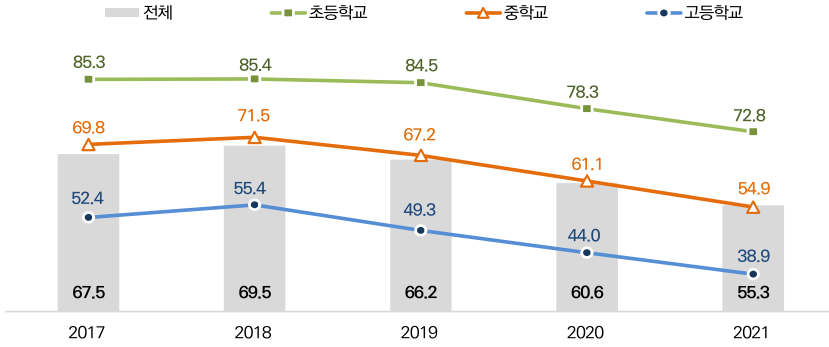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44.7	23.1	10.3	8.6	13.3	100.0(8,468)	334.798***
성별	남학생	40.0	19.9	10.9	10.4	100.0(4,379)	
	여학생	49.8	26.6	9.7	6.6	100.0(4,090)	
학교급	초등학교	27.1	26.1	13.3	10.7	100.0(2,753)	797.321***
	중학교	45.1	23.2	11.1	8.6	100.0(2,830)	
	고등학교	61.1	20.2	6.7	6.5	100.0(2,884)	

***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표 III-7-24>는 2021년도 청소년의 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과 같은 체육시설들의 이용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 번도 이용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전체 8,468명 중 44.7%에 해당되었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체육시설의 이용 경험이 있는 남학생이 60.0%, 여학생이 50.2%로 남학생이 체육시설의 이용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에서는 저학년일수록 이용 비율이 높아 초등학생이 72.9%, 중학생이 54.9%, 고등학생이

38.9%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입학시험으로 인한 학업에의 부담이 적을 수록 체육시설의 이용도가 높은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II-7-9.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3) 체육시설(연도별 추이)

[그림 III-7-9]에서는 청소년들의 체육시설 이용 경험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볼 수 있다. 체육시설의 이용도 역시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나 공공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시설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체육시설도 있으므로 체육시설 이용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체육시설의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66.2%였는데, 2020년에는 60.6%, 2021년에는 55.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25〉는 청소년 학생들이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의 문화예술 공간의 이용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 응답 학생 8,501명 중 35.1%는 문화 예술 공간의 이용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하였다. 1주일에 1~2회 이상 자주 문화 예술 공간을 이용하는 학생은 1.4%에 불과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문화 예술 공간의 이용 경험의 비율이 60.7%로 여학생의 69.4%로 낮게 나타났다. 학교급에서는 저학년일수록 문화 예술 공간의 이용 경험자가 많게 나타났는데, 초등학생이 72.6%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 62.2%, 고등학생이

60.2%를 보였다. 학업성적의 수준별로 보면 상위 그룹 학생의 문화예술 공간 이용 경험 비율이 71.5%, 하위 그룹의 학생이 56.4%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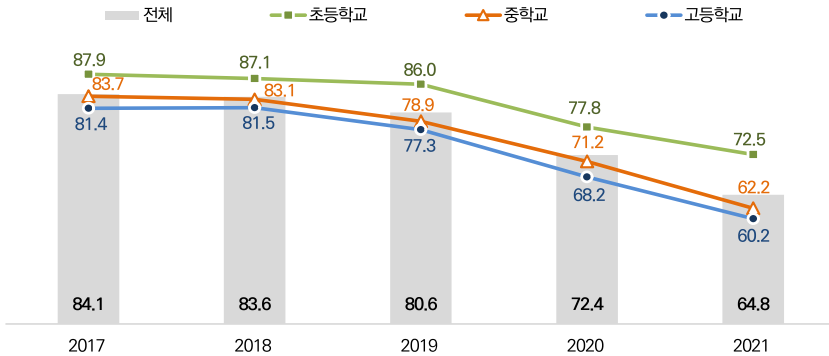
표 III-7-25.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한 달에		전체(N)	χ^2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	35.1	34.7	20.4	8.3	1.4	100.0(8,501)	78.253***	
성별	남학생	39.3	32.4	18.6	8.0	1.7		100.0(4,398)
	여학생	30.6	37.2	22.3	8.7	1.2	100.0(4,103)	
학교급	초등학교	27.4	41.6	20.4	8.7	1.8	100.0(2,773)	148.790***
	중학교	37.8	33.8	19.2	7.7	1.5	100.0(2,838)	
	고등학교	39.8	29.0	21.5	8.7	1.0	100.0(2,889)	
학업 성적	상	28.5	37.2	21.9	10.3	2.1	100.0(2,978)	144.616***
	중	36.1	35.5	19.5	7.7	1.2	100.0(3,600)	
	하	43.6	29.1	19.9	6.6	0.8	100.0(1,881)	

***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그림 III-7-10]은 학생 청소년의 문화 예술 공간의 이용 경험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여준다. 2019년에 문화 예술 공간의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0.6%였는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2020년에는 72.3%, 2021년에는 64.9%로 크게 감소하였다. 1주일에 1~2회 이상 문화 예술 공간을 이용한 학생의 비율도 2019년 3.3%에서 2020년 1.9%, 2021년에는 1.4%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II-7-10.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4) 문화 예술 공간(연도별 추이)

② 청소년 여가·문화·활동 시설 이용 만족도

〈표 III-7-26〉은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 시설 이용 만족도에 대한 2021년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응답 청소년 6,826명 중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하는 편이다'의 긍정적 응답 비율이 95.5%에 달해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남학생의 긍정적 응답 비율이 94.7%, 여학생이 97.1%로 나타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학교급에서의 여가·문화·활동 시설 이용 만족도를 보면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초등학생이 96.2%, 중학생이 95.9%, 고등학생이 95.5%로 나타나 비슷한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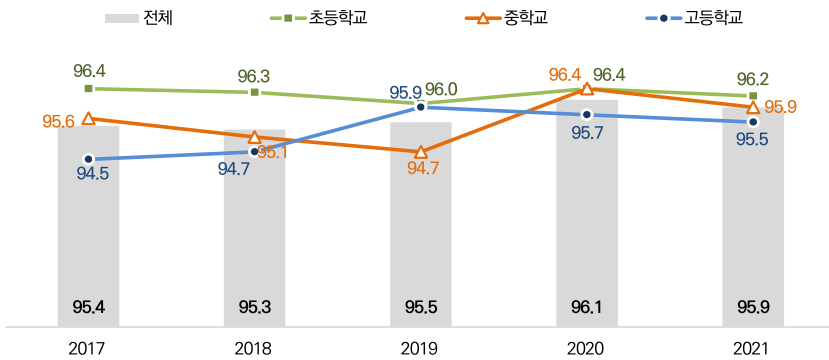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 시설 이용 만족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III-7-11), 만족도에 있어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체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2017년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 시설 이용 만족도의 긍정적 응답 비율이 95.4%였던 것이 가장 최근인 2020년에는 96.1%로 가장 높았다가, 2021년 소폭 감소하여 95.9%를 보이고 있다.

표 III-7-26. 이용해 본 시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N)	χ^2
전체	3.23(0.53)	0.5	3.7	68.4	27.5	100.0(6,826)	36.433***
성별							
남학생	3.23(0.56)	0.7	4.6	65.8	28.9	100.0(3,393)	273.119***
여학생	3.23(0.50)	0.3	2.7	71.0	26.1	100.0(3,433)	
학교급							273.119***
초등학교	3.34(0.58)	0.9	3.0	57.4	38.8	100.0(2,447)	
중학교	3.19(0.50)	0.3	3.8	72.4	23.5	100.0(2,252)	
고등학교	3.14(0.47)	0.2	4.3	76.8	18.7	100.0(2,128)	

*** $p < .001$.



* 주: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의 합계(단위: %)

그림 III-7-11. 이용해 본 시설에 대한 만족도(연도별 추이)

(2)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 정도

①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도

〈표 III-7-27〉에는 15~19세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하는 여가활동의 유형에 관한 2018~2020년의 3년간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III-7-27. 지속적으로 하는 여가활동의 유형(복수응답)

(단위 : %)

년도	구분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참여	관광	취미· 오락	사회 및 기타
2018	전체	5.8	5.9	2.0	44.0	1.6	27.6	13.1
	15~19세	13.7	9.0	3.3	30.2	0.2	38.5	5.1
2019	전체	6.5	4.9	1.8	36.1	2.5	30.8	17.5
	15~19세	13.1	9.6	1.0	30.6	-	35.0	10.9
2020	전체	2.1	4.1	1.4	44.3	2.7	33.4	12.0
	15~19세	2.6	8.0	1.8	33.1	0.2	49.8	4.5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9a).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p.41.
문화체육관광부(2020b).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p.41.

- * 주: 1) 2019년, 2020년 모두 만 15세 이상 남녀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자는 2019년 10,060명, 2020년 10,088명으로(조사지역: 전국 17개 시·도), 그 가운데 청소년은 2019년 661명, 2020년 619명으로 연령은 15~19세임.
2) 사회 및 기타 활동은 봉사활동, 친구만남 등 사회공헌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함.
3) 지속적 여가활동이란 휴식활동을 제외한 여가활동 중 일/주/월/년 단위로 지속적(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을 의미함.

가장 최근의 조사결과인 2020년을 살펴보면 15~19세의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여가활동 중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은 취미와 오락 여가활동으로 49.8%로 나타났다. 이어서, 스포츠 참여가 33.1%, 문화·예술 참여가 8.0%, 사회봉사와 같은 사회공헌이나 친구를 만나는 등의 활동이 4.5%, 문화·예술 관람이 2.6%, 스포츠 관람이 1.8%, 관광이 0.2%의 순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과 비교해보면 15~19세 청소년들이 하는 여가활동의 유형에 변화가 있는 것은 역시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전에는 문화·예술에의 참여(9.0%)보다

관람(13.9%)의 비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28〉은 15~19세 청소년이 일일 여가활동 시간과 여가활동 시간 중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와 같은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관해 2018~2020년의 3년간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Ⅲ-7-28. 일일 여가활동 시간과 여가활동 시간 중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
(단위 : 시간)

년도	구분	평일		휴일	
		여가활동 시간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	여가활동 시간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
2018	전체	3.3	1.3	5.3	1.8
	15-19세	2.8	1.9	5.1	2.8
2019	전체	3.5	1.3	5.4	1.6
	15-19세	3.0	1.9	5.5	2.6
2020	전체	3.7	2.0	5.6	2.3
	15-19세	3.3	2.8	5.8	3.6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9a).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p.44.
문화체육관광부(2020b).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p.45.

* 주: 1) 2019년, 2020년 모두 만 15세 이상 남녀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자는 2019년 10,060명, 2020년 10,088명으로(조사지역: 전국 17개 시·도), 그 가운데 청소년은 2019년 661명, 2020년 619명으로 연령은 15~19세임.

2) 스마트기기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를 뜻함.

먼저 3년 간 추이를 보면 평일의 여가활동 평균 시간은 2018년 2.8시간, 2019년 3.0시간, 2020년 3.3시간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스마트기기 활용시간은 각각 1.9시간, 1.9시간, 2.8시간으로 코로나19 이후 1시간이나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여가활동 시간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코로나19 발생 후인 2020년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이 평일과 휴일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중 스마트 기기 활용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을 기준으로 평일 84.8%, 휴일 62.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스마트기기 활용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정부가 청소년들이 스마트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②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청소년이 가지는 평일 하루 여가시간에 관한 2021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에 참여한 전체 청소년 8,670명 중 평일 하루 여가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1.4에 달했고, 5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4.7%에 해당되었다. 평일 하루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의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3.5%로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의 여가시간을 가지는 청소년 23.3%와 비슷한 정도로 가장 높게 나왔다. 성별로 보면 평일 하루 1시간 미만의 여가시간을 가지는 남학생이 11.9%, 여학생이 10.8%, 5시간 이상의 여가시간을 가지는 남학생이 15.0%, 여학생이 14.4%로 성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학교급을 보면 평일 하루 1시간 미만의 여가시간을 가진다고 응답한 초등학교생이 10.4%, 중학생이 8.6%, 고등학생이 15.2%로 나타나 일부 학생은 중학생보다 초등학교생의 여가시간이 더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평일 하루 5시간 이상의 여가시간을 가지는 경우는 초등학교생이 20.6%, 중학생이 13.5%, 고등학생이 10.0%로 나타나고 있다. 고교 유형 중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를 비교해 보았을 때에 평일 하루 여가시간이 1시간 미만의 응답 비율이 각각 16.8%와 8.7%로 나타났고, 여가시간이 5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7.2와 21.3%로 일반계고 학생들이 특성화계고 학생보다 평일 여가시간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I-7-29〉).

[그림 III-7-12]에는 청소년의 평일 하루 여가시간에 대한 2017~2021년간의 연도별 추이가 나타나 있다. 전반적으로 다소 굴곡은 보이나 청소년의 평일 여가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전후를 비교해 보면 2019년 평일 하루 여가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6.2%고 5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1.9%였으나, 2020년에는 평일 하루 1시간 미만의 여가시간을 가진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9.8%, 5시간 이상을 가진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8.2%로 나타났다(기초분석보고서 〈표 III-2-12〉).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수업방식이 블렌디드 형태로 전환되고, 학원도 폐쇄되어 상대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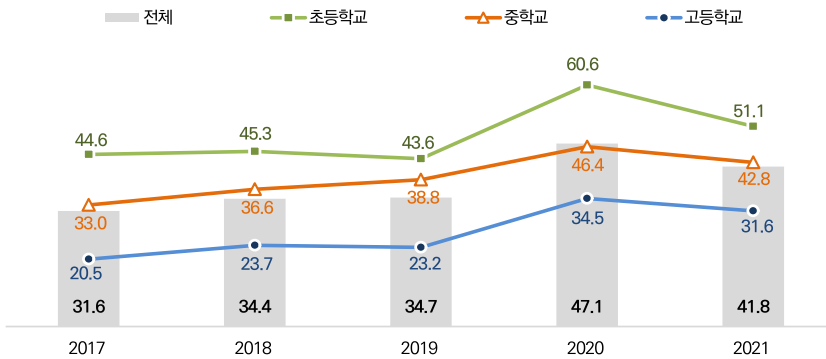
로 평일 여가시간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표 III-7-29. 평일 여가시간

(단위 : %(명))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전체(N)	χ^2
전체	11.4	23.5	23.3	17.1	10.0	14.7	100.0(8,670)	8.349
성별								
남학생	11.9	23.9	22.2	17.0	10.0	15.0	100.0(4,488)	
여학생	10.8	23.0	24.5	17.2	10.0	14.4	100.0(4,182)	
학교급								348.769***
초등학교	10.4	16.8	21.7	17.9	12.6	20.6	100.0(2,901)	
중학교	8.6	23.6	24.9	19.0	10.3	13.5	100.0(2,867)	
고등학교	15.2	30.0	23.3	14.4	7.2	10.0	100.0(2,902)	
교급								217.563***
일반계고	16.8	33.3	24.2	13.2	5.4	7.2	100.0(2,312)	
특성화계고	8.7	17.2	19.8	19.0	14.1	21.3	100.0(590)	

** $p < .01$, *** $p < .001$.



* 주: '3~4시간', '4~5시간', '5시간 이상'의 합계(단위: %)

그림 III-7-12. 평일 여가시간(연도별 추이)

③ 하루 평균 학습 시간

<표 III-7-30>은 2021년도에 조사된 청소년의 평일 하루 학습 시간에 대한 결과이다. 조사에 참여한 전체 8,683명의 청소년 중 평일 하루 학습 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6.3%로 나타났고, 6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6%를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낸 평일 하루 학습 시간은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으로 23.2%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보면 평일 하루 학습 시간이 1시간 미만으로 응답한 남학생이 17.6%, 여학생이 15.0%로 나타났고, 6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은 5.0%, 여학생은 4.2%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 보면 평일 하루 학습 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생이 14.6%로 중학생과 동일했고, 고등학생은 19.9%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평일 하루 6시간 이상 학습한다는 비율은 초등학생이 4.2%, 중학생이 3.8%, 고등학생이 5.7%로 나타나 일부 초등학교 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의 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유형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 평일 하루 학습 시간이 1시간 미만의 비율이 인문계고 학생에서는 13.9%, 특성화계고 학생은 43.4%를 보이고 있고, 6시간 이상 학습 시간에서도 각각 6.9%와 1.0%를 나타내 일반계고 학생들의 평일 하루 학습 시간이 큰 차이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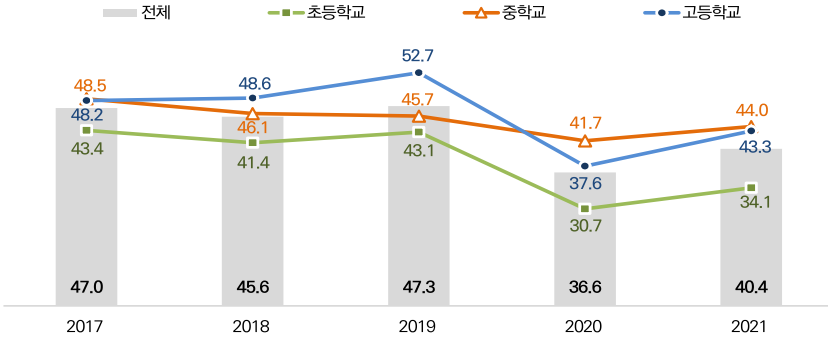
[그림 III-7-13]은 청소년의 평일 학습 시간에 대한 2017~2021년 동안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하루 평일 학습 시간에 대한 연도별 추이는 다소 굴곡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평일 학습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코로나19 전후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된 2020년과 2019년의 차이가 눈에 띄는데 2019년 조사에서는 평일 하루 1시간 미만 학습 시간을 가진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14.9%였는데, 2020년에는 19.1%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6시간 이상 학습 시간을 갖는 학생의 비율도 각각 5.9%와 3.7%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해 하루 평일 학습 시간이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기초분석보고서 <표 III-2-13>).

표 III-7-30. 평일 학습 시간

(단위: %(명))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5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전체(N)	χ^2
		2시간 미만	3시간 미만	4시간 미만	5시간 미만	6시간 미만			
전체	16.3	20.0	23.2	17.8	11.7	6.3	4.6	100.0(8,683)	31.098***
성별	남학생	17.6	20.8	21.6	16.8	11.7	6.5	100.0(4,492)	
성별	여학생	15.0	19.3	24.8	19.0	11.7	6.1	100.0(4,191)	
학교급	초등학교	14.6	25.0	26.4	15.5	9.6	4.8	100.0(2,911)	187.085***
학교급	중학교	14.6	18.2	23.3	20.8	12.7	6.7	100.0(2,869)	
학교급	고등학교	19.9	16.9	19.8	17.2	12.9	7.5	100.0(2,902)	364.434***
교고 유형	일반계고	13.9	15.2	20.5	19.5	15.0	9.0	100.0(2,313)	
교고 유형	특성화계고	43.4	23.7	17.2	8.4	4.4	1.9	100.0(590)	

*** $p < .001$.



* 주: '3~4시간', '4~5시간', '5~6시간', '6시간 이상'의 합계(단위: %)

그림 III-7-13. 평일 학습 시간(연도별 추이)

4) 소결

2021년도 인권지표에서 대분류 지표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은 아동권리협약 제28조와 관련된 지표인 '교육에의 권리'와 제29조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의 목표', 그리고 제31조의 실천을 목표로 하는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의 3개 중분류 지표가 있다. 이들로부터 전체 13개 세부지표가 선정되어 아동·청소년

년을 대상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하였다.

소분류 지표인 ‘교육기회 보장 정도’에 있어서는 한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늘고, 출생률도 감소하는 추세라 전반적인 교육적 환경은 많이 개선되어 기회가 과거보다 더 잘 보장되어 교육에의 권리가 잘 실천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고질적인 교육문제인 입학시험 위주의 경쟁 교육으로 인해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고학년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의 월 평균 사교육비가 6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하는 것은 물론, 학교 교육 외에 추가로 사교육을 시킴으로서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입시위주의 경쟁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부적응하게 하는 근본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 조사결과를 보면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5.3%가 학업 중단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는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31.0%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공부하기 싫어서’가 27.6%,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16.1%,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가 10.3%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무기력하게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학업 중단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한국의 학교 교육이 가장 위기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교육의 현주소이다.

응답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실태를 보이고 있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존중 정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2021년에는 교사가 학생을 존중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이 96.3%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가 없다고 느끼고 있거나,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4명 중 1명 정도로 조사결과가 나온 것은 학교 수업과 생활이 학생들의 욕구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청소년들의 진로활동 참여를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진로체험이나 창업체험과 같은 현장 체험의 실제적 진로활동의 비율이 높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의

도입에 따른 효과라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세심한 질적 제고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 밖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위하여 청년들이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고,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진학으로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정부 당국의 공공 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수련시설을 5명 중 1명 정도만 이용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청소년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부와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노력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년제가 지역사회의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하여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청소년의 여가활동 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우려스러운 것은 여가활동 시간 중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일 84.8%, 휴일 62.1%로 나타나고 있어 여가활동 시간을 직접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발생 전후를 비교해 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에 평일 하루 청소년의 여가시간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코로나19로 인해 하루 평일 학습 시간이 전체적으로 약간 감소하였는데, 이는 학교 수업이 비대면 재택 수업이 되고, 학원의 폐쇄 등 사교육이 위축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8. 특별보호조치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구 수

① 아동·청소년 난민 수

법무부(2021a)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난민인정 신청 건수는 총 71,042건(2020년에는 6,684명이 신청)이며, 난민인정심사를 완료한 39,954건 중 인정은 799건, 인도적 체류 허가는 1,917건, 불인정은 37,238건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2020년 한 해 동안 난민인정심사를 완료한 8,104건 중 인정은 55건, 인도적 체류 허가는 127건, 불인정은 7,922건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 기준 누적 난민보호율은 9.9%(34,836건 중 3,461건)이고, 2020년 한 해의 난민 보호율은 3.3%(6,766건 중 22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난민 현황을 살펴보면,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 1일 이후부터 난민인정 신청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왔으나, 2019년에는 15,451건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721건)하였고, 2020년에는 6,684건으로 대폭 감소(▽8,768건)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2021a: 96-99).

법무부(2021a)의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난민인정 신청 전체 누적 총 71,042건을 대상으로 난민신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난민인정사유 신청이 27,229건(38.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종교사유 신청이 16,868건(23.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치적 의견이 12,799건(18.0%),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67,226건(10.2%), 인종 3,851건(5.4%), 가족결합 2,682건(3.8%), 국적 387건(0.5%)의 순이었다. 2020년 한 해 동안의 난민인정 신청의 경우에도 난민법상 난민인정사유 외의 신청이 3,311건(4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치적 의견 1,245건(18.6%), 종교 1,074건(16.1%),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534건(8%), 인종 141건(2.1%), 가족결합 285건(4.3%), 국적 94건(1.4%)의 순이었다(법무부, 2021a: 101).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난민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누적 난민신청 총 71,042건 중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2,751건(3.9%)이며, 2020년 한 해 동안의 난민인정 신청 중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279건(4.2%)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신청자 수가 급증했던 추세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난민신청자 수도 2013년(69명)부터 2018년(556명)까지는 매년 증가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다소 감소(2019년 ▽ 97건, 2020년 ▽180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인정자의 수 역시 2018년까지는 매년 증가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부터 2020년까지의 누적 난민인정자 수는 총 1,091명이며, 2020년 한 해 동안의 신규 난민인정자 수는 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2021a: 103).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비중을 살펴보면 2020년 한 해 동안의 전체 인정자 69명 중 18세 미만은 36명으로 5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8-1〉). 이 비율은 2020년까지의 전체 난민인정자(1,091명) 중 18세 미만 아동·청소년(362명)이 차지하는 비중인 33.2%와 비교할 때 19.0%p 높은 수치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말까지 총 2,370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으며, 2020년 한 해 동안 신규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155명이었다(법무부, 2021a: 105). 그리고 인도적 체류 허가자 중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중은, 2020년 기준 누적 인도적 체류 허가자 2,370명 중 486명(20.5%)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20년 한 해 동안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155명 중에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수는 20명(12.9%)으로 나타났다(〈표 III-8-1〉).

표 III-8-1. 아동·청소년 난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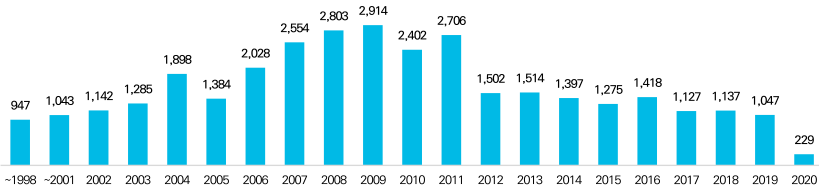
(단위 : 명, %)

연도	구분	신 청			인 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철 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2003 이전		9	3.6	251	0	0.0	14	0	0.0	13	0	0.0	41	3	7.3	41
2005		9	2.2	410	0	0.0	9	3	23.1	13	0	0.0	76	1	3.2	31
2010		30	7.1	423	6	12.8	47	5	14.3	35	4	1.3	310	2	2.8	71
2015		315	5.5	5,711	40	38.1	105	52	26.8	194	-	-	3,976	-	-	280
2016		342	4.5	7,541	47	48	98	114	46.3	246	-	-	4,978	-	-	731
2017		357	3.6	9,942	48	39.7	121	102	32.1	318	-	-	5,582	-	-	1,200
2018		556	3.4	16,173	61	42.4	144	38	7.4	514	-	-	3,221	-	-	2,029
2019		459	3.0	15,451	37	46.8	79	41	17.7	232	-	-	5,287	-	-	4,139
2020		279	4.2	6,684	36	52.2	69	20	12.9	155	-	-	6,542	-	-	5,930

* 출처: 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V: 총괄보고서. p.529. 법무부(2015.1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p.33. 법무부(2021a).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96-107.

② 탈북 난민 아동·청소년 수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을 보면 2020년 한 해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29명이었으며, 2019년(1,047명)에 비해 78.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통일부, 2021.4: 146). 통일부(2021.6)의 북한이탈주민통계에 기초할 때,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0세~19세 사이의 탈북 아동·청소년은 총 4,800명이다. 이 중 남자 청소년은 2,238명(46.6%)이고, 여자 청소년은 2,562명(53.4%)인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통일부(2021.4). 2021 통일백서. p.279.

* 주: 단위: 명

그림 III-8-1.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표 III-8-2.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

(단위 : 명)

구 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608	1,630	2,654	2,128	1,460	600	364	9,444
여	601	1,961	6,780	7,605	4,788	1,547	1,034	24,316
합계	1,209	3,591	9,434	9,733	6,248	2,147	1,398	33,760

* 출처: 통일부(2021.6).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자료(2021.6월 기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 주: 2021년 6월 말 기준. 입국당시 연령 기준이며,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있는 일부인원은 제외된 수치로 입국인원과 차이가 있음.

③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수

행정안전부(2020.11)에 따르면 2019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 주민은 2,216,612명이었으며, 2018년 2,054,621명에 비해 161,991명(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다문화가족 자녀는 222,455명(외국인 주민수 전체 중 10.0%)이었으며, 이중 국내출생 자녀는 212,302명(95.4%),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는 10,154명(4.6%)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8-3〉).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미취학아동 연령(만 6세 이하)이 44.2%(117,045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연령(만 7~12세)이 39.3%(104,064명), 중고생 연령(만 13~18세) 16.4%(43,51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출생 자녀와 귀화 및 외국인 자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국내출생 자녀의 경우에는 미취학 아동연령이 45.2%(113,920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39.3%(99,144명), 중고생 15.4%(38,90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귀화 및 외국인 자녀의 구성비를 보면 초등학교생이 38.9%(4,920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고생이 36.5%(4,615명), 미취학 아동 24.7%(3,12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8-4〉).

표 III-8-3.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2017~2019년)

(단위 : 명, %)

구분	합계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			국내 출생 자녀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17	222,455	113,686	108,769	10,153	4,825	5,328	212,302	108,861	103,441
2018	237,506	121,278	116,228	11,361	5,441	5,920	226,145	115,837	110,308
2019	264,626	135,110	129,516	12,660	6,026	6,634	251,966	129,084	122,882

* 출처: 행정안전부(2019.11). 201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18년 11월 1일 기준). p.75.
 행정안전부(2020.11).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19년 11월 1일 기준). p.71.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lId=80781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 주: 외국인주민 자녀는 미성년자만 집계한 것임.

표 III-8-4.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연령별		합계		귀화 및 외국인 자녀		국내출생 자녀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264,626	-	12,660	-	251,966	-
소계		117,045	44.2	3,125	24.7	113,920	45.2
미취학 아동	0세	16,762	6.3	56	0.4	16,706	6.6
	1세	15,886	6.0	172	1.4	15,714	6.2
	2세	16,259	6.1	327	2.6	15,932	6.3
	3세	16,984	6.4	562	4.4	16,422	6.5
	4세	17,098	6.5	618	4.9	16,480	6.5
	5세	17,001	6.4	693	5.5	16,308	6.5
	6세	17,055	6.4	697	5.5	16,358	6.5
소계		104,064	39.3	4,920	38.9	99,144	39.3
초등학생	7세	18,205	6.9	762	6.0	17,443	6.9
	8세	18,662	7.1	731	5.8	17,931	7.1
	9세	18,353	6.9	735	5.8	17,618	7.0
	10세	17,393	6.6	886	7.0	16,507	6.6
	11세	16,634	6.3	945	7.5	15,689	6.2
	12세	14,817	5.6	861	6.8	13,956	5.5
소계		43,517	16.4	4,615	36.5	38,902	15.4
중고생	13세	10,721	4.1	775	6.1	9,946	3.9
	14세	8,646	3.3	845	6.7	7,801	3.1
	15세	7,157	2.7	836	6.6	6,321	2.5
	16세	5,940	2.2	762	6.0	5,178	2.1
	17세	5,652	2.1	706	5.6	4,946	2.0
	18세	5,401	2.0	691	5.5	4,710	1.9

* 출처: 행정안전부(2020.11).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19년 11월 1일 기준). p.74.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lId=80781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 주: 외국인주민 자녀는 미성년자만 집계한 것임.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

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교육부(2021b)의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 따르면 2020년 현재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총 147,378명이며, 이 중 초등학생은 107,770명(73.1%)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이 26,835명(18.2%), 고등학생이 12,773명(8.6%)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8-5).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다문화가정은 한국출생(113,774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외국인 자녀(24,453명), 중도입국(9,15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다문화학생 수는 2011년에는 38,678명에서 2015년에는 82,536명, 2020년에는 147,378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학생의 비율 역시 2020년 현재 2.51%이며,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다도 2011년 0.55%에서 2020년에는 2.75%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5.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2018~2020년)

(단위 : 명, %)

구분	2018				2019				2020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한국출생	76,201	13,617	8,445	98,263	83,620	15,906	8,543	108,069	85,101	19,556	9,117	113,774
중도입국	5,046	1,933	1,341	8,320	5,163	2,153	1,381	8,697	5,088	2,488	1,575	9,151
외국인 자녀	11,869	2,577	1,183	15,629	15,175	3,688	1,596	20,459	17,581	4,791	2,081	24,453
계	93,116	18,127	10,969	122,212	103,958	21,747	11,520	137,225	107,770	26,835	12,773	147,378
비율	76.1	14.8	8.9	100	75.8	15.8	8.4	100	73.1	18.2	8.6	100

* 출처: 교육부(2021b).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p.25.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83613>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 원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 * 주: 1) 다문화 학생 수 = 국제결혼 가정 자녀(국내출생 자녀 + 중도입국 자녀) + 외국인 가정 자녀
 2) 국제결혼가정 자녀: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국내출생과 중도입국으로 분류됨
 2-1) 국내 출생 자녀: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2-2) 중도입국 자녀: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3) 외국인 가정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4)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아버지 국적에 따름

탈북학생의 재학 현황을 살펴보면(〈표 III-8-7〉), 2020년 4월 기준 탈북학생의 재학생 현황은 총 2,437명이었으며, 이 중 중학생이 782명(32.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생 741명(30.4%), 고등학생 738명(30.3%), 기타학교 176명(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143명에서 2018년에는 2,538명으로 2018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그 이후 2019년과 2020년에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탈북학생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III-8-6.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2011~2020년)

(단위 : 명, %)

연도 인원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다문화 학생 수(A)	38,678	46,954	55,780	67,806	82,536	99,186	109,387	122,212	137,225	147,378
전체 학생 수(B)	6,986,853	6,732,071	6,489,349	6,294,148	6,097,297	5,890,949	5,733,132	5,592,792	5,461,614	5,355,832
다문화 학생 비율 (A/B*100)	0.55	0.70	0.86	1.08	1.35	1.68	1.91	2.19	2.51	2.75%

* 출처: 교육부(2021b).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p.25.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83613>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 주: 2013년도 이후의 수치는 가장 최근 자료에 제시된 수치를 참고하였음.

표 III-8-7.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2010~2020년)

(단위 : 명, (%))

구분	학교 유형				합계
	초	중	고	기타학교*	
2010.4	562(49.2)	305(26.7)	276(24.1)	-	1,143
2011.4	773(54.5)	297(21.0)	347(24.5)	-	1,417
2012.4	1,020(60.7)	288(17.1)	373(22.2)	-	1,681
2013.4	1,204(60.4)	351(17.6)	437(21.9)	-	1,992
2014.4	1,159(57.3)	478(23.6)	385(19.0)	-	2,022
2015.4	1,224(49.5)	824(33.3)	427(17.3)	-	2,475
2016.4	1,143(45.4)	773(30.7)	601(23.9)	-	2,517
2017.4	1,027(40.5)	726(28.6)	785(30.9)	-	2,538
2018.4	932(36.7)	682(26.9)	751(29.6)	173(6.8)	2,538
2019.4	877(34.6)	738(29.2)	752(29.7)	164(6.5)	2,531
2020.4	741(30.4)	782(32.1)	738(30.3)	176(7.2)	2,437

* 출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20). 2020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2020년 4월 기준).
<https://www.hub4u.or.kr/hub/data/selectDataForm.do>에서 2021년 8월 26일 인출.

* 주: 기타학교는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을 말함.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은 2019년의 경우 0.95%로 전체학생(0.96%)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대비 0.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8-8>).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추세를 분석해 보면 2017년 이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8.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2013~2019년)

(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0.93(0.53)	0.83(0.45)	0.77(0.41)	0.81(0.43)	0.87(0.47)	0.94(0.50)	0.96(0.51)
다문화	1.03(0.38)	1.01(0.38)	0.85(0.29)	0.88(0.29)	1.17(0.32)	1.03(0.27)	0.95(0.28)

* 출처: 교육부(2019.2).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p.2.
 교육부(2020.2).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p.4.
 교육부(2021b).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p.5.

* 주: 괄호 안은 부적응 관련 학업중단(질병, 유학, 해외출국 제외)

2020년 4월 기준 탈북 청소년들의 중도탈락률은 2.9%이며, 중도탈락률을 연도 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2.0%에서, 2018년에는 2.5%, 2019년에는 3.0%, 2020

년에는 2.9%로 2017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을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중도탈락률이 1.5%, 중학생의 중도탈락률이 2.7%, 고등학교의 중도탈락률이 4.8%로 나타나 탈북청소년의 경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중도탈락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중도탈락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8-9.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2008~2020년)

(단위 : 명, %)

구분		초	중	고	계
2008	2007.4. 재학생 수	341	232	114	687
	중도탈락생 수	12	30	32	74
	중도탈락률	3.5	12.9	28.1	10.8
2017	2016.4. 재학생 수	1,143	773	601	2,517
	중도탈락생 수	11	14	26	51
	중도탈락률	1.0	1.8	4.3	2.0
2018	2017.4. 재학생 수	1,026	697	661	2,384
	중도탈락생 수	7	20	32	59
	중도탈락률	0.7	2.9	4.8	2.5
2019	2018.4. 재학생 수	932	682	751	2,365
	중도탈락생 수	13	22	35	70
	중도탈락률	1.4	3.2	4.7	3.0
2020	2019.4. 재학생 수	877	738	752	2367
	중도탈락생 수	13	20	36	69
	중도탈락률	1.5	2.7	4.8	2.9

* 출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20). 2020년 탈북학생 통계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2020년 4월 기준).
<https://www.hub4u.or.kr/hub/data/selectDataForm.do>에서 2021년 8월 26일 인출.

- * 주: 1) 학업중단율 = (해당연도 학업중단자 총수 / 전년 재학생 총수) × 100
 2) '17년 이전: 전년도 재학생 수 및 해당연도 학업중단자 수에 기타학교를 포함하여 산출
 '18년 이후: 유초중등교육통계 학업중단율 산출 방법* 준용
 3) 재학생 및 학업중단자에 기타학교(각종학교, 공민학교 등) 학생 제외

②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차별 경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차별 경험은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다문화 가정지원법에 따라서 3년마다 조사되기 때문에 2020년도의 조사 결과를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최창욱, 황세영, 유민상, 이민희, 김진호, 2018: 467). 가장 최근에 실시한 실태조사는 2018년도에 실시한 전국 다문화조사실태조사이기 때문에 2018년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내용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III-8-10〉). 우선 다문화가족 자녀가 지난 1년간 경험했던 사회적 차별은 9.2%였으며, 2015년 대비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24세의 차별 경험이 10.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9~11세가 9.7%, 12~14세가 8.8%, 15~17세가 7.7%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여부와 관련해서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가 13.9%로 학교에 다니는 대상자인 8.9% 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차별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10.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난 1년간 사회적 차별 경험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합계
전체	2012	13.8	86.2	100.0(66,536)
	2015	6.9	93.1	100.0(82,476)
	2018	9.2	90.8	100.0(94,524)
성별	여성	9.2	90.8	100.0
	남성	9.2	90.8	100.0
연령	9-11세	9.7	90.3	100.0
	12-14세	8.8	91.2	100.0
	15-17세	7.7	92.3	100.0
	18-24세	10.1	89.9	100.0
재학여부	학교에 다님	8.9	91.1	10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13.9	86.1	100.0
성장배경	국내에서만 성장	8.5	91.5	100.0
	외국 거주 경험	9.0	91.0	100.0
	외국에서 주로 성장	17.6	82.4	100.0
외국계 부모의 성별	외국계 부+한국계 모	10.2	89.8	100.0
	한국계 부+외국계 모	8.6	91.4	100.0
	외국계 부모	10.9	89.1	100.0
다문화가구 유형	결혼이민자	9.6	90.4	100.0
	기타귀화자	5.3	94.7	100.0
거주지역	동부	9.0	91.0	100.0
	읍면부	9.6	90.4	100.0

구분		있다	없다	합계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1.6	88.4	100.0
	100~200만원 미만	10.0	90.0	100.0
	200~300만원 미만	11.2	88.8	100.0
	300~400만원 미만	7.8	92.2	100.0
	400~500만원 미만	9.7	90.3	100.0
	500만원 이상	6.3	93.7	100.0

*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629.
 여성가족부(2016a).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377, p.462.
 여성가족부(2019a).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581.

- * 주: 1) 3년마다 가구조사로 실시되는 조사로, 9~24세 자녀 대상으로 지난 1년 간의 차별 경험을 질문한 결과임. 응답자 사례 수는 가중치가 적용된 수치임.
 2) 성별부터 가구소득까지의 결과는 2018년 조사결과임.

차별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자신을 차별한 사람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표 III-8-11>), 친구로부터의 차별이 6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터 고용주/직장동료로부터의 차별 경험이 28.1%, 이웃으로부터의 차별 경험이 12.8%,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차별 경험이 11.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8-11. 지난 1년간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한 사람

(단위 : %, 점)

구분	친구	선생님	친척	이웃	고용주 직장동료	모르는 사람	
2015	77.9	16.0	8.8	22.8	-	32.3	
2018	차별한 사람(%)	64.0	9.1	6.8	12.8	28.1	11.3
	차별정도(점)	2.51	1.40	1.34	1.54	1.79	1.41

* 출처: 여성가족부(2019a).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583-584.

- * 주: 1) '고용주 직장동료'는 2015년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2) 차별정도는 1~4점 척도로 값이 클수록 차별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냄.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차별 경험을 조사한 결과(<표 III-8-12>), 15세~19세 북한이탈자녀 중에서 차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20년에 4.1%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차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19년의 8.8%에 비해서 4.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12.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차별 경험(2017~2020년)

(단위 : %)

특성별	2017		2018		2019		2020	
	차별/무시당한 경험		차별/무시당한 경험		차별/무시당한 경험		차별/무시당한 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5~19세	7.9	92.1	6.0	94.0	8.8	91.2	4.1	95.9
20대	17.4	82.6	16.6	83.4	15.1	84.9	13.2	86.8
30대	24.2	75.8	20.4	79.6	16.9	83.1	16.6	83.4
40대	26.2	73.8	25.0	75.0	19.4	80.6	21.4	78.6
50대	27.8	72.2	21.2	78.8	18.3	81.7	21.4	78.6
60대 이상	17.1	82.9	10.9	89.1	14.7	85.3	15.6	84.4

* 출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2021). 2020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p.175
https://www.koreahana.or.kr/data_room/pro_data.jsp?sc_board_seq=60&sc_category_text=%EC%8B%A4%ED%83%9C%EC%A1%B0%EC%82%AC&page=1 에서 2021년 8월 21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지난 1년동안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무시당한 경험(2017~202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7&tblId=DT_43701N_194&vw_cd=MT_ZTITLE&list_id=D2_437001_007&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에서 2021년 8월 21일 인출.

* 주: 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년 조사

③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구금 현황

이주아동의 자유박탈과 관련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구금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8-13>), 2020년의 경우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8명, 청주외국인보호소에 2명,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2명이 구금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5년에는 34명, 2016년에는 41명, 2017년에는 35명, 2018년에는 53명, 2019년에는 57명, 2020년에는 12명의 아동이 구금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4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13. 이주아동 구금 현황(2015~2020년)

(단위 : 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화성외국인보호소	25	24	24	24	32	8
청주외국인보호소	7	13	8	25	19	2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2	4	3	4	6	2

* 출처: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2020.7).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p.5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내부자료(2021.8.26.).

(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시설 이용률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결혼이민이 본격화된 이후 지금까지 2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다문화가족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다문화가족 정책 역시 초기 적응지원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이민자뿐만 아니라 그 2대와 3대의 사회적 성취를 돕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변화되고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의 공교육체제로 수월한 진입과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이중언어 등 다양한 재능 개발지원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완화방안도 강구되고 있다(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20.6.25.: 1-2).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6).

다문화가족 자녀의 시설에 대한 인지율과 이용률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9a: 591-596). 하지만 이 조사는 3년마다 조사되기 때문에 2018년에 조사된 결과가 가장 최신 조사결과여서 2020년도 조사결과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18년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내용을 제시해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시설에 대한 인지율은 학교내방과후교실(95.1%), 공부방·지역아동센터·청소년

년방과후아카데미(84.6%), 청소년시설(71.6%), 다문화가족 지원센터(69.9%), 사회복지관(60.5%), 고용센터(40.2%), 꿈드림센터(36.4%), 다문화학교(32.2), 다문화예비학교(31.7%), 레인보우스쿨(31.2%)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8-14). 그리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에는 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비해 고용센터, 꿈드림센터, 다문화대안학교, 다문화예비학교등에 대한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한국국적이 없는 다문화가족 자녀인 경우에 고용센터에 대한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14.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시설 인지율(복수응답)

(단위: %)

구분		학교 내 후방과 교실	공무방,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관	고용센터	꿈드림센터*	레인보우스쿨	다문화예비학교	다문화대안학교
전체(2015)		84.7	70.2	59.9	62.2	53.4	33.5	-	18.3	19.5	20.4
전체(2018)		95.1	84.6	71.6	69.9	60.5	40.2	36.4	31.2	31.7	32.2
성별	여성	96.0	85.5	73.1	72.8	62.6	41.1	38.6	32.9	33.0	33.7
	남성	64.2	83.6	70.3	67.0	58.5	39.3	34.3	29.7	30.2	30.9
연령	9~11세	98.2	84.7	61.8	66.2	52.4	29.8	29.6	25.9	25.8	25.8
	12~14세	97.3	89.4	80.9	72.7	64.4	40.1	39.5	34.1	34.1	34.9
	15~17세	95.6	85.8	84.1	76.1	71.5	50.7	46.2	37.9	40.3	40.6
	18~24세	80.4	74.4	73.5	69.8	69.8	62.6	41.9	36.4	36.4	39.6
재학 여부	학교에 다님	97.1	86.1	72.6	70.5	60.6	38.8	36.1	31.0	31.6	31.9
	학교에 다니지 않음	67.4	63.3	60.4	61.8	60.1	59.5	39.8	34.4	32.1	38.2
성장배경	국내에서만 성장	97.4	86.5	73.1	70.8	61.3	40.3	36.9	31.4	31.5	32.3
	외국 거주 경험	96.4	86.5	73.6	67.5	65.2	40.6	34.6	32.2	33.0	33.2
	외국에서 주로 성장	64.7	59.0	52.0	62.1	44.9	38.7	32.4	27.3	31.2	31.6
한국 국적	있음	96.8	86.0	72.7	70.4	61.2	40.2	36.6	31.4	31.6	32.3
	없음	47.3	44.5	41.1	53.2	42.6	40.5	29.0	28.0	31.8	31.8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96.0	87.6	80.4	72.7	60.1	39.9	36.2	31.3	31.5	32.2
	100~200만원 미만	97.3	89.1	73.1	74.5	64.0	43.0	37.8	31.4	32.6	32.8
	200~300만원 미만	95.0	84.0	72.8	73.7	64.3	44.9	43.3	35.5	35.4	37.7
	300~400만원 미만	94.7	85.9	70.2	68.5	62.9	36.9	37.5	30.1	28.0	27.8
	400~500만원 미만	94.8	82.8	67.8	66.5	63.2	42.0	37.3	31.7	32.5	33.3
	500만원 이상	93.3	79.0	71.0	63.1	57.2	39.6	35.8	31.6	32.3	33.0

* 출처: 여성가족부(2019a).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p.591-596.

* 주: *는 2015년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시설에 대한 이용률을 살펴보면 학교내방과후교실(80.0%), 공부방·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42.8%), 청소년시설(25.6%), 다문화가족 지원센터(26.3%), 사회복지관(12.4%), 고용센터(2.1%), 꿈드림센터(4.3%), 다문화예비학교(1.3%), 다문화학교(1.2%), 레인보우스쿨(0.7%)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8-15〉).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학교에 다니지 않은 다문화가족 자녀일수록,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다문화가족 자녀일수록, 가구소득이 낮은 다문화가족 자녀일수록 고용센터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15. 다문화가족 자녀의 시설 이용률(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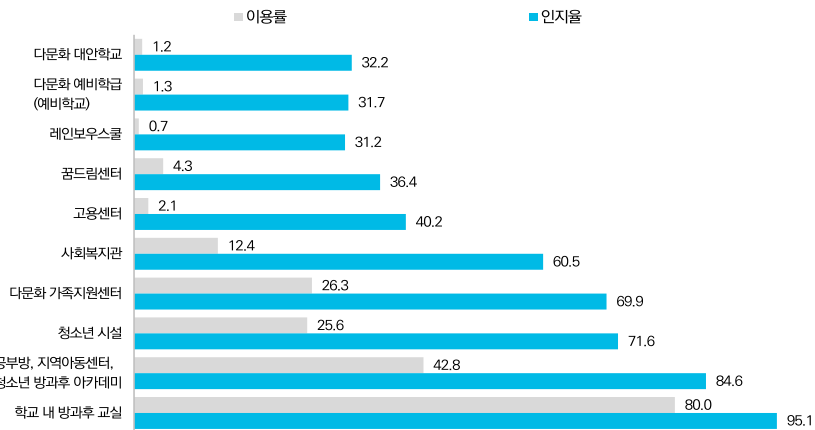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학교 내 방과 후 교실	공부방, 지역아동 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시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사회 복지관	고용 센터	꿈드림 센터*	레인 보우 스쿨	다문화 예비 학교	다문화 대안 학교	
전체(2015)	61.1	31.4	19.0	20.3	10.9	3.4	-	1.4	1.9	1.5	
전체(2018)	80.0	42.8	25.6	26.3	12.4	2.1	4.3	0.7	1.3	1.2	
성별	여성	81.7	41.5	24.1	27.6	12.3	2.2	4.7	0.7	1.0	1.1
	남성	78.3	44.0	27.1	25.0	12.5	2.0	4.0	0.8	1.5	1.4
연령	9~11세	87.7	45.4	18.3	30.0	11.6	0.7	4.1	0.7	1.2	1.1
	12~14세	82.4	46.8	31.0	25.8	12.9	1.1	5.4	0.7	0.6	0.7
	15~17세	78.0	42.1	36.0	23.5	12.2	2.1	4.3	0.7	1.8	2.0
	18~24세	52.4	27.9	28.2	18.1	14.2	8.5	3.1	1.1	2.0	1.8
재학 여부	학교에 다님	83.0	44.4	26.2	27.1	12.5	1.1	4.4	0.7	1.2	1.1
	학교에 다니지 않음	38.4	20.5	18.5	15.8	11.5	15.1	3.0	1.0	2.6	3.4
성장 배경	국내에서만 성장	82.7	44.6	26.3	26.3	12.2	1.9	4.5	0.6	0.9	1.1
	외국 거주 경험	81.4	37.2	27.4	27.2	12.5	1.0	2.0	1.0	0.7	0.1
	외국에서 주로 성장	44.5	28.3	15.5	25.0	14.8	5.6	5.2	1.6	6.2	4.8
한국 국적	있음	81.6	43.8	26.1	26.4	12.5	2.0	4.4	0.7	1.0	1.1
	없음	33.2	14.0	11.5	23.1	10.1	4.8	2.3	1.4	7.9	5.8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80.2	56.6	43.3	34.6	23.9	2.5	9.4	1.7	1.6	1.1
	100~200만원 미만	81.4	53.7	25.6	30.0	13.2	1.8	9.5	0.9	0.8	1.0
	200~300만원 미만	80.0	44.3	24.7	28.4	15.1	2.8	3.0	0.5	1.9	1.7
	300~400만원 미만	81.1	40.4	25.5	27.3	10.6	1.1	2.5	0.5	1.0	1.0
	400~500만원 미만	82.4	37.1	22.5	24.4	9.6	2.4	3.2	0.3	1.4	1.3
	500만원 이상	74.4	32.1	23.6	16.4	8.6	2.5	2.5	1.3	1.0	1.1

* 출처: 여성가족부(2019a).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p.591-596.

* 주: *는 2015년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시설에 대한 인지율과 이용률을 비교해보면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지원시설 모두에서 인지율과 이용률에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시설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요청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 출처: 여성가족부(2019a).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p.591-596.

* 주: 위 출처의 내용을 연구진이 그래프로 도식화함(단위: %).

그림 III-8-2.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시설 인지율과 이용률의 비교(복수응답)

2) 소년 사법

(1)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현황

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시설 수용 인원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시설에 수용된 수용인원 수는 보호소년과 위탁소년의 현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김영지 외, 2020: 503). 우선 보호소년의 현황을 살펴보면, 신수용인원은 2020년의 경우 1,637명이었으며, 전년 대비 44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16.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2011~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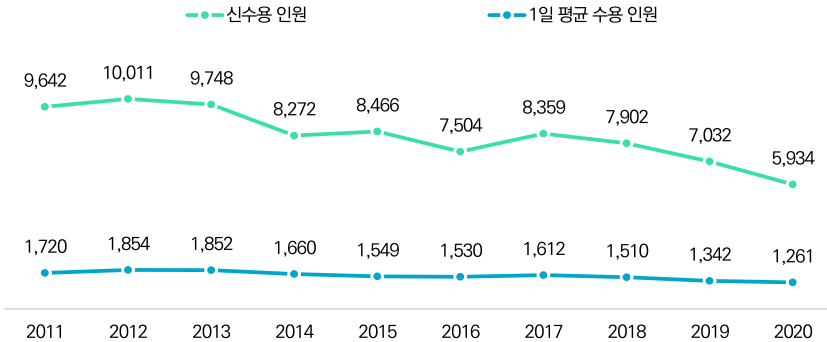
(단위 :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신수용인원	계	9,642	10,011	9,748	8,272	8,466	7,504	8,359	7,902	7,032	5,934
	보호소년	2,960	3,429	3,037	2,363	2,288	2,096	2,450	2,199	2,077	1,637
	위탁소년	6,682	6,582	6,711	5,909	6,178	5,408	5,909	5,703	4,955	4,297
1일평균 수용인원	계	1,720	1,854	1,852	1,660	1,549	1,530	1,612	1,510	1,342	1,261
	보호소년	1,264	1,390	1,380	1,236	1,112	1,132	1,168	1,079	946	927
	위탁소년	456	464	472	422	437	398	444	431	396	334

* 출처: 통계청(각 연도). e-나라지표.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738&board_cd=INDX_001에서 2021년 8월 21일 인출.

* 원자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TEAMS) 통계

- * 주: 1) 보호소년: 법원으로부터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 처분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
 2) 위탁소년: 법원으로부터 「소년법」 제18조(임시조치)제1항제3호에 따라 비행의 원인과 자질을 규명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
 3) 신수용인원: 당해연도 법원 소년부의 결정에 의해 소년보호교육기관에 송치 또는 위탁된 인원과 임시퇴원 취소, 유치 등으로 새로이 입원한 인원
 4) 1일평균수용인원: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의 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소년과 위탁소년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을 나타내는 수치



* 출처: 통계청(각 연도). e-나라지표.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738&board_cd=INDX_001에서 2021년 8월 21일 인출.

* 원자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TEAMS) 통계

* 주: 단위: 명

그림 III-8-3.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2011~2020년)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소년의 1일 평균수용인원도 2020년에는 927명이었으며, 2019년 대비 19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소년의 현황을 살펴보면 신수용인원이 2020년의 경우 4,297명이었으며, 2017년부터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소년의 1일 평균 수용인원도 2020년에는 334명이었으며, 2019년 대비 62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 수용기간별 인원을 살펴보면 2019년의 경우 총 2,755명 중 1개월 미만 수용자가 1,35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개월 미만이 653명, 12개월 이상이 483명,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이 177명, 3개월 미만이 8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수용인원은 2019년에 4.61개월로 나타났으며, 2018년의 5.10개월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0a: 509).

표 III-8-17. 연도별 소년원 수용기간별 인원(2009~2019년)

(단위 : 명, 월)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구분											
계	2,672	2,755	2,716	3,399	3,005	2,531	2,171	2,138	2,275	2,328	2,755
1월 미만	1,221	1,356	1,370	1,680	1,348	969	883	773	902	830	1,356
3월 미만	98	86	76	125	96	80	62	62	47	64	86
6월 미만	590	653	649	796	894	769	670	676	777	773	653
6월 이상											
12월 미만	262	177	160	209	232	208	181	189	179	214	177
12월 이상	501	483	461	589	435	505	375	438	370	447	483
평균 수용기간	5.71	4.61	4.66	4.66	4.90	5.18	4.80	5.35	4.85	5.10	4.61

* 출처: 여성가족부(2020a). 2020 청소년백서. pp.509-510.

* 원자료: 법무부(2020). 법무연감.

② 소년범죄자의 교도소 수용 현황

청소년범죄자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의 경우 18세가 17,578명(26.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7세 14,338명(21.6%), 16세 13,548명(20.5%), 15세 11,730명(17.7%), 14세 9,053명(13.7%)의 순으로 나타나 교도소에 수용된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령별 교도소 수용비율의 흐름을 살펴보면 14세의 경우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17세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교도소 수용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5세와 16세, 18세의 경우에는 2018년도까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18. 청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2015~2019년)

(단위 : 명(%))

연령 연도	계	14세 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15	71,035 (100.0)	64 (0.1)	7 (0.0)	14,387 (20.3)	17,624 (24.8)	18,231 (25.7)	20,722 (29.2)	-
2016	76,000 (100.0)	84 (0.1)	7,530 (9.9)	13,789 (18.1)	17,589 (23.1)	17,607 (23.2)	19,401 (25.5)	-
2017	72,759 (100.0)	93 (0.1)	7,703 (10.6)	12,376 (17.0)	16,391 (22.5)	17,358 (23.9)	18,838 (25.9)	-
2018	66,142 (100.0)	-	8,321 (12.6)	11,595 (17.5)	13,306 (20.1)	15,513 (23.5)	17,407 (26.3)	-
2019	66,247 (100.0)	-	9,053 (13.7)	11,730 (17.7)	13,548 (20.5)	14,338 (21.6)	17,578 (26.5)	-

* 출처: 여성가족부(2020a). 2020 청소년백서. p.467.

* 원자료: 대검찰청(2010~2020). 범죄분석.

* 주: 2008년 6월 개정 「소년법」시행으로 소년범죄 연령기준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됨. 2018년 이후 14세 미만 통계에서 제외.

소년수형자의 죄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의 경우 강간과 절도가 각각 21명(18.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강도 등 21명(18.3%), 폭력·상해 13명

(11.3%), 사기·횡령 8명(7.0%), 살인과 과실범이 각각 1명(0.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년 대비 소년수형자의 죄명별 인원을 살펴보면 절도와 폭력·상해는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사기·횡령, 강간, 강도, 살인, 과실범 등은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19.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2016~2020년)

(단위 : 명(%))

연도 \ 구분	계	절도	사기· 횡령	폭력· 상해	강간 등	강도 등	살인	과실범	기타
2016	150(100)	23(15.3)	2(1.3)	27(18.0)	35(23.3)	19(12.7)	5(3.3)	2(1.3)	37(24.7)
2017	130(100)	27(20.8)	9(6.9)	5(3.8)	44(33.8)	11(8.5)	5(3.8)	0(0.0)	29(22.3)
2018	105(100)	17(16.2)	12(11.4)	3(2.9)	24(22.9)	5(4.8)	4(3.8)	1(1.0)	39(37.1)
2019	116(100)	10(8.6)	9(7.8)	11(9.5)	26(22.4)	14(12.1)	3(2.6)	4(3.4)	39(33.6)
2020	115(100)	21(18.3)	8(7.0)	13(11.3)	21(18.3)	13(11.3)	1(0.9)	1(0.9)	37(32.2)

* 출처: 법무부(2021.7). 2021 교정통계연보. p.75.

- * 주: 1) 소년수형자가 수용된 전체 교정기관 통계. 각 년도.
2) 폭력은 폭행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포함.

소년수형자의 징역형 형기별 인원현황을 살펴보면(〈표 III-8-20〉), 2019년의 경우 1년 이상~3년 미만과 3년 이상~5년 미만이 각각 45명(38.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5년 이상~10년 미만 21명(18.1%), 6개월 이상~1년 미만 4명(3.4%), 15년 이상 1명(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년수형자의 징역형 형기별 인원의 비율을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1년 이상~3년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의 순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20. 소년수형자 징역형 형기별 인원 현황(2015~2019년)

(단위 : 명(%))

연도	계	6월 미만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15년 이상	무기
2015	130 (100)	1 (0.8)	11 (8.5)	56 (43.1)	48 (37.0)	12 (9.2)	2 (1.4)	-	-
2016	149 (100)	1 (0.7)	8 (5.4)	69 (46.3)	56 (37.6)	13 (8.7)	2 (1.3)	-	-
2017	130 (100)	-	7 (5.4)	67 (51.5)	46 (35.4)	9 (6.9)	-	1 (0.8)	-
2018	105 (100)	1 (1.0)	2 (1.9)	55 (52.3)	33 (31.4)	13 (12.4)	-	1 (1.0)	-
2019	116 (100)	-	4 (3.4)	45 (38.8)	45 (38.8)	21 (18.1)	-	1 (0.9)	-

* 출처: 법무연수원(2021). 2020 범죄백서. p.635.

- * 주: 1) 소년수형자가 수용된 전체 교정기관 통계, 각 년도.
2) 부정기형은 단기형을 기준(금고형 선고자 제외).

(2) 인권친화적 사법 환경

①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선정 수

국선보조인제도는 소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서, 소년 분류심사원에서 신병이 유치되어 있는 소년이나 정신적·육체적 미성숙으로 소년보호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소년들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에서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황지태, 김지영, 원혜옥, 김지연, 2016: 8-9).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의 조력횟수를 살펴보면 2020년의 경우 3,174회였으며, 전년도 대비 131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16년까지는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2017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21.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조력 횡수(2011~2020년)

(단위: 회)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국선보조인	3,762	4,096	4,606	4,101	4,408	4,359	4,756	3,960	3,305	3,174

* 출처: 대한민국정부(2017).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p.115. 부록 통계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내부자료(2021.8.26.).

* 원자료 : 법무부 내부자료

* 주: 국선보조인 조력 횡수

②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수용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수용률은 소년사범 시설들이 수용정원 대비 과밀정도를 산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년사범시설의 비인권적 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산출된 지표이다(김영지 외, 2020: 509). 전국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정원 대비 1일 수용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표 III-8-22〉),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2019년의 경우 112.9%였으며, 최근 5년 동안의 평균은 118.6%로 과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소년원의 경우에는 2019년에 117.1%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 동안의 평균이 1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구소년원의 경우에는 2019년에 62.0%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 동안의 평균은 68.0%로 나타났다. 광주소년원의 경우에는 2019년에 66.0%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 동안의 평균은 86.8%로 나타났다. 대전소년원의 경우에는 2019년에 92.5%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역시 96.5%로 나타났다. 춘천소년원의 경우에는 2019년에 53.3%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 동안의 평균은 44.7%로 나타났다. 제주소년원의 경우에는 2019년에 50.0%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 동안의 평균이 34.0%로 나타났다. 위 결과들을 통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부산소년원은 수용정원 대비 실제 수용인원의 평균이 100% 이상으로 과밀한 것으로 나타나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표 III-8-22. 전국 소년분류심사원 연도별 수용 현황(2015~2019년)

(단위 : 명(%))

분류심사원	1일 평균 수용인원(수용률)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소년 분류심사원 / 정원 170명	219 (128.8)	178 (104.7)	207 (121.8)	212 (124.7)	192 (112.9)	201.6 (118.6)
부산소년원 (위탁 대행) / 정원 70명	95 (135.7)	87 (124.3)	88 (125.7)	82 (117.1)	82 (117.1)	86.8 (124.0)
대구소년원 (위탁 대행) / 정원 50명	33 (66.0)	38 (76.0)	37 (74.0)	31 (62.0)	31 (62.0)	34 (68.0)
광주소년원 (위탁 대행) / 정원 50명	45 (90.0)	41 (82.0)	53 (106.0)	45 (90.0)	33 (66.0)	43.4 (86.8)
대전소년원 (위탁 대행) / 정원 40명	31 (77.5)	42 (105.0)	39 (97.5)	44 (110.0)	37 (92.5)	38.6 (96.5)
춘천소년원 (위탁 대행) / 정원 30명	10 (33.3)	10 (33.3)	17 (56.7)	14 (46.7)	16 (53.3)	13.4 (44.7)
제주소년원 (위탁 대행) / 정원 10명	4 (40.0)	2 (20.0)	3 (30.0)	3 (30.0)	5 (50.0)	3.4 (34.0)

* 출처: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2020.7).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p.33-34.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내부자료(2021.8.26.).

* 원자료: 법무부 내부자료(소년보호시설 정원 대비 수용 현황)

* 주: '평균값'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현황에 대한 평균값임.

소년원의 수용정원 대비 수용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표 III-8-23〉), 연도별 평균이 100%가 넘는 소년원은 정심여자중고등학교가 156.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봉중고등학교(142.9%), 읍내정보통신학교(136.9%), 오륜정보산업학교(117.9%), 대산학교(112.2%) 등 5개이었으며, 1일 평균 수용률이 100%를 넘지 않은 소년원은 신촌정보통신학교(93.6%), 한길정보통신학교(91.5%), 고룡정보산업학교(89.3%), 미평여자학교(70.1%), 송천중고등학교(68.8%) 등 5개였다. 결과적으로 전체 소년원 10개소 중에서 5개소가 실제 수용인원이 과밀한 상태

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소년원의 50%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밀문제의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II-8-23. 전국 소년원 연도별 수용 현황(2015~2019년)

(단위 : 명(%))

소년원	1일 평균 수용인원(수용률)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고봉중등학교 (서울소년원) / 정원 170명	236 (157.3)	234 (156.0)	246 (164.0)	204 (136.0)	172 (101.2)	218.4 (142.9)
오류정보산업학교 (부산소년원) / 정원 90명	119 (119.0)	139 (139.0)	125 (125.0)	111 (111.0)	86 (95.6)	116 (117.9)
읍내정보통신학교 (대구소년원) / 정원 90명	130 (144.4)	141 (156.7)	137 (152.2)	114 (126.7)	94 (104.4)	123.2 (136.9)
고룡정보산업학교 (광주소년원) / 정원 120명	94 (78.3)	104 (86.7)	135 (112.5)	108 (90.0)	95 (79.2)	107.2 (89.3)
송천중등학교 (전주소년원) / 정원 130명	108 (77.1)	92 (65.7)	81 (57.9)	91 (65.0)	102 (78.5)	94.8 (68.8)
대산학교 (대전소년원) / 정원 80명	115 (115.0)	98 (98.0)	122 (122.0)	121 (121.0)	84 (105.0)	108 (112.2)
미평여자학교 (청주소년원) / 정원 80명	45 (50.0)	45 (50.0)	45 (50.0)	85 (94.4)	85 (106.3)	61 (70.1)
정심여자중고등학교 (안양소년원) / 정원 80명	141 (176.3)	147 (183.8)	127 (158.8)	109 (136.3)	103 (128.8)	125.4 (156.8)
한길정보통신학교 (제주소년원) / 정원 40명	31 (77.5)	43 (107.5)	43 (107.5)	33 (82.5)	33 (82.5)	36.6 (91.5)
신촌정보통신학교 (춘천소년원) / 정원 120명	93 (93.0)	89 (89.0)	107 (107.0)	103 (103.0)	92 (76.7)	96.8 (93.6)

* 출처: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2020.7).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pp.34-36.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내부자료(2021.8.26.).

* 원자료: 법무부 내부자료(소년보호시설 정원 대비 수용 현황)

* 주: '평균값'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현황에 대한 평균값임.

③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4,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소·고발 867건, 행정심판 630건, 청원 593건, 행정소송 60건, 헌법소원 54건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8-24).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성인 포함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산출된 것이어서,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수를 정확하게 산출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표 III-8-24. 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현황(2014~2020년)

(단위 : 건)

연도	내용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고소·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헌법소원
2014		903	369	61	614	3,745	27
2015		957	552	74	733	3,790	23
2016		797	347	56	698	3,716	38
2017		744	437	70	783	4,528	70
2018		772	310	86	855	4,322	32
2019		558	509	91	916	4,211	29
2020		593	630	60	867	4,124	54

* 출처: 법무부(2021.7). 2021 교정통계연보. pp.124-131.

④ 소년보호사건 항고 및 재항고 접수 건

소년보호사건의 항고와 재항고 접수 건수를 2021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항고는 2021년에 접수된 건은 총 221건이었으며, 2021년에 처리된 건수는 총 239건으로 나타났다. 항고에 대한 처리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각이 1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용(환송)이 25건, 취하가 22건, 기타 3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항고의 경우에는 2021년에 접수된 건은 총 22건이었으며, 2021년에 처리된 건수는 총 2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항고에 대한 처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각이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용(환송) 1건, 취하 1건으로 나타났다.

표 III-8-25. 소년보호 항고·재항고 사건 수

(단위 : 건)

연도	구분	접수	처리				
			합계	인용(환송)	기각	취하	기타
2020	항고	271	232	26	186	18	2
	재항고	13	13	-	12	1	-
2021	항고	221	239	25	189	22	3
	재항고	22	26	1	24	1	-

* 출처: 법원행정처(2020). 2020 사법연감. p.1075.
 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p.1099.

(3) 회복적 프로그램(다이버전) 운영

① 사회 내 처분(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수

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 형법 제62조의2에 의한 집행유예 조건부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청소년대상자 등에 대하여 실시되는 제도이다(여성가족부, 2020a: 520). 2019년 기준 전체 보호관찰인원은 223,072명이며, 이 중 소년보호관찰인원은 40,587명으로 18.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비율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8-26>).

표 III-8-26.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비율(2015~2019년)

(단위 : 명, %)

연도	구분	전체보호관찰인원	소년보호관찰인원	소년보호관찰비율
2015		199,713	51,978	26.0
2016		227,141	49,687	21.9
2017		240,073	47,493	20.0
2018		227,733	45,364	19.9
2019		223,072	40,587	18.2

* 출처: 여성가족부(2020a). 2020 청소년백서. p.520.
 * 원자료: 법무부(2010~2020). 법무연감.

사회봉사명령이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범죄에 대한 속죄의식 유도 등 교육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여성가족부, 2020a: 523). 2019년의 경우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집행인원은 총 5,331명이었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한 인원은 771명이었다(<표 III-8-27>).

표 III-8-27. 청소년 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 인원(2015~2019년)

(단위 : 명)

연도	구분	총계	직접 집행	협력집행					
				소계	자연보호	복지분야	공공시설	대민지원	기타
2015		7,222	1,553	5,669	3	5,208	133	301	24
2016		6,026	1,282	4,744	1	4,373	130	215	25
2017		6,656	1,122	5,534	4	5,246	159	99	26
2018		6,258	996	5,262	6	4,923	177	117	39
2019		5,331	771	-	23	-	568	180	4,560

* 출처: 여성가족부(2020a). 2020 청소년백서. p.524.

* 원자료: 법무부(2020).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법원이 일정시간 동안 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봉사활동 등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여성가족부, 2020a: 524). 2019년의 경우 수강명령을 집행 받은 청소년은 총 3,528명이었으며, 2018년 대비 962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경우 보호관찰소에서의 직접 집행은 2,293명이었으며, 협력 집행은 1,235명이었다(<표 III-8-28>).

표 III-8-28. 청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 인원(2015~2019년)

(단위 : 명)

연도	구분	총계	직접 집행	협력집행						
				소계	약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2015		4,410	4,375	35	-	2	26	1	4	2
2016		3,915	3,882	33	-	-	21	2	6	4
2017		9,779	9,212	567	-	-	78	2	43	444

연도	구분 총계	직접 집행	협력집행						
			소계	약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2018	4,490	4,025	465	1	52	53	-	8	351
2019	3,528	2,293	1,235	1	81	312	-	69	772

* 출처: 여성가족부(2020a). 2020 청소년백서. p.525.
* 원자료: 법무부(2020).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② 조건부 기소유예 비율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통상의 기소유예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계속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여성가족부, 2020a: 481). 2019년의 경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은 청소년은 3,000명이었으며, 이는 전체 기소유예자 15,129명 대비 15.0%에 해당한다. 최근 5년간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8-29〉).

표 III-8-29.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현황(2015~2019년)

(단위 : 명, %)

연도	구분 소년범죄(A)	기소유예(B)	선도조건부 기소유예(C)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비율(C/B × 100)
2015	71,035	28,333	3,413	12.0
2016	76,000	26,558	3,409	12.8
2017	72,759	25,416	3,495	13.8
2018	66,142	20,237	3,031	15.0
2019	66,247	15,129	3,000	15.0

* 출처: 여성가족부(2020a). 2020 청소년백서. p.482.
* 원자료: 대검찰청(2010~2020), 검찰연감.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제도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직접 선도업무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차이가 있다. 보호관찰소의 선도위탁 방법으로는 보호관찰관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도교육, 집단 치료, 상담 등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도대상자의

가족, 이웃사람, 친구 등과 접촉할 수 있고, 선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학비 보조, 취학·취업 알선, 기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0a: 484). 2019년의 경우 전체 기소유예자는 226,842명이었으며, 이 중 보호관찰소에서 선도위탁을 실시한 인원은 1,845명(0.8%)이었고, 재범 등으로 인한 위탁 취소는 100명이었다.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증가하였으나, 2016년 이후부터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30.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2015~2019년)

(단위 : 명)

연도	구분	기소유예자 전체	선도위탁 상황			
			선도대상자	계속(연장포함)	해제	취소
2015		354,370	5,184	4,052	3,098	353
2016		368,001	4,419	2,776	2,087	253
2017		325,215	4,371	2,549	1,679	205
2018		266,032	2,519	2,011	1,162	112
2019		226,842	1,845	1,373	905	100

* 출처: 여성가족부(2020a). 2020 청소년백서. p.485.

* 원자료: 대검찰청(2010~2020), 검찰연감.

3) 경제적 착취

(1) 청소년 노동조건 수준

① 청소년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

청소년 노동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019년의 경우 19.2일이었으며, 2018년 대비 0.3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8-31〉). 그리고 2019년 청소년 노동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2.4시간이었고, 2018년 대비 4.0시간 감소하였다. 연령별로는 20세~24세 청소년의 근로일수(17.3일)와 근로시간(130.8시간)이 15세~19세의 근로일수(13.3일)와 근로시간(89.0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근로일수(19.2일)와 근로시간(157.9시간)이 여자 청소년

의 근로일수(19.1일)와 근로시간(144.6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31. 월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2010~2019년)

(단위 : 일, 시간)

연도	연령	전 체		남 자		여 자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2010	전 체	22.2	187.0	22.1	190.6	22.3	181.1
	15-19세	18.1	135.5	18.5	143.8	17.8	129.8
	20-24세	21.4	174.5	20.9	178.0	21.6	172.6
2011	전 체	21.6	180.8	21.7	185.0	21.6	174.0
	15-19세	17.3	131.3	16.9	129.9	17.6	132.2
	20-24세	20.8	168.9	20.6	174.2	20.9	165.8
2012	전 체	20.9	173.7	21.0	178.3	20.9	166.4
	15-19세	16.2	112.4	16.2	113.3	16.2	111.7
	20-24세	20.0	159.2	19.9	164.6	20.0	156.4
2013	전 체	20.3	167.9	20.3	173.0	20.2	159.9
	15-19세	16.0	113.3	15.9	115.7	16.0	111.5
	20-24세	19.3	152.7	19.1	156.6	19.4	150.4
2014	전 체	20.1	165.5	20.2	171.0	20.0	157.1
	15-19세	15.4	105.9	15.8	113.1	15.1	100.1
	20-24세	19.0	149.3	18.9	152.3	19.1	147.4
2015	전 체	21.6	173.5	21.7	179.2	21.4	165.0
	15-19세	15.0	102.3	15.4	109.0	14.5	96.4
	20-24세	19.9	152.6	19.8	154.9	20.0	151.2
2016	전 체	21.0	171.1	21.0	176.5	20.9	163.1
	15-19세	15.1	105.4	15.8	114.6	14.5	97.0
	20-24세	19.3	151.5	19.1	153.0	19.5	150.4
2017	전 체	20.8	168.5	20.9	174.3	20.6	160.1
	15-19세	14.5	103.4	15.1	112.3	14.0	96.4
	20-24세	18.9	146.0	18.8	148.0	18.9	144.6
2018	전 체	19.5	156.4	19.6	161.8	19.4	148.6
	15-19세	13.8	94.9	14.5	102.6	13.2	88.7
	20-24세	17.7	136.6	17.8	141.2	17.7	133.5
2019	전 체	19.2	152.4	19.2	157.9	19.1	144.6
	15-19세	13.3	89.0	13.5	91.9	13.2	86.4
	20-24세	17.3	130.8	17.4	133.5	17.2	129.0

* 출처: 여성가족부(2020a). 2020 청소년백서 pp.428-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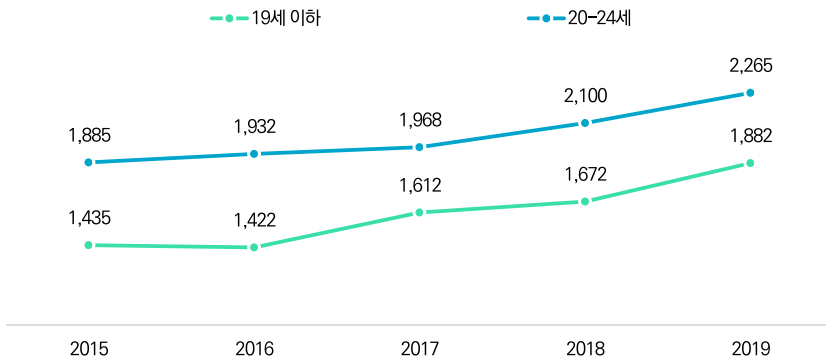
* 원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주: 근로시간은 총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임.

이전 년도의 수치는 최근 자료의 결과값으로 수정하였음.

②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수준

2019년 기준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19세 이하 청소년 노동자의 경우 월평균 1,882천원이었으며, 20세~24세 청소년은 월평균 2,265천원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19세 이하의 경우 210,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0세~24세의 경우에는 165,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8-4).



* 출처: 여성가족부(2020a). 2020 청소년백서 p. X IV.

* 원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주: 임금수준은 월 임금 총액을 의미함(단위: 천원).

그림 III-8-4.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시간당 임금총액은 전반적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증가 추세는 모든 연령층에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8-32〉). 하지만 전체 평균(20,731원)과 비교했을 때 19세 이하(11,631원)와 20세~29세(15,155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9세 이하 청소년과 20세~29세 청소년들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청소년들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32.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2017~2020년)

(단위 : 원(%))

구 분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2017	2018	2019	2020	2017	2018	2019	2020	2017	2018	2019	2020
전체	17,381	19,522	20,573	20,731	18,835	21,203	22,193	15,015 (72.4)	13,053 (69.3)	14,492 (68.3)	15,472 (69.7)	19,316
19세 이하	8,336	9,820	10,506	11,631	9,896	11,479	12,461	9,808 (84.3)	7,828 (79.1)	9,215 (80.3)	9,754 (78.3)	10,149
20~ 29세	12,431	14,177	15,139	15,155	13,495	15,374	16,353	11,749 (77.5)	10,175 (75.4)	11,472 (74.6)	12,342 (75.5)	14,078
30~ 39세	18,280	20,530	21,451	20,343	18,920	21,387	22,250	16,029 (78.8)	14,694 (77.7)	15,823 (74.0)	16,834 (75.7)	19,708
40~ 49세	20,279	22,730	23,750	23,337	21,430	24,093	25,057	17,079 (73.2)	15,237 (71.1)	16,771 (69.6)	17,430 (69.6)	22,278
50~ 59세	18,923	21,043	22,410	22,845	20,609	22,802	24,069	16,777 (73.4)	14,406 (69.9)	16,064 (70.4)	17,213 (71.5)	21,312
60세 이상	13,722	15,552	16,760	17,920	15,083	17,521	18,421	14,647 (81.7)	12,193 (80.8)	13,425 (76.6)	14,819 (80.4)	16,419

* 출처: 고용노동부(2017.5). 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p.12.
 고용노동부(2018.4.). 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p.4.
 고용노동부(2019.4.). 2018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p.4.
 고용노동부(2020.4.). 2019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p.4.
 고용노동부(2021.5.). 2020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p.4.
<http://laborstat.moel.go.kr/lsm/bbs/selectBbsDetail.do> 에서 2021년 9월 2일 인출.

* 주: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③ 청소년 실업률 추이

청소년의 실업률은 15~24세의 경우 2020년에 10.5%로 나타났으며, 2019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8-33). 그리고 성별로 살펴보면 15~24세의 경우 남자가 11.1%로 여자 10.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의 실업률이 여자의 실업률보다 높은 경향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15~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령을 축소시켜서 살펴보면 2020년에는 8.7%로 나타났으며, 15~24세의 실업률 10.5%보다 1.8%p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5~19세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은 10.8%로 15~19세 여자 청소년의 실업률 7.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8-33. 청소년 실업률 추이(2000~2021년)

(단위 : %)

성별	연령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계	계	4.4	3.7	3.7	3.6	4.0	3.2
	15~19세	14.5	12.3	11.9	10.6	8.7	9.1
	15~24세	10.8	10.2	9.7	10.5	10.5	7.1
남자	계	5.0	4.0	4.0	3.6	3.9	3.3
	15~19세	15.2	13.0	15.1	10.4	10.8	11.9
	15~24세	13.5	12.1	11.1	11.3	11.1	8.0
여자	계	3.6	3.4	3.3	3.5	4.0	3.1
	15~19세	13.8	11.7	9.6	10.7	7.1	6.8
	15~24세	9.1	8.9	8.9	10.0	10.1	6.5

* 출처: 통계청(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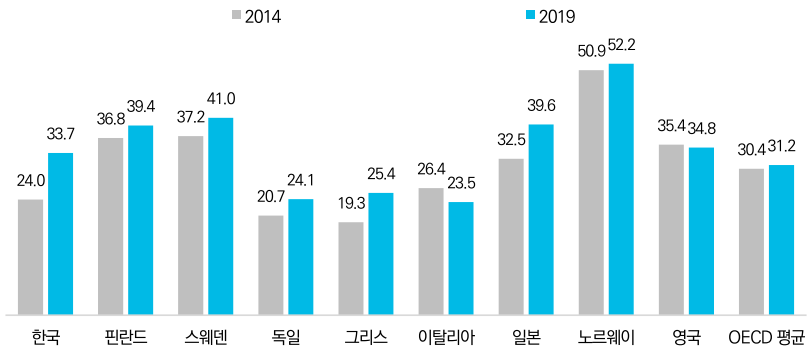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02S&c 에서 2021년 9월 2일 인출.

* 주: 경제활동인구조사 기본 연령급간의 청소년 연령(15~19세)과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9~24세)을 고려한 연령급간(15~24세) 두 가지를 제시함.

(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노력

①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고용된 청소년 중 파트타임으로 고용된 청소년의 비율은 2019년에 33.7%였으며, OECD 평균인 31.2%와 비교했을 때 2.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8-5). 그리고 2014년과 비교했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의 비율은 2014년의 24.0%보다 9.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했을 때 고용된 청소년(15~24세)중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의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으며, 2014년에 비해서도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출처: 여성가족부(2020a). 2020 청소년백서 p.VII.

* 원자료 : OECD(2019). Labour Force Statistics.

* 주: 단위: %

그림 III-8-5. 고용된 청소년(15~24세) 중 파트타임 비율: 국제비교(2014/2019)

②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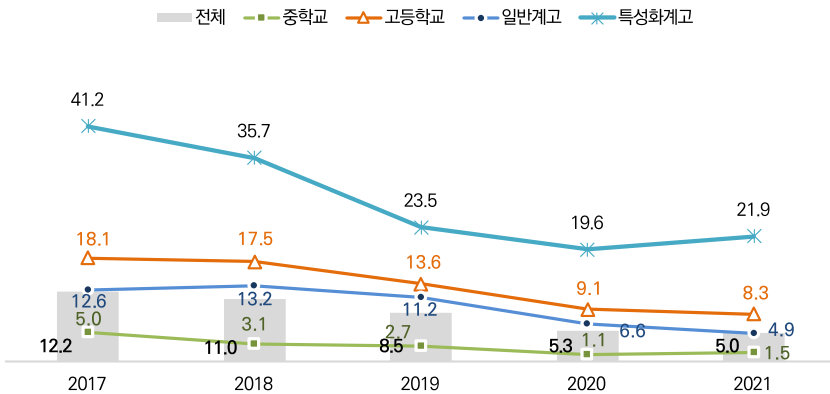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부당처우 경험률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을 조사하기에 앞서서 우선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청소년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률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학생이 5.1%로 여학생 4.8%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8.3%로 중학교 1.5%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계고가 21.9%로 일반계고 4.9%보다 높았다. 가족 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이 11.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조손가정 5.4%, 양부모가정 4.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하가 8.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 4.2%, 상 2.8%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가 10.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 5.3%, 상 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이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특성화계고 학생들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34.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5.0	95.0	100.0(5,730)	
성별	남학생	5.1	94.9	100.0(2,969)	0.164
	여학생	4.8	95.2	100.0(2,761)	
학교급	중학교	1.5	98.5	100.0(2,832)	141.386***
	고등학교	8.3	91.7	100.0(2,898)	
고교 유형	일반계고	4.9	95.1	100.0(2,309)	178.832***
	특성화계고	21.9	78.1	100.0(589)	
지역 규모	대도시	5.1	94.9	100.0(2,178)	26.221***
	중소도시	3.9	96.1	100.0(2,782)	
	읍면지역	8.4	91.6	100.0(77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2	95.8	100.0(5,089)	60.791***
	한부모가정	11.9	88.1	100.0(521)	
	조손가정	5.4	94.6	100.0(38)	
학업 성적	상	2.8	97.2	100.0(1,559)	53.040***
	중	4.2	95.8	100.0(2,490)	
	하	8.1	91.9	100.0(1,671)	
경제적 수준	상	3.6	96.4	100.0(2,880)	45.768***
	중	5.3	94.7	100.0(2,234)	
	하	10.1	89.9	100.0(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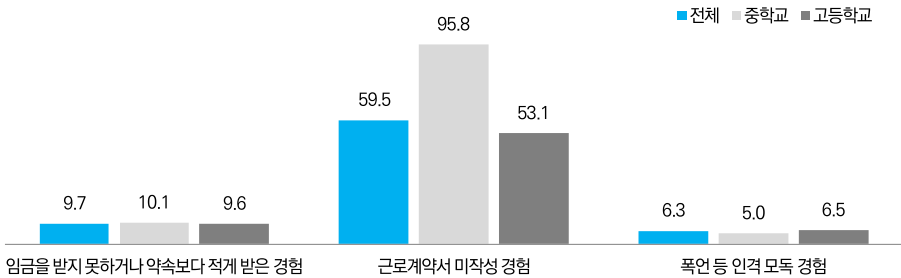
*** $p < .001$.



* 주: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III-8-6.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의 부당처우 경험여부를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험이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한 경험(10.8%),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9.7%),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한 경험(8.7%), 폭언 등 인격모독 경험(6.2%), 이유없이 부당해고를 당한 경험(5.2%), 작업환경의 불결과 위험(5.1%), 성적피해 경험(1.6%), 구타나 폭행 경험(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험을 성별과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우선 성별로는 남학생이 67.5%로 여학생 50.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가 95.8%로 고등학교 53.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8-7).



* 주: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 근로계약서 작성경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를 질문하였으므로 '없다' 값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당처우 경험율을 나타냄.

그림 III-8-7. 아르바이트시 청소년의 주요 부당처우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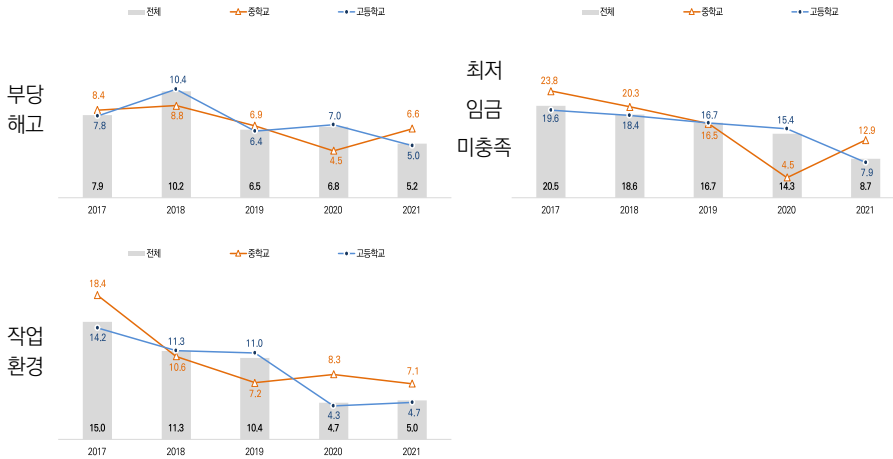
표 III-8-35.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90.3	7.6	2.1	100.0(282)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89.2	8.0	2.8	100.0(282)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다*	59.5	33.9	6.6	100.0(283)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94.8	4.7	0.5	100.0(281)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94.9	4.0	1.0	100.0(282)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93.8	3.7	2.6	100.0(283)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98.9	0.8	0.3	100.0(282)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를 경험했다	98.4	1.3	0.3	100.0(282)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91.3	6.0	2.7	100.0(281)

* 근로계약을 작성했는지를 질문하여 '없다'값이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부당처우 경험율을 나타냄.





* 주: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 단 근로계약서를 작성문항의 경우 '없다' 값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당처우 경험율을 나타냄.

그림 III-8-8.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연도별 추이)

③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율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교육 경험율과 관련하여 교육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20년에 50.2%로 나타났으며, 2018년(36.1%)에 비해 14.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55.5%)가 중학교(44.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계고(65.1%)가 일반계고(53.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받은 곳은 학교가 49.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기관 및 전문교육기관(9.4%), 청소년시설(8.2%),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나 업체의 본사(4.8%)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권익교육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교육의 도움여부를 교육받은 장소별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응답은 학교가 79.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기관 및 지원기관 74.3%, 청소년시설 71.2%,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나 업체의 본사 63.4%의 순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0b: 299).

표 III-8-36.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과 도움정도

(단위 : %)

구분		교육받은 적 있음	교육받은 곳(복수응답)				교육이 도움됨
			학교	공공기관 및 전문교육기관	청소년시설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나 업체의 본사	
전체	2018	36.1	33.8	8.5	8.1	3.2	71.9
	2020	50.2	49.1	9.4	8.2	4.8	-
중학교	2018	28.9	26.0	7.9	9.1	3.0	74.3
	2020	44.5	43.2	8.5	7.9	3.9	-
고등학교	2018	42.0	40.3	8.9	7.2	3.4	70.6
	2020	55.5	54.6	10.3	8.4	5.7	-
┌ 일반계고	2018	39.1	37.6	7.2	6.2	2.8	69.8
	2020	53.5	52.7	9.3	7.8	5.1	-
└ 특성학교	2018	55.5	53.6	17.4	11.9	6.5	73.0
	2020	65.1	64.1	15.4	11.7	8.6	-

* 출처: 여성가족부(2020b).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297.

* 주: 1) '교육이 도움된다'는 값은 최근 1년 동안 근로권익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에 대해 질문한 결과임.
2) 2020년도에는 근로권익교육 도움 정도를 교육장소를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여 전체 값을 기입하지 않음.

4) 성적 착취

(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수준

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표 III-8-37〉), 2019년의 경우 4,468명이 접수되었으며, 2018년 대비 11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계와 기소 현황도 2019년에는 4,521명이 처분 받았으며, 이 중 1,642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자의 경우(〈표 IV-7-43〉),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이후 2019년까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계속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피해접수 인원이 매년 수천명에 이르는 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

이 지속되고 있으며(대검찰청, 2020.10: 349),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표 III-8-37.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2012~2019년)

(단위 : 명)

구 분	접수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구공판	구약식		
2012	4,261	4,186	1,501	390	1,228	1,067
2013	4,526	4,525	1,851	153	1,301	1,220
2014	4,626	4,688	1,882	14	1,430	1,362
2015	4,516	4,505	1,744	0	1,419	1,342
2016	4,615	4,585	1,702	2	1,461	1,420
2017	4,767	4,659	1,720	24	1,460	1,455
2018	4,585	4,513	1,731	19	1,404	1,359
2019	4,468	4,521	1,642	21	1,468	1,390

* 출처: 대검찰청(2018.10). 2018 검찰연감. p.410.
 대검찰청(2019.10). 2019 검찰연감. p.378.
 대검찰청(2020.10). 2020 검찰연감. p.350.

* 주: 1) 산출죄명: 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폭력특별
 범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예관한법률위반(강간 등)
 2) 기타: 기소중지, 참고인증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 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3) 기소인원은 당해기간에 공판기소인원과 약식기소인원을 합한 인원이며, 불기소인원은 당해기간에 혐의
 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증지,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인원을
 합한 인원임. (기소인원과 불기소인원에 대한 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IP
 ageDetail.do?idc_cd=1732](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IP

 ageDetail.do?idc_cd=1732))

②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현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주요 형량은 2013년 이후 계속
 변화되고 있으며, 2021년 3월 23일에 일부 개정되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
 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주요 형량은 <표 III-8-38>과 같다. 2021년
 3월 23일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
 하는 경우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

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법제처, 2021). 이러한 변화는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 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특례규정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1.3.23. 일부개정).

표 III-8-38.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주요 형량

법령	조문	성범죄 내용	형량
형법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제305조)	강간(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제297조의2)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 등 상해·치상(제301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7조)	13세 미만 대상으로 강간(제7조1항)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 대상으로 유사강간(제7조2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 대상으로 강제추행(제7조3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7조)	강간(제7조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제7조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제7조3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비, 음모(제7조의2)(신설 20.6.2)	3년 이하 징역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제8조)	간음 혹은 간음하게 하는 경우(제8조1항)(개정 2020. 5. 19.)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 또는 추행하게 하는 경우(제8조2항)(개정 2021. 3. 23.)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령	조문	성범죄 내용	형량
	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	강간 등 상해·치상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	강간 등 살인·치사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11조)	제작수입수출(제11조1항) (개정 2020. 6. 2.)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목적판매·배포·전시(제11조2항) (개정 2020. 6. 2.)		5년 이상의 징역	
전시·상영(제11조3항) (개정 2020. 6. 2.)		3년 이상의 징역	
소지(제11조5항) (개정 2020. 6. 2.)		1년 이상의 징역	
알선행위(제11조4항) (개정 2020. 6. 2.)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2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음란물 제작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혹은 국외 이송, 국외거주 아동·청소년을 국내 이 송(제12조1항) (개정 2020. 6. 2.)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3조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 혹은 성을 팔도록 권유(제13조2항)(개정 2021. 3. 2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 [(제13조3항)(신설 2020.5.19)]	해당 죄에 대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제14조)	폭행·협박·선불금·업무고용 등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제14조1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의 강요행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제14조2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제14조3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조문	성범죄 내용	형량
	알선영업행위 등 (제15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범죄사용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 제공, 알선 및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제15조1항) (개정 2021. 3. 23)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장소 제공, 알선정보 제공(제15조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제15조3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제15조의2) (신설 2021. 3. 23)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 유발, 유인·권유 (제15조의2, 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 유발, 유인·권유 (제15조의2, 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제16조)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함의 강요	7년 이하의 유기징역	

* 출처: 법제처(20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 에서 2021년 9월 2일 인출.
 법제처(2021).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 에서 2021년 9월 2일 인출.
 법제처(20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 에서 2021년 9월 2일 인출.

- * 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5.19. 개정, 2020.11.20.시행) 주요 개정 내역
- 가. 피해아동·청소년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 하도록 함(제2조제6호).
 - 나. 대상아동·청소년의 정의 규정과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2조제7호, 제39조 및 제40조 삭제).
 - 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제13조 제3항 신설).
 - 라.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함(제20조제3항제1호).
 - 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여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교육·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제38조).
 - 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 신설).
 - 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함(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

위의 <표 III-8-38>에 제시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주요형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며, 이 법에 의하여 실제로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범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에 발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2020년에 발표된 국회의원 김진애 보도자료(2020.10.19.)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범의 구속률은 2015년의 경우 14.4%였으나 2020년에는 10.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 처벌을 보다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8-39.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2015~2020년)

(단위 : %)

	2015 (A)	2016	2017	2018	2019	2020 (B)	변화율 (B/A)
합계	14.4	12.5	11.9	10.9	9.3	10.5	-27
서울중앙지검	11.5	12.5	11.2	10.4	6.0	9.2	-20
서울동부지검	9.1	11.6	11.5	9.1	5.2	10.3	+13
서울남부지검	9.2	9.3	6.7	9.9	3.8	10.5	+14
서울북부지검	11.2	5.6	9.9	8.6	7.5	9.2	-18
서울서부지검	3.3	7.7	9.1	6.0	3.6	15.2	+361
의정부지검	16.1	7.6	9.2	10.2	6.0	5.6	-65
청주지검	21.3	9.8	12.0	10.3	19.8	6.0	-72
창원지검	25.5	18.7	12.5	14.8	9.2	8.8	-65
부산지검	5.7	10.6	10.7	6.8	5.0	8.9	+56

* 출처: 김진애 국회의원(2020.10.19.). 보도자료: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 구속률 급감.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kspace406&logNo=222119760258&parentCategoryNo=&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List> 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대검찰청 형사4과 내부자료(2021.8.26.).

* 주: 관련 죄명 :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추행)

(2)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정도

①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현황

성폭력·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지원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2월 기준 성폭력피해 상담소 168개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일반, 장애인, 특별지원, 자립지원 공동생활) 34개소, 해바라기센터 40개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일반·청소년) 39개소,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12개소, 대안교육 위탁기관 2개소,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 1개소, 자활지원센터 12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 30개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32개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8개소, 가정폭력상담소(통합상담소) 211(46)개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5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8개소,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345호, 청소년성문화센터 58개소 등이 있다.

표 III-8-40. 성폭력·성착취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번호	시설별	시설수	대상	보호기간(최대)	비고
1	성폭력피해 상담소	168	성폭력 피해자		이용시설
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일반, 장애인, 특별지원, 자립지원 공동생활)	34	성폭력 피해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1년+1년 6월) • 장애인(2년+회복 시) • 특별지원(18세+2년) • 자립지원(2년+2년) 	생활시설
3	해바라기센터	40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이용시설
4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일반·청소년)	39	성매매피해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1년+1년 6월) • 청소년(19세가 될 때 까지+2년) 	생활시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12	성매매피해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2년 	생활시설
6	대안교육 위탁기관	2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이용시설
7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	1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수사·소송진행 중인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 	생활시설
8	자활지원센터	12	성매매피해자 등		이용시설
9	성매매피해상담소	30	성매매피해자 등		이용시설

번호	시설별	시설수	대상	보호기간(최대)	비고
10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시설	32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 2년 이내	생활시설
11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8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이주여성 및 그 가정 구성원		이용시설
12	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211 (46)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성폭력 등 피해자)		이용시설
1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5	가정폭력피해여성과 아동	• 6월(+3월 2회) ※ 장기시설: 2년 이내	생활시설
14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8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이용시설
15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345호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및 그 가정 구성원	• 2년(+2년)	생활시설
16	청소년성문화센터	58	유아·초·중·고생 부모 등 전국민		이용시설

* 출처: 여성가족부(2021a). 2021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23.

* 주: 1) 2020년 12월 기준

2) 해바라기센터 1개소 신규 설치('18.하반기),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자립형 보호시설 1개소 신규 설치 ('18.하반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20호 추가 지원('19.상반기~), 통합상담소 10개소 추가 지원 ('19.1월~), 일반상담소 15개소 추가 지원('19.1월~)

가.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현황

성폭력 피해 상담소는 2021년 현재 전국에 16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대비 1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성폭력 피해 상담소의 상담건수는 2020년의 경우 258,410건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대비 17,712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심리·정서적 지원이 75,797건(5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수사·법적지원 30,387건(20%), 의료 지원 9,904건(7%), 시설입소연계 6,874건(5%)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8-41>).

표 III-8-41.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실적(2013~2020년)

(단위 : 개소수, 건,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성폭력 피해 상담소	개소수	169	154	159	167	167	170	168	169	
	상담건수	145,446	146,750	158,188	158,029	180,572	241,343	276,122	258,410	
성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심리·정서적 지원	건	48,473	46,414	57,469	65,178	68,352	92,293	77,925	75,797
		%	54	51	57	57	56	58	53	50
	수사, 법적 지원	건	15,921	15,944	14,760	16,614	15,736	20,795	22,331	30,387
		%	18	18	15	15	13	13	15	20
	의료지원	건	5,227	5,652	5,760	6,326	6,304	8,290	8,473	9,904
		%	6	6	6	6	5	5	6	7
	시설입소연 계	건	2,076	890	1,199	1,747	3,317	4,371	7,063	6,874
		%	2	1	1	2	3	3	5	5
	기타	건	17,569	21,684	21,749	24,114	29,130	34,579	32,519	30,259
		%	20	24	22	21	24	22	22	20
	합계	건	89,208	90,584	100,937	113,979	122,839	160,328	148,311	153,221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성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1에서 2021년 9월 2일 인출.

* 원자료: 여성가족부 (각 연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 주: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함(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 시설입소 연계: 보호시설,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3) 기타: 정보제공, 장애인 등록 국가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신청, 전학 지원 등

2020년을 기준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건수를 성별과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표 III-8-42〉), 전체 상담건수 715건 중 여성이 669건으로 9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은 43건으로 6.1%를 차지하였다.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건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7세 이하가 23건(3.2%)이었으며, 8세~13세가 51건(7.1%), 14세~19세가 82건(11.4%)으로 나타났다. 20세 이상 성인은 537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75.1%를 차지하였다.

표 III-8-42. 성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 건(%))

연령대 성별	고령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4세-19세)	어린이 (8세-13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3 (0.4)	506 (70.8)	74 (10.3)	49 (6.9)	23 (3.2)	14 (2.0)	669 (93.6)
남	-	30 (4.2)	8 (1.1)	2 (0.3)	-	3 (0.4)	43 (6.1)
기타	-	1 (0.1)	-	-	-	-	1 (0.1)
총계	3 (0.5)	537 (75.1)	82 (11.4)	51 (7.1)	23 (3.2)	19 (2.7)	715 (100.0)

*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2021.3). 2020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동향 분석. p.4.
http://www.sisters.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7&page=1&f_cate=&id=5842&board_md=view 에서 2021년 9월 2일 인출.

* 주: 성별이 '미상'인 값은 제외함.

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인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2020년 기준 총 33개소이며, 2019년 대비 1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개소 수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30개소로 운영되었으나 2018년과 2019년, 2020년에 각각 1개소씩 증가하여 2020년에는 총 33개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1.7: 4).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표 III-8-43〉), 2020년의 경우 총 295명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였으며, 이 중 24세 이하는 219명으로 총 7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5세 미만은 1명(0.3%), 5세~12세 이하는 16명(5.4%), 13세~18세 이하는 114명(38.6%), 19세~24세 이하는 88명(29.8%)으로 나타났다.

표 III-8-43.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 현황(2015~2020년)

(단위 : 명, %)

연도	구분	계	5세 미만	5~12세 이하	13~18세 이하	19~24세 이하	25~64세 이하	65세 이상
2015	전체	286	4	20	132	77	53	0
		100.0	1.4	7.0	46.2	26.9	18.5	0
2015	장애인	165	0	4	62	54	45	0
		100.0	0	2.4	37.6	32.7	27.3	0
2016	전체	295	1	13	117	95	68	1
		100.0	0.3	4.4	39.7	32.2	23.1	0.3
2016	장애인	180	0	2	54	69	55	0
		100.0	0	1.1	30.0	38.3	30.6	0
2017	전체	285	1	15	123	77	69	0
		100.0	0.4	5.3	43.2	27.0	24.2	0
2017	장애인	173	0	3	54	60	56	0
		100.0	0	1.7	31.2	34.7	32.4	0
2018	전체	284	2	14	123	71	73	1
		100.0	0.7	4.9	43.3	25.0	25.7	0.4
2018	장애인	164	0	4	48	51	60	1
		100.0	0	2.4	29.3	31.1	36.6	0.6
2019	전체	287	1	15	125	71	74	1
		100.0	0.3	5.2	43.6	24.8	25.8	0.3
2019	장애인	168	0	6	47	52	60	3
		100.0	0	3.6	28.0	31.0	35.6	1.8
2020	전체	295	1	16	114	88	66	10
		100.0	0.3	5.4	38.6	29.8	22.4	3.4
2020	장애인	166	0	4	46	48	59	9
		100.0	0.0	2.4	27.7	28.9	35.5	5.4

* 출처: 여성가족부(2021.7). 2020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p.4.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 에서 2021년 9월 2일 인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표 III-8-44〉), 2020년의 경우 총 158,991건으로 전년 대비 17,272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의 지원건수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을 기준으로 지원내용별 실적을 살펴보면 심리·정서적 지원이 70,484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립지원 19,470건(12.2%), 의료지원 17,500건(11.0%), 학교문제(전

학)지원 15,623건(9.8%), 수사·법적지원 1,260건(0.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8-44.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내용(2015~2020년)

(단위 : 건, %)

연도	계	심리·정서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 지원	학교문제 (전학)지원	자립 지원	기타
2015	93,012	50,046	2,260	11,560	6,444	9,163	13,539
	100.0	53.8	2.4	12.4	6.9	9.9	14.6
2016	97,566	49,942	1,018	8,807	7,204	10,661	19,934
	100.0	51.2	1.0	9.0	7.4	10.9	20.4
2017	98,954	48,237	1,201	8,844	8,259	10,930	21,483
	100.0	48.7	1.2	8.9	8.3	11.0	21.7
2018	120,675	62,831	1,314	8,911	10,813	17,005	19,801
	100.0	52.1	1.1	7.4	9.0	14.1	16.4
2019	141,719	66,514	1,284	13,898	11,907	20,928	27,188
	100.0	46.9	0.9	9.8	8.4	14.8	19.2
2020	158,991	70,484	1,260	17,500	15,623	19,470	34,654
	100.0	44.3	0.8	11.0	9.8	12.2	21.8

* 출처: 여성가족부(2021.7). 2020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p.6.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 에서 2021년 9월 2일 인출.

다.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황

2020년 기준 성매매피해자 지원현황을 살펴보면(〈표 III-8-45〉), 성매매피해 상담소 30개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40개소,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12개소로 2019년과 동일하였으며, 이들 시설에 2020년 한 해 동안 입소한 인원은 총 1,011명이었고, 자활지원인원은 922명, 상담 건수는 81,672건으로 나타났다.

표 III-8-45. 성매매 피해자 지원 현황(2015~2020년)

(단위 : 개, 명,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상담소	26	28	29	29	30	30
지원시설	40	39	39	40	40	40
자활지원센터	10	11	12	12	12	12
상담건수	65,607	64,198	60,322	65,241	61,554	88,672
입소이용인원	1,284	1,217	1,154	1,173	1,274	1,011
자활지원인원	829	910	929	883	920	922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2 에서 2021년 9월 2일 인출.

* 원자료: 여성가족부 내부행정자료(시설 및 상담소가 위치한 16개 광역자치체의 보고를 통해 취득).

* 주: 1) 누적 개념이 아니라 각 년도의 1년간 실적을 나타냄.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는 성매매피해자들에게 숙식, 의료, 법률지원, 직업훈련지원, 진학지원과 함께 심리치료 및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한 치료회복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지원시설”이 있음.

②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제도의 도입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학대 피해 아동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범죄피해자로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나 형사절차상 독자적인 권리실현이 불가능한 아동에 대해서 최소한의 법률적 부조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법무연수원, 2021: 202).

2019년을 기준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표 III-8-46〉), 접수된 건수는 총 25,685건이며, 국선변호사가 지정된 건수는 25,459건이고 지정률은 99.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해보면 국선변호사 접수 건수는 2,826건이 증가하였으며, 지정 건수도 2,704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접수건수는 경찰이 17,7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해바라기센터 7,024건, 검사 920건, 상담소 등 3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때 국선변호사 신청 및 지정건수가 2014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원대상이 2013년 6월 19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서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그리고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 범죄피해자로 이 제도가 확대된 것과 함께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인권의식 증대 등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정착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법무연수원, 2021: 202).

표 III-8-46.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2014~2019년)

(단위 : 건수(%))

연도	합계		신청기관										
			경찰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등			검사	
	접수	지정	접수	가	부	접수	가	부	접수	가	부	접수	지정
2014	14,310	13,363 (93.4)	6,334	5,959	375	7,149	6,578	571	223	222	1	604	604
2015	16,138	16,106 (99.8)	8,807	8,778	29	6,481	6,479	2	64	63	1	786	786
2016	19,394	19,336 (99.7)	12,170	12,116	54	6,298	6,295	3	37	37	-	889	888
2017	20,048	19,903 (99.2)	12,220	12,077	143	6,872	6,871	1	62	61	1	894	894
2018	22,859	22,755 (99.5)	14,940	14,866	74	7,011	6,981	30	52	52	-	856	856
2019	25,685	25,459 (99.1)	17,702	17,499	203	7,024	7,002	22	39	38	1	920	920

* 출처: 법무연수원(2021). 2020 범죄백서. p.203.

* 원자료: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통계. 각 연도.

* 주: 1) '12. 3.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도입.

2) '13. 6.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지원 대상이 전체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확대.

3) '14. 9.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까지 확대.

5) 소결

특별 보호조치의 지표체계는 2020년도에 수정된 지표의 틀을 수정 없이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중분류 수준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소년 사범, 경제적 착취, 성적 착취 등 4개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소분류 수준에서의 지표도 2020년도에 수정된 지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구 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정도를 지표로 설정하였다. 소년 사법에서는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현황, 인권친화적 사법환경, 회복적 프로그램(다이버전) 운영 등을 지표로 설정하였다. 경제적 착취에서는 청소년 노동조건 수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노력을 지표로 설정하였다. 성적 착취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수준, 성범죄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정도를 지표로 설정하였다.

첫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구 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정도를 소지 지표로 설정하였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구수와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난민 수, 탈북난민 아동·청소년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수를 조사하였다. 우선 아동·청소년 난민수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누적 난민신청 건수 총 71,042건 중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2,751건(3.9%)이며, 2020년 한해 신청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279건(4.2%)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난민인정과 인도적 체류 중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2.2%, 12.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6월 말 기준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 아동·청소년은 총 4,800명이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는 2019년 11월 기준 222,455명이었고, 이중 국내 출생 자녀는 95.4%,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는 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참가율과 관련하여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가족 학생 수의 비율은 2011년 0.55%에서 2020년에는 2.75%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탈북학생의 재학 현황도 2020년의 경우 2,437명이었으며 2010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은 0.95%로 전체 학생의 평균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탈북학생의 중도탈락률은 2.9%로 다문화학생의 중도탈락률보다 더 높게 나타나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 감소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차별 경험은 증가되고 있으며, 친구로부터의 차별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주아동의 자유박탈과 관련해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구금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0년의 경우 총 12명의 아동이 구금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4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지원도 초기적응 지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역량 강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완화방안 강구 등으로 정책적 관심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소년 사법과 관련해서는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현황, 인권친화적 사법환경, 회복적 프로그램(다이버전) 운영 등을 지표로 설정하였다.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현황과 관련하여 보호소년의 경우 신수용인원은 2020년의 경우 1,637명이었으며, 전년 대비 44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소년의 경우에는 신수용인원이 2020년의 경우 4,297명이었으며, 2017년 이후부터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소년원 수용기간별로는 2019년의 경우 총 2,755명 중 1개월 미만 수용자가 1,356명으로 가장 많았고, 6개월 미만 653명, 12개월 이상 483명,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77명, 3개월 미만 8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18세가 26.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7세(21.6%), 16세(20.5%), 15세(17.7%), 14세(16.4%)의 순으로 나타나 교도소에 수용된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수형자의 죄명별 현황을 보면 강간과 절도가 18.3%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와 폭력·상해는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사기·횡령, 강간, 강도, 살인, 과실범 등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수형자의 징역형 형기별 현황을 보면 1년 이상~3년 미만과 3년 이상~5년 미만이 각각 38.8%로 가장 많았다. 인권친화적인 환경조성 비율과 관련하여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조력횟수는 2020년의 경우 3,174회였으며,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률을 살펴보면 소년분류심사원은 7개소 중 2개(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부산소년원)가, 소년원은 10개소 중 5개소가 수용정원 대비 실제 수용인원이 과밀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의 처우불복신청은 2020년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4,2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 867건, 행정심판 630건, 청원 593건, 행정소송 60건, 헌법소원 54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사건의 항고 및 재항고 접수건수는 2021년 기준 항고는 221건이 접수되었으며, 처리건수는 239건으로 나타났다. 처리유형은 기각이 18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적 프로그램(다이버전)운영과 관련하여 사회 내 처분 청소년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전체 보호관찰인원은 223,072명이었고, 이중 소년보호관찰인원은 18.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비율은 2015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집행인원은 총 5,331명이었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한 인원은 771명으로 나타났다. 수강명령을 집행 받은 청소년은 2019년의 경우 총 3,528명이었으며 전년대비 962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청소년은 2019년의 경우 총 3,000명이었으며, 전체 기소유예자 대비 15.0%에 해당하였으며 2015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제도를 통해 2019년에 보호관찰소에서 선도위탁을 실시한 인원은 1,845명(전체 기소유예자 중 0.8%에 해당)이었으며, 2016년 이후부터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경제적 착취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노동조건 수준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노력을 지표로 설정하였다. 우선 청소년의 노동조건 수준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수준, 청소년 실업률 추이를 조사하였다. 청소년 노동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019년의 경우 19.2일이었으며, 2018년 대비 0.3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2019년 기준 19세 이하의 경우 월평균 1,882천원, 20세~24세 청소년은 월평균 2,265천원이었으며,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총액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청소년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실업

률은 15~24세의 경우 2020년에 10.5%로 나타났으며, 2019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노력과 관련해서는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률을 조사하였다. 우선 고용된 청소년 중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의 비율은 2019년에 33.7%로 OECD 평균인 31.2%보다 2.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과정에서의 부당처우 경험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험은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10.8%),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9.7%),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한 경험(8.7%), 폭언 등 인격모독 경험(6.2%), 이유 없이 부당해고를 당한 경험(5.2%), 작업환경의 불결과 위험(5.1%), 성적피해 경험(1.6%), 구타나 폭행 경험(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교육의 경험율은 2020년에 50.2%로 나타났으며, 노동인권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육받은 장소별로 살펴보면 학교가 79.2%로 가장 높았으며, 공공기관 및 지원기관(74.3%), 청소년시설(71.2%),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나 업체의 본사(63.4%)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적 착취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수준과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정도를 지표로 설정하였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수준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은 2019년도의 경우 4,468명이 접수되었으며, 4,521명이 처분 받았고 1,642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주요 형량과 관련해서는 2021년 3월 23에 일부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주요내용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하는 경우 법정형을 상향 조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미적

용,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정도와 관련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는 2020년 기준 전국에 16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34개소), 해바라기센터(40개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39개소),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12개소), 대안교육 위탁기관(2개소),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1개소), 자활지원센터(12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30개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32개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8개소), 가정폭력 상담소/(통합상담소)(211/46개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65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18개소),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345호), 청소년성문화센터(5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21년 현재 성폭력피해 상담소는 169개소로 늘어났고, 성폭력상담소의 상담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으로는 심리·정서적 지원이 50%로 가장 많았고, 수사·법적지원(20%), 의료지원(7%), 시설입소연계(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의 성별,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이 93.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남성은 6.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체 상담건수 중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건수가 24.9%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2020년 기준 총 33개소이며, 연령별 입소현황을 살펴보면, 24세 이하가 219명(74.2%)이었으며, 이 중 5세 미만은 0.3%, 5세~12세 이하는 5.4%, 13세~18세 이하는 38.6%, 19세~24세 이하는 29.8%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의 지원건수는 2020년의 경우 총 158,991건으로 전년대비 17,272건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추세를 보더라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내용으로는 심리·정서적 지원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립지원(12.2%), 의료지원(11.0%), 학교문제(전학)지원(9.8%), 수사·법적지원(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로는 2020년 기준 성매매피해 상담소가 30개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40개소,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12개소였으며, 이들 시설에 2020년 한 해 동

안 입소한 인원은 총 1,011명이었고, 자활지원인원은 922명, 상담건수는 88,672건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접수 건수는 2019년 기준 총 25,685건이었으며, 이중 국선변호사 지정건수는 25,459건(지정률 99.1%)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와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제도가 정착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 제4장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분석

: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성과와 과제

- 1. 협약 모니터링 개요
- 2.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3. 시민적 권리와 자유
- 4. 폭력 및 학대
- 5.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 6.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 7. 교육·여가 및 문화 활동
- 8. 특별보호조치

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분석 :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성과와 과제⁴⁵⁾

1. 협약 모니터링 개요

이 장은 2019년 9월 발표된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 성과를 모니터링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가 작업집단 구성 및 다양한 형태의 의견 청취와 논의의 장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 노력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해 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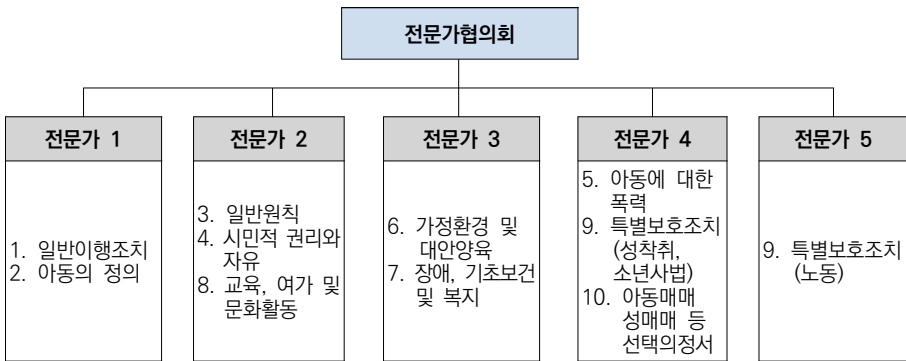
(1) 협약이행 분석을 위한 작업과정

효과적인 협약이행 분석 작업을 위해 제5·6차 국가보고서 작업에 참여했던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문가협의회(외부 3인, 내부 2인)를 구성하여 협약 클러스터별로 정부 발간 정책자료, 중장기계획 및 업무계획, 보도자료 등을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협약 쟁점을 검토하고 현황을 진단

45) 4장은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집필진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수행 하여(표 IV-1-1) 그 결과를 집필하였다. 1절 모니터링 개요는 김영지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고, 2절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3절 시민적 권리와 자유, 7절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은 김형욱 시민인권보호관(서울특별시청)이, 5절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6절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8절 특별보호조치 중 다문화 분야는 김미숙 교수(전 서울기독교대학교)가, 4절 폭력 및 학대 분야와 8절 특별보호조치 중 성매매와 소년사법 분야는 이승현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8절 특별보호조치 중 노동분야는 유설희 전문연구원이 집필하였다. 한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해 광범위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장의 집필과정에서 조사결과를 참고한 경우 본문에 의견제시 전문가명을 같이 제시하였다.

하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5월에 협약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처와 협력하여 권고사항별 25개 소관 부처 대상의 이행 성과 관련 자료 취합·분석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보고서 작업일정 이내에 공동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021년에는 전문가 입장에서 접근 가능한 공개자료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표 IV-1-1〉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협약 주제별로 현장 및 학계 전문가와 청소년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협약이행 현황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협의회(4회), 현장 전문가 워크숍(1회), 학계 전문가 워크숍(1회), 청소년워크숍(1회), 전문가 워크숍 및 부처 정책연구실무협의회(1회), 전문가 의견조사(2회), 전문가 콜로키움, 전문가 자문회의(3회) 등이 그것이다. 9월까지 추진된 협약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중심으로 협약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주요 관련부처(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정책 담당자가 참여하는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약이행 과제를 논의하였다.



* 주: 협약 영역명 앞의 번호는 제5·6차 국가보고서 상의 영역별 번호 기준

그림 IV-1-1. 협약이행 분석 전문가협의회 구성·운영

표 IV-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 과정

회차	구분	내용	참석자	일자
1	전문가 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권고 이행 관련 시인 사회 동향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 인권분야 전문가 1인 연구진 4인 	2/24
2	전문가 의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발전방안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권고 이행사항에 따른 심층분석 주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 인권분야 학계, 현장(실천) 전문가 17인 	5/31 ~ 6/14
3	콜로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금지법, 보편적 출생등록제, 참정권, 아동학대대응체계, 디지털 성착취, 대안양육 등 협약이슈별 NGO 활동 동향 개괄적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 인권분야 전문가 1인 연구진 4인 	6/9
4	1차 전문가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분석(영역별 주제 및 쟁점 파악) 및 정부의 이행 성과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 인권분야 학계, 현장(실천) 전문가 3인 연구진 4인 	6/10
5	2차 전문가 협의회 및 현장 전문가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전문가 관점에서 살펴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권고사항에 대한 영역별 이행 정도 모니터링, 성과 분석, 현재 아동·청소년 주요 인권 이슈 및 쟁점에 대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 인권분야 학계, 현장(실천) 전문가 9인 연구진 4인 	6/29
6	청소년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이 인식하는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 및 문제와 개선 방향, 현재 소속 단체 또는 참여기구에서의 활동 내용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6인 연구진 4인 	7/28
7	3차 전문가 협의회 및 학계 전문가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계 전문가 관점에서 살펴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권고사항에 대한 영역별 이행 정도 모니터링 및 이행 과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 인권분야 학계, 현장(실천) 전문가 8인 연구진 4인 	7/30
8	전문가 의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진전 노력 정도 의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 인권분야 학계, 현장(실천) 전문가 27인 	8/17 ~ 8/25
9	4차 전문가 협의회 및 정 책연구실무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부처 관계자에서 살펴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권고사항에 대한 영역별 이행 정도 모니터링 및 이행 과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 관계자 4인 아동·청소년 인권분야 학계, 현장(실천) 전문가 3인 연구진 4인 	9/28
10	전문가 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 예산 관련 유엔 권고사항 정책 과제 개발 및 예산 확대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분야 전문가 1인 연구진 4인 	10/8
11	전문가 서면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과제 관련 의견 수렴 및 정책제언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분야 학계, 현장 전문가 2인 연구진 4인 	10/6 ~ 10/8

(2) 협약이행 성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제5·6차 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행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는 8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클러스터별 권고사항에 대해 '진전노력 정도'를 5점 척도로 표시하고, 부여 점수에 대해 추진된 성과나 부족한 점 등 응답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조사에는 27명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2.3점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영역별 점수로는 일반이행조치 2.1점, 일반원칙 2.2점, 시민적 권리와 자유 2.3점, 아동에 대한 폭력 3.0점,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2.5점, 장애·기초보전 및 복지 2.4점,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2.4점, 특별보호조치 1.5점으로 폭력 및 학대 분야(3.0점)가 협약이행 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별보호조치(1.5점)는 이행 노력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이행조치 영역 중에 가장 진전 노력이 있다고 평가된 권고사항은 아동 관련 업무종사자교육(2.6점)과 공적개발원조(2.6점) 등이었으며, 일반원칙 영역 중에서는 보육 및 교육환경에서의 공기 질과 유해물질 모니터링(3.3점)이,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서는 참여증진 및 선거연령 하향화(3.0점) 점수가 높은 편이었다. 아동에 대한 폭력에서는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범죄로 규정(4.0점)한 것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상향(4.0점)이,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에서는 양육비 이행 촉진(2.9점)과 대안양육(2.9점)이, 장애·기초보전 및 복지 영역에서는 이주아동 예방접종 접근성 개선(3.5점)이 점수가 높은 편이었다.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영역에서는 학업중단 지원 및 대안학교 인가(3.0점)와 진로상담과 자유학기제(3.0점)가, 특별보호조치 영역에서는 인신매매 국제법 수준 정비(2.3점)가 가장 높은 점수였다.

다양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 사안들을 양적 점수로 단순화하여 판단하기에 한계는 있겠으나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2.3점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전문가들은 정부의 협약이행 노력정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의견조사지에 주관적으로 기술한 응답이유는 협약 성과와 장애요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본 장의 협약이행 분석 내용과 5장의 정책과제 개발 내용에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표 IV-1-2.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구분	권고사항	진전노력 정도	
		평균	순위
전 체		2.3	
A. 일반이행 조치		2.1	-
유보	6 제40조 (2)항 (b)(v)조 유보철회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	1.8	11
법제정	7 낙태 관련 개정 법률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	2.3	4
	사법부, 검사, 그리고 변호사들의 협약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그들이 재판절차에 협약을 인용하고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	2.1	9
포괄적인 정책 및 전략	8 아동과 청소년 정책을 위한 기본계획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 등 아동 관련 정책 및 전략이 협약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계획의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할당을 보장할 것.	2.3	4
조정	9 적절한 인적, 재정적 자원의 할당, 영구적 사무국 설치 및 아동권리 조정기구로서 위원회의 인지도 증진을 통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할 것.	1.5	14
	조정에 관한 이전 권고를 상기하며, 아동권리 사안을 다루는 모든 관계 기관들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1.7	12
자원의 할당	10 (a) 아동을 위한 모든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입법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적절한 재정적, 인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고, 그렇게 할당된 자원의 활용을 모니터링 하는 제도를 실행할 것. (b) 아동을 위한 예산 및 전반적인 사회복지지출을 GDP에 비례하여 증가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를 감소시킬 것. (c)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위한 예산할당을 도입할 것. (d) 현존하는 아동·청소년 의회 및 참여위원회를 포함하여, 예산 수립 과정에서 아동참여를 강화할 것. (e) 아동의 권리 실현을 지원하는 부문의 재화 및 용역(상품과 서비스)의 가용성, 접근성, 그리고 품질을 보장하고, 뇌물수수나 특혜, 불규칙한 지급 등 부패를 적절히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공공조달 절차에서 책무성을 제고할 것.	2.3	4
자료 수집	11 협약 전 분야에 걸쳐 연령, 성별, 장애(disability status), 지리적 위치, 출신 민족 및 출신 국적,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주 배경 등에 따라 세분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중앙화 된 시스템(centralized system) 구축할 것.	2.3	4
독립 모니터링	12 (a) 아동권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할 것. (b) 아동권리위원회의 진정 접수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할 것. (c) 정부 당국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지도를 제고할 것. (d) 정책권고의 이행을 조정하고 모니터링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할 것. (e) 국가인권위원회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것.	2.0	10
보급, 인식 제고 및 훈련	13 인권교육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적절한 자원 할당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아동권리 교육 및 인권교육을 보장할 것.	2.4	3
	아동을 위해, 그리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의무적 훈련을 제공할 것.	2.6	1

구분	권고사항	진전노력 정도		
		평균	순위	
국제협력	14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0.7%까지 확대한다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할 것.	2.2	8
		공적개발원조가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아동권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당사국 및 해당 개발 협력 상대국에 대한 본 위원회의 최종권해를 국제개발원조 정책과 프로그램의 설계, 이행, 모니터링, 평가에 적절히 통합할 것.	2.6	1
아동 권리와 기업 부문	15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위한 아동보호 프레임워크(child protection framework)를 수립할 것. 그러한 프레임워크는 아동권리 침해를 보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영향평가,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아동권리 실현과 보호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할 것.	1.6	13
B. 일반원칙			2.2	-
비차별	16-17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해당법이 출신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할 것.	1.8	12
		(a)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및 전략을 시행하고, 취약하고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한 차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대중 캠페인을 시행할 것.	1.6	13
		(b) 당사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아동(농어촌지역 아동,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장애아동, 이주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탈북 아동 등)이 동등하게 출생 시 등록되고,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교육, 보건, 복지, 여가, 그리고 국가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2.6	3
		(c) 학교에서 학업성적에 근거한 차별을 방지하고 근절할 것.	1.9	11
		(d) 양육비 접근 등에 있어 모든 가정에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 및 관행을 점검할 것.	2.7	2
아동 최상의 이익	18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모든 관련된 재판절차, 의사결정, 정책 및 프로그램에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반영하며 일관성 있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 (a) 폭넓은 아동 참여와 함께 아동영향평가제도의 적용을 확장할 것. (b)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결정하고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적절한 비중을 부여하는 절차 및 기준을 개발할 것.	2.0	6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19-20	포괄적 정책, 심리적·교육적·사회적 조치, 아동 및 가족, 나아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를 통해 아동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2.3	5
		(a) 가슴기 살균제가 초래하는 건강상 피해를 조사할 것.	2.0	6
		(c) 가슴기 살균제 피해 아동에게 충분한 구제와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화학물질 관리 및 유해물질 관련 사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3.3	1
아동의 견해 존중	21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의 견해가 그들과 관련된 가정, 학교, 법원 및 관련 행정 절차와 기타 절차에서 정당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2.0	6
		(a) 학업성과 상관없이 학교 내 모든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	2.4	4
		(b)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도록 보장할 것.	2.0	6
		(c) 발의된 가사소송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포함하여,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견해를 표현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연령 제한을 폐지할 것.	2.0	6

구분	권고사항	진전노력 정도	
		평균	순위
C. 시민적 권리와 자유		2.3	-
출생등록	22 (a)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가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b)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될 수 있도록 미혼부가 그들의 자녀를 등록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것. (c) 모니터링 체계 수립 등 미등록 출생아동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d) 출생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것.	2.4	4
정체성에 대한 권리	23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	1.5	5
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24 모든 아동이 학업성과 상관없이, 그리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 및 학교 규칙을 개정할 것.	2.5	2
	아동참여를 증진하고, 현재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 및 정당 가입 연령 하향을 고려할 것.	3.0	1
사생활에 대한 권리	25 학교에서 아동의 스마트폰을 포함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협약 제16조에 따라 법과 실제에서 보장하고, 사전동의를 수집함에 있어 아동 친화적인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할 것.	2.5	2
D. 아동에 대한 폭력		3.0	-
체벌을 포함한 폭력	26-27 (a) 모든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및 학대 사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당 사건의 규모, 원인, 특성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실시할 것. (b) 온라인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방지, 근절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 및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 (c)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체벌" 및 "훈육적(disciplinary)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d)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교내 비폭력 의사소통 및 갈등 중재를 증진하고,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참여형 아동양육 형태를 촉진할 것. 폭력과 학대신고를 장려할 것. (e) 심리적 학대를 포함한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것. 신고 지침을 수립할 것. (f)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보장할 것. (g)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임상심리사, 변호사의 수 증원, 아동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대리인 제공, 이주 아동 및 장애아동의 학대 피해아동쉼터 접근 보장 등을 포함하여 학대 예방, 피해아동의 회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을 보장할 것. (h) 앞서 언급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재정적, 그리고 기술적 자원을 할당할 것.	2.9	4
성적 착취 및 학대	28-29 (a) 온라인 성매매와 그루밍, 그리고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2.6	5
	(b) 온라인 그루밍을 정의하고 형사범죄로 규정할 것.	4.0	1
	(c) 미성년자 의제기간 연령을 상향할 것.	4.0	1
	(d) 성매매 및 성적학대에 연관된("대상 아동") 모든 아동, 다시 말해 만 18세 미만의 모든 개인을, 법률상 "피해자"로 명시, "보호처분" 폐지, 지원서비스 및 법적 조력 제공, 보상과 구제를 포함한 사법절차 접근성 보장 등을 포함하여,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피해자로 처우할 것.	3.5	3

구분	권고사항	진전노력 정도		
		평균	순위	
	(e) 학교를 포함하여 인식 개선을 강화하고, 접근성이 높고 비밀이 보장되며 아동 친화적이고 효과적인 경로를 통한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 신고를 독려할 것.	2.4	6	
	(f) 교사를 포함하여 모든 성범죄자들이 강요의 증거 유무와 상관없이 기소되고, 적절한 제재를 받도록 하며, 성범죄자들에게 대한 처벌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	2.4	6	
유해한 관행	30	당사국이 예외 없이 조혼(child marriage)을 금지하고, 출신국과의 협력, 이민자 및 난민을 위한 공적 등록 절차(civil registration procedures) 개설 등 이러한 관행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2.4	6
E.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2.5	-	
가정 환경	31	(a)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포함하여, 돌봄 서비스의 범위와 적절한 유연성을 늘리고, 모든 아동이 국적에 관계없이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및 재정적 지원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2.4	7
		(b) 부(父)의 육아휴직 접근성 및 이용을 보다 촉진할 것.	2.8	3
		(c) “면접교섭센터” 설치 확대 및 기타 대안적인 해결책 마련을 포함하여, 이혼 가정 아동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할 것.	2.6	6
		(d) 양육비에 대한 접근 및 양육비 이행을 촉진 및 보장하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	2.9	1
		(e)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방지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양육비 지원 자격도 그에 따라 개정할 것.	2.8	3
가정 환경 상실 아동	32	(a) 가능한 한 모든 아동들의 가정 기반 양육을 지원 및 촉진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의 질을 향상 및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당하며, 구체적인 탈시설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	2.1	10
		(b) 가정 내 아동학대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아동이 가출하는 사유를 찾고 이러한 현상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선별적이고 비징벌적인 조치를 취하며, 가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할 것.	2.0	11
		(c) 아동의 필요, 최선의 이익 및 견해에 따라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대안 양육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대안 양육의 질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진정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 가족 재결합 지원을 강화하고 성년에 이른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2.9	1
		(d) 보호자 보호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호자의 보호능력을 강화할 것.	2.2	9
입양	33	(a)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모든 연령대에 있는 아동을 위한 입양절차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입양에 있어 미혼모의 자발적인 동의가 의무적일 것. (b)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고 입양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실시할 것. (c) 절차상 불필요한 지연 방지 및 입양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그들의 활동이 적절히 규제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d) 파양된 사례를 포함하여,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및 사후서비스를 강화할 것. (e) 입양아동이 그들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찾고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도록 보장할 것. (f)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을 고려하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할 것.	2.3	8

구분	권고사항	진전노력 정도		
		평균	순위	
불법 해외 이송 및 미귀환	34 “부모책임 및 아동의 보호조치와 관련한 관할, 준거법, 승인, 집행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및 “아동양육 및 기타 가족 부양의 국제적 청구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할 것.	1.9	12	
수용자 자녀	35 교육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수용자 자녀 보호를 위한 정책 도입 및 이들 아동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	2.8	3	
F. 장애, 기초보전 및 복지		2.4	-	
장애 아동	36	(a) 장애에 대한 권리기반 접근을 채택하도록 법과 정책을 검토하고, 모든 장애아동을 포용하도록 보장할 것.	2.8	3
		(b) 난민신청 아동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아동을 위하여 재활 치료, 적절한 복지, 그리고 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조기 발견 및 개입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보장할 것.	2.0	8
		(c) 모든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기반시설 및 체육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 제공, 통학 지원,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및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실시할 것.	2.4	6
		(d) 장애아동이 사회적 낙인 및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애 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강화할 것.	2.8	3
건강 및 보건 서비스	37	보건예산을 늘리고 지역 병원을 강화하려는 이전의 권고를 상기시킬 것.	2.0	8
		(a)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 아동 및 이주아동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할 것.	2.8	3
		(b) 이주 아동의 예방접종 접근성을 개선할 것.	3.5	1
		(c) 당뇨 및 비만 아동 등을 위한 어린이집 및 학교의 보건의로 지원을 강화할 것.	2.3	7
정신 건강	38	자살예방과 그것의 근본원인에 집중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의 정신적 웰빙(well-being)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1.7	13
청소년 보건	39	알코올 광고 규제 강화, 금연 공간 확대, 스포츠 및 신체활동 촉진, 약물 남용 예방에 대한 생활 기술 교육에 아동참여 독려 등 비만, 흡연, 음주 예방과 관련한 이전의 권고들을 상기시킬 것.	2.0	8
		(a)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고, 구체적 지원 및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CYS-Net)의 역할을 구축하여 문제적이고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것.	3.0	2
		(b) 학교 내 성교육, 임신 중 및 출산 지원 서비스, 산후 관리 강화와 육아지원 보장 및 부모의 동등한 육아 촉진을 포함하여, 청소년 임신을 효과적으로 다룰 것.	1.7	13
생활 수준	40	(a)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2.0	8
		(b) 빈곤층 아동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빈곤층 아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알리고 채택하며 시행할 것.	1.7	13
		(c) 아동의 주거 빈곤 및 아동의 시간제 고용률을 사정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것.	2.0	8
G. 교육·여가 및 문화 활동		2.4	-	
교육 및 교육의 목표	41-42	교육과정 다양화, 대학입시제도 재검토, 진로상담 강화 등을 포함하여 경쟁 완화라는 목표하에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호(2001)에 부합하게 공교육 제도를 개선할 것.	2.7	4
		(a)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것. 공립 및 사립학교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할 것.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를 가할 것.	2.3	6

구분	권고사항	진전노력 정도		
		평균	순위	
	(b) 모든 아동이 출신, 주거지, 사회경제적 및 이주 지위, 이주민으로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교육을 보장받도록 「교육기본법」을 검토할 것. 부정부패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합전형에 따른 입학 정원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농어촌지역 아동, 학교 밖 아동, 장애아동, 이주아동, 미등록 아동, 다문화아동 및 탈북 아동을 포함한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의 일반학교(mainstream school) 접근성과 통합을 보장하도록 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촉진할 것.	1.9	10	
	(c)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이해 및 인식 개선을 강화할 것.	2.7	4	
	(d) 학교를 중퇴하는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이러한 현상의 규모를 평가할 것. 모든 아동이 지원을 받고 일반학교(mainstream school)에 머무를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것. 대안교실 및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모든 대안학교가 인가를 받아 학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것.	3.0	1	
	(e) 훈련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포함한 교사의 훈련 강화, 학교 기반시설 개선과 예산 증액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것.	2.8	3	
	(f) 청소년 임신 및 HIV/AIDS 예방에 특별히 유의하고,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 그리고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차별적이고 성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삭제할 것.	1.5	11	
	(g) 특히 학교 밖 아동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진로상담과 자유학기제를 강화 및 다양화하고, 아동의 견해가 진로 선택의 기초가 되도록 보장할 것.	3.0	1	
	(h)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학교에서의 차별을 예방하고 근절할 것. 차별 혐의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다룰 것.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 및 정서적 안정과 관련된 훈련을 제공할 것.	2.2	7	
	(i) 사이버 괴롭힘을 포함하여 집단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화할 것: 예방, 조기 발견 메커니즘, 아동 및 전문가의 역량 강화, 중재 절차, 사례 관련 자료수집을 위한 통일된 지침	2.2	7	
	(j) 아동 발달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전환하기 위한 인식제고 프로그램과 대중 캠페인을 실시할 것. 모든 아동이 스포츠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놀이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및 시설을 보장할 것. 이러한 시설은 안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포함하여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이고, 금연구역이며, 연령에 적합한 시설일 것.	2.1	9	
	H. 특별보호조치		1.5	
난민 신청 아동 및 난민 아동, 이주 아동	43	(a)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이주아동 구금을 금지할 것. 비구금형 대안을 보장할 것. 난민과 가족 재결합 문제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1.3	13
	(b) 난민 및 무국적 아동의 지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개발할 것. 장기거주 이주아동의 지위를 규정할 것. 미등록아동을 포함한 난민신청아동, 난민아동 및 이주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것.	1.8	7	
	(c) 보호자 미동반 아동 및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난민신청아동과 난민아동, 그리고 이주아동이 출생등록, 보육,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정신적 신체적 보건 의료, 건강보험, 경제적 지원과 주거지원, 여가, 학대 받은 경우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관행적 장벽을 없앨 것.	1.3	13	
	(d) 보호자 미동반 아동의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아동권리협약과 부합하는 「이주아동관리법」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1.3	13	

구분	권고사항	진전노력 정도		
		평균	순위	
	(e) 난민신청자 및 난민 중 특히 아동에 대한 혐오발언 근절 캠페인을 전개할 것.	1.3	13	
	(f) 미등록아동을 포함한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할 것.	1.5	10	
	(g) 난민아동, 난민신청아동 및 이주아동을 위한 예산을 배정할 것.	1.3	13	
아동 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44	책무성과 사회복귀를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조치(일하는 아동의 근로조건 개선 및 기업 감독을 위한 정책적 조치)의 유효성에 대한 점검과 보고를 강화할 것.	2.0	2
매매, 거래, 약취 유인	45	(a) 인신매매의 정의를 국제법에 맞게 정비하여, 강요, 대가, 피해자의 초국가적 이동 요건을 삭제할 것.	2.3	1
		(b) 경찰, 출입국관리소, 노동청,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훈련을 포함하여, 특히 취약계층 피해아동의 식별 및 위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식별 지침을 이행할 것.	1.5	10
		(c) 아동의 인신매매, 불법거래 및 탈취가 효과적으로 수사되고, 가해자들이 기소되어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형량이 부과되도록 하며, 인신매매 방지 전담 조직과 인신매매 수사 및 기소를 위한 팀을 구성할 것.	2.0	2
		(d) 인신매매 또는 불법거래의 아동 피해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형사적 제재, 강제퇴거의 대상으로 삼거나, 폐쇄된 시설에 절대로 구금하지 말 것.	2.0	2
		(e) 남자아동, 외국인 아동, 장애 아동을 포함하여 인신매매의 아동 피해자를 위한 쉼터 및 통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것.	1.0	18
소년사법 운영	46-47	(a) 적절한 지원을 지원받아, 법에 저촉된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루는 아동사법전문법원을 설립할 것. 아동 전담 법관 및 법 위반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이 아동권리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지속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1.7	8
		(c) 협약 제40조에 따라 공정한 재판 보장을 준수할 것. 아동 관련 사건의 공판에서 일반 청중을 배제하고, 재판 시작단계부터 아동의 법정 후견인 참여를 보장할 것. 침해(violations)를 보고함에 있어 비밀이 보장되는 경로를 제공·증진하고; 아동 관련 사건을 위한 언론보도 지침을 수립할 것.		
		(b) 형사 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		
		(d) 법적·관행적으로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에게 조사단계부터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법률 구조 제도를 수립할 것.	1.0	18
		(e) "우범소년"에 관한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폐지할 것.		
		(f) 다이버전 제도(diversion programmes)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구금형을 촉진할 것.		
		(g) 「소년법」에 구금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기간만 사용할 것. 구금은 중단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보호처분" 기간 및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이 최종 형기에 산입되도록 보장할 것. 구금에 항소할 권리 및 부당한 구금에 대한 배상권을 보장할 것.		
		(h) 일시구금을 포함하여, 구금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개인 공간,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음식, 교육, 신체적·심리적 건강 서비스, 운동, 여가, 가족과의 접견 및 진정 제도 등 제공);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주거지에서 가까운 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할 것.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구금시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보장할 것.		
		(i) 아동이 성인과 함께 구금될 모든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구분	권고사항	진전노력 정도	
		평균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j) 근신실 및 이송을 징계적 조치로 사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회복적 조치로 대체하고 촉진할 것. (k) 아동에 관한 무력 및 보호장비 사용을 규제할 것 및 그러한 사용이 특정한 상황에 제한되고, 비례적(proportional)일 것. (l) 구금된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 구금된 아동의 DNA 수집 및 HIV 검사를 금지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기록을 삭제할 것. HIV 정보는 비밀을 보장할 것. HIV에 감염된 아동 구금자를 격리하지 않을 것. 강제적인 신체검사와 이발, 그리고 계속적인 위생시설 촬영을 금지할 것. (m)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비구금 조치를 강화할 것. (n)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을 국적, 장애,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을 근거로 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조치	(a) 여행 및 관광에서의 아동 매매 및 아동 성착취를 포함하여,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모든 행위 및 활동을 국내 형사법 하에서 완전히 포괄할 것.	2.0	2
	(b) 선택의정서에 따라 범죄자 인도가 이루어질 경우 쌍방가벌성 및 최소심각성(minimum gravity) 요건이 제외되어야 하며, 이는 범죄자 인도의 법적 근거로 간주되어야 할 것.	1.7	8
	(c) 유죄를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해외여행 제한이 여권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것.	2.0	2
아동의 무력 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조치	(a) 만 18세 미만 아동을 군대나 비국가 무력단체에 징집하는 것 또는 적대행위에 가담시키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	1.0	18
	(b) 분쟁지역 출신 난민신청아동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해당 아동에 대한 자료를 구분하여 수집할 것.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할 것.	1.5	10
	(c) 선택의정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관학교 교육과정에 선택의정서 조항을 반영할 것.	1.0	18
I. 청원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 비준			
50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를 비준할 것.	1.5	
J. 국제인권규범 비준			
5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	1.0	
K. 지역 기구와의 협력			
52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여성 및 아동인권 보호와 증진위원회와 협력할 것.	1.0	

2.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1) 협약이행 성과⁴⁶⁾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부합하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담은 법률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3, 2011, 2019). 특히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5·6차 권고에서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및 전략을 시행하고, 취약하고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한 차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대중 캠페인을 시행할 것, 당사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출생시 등록되고, 보육시설, 교육, 보건, 복지, 여가 그리고 국가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학교에서 학업성적에 근거한 차별을 방지하고 근절할 것, 양육비 접근 등에 있어 모든 가정에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 및 관행을 점검할 것을 권고하였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하거나, 2011년에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표명을 한 바 있으며, 법무부는 2007년에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하고, 또한 국회에서는 차별금지 법률안이 의원발의 되었으나 사회 각계의 이견으로 제정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시민사회 단체 등의 의견 수렴, 국내법들과의 법체계적 조화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이고(대한민국정부, 2017: para. 33),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합리적 입법 방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1).

하지만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금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법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46) 인용 가운데 '2021 전문가 의견조사'는 본 과제의 일환으로 2021년 9월에 실시한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이행사항 진전노력 정도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제시된 내용을 참고한 것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8월 9일에는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할 목적으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특히 해당 법률안 제9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 노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차별 금지를 위한 법률의 명칭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에서 ‘평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현재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동으로 「인권정책기본법」을 입법추진하고 있다. 동법은 국가인권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설치, 인권정책책임관 지정, 인권교육 실시 규정 등을 두어 국민의 인권보장 향상 및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21.6.30.).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모든 관련된 재판절차, 의사결정, 정책 및 프로그램에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반영하며 일관성 있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이전의 권고들을 당사국에 상기시키면서 폭넓은 아동 참여와 함께 아동영향평가제도의 적용을 확장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78)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16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2019년 3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평가대상,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 및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c).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법령, 계획, 사업 등이 아동권리 및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 아동 관점의 적절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절차이다. 정부는 2020년 8월에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하여 모든 아동 관련 계획(30여 개)을 대상으로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아동 관점을 반영하고, 시·도교육청 정책까지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자자체 중 112개 지자체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고, 이 중 57개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되어 지역사회 협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21.7.1.). 그러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아동영향평가, 옴부즈퍼슨 제도 운영, 아동참여기구 설치·운영 등에 대해 인권조례 반대 집단의 활동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김희진, 2021).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자살을 예방하고, 가슴기살균제의 건강상 피해를 조사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구제, 화학물질 관리 및 유해물질 관련 사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20).

정부는 2017년 2월 8일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현재 ‘가슴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및 ‘가슴기살균제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3월에는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 확대 및 인과관계 추정 요건과 입증 책임 완화 등 동법이 개정되는 등 가슴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대책 전반에 아동의 특수성을 수용한 변화도 있었다(김영지 외, 2020: 65). 그러나 가슴기살균제 피해아동은 약 1,700명으로 집계되나, 대부분 3, 4단계로 심사 기준이 협소하여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등의 문제가 있다(오동석, 2021.9., 전문가 의견조사).

정부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응방안으로 미세먼지를 포함한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해 공기정화장치 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미세먼지 저감화, 미세먼지 대응교육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및 교육 등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6월 11일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 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까지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교육부, 2019.6.12.).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견해 존중을 위해 학업성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가사소송법을 비롯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견해를 표현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연령 제한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21).

학교에서 학생의 의견은 학생자치활동이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표명된다. 2020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전체 비율은 44.9%이며, 고등학생(43.0%)이 중학생(46.6%)보다 높았다. 학생회 임원후보가 되기 위해 성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응답은 38.2%, 학생회 활동을 위한 예산, 장소, 시간 보장 정도는 46.7%였다. 학생회에서 의견 존중 및 반영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54.6%로 나타났고, 중학생(59.1%)이 고등학생(50.5%)보다 높았다(김영지 외, 2020: 216).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포괄적·선언적 수준의 내용으로 인해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는 위원회 구성은 교원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면서 학생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생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법정기구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2020년 6월 22일 발의된 적 있으나 개정에 이르지 못하였다. 향후 법 개정과 함께 아동의 권리로서 의견표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회에 대한 정보를 알고, 구체적인 참여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참여 환경은 아동친화적이어야 하며, 참여 후 의견에 대한 피드백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아동은 학교나 학교 밖에서 관련 정보의 불투명성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소수

의 학생들만 참여한다는 지적이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0a: 222-225).

「아동복지법」 제2조는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랄 권리,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 최우선 고려,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기본이념에 아동참여를 명시하는 개정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고(김희진, 2021), 동법 제15조(보호조치), 제18조(친권상실 신고의 청구 등), 제18조 제2항(자립지원계획의 수립),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는 아동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항이 있으나 시행 관련 구체적 규정 및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포용 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아동총회의 정책 제안 결의문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심의하여 아동의 견해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있고,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온라인 아동참여 게시판’을 운영하여 아동이 자신의 권리와 관련한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가사소송법」을 비롯하여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견해를 표현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연령 제한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21).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는 가사소송 시 아동 의견 청취 근거를 명문화하여 아동 진술 기회 보장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였지만 동법 개정 조치는 미흡하여 「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 2는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할 경우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청취하나 13세 미만 아동의 의견 청취는 필요가 아니다. 이는 모든 경우에 어떠한 절차에 있어서도 자신의 의견이 직접 청취될 기회가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반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20a: 153).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년에 설립된 이후 양육비 이행 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한 경우에도 양육비 이행률이 낮고,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1월 12일 「양육비 이행확

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이 높고 명단공개만으로는 압박 효과가 제한적이고, 직접적으로 생계가 목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를 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김희진, 2021.9., 전문가 의견조사). 이에 국가가 양육의무자에게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가가 양육비 지급 후 구상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오동석, 2021.9., 전문가 의견조사).

2) 협약이행 과제

첫째,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금지되고,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이나 차별선동을 막고, 차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와 지자체의 인권행정 및 인권보호 관련 제도 등이 법적 근거를 갖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권정책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정책의 체계를 확립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인권행정이나 인권보호 기구 설치·운영에 대한 지역간 차이를 해소하고, 인권교육 및 홍보 등 인권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아동정책영향평가가 실질적으로 아동권리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친화도시 이행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영향평가와 상호 연계될 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넷째, 학생의 의견표명권 보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초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및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개정하여 학생자치활동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명문화해야 한다.

다섯째, 「아동복지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등 아동 관련 법률의 아동의 의견표명권과 관련한 조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아동의 의견표명권을 법률에 명문화하거나 연령 제한 규정 폐지, 아동의 의견

표명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양육비 접근 등에 있어 모든 가정에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일곱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은 아동의 생명과 생존,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이를 극복하는 과정은 아동의 권리에 기반해야 한다. 따라서 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은 재난 상황의 당사자이며, 권리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발달단계에 맞는 정보제공 및 정보접근권 보장, 인적·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종합적 정책 및 제도 추진, 시민사회·전문가 등과의 연계 및 협력, 지원자에 대한 지원, 지원정책 및 제도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국가인권위원회, 2020a: 101-107).

3.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협약이행 성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온라인 출생신고 및 통보제도를 환영하면서도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가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될 수 있도록 미혼부가 그들의 자녀를 등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등록 출생아동 파악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출생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22).

국적이나 신분 등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출생을 확인할 수 있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은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제4차 건강가

정기본계획(2021)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2021년 2월 15일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아동 출생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법상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 중에 부모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출산 후 귀화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며 미등록 아동인구에 대한 기본정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더불어, 국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미등록 외국인아동이 어떠한 법적 신분도 갖지 못한 채 학대, 매매, 착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의료와 교육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법무부, 2021.2.15.).

2021년 3월 16일에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여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서류, 증명서, 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 모두 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1년 6월 21일에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 일부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아동의 출생과 모에 관한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하면 평가원은 이를 다시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통보 내용과 출생신고 내용을 대비하여 출생등록이 누락된 아동에 대해 부모에게 출생신고 독촉 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의 제도 변화가 모든 아동이 국적과 무관하게 출생등록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을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외국인 아동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이용을 허용할 경우 불법

체류자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동 등에게 즉시 국적이거나 체류자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음으로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현소혜, 2021).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23). 그러나 2021년 5월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의 학대사건에도 불구하고 불법 미신고시설 베이비박스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행정적 조치는 미흡하고, 베이비박스 금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김희진, 공현, 2021.9., 전문가 의견조사). 현재 보건복지부는 1년에 약 130여 명씩 발생하는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에게는 시설보호보다는 전문적인 가정보호가 최우선 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아동 성(성), 본(본) 창설과 보호아동 배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대부분(70.6%)은 시설보호 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5.21.). 보건복지부는 베이비박스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운영 금지 포함한 포괄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아동이 학업성과 상관없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 및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 학교가 성적, 징계조치와 같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학생의 사전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고, 복장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학생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아동 친화적인 절차 마련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24, 25).

2020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에서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용모(27.8%), 복장(30.3%), 소지품(9.7%) 검사 경험은 전년도에 비해 급감하였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교육비 미납자 이름(7.3%), 징계사항(15.2%), 시험성적(13.5%) 공개도 크게 감소하였다(김영지 외, 2020: 247).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등교 제한 조치의 영향이 아닌지 향후 추이를 면밀히 분석

할 필요가 있다(김영지 외, 2020: 569).

정부는 2020년 2월 25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을 개정하여 같은 항 제7호 중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할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으로, “보호와 질서 유지”를 “보호”로 개정하여, 학교규칙으로 인한 학생의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2018년 12월 13일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자율, 존중, 연대를 실천하는 시민으로 학생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민주시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민주시민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2010년)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2011년), 서울특별시(2012년), 전라북도(2013년), 충청남도(2020년), 제주도(2021년), 인천광역시(2021년)에서 제정되었으며,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침해 등 인권침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학생인권옹호관제도 및 학생인권교육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입법추진하고 2021. 6. 30. 입법예고하기로 하였다. 동법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학생인권을 비롯한 지역사회 아동인권 보호를 위해 지자체 정책 및 제도, 사업 등 추진에 있어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21.6.3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률(불이익 경험)의 추이를 보면 2014년 5.0%에서 약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가 최근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김영지 외, 2020:

232). 그러나 학생의 표현의 자유는 다양한 형태로 제한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학교 전학 시 과도한 추가자료 요구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 2020.5.16.),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 금지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 2020.9.22.),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교사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국가인권위원회, 2021.4.29.)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시정권고한 바 있다.

2020년 12월, 7개 시도교육청(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은 지역을 떠나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실현을 위해 ‘학생인권 사례집-7개 시도교육청 공동사례집’을 발간하기도 하였다(전라북도교육청, 2020)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 및 정당가입 연령 하향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24). 2021년 1월 14일, 「공직선거법」 제15조가 개정되어 선거권자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2021년 5월 25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당법」 제22조의 정당가입 연령을 16세로 하향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5.25.)

2) 협약이행 과제

첫째,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상황이 공적으로 등록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적용 대상을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베이비박스 운영 현황 및 실태 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전국 조사를 실시하고, 베이비박스 운영 금지와 아동유기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내용을 담은 종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학생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호 등과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의 학생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전문적인 기구나 조직을 신설하고, 지역의 학생인권 보호 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과 미제정 지역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학교에서의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가칭) 학생인권기본법, 아동청소년인권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넷째, 아동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가입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정당법」 제22조에 대한 개정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과 예방을 위해 아동을 포함한 개개인들의 이동 및 만남 등 사생활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이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방역수칙의 적정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이동 및 만남, 모임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학교, 시설 등 각 생활영역에서 아동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한 고충, 침해상황에 대해 상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4. 폭력 및 학대

1) 협약이행 성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 및 학대와 관련한 조항으로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 또는 학대, 유기나 방임, 성적 학대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제19조), 어떠한 아동도 고문,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대우나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제37조 a), 모든 형태의 유기·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나 굴욕적인 대우로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제39조) 등을 강조하고 있다(UN, 1989).

체벌을 포함한 폭력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5·6차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 심의 결과, 모든 아동에 대한 폭력 및 학대 사건의 국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당 사건의 규모, 원인, 특성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실시할 것, 온라인 폭력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 방지, 근절 및 모니터링을 위한 포괄적 전략 및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체벌” 및 “훈육적(disciplinary) 체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심리적 학대를 포함한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관련전문가를 양성할 것,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보장할 것,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지역아동 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임상심리사, 변호사 수의 증원, 아동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대리인 선임 제도,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의 학대 피해아동 쉼터 접근 보장 등을 포함하여 학대 예방, 피해아동의 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을 보장할 것, 지역적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재정적·기술적 자원을 할당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26-27).

체벌을 포함한 모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가정 내에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의 허용 근거로 오인되어왔던 「민법」 제915조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여 가정 내에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법무부, 2021.1.8). 또한 정부는 2019년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관계부처 합동, 2019.5.23.)을 기반으로 하여, 2020년 7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교육부, 2020.7.29.), 2021년 1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보건복지부, 2021.1.19)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면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조사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이 전국 시군구 단위로 배치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되는 등 아

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었다. 2021년 3월 즉각분리제도 시행하여 필요 시 지자체장이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조치 시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 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조사 협업체계 마련으로 학대 피해 발생 시 초기 대응력 강화에 노력을 하였다(보건복지부, 2021.3.11.). 이후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지속적인 보완뿐만 아니라 신고 전 위기징후를 적극적으로 포착하여 개입하기 위한 아동보호 안전망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2021.8.19.). 현장에서 학대위기아동이 빠짐없이 사전 포착될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하고,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사례관리 총괄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며, 어린이집·교육청과 위기아동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보육, 교육현장에서 위기아동이 즉각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학대 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예산 재원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해 2020년 8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아동 권리에 기반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강화계획 등을 발표하였고(보건복지부, 2020.8.27.), 보건복지부는 2021년 5월 사회적 공동실천 선언문을 선포하고, 민법 징계권 폐지에 따른 인식 개선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 로드맵’을 발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차별 없는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5.31.).

그러나 차별을 포함한 아동 폭력의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이브더칠드런이 실시한 ‘가정 내 차별 수용 인식 및 경험 조사’에서 “부모는 자녀를 교육적인 목적으로 징계할 수 있다는 말에 차별이 포함된다.”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56.7%로 나타나서 차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법률방송뉴스, 2020.6.10), 민법상 징계권이 삭제되었지만 훈육적 차별을 비롯한 모든 차별이 금지된다는 대중적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다.

국가의 다양한 대책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프라와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역적 편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아동쉼터의 예산 상황도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각 지역별로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학대 피해아동 원가정 지원을 위한 아동보호전담요원 인원 역시 매우 부족하다. 종사자에 대한 처우 문제도 여전히 극복해야 할 한계로 남아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성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 조사, 판단, 아동 보호에 관한 정보가 분절되어 있으며, 아동학대 대응주체들이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에 제한됨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개입과 접근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

성적 착취와 학대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5·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로 온라인 성매매, 그루밍,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온라인 그루밍을 정의하고 형사범죄로 규정하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하며, 성매매 및 성적 학대에 연관된 모든 아동 즉 만 18세 미만 모든 개인을 법률상 피해자로 명시하고 보호처분을 폐지하며 지원서비스 및 법적 조력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학교를 포함하여 인식 개선을 강화하고 접근성이 높고 비밀이 보장되며 아동친화적이고 효과적인 경로를 통한 성적 착취 및 학대 신고를 독려하며, 교사를 포함한 모든 성범죄자들이 강요의 증거 유무와 상관없이 기소되고 적절한 제재를 받도록 하며,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28-29).

이에 따라 정부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2021년 3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온라인 그루밍 처벌근거를 신설하고, 온라인 그루밍 수사를 위한 경찰의 신분 비공개 및 위장수사 특례규정을 마련되어 2021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

으로 착취하려는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도·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범죄 수사를 진행할 때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와 관련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신분 위장수사를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행사도 허용된다(여성가족부, 2021.3.23.).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어 제305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도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됨에 따라 성착취로 피해 입은 많은 아동에 대한 법적 피해자 지위 범위가 확장되었다.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이 삭제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도 삭제되었고(여성가족부, 2020.11.19.), 2020년 11월부터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성착취 아동보호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착취 개념에 대한 정립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각 부처별 정책에서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에 있어서 성착취 개념을 포괄하지 못해 신고와 절차에 따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제공이 미흡한 상태이고, 학교현장에서도 성매매를 성착취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비행 또는 범죄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근거와 수사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장치의 마련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온라인 성착취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입법적 노력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아동·청소년이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다”는 사유로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으며, 경찰 선도 현장에서는 성매매 범죄에 연루된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기소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2) 협약이행 과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후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아동학대 방지정책 보완,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가정 내 체벌 금지를 위한 민법의 징계권 규정 삭제 등을 노력을 벌였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 조사시스템의 공공화, 아동학대 예산의 일반 회계화,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확대, 온라인 그루밍 처벌근거 마련,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성매매아동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 등의 개선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대응의 고도화와 성착취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아동학대 인적·물적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그 동안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 피해아동쉼터의 확충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여전히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적 균형 확보를 위한 인적·물적 개선 노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별 인력배치의 균형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원의 재배분을 실현해야 할 것이고, 지자체별로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일시보호쉼터를 확충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학대 국가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 및 활용도 강화가 필요하다.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복지행정시스템 내에서만 구동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과의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협업과 정보의 연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류정희, 2021). 대응주체별로 접근권한과 업무범위를 구분하여 정보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동시에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 하에서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실시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가 조사단계뿐만 아니라 사례관리,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학대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아동과 미신고 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아동학대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학대사건 발생 이후에도 미신고 일시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베이비박스로부터 연계된 미신고 영유아 양육시설 현황 등을 비롯하여 미신고 아동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영유아 양육 상황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아동의뢰 부모 및 원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사회적지지 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법제의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의 아동성매매를 성착취로 바라보는 관점과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대응책이 부족하다. 아동성매매 관련 각 부처의 법률에서 아동 성매매를 ‘성착취’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미약하고, 여전히 ‘성매매’, ‘성착취’, ‘성범죄’로 혼재하여 정의하고 있다. 성착취에 관한 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경찰청, 법원행정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이 협업하여 동일한 관점에서 대책이 함께 구현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매매 및 성학대에 연관된 아동이 피해자로 처우받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실제로 보호처분을 받고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년법에서 우범소년 규정을 개정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이 일상을 회복하고 피해자로서 대우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강미정, 2021).

여섯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우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긴급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에서 코로나 감염 등을 이유로 대상아동에 대한 외출금지, 가족과의 면회 금지 등으로 고립되는 상황을 만드는 형태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서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을 통해 아동의 지나친 자유제한이나 가족면접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개선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1) 협약이행 성과

가정환경(para 31)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9)는 한국정부에 5가지를 권고하였다(2019.10. 기준). (a) 모든 아동이 보육시설 접근권 보안, (b) 부의 육아휴직 접근성 및 이용률 제고, (c) 이혼가정아동의 면접교섭권 보장, (d) 양육비 이행 촉진, (e)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 장치 등이다. 이 중 보육시설 접근권에 있어서 경기도는 조례를 「경기도 외국인 지원조례」,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경기도에 비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3~5세 이주아동에 대해서 보육료와 교육료를 지원하고 있다(김영지 외, 2020). 아직까지 난민아동을 제외한 이주아동에 대해서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제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가정환경 상실아동에서의 권고(para. 32)는 (a) 가정위탁의 질 향상, (b) 가출아동 보호 강화, (c)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한 아동배치, (d) 보호자의 보호능력 강화 등이다. 이에 정부는 가정위탁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부는 2019년 2세 이하 영아, 학대 피해아동, 경계선 지능아동을 위한 전문위탁제도를 도입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34; 보건복지부, 2020h). 일반가정위탁과 달리 전문위탁가정에게는 아동보호비로 지자체에게 아동 1인당 100만원의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h).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아동을 배치할 때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배치하기 위해서 2020년 10월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두기 시작하여 현재 전국에 500여 명의 요원이 활동 중이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a).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에 대한 밀착된 조사와 상담을 통해서 아동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의 적절한 시설 및 가정에 아동의 배치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입양에서의 권고사항(para. 33)은 (a) 미혼모의 자발적 동의를 의무화 할 것,

(b) 미혼모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캠페인, (c) 입양기관의 투명성 제고, (d)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및 사후서비스 강화, (e) 친생부모 정보접근권 보장, (f) '국제 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 고려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 등이다. 2021년 6월부터 입양을 고려하는 친생부모에 대한 초기상담을 입양기관이 아닌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전담하게 함으로써, 입양에 대한 공공의 책임이 강화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 절차를 공공화, 체계화하는 것을 골자로 「입양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입양아동을 위해서 정부는 파양제도를 보완하였는데, 파양은 양자가 성년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파양 적용 범위를 축소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37). 그리고 친생부모가 미성년인 경우에도 입양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38). 2018년에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을 개정하여 '13세 이상' 연령기준을 삭제하여 입양 시 13세 미만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진술을 듣도록 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39). 현재는 입양 시 보호자 및 입양 관계자가 아동을 대리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공적 아동보호체계를 보완하는 작업을 준비 중에 있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40).

불법해외이송 및 귀환에서의 권고사항(para. 34)은 '부모책임 및 아동의 보호 조치와 관련한 관할, 준거법, 승인, 집행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및 '아동양육 및 기타 가족부양의 국제적 청구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할 것 등이다. 이 분야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수용자 자녀와 관련한 권고사항은(para. 3) 부모와 함께 교도소에 머무는 아동의 교육권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21년 7월 수용자 자녀보호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수용자 자녀보호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법에 따라서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자녀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인권 보호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모가 교정시설에 입소할 때 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해야 한다. 부모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면접권 보장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41). 아동친화적 접견실은 2017년 6개, 2018년 8개를 설치하였고, 2019년에는 서울동부구치소 등 9개 기관에 설치하였다(법무부, 2019.7.16.). 2021년까지 가족접견실이 설치되지 않은 11개 기관에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설치를 완료하고, 이후에는 일반 가족 접견실을 운영 중인 17개 기관의 가족접견실을 아동친화형으로 개선할 예정이다(법무부, 2019.7.16.).

법무부에서는 2021년 4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법무부, 2021.5.11.). 아울러 법무부 산하에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를 구성하여 수용자 자녀 인권 관련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아동의 인권보호 등을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법무부, 2020.6.26.). 특히 6가지 집중 개선 사항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수용자 자녀 및 가족 보호 지원에 관한 종합적 법률 마련, ② 교정시설 내 양육유아 관련 법 개정 및 시설 정비, ③ 교정시설에 전문 인력 배치 등 효율적 보호 체계 마련, ④ 온라인 접견 시스템 확대 적용 등 교류 방법 개선, ⑤ 미성년 자녀 유무의 의무적 확인 및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마련, ⑥ 수용자 가족 관련 인식 개선 프로젝트 실행(법무부, 2021.5.11.).

2) 협약이행 과제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영역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이행을 위한 정부의 이행조치에서 성과를 올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동의 걱정 보호에 있어서는 도전되는 과제들이 있다. 첫째,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제도 중 미신고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미신고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정부에서는 7인 이하 소규모 미신고시설 아동은 공동생활 가정으로 전원을 권고하고 있고, 최소규모 미신고시설 생활아동의 경우는 원가정 복귀를 권장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h). 그럼에도 미신고시설은 잔존하고 있다. 미신고시설로 유입되는 아동에는 베이비박스 아동과 기존 양육시설에 입소하기에는 자격이 맞지 않은 경우 등이다. 베이비박스 아동은 미신고시설에 일정기간 머문 후 대부분은 양육시설로 보내진다. 일반아동은 미신고시설에 장기간 머물게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거주아동의 환경 파악을 통해서 원가정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베이비박스 아동대책 마련하여 유기아동을 축소하고, 유기 후 영구적 보호계획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베이비박스 아동의 시설보호를 지양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의 보호가 주축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공동생활가정은 대규모 시설에 비해서 근로조건과 아동생활 환경이 좋지 못하다. 이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근로조건이 개선되어야 하고, 현재는 부재한 자립전담요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고, 아동을 위한 생활환경의 개선도 필요하다.

둘째,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생활시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의 활동이 축소되고 있고, 온라인 의존성 증가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종사자의 기존의 업무 이외에 방역을 할 뿐 아니라 외부인력의 시설진입 금지 등으로 업무의 과중 상태에 있다. 이에 종사자의 업무를 덜어주고 종사자 확진 시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해서 아동생활시설을 위한 대체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심리치료, 예체능 프로그램 등 외부 강사 출입 불가로 진행되는 어려운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이러한 공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위탁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전문가정위탁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위탁 가정 수가 부족하다. 전문위탁가정 발굴을 위해서는 일반가

정위탁의 발굴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전체 위탁가정 중 일반가정위탁은 9%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위탁가정에 지원되는 양육보조금은 아동 1인당 30~50만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수준에 따라 양육보조금 액수도 차별화되고 있다(배화옥, 김미숙, 이은주, 2021). 이에 양육보조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대 피해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시위탁가정제도’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학대 피해아동이 갈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이 전국에 12개소에 불과하고, 쉼터는 71개소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학대의 증가와 심각화에 따라서 즉각분리제도가 도입되어 아동이 분리되어 보호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에 일시위탁가정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입양 후 사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2020년 발생한 입양아 사망사건은 입양 후 사후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여준 사건이다. 현재의 입양 후 모니터링 기간은 1년이고, 4회 이상 방문하되 2회는 가정방문을 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0c).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아동 모니터링 주기를 조정하도록 하고, 입양가족 지원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입양 전 위탁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입양절차의 체계화와 투명화가 필요하다. 입양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이 더 요구된다. 아울러 파양아동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용자 자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57개 교정기관 중 23개소에 불과한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 있다. 아울러 수용자 자녀를 위한 복지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동인 수용자자녀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 가정에서 거주하지만 보호자가 일부 또는 전부 부재한 경우인데, 아동복지안전망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보호대상아동의 유형에서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아동보호전담 요원의 관리 하에 지역사회 드림스타트 등에서 아동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통과된 수용자자녀 보호3법에 기반해서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방치되는 아동에 대한 돌봄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돌봄기관과 연계하여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6.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1) 협약이행 성과

장애아동 분야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난민 아동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아동을 위한 조기 발견 및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para. 36).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아동을 위해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 따라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신·증설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56). 이에 특수학급이 2019년 50,812개에서 2021년에는 54,266개로 늘어났다(교육부, 2021a). 2018년부터는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다운 학교(통합교육 중점학교)’ 40개교를 시범 운영하였고, 2019년에는 이를 74개교로 확대 운영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57). 정다운 학교에서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협력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2018년 장애인 전담 특수학교는 175개교에서 2021년에는 187개로 증가되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교육부, 2021b; 대한민국정부, 2019: para. 58).

건강 및 보건서비스에서는 취약계층 및 이주아동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것, 이주 아동의 예방접종 접근성을 개선할 것, 당뇨 및 비만 아동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para. 37). 법무부에 의하면 만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은 2017년 5천279명에서 2020년 8천466명으로 60.4% 늘어났다(법무부, 2021b). 취약계층 및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민건강보험에는 가입할 수는 없으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에 의거하여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며 외래진료를 지원받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i). 지원비용은 총 진료비의 90%이고 회당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횟수의 제한은 없다(보건복지부, 2020i). 예방접종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 및 영유아 예방접종에 있어서 모든 아동이 대상이 되고 있다. 만 12세 미만의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아동은 내국인과 같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미등록이주아동도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거해서 보건소에서 관리번호 발급을 받으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매일신문, 2021.8.24).

당뇨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당뇨 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는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2019.12.31.). 그 이전에는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었는데,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보건복지부, 2019.12.31.). 지원 금액은 연속혈당측정기 21만원, 인슐린자동주입기 170만원이다(보건복지부, 2019.12.31.).

코로나19의 발발로 인한 학교폐쇄 등으로 비만아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정부는 건강놀이터사업을 102개 보건소, 248개 초등학교 및 49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21.6.16.). 그 결과 참여한 총 7,597명의 아동의 비만율이 감소하였고, 참여 아동의 신체활동 습관이 개선되었다(보건복지부, 2021.6.16.).

추가적으로 정부는 최근의 미세먼지 문제와 석면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에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개정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15). 아울러 가슴기 살균제 피해 대책으로 2017년에는 「가슴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18). 한편,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19년에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통해서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였고, 이용시간대도 개선하여 의료급여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44). 2015년에는 ‘제2차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대책(2016~2020)’을 수립하여 아동, 고령자, 야외근로자 등 기후변화 취약집단 DB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유해요인을 진단하여 환경을 개선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50).

정신건강에서는 자살예방과 아동의 정신적 웰빙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para. 38).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에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11). 행동계획의 최종 목표는 2018년 자살률 25.6명에서 2022년까지 17.0명까지 감소시키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8.1.23.). 주요 내용은 자살의 진행과정에 따라 원인분석과 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개입·관리, 자살사건 발생 후 사후관리·지원 강화 등에 대한 것으로, 6개 분야 54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8.1.23.). 최근 정부는 자살예방에서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지역사회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였다(보건복지부, 2021.5.6.).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공모결과 8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는데, 이 지역들은 국고지원과 함께 지역별 현황 및 사업계획에 대한 분석·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방문 컨설팅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1.5.6.).

정신적 웰빙 향상을 위해 정부는 2020년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인터넷 중독 관련 대책을 강화하였다. 법률의 제명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꾸어, 제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021.9.10. 인출).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터넷중독의 명칭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수정,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제51조), 과의존 대응센터 수립(제52조),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제53조), 과의존 관련 교육 실시 등이다(제54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021.9.10. 인출).

생활수준에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보장할 것, 빈곤층 아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시행할 것, 주거 빈곤 및 아동의 시간제 고용률을 효과적으로 다룰 것을 권고하였다(para. 38).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난민아동 및 재외국민 등도 대상이 되고 있다. 단 불법체류아동이나 외국 아동은 제외되고 있다. 2020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연보에 따르면, 난민 인정자 중 0~4세 아동은 209명, 5~17세 아동은 153명으로 만 7세 미만에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이주아동은 300명 정도이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 정부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서 명시된 재한외국인 자녀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 그리고 외국국적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시 자자체가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42). 빈곤층 아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은 따로 수립하고 있지 않으나 아동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의 일부에서 다루고 있다. 그 동안 문제제기 되어 온 주거빈곤아동을 위해서는 「주거기본법」에 근거하여 주거빈곤 밀집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동법의 제11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원 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주거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45). 동법에 의거하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고 있다(주

거급여법 제2조).

2) 협약이행 과제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영역에서 유엔아동권리 협약이행을 위한 정부의 이행조치에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아동의 적정 보호에 있어서는 도전되는 과제들이 있다. 첫째, 장애학생의 70% 이상이 통합교육 환경에 배치되고 통합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형식적이고 물리적인 통합에 그치고 있다. 이에 통합교육 환경에서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하고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즉, 통합교육의 질적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물리적 통합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통합과 교육과정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일반학교 내 장애아동 특수교육 담당 통합교육 담당교사 52,773명 중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620명에 불과함으로 특수교사의 확충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특수교사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특수교사 수를 확대 배치해야 할 것이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학교 기반시설, 통학지원, 보조원 배치 등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지원 현황도 파악해야 한다. 장애이해 및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각종 법률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고 장애문제는 장애관련 부처나 특수교육관련 관계자들의 고유업무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건강 및 보건서비스에 있어서는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 아동의 생명권, 건강권 보장이 필요하다. 정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산정특례 등록제를 실시하여 본인부담금을 10%로 낮추어 보장성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질병이 많고, 지정되더라도 약제의 급여가 지연되거나 어려운 상황이 많아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강선우, 2021).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각종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므로, 질환의 특성 및 환자의 고통을 고려한 희귀질환 또는 산정특례 지정이 필요하다(문진수, 2021).

한편,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에도 여전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주아동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고가의 의료비를 내야 하거나 진료비 부담으로 병원 이용을 포기하는 등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특히, 이 아동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구매, 재난지원금, 아동돌봄지원금, 교복지원금 등 모든 재난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다(가톨릭뉴스, 2020.10.28). 코로나19로 보건소가 진료를 중단하고 선별진료소가 되면서 미등록 이주아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던 영유아필수예방접종 17종, 독감백신 접종도 일반 병·의원에서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가톨릭뉴스, 2020.10.28.). 이주아동도 국적이거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나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어, 실제로 이주아동들이 이 사업의 지원으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아동(또는 보호자)들만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일선 보건소에서도 해당 사업에 미등록 이주아동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에 보건소의 아동예방접종 업무 재개와 미등록 이주아동의 혜택에 대한 홍보 및 부모대상 정보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도박중독,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자살율 등이 여전히 심각하다. 초등생의 과의존 위험군의 증가폭이 높고(초4 2019년 56,344명, 2020년 65,774명, 2021년 67,280명), 중학생은 고위험집단 수가 가장 많다(2021년 기준 85,731명). 2021년 기준 과의존의험군은 총 22만9천명으로 파악되었다(여성가족부, 2021.5.21.). 한편, 청소년 도박중독과 관련해서는 2021년 도박 실태조사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재학생 269만 명 중 심각한 도박중독 청소년은 2만 명, 위험집단군은 4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21.3.5.). 10대 청소년 자살율(인구 10만 명당)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2018년 5.8명(827명)에서 2019년 5.9명(876명)으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1). 10~20대 청소년 자살 원인은 '정신적 및 정신과적 문제'가 47.4%로 가장 높았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가정문제'와 '남녀문제'의 비율이 높았다(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1).

이에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을 감소시키고 아동의 도박성 게임 이용률을 낮추며 자살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폭력적, 선정적인 게임을 줄이고 학습 등의 순기능에 초점을 맞춘 게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아동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초기검진 가능성 및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아동의 정신건강 제고를 위해 아동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등도 확대해야 한다.

넷째, 간접흡연의 폐해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통학로 주변이 아직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부 시구정촌이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동아일보, 2019.6.2.), 우리도 서울 도봉구, 용산구 및 광주시 등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 학교주변 모든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도 있다. 이에 모든 구에서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코로나19 대비 아동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의 폐쇄 혹은 간헐적 등교, 이용시설의 인원 감축, 방과후 활동의 축소 등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돌봄의 공백, 가족갈등의 증가, 아동학대의 위기, 온라인 의존의 증가 등 삶의 모든 측면에서 우려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아동의 심리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심리정서 서비스 제공,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동적활동을 프로그램 활성화,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재가아동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빈곤아동과 관련하여 빈곤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는 아동종합실태조사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빈곤아동을 위한 단독 실태조사나 이에 기반한

빈곤아동을 위한 기본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빈곤은 다차원적 특성이 있는 바 아동빈곤을 접근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주거빈곤은 이슈만이 부각되었지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미흡한 상황이다. 아동빈곤문제 중 주거빈곤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마련이 요구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와 민간기관 등과의 종합적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7. 교육·여가 및 문화 활동

1) 협약이행 성과

우리 사회의 경쟁적 교육체제의 문제, 이로 인한 아동의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고 있음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와 권고는 대한민국 정부가 협약에 비준한 이래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 온 사항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모든 아동이 신분과 상관없이 의무교육을 보장 받도록 「교육기본법」을 검토하고, 장애아동 통합교육 강화, 모든 대안학교가 인가를 받아 학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는 성교육을 제공하고, 아동의 견해가 진로 선택의 기초가 되도록 하고, 학교에서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차별을 예방·근절하고, 사이버괴롭힘 근절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 아동의 발달을 위해서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관점과 태도 전환을 위한 인식제고 프로그램과 대중 캠페인을 실시하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 시설은 연령에 적합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안전한 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2).

2017년 9월, ‘국가교육회의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과도한 입시경쟁 지양,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완화 및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혁신 추진방향을 정립하

고 실천과제를 제안한다. 대통령직속 민관합동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였다. 2021년 7월 1일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7월 20일 공포되었다. 이 법은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제시, 대학입학 정책 등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002년부터 국가수준의 교육개혁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고,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새로운 교육체제 마련이 필요하였다. 또한 교육정책이 성과 창출을 위한 단기적 정책으로 교육 현장과 괴리가 있고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국민 여론, 시민의 참여 요구 폭증, 하향식 정책결정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있었다. 이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미래교육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법제처, 2021).

교육부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고, 2020년 2월 28일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이 도입 취지와 달리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유발하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에 자사고 등을 일괄적으로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기로 하였다(교육부, 2021c).

교육부는 2021년 2월 17일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로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교육부, 2021.2.17.).

교육부는 2021년 3월 9일,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주요 특징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 사교육비 총액 및 참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고등학교는 소폭 증가하였고,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 및 참여율 격차는 지속되고 있고, 시도간 사교육 지출격차는 완화되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기초학력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 강화, 고등학생 학습 보충·심화 수요에 적극 대응, 입시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진로·진학지도 내실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잠재 사교육 유발 요인에 선제 대응, 특히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2021.1.)’,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2021.2.)’ 등 주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반면 학부모 교육자료를 통해 사교육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을 지속한다고 밝혔다(교육부, 2021.3.9.).

「교육기본법」 제1조는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이 아닌 아동에 대한 학습권 보장(제3조),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제4조) 등 보장에 있어 제약 요건이 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적이나 신분 등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당사국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협약 정신에 근거하여, 「교육기본법」 상의 ‘국민’을 ‘사람’으로 개정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이은주, 2021).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 지속적으로 체류하길 원한다면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과 더불어,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는 현행 법·제도 상 가용절차를 통해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0.5.6.).

또한, 법무부는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 방안’을 발표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범위반 여부 등의 심사를 통해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한시적으로 (2021.4.19.~2025.2.28.) 부여할 계획임을 밝혔다(법무부, 2021.4.19.).

한편, 현재 공교육 체계 밖에 있는 학령기 청소년이 약 3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 획일적인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중심의 경쟁적 교육문화가 지속되는 현실을 꼽을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은 각 개인의 개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교육모형을 개발함으로써 학습자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공교육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21년 1월 12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센터를 통해 학습과 취업준비 서비스를 지원받는 청소년은 약 5천명 미만으로 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김민, 2021.9., 전문가 의견조사).

서울시는 2019년 9월 26일 서울지역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서울시는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전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신고등록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의 55.3%가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전환되었다(경향신문, 2021.5.19.).

교육부는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사이버폭력 예방

과 인식 제고를 위해 범부처 협업으로 모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학교, 도서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에 배포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 활동과 홍보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교육부, 2021.8.27.).

교육부는 2020년 12월에 '진로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한 2021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진로수업 및 상담 활성화, 진로체험 내실화,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확대,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 진로정보망 편의성 제고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 현장에서의 혐오표현 대응 실천 지원을 위해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와 실천 행동 포스터 등을 제작하였고, 전국 12,000여 곳의 초중등학교, 교육연구원 등에 배포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0.8.4.). 서울시교육청에서도 2021년 4월 1일에 '제2차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차별·혐오가 없는 학교를 위해 소수자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차별과 혐오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등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였다.

한편, 아동과 청소년이 여가 및 문화 예술 공간과 시설의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였으나 이용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여가 및 학습 시간에 관해서 조사한 결과 평일 여가시간이 1시간도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9.8%였고, 여가시간이 2~3시간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3.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김영지 외, 2020: 485).

아동의 놀 권리보장과 관련해서는 2020년 8월에 수립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는 놀이와 학습이 조화로운 학교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청소년 우대제도와 연계, 아동발달단계에 맞추어 신체, 문화, 지식탐구 등 활동 시 할인혜택 등을 부여하는 (가칭)아동우대제도를 도입하고, 놀이선도지역 선정, 지자체 단위 놀이혁신 행동계획 수립, 놀이 컨퍼런스 등을 통한 놀이 모형 지역확산, 각 학교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놀이·창의 활동 중심의 공간·시간확보, 놀이 연계 학습지

원, 교사 등 놀이 지원자 역량 강화 등을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에 아동의 놀 권리보장을 위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놀이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의 놀 권리보장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놀이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12.13.). 또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지역 내 초등학교 연령 아동들에게 놀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인 ‘놀이혁신 선도 지역’을 공모하여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보건복지부, 2020.6.25.).

교육부는 2021년 2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선택형 학습과 융합수업을 위한 공간혁신, 무선인터넷·디지털 기기를 통해 맞춤형 개별학습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스마트교실 혁신,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생태교육을 체험하는 그린학교 혁신,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 및 학교의 시설복합화로 학교공동체 혁신을 이끌어냄으로써 학습과 쉼, 놀이가 공존하는 창의적 학교로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교육부, 2021.2.3.).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하고,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차별적이고 성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2 (f)). 교육부는 학교 성교육 가이드라인(표준안)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생 발달특성에 맞게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표준안은 여러 차례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잘못된 성 인식을 강화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으나,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전문가들과 함께 표준안 개정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한 의견은 수렴하고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교육부, 2020.4.12.). 현행 표준안에 대해서는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규범 강화, 성적 다양성 배제 등 인권에 기반한 성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개선에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강미정, 2021.9., 전문가 의견조사).

2) 협약이행 과제

첫째, 앞으로 출범하게 될 국가교육위원회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입시, 고교입시 등에 따른 경쟁중심의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를 완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동이 국적이나 신분 등과 상관없이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근거한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의 적용 대상을 ‘국민’에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미인가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보장을 위해 학력인정 기관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교육비 지원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차별적이고 성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표현이 있는지 점검하고,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선동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홍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놀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놀이 및 휴식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해당 공간이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상담이나 진로상담, 복지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해 아동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고, 생활환경에 따른 아동의 교육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비대면 교육으로 인한 학습결손 및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학습 및 돌봄 지원,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8. 특별보호조치

1) 협약이행 성과

난민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아동과 관련해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7 가지를 권고하였다: (a) 「출입국관리법」개정을 통해 이주아동 구금을 금지할 것, 비구금형 대안을 보장할 것, 난민과 가족재결합에 있어 아동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b) 난민 및 무국적 아동의 지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개발할 것, 장기거주 이주아동의 지위를 규정할 것. 난민신청아동, 난민아동 및 이주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것, (c) 모든 난민신청아동과 난민아동에게 교육, 의료,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보호 및 지원을 한국아동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적·관행적 장벽을 없앨 것, (d) 보호자 미등반 아동의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아동권리협약과 부합하는 「이주아동권리법」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e) 난민신청자 및 난민 중 특히 아동에 대한 혐오발언 근절 캠페인을 전개할 것, (f) 미등록아동을 포함한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할 것, (g) 난민아동, 난민신청아동 및 이주아동을 위한 예산을 배정할 것 등이다(para. 43).

난민 및 무국적 아동의 이주아동의 지위를 위해서 법무부는 미등록으로 장기체류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법무부, 2021b).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15년 이상 거주한 아동은 체류자격을 갖게 되었다. 단, 외국에서 출생하여 영유아기에 이주한 아동이나 국내에 15년 미만 거주한 아동들은 제외되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응급의료비를 사용할 수 있고, 영유아는 무료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대상이 된다(법무부, 2015.3.24.). 최근에는 녹십자 병원에서 미등록이주 아동청소년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한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총 12개월) 만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입국 후 비자가 만료되어 미등록 체류 중이거나 부모가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기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

이면 의료비 지원 대상 의료기관에서 1인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헬스인뉴스, 2021.5.4.).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정부는 중도입국학생들이 정규학교에 배치되기 전에 6개월간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다문화 예비학교를 운영(2018년 197개교)하고 있고, 다문화 대안학교에서는 다문화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59). 불법체류아동도 200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초·중등 교육기관에 입학이 가능하여 왔다(김현미 외, 2020). 다문화교육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초·중등교육법」으로 격상하여, 다문화학생의 법적 정의, 학교장의 지원의무, 특별학급의 운영근거, 밀집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중앙·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근거 등이 마련되었다(교육부, 2021b).

그리고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 기반 조성하고자 고등학교 입학 및 편입학 절차 개선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법령을 정비하였다(교육부, 2021b). 조기 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실 및 징검다리 과정 등 적응과정 운영을 확대하였고, 교원 대상 한국어교육 연수과정 신규 개발(중앙교육연수원)하였다(교육부, 2021b). 징검다리 과정은 초등 35개교, 중학 17개교(21)이다. 한편,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이 원격으로 한국어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보급 및 원격수업 플랫폼에 탑재하였고,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대학생 다문화 멘토링 운영방식을 개선하였고, 교과 보조교재를 기반으로 한 영상콘텐츠(120편)를 제작·보급하였다(교육부, 2021b).

아울러 이주아동이 편입학이 가능하며, 서류가 불충분하더라도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중이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60).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북한이탈, 중도입국, 다문화 등 제도권 교육에 진입하지 못한 학교 밖 이주아동,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을 촉진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61). 레인보우스쿨(25개소)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과 공교육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9: para. 61). 기존의 한국어교육 중심에서 대상자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하여 정착지원으로 확대하고, 운영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여성가족부, 2021c). 운영방식에는 한국어특화형/진학준비형과 진로특화형으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1). 한편, 미등록 이주 아동의 보육과 관련해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무상보육을 제공하고 있다(중부매일, 2021.9.13.).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2조에서는 아동의 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당사국에서는 최저 고용연령 및 고용시간과 조건에 대한 적절한 규정을 갖추고 이에 대한 적합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UN, 1989). 이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5·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로, 일하는 아동의 수가 여전히 많고, 이들의 노동권 침해 및 언어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강제노동과 현대판 노예제,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가장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근절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없애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8.7을 고려하여 새로운 조치에 대한 점검과 보고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4).

이에 정부에서는 2020년 3월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안전 점검을 담당하는 학습근로관을 신설하고, 2020년 5월에 발표된 '2021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는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직업계교별 전담 노무사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연예인 노동과 관련하여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 방안(관계부처 합동, 2020.9.28.)'과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방송통신위원회, 2021.1.18.)'

을 마련함으로써 방송계에 종사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21년 10월, 요트 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학생의 익사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지난 2017년 제주도 특성화고 학생 사망 사고 후, 강화되었던 특성화고 현장실습 기준이 점차 완화되었고, 근로감독관의 부재, 취업 및 진로 상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취업지원관 제도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특성화고 청소년들의 현장실습 과정에서 노동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YTN, 2021.10.18.).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노동 경험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2020년 현재, 13~24세 청소년의 39.9%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21.5.24.).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상시적·장기적 근로로 변모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및 최저임금 준수 등의 기본적인 고용 절차를 지키는 일이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청소년 아르바이트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 및 처우 문제는 제도적 해결보다 개인적인 대처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장명선, 김윤나, 김재민, 박건, 이소라, 2020). 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연예인과 관련된 조치는 필요하나 실질적으로 정부가 수천 개에 달하는 소규모 연예 기획사까지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며, 기획사의 폭행과 폭언에 대한 처벌 내용이 없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었다(연합뉴스, 2020.10.11.).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중신형을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부과 금지(제37조 a), 모든 아동에 대한 위법적·자의적 자유박탈 금지, 아동의 체포·억류·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해지고,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 기간 동안만 사용(제37조 b),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에 대한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 존중을 바탕으로 연령을 고려한 처우, 아동의 최선에 이익에 합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인으로부터 격리, 예외적인 경우 제외하고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신의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제37조 c),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이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와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의 자유 박탈의 합법성에 대해 이의제기하고 소송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제37조 d),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아동의 무죄추정,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적절하게,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받고 법률적 또는 기타 지원을 받을 권리, 권한 있고 독립적인 사법기관에 의해 법률적 기타 지원을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심리 받고 지체 없이 판결되도록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지를 고려할 것(제40조)을 보장하고 있다(UN, 1989).

인신매매, 거래, 약취유인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5·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최종견해로, 인신매매의 정의를 국제법에 맞게 정비하여 강요·대가·피해자의 초국가적 이동요건을 삭제하도록 하며, 경찰, 출입국관리소, 노동청, 사회복지공무원 훈련을 포함하여 취약계층 피해아동의 식별과 위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식별지침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인신매매, 불법거래 및 탈취가 효과적으로 수사되고 가해자들이 기소되어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형량이 부과되도록 하며, 인신매매 방지 전담 조직과 인신매매 수사 및 기소를 위한 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인신매매 또는 불법거래의 아동피해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형사적 제재, 강제퇴거의 대상으로 삼거나 폐쇄된 시설에 절대로 구금하지 않으며, 남자아동, 외국인아동,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인신매매 아동 피해자를 위한 쉼터 및 통합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5).

이에 정부는 2021년 4월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신매매를 성매매 착취,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착취로 한 행위로 명시하고, 형법 등 11개 법률에 있는 범죄군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며, 17개 시·도에 피해자지원기관도 신설하는 노력을 하였다(여성가족부, 2021.4.21.). 인신매매에 관한 법률의 통일적 정비는 이루어졌으나, 취약계층 피해아동에 대한 식별 지침 이행 노력은 부족하고, 인신매매 수사와 기소의 체계화를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은 미진하다. 아동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폐쇄시설 구금원칙 또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유형별로 아동피해자쉼터와 통합서비스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년사법 운영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5·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최종견해로, 법에 저촉된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루는 아동사법 전문법원을 설립하고, 아동전문법관 및 법 위반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이 아동 권리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지속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고, 협약 제40조에 따른 공정한 재판 보장을 준수하고, 아동관련 재판에서 시작 단계에서부터 법정후견인의 참여를 보장하며, 문제제기를 한 아동에 대한 비밀보장과 아동관련 사건을 위한 언론보도지침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으며,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 법에 저촉된 아동에게 조사단계부터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법률구조제도를 수립할 것과 우범소년에 관한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다이버전(Diversion)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구금형을 촉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소년법」에 구금의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여 구금을 취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기간만 사용하고, 구금을 중단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보호처분기간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이 최종형기에 산입되도록 보장하며, 구금에 항소할 권리 및 부당한 구금에 대한 배상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6-47).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시구금을 포함하여 구금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 아동이 성인과 함께 구금될 모든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근신실 및 이송을 징계 조치로 사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회복적 조치로 대체하고 촉진할 것, 아동에 관한 무력 및 보호장비 사용을 규제하고 그러한 사용이 특정한 상황에서 제한되고 비례적으로 활용될 것, 구금된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하여 구금된 아동의 DNA 수집을 금지하고 강제적인 신체검사와 이발, 위생시설 촬영을 금지

할 것,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비구금 조치를 강화할 것,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을 국적, 장애, 성적취향 등을 근거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46-47).

이에 따라 정부는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를 통해 우범소년 폐지에 관한 권고안 등을 바탕으로 소년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조사결과에서도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처우의 미분리가 지적된 바(국가인권위원회, 2018), 2021년 6월 법무부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기능의 분리를 위해 대전소년원 본관을 위탁기능 수용시설로 전환하고, 경기지역 서울여자분류심사원을 신설하는 등 소년분류심사 기능이 소년원 대행 업무에서 분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파이낸셜 뉴스, 2021.5.23.). 그러나 소년사법 운영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엄청난 양의 권고내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력은 매우 부진하고 별다른 진전 사항이 없는 실정이다.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처우 분리를 위한 노력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결과에서도 소년원에서 소년분류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과밀수용, 종사자의 업무 과부하, 재판을 받지 않고 분류심사 중인 아동이 한 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것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국가인권위원회, 2019.8.1.), 현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처우내용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이승현, 박성훈, 2015), 대전소년원의 분류심사기능 분리, 서울·경기권 소년분류심사원 신설 노력이 있지만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며, 임시위탁결정에 대한 아동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법절차에서 아동이 법적 후견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절차가 부족하고 소년보호 사건 등에서 국선보조인의 전문성과 역량에 있어 편차가 심해 필요한 법률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해 당사자의 권리보장에 미흡하다(현소혜, 2021). 아동사건에 관한 언론보도 지침도 존재하지 않아 아동사건 발생 시 잔혹성과 폭력성이 부각된 언론

보도로 인해 가해아동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아동이 2차 피해를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소년범죄에 대한 잔혹성 보도로 인해 소년법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고, 형사처벌 연령 인하를 위한 국민청원도 계속되고 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의 우범소년 규정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위기가동이 여전히 보호처분을 받아야 하는 비행아동으로 분류되고 있고, 지위비행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계속되고 있다. 소년보호혁신위원회의 우범소년 규정 폐지 권고하였고(뉴시스, 2020.12.30.) 우범소년 폐지에 관한 입법안도 발의(세계일보, 2021.1.17.)되어 국회 토론회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박완주 의원실, 2021), 이후 후속조치가 부진한 상황이고 법무부나 법원의 개선 노력과 의지도 부족하다.

2) 협약이행 과제

특별보호조치영역 중 난민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아동에서 유엔아동권리 협약이행을 위한 정부의 이행조치에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아동의 적정 보호에 있어서는 도전되는 과제들이 있다. 첫째, 보육료 지원대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되어 이주아동은 보육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모든 체류아동 권리보장을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도록 개정하고, 이주아동을 포함한 국내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도록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둘째, 미등록 이주아동은 공교육에 진입하고도 다양한 교육서비스에서 배제되며, 중도입국 자녀는 부족한 다문화 예비학교 수로 인해서 한국어 교육 및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아동들이 교육서비스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방과후 서비스권 부여, 부족한 예비학교 수 확충 등이 필요하다.

셋째, 코로나19 시대 이주아동의 한국어 능력 향상, 심리적 적응을 위해 온라인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주아동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실태 파악이 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에 앞서서 실태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이주아동은 각종 서비스의 감소로 인하여 일반아동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코로나 이전에 겪었던 어려움이 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이주아동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한국어교육과 심리적응 서비스는 비대면 형태로 강화하는 과업이 필요하다.

넷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진로 및 자립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레인보우스쿨을 확대하고, 중등과정에서의 다문화 예비학교를 증설하여 한국어 및 한국생활 적응을 적극적으로 한다. 이들이 겪는 가장 커다란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다문화 멘토링 활성화, 직업훈련프로그램 다각화 등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미등록 이주아동이 시설보호나 대안양육이 필요할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법적후견인 배정 등의 조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학대 피해 이주아동의 경우 국적이 없으면 쉼터 입소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응급상황의 경우에는 시설입소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보호조치 중 아동·청소년의 노동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거나 각종 정책 및 제도를 재정비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정책과 제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아동과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직업계고마다 1명 이상의 교사를 학습근로지원관으로 지정하여 산업안전근로감독관과 협업하여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위

학교에서의 순회 지도 및 관리·감독이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상시적이며 장기적으로 노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근로권익보호 및 근로감독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계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청소년 노동에 대해 상습적이며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며, 청소년의 근로권익 침해 구제제도에 대해 청소년 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 통로를 제공하고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아동·청소년 연예인 연습생, 지망생, 연예인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 절차와 내용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아동·청소년 연예인이 방송을 통해 대중들에게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비방하는 악플에 대해 즉각적이며 적극적인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별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정부의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통한 법률적 정비,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추진 등을 통해 소년사법 개선 노력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년사법 체계 전체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아동의 관점에서 특별보호단계에 있는 아동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는 인신매매 방지정책의 실질적 구현과 소년사법에서의 변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

첫째, 인신매매 법률 정비에 따라 실질적인 인신매매 등 수사 및 단속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인신매매 방지정책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식별지침을 강화하고, 외국인 아동 또는 장애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통합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아동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탁소년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위탁소년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위탁처분 당시와 연장 시 구금 목적에 맞게 명확한 기준 하에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에 구금 기준과 이의 제기권 등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범소년 규정 폐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지위비행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우려, 위험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한 아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 등을 이유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에서 폐지를 권고하였음에도 소년법 개정 노력이 부족하고, 법무부와 법원이 우범소년에 대한 복지적 차원의 개입과 노력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범소년 규정 폐지를 위해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우범소년 규정 폐지 이후에 발생될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동복지체계에서 우범대상 보호방안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 소년범죄에 대한 언론보도지침의 마련과 강화를 통해 소년범죄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 언론보도를 통한 대상아동의 정보유출로 인해 2차 피해나 사회적 낙인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섯째, 피의아동의 법적 지원을 위한 필수적 국선보조인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재판단계에서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필수적으로 국선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소년법 제17조의2의 임의적 보조인 선임규정과 형사소송법 제243조의3의 미성년 피의자 신문 시 국선변호인을 둘 수 있게 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현소혜, 2021).

여섯째, 코로나 상황 등 전염병 상황에 대한 소년사법 기관의 즉각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코로나19 발생 시 소년사법기관에서 마스크 확보, 진단키트 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교정상황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전염병 등 특수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체계 구축과 전문 의료체계가 즉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협업체계와 전염병 대응 매뉴얼이 확보되어야 한다.

○ — 제5장 정책 제언

- 1. 정책제언을 위한 논의
- 2.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1. 정책제언을 위한 논의

이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점검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진전 사항 파악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3장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파악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4장에서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협약 과제 점검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해 우선 노력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각종 전문가 회의와 의견조사 등 일련의 절차는 4장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 과정(〈표 IV-1-1〉)에 제시했으며, 9월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약이행 과제를 논의하였다. 1절에서는 각 절차별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요약하고 2절에서 주요 정책과제 제안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47) 5장 1절의 1)과 2절 정책과제는 3장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분석'을 집필한 김영지 선임연구위원, 유설희 전문연구위원, 최홍일 전문연구위원, 이민희 교수, 김진호 교수가 3장과 동일 영역을 집필하였다. 5장 1절의 2)는 4장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분석'을 집필한 김형욱 시민인권보호관, 이승현 연구위원, 김미숙 교수가 동일 협약 영역을 집필하였다.

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결과 시사점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대분류 영역은 아동권리협약 상 일반이행조치와 일반원칙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영역으로 인권 인프라, 인권인식, 인권교육, 차별 경험,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등을 살펴본다.

2021년에는 아동학대, 아동·청소년 성보호, 안전, 학교 밖 청소년, 학생선수 인권, 학교폭력, 보호소년, 민법 징계권 삭제 등 아동·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국가교육위원회 등 교육 분야 법 제정이 두드러졌다. 아동권리협약 비준 시 유보했던 상소권 관련 조항의 유보 철회에 필요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019년 7월 출범 이래 아동인권 전담기관으로서 다양한 인권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 심의·조정기구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1회, 아동정책실무위원회는 2회 개최되었다. 2019년 10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5·6차 권고가 발표된 이후 협약이행상황 점검 관련 안전이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 인권정책 권고와 의견표명 건수가 2019년 12건에서 2020년 17건으로 늘어나고 권고수용률도 2019년 75.0%에서 2020년 100%로 증가하였다. 2020년도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 비율은 3.6%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하여 고무적이나 현재 예산 산출 근거자료인 기획재정부의 '나라살림예산'은 부처별로 아동·청소년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 예산을 엄밀하게 분리해내기 어렵다. '아동·청소년 예산'의 범위와 산출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보다 엄밀한 국가 아동·청소년 예산 통계 생산이 필요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20.1%), 학생인권조례(7.5%), 국가인권위원회(23.7%) 인지도는 낮은 편이며, 생활영역별 인권존중도는 가정(96.6%), 학교(95.2%), 우리나라(82.4%), 사이버 공간(81.7%)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이다. 인권의식과 태도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주체적 결정 능력, 아동·청소년 사회참여 필요성, 자치조직의 의의,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권, 경제적 이유의 차별금지, 양성평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등 전반적인 인권의식도 높게 나타났다.

인권교육을 받았다는 응답률은 48.0%로 전년도 46.5%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고 인권교육을 받은 곳은 학교 교과수업시간이 76.1%로 가장 많았다(복수응답). 인권교육의 목표별 도움정도도 80~9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차별받은' 경험은 나이(23.0%), 학업성적(21.7%), 성별(21.6%), 외모·신체조건(21.0%) 등에 의한 차별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차별한' 경험은 외모·신체조건(9.1%), 나이(8.1%), 학업성적(7.4%), 성별(7.1%)에 따른 차별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차별받은' 경험은 나이에 따른 차별 경험,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은 외모·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경험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 실현을 위한 아동정책영향평가는 2년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21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 100개 지자체가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를 실시하였다. 모든 지자체들이 자체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업 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의 지표결과를 보면,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구에 대한 인지도는 낮고 아동·청소년이 인식하는 인권교육 경험율도 48.0%로 낮은 편이었지만 인권인식 및 태도와 주관적인 인권존중도는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10명 중 2명 정도가 나이, 학업성적, 성별, 외모·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인권교육과 차별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021년 현재, 아동·청소년은 가정 내에서 가사 및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집안 내 중대사는 90.9%, 상급학교는 94.0%가, 진로(직업) 94.6%, 공부시간·방법은 91.1%가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대해 보호자(부모)로부터 존중받고 있었고, 학교에서는 학생회 활동의 자율권 보장과 관련하여 자치권은 46%가, 예산 및 장소, 시간은 48.5%, 학생회 의견 존중과 반영은 58.3%가 보장된다고 하였고, 임원후보 성적 제한의 경우, 37.1%만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도는 26.8%로, 2017년에 비해서는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여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의 자율성이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 규칙이나 규정을 제·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82.2%로 높은 편이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사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총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아동총회는 2020년 현재까지 총 17회 회의가 개최되었고, 2020년에는 참여와 놀 권리, 진로, 건강 분야가 포함된 결의문을 정부에 전달하였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20년 현재 239개 지역에서 약 4,400여 명의 청소년이 활동하였고,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고자 구성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2020년에 총 331개소에서 각 지역별로 10~20명 내외의 청소년이 참여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특별회의는 2020년에 약 5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여 취업 및 경제 등의 내용이 담긴 자립을 주제로 한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기구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실제 인지도 및 활동경험은 11%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지만, 우리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에 72.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참여권이 보장될 수 없는 방해요인으로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이 30.7%, 29.2%는 시간을 내기 어렵다, 24.2%가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12.7%는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순으로 보고되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초, 중, 고등학생 아동과 청소년의 92.1%는 사회나 정치, 인생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부모나 형제와 관계없이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비율은 82.1%, 종교재단으로 설립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49%만이 학교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중·고등학생 청소년 중에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봤다는 경험은 11.2%,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5.7%로 보고되었고, 이러한 사회문제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에서 경고나 훈계, 상담, 징계 등의 피해 경험률은 2.1%였다.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21.3%가 용모 검사를, 28.9%가 복장 검사를, 6.2%가 소지품 검사를 경험하였고,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에서 교육비 미납에 대한 정보가 5.4%, 징계 사항은 12.4%, 개인 시험성적이 10.4%가 공개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받고는 있으나 참여 활동은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었고, 과거에 비해 나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학교 안에서는 청소년들의 사생활이 제한적으로 보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20년 현재, 아동과 청소년의 매체이용률은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94.6%), 인터넷/모바일 메신저(93.6%), 지상파 TV(88.0%), 지상파 제외 TV(84.7%) 순으로 매체를 활용하였으며, 3세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의 대부분은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주로 TV 시청, 라디오 청취, 음악 감상, 동영상 및 영화보기, 게임 등의 ‘여가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89.3%로 가장 높았다. 일주일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의 경우, 2020년 현재, 3~9세(33.5%)와 10대(35.9%), 20대(32.1%) 모두 7시간~14시간미만 동안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35.8%로, 고위험군은 5.6%, 잠재적 위험군은 30.8%로 나타났다. 한편, TV나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한 개인적인 도구 이외에 공공 영역에서 매체를 접할 수 있는 도서관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20년 현재, 일반 공공도서관은 1,033개소, 어린이도서관은 101개소가 운영되었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종이책과 전자책, 오디오북 등의 독서량은 감소하였다. 2020년 현재, 초, 중, 고등학생 중 37.4%가 성인용 영상물을 접한 경험이 있었고, 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23.9%)’,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17.3%)’, ‘TV 방송(13.5%)’ ‘스마트폰 앱(13.4%)’을 통해 시청했다. 또한, 2020년 현재, 초, 중, 고등학생들은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교육을 51.2%,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 교육은 48.4%,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은 73.5%가 받았으며, 이러한 매체이용 교육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70% 이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미디어 역량과 관련하여 초, 중, 고등학생들은 미디어를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스스로 역량이 있다고 인식하였지만, 정보제공자의 측면에서의 역량은 과반수 이상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특히,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기기가 단순히 아동과 청소년의 여가활동뿐만 아니라 학습이나 사회적 관계를 맺는 통로로 활용하는 등 이들의 일상을 꾸려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스마트기기를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그 안에서 제공되는 미디어 콘텐츠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선별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폭력 및 학대

2021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에서 그 동안 가정에서 부모 및 보호자 체벌의 빌미가 되었던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규정이 2021년 1월 삭제되었다. 그러나 2021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가정에서의 체벌 비율이 24.0%로 나와 4명 중 1명의 아동·청소년이 아직도 체벌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부모교육

강화와 가정 내 자녀폭력에 대한 신고제 도입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가정에서의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폭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학교에서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체벌)의 피해 경험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체벌과 같은 신체적 폭력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지속적인 권고에 따라 한국에서 법·제도적으로 금지되고 있음에도 조사에 참여한 응답 학생의 3.1%가 피해 경험을 보고하여 한국에서 아직 체벌이 학교에서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사가 체벌 시에는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체벌이 영구히 학교에서 추방되도록 교사자격 취득 과정에서와 교사의 재교육 과정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정책적, 법·제도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2011년 3월 18일에 공식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체벌 금지 조항이 시행되고 있어 학교에서의 체벌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직간접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인권의 신성한 교육현장인 학교에서의 체벌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체벌금지와 관련된 법·제도가 실질적 정책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 사건은 피해 대상이 점차 저연령화되어가는 피해 건수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13세 미만 연령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5%에 가깝게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조사결과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은 초등학생이 6.7%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피해와 비교하여 가장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19년 아동학대 총 신고접수 건수는 41,389건이었으며 그 중 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결정된 사례는 30,045건으로 2018 대비 22.0%p 증가한 수치이다. 학대 가해자는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를 포함하는 부모인 경우가 전체 가해자의 75.6%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밖에도 초·중·고 교원 7.2%, 유치원 및 보육교직원 5.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여전히 영·유아 및 초, 중등 학생들이 많이 접하는 장소와 사람에게서 높은 확률로 학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응하고자 2020년 아동학대에 대한 공격개입을 발표하였다. 예를 들어, 새롭게 신설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시행 초기에 인력부족, 업무과다 등으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현재 개선된 부분은 있지만 여전히 인력부족과 업무과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지역이 많이 남아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아동학대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배치 및 신규임용하며, 중앙에서 지역으로 배치하는 방식을 지향하여 전문성을 가진 인력 충원과 지역 간 자원의 불균형에 따른 격차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정부 정책의 대부분은 아동학대 발생 이후 대응에 초점에 맞춰져 있으며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과 만 3세 전수조사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의 75.6%가 부모임을 고려할 때, 양육자가 체감하는 심리적 고통을 해소해주는 것은 긍정적인 양육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양육과정에서 문제 상황에 놓일 때 즉각적으로 상담 및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2021년 3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면서 3월 30일부터 약 6개월 간 일 평균 1.1건의 즉각 분리 사례가 발생하였으나(연합뉴스, 2021. 9.16.), 아직 즉각 분리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을 일시보호(72시간)할 피해아동 전용 쉼터의 설치가 미비하며, 다양한 피해아동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 이주배경, 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학대 피해 아동들을 즉각분리 후 보호하기 위한 쉼터와 인력, 서비스가 필요하다.

(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만13~19세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2012년 이후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최근 2020년도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81%가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하였다.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의 경우, 아동 인구의 감소로 인해 전체 어린이집 수가 2015년 42,517개소에서 2020년 35,352개소로 약 7천여 개소가,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도 2015년 1,452,813명에서 2020년 1,244,396명으로 약 20만여 명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의 수와 재원아동 수,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와 관련하여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도 대비 5분의 1 수준 이하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초등학생 10.9%, 중학생 4.2%, 고등학생 12.0%).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895개소에서 2019년 현재 4,217개소로 확대되었고, 최근 10여 년간 이용 아동 수도 10만 명 내외를 유지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4점대를 유지하였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 2005년 46개소에서 2020년 현재 304개소로 확대 운영되어 매년 초, 중, 고등학생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인 만족도는 81.8점이었지만,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운영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2020년 6월말 기준 총 246개소로, 실제 4,858명의 아동(이용 아동 정원은 6,176명)이 이용하고 있고,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만족도는 4.5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2011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국내·외 입양률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2020년 현재, 전체 입양아 492명 중 국내 260명(52.8%), 국외 232명(47.2%)이었으며, 「입양특례법」 제25조제1항에 의거하여 입양 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되 1년 동안에는 의무적으로 사후관리 모니터링이 총 6회 이상(최소한 3번)의 필수적인 가정방문 및 가정 이외 장소에서 대면상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 수가 2018년 이후 2019년에 4,047명, 2020년 4,120명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2020년 현재 보호대상아동은 시설보호 66.5%(2,739명), 가정위탁 29.1%(1,199명), 입양 2.5%(104명)의 형태로 보호되고 있었다. 가정위탁보호의 경우, 친조부모나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을 의미하는 대리양육 위탁가정과 부모

및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으로부터 양육을 받는 친인척 위탁가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아동의 비율이 많았고, 2019년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 수(11,665명)가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보호되는 아동 수(2,949명)보다 4배 가까이 많게 보고되었다. 최근 들어 보호대상아동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시설을 중심으로 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아동보호체계에 있어 탈시설화를 진행하려는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초, 중, 고등학생 전체 응답자 중 3.2%가 가출 경험이 있었고, 주로 부모님과의 문제(62.4%)와 학업문제(18.5%)로 인해 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출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전문화 및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시, 단기 및 중·장기 쉼터로 특성화하여 2020년 현재 총 13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 6.1%는 가출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이용해보았고, 이용기관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77.1%가 만족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가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이용 정도가 최근 3년 간 10%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가출 청소년을 위한 1차 안전망으로서 작용하는 이러한 기관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3년 주기에 따라 진행되는 아동복지시설 평가는 최근 2019년에 진행되어 전체 285개 시설 중 A등급은 193개소(67.7%), B등급은 61개소(21.4%), C등급 15개소(5.3%), D등급 5개소(1.8%), F등급은 11개소(3.9%)로 나타나 아동생활시설의 89.1% 정도는 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2022년도의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가 보완되어 평가영역 중 기존 'C. 인적자원 관리'가 'B. 재정 및 조직운영'으로 통합되었고, 'F. 시설운영전반'이 추가되었다. 아동보호체계와 관련해서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보호서비스 전달체계가 개편되었다.

(5) 장애, 기초 보건과 복지

아동·청소년의 장애와 기초보건, 복지를 위한 다양한 지표들에 대한 조사결과, 일부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겨져 있었다. 먼저, 아동·청소년 정신적 건강의 경우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 자살 생각의 경우 10~19세의 6.5%가 한 번 이상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작년 5.9%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그리고 우울감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행복도와 자아존중감은 2020년 대비 하락하여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부정지표들은 상승하였고 긍정적 지표들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이유는 코로나19의 발생 및 장기화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장기간 등교가 안정적이지 않고, 비대면 사회 분위기가 지속되며 친구들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다 보니 부정적 감정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축적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화된 전염병 상황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자살시도가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는데,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더욱 취약했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상자의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해 본 영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은 굳이 코로나19의 영향력으로 인한 일시적인 상승 및 감소가 아니어도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 자살 예방 등을 위해서 낮은 연령대에서부터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질환 발견 시 즉각적인 치료개입이 필요하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실태조사의 주기적인 실시와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지역별로 확충하는 것을 권고하였으며(국가인권위원회, 2019),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아동의 자살과 관련하여 아동의 정신적 웰빙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para. 38).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신질환 조사의 조사주기를 심리적 변화량이 큰 아동·청소년의 시기적 특성에 따라 최소 격년으로 줄이고 대상을 전수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질환 발견 시 조기치료를 위한 연계에 대한 사항을 포괄하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2020년 학생건강검사는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통계를 찾기 어렵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만, 근시를 비롯한 시력저하 아동·청소년이 큰 폭에서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KBS뉴스, 2021.10.17.). 이러한 신체적 건강 악화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비만의 경우 야외활동이 감소하면서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근시 및 시력 악화의 경우 비대면 수업 및 온라인 수업에 따른 전자기기 사용량이 늘어난 것을 이유로 꼽고 있다. 비만을 낮추고 시력 저하의 심각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요구된다.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한국의 고질적인 교육 상황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지표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1인당 사교육비가 증가하였고, 고등학생의 월 평균 사교육비가 6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한국의 지나친 경쟁 교육 체제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학년의 사교육비는 줄지 않고 있어 대학입학 위주의 경쟁 교육의 병폐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이러한 입시위주의 경쟁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부적응하게 하는 근본 요인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4명 중 1명이 넘게 학업 중단을 생각해 보았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는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가 31.0%, ‘공부하기 싫어서’ 27.6%, ‘성적이 좋지 않아서’ 16.1%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활발해야 할 청소년들의 무기력한 모습은 한국교육의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교육현실은 교육받을 권리의 비이성적인 실천이 아동·청소년들의 놀 권리와 충돌하는 이중적 교육 실태를 보여주고

있어 교육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전환이 시급하다. 2021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교육혁신 기구가 법을 통해서 만들어졌기에 여기서 많은 정책적 과제들이 제안되고, 수렴되어서 교육현실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의 도입 이후 청소년의 진로활동의 효과가 조금씩 조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 지원과 면밀한 질적 제고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학교 교육 밖에서 추가적인 직업교육(훈련)을 위하여 상급학교 진학과 학원에 다니는 등 계속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므로, 직업계고 내실화 정책을 통해 직업으로의 이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2021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거의 모든 지표들에서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학업과 여가 및 문화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교육격차와 교육의 양극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7) 특별보호조치

2020년 기준 누적 난민신청 건수 중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3.9%이며, 2020년 한해 신청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4.2%였다. 그리고 난민 인정과 인도적 체류 중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2.2%, 12.9%이었다. 특히 난민인정자 중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 이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난민인정이 된 이후의 정착과 생활지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탈북 아동·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자녀(국내출생 자녀,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의 수도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참가율과 관련해서도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 수의 비율이

2011년 0.55%에서 2020년에는 2.75%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탈북학생의 재학 현황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학업중단율을 보면 다문화학생의 경우 학업중단율이 0.95%로 전체 학생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인 반면 탈북학생의 중도탈락률은 2.9%로 다문화학생의 중도탈락률보다 더 높게 나타나 탈북청소년의 학업중단율 감소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방안과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자녀와 탈북청소년의 차별 경험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차별 방지와 근절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구체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유박탈 아동·청소년현황과 관련하여 보호소년의 경우 신수용인원은 2020년의 경우 1,637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위탁소년의 경우에도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 수용기간별로는 1개월 미만 수용자가 1,3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도소에 수용된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수형자의 죄명별 현황을 보면 강간과 절도가 18.3%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와 폭력·상해는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사기·횡령, 강도, 강도, 살인, 과실범 등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인권친화적인 환경 조성 비율과 관련하여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조력횟수는 2020년의 경우 3,174회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률을 살펴보면 소년분류심사원은 7개소 중 2개(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부산소년원)가 정원 대비 10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소년원의 경우에는 10개소 중 5개소가 수용정원 대비 실제 수용인원이 과밀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밀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회복적 프로그램(다이버전)운영과 관련하여 사회 내 처분 청소년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전체 보호관찰인원 중에서 소년보호관찰인원은 18.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비율은 2015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집행 인원은 총 5,331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수감명령을 집행 받은 청소년도 2019년의 경우 총 3,528명이었으며 전년 대비 962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제도와 관련해서도 2019년에 보호관찰소에서 선도위탁을 실시한 인원은 1,845명(전체 기소유예자 중 0.8%에 해당)이었으며, 2016년 이후부터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기초할 때 소년사법과 관련하여 회복적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노동조건 수준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2019년 기준 19세 이하의 경우 월평균 1,882천원, 20세~24세 청소년은 월평균 2,265천원이었으며,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간당 임금총액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경우 청소년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노력과 관련해서도 아르바이트 과정에서의 부당처우 경험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59.5%), 시간을 초과한 일하기/계약과 다른 일하기(10.8%), 임금미지급/약속보다 낮은 임금지급(9.7%),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지급(8.7%), 폭언 등 인격모독(6.2%), 이유없이 부당해고(5.2%), 작업환경의 불결과 위험(5.1%), 성적피해(1.6%), 구타나 폭행(1.1%) 등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수준과 관련하여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주요 형량과 관련해서는 2021년 3월 23에 일부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하는 경우 법정형을 상향 조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

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미적용,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 규정 등이 포함된 점은 상당히 의미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의 경우 4,468명이 접수되었으며, 4,521명이 처분 받았지만, 1,642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법에 대한 기소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향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보다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성폭력 피해자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들이 다양화되고 있고, 지원건수도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다양한 지원들이 체계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시설과 서비스 내용을 보다 확대 및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2) 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시사점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속적으로 국회에 발의되는 등 추진되어 왔으나 제정에 이르지 못하였다. 2021년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다시 발의되었고,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국가인권정책추진체계 등을 담은 「인권정책기본법」을 입법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두 법률은 우리 사회의 차별을 금지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의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2016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고, 2019년 3월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도운영의 절차 등이 정비되었다. 동 제도는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영향평가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2021년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57개 지역이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되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아동에 대한 구제를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및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해 공기정화장치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된다고 포괄적·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아동복지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등 아동 관련 법률의 아동의 의견 존중, 참여와 관련한 조항에 대해 검토하여 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국적이나 신분 등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출생을 확인할 수 있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은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2021년 2월에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을 발표하였고, 동년 3월에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미혼부의 자녀 등록 절차가

개선되고, 동년 6월에 동법이 개정이 입법예고 되어 의료기관에서 아동출생 및 모에 관한 정보가 관리되는 등의 출생통보와 관련한 일부 제도 변화가 기대되나 모든 아동이 국적과 무관하게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금지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학생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당하고 있고,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가칭)학생인권기본법, 아동청소년인권기본법과 같은 포괄적인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7개 지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2월 25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학교규칙에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담도록 했던 것을 학생의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으로 개정하였다.

(3) 폭력 및 학대

정부는 체벌 등 아동폭력, 성착취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양한 아동학대 방지정책 마련,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가정 내 체벌 금지를 위한 민법의 징계권 규정 삭제 등 노력을 기울였고, 아동학대 조사시스템의 공공화, 아동학대 예산의 일반 회계화,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확대, 온라인 그루밍 처벌근거 마련, 미성년자 의제공간 연령 상향, 성매매아동을 ‘대상아동·청소년’에서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노력과 성착취 대응 강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아동학대 국가데이터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못하였고, 성착취 아동에 대

한 실질적 보호 및 지원시스템도 구동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화를 실질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균형적인 아동학대 인적·물적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고, 국가아동학대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및 정보연계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보호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아동이나 이주아동에 대한 보호체계가 구체화되어야 하며, 성착취 아동의 보호를 위한 부처가 성착취 개념의 공유와 대책 마련, 성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구체적 보호장치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영역과 관련하여 정부는 전문위탁제도 확대,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입양절차 공공화 및 체계화, 입양아동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 등의 성과가 있었고, 수용자 자녀보호 3법 개정, 아동친화적 접견실 확대 설치, 수용자 자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실시,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미신고시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아동복지생활시설의 대체인력 확보 및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전문위탁가정 발굴을 위해서 일반 가정위탁의 발굴 및 입양 후 사후관리 강화가 요구되며, 수용자 자녀를 위해서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을 확대 및 수용자 자녀를 위한 복지안전망 접근성 및 복지가 강화되어야 한다.

(5) 장애, 기초 보건과 복지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영역에서는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통합교육을 강화하였고, 취약계층 및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미등록 이주아동도 모두 무료접종을 받게 되었다. 또한, 당뇨, 비만 등 건강취약 아동을 위해서 제도가 강화되었다. 정신건강에서는 계획의 수립과 법제도의 전면 개정 등의 성과를 이루었고, 생활수준에서는 아동수당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난민아동 및 재외국민까지 확대하였고, 아동복지 시설 입소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장애아동 통합교육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하고 재구조화하는 것, 희귀질환 또는 산정특례 지정, 보건소의 아동예방접종 업무 재개와 미등록 이주아동의 혜택에 대한 홍보 및 부모대상 정보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을 감소시키고 아동의 도박성 게임 이용률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에 아동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등도 확대해야 한다. 학교 주변에서는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온라인 심리정서 서비스 제공,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동적 활동을 프로그램 활성화,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재가아동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 빈곤아동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와 민간기관 등과의 종합적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우리 사회의 경쟁적 교육체제, 사교육의 심화로 인해 아동은 휴식, 여가 및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9월에 과도한 입시경쟁 지양,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완화 및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혁신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실천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국가교육회의 설치하였고, 2021년 7월 1일에는 교육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대학입학 정책 등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모든 아동이 국적이나 신분 등과 상관없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 상의 ‘국민’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으로 개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법무부는 2021년 4월 19일에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 방안'을 발표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법 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한시적으로 부여하였다.

2021년 1월 12일에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대안교육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놀 권리보장을 위해 2019년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놀이혁신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20년에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선정하였고, 2020년 6월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놀이혁신 선도지역' 10곳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1년 2월에 학교가 학습과 놀이, 놀이가 공존하는 창의적 학교가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아동의 놀 권리보장을 위해 대학입시, 사교육 문제 등 경쟁중심 교육체제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7) 특별보호조치

특별보호조치 영역에서의 성과는 국내에서 출생하고 15년 이상 거주한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한 것, 그리고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응급의료비를 지원한 것, 민간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병원비를 최대 200만원 지급한 것, 영유아에게 무료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제공한 것, 중도입국학생들을 위해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 대안학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레인보우스쿨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이 영역에서의 여전히 도전되는 과제들은 미등록 이주아동 영유아의 보육권 보장, 다양한 교육서비스에서의 접근성 제고, 코로나19시대 한국어능력 향상, 심

리적 적응을 위해 온라인 프로그램을 강화, 부족한 예비학교 수 확충,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진로 및 자립지원을 확대, 미등록 이주아동이 시설보호나 대안양육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조건을 완화 등이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하고, 청소년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과 교육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고자 청소년근로권익센터(고용노동부)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여성가족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연예인 및 방송출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및 제도들이 실제 아동·청소년의 노동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근로환경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적·정기적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주 계도 및 처벌, 근로권익 침해 구제제도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청소년 연예인 및 방송출연자 등에 대해 표준계약서 이행을 주기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악성 루머의 확산이나 비방 표현 등의 악플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아동의 보호와 국제법적 기준에 맞는 법적 기준 정비를 위해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인신매매 다양한 유형에 대한 개입을 하고 있다. 소년사법에 있어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개선사항이 없는 상태이고, 우범소년 규정 존치나 형사처벌 연령 인하 등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반하는 입법과 정책 방안이 모색되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아동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방지정책 추진체계의 확립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소년사법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아동에 대한 법적 정비, 우범소년 규정 폐지, 소년범죄 관련 언론보도지침 강화,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아동을 위한 국선보조인제도 활성화, 코로나 상황에서의 소년사법기관의 적극적 대응조치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1)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총괄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분석,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분석 등을 통해 최종 17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인권정책과제 중 제3·4차와 제5·6차 유엔 권고사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는 과제임에도 이행노력이 부족한 경우는 이전 연도에 제시한 정책과제 제안내용을 점검하여 진척된 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 제시하고 있다(김영지 외, 2020: 579-581). 연속과제 특성상 상대적으로 시급성이나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이전에 제안되어, 중복되지 않는 과제를 제안하려면 우선순위가 낮거나 다소 미시적인 과제를 발굴하게 되는 한계가 있으나 아동·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모든 협약이행 과제가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제안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협약이행 논의를 위해 개최한 전문가 워크숍과 의견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과제를 구성한 경우 해당 과제에 이 사항을 표기하였다.

표 V-2-1. 아동·청소년인권 정책과제 총괄표

과제명	추진일정			관련부처	제안배경		
	1단계	2단계	3단계		실태 분석	협약 이행	중요도 조사
I. 일반이행 조치							
과제1. 협약 제40조제2항 (b)(v) 상소권 관련 유보조항 철회 (신규)	협약 유보조항 철회 관련 논의 확산	의제화 및 입법관계자 인식 제고 노력	군사법원법 등 필요한 관련 법 개정	국방부 보건복지부		●	●
과제2. 아동예산 산출기준 마련 및 아동친화예산 확대 (신규)	아동예산 산출기준 마련 기초연구	아동친화예산 작성기준 마련 연구 및 작성지침 제도화	아동예산 규모 추적 및 확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	●	●

과제명	추진일정			관련부처	제안배경		
	1단계	2단계	3단계		실태 분석	협약 이행	중요도 조사
II. 시민적 권리와 자유							
과제1. 아동·청소년 사회참여의 권리에 대한 인식 확산 (신규)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 권한 및 책임 확대	아동·청소년 사회참여 인식 개선 교육자료 개발	아동·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 제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	●	●
과제2. 아동·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 (보완)	교육과정 내 미디어 리터러시 개설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료 개발	초·중등학 교별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교육 지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
III. 폭력 및 학대							
과제1. 교사의 체벌 근절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보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개정 법령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의견 수렴	일정 계도기간 후 법령 시행	교육부 법무부	●	●	●
과제2.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화 및 지자체 간 격차 해소 (보완)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중앙정부로 업무 이관	아동학대전담 전문성 확보 인력 배치 및 신규임용	지자체 전담 사무소 개설 및 인력 배치	보건복지부	●	●	●
과제3. 양육상담 시스템 마련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신규)	24시간 양육 상담 시스템 구축 및 제도 마련·홍보	양육 관련 상담전문 인력양성 교육 실시	24시간 전화 또는 인터넷 상담 실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	
과제4. 학대 피해 아동 심터 확대 및 대상자 유형별 대응 (신규)	다양한 유형별 학대 피해아동 지원 계획 수립	영·유아, 장애, 다문화 청소년 대상 지원인력 및 운영계획 수립	대상자 특성 고려한 피해아동 심터 증설 및 운영	보건복지부		●	●
IV.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과제1.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강화 (신규)	수용자 자녀 실태조사 및 아동보호시스템의 즉각적인 연계	아동친화적인 접근실 확대 및 아동의 부모 면접권 보장	수용자 가족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법무부		●	●
과제2. 아동보호체계 사각지대 아동 발굴 및 지원 확대 (신규)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실태조사	양육상황 점검 및 지속적 모니터링	부모 또는 원가정 지원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	●	●

과제명	추진일정			관련부처	제안배경		
	1단계	2단계	3단계		실태 분석	협약 이행	중요도 조사
V. 장애, 기초 보건과 복지							
과제1. 정신질환 아동 조기발견 및 치료 (신규)	주기적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실태조사 계획 수립	연 1회 대상 아동·청소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위험군 발견 시 치료연계	보건복지부 교육부	●	●	●
과제2. COVID-19로 인한 자살위험 감소 (신규)	아동·청소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위험군에 개입 실시	보건복지부 교육부	●	●	●
과제3. COVID-19로 인한 비만을 및 시력저하 등 신체적 건강 대응 체계 마련 (신규)	소아비만 및 시력 저하 예방계획 수립	교과과정 내 활동프로그램 확대 및 식단조절 급식 제공	초·중·고 전수 안과 검진 권고 및 전자기기 사용가이드 제공	보건복지부 교육부	●	●	
VI.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과제1.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육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한 '학부모협의회(가칭)' 운영(신규)	독일 사례 'Elternabend'의 벤치마킹	'학부모협의회(가칭)' 제도의 시범 운영 실시	관련 법·제도 마련	교육부 법무부	●	●	●
과제2.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후 교육과정 확대 차원의 '종일학교제'(가칭) 운영 (신규)	누리과정에서의 방과후 과정의 종일제 운영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종일학교제 운영	제도 도입과 관련 법 제정	교육부 법무부	●	●	●
VII. 특별보호조치							
과제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차별 예방 대책 마련 (보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차별금지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대상 차별문화 개선 및 보호 대책 마련	시행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	●	●
과제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을 감소 위한 대책 마련 (신규)	탈북청소년 학업중단을 감소와 관련된 정책적 문제점 진단 및 고도화 추진	탈북학생 학업중단을 감소 위한 지원교사 확충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시행	교육부 통일부	●	●	●

2)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주요내용

(1) 일반이행 조치

I-1. 협약 제40조제2항(b)(v) 상소권 관련 유보조항 철회	
제안배경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정부는 1989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면서 3개의 조항을 유보함. 제9조 제3항(면접교섭권), 제21조 가항(입양허가제), 제40조 제2항(b)(v)(상소권 보장) 등이 그것임. 이후 법·제도 개선을 통해 면접교섭권(2008년)과 입양허가제(2017년) 조항은 유보 철회하였으나 상소권 조항은 아직 유보조항으로 남아 있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유보철회 권고를 받음(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 6). ○ 정부는 2017년 제출한 제5·6차 국가보고서를 통해 상소권 조항 유보철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대한민국정부, 2017: para 4),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아동권리협약 취지에 따라 유보철회 노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보건복지부, 2019.9). ○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상소권 관련 유보조항을 철회하고 온전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을 이루도록 함.
세부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협약 제40조제2항(b)(v)(상소권 보장) 유보철회 논의 확산 및 의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은 헌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상소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헌법 제110조 제4항에 따라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 대해서는 단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군사법원법은 비상계엄 하에서 사형을 제외한 일정 범죄에 대해 단심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19.9). 그러나 아동권리협약 이념에 따라 아동을 단심제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일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입법 관계자 인식 제고를 위한 논의의 장 마련 ② 군사법원법 등 관련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상소권 유보조항 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8월 4일 발의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상계엄상황이라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상소권을 보장하도록 제534조 상소권 제한 예외 단서 중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을 '사형을 선고한 경우 또는 판결 선고 시 피고인이 18세 미만인 경우에는'으로 개정하고자 함(백혜련의원실, 2020.8.4.). 개정법률안 통과를 통해 상소권 유보조항 철회 추진
법개정 등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법원법 제534조 개정
관련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보건복지부

I -2. 아동예산 산출기준 마련 및 아동친화예산 확대

제안배경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GDP 대비 아동·가족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2015년 기준 1.2%로 OECD 평균(2.0%) 대비 낮은 수준임(대한민국정부, 2019: para.6). 본 연구 III장 2절에서 '나라살림예산'을 통해 관련부처 예산을 합산하여 살펴보는 2020년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 비율은 3.6%로 나타남. 국가 예산에서 아동·청소년 예산의 범위와 산출식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어 보다 엄밀한 아동예산 산출방식 논의와 관리가 필요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5·6차 권고를 통해 아동예산 증가,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 격차 감소, 취약한 상황의 아동예산 할당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음(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para.10). 공공예산에 대한 일반논평 제19호(2016)는 국가 차원의 예산 절차 및 행정시스템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권리를 고려할 것, 아동권리영향평가 실시, 명확한 예산 분류체계를 통한 예산 모니터링 등을 제안하고 있음(국가인권위원회, 2020b: 480-513).
세부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아동예산 산출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에서 아동·청소년 예산 규모는 기획재정부 발간 '나라살림예산' 자료에서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사업 중 아동·청소년 대상 정책으로 판단되는 항목의 예산을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으나 사업항목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사업 항목명에서 아동·청소년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아동·청소년 예산을 엄밀히 분리하여 산정하기 어려움. - 국가 예산 전문가 포함 연구를 통해 아동예산 규모 산출식을 표준화하여 예산 규모 추이를 지속 관리 -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활용한 산출식 표준화 : 재정사업 속성 및 성과정보 DB 코드북의 사업기본정보에 '사업수혜대상' 정보를 포함하여(생애주기별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아동·청소년 예산 산출 시스템 구축 ② 아동친화예산제도 운영 및 아동예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친화예산서 작업 확산 및 정부 차원 지침 마련. 아동에 영향을 주는 사업들을 분리해내어 아동예산 규모를 파악하고 아동예산 확대 및 주류화 노력
법개정 등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의 원칙' 조항에 예산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 논의(아동친화예산) ※ 현재는 성인지 예산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관련 조항이 있음.
관련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II-1. 아동·청소년 사회참여 권리에 대한 인식 확산	
제안배경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해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서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이 1순위로 지적되며,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청소년 워크숍에서 청소년이 사회참여를 하는 것을 시민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혐오 표현을 하거나 청소년 참여를 대상화함으로써 성인들의 이권 다툼에 악용되기도 한다는 점을 보고함. ○ 아동·청소년은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가지는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 13, 15, 17, 18조에서도 명시하고 있음.
세부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아동·청소년 사회참여에 따른 권한 및 책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를 운영하여 이들의 의견 및 정책제안을 청취하는 것을 넘어서, 아동·청소년정책이나 사업 등을 진행할 때, 정책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이 해당 위원회에 일정 비율로 포함되도록 구성 - 각종 위원회에 아동·청소년의 참여 시 발언권 보장 ② 아동·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자료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참여권에 대해 생애주기별, 대상별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 시민의 한 일원으로서 아동·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관심과 기울이고 그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받아야 할 권리임을 명시 - 아동·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혐오 표현, 대상화 금지에 대한 내용 구성 ③ 아동·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참여권에 대해 개발된 교육자료를 카드뉴스 및 영상 등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물을 통해 교사, 학부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법개정 등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별 조례 중 위원회 구성에 아동·청소년 참여 비율을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
관련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교육부(민주시민교육과)

II-2. 아동·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

제안배경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기기의 보편화와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의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학습 및 사회적 교류 및 소통, 놀이 등 일상의 많은 영역을 디지털 매체를 통해 활용하고 가운데,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로부터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선별·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며 표현·소통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5호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 보호, 실현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 제정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0조에서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
세부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육과정 내 미디어 리터러시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교육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핵심 역량으로 설정함으로써 정규 교육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정 필요 - 교과목으로서 '미디어 리터러시' 개설 또는 각 교과마다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포함할 수 있는 교육과정안 마련 ② 연령별, 영역별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료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동·청소년 연령 및 교급별, 미디어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주제영역별 교육자료 개발 필요 ③ 초·중등학교별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학교 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교육 전문 강사 및 관련 기자재 등 지원 - 교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 지원
법개정 등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개정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개설 필요
관련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민주시민교육과),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

(3) 폭력 및 학대

Ⅲ-1. 교사의 체벌 근절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제안배경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결과에서 학교에서 교사로부터의 체벌과 같은 신체적 폭력은 법령으로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응답 학생의 3.1%가 아직도 피해를 겪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 ○ 가정 내 부모의 체벌의 빌미가 되었던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규정이 2021년 1월 마침내 삭제되었으나 아직도 체벌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011년 개정되어 체벌 방지 조항이 있음에도 학교에서의 체벌은 직간접적으로 지속되고 있음. ○ 인권의 교육현장인 학교에서의 체벌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체벌금지 조항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세부과제	<p>① 교사의 체벌 금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2011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⑧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로 정하고 있음. - 위의 조항의 주어가 학교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다수 학교에서의 체벌은 교원으로부터 있게 되므로 실명 책임의 원칙에 의해 체벌 책임의 주체를 교원으로 하여야 함. - 따라서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의 자구도 의미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⑧항을 “학교의 교원은 학생을 지도할 때에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어떠한 방법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로 개정되어 강한 구속 조항으로 바뀌어야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음. <p>② 공청회와 일정 기간 계도 기간 후 개정법령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체벌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보편적 인권 인식을 아직 모든 교원이 가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도하고 부당한 교사의 교육권은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고, 공청회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이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될 때까지 개정 법령에 대한 일정 기간 계도 시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p>③ 징계의 절차와 방법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벌한 교원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에 개정 법령에 따른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①항과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에 의거하여 시행함. - 징계의 수위는 형사사건이 아닌 경우 「국가공무원법」의 제1조의 2(정의)에서 정하고 있는 “경징계”로 한함.
법개정 등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자 간 소통이 필요함.
관련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법무부

III-2.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화 및 지자체 간 격차 해소

<p>제안배경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는 시행 후 1년이 지났음에도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상황이며 내년 10월이나 배치가 완료될 예정이며 이는 지역 간 예산과 인적자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 ○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임에도 일반 인사이동에 따라 배치하기 때문에 아동보호팀에 배치되는 것은 알지도 못하는 업무를 과중하게 처리하는 일이 되어버리며 그에 대한 피해는 학대 피해아동에게 전달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p>세부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중앙부처 편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에 아동보호전담팀을 두고 중앙에서 지역 사무소에 인력을 모집 및 배치하도록 하여 지역 간 자원 불균형 현상을 해소 - 중앙부처에서 전담공무원 신규채용 및 일원화된 훈련 및 교육을 담당하여 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② 지역 사무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역에 학대전담경찰관, 학대 피해아동쉼터가 인접한 위치에 사무소 개설 - 지역 평균 아동학대 발생 건수를 고려하여 적정수의 직원 배치 ③ 지역사회 아동보호 네트워크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전담공무원, 학대전담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아동보호 네트워크 형성 ④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에 전문성 있는 인재 신규 채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으로 신규 채용 시 관련 업무에 대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을 늘리고 인사배치 인력을 축소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구성
<p>법개정 등 특이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p>
<p>관련부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III-3. 양육상담 시스템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p>제안배경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정부 정책의 대부분은 아동학대 발생 이후 대응에 초점에 맞춰져 있으며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은 쉽게 찾아볼 수 없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5, 6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으로(para. 27)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거론하고 있음. ○ 전수조사, 인식변환 캠페인 외에도 가해자의 학대 가능성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음.
<p>세부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4시간 양육상담 시스템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상담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상담을 받는데 최소 2일~5일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육아과정에서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 등으로 즉시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 종종 발생함. - 따라서 즉각적으로 양육자가 현재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화 또는 실시간 온라인 상담채널 개설이 필요함. ② 육아상담 전문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우울증, 육아 스트레스 등 육아과정에서 양육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위험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전문 상담원 육성 및 배치 ③ 상담전화를 위한 아동학대 위험성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상담원의 상담 진행을 통해 학대의 위험성이 모니터링 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연계 또는 학대신고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효과가 향상될 수 있음.
<p>법개정 등 특이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p>
<p>관련부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III-4.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확대 및 대상자 유형별 대응

<p>제안배경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시행된 즉각분리제도는 현재까지 일평균 1.1건의 사례가 발생학 있으며 향후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즉각분리된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적절하지 않으며 피해아동쉼터가 증축되고 있으나 전국 배치에는 시간이 필요함. ○ 또한 피해아동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영아, 장애아동, 이주배경아동 등의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para. 27)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 학대 피해아동쉼터는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의 쉼터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p>세부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양한 유형별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 청소년이 경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에서 학대발생률은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주배경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계획 수립 - 장애아동 역시 비장애아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학대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애 아동의 즉각분리 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인력, 시설 등을 고려하여 보호계획 수립 - 영아 및 유아 학대 피해자가 보호자와 분리되어야 할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할 인력과 장비들을 고려하여 보호계획 수립 ② 학대 피해아동쉼터 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한 아동이 생활하던 생활반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역사회 내에 쉼터를 개소하며, 동시에 외부로부터의 보안을 위하여 경찰서 또는 지구대 인접한 장소에 개소 ③ 쉼터 근무자 교육, 훈련 및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각의 아동에 대하여 별도의 인원을 배치하기는 힘든 여건이기 때문에 영유아, 장애아동,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 등에 대한 기초교육 실시 - 지역사회 내 이주배경, 장애아동, 영유아 등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인력을 보유한 기관과의 연계
<p>법개정 등 특이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p>
<p>관련부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IV-1.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강화⁴⁸⁾	
제안배경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은 가정환경에서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수용자 자녀의 경우 부모로부터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여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움. 또한, 부모가 체포·수감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강제로 분리되면서 정서적·심리적인 위기를 경험할 수 있음. ○ 2018년 법무부의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의하면,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는 총 21,765명이었고, 이 중 홀로 방치되어 생활하는 자녀의 수는 1,209명으로 보고됨.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최종권고 E.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에서 수용자 자녀와 접견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부모와 함께 교도소에 머무는 아동을 위한 교육과 건강 등을 포함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권고하였음.
세부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용자 자녀에 대한 정기적·공식적인 실태조사 및 아동보호시스템으로의 즉각적인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수감된 후, 자녀에 대한 정보 및 양육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경찰 및 법무부, 아동보호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부모가 수감된 후, 국가아동학대 DB와 지자체 아동보호팀에 즉시 연계 방안 마련 ② 아동친화적인 접견실 확대 및 아동의 부모면접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감된 부모와 자녀가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아동친화적인 접견실 확대 - 아동의 관점에서 면접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접견 절차와 운영 방법 개선 ③ 수용자 가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부재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고립과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수용자 자녀와 이들의 가족을 위해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여 각종 지원 서비스 제공
법 개정 등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1조(접견) 3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 고려 ○ 어린이집과 유사한 설계 구조로 만든 아동친화형 가족 접견실 설치를 남녀 수용자 구분없이 모든 수용시설에 설치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선택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개정
관련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인권국(여성아동인권과), 교정본부(사회복귀과, 보안과)

48)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성과 모니터링 및 과제 도출을 위한 학계 전문가 워크숍’에서 제안된 류정희(2021)와 전경숙(2021)의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함.

IV-2. 아동보호체계 사각지대 아동 발굴 및 지원 확대⁴⁹⁾

<p>제안배경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는 2019년 4,047명, 2020년 4,120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는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탈시설화하여 가정형 보호로의 아동보호 정책 방향을 기조로 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설 중심의 아동보호가 주를 이루고 있음. ○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 지자체에 아동보호팀이 설치되었고, 보호대상아동의 양육 환경 및 상태 점검을 위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배치되는 등 아동보호의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그러나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아 영유아 및 아동의 양육 환경 및 조건 등이 적절하지 면밀하게 파악할 수 없음. 최근에 한 종교시설에서 불법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영유아를 학대해 온 정황이 드러나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의 실태 및 현황에 대한 파악과 그에 대한 지원 방안이 요구됨.
<p>세부과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2004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미신고 복지시설 현황 조사 이후 전무하므로, 전수조사를 통해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현황 및 종사자 정보, 보호되고 있는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정보 등을 파악해야 함. ②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되는 영유아 및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및 지속적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영유아와 아동들의 양육 환경 및 안전성, 종사자 등에 대한 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③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에 아동을 의뢰하는 부모(보호자) 또는 원가정 지원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부모(보호자) 또는 원가정의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24시간 돌봄, 틈새 돌봄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 제공을 통해 공적 체계에서의 돌봄 및 보호서비스 연계(공적인 돌봄 및 보호 체계로 편입) - 해당 부모(보호자) 또는 원가정을 위해 지역사회 내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방안 마련
<p>법 개정 등 특이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법」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에서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점검에 대한 내용 명시
<p>관련부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과)

49)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성과 모니터링 및 과제 도출을 위한 학계 전문가 워크숍’에서 제안된 류정희(2021)의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함.

(5) 장애, 기초보건과 복지

V-1. 정신질환 아동 조기발견 및 치료	
제안배경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기는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시기이며, 동시에 정신 장애 발병률이(23.2%) 높은 시기이기도 함(국가인권위원회, 2019).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자살률과도 연관이 있는 중요한 문제임. ○ 하지만 조기발견이 쉽지 않고 발견이 되어도 정밀검진과 치료까지 연계되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국가인권위원회, 2019). ○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한 정기적인 전수검사와 치료연계 시스템이 권고사항으로 채택됨(국가인권위원회, 2019).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아동의 자살과 관련하여 아동의 정신적 웰빙 향상을 위해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para. 38).
세부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육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대상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는 학생 정서·행동 발달상 문제 조기발견을 위해 「학교보건법」 제2조와 제7조 「학교건강검사규칙」에 근거,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진행하고 있음(박진우, 허민숙, 2021.5.11.). - 검사 대상은 초1, 초4, 중1, 고1로 있어 검사 주기가 3년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심리적으로 예민하고 변화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정신장애의 조기발견이 목적이려면 검사주기를 단축하여 정밀하게 추적관찰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② 고위험군 대상 치료 및 재활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기준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 가능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총 4곳(전국 241개소 중)이며 정신재활시설은 13곳(전국 349개소 중)에 불과함. - 최소 거점 센터로서 17개 시·도 마다 1개소 씩 설치 ③ 학교 밖 청소년의 검사대상 포함을 위한 부처 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검사 특성 상 학교에 재학하여 등교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참여 가능함. - 일시 또는 장기적으로 학교를 떠나있는 청소년의 경우 정신건강에 있어 더욱 취약한 대상일 수 있지만 검사를 대부분 검사를 받지 못하거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검사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괄하고 꿈드림센터 또는 쉼터, 기타 보호시설에서도 정신건강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협력 할 필요성이 있음.
법 개정 등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내역에 정신건강 영역 포함
관련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V-2. COVID-19로 인한 자살위험 감소

<p>제안배경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본 연구 조사결과 한 번이라도 자살에 대해 생각해본 중·고등학생은 전체 대상자의 29.9%(중학생 29.7%, 고등학생 30.1%)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 비해 2.9% 상승한 수치임. ○ 연도별로 봤을 때, 2017년 33.4%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9년 27.0%까지 조사되었지만, 2021년 다시 평년 수치로의 회귀가 관찰되었음. ○ 정확한 인과관계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자살 생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높은 우울감과 낮은 자아존중감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COVID-19 장기화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신건강 검사와 별도로 자살과 관련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자살 위험군에 대한 스크리닝이 필요함.
<p>세부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초, 중, 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긴급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1, 초4, 중1, 고1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2020년 초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전수조사 실시 ② 검사결과 저, 중, 고 위험군 나누어 군별 개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자살 위험도에 따라 결과를 분석하고 학교 내 Wee클래스, 지원청 Wee센터, 정신보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병원 등 의뢰 ③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적 프로그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학년을 대상으로 COVID-19로 인해 높아진 우울감과 낮아진 자아존중감 등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문화 정서 프로그램 제공
<p>법 개정 등 특이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p>
<p>관련부처</p>	<p>교육부, 보건복지부</p>

V-3. COVID-19로 인한 비만을 및 시력저하 등 신체적 건강 대응체계 마련

<p>제안배경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전문병원의 조사결과 COVID-19로 인해 초등학생의 건강 수준이 급격히 하락하였음이 확인되었음. ○ 근시 유병률이 저학년의 경우 2019년까지 26~27%를 유지해오다 2021년 38%로 상승하였으며, 고학년의 경우 2019년까지 45~48%를 유지해오다 2021년 63%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이는 온라인 수업 시 사용한 전자기기 장시간 사용의 결과로 보여짐. ○ 비만율은 2019년 28.1%에서 2021년 16% 상승하여 44%의 유병률을 보였으며 이는 COVID-19로 인해 야외활동이 감소하며 나타난 결과로 해석함. ○ 비만율과 시력저하를 포함한 건강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음.
<p>세부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과과정 내 활동프로그램 한시적 확대 및 신체건강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집 접촉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선에서 활동프로그램 확대 배정 - 야외활동이 필요한 과제 배포 - 점심시간 식단조절 메뉴 급식제공 - 방과후 아카데미 또는 방과후 돌봄 등에서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선정 ② 시력저하 예방 프로그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교생 대상으로 안과 검진 권유 및 적절한 조치 진행 - 휴대폰, 테블릿 등 전자기기 적정사용 교육 및 건강한 사용방법 안내
<p>법 개정 등 특이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p>
<p>관련부처</p>	<p>교육부</p>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IV-1.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육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한 '학부모협의회(가칭)' 운영	
제안배경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수업(blended learning)을 받게 되면서 교육의 플랫폼에 다양한 변화가 있게 되었음. ○ 부모들은 갑작스러운 교육 형태의 변화로 이에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많았고, 학생들은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큰 교육결손과 교육격차를 가져오게 되었음. ○ 코로나19 이전에도 학부모협의체 기구의 필요성이 있었지만, 새롭게 전개되는 교육 상황에 직면해서 이러한 변화에 따른 학부모들 간 교육 정보 공유와 제반 교육 개선을 위한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함.
세부과제	<p>① 독일 사례 'Elternabend'의 벤치마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ternabend(학부모의 저녁)'는 독일의 전통적인 학부모협의체로 학급 부모 대표를 선출하고, 학급의 제반 안건들에 관한 계획, 결정 과정에 함께 하며, 학부모의 권리 및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게 됨. - 독일 전국의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한 학년에 최소 2회 'Elternabend'가 학급 대표 학부모의 주도로 학부모와 교사를 초대하여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 8시 전후에 개최됨. - Elternabend는 교육자치 국가인 독일의 Hessen주의 「Hessen 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모델로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음. <p>② '학부모협의회(가칭)' 제도의 시범 운영 실시 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교육청의 '마을결합형 중점학교' 중 초등학교 26개교에서 2022년부터 학급별로 지역사회 연계 차원에서 한 학기동안 시범운영을 실시함. - '학부모협의회(가칭)' 시범운영이 잘되면 각 학급 '학부모협의회(가칭)' 대표들의 협의체 기구를 만들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도 선출하도록 함. <p>③ '학부모협의회(가칭)' 정착을 위한 법제도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협의회(가칭)'는 학부모협의체 성격으로 처음에는 제도로 시범 운영되다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함. - '학부모협의회(가칭)'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정보를 공유하여 학생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있음.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제도적으로 일정 기간 시범 운영 후 추후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관련부처	○ 교육부

IV-2.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후 교육과정 확대 차원의 '종일학교제'(가칭) 운영

<p>제안배경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결손은 더 커지고 교육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각 가구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져 맞벌이 가정이 필연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자녀들의 교육결손과 사교육비 지출은 많아지고 있는 비판적 교육 현실은 결국 출생률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가 됨. ○ 교육의 악순환 구조는 다시 국가경제 구조를 취약하게 만드는 악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교육격차도 해소하고 여성의 취업률을 높여 가정 경제와 자녀의 교육 지원을 건실하게 할 수 있는 종일학교제 운영을 도입함.
<p>세부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누리과정에서의 방과후 과정의 종일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국공립 누리과정의 학부모들은 자녀를 방과후 과정에 보내는 것이 쉽지 않거나 보낼 수 있더라도 근무시간과 맞지 않아 결국 직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 교육자치 시대에 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를 실례로 유치원의 9시 등교로 인해 맞벌이 부부를 위해 등교시킬 인력과 부모가 퇴근시간까지 돌봄 종일제 인력과 재원이 필요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국공립 누리과정 교사들의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고, 방과후 과정 돌봄 인력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종일제 운영 제도 도입이 필요함. ② 초·중등교육과정에서의 종일학교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과정에서는 교육격차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격차가 더 심화되어 교육의 양극화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수호하고 차별 없는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방과후학교 수업시간을 연장하는 차원의 종일학교제 도입이 필요함. - 특히, 초등교육과정은 위의 누리과정과 같은 맥락에서 교육격차로 인한 교육의 양극화도 해소하고, 가정과 국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종일학교제의 운영이 요청됨. - 종일학교제의 적용대상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우선권을 주고, 추가로 학부모가 원하는 자녀로 한정하여 따로 학급을 편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③ 제도 도입과 관련 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방과후학교가 학교장의 자율적인 교육활동 운영으로 되고 있으나 이 활동은 공교육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법제화가 필요함.
<p>법 개정 등 특이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p>
<p>관련부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7) 특별보호조치50)

Ⅶ-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차별 예방 대책 마련	
제안배경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회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의 차별 경험은 2018년 기준 9.2%로 나타나고 있어서 차별 경험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함께 한국의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 및 관행적 장벽을 없앨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임(공헌, 2021; 김진, 2021). ○ 최근 20대 국회에서는 그동안 발의되지 않았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거듭된 의견표명이 있는 등 국기기관 단위에서의 인련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하지만 여전히 차별금지법 제정이 국회에 계류중이니 상황임. 그리고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차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대중 캠페인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시행된 바 없어서 실질적인 차별문화 개선과 보호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공헌, 2021; 구정화, 2021; 김희진, 2021; 김사강, 2021.9., 전문가 의견조사).
세부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차별금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차별금지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차별금지와 관련된 업무추진 정부전담부처 지정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차별금지를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계획 수립 ②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차별문화 개선 및 보호대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차별에 대한 익명신고센터 운영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차별에 대한 구제·시정절차 및 대응시스템 마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차별 관행과 차별문화 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국민 캠페인 강화
법개정 등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대상 차별금지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연계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대상 차별금지 조항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관련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50)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성과 모니터링 및 과제 도출을 위한 학계·현장 전문가 워크숍’에서 제안된 의견(공헌, 2021; 구정화, 2021; 김진, 2021; 김희진, 2021)과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이행사항 진전노력 정도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제시된 내용을 참고한 것임.

Ⅶ-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p>제안배경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지수 외(2021)에 따르면 국내입국 북한이탈 주민의 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이들의 자녀인 탈북 청소년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탈북 청소년은 가정의 경제적 빈곤, 부모의 직업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와 돌봄,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입국초기 교우관계 형성과 학교적응과정에서의 부적응 문제가 발생되고 하며, 교육제도, 학교문화, 교육내용, 학습용어 등의 차이로 인해 학교 교육 및 교과학습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부터 교육부에서는 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에 대한 교육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탈북학생 진로·직업교육, 탈북학생 교육지원기반구축 등)을 추진해오고 있음. 그리고 통일부에서는 학교밖 탈북청소년교육지원 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김지수 외, 2021).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은 2.9%이며, 이 수치는 1%대인 일반학생 평균 학업중단율에 비해서도 2.9배 높은 수치임. 따라서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p>세부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탈북학생 대상 학업중단율 감소와 관련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을 통한 학업중단 감소대책의 고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유형별 탈북학생 대상 학업중단의 특성과 문제점 정밀 진단 - 탈북학생 대상 학업중단율 감소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들에 대한 정밀진단 및 평가 실시 - 탈북학생 대상 학업중단율 감소를 위한 종합대책 리모델링 및 개인맞춤형 중심·성과중심 정책으로의 고도화 추진 ② 탈북학생대상 학업중단율 감소를 위한 지원교사 확충 및 인센티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차원의 탈북학생 지원 전국 교사 연수 개최 - 탈북학생 멘토링 참여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수당 등) - 탈북학생의 생활 전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컨설턴트 배치
<p>법개정 등 특이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학생 대상 교사멘토링의 경우 지역교육청에 따라 교사들에게 멘토링 수당이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음. 기본업무 활동의 연장이기 때문에 수당지급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 수 있지만, 탈북학생은 모든 교사들이 지도하는 것이 아니며, 교사의 헌신적인 참여 없이는 성과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멘토링 수당이 멘토링 예산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p>관련부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통일부

○————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가톨릭뉴스 (2020.10.28.). **미등록 이주 아동 청소년,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20>
에서 2021년 9월 15일 인출.
- 강미정 (2021).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른 협약이행 과제 검토
결과-시민적 권리와 자유, 아동에 대한 폭력,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 전문가 워크숍(미간행 내부자료), 23-34.
- 강선우 (2021). 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논하다 토론
회 축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토론회 자료집: 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
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논하다 토론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2018 의료급여통계**. 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2019 의료급여통계**. 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
건강보험공단.
- 경찰청 (2017). **2017 경찰범죄통계**. [https://www.police.go.kr/www/open/
public/public03_2017.jsp](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3_2017.jsp)에서 2020년 11월 26일 인출.
- 경찰청 (2018). **2018 경찰범죄통계**. [https://www.police.go.kr/www/open/
public/public03_2018.jsp](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3_2018.jsp)에서 2020년 11월 26일 인출.
- 경찰청 (2019). **2019 경찰범죄통계**. <https://www.police.go.kr/www/open/>

publice/public03_2019.jsp에서 2020년 11월 26일 인출.

경찰청 (2020). **2020 경찰범죄통계**.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03_2020.jsp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경향신문 (2021.5.19.). ‘[단독]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1년새 비인가 대안학교 55.3%,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전환’.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5190959011>에서 2021년 9월 19일 인출.

고용노동부 (2017.5). 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http://laborstat.moel.go.kr/lsm/bbs/selectBbsDetail.do>에서 2020년 11월 7일 인출.

고용노동부 (2018.4). 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http://laborstat.moel.go.kr/lsm/bbs/selectBbsDetail.do>에서 2020년 11월 7일 인출.

고용노동부 (2019.4). 2018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http://laborstat.moel.go.kr/lsm/bbs/selectBbsDetail.do>에서 2020년 11월 7일 인출.

고용노동부 (2020.4). 2019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http://laborstat.moel.go.kr/lsm/bbs/selectBbsDetail.do>에서 2020년 11월 7일 인출.

고용노동부 (2021.5.). 2020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http://laborstat.moel.go.kr/lsm/bbs/selectBbsDetail.do>에서 2021년 9월 2일 인출.

공현 (2021).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른 협약이행 과제 검토 결과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유엔아동권리 협약이행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 전문가 워크숍(미간행 내부자료),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a).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b).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a).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b).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

- 계표.**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a).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b).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연구보고 NIA VIII-RSE-C-20017).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a).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연구보고 NIA VIII-RSE-C-20064).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b).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연구보고 NIA VIII-RSE-C-20064).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관계부처 합동 (2020.9.28.).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 방안. <http://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28919>에서 2021년 10월 8일 인출.
- 관계부처 합동 (2019.5.23.).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합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878>에서 2021년 8월 24일 인출.
- 교육부 (2017a). **2016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boardSeq=70367&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302&opType=N>에서 2019년 8월 12일 인출.
- 교육부 (2017b).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7.2.22). **보도자료: 2016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C&s=moe&m=02&opType=N&boardSeq=70517>에서 2019년 7월 2일 인출.

- 교육부 (2018a). **2017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boardSeq=74098&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302&opType=N>에서 2019년 8월 12일 인출.
- 교육부 (2018b). **201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8c). **2018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boardSeq=7630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2&opType=N>에서 2019년 8월 12일 인출.
- 교육부 (2018.3.15). **보도자료: 2017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3503&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19년 7월 2일 인출.
- 교육부 (2019a). **2019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boardSeq=78990&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302&opType=N> 2020년 11월 26일 인출.
- 교육부 (2019b). **201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9.2).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9.3.26). **보도자료: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714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19년 8월 12일 인출.
- 교육부 (2019.6.12.). **보도자료: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사업 본격 추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7774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11&s=moe&m=020402&opType=N>에서 2021년 10월 4일 인출.

- 교육부 (2020). **202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20.2).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20.4.12.). **설명자료: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근본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5&boardSeq=8029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8&s=moe&m=020401&opType=N>에서 2021년 9월 19일 인출.
- 교육부 (2020.7.23.). **보도자료: 2019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opType=N&boardSeq=81310>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 교육부 (2020.7.29.). **보도자료: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020>에서 2021년 8월 24일 인출.
- 교육부 (2021a). **2021 특수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21b). **2021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21c).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21.2.17.). **보도자료: 2025년, 포용과 성장의 고교 교육 구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8359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31&s=moe&m=020402&opType=N>에서 2021년 9월 22일 인출.
- 교육부 (2021.2.3.). **보도자료: 디지털·친환경에 교수학습 혁신을 더한 '교육 대전환'-한국판 뉴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8345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33&s=moe&m=020402&opType=N>에서 2021년 10월 4일 인출.

교육부 (2021.3.9.). **보도자료: 2020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주요 특징 및 대응방안.**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8375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29&s=moe&m=020402&opType=N>에서 2021년 9월 2일 인출.

교육부 (2021.5.6.). **보도자료: '2020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백서 발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8433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교육부 (2021.6.1.). **보도자료: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8459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교육부 (2021.7.28.). **보도자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심리·사회성 결손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4&opType=N&boardSeq=85130>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교육부 (2021.8.26.). **2021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823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1년 9월 16일 인출.

교육부 (2021.8.27.). **보도자료: 범부처[기관] 협업으로 모든 국민을 위한 사이버 폭력 예방 홍보 자료 제작·보급.**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8825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6&s=moe&m=020402&opType=N>에서 2021년 9월 19일 인출.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세종: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세종: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세종: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제15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세종: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20). **제16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세종: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2016 간추린 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2017 간추린 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 **2018 간추린 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9). **2019 간추린 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9). **2017-2019 교육통계연보(유초중등통계)**. https://kess.kedi.re.kr/publ/publFile?survSeq=2019&menuSeq=3894&publSeq=2&menuCd=80628&menuId=1_8_68&itemCode=02&language=en에서 2020년 10월 6일 인출.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0a). **2020 간추린 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0b). **2020 교육통계연보**. <https://kess.kedi.re.kr/publ/view;jsessionid=zhww4IaJntHdCaVAgqwKVPm54Tru49XUCJJXeg5knLIJQslzpySA5eZsYLvixwq?survSeq=2020&publSeq=2&menuSeq=3894&itemCode=02&language=en>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0c). **직업계고 취업통계**. <https://kess.kedi.re.kr/stats/intro?menuCd=0112&survSeq=2020&itemCode=01#>에서 2021년 8월 11일 인출.

구정화 (2021).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성과 모니터링 및 과제 도출 결과-아동에 대한 폭력,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유엔 아동권리협약이행 성과 모니터링 및 과제 도출을 위한 학계 전문가 워크숍(미간행 내부자료), 13-15.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20.6.25.). 보도자료: **정세균 국무총리, 제9차 목요대화 개최**. <https://www.opm.go.kr/opm/thursday/report.do?mode=view&articleNo=127551&srYear=2020&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Month=06>에서 2020년 11월 10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2018). **2018년 소년분류심사원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9).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문: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19.8.1.). **보도자료: 인권위, 소년분류심사원 방문조사 후 제도개선 권고**.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searchselect=boardtitle&searchword=%EC%86%8C%EB%85%84%EB%B6%84%EB%A5%98%EC%8B%AC%EC%82%AC%EC%9B%90&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4363>에서 2021년 8월 24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2020a). **2020 아동인권 정책 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0b).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0.5.6.). **보도자료: 인권위,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 자격 부여제도 마련해야, 법무부장관에게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제도마련 권고**.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28&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id=7604363>

dtypeid=24&boardid=7605380에서 2021년 9월 22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2020.5.16.). 익명결정문(20진정0160800, 중학교 전학 시 교육청의 개인정보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2020.8.4.). **보도자료: 인권위-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혐오표현 인식 개선 적극나서.**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23&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5733>에서 2021년 9월 22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2020.9.22.). 익명결정문(20진0041600,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의한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2021.4.29.). 익명결정문(20진정0909000, 중학교 학생자치회 선거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2021.5.). **2020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1.6.30.). **보도자료: 「인권정책기본법」 인권위와 법무부 공동으로 입법추진.**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7&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6779>에서 2021년 9월 19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2021.7.). **2020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아동인권센터 (2020.10.8.) “한글 속 아동인권 찾기”. https://www.instagram.com/p/CGEfoTApu9F/?utm_source=ig_web_copy_link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기획재정부 (2017-2020). **나라살림예산.** 세종: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021). **나라살림 예산개요.** 세종: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2014). **복권기금운용계획.** <http://www.bokgwon.go.kr/post/postView.do?boardSeq=2&category=&pageNum=6&seq=66>에서 2019년 8월 8일 인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2015). **복권기금운용계획.** <http://www.bokgwon>.

- go.kr/post/postView.do?boardSeq=2&category=&pageNum=5&seq=75
에서 2019년 8월 8일 인출.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2017). **기금사업활동**. http://www.bokgwon.go.kr/fund/02_01_17.jsp에서 2019년 8월 9일 인출.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2018). **기금사업활동**. http://www.bokgwon.go.kr/fund/02_01_18.jsp에서 2019년 8월 9일 인출.
- 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 (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V: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4-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선숙, 김세원, 박호준, 김성희, 문영원 (2021).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설문조사 보고서**.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 김영지, 김경준 (2013).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지, 김정주, 정은주 (201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관리체계 개선 및 2015년 사업효과·만족도 조사연구**.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V: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5-R1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지, 유설희, 이민희, 김진호 (2016).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VI: 총괄 보고서**(연구보고 16-R-1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김진호 (2017).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연구보고 17-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김진호 (2019).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연구보고 19-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지, 황세영, 최홍일, 이민희, 김진호 (2020).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보고 20-R1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수, 안경식, 윤현희, 정재훈, 주승아, 함희재, 박진아, 김지나, 박사무엘, 안우림 (2021). **2020년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 12차년도 결과보고서** (기술보고 TR 2021-08).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김진애 국회의원 (2020.10.19.). **보도자료: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 구속률 급감**.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kspace406&logNo=222119760258&parentCategoryNo=&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List> 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김진 (2021).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른 협약이행 과제 검토 결과-(이주아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 전문가 워크숍(미간행 내부자료), 34-38.

김현미, 강슬기, 김사강, 박임효, 박정형, 이상국, 백지원 (2020). **국내거주 난민아동의 교육권 실태 연구**. 서울: 세이브더칠드런.

김희진 (2019).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 협약이행 제5·6차 심의 과정을 바탕으로. **공익과 인권**, 19, 319-349.

김희진 (2021).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른 협약이행 과제 검토 결과-일반이행조치, 일반원칙, 특별보호조치(소년사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 전문가 워크숍(미간행 내부자료), 15-20.

김희진, 임희진, 정윤미 (2020).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20**(연구보고 20-R5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뉴스시스 (2020.12.30.). **우범소년 규정 없애라..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 권고**.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30_0001289066&cID=10201&pID=10200에서 2021년 8월 24일 인출.

달빛 어린이병원 홈페이지. <https://www.e-gen.or.kr/moonlight/main.do?jsessionid=E637543A5301B29307DE6C3234DB57F8.egenlb?infoDiv=03>

- 에서 2021년 10월 12일 인출.
- 대검찰청 (2018.10). **2018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 대검찰청 (2019.10). **2019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 대검찰청 (2020.10). **2020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 대검찰청 형사4과 (2021.8.26.). 내부자료: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참고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7).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세종: 대한민국정부.
- 대한민국정부 (2019).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서**. 세종: 대한민국정부.
- 동아일보 (2019.6.2.) “간접흡연 못막는 거리... 보행흡연 특단의 대책 나올까.”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0602/95804934/1>에서 2021년 9월 30일 인출.
- 류연구, 백승호 (2011). 복지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한국아동복지학**, (36), 65-99.
- 류정희 (2021).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성과 모니터링 및 과제 도출 결과-아동에 대한 폭력,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성과 모니터링 및 과제 도출을 위한 학계 전문가 워크숍(미간행 내부자료), 9-12.
-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 김지민, 송현중, 유민상, 이봉주 (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매일신문 (2021.8.24.) “**있지만 없는 아이들의 건강권**.” <http://news.imaeil.com/page/view/2021082410115053650>에서 2021년 9월 14일 인출.
- 문진수 (2021). 희귀질환 지정 및 산정특례 적용 한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토론회 자료집: 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논하다 토론회**. 15-28.
- 문화일보 (2020.5.25.). ‘사회발전 퇴보 가르는 핵심은 공정성... 그 중심엔 교육의

- 공정성'.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52501031442000001>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 문화체육관광부 (2018). **2018년도(20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9a).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9b). **2019년도(2018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20a).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20b).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20c). 2020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453&pDataCD=0417000000&pType=에서 2021년 9월 14일 인출.
- 문화체육관광부 (2020d). **2020년도('19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20e).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e-나라지표 웹사이트 https://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751&board_cd=INDX_001에서 2021년 9월 14일 인출.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박영실, 이영미, 김석호, 차은지 (2017).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과 통계의 역할. **조사연구**, 18(3), 77-96.
- 박영실, 홍현정, 진유강, 윤민희, 이은경 (2021).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 박완주 의원실 (2021). **우범소년 폐지 필요성 토론회 자료집**. 서울: 박완주 의원실.
- 박진우, 허민숙 (2021.5.11.). **NARS 현안분석: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지원제도 및 개선방향.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방송통신위원회 (2021.1.18.).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https://www.kcc.go.kr/user.do;jsessionid=Pj9q4_P67NX66JicOor6oFOIpfMdHg4T9XmInmaS.servlet-aihgcldhome20?mode=view&page=A02030700&dc=&boardId=1099&cp=1&searchKey=ALL&searchVal=%EB%B0%A9%EC%86%A1%EC%B6%9C%EC%97%B0+%EC%95%84%EB%8F%99%C2%B7%EC%B2%AD%EC%86%8C%EB%85%84%EC%9D%98+%EA%B6%8C%EC%9D%B5%EB%B3%B4%ED%98%B8%EB%A5%BC+%EC%9C%84%ED%95%9C+%ED%91%9C%EC%A4%80%EC%A0%9C%EC%9E%91+%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boardSeq=50391에서 2021년 10월 8일 인출.

배화옥, 김미숙, 이은주 (2021). **아동복지론**. 서울: 신정.

백혜련의원실 (2020.8.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71).

법률방송뉴스 (2020.6.10.). **부모의 체벌 법으로 금지한다, 법무부 민법 개정 ‘징계권’ 삭제**.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8658>에서 2021년 8월 25일 인출.

법무부 (2015.3.24.). **이주아동 외면하는 다문화 한국사회 제하 보도 관련**.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02/subview.do;jsessionid=KHG7ex-BEJygEVtN4H5SKT-EfKNKgpHbTePnmW2q.wizard-10-srmbb?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TQlMkYzMTQ3MjklMkZhcncRjbFZpZXcuZG8lM0Y%3D>에서 2021년 9월 23일 인출.

법무부 (2015.1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서울: 법무부.

법무부 (2019.7.16.). **교정시설에서도 엄마, 아빠를 반갑게 만나요**. 법무부, 아동

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
dNaW5lJTNEZmFsc2UIMjZwYWdl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
JTNEJTI2c3JjaENvbHVtbiUzRCUyNnNyY2hXcmQlM0QlMjY%3D에서 2
021년 9월 19일 인출.

법무부 (2021.4.19.). **보도자료: “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
자격 부여”**.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jsessionid=J9oRuJ0PvZhTSJctBFRcolyifoYtypR1c9iIQO7V.wizard-10-cqjmb?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Q2Njg5JTJGYXJ0Y2xWaWV3LmRvJTNG>에서 2021년 7월 12일 및 9월 19일 인출.

법무부 (2021.5.11.). **보도자료: 수용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 법무부가 지원합니
다 -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 전수조사 시행**. <https://www.moj.go.kr/bbs/corrections/40/547837/artclView.do>에서 2021년 9월 21일 인출.

법무부 (2021.6.2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
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4281?opYn=Y&lsNm=%EA%B0%80%EC%A1%B1%EA%B4%80%EA%B3%84&isOgYn=Y&edYdFmt=2021.+7.+26.&stYdFmt=2021.+1.+1.&btnType=1>에서 20
21년 7월 12일 인출.

법무부 (2021.7). **2021 교정통계연보**. 경기: 법무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2021.8.26.). 내부자료: 소년보호사건 국선
보조인 조력 횟수 참고자료, 소년보호시설 정원 대비 수용 현황 참고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2021.8.26.). 내부자료: 이주아동 구금
현황 참고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경기: 법
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법무연수원 (2021). **2020 범죄백서**. 충북: 법무연수원.

법원행정처 (2020). **2020 사법연감**. 서울: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2021). **2021 사법연감**. 서울: 법원행정처.
- 법제처 (2021).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민법」의 제정·개정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에서 2021년 10월 4일 인출.
- 법제처 (20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에서 2021년 9월 2일 인출.
- 법제처 (20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에서 2021년 9월 2일 인출.
- 법제처 (2021).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에서 2021년 9월 2일 인출.
- 법제처 (2021). 「지능정보화기본법지능정보화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에서 2021년 9월 10일 인출.
- 법제처 (202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에서 2021년 10월 4일 인출.
- 베이비뉴스 (2021.3.26.).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62번째로 '아동 체벌 금지' 국가 됐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994>에서 2021년 7월 12일 인출.
- 베이비뉴스 (2021.5.13.). “서초구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은 아동학대 사각지대”.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156>에서 2021년 7월 1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2~2019).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서울,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4.3.6.). **보도자료: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

_ID=0403&page=1&CONT_SEQ=298285&SEARCHKEY=TITLE&SEARCHVALUE=%BB%E7%C8%B8%BA%B9%C1%F6%BD%C3%BC%B3%20%C6%F2%B0%A1에서 2021년 10월 8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4). **보도자료: 365일 평일 밤 23~24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전국 8개소에서 시작.**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04463에서 2021년 10월 8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6).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계산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7a).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http://www.mohw.go.kr/react/gm/sgm0601vw.jsp?PAR_MENU_ID=13&MENU_ID=13에서 2017년 8월 28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7b).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계산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7c).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https://www.icareinfo.go.kr/NEW_USR_main.asp??=CENTERINFO/DATA/STAT_GUIDE/view&bbs_no=225&page=1&bbs_option_cd=&search_option=&search_value=에서 2017년 8월 28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7.2.15). **보도자료: 인권침해 발생 시설 좋은 평가 못 받는다.**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38434&SEARCHKEY=TITLE&SEARCHVALUE=에서 2017년 8월 3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8a).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http://www.mohw.go.kr/react/gm/sgm06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20601&page=4&CONT_SEQ=293130에서 2017년 8월 28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8b).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계산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8c). **2018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7.12.31.기준).**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

- &MENU_ID=0321&CONT_SEQ=345304&page=1에서 2019년 9월 17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8d). **보도자료: 2018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전시에 건립.**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
MENU_ID=0403&CONT_SEQ=345508](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5508)에서 2021년 10월 5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8.1.23.). 정부,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계획 마련·추진. [https:
//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940](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940)에서
2021년 9월 16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9a).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통계청 국가통계포
털(KOSIS)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
Id=DT_11714_N002&vw_cd=MT_ZTITLE&list_id=117_11714&seqNo=
&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
_ZTITLE](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2&vw_cd=MT_ZTITLE&list_id=117_1171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19년 8월 12일 검색.
- 보건복지부 (2019b).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http://www.
mohw.go.kr/react/gm/sgm0601ls.jsp?PAR_MENU_ID=13&MENU_ID=
13040201&page=5](http://www.mohw.go.kr/react/gm/sgm0601ls.jsp?PAR_MENU_ID=13&MENU_ID=13040201&page=5)에서 2019년 8월 12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9c).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https://www.icareinfo.
go.kr/info/research/researchList.do?menuNo=2001400](https://www.icareinfo.go.kr/info/research/researchList.do?menuNo=2001400)에서 2019년 8월
12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9d). **2019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8.12.31. 기준).**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에서 2020년 11월 26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9.9). 내부자료: 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 정부대
표단 자료집.
- 보건복지부 (2019.12.13.). **보도자료: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권리보장원 발전방안
을 모색하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
NU_ID=04&MENU_ID=0403&page=195&CONT_SEQ=351883](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95&CONT_SEQ=351883)에서 202

1년 9월 22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9.12.31.). **보도자료: 월 1일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 적용된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9321>에서 2021년 9월 23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0a).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2019년 12월 말 기준).**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0b).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https://www.mohw.go.kr/react/gm/sgm0704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01&page=1&CONT_SEQ=359087&PAR_CONT_SEQ=355890에서 2020년 11월 15일 검색.

보건복지부 (2020c). **2020 입양실무매뉴얼.**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0d). **2020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9.12.31.현재).**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59667에서 2021년 8월 25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0e).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https://www.mohw.go.kr/react/gm/sgm0704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0205&page=1&CONT_SEQ=356696&PAR_CONT_SEQ=355585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0f).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일반회계).** https://www.mohw.go.kr/react/gm/sgm0704ls.jsp?PAR_MENU_ID=13&MENU_ID=13040801&page=1&PAR_CONT_SEQ=355586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0g).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현황.**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401121&conn_path=I2에서 2021년 10월 12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0h).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i).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3.31.). **보도자료: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1,258개소) 평가 발표**.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3820에서 2021년 11월 16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0.5.21.).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보호율 높이기 위해 6대 과제 중점 추진**.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46&CONT_SEQ=354637에서 2021년 9월 22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0.6.25.). **보도자료: 놀이혁신 선도지역 사업 시작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33&CONT_SEQ=355137에서 2021년 9월 19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0.8.27.). **아동중심·아동권리 실현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6&CONT_SEQ=359208&SEARCH_KEY=TITLE&SEARCHVALUE=%EC%95%84%EB%8F%99에서 2021년 8월 30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1a).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계획서**.
- 보건복지부 (2021b). **2021 아동분야 사업안내 1**.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1c). **2021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1d).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https://www.mohw.go.kr/react/gm/sgm0704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0201&page=1&CONT_SEQ=363188&PAR_CONT_SEQ=355585에서 2021년 10월 9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1e).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일반회계)**.

https://www.mohw.go.kr/react/gm/sgm0704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01&page=1&CONT_SEQ=356688&PAR_CONT_SEQ=355586에서 2021년 10월 9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1f).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65716에서 2021년 8월 25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1g). 내부자료: 소아전용응급실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현황.

보건복지부 (2021h). **2021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1i).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outLink=Y&parentId=G.1;G_3.2;#content-group에서 2021년 10월 19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1.1.19.). **보도자료: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3158&page=1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1.1.19.). **보도자료: 현장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63158&SEARCHKEY=TITLE&SEARCHVALUE=%EC%95%84%EB%8F%99%ED%95%99%EB%8C%80에서 2021년 8월 25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1.3.11.). **보도자료: 자체-경찰 협업으로 아동학대 현장대응 강화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4028&SEARCHKEY=TITLE&SEARCHVALUE=%EC%95%84%EB%8F%99%ED%95%99%EB%8C%80에서 2021년 8월 25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1.5.31.). **보도자료: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 전사회가 함께**

- 노력하겠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891&SEARCHKEY=TITLE&SEARCHVALUE=%EC%95%84%EB%8F%99%ED%95%99%EB%8C%80에서 2021년 8월 25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1.5.6.). **보도자료: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 추진.**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5583에서 2021년 9월 3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1.6.16.). **보도자료: 아삭아삭, 푹쫂푹쫂 “건강한 돌봄놀이터” 코로나19 속에서도 아동 비만 예방에 효과.**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098에서 2021년 9월 23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1.8.19.). **보도자료: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 및 회복지원까지 촘촘히 보완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913&SEARCHKEY=TITLE&SEARCHVALUE=%EC%95%84%EB%8F%99%ED%95%99%EB%8C%80에서 2021년 8월 25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1~2020).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국내·외 입양현황.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0N001&conn_path=I2에서 2021년 8월 25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3~2019).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0_N005&conn_path=I2에서 2021년 8월 21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5~2020). **2015~2020 보육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20).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a). **2021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b). **2021 입양실무매뉴얼**.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177&bbsId=1014&nttSn=2680&cataGori=da06&tabName=에서> 2021년 10월 7일 인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c). **아동정책영향평가 매뉴얼**.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2020). 2020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 다함께 돌봄 소식지. https://dadol.or.kr/board/library_print에서 2021년 9월 27일 인출.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2011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2012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2017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5). **2014 국민건강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2015 국민건강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 **2016 국민건강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 **2017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2018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20). **2019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0a).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102&CONT_SEQ=353829에서 2020년 11월 16일 인출.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0b).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의견수렴 공청회 자료집: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생활시설 평가지표(안). https://www.w4c.go.kr/favl/note/noteView_new.do?SEQ=864¤tPageNo=1&SEARCH_WORD=&SEARCH_DVSN=&cntnKindCd=02&fcltKindCd=에서 2021년 10월 7일 인출.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0).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서**. <http://www.korea.kr/common/download.do?tblKey=EDN&fileId=199336>에서 2019년 10월 6일 인출.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1). **2021 자살예방백서**. 서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www.ubrkorea.org/>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복권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bokgwon.go.kr/fund/02_01.jsp에서 2021년 10월 14일 인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2021). 2020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http://www.koreahana.or.kr/data_room/pro_data.jsp?sc_board_seq

- =60&sc_category_text=%EC%8B%A4%ED%83%9C%EC%A1%B0%EC%82%AC&page=1에서 2021년 8월 21일 인출.
- 사회보장위원회(2020). **그림으로 보는 사회통계 2020**.
- 서유정, 김민경, 류지영, 박나실, 김나라, 안유진, 안중석 (2020).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세종: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서정아, 연보라 (2017). **201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결과 분석**.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서정아, 조아미 (2019). **20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19-R48)**.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세계일보 (2021.1.17.). **이규민의원, 우범소년 폐지 소년법 개정안 발의**.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117504003>에서 2021년 9월 30일 인출.
- 세이브더칠드런. **우리들은 아이들의 죽음에서 배울 의무가 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307/pickets>에서 2021년 7월 12일 인출.
- 세이브더칠드런 (2019.9.18.).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캠페인 공동 진행. <https://m.sc.or.kr/mobile/news/noticeView.do?NO=70274>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 세이브더칠드런 (2021.5.3.). “[논평] 아동에 대한 차별의 언어, 바뀌어야 한다”. <https://www.sc.or.kr/news/noticeView.do?NO=70956&tabType=&schWord=>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 신현중 (2008). OECD국가의 아동 및 노인복지 지출규모의 상쇄현상 추세와 아동빈곤율과의 관계.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2), 99-126.
- 아동권리보장원 (2020). **2020 아동권리인식도 조사**.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권리보장원 (2021a). 내부자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 아동권리보장원 (2021b). 내부자료: 아동정책영향평가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소개**. <https://icareinfo.go.kr/intro/center/centerAboutus.do?menuNo=2004300>에서 2021년 9월 2

7일 인출.

- 양계민 (2012). **20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연구보고 12-R42).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양계민 (2013). **20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KYWA-2013-031).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양계민 (2014). **201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돌봄연계모형 개발연구**(KYWA-2014-031).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양계민 (2016). **2016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효과도 및 만족도 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양계민 (2018). **201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양계민, 김승경 (2011).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연구보고 11-R3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김승경, 조영희 (2010). **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연구**(연구보고 10-R2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2020). **20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효과·만족도 연구**(연구보고 20-R53).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여성가족부 (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5). **2015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6a).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6b). **2016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7). **2017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8a).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연구보고 2018-17).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8b). **2018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9a).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9b). **2019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0a). **2020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0b).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연구보고 2020-22).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0c).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5에서 2021년 9월 27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20.6.).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0년도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0.11.19.)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법적 보호 강화**.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342에서 2021년 8월 27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20.3.31.). 2019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19.12.31.기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에서 2020년 10월 6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21a). **2021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1b).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1c). **제3차 다문화가족기본계획(2018~2022): 2021년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1.3.2.). 2020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20.12.31.기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791에서 2021년 8월 11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21.3.23.). **보도자료: 온라인그룹링 처벌, 신분 비공개·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664에서 2021년 8월 27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21.4.21.). **보도자료: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737에서 2021년 8월 27일 인출.

여성가족부 (2021.5.21.). “2021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발표”.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여성가족부 (2021.7). 2020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에서 2021년 9월 2일 인출.

연합뉴스 (2020.10.11.) 정부 내놓은 미성년 연예인 보호안… 정작 연예계는 '가웃'.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7143300005>에서 2021년 10월 8일 인출.

연합뉴스 (2020.10.21.) 끝내 돌아오지 못한 '인천 화재 형제' 동생…돌봄 사각지대 비극.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1155500065?input=1195m>에서 2021년 6월 2일 인출.

연합뉴스 (2021.3.4.). “코로나19로 이주·난민 아동 삶의 질, 일반 아동보다 악화”.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4126400371>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연합뉴스 (2021.9.16.). '아동학대 즉각분리' 6개월간 940건 분리보호…즉각분리는 하루 1.1건.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2667854>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연합뉴스 (2021.10.11.). 자해 등 극단 시도로 매일 100명 응급실행…20대 가장 많아.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713857>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지도. <http://childfriendlycities.kr/0201map.html>에서 2021년 9월 3일 인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21.7.1.).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25주년 기념 선언식 열
려. <https://www.unicef.or.kr/about-us/press/140606?keyword=%EC%95%84%EB%8F%99%EC%B9%9C%ED%99%94%EB%8F%84%EC%8B%9C>
에서 2021년 10월 4일 인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3).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
서 심의결과 권고사항.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유엔아동권리
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정책자료 2011-04) (pp. 467-4
89).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정부
공식 번역본). 세종: 보건복지부.

이봉주, 장희선, 신원영 (2018).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서울: 굿네이버스.

이성훈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권기반 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12(4), 3-38.

이승현, 박성훈 (2015).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운호 (2021). 코로나19 시대의 아동학대. **국회보: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
지**, 653, 22-23.

이은주 (2021).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성과 모니터링 및 과제 도출 결과-장애·기
초보권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성과 모니터링 및 과제 도출을 위한 학계 전문가 워크숍
(미간행 내부자료), 1-8.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1). **2021 레인보우스쿨 위탁운영매뉴얼(MYF21-
02-교)**. 서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이현주, 박형준, 이정운 (2020). **2019년 빈곤통계연보**(정책자료 2019-06). 세종:
보건사회연구원.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 (2020.7).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 서울: 국제아동인권센터.
- 장명선, 김윤나, 김재민, 박건, 이소라 (2020).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전경숙 (2021).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성과 모니터링 및 과제 도출 결과-아동에 대한 폭력,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유엔 아동권리협약이행 성과 모니터링 및 과제 도출을 위한 학계 전문가 워크숍(미간행 내부자료), 21-28.
- 전라북도교육청 (2020). **학생인권 사례집-7개 시도교육청 공동사례집**(전북교육-2020-534).
- 정현선 (2006). 언어문화소통 기술의 관점에서 본 미디어 리터러시의 고찰. **한국학연구**, 25, 71-101.
- 중부매일 (2021.9.13.).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필요하다**.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7338>에서 2021년 9월 15일 인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5.25.). **보도자료: “중앙선거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90&bcIdx=145752>에서 2021년 7월 10일 및 2021년 9월 22일 인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7. 1. 1기준)**. http://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stats&wr_id=30에서 2017년 10월 15일 인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8.03.01.기준)**.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stats&wr_id=36에서 2018년 7월 22일 인출.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9).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보고서 2019. 세종: 환경부.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21).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21-2040. 세종: 환경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 가이드라인. <https://equalityact.kr/%EC%B0%A8%EB%B3%84%EA%B8%88%EC%A7%80%EB%B2%95-%EC%A>

- 0%9C%EC%A0%95%EC%9D%98-%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5.21.). “평등의 에코(echo)-100,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https://equalityact.kr/echo100/>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5.24.)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시작합니다!”. <https://equalityact.kr/equality100000/>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2021.5.31.) “주린이, 등린이, 헬린이?... ‘0린이’에 담긴 편견”. <https://yhrjieum.kr/activism/?q=YToyOntzOjEyO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6817649&t=board>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2020). **2019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연구보고서**(청소년과 주거권의 만남: 청소년 주거지원 정책의 현재와 대안탐색).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2021.5.26.) “결사·표현의 자유에 나이 제한은 필요 없다”. <https://yhrjieum.kr/activism/?q=YToxOntzOjEyO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6778520&t=board>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 최창욱, 황세영, 유민상, 이민희, 김진호 (2018).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연구보고 18-R1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2020). 2020년 탈북학생 통계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 (2020년 4월 기준). <https://www.hub4u.or.kr/hub/data/selectDataForm.do>에서 2021년 8월 26일 인출.
- 통계청 (2017.9.22). **보도자료: 2016년 사망원인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2/index.board?bmode=read&bSeq=&aSeq=363268&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19년 10월 3일 인출.

통계청 (2018.3.15). **보도자료: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7/1/index.board?bmode=read&aSeq=366658&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에서 2019년 8월 9일 검색.

통계청 (2018.9.19). **보도자료: 2017년 사망원인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2/index.board?bmode=read&bSeq=&aSeq=370710&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19년 10월 3일 인출.

통계청 (2018~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53S&conn_path=I2에서 2021년 8월 11일 인출.

통계청 (2019.3.12). **보도자료: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7/1/index.board?bmode=read&aSeq=373552에서 2019년 8월 9일 인출.

통계청 (2019.9.24). **보도자료: 2018년 사망원인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1/index.board?bmode=read&aSeq=377606에서 2019년 9월 25일 인출.

통계청 (2020.3.11). **보도자료: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7/1/index.board에서 2020년 11월 26일 검색.

통계청 (2020.9.22.). **보도자료: 2019년 사망원인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2/index.board?bmode=read&bSeq=&aSeq=38521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통계청 (2021). **2020 국가통계백서**.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21.9.28.). **보도자료: 2020년 사망원인통계**. <https://kostat.go.kr/p>

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03046에서 2021년 10월 12일 인출.

통계청 (2021.4.).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보고서**.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21.7.20). **보도자료: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90712에서 2021년 10월 8일 인출.

통계청 (2012, 2014, 2016, 2018, 2020). **2012-2020 사회조사**.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에서 2021년 9월 27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실업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02S&c에서 2021년 9월 2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738&board_cd=INDX_001에서 2021년 8월 21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2에서 2021년 9월 2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성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1에서 2021년 9월 2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영아사망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8&vw_cd=MT_ZTITLE&list_id=F_27&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2&path=%252Fcommon%252Fmeta_onedepth.jsp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지난 1년동안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무시당한 경험 (2017~202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7&tblId=DT_43701N_194&vw_cd=MT_ZTITLE&list_id=D2_437001_007&seq

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1년 8월 21일 인출.

통계청 KOSIS. 2013~2020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통계청 KOSIS. 2015~2020 사망원인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7&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통계청 KOSIS. 2016~2020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통계청 KOSIS. 2014~2019 학교급별 방과후 학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참여비용.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501&vw_cd=MT_ZTITLE&list_id=O15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0년 11월 26일 인출.

통계청 KOSIS. 정신건강 관련 기관 설치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920023_A001&conn_path=I2에서 2021년 10월 12일 인출.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0세~17세 인구수의 합.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outLink=Y&entrType=#SelectStatsBoxDiv에서 2021년 10월 8일 인출.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7.4.18.). **보도자료: 2017 청소년 통계**. <http://daitda.or>

kr/data/files/2017/04/21/d5b7058accbb8f41008e097a46bdf4e6.pdf
에서 2019년 8월 9일 인출.

통계청, 여성가족부 (2021.5.24.). **2021 청소년 통계**.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812에서 2021년 9월 13일 인출.

통일부 (2021.4). **2021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통일부 (2021.6).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자료(2021.6월 기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파이낸셜 뉴스 (2021.5.23.). **법무부 선제적 소년범죄 예방 나선다**. <https://www.fnnews.com/news/202105031430215006>에서 2021년 8월 27일 인출.

한겨레 (2021.6.14.). **‘온라인 수업’의 역설... 학교폭력 줄었지만 아동학대는 늘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9293.html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21.3.5.). **2020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연구개발-21-01)**. 서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리서치 (2021). 2021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 결과보고 자료. 서울: 한국리서치.

한국성폭력상담소 (2021.3). 2020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동향 분석. http://www.sisters.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7&page=1&f_cate=&idx=5842&board_md=view에서 2021년 9월 2일 인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2021.1.7.). 2020년 제17회 대한민국아동총회 결의문. http://kocconet.or.kr/bbs/board.php?bo_table=gallery&wr_id=36에서 2021년 9월 13일 인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http://ecos.bok.or.kr/>에서 2021년 10월 8일 인출.

한준, 이희길, 정병은, 김대훈, 김월화 (2019).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한준, 정병은, 장미혜, 김대훈, 김월화 (2020). **2020년 국가인권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안전부 (2019.11). **201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0781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행정안전부 (2020.11).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0781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https://jumin.mois.go.kr/index.jsp#>에서 2021년 9월 12일 인출.

헤럴드 경제 (2021.5.24.). **아동학대 21% 급증...가슴아픈 '집콕 현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524000650>에서 2021년 6월 2일 인출.

헬스인뉴스 (2021.5.4.). **녹색병원 금융산업공익재단, 의료취약계층 건강지원 협약**. <https://www.health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52>에서 2021년 10월 2일 인출.

현소혜 (2021).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성과 모니터링 및 과제 도출 결과-시민적 권리와 자유, 특별보호조치(소년사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성과 모니터링 및 과제 도출을 위한 학계 전문가 워크숍 (미간행 내부자료), 19-23.

황지태, 김지영, 원혜옥, 김지연 (2016). **소년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Child Rights Connect. Annual Report 2020. Retrieved June 3, 2021, from https://www.childrightsconnect.org/wp-content/uploads/2021/05/child_rights_ar_2020_final.pdf.

Child Rights Connect. What We Do. Retrieved June 3, 2021, from <https://www.childrightsconnect.org/organisation/#>.

Child Rights Connect (2021.4.21.). New Tool: “POSITIVE DISCIPLINE”, AN ALTERNATIVE TO CORPORAL PUNISHMENT. Retrieved June 3, 2021, from <https://www.childrightsconnect.org/new-tool-positive-discipline-an-alternative-to-corporal-punishment/>.

Child Rights Connect (2021.4.28.). Council resolution o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recognises the role of child environmental human rights defenders and welcomes the great work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amplifying children’s voices. Retrieved June 3, 2021, from <https://www.childrightsconnect.org/council-resolution-on-human-rights-and-the-environment-recognises-the-role-of-child-environmental-human-rights-defenders-and-welcomes-the-great-work-of-the-special-rapporteur-in-amplifying-childre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formation for partners. <https://www.ohchr.org/EN/HRBodies/CRC/Pages/InfoPartners.aspx>에서 2021년 7월 15일 인출.

KBS뉴스(2021.10.1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1138852>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OECD. stat. Family database. Child poverty rate. <https://stats.oecd.org>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OECD. stat. Family database. Total public social expenditure on families as a % of GDP. <https://stats.oecd.org/>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OHCHR (2021.9.30.). UN Child Rights Committee issues findings on Czech Republic, Eswatini, Poland and Switzerland. Retrieved October 15, 2021, from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7579&LangID=E>.

- OHCHR (2020.2.4.).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loses Online Limited Eighty-Sixth Session. Retrieved February 18, 2021, from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6724&LangID=E>.
- OHCHR (2021a). Day of General Discussion. Retrieved June 3, 2021, from <https://www.ohchr.org/EN/HRBodies/CRC/Pages/DiscussionDays.aspx>.
- OHCHR (2021b). Day of General Discussion: "Children's Rights and Alternative Care" 16-17 September 2021. Retrieved June 1, 2021, from <https://www.ohchr.org/EN/HRBodies/CRC/Pages/Discussion2020.aspx>.
- OHCHR (2021.5.17.).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pens Online Eighty-Seventh Session, Elects New Chairperson and Bureau. Retrieved June 1, 2021, from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7099&LangID=E>.
- UN (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A/RES/44/25). 외교통상부 역(1991). 유엔아동권리협약(정부 공식 국문번역본).
-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 UN (2021). Information for partners. <https://www.ohchr.org/EN/HRBodies/CRC/Pages/InfoPartners.aspx>에서 2021년 7월 15일 인출.
-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03). General Comment No. 5 on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GC/2003/5).
-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09). General Comment No. 12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 (CRC/C/GC/12).
-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15).

Treaty-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C/58/Rev.3).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20.4). CRC COVID-19 Statement.

UNICEF (2016). Mapping the Global Goals for SDGs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ttps://www.unicef.org/media/60231/file> 에서 2021년 7월 11일 인출.

UNICEF (2019). Progress for Every Child in the SDG era : Are we on track to achieve the SDGs for Children?. <https://data.unicef.org/resources/progress-for-every-child-in-the-sdg-era-2019/>에서 2021년 7월 10일 인출.

UNICEF (2020.3.). COVID-19 and children. Retrieved June 1, 2021, from <https://data.unicef.org/covid-19-and-children/>.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ICEF. Why is a children's rights approach needed?. https://ohchr.org/Documents/Issues/Children/VisualBrief_ChildRights_SDGs.pdf에서 2021년 7월 11일 인출.

United Nations(UN) (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A/RES/44/25). 외교통상부 역(1991). 유엔아동권리협약(정부 공식 국문번역본).

UNSC (2015). Process of selecting indicators, ESA/ST/AC.300/4

UNSC (2017). Report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E/CN.3/2017/2)

UNSC (2020). Report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E/CN.3/2020/2)

Wee 웹사이트. 기관현황. <https://www.wee.go.kr/home/cms/cmsCont.do?>

cntnts_sn=22에서 2021년 9월 12일 인출.

Wee 웹사이트. 사업소개. [https://www.wee.go.kr/home/cms/cmsCont.do?](https://www.wee.go.kr/home/cms/cmsCont.do?cntnts_sn=1)

cntnts_sn=1에서 2021년 9월 12일 인출.

YTN (2021.10.18.). 특성화고 실습생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가장 힘든 일 해”.

https://www.ytn.co.kr/_ln/0103_202110180727301108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YTN 뉴스 (2021.03.13.). "집이 더 위험하다" 코로나19 1년... 늘어나는 아동학대

사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 POD&mid=tvh&oid=052&aid=0001562011>에서 2021년 6월 2일 인출.

○ ————— 부 록

- 1. 2021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설문지(초등용·중등용)
- 2.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별 소관 부처(요약)
- 3.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별 소관 부처(전체)

부록 1. 2021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초등용·중등용)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학교ID (면접원이 작성합니다)

--	--	--	--	--	--	--	--	--	--

3 20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초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국가정책을 개발하는 국무총리산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지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므로 학교나 선생님이 알 수 없으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아동·청소년 관련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p>주관기관</p> <p>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p> <p>※ 담당자: 김영지 선임연구원 044-415-2136 유설희 전문연구원 044-415-2152 최종일 전문연구원 044-415-2187</p>	<p>수행기관</p> <p> Hankook Research</p> <p>※ 담당자: 박종경 차장 ※ 문의전화: 02-3014-0988</p>
--	---

조사 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별, 가족 구성, 부모의 학력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별 성별을 꼭 표시한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남자 여자



설문 응답 방법 안내문

- ※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01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02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아래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X	②	③	④

03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10 최근 1년 동안 기술한 적이 있나요?

※ '기술'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기술한 적이 있다 ② 기술한 적이 없다 → 11번 문항으로

10-1 기술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술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학업부담, 성적 등)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 때문에(불화, 폭행, 간섭 등)

04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15-1 평소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 2순위 5

① 학원, 과외 ②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③ 게임(인터넷게임, 휴대전화게임 포함) ④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⑤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⑥ 드라마, 영화 보기, 음악 듣기 등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II. 가정 및 학교 환경

6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이나 무시하거나 욕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하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부모님(보호자) 으로부터	1) 신체적 벌(체벌)	①	②	③	④	⑤
	2)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학교 선생님 으로부터	3) 신체적 벌(체벌)	①	②	③	④	⑤
	4)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7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하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2) 맞아 본 경험	①	②	③	④	⑤
3)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②	③	④	⑤
5) 성적인 희롱(농림)이나 추행(몸을 만짐)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6) 강제적인 심부름	①	②	③	④	⑤

8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카톡 등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하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①	②	③	④	⑤
2)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성희롱(농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①	②	③	④	⑤
5)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9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이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불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나요?

※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가출한 적이 있다

② 가출한 적이 없다 → 11번 문항으로

10-1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학업 부담, 성적 등)
-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 때문에(불화, 폭행, 간섭 등)
- ③ 학교에서의 갈등이나 폭력 때문에
-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 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III. 복지 및 보호

11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12

자신의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나요?

-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 ③ 건강한 편이다
- ④ 매우 건강하다

13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나요?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나요?

- ① 전혀 하지 않는다
- ② 한 달에 1~2회 정도
-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14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각과 잠자리에 드는 시각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 시각은 모두 24시간 기준으로 기록해 주세요 (예: 21시 30분, 22시 0분 등)

※ 9시 등 정각인 경우 '분'은 0으로 표시하세요 (예: 09시 0분, 22시 0분)

① 일어나는 시각 보통 시 분

② 잠자리에 드는 시각 보통 시 분

18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19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는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① 없다

② 아버지

④ 형제/자매

⑥ 학교 상담선생님

⑧ 이웃/친척

⑩ 기타(적어주세요: _____)

③ 어머니

⑤ 담임선생님

⑦ 친구

⑨ 청소년 상담 관련 기관 선생님(예: 청소년 전화 1388)

20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 21번 문항으로

20-1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나요?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④ 부모님(보호자)

⑥ 선생님

⑧ 경찰

③ 선·후배

⑤ 형제·자매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등)

⑨ 기타(적어주세요: _____)



IV. 교육 및 여가·문화

21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 22번 문항으로

21-1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괴롭힘을 당해서
-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 ⑤ 공부하기 싫어서
- ⑥ 학교 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 ⑦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 ⑧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2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수업 시간이 재밌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23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여가·문화시설 및 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해 보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도 합니다.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공공도서관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등)	①	②	③	④	⑤
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①	②	③	④	⑤
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①	②	③	④	⑤

23-1

(위 4가지 유형의 시설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이용해본 시설 및 공간에 얼마나 만족했나요?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 ③ 만족하는 편이다
- ④ 매우 만족한다

24

학교에 가는 날(평일)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여가(자유)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인가요?

- ① 1시간 미만
-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 ⑥ 5시간 이상

25

평일 학교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보통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나요?

- ① 1시간 미만
-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⑦ 6시간 이상

V. 인권 일반

26 다음에 대해 알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왔고, 어떤 것(또는 곳) 인지도 알고 있다
1) 유엔(UN) 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2)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3)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27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①	②	③	④

28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아동은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아동도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3) 아동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전교어린이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29 최근 1년 동안 학교나 학교 밖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 인권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권교육은 인권의 개념, 유엔아동권리협약, 나와 다른 사람의 권리존중,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실천방법 등을 배우는 것입니다.

① 있다

② 없다 → 30번 문항으로

29-1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학교 교과수업시간(사회/도덕 등)
- 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 ③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시설/단체, 사회단체 등)
- ④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9-2 인권교육이 각각의 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각 항목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인권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2)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	①	②	③	④
3)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	①	②	③	④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들을 얼마나 자주 당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주위 사람으로부터...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머니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차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러분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주위 사람들...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머니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1 학생은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년
--	--	--	--	---

배문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세요(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① 할아버지 ② 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적어주세요: _____) ⑩ 없음

배문3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중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니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어머니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문4 학생의 학업 성적(2021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5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 매우 못 산다	보통 수준	매우 잘 산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학교ID (면접원이 작성합니다)

--	--	--

3 20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중·고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국가정책을 개발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지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므로 학교나 선생님이 알 수 없으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아동·청소년 관련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 ※ 담당자: 김영지 선임연구원 044-415-2136
- 유설희 전문연구원 044-415-2152
- 최홍일 전문연구원 044-415-2187

수행기관



- ※ 담당자: 박종경 차장
- ※ 문의전화: 02-3014-0988

조사 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별, 가족 구성, 부모의 학력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별

성별을 꼭 표시한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남자

 여자



설문 응답 방법 안내문

- ※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01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02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아래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X	②	③	④

03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9 다니는 학교가 종교재단의 학교입니까?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① 예 ② 아니오 → 10번 문항으로

9-1 학교의 종교행사에는 원하는 학생만 참여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04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 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21-1 평소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	2순위	5
-----	---	-----	---

① 야간 자율학습 ② 학원, 과외
③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④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⑤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⑥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⑦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⑧ 기타(적어주세요:)



1. 참여활동

1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진학할 상급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등)를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보호자)은 공부시간이나 방법(학원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다음은 학교의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선생님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3) 학교에서는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	①	②	③
4) 선생님은 학생회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한다	①	②	③

3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 '학교운영위원회'란 선생님과 학부모 대표 등이 함께 학교의 운영방침(학교예산, 학교규칙, 현장학습, 급식 등)을 의논하는 회의입니다.

- ① 참여할 수 없다
- ②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 ③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④ 잘 모르겠다

9 다니는 학교가 종교재단의 학교입니까?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① 예 → ② 아니오 → 10번 문항으로

9-1 학교의 종교행사에는 원하는 학생만 참여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10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문제, 선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참여활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①	②	③	④
2)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①	②	③	④

10-1 (위 문항에서 ③번 또는 ④번에 응답한 학생만 답하십시오.) 이러한 활동이나 참여로 인해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
- ② 경고 및 훈계
- ③ 교내 상담 및 학부모상담
- ④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 ⑤ 기타(적어주세요: _____)

11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용모(머리 모양·길이·염색 또는 화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II. 가정 및 학교 환경

12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께서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부모님(보호자) 으로부터	1) 신체적 벌(체벌)	①	②	③	④	⑤
	2)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학교 선생님 으로부터	3) 신체적 벌(체벌)	①	②	③	④	⑤
	4)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13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②	③	④	⑤
5)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6) 강제적인 심부름	①	②	③	④	⑤

14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카톡 등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①	②	③	④	⑤
2)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성희롱(놀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①	②	③	④	⑤
5)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15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

※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가출한 적이 있다 ② 가출한 적이 없다 → 17번 문항으로

16-1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업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 때문에
-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 때문에
- ③ 학교에서의 갈등이나 폭력 때문에
-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 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 ⑥ 기타(적어주세요: _____)

16-2 가출했을 당시 어떤 기관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해 보았습니까?
주로 이용한 곳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이용해 본 적 없다 → 17번 문항으로

- ② 청소년 센터
- ③ 청소년 상담 기관
- ④ 청소년수련관(센터)
- ⑤ 청소년 전화 1388
- ⑥ 기타(적어주세요: _____)

16-3 가출했을 당시 이용한 기관의 서비스는 어떠했습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 ③ 만족하는 편이다
- ④ 매우 만족한다



III. 복지 및 보호

17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18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 ③ 건강한 편이다
- ④ 매우 건강하다

19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하지 않는다
- ② 한 달에 1-2회 정도
-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20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각과 잠자리에 드는 시각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 시각은 모두 24시간 기준으로 기록해 주세요 (예: 22시 30분, 23시 0분 등)

※ 9시 등 정각인 경우 '분'은 0으로 표시하세요 (예: 09시 0분, 22시 0분)

① 일어나는 시각 보통 시 분

② 잠자리에 드는 시각 보통 시 분

21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22번 문항으로

21-1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① 야간 자율학습 | ② 학원, 과외 |
| ③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 ④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
| ⑤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 ⑥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
| ⑦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 ⑧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22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23번 문항으로

- ② 가끔 생각한다
③ 자주 생각한다

22-1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학업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 | ② 가족 간의 갈등 |
| ③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 | ④ 경제적인 어려움 |
| 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23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최근 1년 동안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24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

-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 ③ 행복한 편이다
 - ④ 매우 행복하다
- 25번 문항으로

24-1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업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 때문에
-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 ⑦ 기타(적어주세요: _____)

25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26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없다
- ② 아버지
- ③ 어머니
- ④ 형제/자매
- ⑤ 담임선생님
- ⑥ 학교 상담선생님
- ⑦ 친구
- ⑧ 이웃/친척
- ⑨ 청소년 상담 관련 기관 선생님(예: 청소년 전화 1388)
- ⑩ 기타(적어주세요: _____)

27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28번 문항으로

27-1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없다	1-2번	3번 이상
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①	②	③
2) 계약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①	②	③
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다	①	②	③
4)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①	②	③
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①	②	③
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①	②	③
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①	②	③
8)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를 경험했다	①	②	③
9) 최저임금(2020년 기준 시간 당 8,590원, 2021년 기준 시간 당 8,72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①	②	③

28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29번 문항으로

28-1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④ 부모님(보호자)

⑥ 선생님

⑧ 경찰

③ 선·후배

⑤ 형제·자매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등)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IV. 교육 및 여가·문화

29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30번 문항으로

29-1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과로함을 당해서
-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 ⑤ 공부하기 싫어서
- ⑥ 학교 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 ⑦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 ⑧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30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수업 시간이 재밌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31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여가·문화시설 및 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도 합니다.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공공도서관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등)	①	②	③	④	⑤
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①	②	③	④	⑤
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①	②	③	④	⑤

31-1

(위 4가지 유형의 시설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이용해 본 시설 및 공간에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 ③ 만족하는 편이다
- ④ 매우 만족한다

32

학교에 가는 날(평일) 학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자유)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입니까?

- ① 1시간 미만
-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 ⑥ 5시간 이상

33

평일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보통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합니까?

- ① 1시간 미만
-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⑦ 6시간 이상



V. 인권 일반

34

다음의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왔고, 어떤 것(또는 곳) 인지도 알고 있다
1) 유엔(UN) 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2)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3)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35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①	②	③	④

36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관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청소년도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37

최근 1년 동안 학교나 학교 밖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인권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권교육은 인권의 개념, 유엔아동권리협약, 나와 다른 사람의 권리존중,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실천방법 등을 배우는 것입니다.

① 있다



② 없다

→ 38번 문항으로

37-1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교 교과수업시간(사회/도덕 등)
- 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 ③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시설/단체, 사회단체 등)
- ④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37-2

인권교육이 각각의 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각 항목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2)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	①	②	③	④
3)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	①	②	③	④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 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차별을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주위 사람들로 부터...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머니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차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생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주위 사람들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머니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1 학생은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	--	--	--	--	--	--	--	--	--	--

년

배문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세요(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① 할아버지 ② 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적어주세요: _____) ⑩ 없음

배문3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중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어머니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문4 학생의 학업 성적(2021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5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 산다		보통 수준					매우 잘 산다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별 소관 부처(요약)⁵¹⁾

부처명	연번	중제목	소관부서명
경찰청	26-27	체벌을 포함한 폭력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사이버수사기획과) 생활안전국(아동청소년과)
	32	가정환경 상실 아동	생활안전국(아동청소년과)
	45	매매, 거래, 약취유인	경무인사기획관(교육정책담당관) 수사국
	46-47	소년사법 운영	생활안전국(아동청소년과) 생활안전부(여성청소년과)
고용노동부	13	보급, 인식제고 및 훈련	근로감독정책단(근로감독기획과) 노동정책실(근로기준정책과)
	15	아동 권리와 기업부문	기획조정실(개발협력지원팀) 노동정책실(근로기준정책과)
	31	가정환경	고용정책실(고용문화개선정책과) 통합고용정책국(여성고용정책과)
	40	생활수준	근로감독정책단(근로감독기획과) 노동정책실(근로기준정책과)
	44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근로감독정책단(근로감독기획과) 노동정책실(근로기준정책과) 지방고용노동청(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45	매매, 거래, 약취유인	기획조정실(혁신행정담당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39	청소년 보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디지털방송정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디지털포용정책팀, 인터넷진흥과)
교육부	10	자원의 할당	교육복지정책국(교육복지정책과)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11	자료수집	교육안전정보국(교육통계과)
	13	보급, 인식제고 및 훈련	학교혁신지원실 (교육과정정책과, 민주시민교육과)

51) '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2020).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권해 자료의 권고사항별 소관 부처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진이 일부 부서 추가 및 직제 개편된 사항(2021년 기준)을 반영하고 소관 부처 기준으로 권고사항을 재구성함(소관 부처 제시 순서는 '가나다' 순임).

부처명	연번	중제목	소관부서명
	13	보급, 인식제고 및 훈련	교육복지정책국 (교육복지정책과, 유아교육정책과) 학교혁신지원실(교원양성연수과) 학생지원국(특수교육정책과)
	16-17	비차별	학교혁신지원실(민주시민교육과) 학교혁신지원실 (교수학습평가과, 민주시민교육과)
	19-20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학생지원국(학생건강정책과)
	21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학교혁신지원실(민주시민교육과)
	21	아동의 견해 존중	학교혁신지원실 (교수학습평가과, 민주시민교육과)
	24	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학교혁신지원실 (교수학습평가과,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지원국(학교생활문화과)
	25	사생활에 대한 권리	교육안전정보국(교육정보화과) 학교혁신지원실(민주시민교육과) 학생지원국(학교생활문화과)
	26-27	체벌을 포함한 폭력	기획조정실(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학교혁신지원실(교원정책과,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지원국(학교생활문화과)
	28-29	성적 착취 및 학대	기획조정실(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학교혁신지원실(민주시민교육과, 교원정책과) 학생지원국(학교생활문화과)
	36	장애아동	학생지원국(학생건강정책과, 특수교육정책과)
	37	건강 및 보건 서비스	학생지원국(학생건강정책과)
	38	정신 건강	학생지원국(학생건강정책과)
	39	청소년 보건	기획조정실(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학생지원국(학교생활문화과, 학생건강정책과) 학교혁신지원실(민주시민교육과)
	41-42	교육 및 교육의 목표	고등교육정책실(대입정책과) 교육복지정책국 (교육복지정책과,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안전정보국(교육시설과) 기획조정실(규제개혁법무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평생교육국(진로교육정책과, 평생학습정책과) 학교혁신지원실(교원양성연수과,

부처명	연번	중제목	소관부서명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 학생지원국(교육기획보장과, 특수교육정책과, 학교생활문화과, 학생건강정책과)
	43	난민산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아동	학생지원국(교육기획보장과)
국가기술 표준원	15	아동 권리와 기업부문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책과, 제품시장관리과, 제품안전정보과,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국가인권 위원회	12	독립 모니터링	기획조정관(기획재정담당관) 침해조사국(아동청소년인권과)
	13	보급, 인식제고 및 훈련	교육협력심의관(인권교육기획과)
국방부	6	유보	법무관리관
	49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인사복지실(인력정책과) 국방정책실(교육훈련정책과)
국토교통부	40	생활수준	주택토지실(주거복지정책과)
	43	난민산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아동	주택토지실(주거복지정책과)
기획재정부	10	자원의 할당	예산실(교육예산과) 재정관리국(재정관리총괄과) 재정혁신국(참여예산과)
			45
대검찰청	46-47	소년사법 운영	부산지방검찰청(여성아동범죄조사부) 인권정책관(인권기획담당관, 인권감독담당관) 대검찰청 형사부(형사2과)
	48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반부패·강력부(수사지휘·지원과)
문화체육 관광부	41-42	교육 및 교육의 목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46-47	소년사법 운영	권익보호국(권익보호기획팀) 사무처, 정책연구센터
법무부	7	법 제정	검찰국(검찰과, 형사법제과) 기획부(기획과, 법무교육과) 법무실(법무과)
	8	포괄적인 정책 및 전략	인권국(인권정책과)
	10	자원의 할당	기획조정실(기획재정담당관) 인권국(인권정책과)

부처명	연번	중제목	소관부서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정책과, 난민과)
	11	자료수집	인권국(여성아동인권과)
	13	보급, 인식제고 및 훈련	기획부(기획과) 인권국(인권조사과, 인권정책과) 범죄예방정책국(소년보호과)
	15	아동 권리와 기업부문	인권국(인권정책과, 여성아동인권과)
	16-17	비차별	법무실, 법무심의관 인권국(인권정책과, 여성아동인권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민정보과, 이민조사과,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21	아동의 견해 존중	법무실, 법무심의관
	22	출생등록	법무실, 법무심의관 인권국(인권정책과, 여성아동인권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민정보과, 이민조사과,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난민정책과)
	23	정체성에 대한 권리	법무실, 법무심의관 인권국(여성아동인권과)
	26-27	체벌을 포함한 폭력	인권국(인권구조과, 여성아동인권과)
	28-29	성적 착취 및 학대	검찰국(형사법제과) 범죄예방정책국(범죄예방기획과) 인권국(인권구조과, 여성아동인권과)
	30	유해한 관행	법무실(국제법무과) 인권국(여성아동인권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정책과, 이민통합과)
	31	가정환경	인권국(여성아동인권과)
	32	가정환경 상실 아동	범죄예방정책국(범죄예방기획과) 인권국(여성아동인권과)
	33	입양	법무실(국제법무과)
	34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법무실(국제법무과)
	35	수용자 자녀	교정본부(사회복귀과, 보안과) 인권국(여성아동인권과)
	36	장애아동	인권국(인권정책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정책과, 난민정책과)
	41-42	교육 및 교육의 목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민통합과)
	43	난민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아동	기획조정실(기획재정담당관), 법무실 인권국(인권정책과, 여성아동인권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정책과,

부처명	연번	중제목	소관부서명
			이민통합과, 이민정보과, 체류관리과,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난민정책과, 출입국기획과)
	45	매매, 거래, 약취유인	검찰국(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 인권국(인권구조과, 여성아동인권과)
	46-47	소년사법 운영	검찰국(형사법제과) 범죄예방정책국(범죄예방기획과, 소년보호과) 인권국(인권조사과, 여성아동인권과)
	48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검찰국(형사법제과) 인권국(여성아동인권과) 검찰국(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49	아동의 무력보장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난민정책과, 난민심의과) 인권국(인권정책과)
	51	국제인권규범 비준	인권국(인권정책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정책과)
법원행정처	7	법 제정	기획조정실
	18	아동 최상의 이익	사법지원실
	21	아동의 견해 존중	기획조정실
	22	출생등록	기획조정실
	31	가정환경	기획조정실
	31	가정환경	사법지원실
	46-47	소년사법 운영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보건복지부	7	법 제정	인구정책실(출산정책과)
	8	포괄적인 정책 및 전략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9	조정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10	자원의 할당	인구정책실(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복지정책과, 보육정책관)
	11	자료수집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아동학대대응과)
	13	보급, 인식제고 및 훈련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과, 아동학대대응과, 보육정책과)
	16-17	비차별	보건의료정책실(보건의료정책과) 인구정책실(출산정책과, 아동복지정책과)
	18	아동 최상의 이익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19-20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건강정책국(자살예방정책과),

부처명	연번	중제목	소관부서명
			인구정책실(보육기반과)
	21	아동의 견해 존중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22	출생등록	보건의료정책실(보건의료정책과) 인구정책실(출산정책과, 아동복지정책과)
	23	정체성에 대한 권리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26-27	체벌을 포함한 폭력	기획조정실(재정운용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과, 아동학대대응과)
	31	가정환경	인구정책실(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
	32	가정환경 상실 아동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과, 아동학대대응과)
	33	입양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34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36	장애아동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보건의료정책실(공공의료과) 장애인정책국(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서비스과)
	37	건강 및 보건 서비스	건강보험정책국(보험정책과) 건강정책국(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기획조정실(재정운용담당관) 보건의료정책실(공공의료과, 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복지정책실(복지정책과) 인구정책실(보육정책과)
	38	정신 건강	건강정책국(정신건강정책과, 자살예방정책과) 기획조정실(보건복지상담센터)
	40	생활수준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41-42	교육 및 교육의 목표	장애인정책국(장애인서비스과) 건강정책국(건강증진과)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43	난민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아동	건강보험정책국(보험정책과)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아동학대대응과, 인구정책총괄과, 보육정책과) 기획조정실(재정운용담당관)
	50	청원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 비준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산업통상 자원부	15	아동 권리와 기업부문	무역투자실(해외투자과)

부처명	연번	중제목	소관부서명
여성가족부	8	포괄적인 정책 및 전략	청소년가족정책실(청소년정책과)
	9	조정	청소년가족정책실(청소년정책과)
	10	자원의 할당	기획조정실(기획재정담당관) 청소년가족정책실(청소년정책과)
	11	자료수집	청소년가족정책실(청소년정책과)
	13	보급, 인식제고 및 훈련	청소년가족정책실(청소년정책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보호환경과)
	16-17	비차별	여성정책국(여성정책과) 청소년가족정책실(청소년정책과,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과)
	19-20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청소년가족정책실(청소년정책과, 청소년자립지원과)
	21	아동의 견해 존중	청소년가족정책실(청소년정책과)
	26-27	체벌을 포함한 폭력	권익증진국(권익정책과, 아동청소년보호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28-29	성적 착취 및 학대	권익증진국(권익정책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폭력예방교육과)
	31	가정환경	청소년가족정책실(가족지원과)
	32	가정환경 상실 아동	청소년가족정책실(청소년자립지원과, 가족정책과)
	38	정신 건강	청소년가족정책실(청소년정책과, 청소년자립지원과)
	39	청소년 보건	청소년가족정책실(청소년보호환경과, 가족지원과)
	41-42	교육 및 교육의 목표	권익증진국(권익기반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청소년가족정책실(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가족정책실(학교밖청소년지원과)
	44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청소년가족정책실(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보호환경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45	매매, 거래, 약취유인	권익증진국(권익정책과)
	52	지역 기구와의 협력	기획조정실(국제협력담당관)
	외교부	14	국제협력
15		아동 권리와 기업부문	국제기구국(인권사회과)
48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국제기구국(국제안보과) 재외동포영사실(여권과)
	52	지역 기구와의 협력	국제기구국(인권사회과)
조달청	10	자원의 할당	감사담당관, 조달관리국(공정조달관리과)

부처명	연번	중제목	소관부서명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24	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법제국
질병관리청	37	건강 및 보건 서비스	의료안전예방국(예방접종관리과)
통계청	11	자료수집	사회통계국(국장, 인구동향과)
통일부	16-17	비차별	인도협력국(정책지원과)
	41-42	교육 및 교육의 목표	인도협력국(정책지원과)
행정안전부	10	자원의 할당	지방재정경제실(재정정책과)
	12	독립 모니터링	기획조정실(정책평가담당관)
	22	출생등록	정부혁신조직실(공공서비스혁신과)
	41-42	교육 및 교육의 목표	지방재정경제실(재정정책과)
환경부	15	아동 권리와 기업부문	환경보건국(화학물질정책과, 화학제품관리과)
	19-20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국립환경과학원(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환경보건국(환경보건정책과, 환경피해구제과, 화학제품관리과, 화학안전과)

부록 3.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별 소관 부처(전체)⁵²⁾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사이버범죄수사과, 사이버수사기획과) 생활안전국(아동청소년과)	26-27	<p>체벌을 포함한 폭력</p> <p>(a) 모든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및 학대 사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당 사건의 규모, 원인, 특성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실시할 것;</p> <p>(b) 온라인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방지, 근절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 및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p> <p>(c)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체벌” 및 “훈육적(disciplinary)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p> <p>(d)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교내 비폭력 의사소통 및 갈등중재를 증진하고,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참여형 아동양육 형태를 촉진할 것; 폭력과 학대신고를 장려할 것;</p> <p>(e) 심리적 학대를 포함한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것; 신고 지침을 수립할 것;</p> <p>(f)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보장할 것;</p> <p>(g)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임상심리사, 변호사의 수 증원, 아동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대리인 제공,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의 학대 피해아동쉼터 접근 보장 등을 포함하여 학대 예방, 피해아동의 회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을 보장할 것;</p> <p>(h) 앞서 언급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재정적, 그리고 기술적 자원을 할당할 것.</p>

52) ‘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2020).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자료의 권고사항별 소관 부처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진이 일부 부서 추가 및 직제 개편된 사항(2021년 기준)을 반영하고 소관 부처 기준으로 권고사항을 재구성함(소관 부처 제시 순서는 ‘가나다’ 순임).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생활안전국(아동청소년과)	32	가정환경 상실 아동 (b) 가정 내 아동학대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아동이 가출하는 사유를 찾고 이러한 현상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선별적이고 비징벌적인 조치를 취하며, 가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할 것;
	경무인사기획관(교육정책담당관)	45	매매, 거래, 약취유인 (b) 경찰, 출입국관리소, 노동청,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훈련을 포함하여, 특히 취약계층 피해아동의 식별 및 위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식별 지침을 이행할 것;
	수사국	45	매매, 거래, 약취유인 (c) 아동의 인신매매, 불법거래 및 탈취가 효과적으로 수사되고, 가해자들이 기소되어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형량이 부과되도록 하며, 인신매매 방지 전담조직과 인신매매 수사 및 기소를 위한 팀을 구성할 것;
	생활안전국(아동청소년과) 생활안전부(여성청소년과)	46-47	소년사법 운영 (b) 형사 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 (d) 법적·관행적으로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에게 조사단계부터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법률 구조 제도를 수립할 것; (e) “우범소년”에 관한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폐지할 것; (f) 다이버전 제도(diversion programmes)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구금형을 촉진할 것; (g) 「소년법」에 구금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기간만 사용할 것; 구금은 중단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보호처분” 기간 및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이 최종 형기에 산입되도록 보장할 것; 구금에 항소할 권리 및 부당한 구금에 대한 배상권을 보장할 것; (h) 일시구금을 포함하여, 구금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개인 공간,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음식, 교육, 신체적·심리적 건강 서비스, 운동, 여가, 가족과의 접견 및 진정 제도 등 제공);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주거지에서 가까운 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할 것;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구금시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보장할 것; (i) 아동이 성인과 함께 구금될 모든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j) 근신실 및 이송을 징계적 조치로 사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회복적 조치로 대체하고 촉진할 것; (k) 아동에 관한 무력 및 보호장비 사용을 규제할 것 및 그러한 사용이 특정한 상황에 제한되고, 비례적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proportional)일 것; ㉠ 구금된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 구금된 아동의 DNA 수집 및 HIV 검사를 금지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기록을 삭제할 것; HIV 정보는 비밀을 보장할 것; HIV에 감염된 아동 구금자를 격리하지 않을 것; 강제적인 신체검사와 이발, 그리고 계속적인 위생시설 촬영을 금지할 것; (m)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비구금 조치를 강화할 것; (n)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을 국적, 장애,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을 근거로 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근로감독기획과) 노동정책실(근로기준정책과)	13	보급, 인식제고 및 훈련 아동을 위해, 그리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의무적 훈련을 제공할 것.
	기획조정실(개발협력지원팀) 노동정책실(근로기준정책과)	15	아동 권리와 기업부문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위한 아동보호 프레임워크(child protection framework)를 수립할 것. 그러한 프레임워크는 아동권리 침해를 보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영향평가,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아동권리 실현과 보호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할 것.
	고용정책실(고용문화개선정책과) 통합고용정책국(여성고용정책과)	31	가정환경 (b) 부(父)의 육아휴직 접근성 및 이용을 보다 촉진할 것;
	근로감독정책단(근로감독기획과) 노동정책실(근로기준정책과)	40	생활수준 (c) 아동의 주거 빈곤 및 아동의 시간제 고용률을 사정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것.
	근로감독정책단(근로감독기획과) 노동정책실(근로기준정책과) 지방고용노동청(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44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채무성과 사회복귀를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조치(일하는 아동의 근로조건 개선 및 기업 감독을 위한 정책적 조치)의 유효성에 대한 점검과 보고를 강화할 것.
	기획조정실(혁신행정담당관)	45	매매, 거래, 약취유인 (b) 경찰, 출입국관리소, 노동청,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훈련을 포함하여, 특히 취약계층 피해아동의 식별 및 위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식별 지침을 이행할 것;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디지털방송정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디지털포용정책팀, 인터넷진흥과)	39	청소년 보건 알코올 광고 규제 강화, 금연 공간 확대, 스포츠 및 신체활동 촉진, 약물 남용 예방에 대한 생활 기술 교육에 아동참여 독려 등 비만, 흡연, 음주 예방과 관련한 이전의 권고들을 상기시키며,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교육복지정책과)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10	자원의 할당 (a) 아동을 위한 모든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입법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적절한 재정적, 인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고, 그렇게 할당된 자원의 활용을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실행할 것; (b) 아동을 위한 예산 및 전반적인 사회복지지출을 GDP에 비례하여 증가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를 감소시킬 것; (c)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위한 예산할당을 도입할 것; (d) 현존하는 아동·청소년 의회 및 참여위원회를 포함하여, 예산수립 과정에서 아동참여를 강화할 것; (e) 아동의 권리 실현을 지원하는 부문의 재화 및 용역(상품과 서비스)의 가용성, 접근성, 그리고 품질을 보장하고, 뇌물수수나 특혜, 불규칙한 지급 등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공공조달 절차에서 책무성을 제고할 것.
	교육안전정보국(교육통계과)	11	자료수집 협약 전 분야에 걸쳐 연령, 성별, 장애(disability status), 자립적 위치, 출신민족 및 출신국적,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주 배경 등에 따라 세분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중앙화 된 시스템(centralized system) 구축할 것.
	학교혁신지원실(교육과정정책과, 민주시민교육과)	13	보급, 인식제고 및 훈련 인권교육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적절한 자원 할당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아동권리교육 및 인권교육을 보장할 것.
	교육복지정책국(교육복지정책과, 유아교육정책과) 학교혁신지원실(교원양성연구과) 학생지원국(특수교육정책과)	13	보급, 인식제고 및 훈련 아동을 위해, 그리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의무적 훈련을 제공할 것.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학교혁신지원실(민주시민교육과)	16-17	비차별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해당법이 출신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할 것.
	학교혁신지원실(교수학습평가과, 민주시민교육과)	16-17	비차별 (c) 학교에서 학업성적에 근거한 차별을 방지하고 근절할 것;
	학생지원국(학생건강정책과)	19-20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포괄적 정책, 심리적·교육적·사회적 조치, 아동 및 가족, 나아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를 통해 아동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학생지원국(학생건강정책과)	19-20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b) 모든 보육환경 및 교육환경의 실내 공기 질 및 유해물질 노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
	학교혁신지원실(민주시민교육과)	21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b)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도록 보장할 것;
	학교혁신지원실(교수학습평가과, 민주시민교육과)	21	아동의 견해 존중 (a) 학업성적과 상관없이 학교 내 모든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
	학교혁신지원실(교수학습평가과,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지원국(학교생활문화과)	24	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모든 아동이 학업성적과 상관없이, 그리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 및 학교 규칙을 개정할 것.
	교육안전정보국(교육정보화과) 학교혁신지원실(민주시민교육과) 학생지원국(학교생활문화과)	25	사생활에 대한 권리 학교에서 아동의 스마트폰을 포함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협약 제18조에 따라 법과 실제에서 보장하고, 사전동의를 수집함에 있어 아동 친화적인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할 것.
	기획조정실(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학교혁신지원실(교원정책과, 민주시민교육과)	26-27	사생활에 대한 권리 (a) 모든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및 학대 사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당 사건의 규모, 원인, 특성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실시할 것;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학생지원국(학교생활문화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b) 온라인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방지, 근절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 및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 (c)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체벌” 및 “훈육적(disciplinary)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d)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교내 비폭력 의사소통 및 갈등중재를 증진하고,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참여형 아동양육 형태를 촉진할 것; 폭력과 학대신고를 장려할 것; (e) 심리적 학대를 포함한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것; 신고 지침을 수립할 것; (f)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보장할 것; (g)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임상심리사, 변호사의 수 증원, 아동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대리인 제공,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의 학대 피해아동쉼터 접근 보장 등을 포함하여 학대 예방, 피해아동의 회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을 보장할 것; (h) 앞서 언급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재정적, 그리고 기술적 자원을 할당할 것.
	기획조정실(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학교혁신지원실(민주시민교육과) 학생지원국(학교생활문화과)	28-29	성적 착취 및 학대 (a) 온라인 성매매와 그루밍, 그리고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기획조정실(양성평등정책담당관)	28-29	성적 착취 및 학대 (c)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할 것;
	기획조정실(양성평등정책담당관)	28-29	성적 착취 및 학대 (e) 학교를 포함하여 인식 개선을 강화하고, 접근성이 높고 비밀이 보장되며 아동친화적이고 효과적인 경로를 통한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 신고를 독려할 것;
	기획조정실(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학교혁신지원실(교원정책과) 학생지원국(학교생활문화과)	28-29	성적 착취 및 학대 (f) 교사를 포함하여 모든 성범죄자들이 강요의 증거 유무와 상관없이 기소되고, 적절한 제재를 받도록 하며, 성범죄자들에게 대한 처벌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학생지원국(특수교육정책과)	36	장애아동 (a) 장애에 대한 권리기반 접근을 채택하도록 법과 정책을 검토하고, 모든 장애아동을 포용하도록 보장할 것;
	학생지원국(학생건강정책과, 특수교육정책과)	36	장애아동 (c) 모든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기반시설 및 체육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 제공, 통학 지원,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및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실시할 것;
	학생지원국(학생건강정책과)	37	건강 및 보건 서비스 (c) 당노 및 비만 아동 등을 위한 어린이집 및 학교의 보건으로 지원을 강화할 것.
	학생지원국(학생건강정책과)	38	정신 건강 자살예방과 그것의 근본원인에 집중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의 정신적 웰빙(well-being)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기획조정실(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학생지원국(학교생활문화과, 학생건강정책과)	39	청소년 보건 (b) 학교 내 성교육, 임신 중 및 출산 지원 서비스, 산후 관리 강화와 육아지원 보장 및 부모의 동등한 육아 촉진을 포함하여, 청소년 임신을 효과적으로 다룰 것.
	학교혁신지원실(민주시민교육과) 학생지원국(학생건강정책과)	39	청소년 보건 알코올 광고 규제 강화, 금연 공간 확대, 스포츠 및 신체활동 촉진, 약물 남용 예방에 대한 생활 기술 교육에 아동참여 독려 등 비만, 흡연, 음주 예방과 관련한 이전의 권고들을 상기시키며,
	고등교육정책실(대입정책과) 평생교육국(진로교육정책과) 학교혁신지원실(학교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	41-42	교육 및 교육의 목표 교육과정 다양화, 대학입시제도 재검토, 진로상담 강화 등을 포함하여 경쟁 완화라는 목표하에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호(2001)에 부합하게 공교육 제도를 개선할 것.
	기획조정실(규제개혁법무담당관) 평생교육국(평생학습정책과) 학교혁신지원실(학교정책과)	41-42	교육 및 교육의 목표 (a)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것 공립 및 사립학교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할 것;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를 가할 것;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기획조정실(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학교혁신지원실(학교정책과 학생지원국(교육기획보장과, 특수교육정책과) 교육복지정책국(교육복지정책과)	41-42	교육 및 교육의 목표 (b) 모든 아동이 출신, 주거지, 사회경제적 및 이주 지위, 이주민으로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교육을 보장받도록 「교육기본법」을 검토할 것; 부정부패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합전형에 따른 입학 정원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농어촌지역 아동, 학교 밖 아동, 장애아동, 이주아동, 미등록 아동, 다문화아동 및 탈북 아동을 포함한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의 일반학교(mainstream school) 접근성과 통합을 보장하도록 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촉진할 것;
	학생지원국(특수교육정책과)	41-42	교육 및 교육의 목표 (c)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이해 및 인식 개선을 강화할 것;
	학생지원국(교육기획보장과)	41-42	교육 및 교육의 목표 (d) 학교를 중퇴하는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이러한 현상의 규모를 평가할 것; 모든 아동이 지원을 받고 일반학교(mainstream school)에 머무를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것; 대안교실 및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모든 대안학교가 인가를 받아 학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것;
	교육복지정책국(교육복지정책과,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안전정보국(교육시설과) 학교혁신지원실(교원양성연구과)	41-42	교육 및 교육의 목표 (e) 훈련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포함한 교사의 훈련 강화, 학교 기반시설 개선과 예산 증액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것;
	기획조정실(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학생지원국(학생건강정책과)	41-42	교육 및 교육의 목표 (f) 청소년임신 및 HIV/AIDS 예방에 특별히 유의하고,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 그리고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차별적이고 성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삭제할 것;
	평생교육국(진로교육정책과) 학교혁신지원실(교육과정정책과) 학생지원국(교육기획보장과)	41-42	교육 및 교육의 목표 (g) 특히 학교 밖 아동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진로상담과 자유학기제를 강화 및 다양화하고, 아동의 견해가 진로 선택의 기초가 되도록 보장할 것;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학교혁신지원실(민주시민교육과) 학생지원국(학교생활문화과, 학생건강정책과)	41-42	교육 및 교육의 목표 (h)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학교에서의 차별을 예방하고 근절할 것: 차별혐의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다룰 것;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 및 정서적 안정과 관련된 훈련을 제공할 것;
	학생지원국(학교생활문화과)	41-42	교육 및 교육의 목표 ㉠ 사이버 괴롭힘을 포함하여 집단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화할 것: 예방, 조기 발견 메커니즘, 아동 및 전문가의 역량 강화, 중재 절차, 사례 관련 자료수집을 위한 통일된 지침;
	학교혁신지원실(민주시민교육과)	41-42	교육 및 교육의 목표 ㉡ 아동 발달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전환하기 위한 인식제고 프로그램과 대중 캠페인을 실시할 것: 모든 아동이 스포츠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놀이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및 시설을 보장할 것. 이러한 시설은 안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포함하여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이고, 금연구역이며, 연령에 적합한 시설일 것.
	학생지원국(교육기회보장과)	43	난민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아동 (d) 보호자 미동반 아동의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아동권리협약과 부합하는 「아주아동권리법」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국가기술 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책과, 제품시장관리과, 제품안전정보과,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15	아동 권리와 기업부문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위한 아동보호 프레임워크(child protection framework)를 수립할 것. 그러한 프레임워크는 아동권리 침해를 보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영향평가,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아동권리 실현과 보호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할 것.
국가인권 위원회	기획조정관(기획재정담당관) 침해조사국(아동청소년인권과)	12	독립 모니터링 (a) 아동권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포함하여, (위원회)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할 것; (b) 아동권리위원회의 진정 접수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할 것; (c) 정부 당국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지도를 제고할 것; (d) 정책권고의 이행을 조정하고 모니터링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할 것; (e) 국가인권위원회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것.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교육협력심의관(인권교육기획과)	13	보급, 인식제고 및 훈련 인권교육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적절한 자원 할당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아동권리교육 및 인권교육을 보장할 것.
국방부	법무관리관	6	유보 제40조(2)항(b)(v)조 유보철회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
	인사복지실(인력정책과)	49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a) 만 18세 미만 아동을 군대나 비국가 무력단체에 징집하는 것 또는 적대행위에 가담시키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
	국방정책실(교육훈련정책과)	49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c) 선택의정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관학교 교육과정에 선택의정서 조항을 반영할 것.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주거복지정책과)	40	생활수준 (c) 아동의 주거 빈곤 및 아동의 시간제 고용률을 사정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것.
	주택토지실(주거복지정책과)	43	난민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아동 (c) 보호자 미동반 아동 및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난민신청아동과 난민아동, 그리고 이주아동이 출생등록, 교육,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정신적 신체적 보건으로, 건강보험, 경제적 지원과 주거지원, 여가, 학대 받은 경우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관행적 장벽을 없앨 것;
기획재정부	예산실(교육예산과) 재정관리국(재정관리총괄과) 재정혁신국(참여예산과)	10	자원의 할당 (a) 아동을 위한 모든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입법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적절한 재정적, 인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고, 그렇게 할당된 자원의 활용을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실행할 것; (b) 아동을 위한 예산 및 전반적인 사회복지지출을 GDP에 비례하여 증가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를 감소시킬 것; (c)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위한 예산할당을 도입할 것; (d) 협조하는 아동·청소년 의회 및 참여위원회를 포함하여, 예산수립 과정에서 아동참여를 강화할 것; (e) 아동의 권리 실현을 지원하는 부문의 재화 및 용역(상품과 서비스)의 가용성, 접근성, 그리고 품질을 보장하고, 뇌물수수나 특혜, 불규칙한 지급 등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공공조달 절차에서 책무성을 제고할 것.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대검찰청	형사부(형사2과)	45	매매, 거래, 약취유인 (c) 아동의 인신매매, 불법거래 및 탈취가 효과적으로 수사되고, 가해자들이 기소되어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형량이 부과되도록 하며, 인신매매 방지 전담조직과 인신매매 수사 및 기소를 위한 팀을 구성할 것;
	부산지방검찰청(여성아동범죄조사부) 인권정책관(인권기획담당관, 인권감독담당관) 대검찰청 형사부(형사2과)	46-47	소년사법 운영 (b) 형사 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 (d) 법적·관행적으로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에게 조사단계부터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법률구조 제도를 수립할 것; (e) “우범소년”에 관한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0호를 폐지할 것; (f) 다이버전 제도(diversion programmes)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구금형을 촉진할 것; (g) 「소년법」에 구금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기간만 사용할 것; 구금은 중단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보호처분” 기간 및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이 최종 형기에 산입되도록 보장할 것; 구금에 항소할 권리 및 부당한 구금에 대한 배상권을 보장할 것; (h) 일시구금을 포함하여, 구금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개인 공간,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음식, 교육, 신체적·심리적 건강 서비스, 운동, 여가, 가족과의 접견 및 진정 제도 등 제공);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주거지에서 가까운 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할 것;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구금시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보장할 것; (i) 아동이 성인과 함께 구금될 모든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j) 근신실 및 이송을 징계적 조치로 사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회복적 조치로 대체하고 촉진할 것; (k) 아동에 관한 무력 및 보호장비 사용을 규제할 것 및 그러한 사용이 특정한 상황에 제한되고, 비례적(proportional)일 것; (l) 구금된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 구금된 아동의 DNA 수집 및 HM 검사를 금지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기록을 삭제할 것; HM 정보는 비밀을 보장할 것; HM에 감염된 아동 구금자를 격리하지 않을 것; 강제적인 신체검사와 이발, 그리고 지속적인 위생시설 촬영을 금지할 것; (m)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비구금 조치를 강화할 것; (n)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을 국제, 장애,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을 근거로 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반부패·강력부(수사지휘·지원과)	48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b) 선택의정서에 따라 범죄자 인도가 이루어질 경우 쌍벌기벌성 및 최소심각성(minimum gravity) 요건이 제외되어야 하며, 이는 범죄자 인도의 법적 근거로 간주되어야 할 것;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41-42	교육 및 교육의 목표 ㉠ 아동 발달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전환하기 위한 인식제고 프로그램과 대중 캠페인을 실시할 것; 모든 아동이 스포츠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놀이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및 시설을 보장할 것. 이러한 시설은 안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포함하여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이고, 금연구역이며, 연령에 적합한 시설일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권익보호기획팀) 사무처 정책연구센터	46-47	소년사법 운영 (a) 적절한 자원을 지원받아, 법에 저촉된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루는 아동사법전문법원을 설립할 것; 아동 전담 법관 및 법 위반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이 아동권리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지속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c) 협약 제40조에 따라 공정한 재판 보장을 준수할 것; 아동 관련 사건의 공판에서 일반 청중을 배제하고, 재판 시작단계부터 아동의 법정 후견인 참여를 보장할 것; 침해(violations)를 보고함에 있어 비밀이 보장되는 경로를 제공·증진하고; 아동 관련 사건을 위한 언론보도 지침을 수립할 것;
법무부	검찰국(검찰과) 기획부(기획과, 법무교육과) 법무실(법무과)	7	법 제정 사법부, 검사, 그리고 변호사들의 협약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그들이 재판절차에 협약을 인용하고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할 것.
	검찰국(형사법제과)	7	법 제정 낙태 관련 개정 법률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
	인권국(인권정책과)	8	포괄적인 정책 및 전략 아동과 청소년 정책을 위한 기본계획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등 아동 관련 정책 및 전략이 협약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계획의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할당을 보장할 것.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기획조정실(기획재정담당관) 인권국(인권정책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정책과, 난민과)	10	자원의 할당 (a) 아동을 위한 모든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입법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적절한 재정적, 인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고, 그렇게 할당된 자원의 활용을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실행할 것; (b) 아동을 위한 예산 및 전반적인 사회복지지출을 GDP에 비례하여 증가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를 감소시킬 것; (c)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위한 예산할당을 도입할 것; (d) 현존하는 아동·청소년 의회 및 참여위원회를 포함하여, 예산수립 과정에서 아동참여를 강화할 것; (e) 아동의 권리 실현을 지원하는 부문의 재화 및 용역(상품과 서비스)의 가용성, 접근성, 그리고 품질을 보장하고, 뇌물수수나 특혜, 불규칙한 지급 등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공공조달 절차에서 책무성을 제고할 것.
	인권국(여성아동인권과)	11	자료수집 협약 전 분야에 걸쳐 연령, 성별, 장애(disability status), 지리적 위치, 출신민족 및 출신국적,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주 배경 등에 따라 세분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중앙화 된 시스템(centralized system) 구축할 것.
	기획부(기획과) 인권국(인권조사과, 인권정책과)	13	보급, 인식제고 및 훈련 아동을 위해, 그리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의무적 훈련을 제공할 것.
	범죄예방정책국(소년보호과)	13	보급, 인식제고 및 훈련 인권교육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적절한 자원 할당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아동권리교육 및 인권교육을 보장할 것.
	인권국(인권정책과, 여성아동인권과)	15	아동 권리와 기업부문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위한 아동보호 프레임워크(child protection framework)를 수립할 것. 그러한 프레임워크는 아동권리 침해를 보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영향평가,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아동권리 실현과 보호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할 것.
	인권국(인권정책과, 여성아동인권과)	16-17	비차별 (a)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및 전략을 시행하고, 취약하고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한 차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대중 캠페인을 시행할 것;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법무실 법무심의관 인권국(인권정책과, 여성아동인권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민정보과, 이민조사과,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16-17	비차별 (b) 당사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아동(농어촌지역 아동,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장애아동, 이주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탈북 아동 등)이 동등하게 출생시 등록되고,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교육, 보건, 복지, 여가, 그리고 국가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법무실 법무심의관	21	아동의 견해 존중 (c) 발의된 가사소송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포함하여,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견해를 표현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연령 제한을 폐지할 것.
	법무실 법무심의관 인권국(인권정책과, 여성아동인권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민정보과, 이민조사과,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난민정책과)	22	출생등록 (a)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가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b)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될 수 있도록 미혼부가 그들의 자녀를 등록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것; (c) 모니터링 체계 수립 등 미등록 출생아동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d) 출생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것.
	법무실 법무심의관 인권국(여성아동인권과)	23	정체성에 대한 권리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
	인권국(인권구조과, 여성아동인권과)	26-27	체벌을 포함한 폭력 (a) 모든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및 학대 사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당 사건의 규모, 원인, 특성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실시할 것; (b) 온라인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방지, 근절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 및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 (c)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체벌” 및 “훈육적(disciplinary)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d)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교내 비폭력 의사소통 및 갈등중재를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p>증진하고,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참여형 아동양육 형태를 촉진할 것; 폭력과 학대신고를 장려할 것;</p> <p>(e) 심리적 학대를 포함한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것; 신고 지침을 수립할 것;</p> <p>(f)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보장할 것;</p> <p>(g)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임상심리사, 변호사의 수 증원, 아동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대리인 제공,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의 학대 피해아동쉼터 접근 보장 등을 포함하여 학대 예방, 피해아동의 회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을 보장할 것;</p> <p>(h) 앞서 언급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재정적, 그리고 기술적 지원을 할 것.</p>
	인권국(여성아동인권과)	28-29	<p>성적 착취 및 학대</p> <p>(a) 온라인 성매매와 그루밍, 그리고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p>
	인권국(여성아동인권과) 검찰국(형사법제과)	28-29	<p>성적 착취 및 학대</p> <p>(b) 온라인 그루밍을 정의하고 형사범죄로 규정할 것;</p>
	인권국(여성아동인권과)	28-29	<p>성적 착취 및 학대</p> <p>(c) 미성년자 의제공간 연령을 상향할 것;</p>
	인권국(인권구조과, 여성아동인권과) 범죄예방정책국(범죄예방기획과) 검찰국(형사법제과)	28-29	<p>성적 착취 및 학대</p> <p>(d) 성매매 및 성착취에 연관된("대상 아동") 모든 아동, 다시 말해 만 21세 미만의 모든 개인을, 법률상 "피해자"로 명시, "보호처분" 폐지, 지원서비스 및 법적 조력 제공, 보상과 구제를 포함한 사법절차 접근성 보장 등을 포함하여,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피해자로 처우할 것;</p>
	인권국(여성아동인권과)	28-29	<p>성적 착취 및 학대</p> <p>(e) 학교를 포함하여 인식 개선을 강화하고, 접근성이 높고 비밀이 보장되며 아동친화적이고 효과적인 경로를 통한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 신고를 독려할 것;</p>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인권국(여성아동인권과) 검찰국(형사법제과)	28-29	성적 착취 및 학대 (f) 교사를 포함하여 모든 성범죄자들이 강요의 증거 유무와 상관없이 기소되고, 적절한 제재를 받도록 하며, 성범죄자들에게 대한 처벌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
	법무실(국제법무과) 인권국(여성아동인권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정책과, 이민통합과)	30	유해한 관행 당사국이 예외 없이 조혼(child marriage)을 금지하고, 출신국과의 협력, 이민자 및 난민을 위한 공적 등록 절차(civil registration procedures) 개설 등 이러한 관행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인권국(여성아동인권과)	31	가정환경 (d) 양육비에 대한 접근 및 양육비 이행을 촉진 및 보장하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
	범죄예방정책국(범죄예방기획과) 인권국(여성아동인권과)	32	가정환경 상실 아동 (b) 가정 내 아동학대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아동이 가출하는 사유를 찾고 이러한 현상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선별적이고 비징벌적인 조치를 취하며, 가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할 것;
	인권국(여성아동인권과)	32	가정환경 상실 아동 (d) 보호자 보호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호자의 보호능력을 강화할 것.
	법무실(국제법무과)	33	입양 (a)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모든 연령대에 있는 아동을 위한 입양절차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입양에 있어 미혼모의 자발적인 동의가 의무적일 것; (b)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고 입양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실시할 것; (c) 절차상 불필요한 지연 방지 및 입양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그들의 활동이 적절히 규제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d) 파양된 사례를 포함하여,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및 사후서비스를 강화할 것; (e) 입양아동이 그들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찾고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도록 보장할 것;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f)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을 고려하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할 것.
	법무실(국제법무과)	34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부모책임 및 아동의 보호조치와 관련한 관할, 준거법, 승인, 집행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및 "아동양육 및 기타 가족 부양의 국제적 청구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할 것.
	교정본부(사회복귀과, 보안과) 인권국(여성아동인권과)	35	수용자 자녀 교육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수용자 자녀 보호를 위한 정책 도입 및 이들 아동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
	인권국(인권정책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정책과, 난민정책과)	36	장애아동 (b) 난민신청 아동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아동을 위하여 재활 치료, 적절한 복지, 그리고 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조기 발견 및 개입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보장할 것.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민통합과)	41-42	교육 및 교육의 목표 (b) 모든 아동이 출신, 주거지, 사회경제적 및 이주 지위, 이주민으로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교육을 보장받도록 「교육기본법」을 검토할 것; 부정부패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합전형에 따른 입학 정원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농어촌지역 아동, 학교 밖 아동, 장애아동, 이주아동, 미등록 아동, 다문화아동 및 탈북 아동을 포함한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의 일반학교(mainstream school) 접근성과 통합을 보장하도록 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촉진할 것;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기획과)	43	난민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아동 (a)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이주아동 구금을 금지할 것; 비구금형 대안을 보장할 것; 난민과 가족 재결합 문제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체류관리과,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난민정책과)	43	난민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아동 (b) 난민 및 무국적 아동의 지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개발할 것; 장기거주 이주아동의 지위를 규정할 것; 미등록아동을 포함한 난민신청아동, 난민아동 및 이주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것;
	법무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정책과,	43	난민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아동 (c) 보호자 미동반 아동 및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난민신청아동과 난민아동, 그리고 이주아동이 출생등록,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이민통합과)		보육,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정신적 신체적 보건의료, 건강보험, 경제적 지원과 주거지원, 여가, 학대 받은 경우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관행적 장벽을 없앨 것;
	인권국(여성아동인권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정책과, 이민통합과)	43	난민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아동 (d) 보호자 미등반 아동의 보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아동권리협약과 부합하는 「이주아동권리법」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인권국(인권정책과, 여성아동인권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민통합과, 난민정책과)	43	난민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아동 (e) 난민신청자 및 난민 중 특히 아동에 대한 혐오발언 근절 캠페인을 전개할 것;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민정보과)	43	난민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아동 (f) 미등록아동을 포함한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할 것;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기획과) 기획조정실(기획재정담당관)	43	난민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아동 (g) 난민아동, 난민신청아동 및 이주아동을 위한 예산을 배정할 것.
	검찰국(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	45	매매, 거래, 약취유인 (a) 인신매매의 정의를 국제법에 맞게 정비하여, 강요, 대가, 피해자의 초국가적 이동 요건을 삭제할 것;
	인권국(인권구조과, 여성아동인권과)	45	매매, 거래, 약취유인 (b) 경찰, 출입국관리소, 노동청,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훈련을 포함하여, 특히 취약계층 피해아동의 식별 및 위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식별 지침을 이행할 것;
	검찰국(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	45	매매, 거래, 약취유인 (c) 아동의 인신매매, 불법거래 및 탈취가 효과적으로 수사되고, 가해자들이 기소되어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형량이 부과되도록 하며, 인신매매 방지 전담조직과 인신매매 수사 및 기소를 위한 팀을 구성할 것;
	인권국(인권구조과, 여성아동인권과)	45	매매, 거래, 약취유인 (d) 인신매매 또는 불법거래의 아동 피해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형사적 제재, 강제퇴거의 대상으로 삼거나, 폐쇄된 시설에 절대로 구금하지 말 것;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인권국(인권구조과)	45	매매, 거래, 약취유인 (e) 남자아동, 외국인 아동, 장애 아동을 포함하여 인신매매의 아동 피해를 위한 쉼터 및 통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것.
	검찰국(형사법제과) 범죄예방정책국(범죄예방기획과, 소년보호과) 인권국(인권조사과, 여성아동인권과)	46-47	소년사법 운영 (b) 형사 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 (d) 법적·관행적으로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에게 조사단계부터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법률 구조 제도를 수립할 것; (e) “우범소년”에 관한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폐지할 것; (f) 다이버전 제도(diversion programmes)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구금형을 촉진할 것; (g) 「소년법」에 구금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기간만 사용할 것; 구금은 중단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보호처분” 기간 및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이 최종 형기에 산입되도록 보장할 것; 구금에 항소할 권리 및 부당한 구금에 대한 배상권을 보장할 것; (h) 일사구금을 포함하여, 구금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개인 공간,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음식, 교육, 신체적·심리적 건강 서비스, 운동, 여가, 가족과의 접견 및 진정 제도 등 제공);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주거지에서 가까운 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할 것;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구금시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보장할 것; (i) 아동이 성인과 함께 구금될 모든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j) 근신실 및 이송을 징계적 조치로 사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회복적 조치로 대체하고 촉진할 것; (k) 아동에 관한 무력 및 보호장비 사용을 규제할 것 및 그러한 사용이 특정한 상황에 제한되고, 비례적(proportional)일 것; (l) 구금된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 구금된 아동의 DNA 수집 및 HIV 검사를 금지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기록을 삭제할 것; HIV 정보는 비밀을 보장할 것; HIV에 감염된 아동 구금자를 격리하지 않을 것; 강제적인 신체검사 및 이발, 그리고 지속적인 위생시설 활용을 금지할 것; (m)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비구금 조치를 강화할 것; (n)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을 국적, 장애,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을 근거로 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검찰국(형사법제과) 인권국(여성아동인권과)	48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a) 여행 및 관광에서의 아동 매매 및 아동 성착취를 포함하여,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모든 행위 및 활동을 국내 형사법 하에서 완전히 포괄할 것;
	검찰국(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	48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b) 선택의정서에 따라 범죄자 인도가 이루어질 경우 쌍방가벌성 및 최소심각성(minimum gravity) 요건이 제외되어야 하며, 이는 범죄자 인도의 법적 근거로 간주되어야 할 것;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48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c) 유죄를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해외여행 제한이 여권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것.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기획과, 난민정책과, 난민심의회과)	49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b) 분쟁지역 출신 난민신청아동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해당 아동에 대한 자료를 구분하여 수집할 것;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할 것;
	인권국(인권정책과)	49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c) 선택의정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관학교 교육과정에 선택의정서 조항을 반영할 것.
	인권국(인권정책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정책과)	5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기준을 고려할 것.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7	법 제정 사법부, 검사, 그리고 변호사들의 협약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그들이 재판절차에 협약을 인용하고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할 것.
	사법지원실	18	아동 최상의 이익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모든 관련된 재판절차, 의사결정, 정책 및 프로그램에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반영하며 일관성 있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 또한, (a) 폭넓은 아동 참여와 함께 아동영향평가제도의 적용을 확장할 것; (b)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결정하고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적절한 비중을 부여하는 절차 및 기준을 개발할 것.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기획조정실	21	아동의 견해 존중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의 견해가 그들과 관련된 가정, 학교, 법원 및 관련 행정 절차와 기타 절차에서 정당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기획조정실	22	출생등록 (a)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가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b)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될 수 있도록 미혼부가 그들의 자녀를 등록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것; (c) 모니터링 체계 수립 등 미등록 출생아동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d) 출생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것.
	기획조정실	31	가정환경 (c) “면접교섭센터” 설치 확대 및 기타 대안적인 해결책 마련을 포함하여, 이혼 가정 아동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할 것;
	사법지원실	31	가정환경 (d) 양육비에 대한 접근 및 양육비 이행을 촉진 및 보장하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46-47	소년사법 운영 (a) 적절한 지원을 지원받아, 법에 저촉된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루는 아동사법전문법원을 설립할 것; 아동 전담 법관 및 법 위반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이 아동권리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지속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c) 협약 제40조에 따라 공정한 재판 보장을 준수할 것; 아동 관련 사건의 공판에서 일반 청중을 배제하고, 재판 시작단계부터 아동의 법정 후견인 참여를 보장할 것; 침해(violations)를 보고함에 있어 비밀이 보장되는 경로를 제공·증진하고; 아동 관련 사건을 위한 언론보도 지침을 수립할 것;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출산정책과)	7	법 제정 낙태 관련 개정 법률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8	포괄적인 정책 및 전략 아동과 청소년 정책을 위한 기본계획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등 아동 관련 정책 및 전략이 협약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계획의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할당을 보장할 것.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9	조정 적절한 인적, 재정적 자원의 할당, 영구적 사무국 설치 및 아동권리 조정기구로서 위원회의 인지도 증진을 통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할 것.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9	조정 조정에 관한 이전 권고를 상기하며, 아동권리 시안을 다루는 모든 관계 기관들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인구정책실(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복지정책과, 보육정책관)	10	자원의 할당 (a) 아동을 위한 모든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입법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적절한 재정적, 인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고, 그렇게 할당된 자원의 활용을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시행할 것; (b) 아동을 위한 예산 및 전반적인 사회복지지출을 GDP에 비례하여 증가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를 감소시킬 것; (c)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위한 예산할당을 도입할 것; (d) 현존하는 아동·청소년 의회 및 참여위원회를 포함하여, 예산수립 과정에서 아동참여를 강화할 것; (e) 아동의 권리 실현을 지원하는 부문의 재화 및 용역(상품과 서비스)의 가용성, 접근성, 그리고 품질을 보장하고, 뇌물수수나 특혜, 불규칙한 지급 등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공공조달 절차에서 책무성을 제고할 것.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아동학대대응과)	11	자료수집 협약 전 분야에 걸쳐 연령, 성별, 장애(disability status), 지리적 위치, 출신민족 및 출신국적,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주 배경 등에 따라 세분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중앙화 된 시스템(centralized system) 구축할 것.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13	보급, 인식제고 및 훈련 인권교육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적절한 자원 할당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아동권리교육 및 인권교육을 보장할 것.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인구정책실(아동권리과, 아동학대대응과, 보육정책과)	13	보급, 인식제고 및 훈련 아동을 위해, 그리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의무적 훈련을 제공할 것.
	보건의료정책실(보건의료정책과) 인구정책실(출산정책과, 아동복지정책과)	16-17	비차별 (b) 당사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아동(농어촌지역 아동,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장애아동, 이주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탈북 아동 등)이 동등하게 출생시 등록되고,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교육, 보건, 복지, 여가, 그리고 국가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18	아동 최상의 이익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모든 관련된 재판절차, 의사결정, 정책 및 프로그램에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반영하며 일관성 있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 또한, (a) 폭넓은 아동 참여와 함께 아동영향평가제도의 적용을 확장할 것; (b)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결정하고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적절한 비중을 부여하는 절차 및 기준을 개발할 것.
	건강정책국(자살예방정책과)	19-20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포괄적 정책, 심리적·교육적·사회적 조치, 아동 및 가족, 나아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를 통해 아동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인구정책실(보육기반과)	19-20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b) 모든 보육환경 및 교육환경의 실내 공기 질 및 유해물질 노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21	아동의 견해 존중 (b)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시안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도록 보장할 것;
	보건의료정책실(보건의료정책과) 인구정책실(출산정책과, 아동복지정책과)	22	출생등록 (a)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가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b)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될 수 있도록 미혼부가 그들의 자녀를 등록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것;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c) 모니터링 체계 수립 등 미등록 출생아동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d) 출생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것.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23	정체성에 대한 권리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
	기획조정실(재정운용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과, 아동학대대응과)	26-27	체벌을 포함한 폭력 (a) 모든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및 학대 사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당 사건의 규모, 원인, 특성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실시할 것; (b) 온라인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방지, 근절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 및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 (c)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체벌” 및 “훈육적(disciplinary)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d)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교내 비폭력 의사소통 및 갈등중재를 증진하고,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참여형 아동양육 형태를 촉진할 것; 폭력과 학대신고를 장려할 것; (e) 심리적 학대를 포함한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것; 신고 지침을 수립할 것; (f)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보장할 것; (g)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임상심리사, 변호사의 수 증원, 아동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대리인 제공,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의 학대 피해아동쉼터 접근 보장 등을 포함하여 학대 예방, 피해아동의 회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을 보장할 것; (h) 앞서 언급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재정적, 그리고 기술적 지원을 할 것.
	인구정책실(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	31	가정환경 (a)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포함하여, 돌봄 서비스의 범위와 적절한 유연성을 늘리고, 모든 아동이 국적에 관계없이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및 재정적 지원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과)	32	가정환경 상실 아동 (a) 가능한 한 모든 아동들의 가정 기반 양육을 지원 및 촉진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의 집을 향상 및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며, 구체적인 탈시설계획을 통해 시설 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아동학대대응과)	32	가정환경 상실 아동 (b) 가정 내 아동학대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아동이 가출하는 사유를 찾고 이러한 현상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선별적이고 비징벌적인 조치를 취하며, 가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할 것;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과)	32	가정환경 상실 아동 (c) 아동의 필요, 최선의 이익 및 견해에 따라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대안 양육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대안 양육의 질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진정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 가족 재결합 지원을 강화하고 성년에 이른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과)	32	가정환경 상실 아동 (d) 보호자 보호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호자의 보호능력을 강화할 것.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33	입양 (a)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모든 연령대에 있는 아동을 위한 입양절차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입양에 있어 미혼모의 자발적인 동의가 의무적일 것; (b)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고 입양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실시할 것; (c) 절차상 불필요한 지연 방지 및 입양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그들의 활동이 적절히 규제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d) 파양된 사례를 포함하여,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및 사후서비스를 강화할 것; (e) 입양아동이 그들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찾고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도록 보장할 것; (f)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을 고려하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할 것.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34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부모책임 및 아동의 보호조치와 관련한 관할, 준거법, 승인, 집행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및 "아동양육 및 기타 가족 부양의 국제적 청구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할 것.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장애인정책국(장애인정책과, 장애인서비스과)	36	장애아동 (a) 장애에 대한 권리기반 접근을 채택하도록 법과 정책을 검토하고, 모든 장애아동을 포용하도록 보장할 것:
	보건의료정책실(공공의료과) 장애인정책국(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서비스과)	36	장애아동 (b) 난민신청 아동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아동을 위하여 재활 치료, 적절한 복지, 그리고 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조기 발견 및 개입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보장할 것:.
	장애인정책국(장애인권익지원과)	36	장애아동 (d) 장애아동이 사회적 낙인 및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애 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강화할 것.
	건강정책국(건강정책과) 기획조정실(재정운용담당관) 보건의료정책실(공공의료과)	37	건강 및 보건 서비스 보건예산을 늘리고 지역 병원을 강화하라는 이전의 권고를 상기시키며,
	건강보험정책국(보험정책과) 건강정책국(건강증진과) 사회복지정책실(복지정책과)	37	건강 및 보건 서비스 (a)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 아동 및 이주아동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할 것;
	건강정책국(건강증진과) 보건의료정책실(보건의료정책과) 인구정책실(보육정책과)	37	건강 및 보건 서비스 (c) 당노 및 비만 아동 등을 위한 어린이집 및 학교의 보건의료 지원을 강화할 것.
	건강정책국(정신건강정책과, 자살예방정책과) 기획조정실(보건복지상담센터)	38	정신 건강 자살예방과 그것의 근본원인에 집중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의 정신적 웰빙(well-being)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40	생활수준 (a)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40	생활수준 (b) 빈곤층 아동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빈곤층 아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알리고 채택하며 시행할 것;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40	생활수준 (c) 아동의 주거 빈곤 및 아동의 시간제 고용률을 사정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것.
	장애인정책국(장애인서비스과)	41-42	교육 및 교육의 목표 (c)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이해 및 인식 개선을 강화할 것;
	건강정책국(건강증진과)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41-42	교육 및 교육의 목표 ㉠ 아동 발달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관심과 태도를 전환하기 위한 인식제고 프로그램과 대중 캠페인을 실시할 것; 모든 아동이 스포츠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놀이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및 시설을 보장할 것. 이러한 시설은 안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포함하여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이고, 금연구역이며, 연령에 적합한 시설일 것.
	건강보험정책국(보험정책과)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아동학대대응과)	43	난민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아동 (c) 보호자 미등록 아동 및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난민신청아동과 난민아동, 그리고 이주아동이 출생등록, 보육,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정신적 신체적 보건의료, 건강보험, 경제적 지원과 주거지원, 여가, 학대 받은 경우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관행적 장벽을 없앨 것;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43	난민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아동 (d) 보호자 미등록 아동의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아동권리협약과 부합하는 「이주아동권리법」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인구정책실(인구정책총괄과)	43	난민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아동 (f) 미등록아동을 포함한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할 것;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기획조정실(재정운용담당관)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보육정책과)	43	난민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아동 (g) 난민아동, 난민신청아동 및 이주아동을 위한 예산을 배정할 것.
	인구정책실(아동복지정책과)	50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를 비준할 것.
산업통상 자원부	무역투자실(해외투자과)	15	아동 권리와 기업부문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위한 아동보호 프레임워크(child protection framework)를 수립할 것. 그러한 프레임워크는 아동권리 침해를 보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영향평가,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아동권리 실현과 보호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할 것.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청소년정책과)	8	포괄적인 정책 및 전략 아동과 청소년 정책을 위한 기본계획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등 아동 관련 정책 및 전략이 협약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계획의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할당을 보장할 것.
	청소년가족정책실(청소년정책과)	9	조정 조정에 관한 이전 권고를 상기하며, 아동권리 시안을 다루는 모든 관계 기관들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기획조정실(기획재정담당관) 청소년가족정책실(청소년정책과)	10	자원의 할당 (a) 아동을 위한 모든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입법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적절한 재정적, 인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고, 그렇게 할당된 자원의 활용을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실행할 것; (b) 아동을 위한 예산 및 전반적인 사회복지지출을 GDP에 비례하여 증가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를 감소시킬 것; (c)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위한 예산할당을 도입할 것; (d) 현존하는 아동·청소년 의회 및 참여위원회를 포함하여, 예산수립 과정에서 아동참여를 강화할 것; (e) 아동의 권리 실현을 지원하는 부문의 재화 및 용역(상품과 서비스)의 가용성, 접근성, 그리고 품질을 보장하고, 뇌물수수나 특혜, 불규칙한 지급 등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공공조달 절차에서 책무성을 제고할 것.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청소년가족정책실(청소년정책과)	11	자료수집 협약 전 분야에 걸쳐 연령, 성별, 장애(disability status), 지리적 위치, 출신민족 및 출신국적,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주 배경 등에 따라 세분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중앙화 된 시스템(centralized system) 구축할 것.
	청소년가족정책실(청소년정책과)	13	보급, 인식제고 및 훈련 인권교육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적절한 자원 할당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아동권리교육 및 인권교육을 보장할 것.
	청소년가족정책실(청소년정책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보호환경과)	13	보급, 인식제고 및 훈련 아동을 위해, 그리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의무적 훈련을 제공할 것.
	여성정책국(여성정책과) 청소년가족정책실(청소년정책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16-17	비차별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해당법이 출신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할 것.
	청소년가족정책실(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과)	16-17	비차별 (b) 당사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아동(농어촌지역 아동,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장애아동, 이주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탈북 아동 등)이 동등하게 출생시 등록되고,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교육, 보건, 복지, 여가, 그리고 국가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청소년가족정책실(가족지원과)	16-17	비차별 (d) 양육비 접근 등에 있어 모든 가정에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 및 관행을 점검할 것.
	청소년가족정책실(청소년정책과, 청소년자립지원과)	19-20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포괄적 정책, 심리적·교육적·사회적 조치, 아동 및 가족, 나아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를 통해 아동 자신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청소년가족정책실(청소년정책과)	21	아동의 견해 존중 (b)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도록 보장할 것;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권익증진국(권익정책과, 아동청소년보호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26-27	<p>체벌을 포함한 폭력</p> <p>(a) 모든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및 학대 사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당 사건의 규모, 원인, 특성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실시할 것;</p> <p>(b) 온라인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방지, 근절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 및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p> <p>(c)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체벌” 및 “훈육적(disciplinary)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p> <p>(d)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교내 비폭력 의사소통 및 갈등중재를 증진하고,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참여형 아동양육 형태를 촉진할 것; 폭력과 학대신고를 장려할 것;</p> <p>(e) 심리적 학대를 포함한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것; 신고 지침을 수립할 것;</p> <p>(f)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보장할 것;</p> <p>(g)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임상심리사, 변호사의 수 증원, 아동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대리인 제공,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의 학대 피해아동쉼터 접근 보장 등을 포함하여 학대 예방, 피해아동의 회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을 보장할 것;</p> <p>(h) 앞서 언급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재정적, 그리고 기술적 지원을 할 것.</p>
	권익증진국(권익정책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28-29	<p>성적 착취 및 학대</p> <p>(a) 온라인 성매매와 그루밍, 그리고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p>
	권익증진국(아동청소년성보호과)	28-29	<p>성적 착취 및 학대</p> <p>(b) 온라인 그루밍을 정의하고 형사범죄로 규정할 것;</p>
	권익증진국(권익지원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28-29	<p>성적 착취 및 학대</p> <p>(c) 미성년자 의제공간 연령을 상향할 것;</p>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권익증진국(아동청소년성보호과)	28-29	성적 착취 및 학대 (d) 성매매 및 성적학대에 연관된("대상 아동") 모든 아동, 다시 말해 만 18세 미만의 모든 개인을, 법률상 "피해자"로 명시, "보호처분" 폐지, 지원서비스 및 법적 조력 제공, 보상과 구제를 포함한 사법절차 접근성 보장 등을 포함하여,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피해자로 처우할 것;
	권익증진국(아동청소년성보호과, 폭력예방교육과)	28-29	성적 착취 및 학대 (e) 학교를 포함하여 인식 개선을 강화하고, 접근성이 높고 비밀이 보장되며 아동친화적이고 효과적인 경로를 통한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 신고를 독려할 것;
	권익증진국(아동청소년성보호과)	28-29	성적 착취 및 학대 (f) 교사를 포함하여 모든 성범죄자들이 강요의 증거 유무와 상관없이 기소되고, 적절한 제재를 받도록 하며, 성범죄자들에게 대한 처벌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
	청소년가족정책실(가족지원과)	31	가정환경 (d) 양육비에 대한 접근 및 양육비 이행을 촉진 및 보장하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
	청소년가족정책실(가족지원과)	31	가정환경 (e)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방지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양육비 지원 자격도 그에 따라 개정할 것.
	청소년가족정책실(청소년자립지원과)	32	가정환경 상실 아동 (a) 가능한 한 모든 아동들의 가정 기반 양육을 지원 및 촉진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가정양육의 질을 향상 및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당하며, 구체적인 탈시설계획을 통해 시설 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
	청소년가족정책실(청소년자립지원과)	32	가정환경 상실 아동 (b) 가정 내 아동학대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아동이 가출하는 사유를 찾고 이러한 현상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선별적이고 비징벌적인 조치를 취하며, 가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할 것;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청소년가족정책실(청소년자립지원과, 가족정책과)	32	가정환경 상실 아동 (c) 아동의 필요, 최선의 이익 및 견해에 따라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대안 양육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대안 양육의 질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진정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 가족 재결합 지원을 강화하고 성년에 이른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청소년가족정책실(청소년정책과, 청소년자립지원과)	38	정신 건강 자살예방과 그것의 근본원인에 집중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의 정신적 웰빙(well-being)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청소년가족정책실(청소년보호환경과)	39	청소년 보건 알코올 광고 규제 강화, 금연 공간 확대, 스포츠 및 신체활동 촉진, 약물 남용 예방에 대한 생활 기술 교육에 아동참여 독려 등 비만, 흡연, 음주 예방과 관련한 이전의 권고들을 상기시키며,
	청소년가족정책실(청소년보호환경과)	39	청소년 보건 (a)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고, 구체적 지원 및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CYS-Net)의 역량을 구축하여 문제적이고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것;
	청소년가족정책실(가족지원과)	39	청소년 보건 (b) 학교 내 성교육, 임신 중 및 출산 지원 서비스, 산후 관리 강화와 육아지원 보장 및 부모의 동등한 육아 촉진을 포함하여, 청소년 임신을 효과적으로 다룰 것.
	청소년가족정책실(학교밖청소년지원과)	41-42	교육 및 교육의 목표 (b) 모든 아동이 출산, 주거지, 사회경제적 및 이주 지위, 이주민으로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교육을 보장받도록 「교육기본법」을 검토할 것; 부정부패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합전형에 따른 입학 정원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농어촌지역 아동, 학교 밖 아동, 장애아동, 이주아동, 미등록 아동, 다문화아동 및 탈북 아동을 포함한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의 일반학교(mainstream school) 접근성과 통합을 보장하도록 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촉진할 것;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청소년가족정책실(학교밖청소년지원과)	41-42	교육 및 교육의 목표 (d) 학교를 중퇴하는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이러한 현상의 규모를 평가할 것; 모든 아동이 지원을 받고 일반학교(mainstream school)에 머무를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것; 대안교실 및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모든 대안학교가 인가를 받아 학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것;
	권익증진국(권익기반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41-42	교육 및 교육의 목표 (f) 청소년임신 및 HIV/AIDS 예방에 특별히 유의하고,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 그리고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차별적이고 성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삭제할 것;
	청소년가족정책실(학교밖청소년지원과)	41-42	교육 및 교육의 목표 (g) 특히 학교 밖 아동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진로상담과 자유학기제를 강화 및 다양화하고, 아동의 견해가 진로 선택의 기초가 되도록 보장할 것;
	청소년가족정책실(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활동안전과)	41-42	교육 및 교육의 목표 (h) 사이버 괴롭힘을 포함하여 집단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화할 것: 예방, 조기 발견 메커니즘, 아동 및 전문가의 역량 강화, 중재 절차, 사례 관련 자료수집을 위한 통일된 지침;
	청소년가족정책실(청소년활동진흥과)	41-42	교육 및 교육의 목표 (i) 아동 발달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전환하기 위한 인식제고 프로그램과 대중 캠페인을 실시할 것; 모든 아동이 스포츠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놀이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및 시설을 보장할 것. 이러한 시설은 안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포함하여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이고, 금연구역이며, 연령에 적합한 시설일 것.
	청소년가족정책실(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보호환경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44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책무성과 사회복귀를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조치(일하는 아동의 근로조건 개선 및 기업 감독을 위한 정책적 조치)의 유효성에 대한 점검과 보고를 강화할 것.
	권익증진국(권익정책과)	45	매매, 거래, 약취유인 (b) 경찰, 출입국관리소, 노동청,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훈련을 포함하여, 특히 취약계층 피해아동의 식별 및 위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식별 지침을 이행할 것;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기획조정실(국제협력담당관)	52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여성 및 아동인권 보호와 증진위원회와 협력할 것.
외교부	개발협력국(개발정책과)	14	국제협력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0.7%까지 확대한다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할 것.
	개발협력국(개발협력과)	14	국제협력 공적개발원조가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아동권리에 우선 순위를 두고, 당사국 및 해당 개발 협력 상대국에 대한 본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국제개발원조 정책과 프로그램의 설계, 이행, 모니터링, 평가에 적절히 통합할 것.
	국제기구국(인권사회과)	15	아동 권리와 기업부문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위한 아동보호 프레임워크(child protection framework)를 수립할 것. 그러한 프레임워크는 아동권리 침해를 보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영향평가,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아동권리 실현과 보호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할 것.
	국제기구국(국제안보과)	48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b) 선택의정서에 따라 범죄자 인도가 이루어질 경우 쌍방기벌성 및 최소심각성(minimum gravity) 요건이 제외되어야 하며, 이는 범죄자 인도의 법적 근거로 간주되어야 할 것;
	재외동포영사실(여권과)	48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c) 유죄를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해외여행 제한이 여권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것.
	국제기구국(인권사회과)	52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여성 및 아동인권 보호와 증진위원회와 협력할 것.
조달청	감사담당관 조달관리국(공정조달관리과)	10	자원의 할당 (a) 아동을 위한 모든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입법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적절한 재정적, 인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고, 그렇게 할당된 자원의 활용을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실행할 것; (b) 아동을 위한 예산 및 전반적인 사회복지지출을 GDP에 비례하여 증가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를 감소시킬 것; (c)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위한 예산할당을 도입할 것; (d) 현존하는 아동·청소년 의회 및 참여위원회를 포함하여, 예산수립 과정에서 아동참여를 강화할 것;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e) 아동의 권리 실현을 지원하는 부문의 재화 및 용역(상품과 서비스)의 가용성, 접근성, 그리고 품질을 보장하고, 뇌물수수나 특혜, 불규칙한 지급 등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공공조달 절차에서 책무성을 제고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국	24	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아동참여를 증진하고, 현재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 및 정당 가입 연령 하향을 고려할 것.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예방접종관리과)	37	건강 및 보건 서비스 (b) 이주 아동의 예방접종 접근성을 개선할 것;
통계청	사회통계국(국장, 인구동향과)	11	자료수집 협약 전 분야에 걸쳐 연령, 성별, 장애(disability status), 지리적 위치, 출신민족 및 출신국적,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주 배경 등에 따라 세분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중앙화 된 시스템(centralized system) 구축할 것.
통일부	인도협력국(정착지원과)	16-17	비차별 (b) 당사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아동(농어촌지역 아동,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장애아동, 이주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탈북 아동 등)이 동등하게 출생시 등록되고,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교육, 보건, 복지, 여가, 그리고 국가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인도협력국(정착지원과)	41-42	교육 및 교육의 목표 (b) 모든 아동이 출신, 주거지, 사회경제적 및 이주 지위, 이주민으로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교육을 보장받도록 「교육기본법」을 검토할 것: 부정부패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합전형에 따른 입학 정원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농어촌지역 아동, 학교 밖 아동, 장애아동, 이주아동, 미등록 아동, 다문화아동 및 탈북 아동을 포함한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의 일반학교(mainstream school) 접근성과 통합을 보장하도록 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촉진할 것;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재정정책과)	10	자원의 할당 (a) 아동을 위한 모든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입법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적절한 재정적, 인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고, 그렇게 할당된 자원의 활용을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시행할 것; (b) 아동을 위한 예산 및 전반적인 사회복지지출을 GDP에 비례하여 증가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를 감소시킬 것;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c)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위한 예산할당을 도입할 것; (d) 현존하는 아동·청소년 의회 및 참여위원회를 포함하여, 예산수립 과정에서 아동참여를 강화할 것; (e) 아동의 권리 실현을 지원하는 부문의 재화 및 용역(상품과 서비스)의 가용성, 접근성, 그리고 품질을 보장하고, 뇌물수수나 특혜, 불규칙한 지급 등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공공조달 절차에서 책무성을 제고할 것.
	기획조정실(정책평가담당관)	12	독립 모니터링 (a) 아동권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포함하여,(위원회)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할 것; (b) 아동권리위원회의 진정 접수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할 것; (c) 정부 당국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지도를 제고할 것; (d) 정책권고의 이행을 조정하고 모니터링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것; (e) 국가인권위원회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것.
	정부혁신실조직실(공공서비스혁신과)	22	출생등록 (a)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가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b)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될 수 있도록 미혼부가 그들의 자녀를 등록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것; (c) 모니터링 체계 수립 등 미등록 출생아동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d) 출생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것.
	지방재정경제실(재정정책과)	41-42	교육 및 교육의 목표 (e) 훈련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포함한 교사의 훈련 강화, 학교 기반시설 개선과 예산 증액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것;
환경부	환경보건국(화학물질정책과, 화학제품관리과)	15	아동 권리와 기업부문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위한 아동보호 프레임워크(child protection framework)를 수립할 것. 그러한 프레임워크는 아동권리 침해를 보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영향평가,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아동권리 실현과 보호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할 것.

부처명	소관부서명	연번	권고내용
	국립환경과학원(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환경보건국(환경보건정책과, 환경피해구 제과, 화학제품관리과, 화학안전과)	19-20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a) 가습기 살균제가 초래하는 건강상 피해를 조사할 것; (c) 가습기 살균제 피해 아동에게 충분한 구제와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화학물질 관리 및 유해물 질 관련 사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환경보건국(환경보건정책과)	19-20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b) 모든 보육환경 및 교육환경의 실내 공기 질 및 유해물질 노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

국문초록

이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모니터링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 현황을 파악하고 인권정책 개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제3기 아동·청소년 인권 연구의 5차년도 과제이다.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체계를 마련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작되어 2017년 제3기 연구부터 아동권리협약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가승인통계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여, 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115개 지표 항목 중 42개 지표 항목의 결과를 생산하는 데 활용된다. 조사결과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인권상황 진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계열 자료로 축적되고 있으며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에 원자료와 통계표를 탑재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전문가협의회, 워크숍, 의견조사 등을 실시하여 제5·6차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모니터링과 인권실태 분석 등을 통해 17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최종 산출물은 총괄보고서, 심화분석보고서, 기초분석보고서 등 총 3종이며, 인권데이터의 이론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논문인 심화분석보고서의 2021년도 주제는 ‘인권인식과 학교문화’이다.

주제어 : 아동인권/권리, 청소년인권/권리, 인권지표, 인권실태조사,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

ABSTRACT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21 Review of Korean Children's and Youth rights

This study presents the outcomes of the fifth year of the third research project on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t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n Korea and coming up with suggestions for human rights policy development based on monitor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and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This study was launched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 of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establish a systematic data collection system for assessing the status of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and continuously monitor progress in this area. Starting with the third research project, which began in 2017, monitor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UNCRC has been strengthened.

Children's and Youth Rights Survey (CYRS) has been conducted annually (of students in Korea from the fourth year of elementary school to the final (third) year of high school) since it was designated in 2009 as an Official Statistics (No. 402001) with the aim of producing 42 of the 115 indicators of the child/youth rights indicator system, based on the UNCRC.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accumulated as time series data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for children and youth and the progress being made in this area, and the raw data and statistical tables are shared with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and MicroData Integrated Service (MDIS).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expert councils, workshops, and opinion surveys were conducted to assess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5th and 6th Conventions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derive future initiatives. As a final step, 17 major policy initiatives were proposed based on the monitor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analysis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The final output includes a general report, advanced analysis report, and basic statistical report, and the theme of the 2021 advanced analysis report, which is a brief review done to improve the theoretical utilization of human rights data, is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school culture.”

Key words: children's rights, adolescent human rights, human rights indicator, Children's and Youth Rights Survey,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monitoring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 21-R0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 장근영·임지연
- 21-R02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정은주·정현우
- 21-R03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 최정원·문호영·전진아·박용천
- 21-R04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 모상현·최용환·남미자·정건희
- 21-R05 미래지향적 청소년 시설 및 공간 혁신방안 연구 / 김경준·강경규·변나향
- 21-R06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및 성장지원 방안연구 / 김영한·이유진
- 21-R07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유민상·신동훈
- 21-R08 장애청소년 친화적 청소년정책 추진방안 연구 / 김지연·김승경·오욱찬·정소연
- 21-R09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연구 / 최창욱·좌동훈·성은모·남화성
- 21-R10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김영지·최홍일·유설희·이민희·김진호
- 21-R10-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 유성상
- 21-R10-2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최홍일·유설희
- 21-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Ⅲ / 황세영·이경상·송민경·조윤정
- 21-R1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정책 대응 방안 연구 / 서정아·성윤숙·홍순구·권일남
- 21-R12-1 비정형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 홍순구·임지연
- 21-R12-2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 홍성호
- 21-R13 202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황진구·김성은·이용해
- 21-R13-1 202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박찬호
- 21-R14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장윤선·정유미·한지형

21-R14-1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양계민·장운선·정윤미·한지형

21-R14-2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양계민·장운선·정윤미·한지형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1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김은정 (자체번호 21-R1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2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 / 김희진·서고운·김미정·류정희·권지성 (자체번호 21-R15-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임희진·황여정·유성렬 (자체번호 21-R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해외사례 분석 / 임희진·박윤주·황여정 (자체번호 21-R16-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황여정 (자체번호 21-R16-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배상률·이창호·김남두 (자체번호 21-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2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청소년 미디어 교육 지원을 위한 부모 참여 중심 소셜리빙랩 운영 방안 / 정현선·조병영·권은선·김광희 (자체번호 21-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3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배상률·이창호 (자체번호 21-R17-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9-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 김형주·연보라·정세정·변금선 (자체번호 21-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80-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Ⅰ: 일자리 / 김기현·배정희·김창환·성재민 (자체번호 21-R1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80-02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보고서 / 김기현·배정희 (자체번호 21-R19-1)

수 시 과 제

- 21-R20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현안과 과제 / 김지연
- 21-R21 청소년 자살 원인 탐색 및 예방 대책 연구 / 서고운
- 21-R2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문호영
- 21-R23 청년정책연구 분야별 현황 분석 / 신동훈·김세현
- 21-R24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치 유형별 지역 안착방안 / 배상률
- 21-R25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및 법제화방안 연구 / 양계민

연구개발직립금

- 21-R26 정책동향분석 / 이지연

수 탁 과 제

- 21-R27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승경·배정희
- 21-R28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청소년시설 운영기준 수립 연구용역 / 최용환·이희철·장혜윤
- 21-R29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연구 / 김형주·강영배
- 21-R30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방인자·김유민·조아라
- 21-R31 2020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홍성호·김현수·장원빈
- 21-R32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Ⅱ / 유민상
- 21-R33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영어) / 성윤숙·임희진
- 21-R3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기술·가정) / 성윤숙·서정아
- 21-R35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체육) / 성윤숙·김영지
- 21-R36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영어) / 성윤숙·임희진

- 21-R37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기술·가정) / 성윤숙·서정아
- 21-R38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체육) / 성윤숙·김영지
- 21-R39 2020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김옥수
- 21-R40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초등학교용) / 성윤숙·김정민·김효주·장원빈
- 21-R4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중학교용) / 성윤숙·김옥수
- 21-R4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고등학교용) / 성윤숙
- 21-R4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 연구 / 양계민·장윤선
- 21-R44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기현·문호영·황세영·유민상·이용해·김규희
- 21-R45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시범 운영 매뉴얼 / 성윤숙·장원빈·최동혁·김예원
- 21-R46 (초등용)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비대면 꿈지락 / 황세영·송원일·배수인·유한별
- 21-R47 (중등용)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비대면 꿈지락 / 황세영·송원일·배수인·유한별
- 21-R48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 배상률
- 21-R49 강원 2024 청소년 참여 기본계획 / 김정숙·김경준·정은주·이용해·김혁진
- 21-R50 보호대상아동 심리정서지원체계 통합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이상정·정소연
- 21-R51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표준화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정경은·권해수
- 21-R52 인천 다문화교육 종합발전방안 연구 / 연보라·김정숙·신동훈·김재우
- 21-R53 지자체 및 중앙부처 청년정책 분야별 시행계획 평가방안 심화연구 / 배정희·장근영·이용해
- 21-R54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연구 / 최창욱·좌동훈
- 21-R55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 / 좌동훈·김지수
- 21-R56 2021년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 / 정은주·문호영
- 21-R57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수요분석과 대안전략 수립 연구 / 최용환·곽창규·김민주
- 21-R58 202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성은·김영지·김지연·강경균·서고운·최홍일·임경원
- 21-R59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컨설팅 매뉴얼 / 정은주·임지연
- 21-R60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초등학교용) / 성윤숙·유설희·장원빈

- 21-R61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나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중학교용) / 성윤숙·유설희·김예원
- 21-R62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나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고등학교용) / 성윤숙·유설희·신보람
- 21-R63 지속가능한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발전방안 연구 / 양계민·김민
- 21-R64 2021 경기도 다문화학생 직업교육 지원방안 / 양계민·장윤선·강희숙
- 21-R65 이주배경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정유미·장윤선
- 21-R66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의 유형별·단계별 지원 방안 / 김영지·박하나·손진희
- 21-R67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역자원 유형 조사 및 연계 방안 / 김성은·송원일·최홍일·배수인
- 21-R68 2021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 21-R69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한·중 청소년 생활실태 및 가치관 비교연구 / 배상률·장수·김수영
- 21-R70 닛트 등 비경제활동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유민상·배정희·신동훈
- 21-R71 청년정책 해외사례 및 시사점 / 김기현
- 21-R72 청년과 정의 연구 / 김기현
- 21-R7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모델개발(2차) / 연보라·좌동훈·장윤선·김재우·오성배·장흔성
- 21-R74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서고운
- 21-R7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무 개발 연구 / 황진구·좌동훈
- 21-R75-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무 매뉴얼 / 황진구·좌동훈
- 21-R76 강진 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 연구용역 / 김영한·이유진·선민철·이상선
- 21-R77 2021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사업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21-S01 2020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1.28)
- 21-S02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당 워크숍(1.27)
- 21-S03 2020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시상 및 성과보고회(1.28)
- 21-S04 청년 연속기획포럼: 『2020 한국청년을 말한다』3차 포럼-한국청년, 무엇을 원하는가? (1.15)

- 21-S05 청소년정책 토론회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청소년』(2.26)
- 21-S06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발대식 및 사전교육 자료집(6.5)
- 21-S07 근거기반 이주배경청소년정책 추진방안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7.27)
- 21-S08 21세기 비전, 한국-몽골 청소년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7.19)
- 21-S09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이해 및 활용 직무연수 자료집(7.27)
- 21-S10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상반기 성과보고회(8.10)
- 21-S11 202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미래 대안교육, 함께 길을 찾다-청소년에게 맞춤형 교육기회를(8.20)
- 21-S12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역량강화 연수(8.18)
- 21-S13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8.18)
- 21-S14 2021 미디어교육 현장지원단 워크숍: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 제고 및 현장 적용 방안 수업의 실제와 사례 공 유(8.13)
- 21-S15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India(6.14)
- 21-S16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Malawi(6.21)
- 21-S17 제41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구상(11.5)
- 21-S18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Gambia(6.29)
- 21-S19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중간워크숍 자료집(8.21)
- 21-S20 제4회 한일진로교육포럼: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 '다양한 배움의 장'에서의 진로교육기회보장에 관한 한일비교 (9.25)
- 21-S21 미래를 대표하기: 핀란드 정부의 청소년 참여 정책(9.10)
- 21-S22 제12차 청년정책포럼: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10.5)
- 21-S23 콜로키움 Mongolian Youth Policy Review 5차(10.1)
- 21-S24 콜로키움 Guatemalan Youth Policy Review 6차(10.8)
- 21-S25 Youth and Public Policy in Afghanistan(11.22)
- 21-S26 제42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정치참여 현안과제 및 활성화 방안 모색(11.25)
- 21-S27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위기상황 대응 및 보호지원 방향'(10.27)
- 21-S28 영국의 청년 고용 및 훈련 정책(11.23)
- 21-S29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활동 환경 조성 방안'(11.3)
- 21-S30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11.10)
- 21-S31 직원역량 콜로키움: 실무자를 위한 예산 편성의 실제(11.22)

- 21-S32 2021 대안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랜선토크 워크숍 자료집(11.25)
- 21-S33 청소년 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12.2)
- 21-S34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범사업Ⅲ" 시범사업기관 성과공유 워크숍 (11.24)
- 21-S35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주요 청소년 정책 사례(12.3)
- 21-S36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9)
- 21-S37 2021년 우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사업 연차평가 사전 워크숍(12.17)
- 21-S38 2021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및 대안교실 성과공유회(12.16)
- 21-S39 202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12.16)
- 21-S40 청소년 정책 토론회: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12.15)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1호(통권 제10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2호(통권 제10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3호(통권 제10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4호(통권 제103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0호 :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1호 :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 연구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2호 : 국가 미래 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Ⅲ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3호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4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Ⅲ: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5호 :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6호 : 청소년·청년의 플랫폼 노동 실태와 대응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통계 53호 : 위기청소년 실태 파악을 위한 예비조사 결과
- NYPI Bluenote 통계 54호 : 아동·청소년의 주거환경 인식조사
- NYPI Bluenote 통계 55호 :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 NYPI Bluenote 통계 56호 :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Ⅴ
- NYPI Bluenote 통계 57호 : 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 NYPI Bluenote 통계 58호 :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기 패널 주요 조사 결과
- NYPI Bluenote 통계 59호 : 청소년 혐오표현 노출 실태 연구
- NYPI Bluenote 통계 60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Ⅲ: 청년 이직자
- NYPI Bluenote 통계 61호 :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 NYPI Bluenote 통계 6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3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 NYPI Bluenote 통계 63호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 필 진 ◆

- 김 미 숙 (서울기독대학교·전 교수)
김 형 욱 (서울시청 인권담당관·시민인권보호관)
김 희 진 (국제아동인권센터·전 사무국장)
노 하 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기획부·부장)
박 영 실 (통계청 통계개발원·사무관)
유 성 상 (서울대학교 교육학과·교수)
이 승 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자 문 진 ◆

- 강 나 리 (투명가방끈·활동가)
강 미 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부장)
강 정 은 (사단법인 두루·변호사)
강 지 영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교수)
강 현 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교수)
강 현 철 (호서대학교 빅데이터AI학과·교수)
공 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활동가)
구 정 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교수)
김 경 희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기획부·부장)
김 미 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김 민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교수)

김 범 석 (백령고등학교 점박이물범탐구동아리)
김 사 강 (이주와 인권연구소·연구위원)
김 서 경 (청소년기후행동·활동가)
김 선 속 (아동권리보장원 평가센터·센터장)
김 신 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교수)
김 윤 영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소장)
김 지 수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소장)
김 진 (사담법인 두루·변호사)
김 진 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김 형 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노 서 진 (정의당·청소년위원장)
류 정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박 노 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
박 채 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주무관)
박 환 보 (충남대학교 교육학과·교수)
신 인 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교수)
신 필 식 (한국미혼모네트워크·감사)
염 유 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교수)
오 동 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유 미 숙 (한국미혼모네트워크·법인대외협력국장)
유 성 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교수)
유 조 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윤 현 정 (청소년기후행동·활동가)
이 상 균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이 수 종 (아동권리스스로지킴이·활동가)
이 은 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임 경 원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교수)

장 현 주 (법무부 인권정책과·전문위원)
전 경 속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교수)
정 익 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정 병 수 (국제아동인권센터·전 사무국장)
정 병 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선임연구원)
조 소 연 (아동권리보장원 평가센터·과장)
최 주 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사무관)
한 명 애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기획부·부장)
현 소 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연구보고 21-R10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인 쇄 2021년 12월 23일

발 행 2021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삼일기획 전화 044)866-3011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19-0 94330
979-11-5654-318-3 (세트)

연구보고 21-R10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19-0

ISBN 979-11-5654-318-3(세트)